

주요 수출국의 수출현안 모니터링

2010.12



머리말

우리나라의 농림축수산물 수출규모는 2009년도 기준 48억 달러로 농림수산 식품부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과 공사의 해외시장개척 사업 추진 등에 힘입어 최근 수출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세계 농식품 교역규모의 확대와 WTO, FTA 체결 등으로 해외시장의 관세장벽이 낮아지는 등 수출여건은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수입 관련 제도나 규정의 변경, 복잡한 통관 절차 등으로 비관세 장벽은 새로이 신설되어 간접적인 자국 상품에 대한 보호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여건하에 농수산물식품 주요 수출거점국가의 수입제도 변경 및 안전성 관련 정보는 우리 농수산물식품 수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공사는 금년 3월부터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수입제도 변경에 대한 월별 정기 조사는 물론 수출현안 발생시 수시조사를 병행하여 수출업체, 유관기관 등이 조기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 수집과 전파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동 조사는 해외 aT센터 및 현지 전문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주요 조사부문은 통관제도, 검역제도, 라벨링 규정으로 이들 제도 및 규정에 대한 변경사항이나 통관 검역상의 문제 사례와 이밖에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자료집이 한국 농식품의 해외 수출전선에서 각종 진입장벽에 대한 수출업체의 대응력 제고와 원만한 수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0. 12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이사 윤인택

Contents

I. 중국

1

제1장 통관제도	3
제1절 통관제도 일반	3
가. 관리·법률체계	3
나. 통관수속	4
다. 화물의 통관	5
라. 통관 관련 비용	7
마. 관세 변동사항과 규정 개정사항	12
바. 수출입 상품의 분류목록	14
사. 원산지 규정	15
아. 세관의 권한	17
자. 구비서류 일반	18
차. 식품 중 잔류농약 허용기준(MRLs)	21
카. 세법 위반 시 제재조치	23
타. 통관규정 변동사항	24
파. 수입화물의 과세가격	56
하. 수출입 관세의 감면	59
거. 수출입 관세의 반환, 추징, 보충징수	61
너. 수입화물 신고지체금	63
제2절 품목별 통관제도	65
가. 일반포장식품	65
나. 건강식품	66
다. 가축육제품	67
라. 식량과 식용유 식품	68
마. 가공육제품	68
바. 쌀	70
사. 소시지	74

아. 유제품	75
자. 수산물	79
제3절 통관사례	81
가. 3월 통관사례	81
나. 4월 통관사례	83
다. 5월 통관사례	86
라. 6월 통관사례	92
마. 7월 통관사례	94
바. 8월 통관사례	98
사. 9월 통관사례	102
아. 10월 통관사례	106
자. 11월 통관사례	111
제4절 통관부서 연락처	114
제5절 자료출처	124
가. 웹사이트	124
나. 관련법규	124
다. 관련책자	124
제2장 검역제도	125
제1절 검역제도 일반	125
가. 관리 및 법률 체계	125
나. 세관과의 관계	126
다. 법정검험검역	126
라. 검험검역 범위	127
마. 수출입 상품 검험, 출입국 동식물 검역, 국경위생검역	127
바. 검험검역	128
사. 위반 시 제재조치	141

Contents

아. 검역규정 변동사항	142
제2절 품목별 검역제도	167
가. 육류	167
나. 과일	169
다. 동·식물원성 식품	176
라. 쌀	178
마. 소시지	182
바. 유제품	185
사. 수산물	189
제3절 검역사례	190
가. 3월 검역사례	190
나. 4월 검역사례	190
다. 5월 검역사례	193
라. 6월 검역사례	197
마. 7월 검역사례	201
바. 8월 검역사례	205
사. 9월 검역사례	210
아. 10월 검역사례	215
자. 11월 검역사례	221
제4절 한·중 검역협정 추진현황	226
제5절 한국 농수산물식품 수출현안과 대처방안	227
가. 수출현안	227
나. 대처방안	228
제6절 검험검역부서 연락처	231
제7절 자료출처	240
가. 웹사이트	240

나. 관련법규	240
다. 관련책자	241
제3장 라벨링 규정	243
제1절 라벨링 규정일반	243
가. 관리 및 법률체계	243
나. 표기방법	244
다. 수입식품	246
라. 식품라벨 표준 개황	246
마. 식품라벨 표준 주요내용	247
바. 라벨링규정 변동사항	249
사. 표기예시	252
제2절 품목별 표기방법	271
가. 건강식품	271
나. 포장특수식품	274
다. 포도주	280
라. 쌀	282
마. 유제품	283
바. 수산물	286
제3절 라벨링사례	287
가. 3월 사례	287
나. 4월 사례	288
다. 5월 사례	290
라. 6월 사례	294
제4절 최근 이슈사례	300
가. 5월 이슈사례	300
나. 6월 이슈사례	301

Contents

다. 7월 이슈사례	303
라. 8월 이슈사례	306
마. 9월 이슈사례	309
제5절 자료출처	312
가. 웹사이트	312
나. 관련법규	312
다. 관련책자	312

II. 일본 313

제1장 통관제도	315
제1절 김	315
가. 수입통관	315
나. 김의 수입할당 제도	316
다. 김의 관세율	320
라. 현지 통관 보류 및 억류 사례	321
제2절 막걸리	322
가. 통관제도 일반	322
나. 막걸리 관세율	323
다. 주류의 면허	323
라. 현지 통관 보류 및 억류 사례	325
제3절 김치	326
가. 통관제도 일반	326
나. 김치의 관세율	327
다. 수입식품 등 시험성적	327
라. 일본의 김치 생산 및 수입 동향	330
마. 현지 통관 보류 및 억류 사례	332

제4절 삼계탕	333
가. 통관제도 일반	333
나. 동물검역 예비신고	333
다. 삼계탕의 관세율	334
라. 수입 식품 시험 성적	335
제5절 고추장	337
가. 통관제도 일반	337
나. 고추장의 관세율	339
제6절 면류(냉동면, 건면, 파스타류)	340
가. 수주관계 서류 등의 수취	340
나. 수입통관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의 종류 및 단가	340
다. 면류의 관세율	341
라. 식품 시험 성적	342
마. 통관시 주의 사항	343
바. 위반 시 제제조치 (벌금 등)	343
제2장 검역제도	345
제1절 김의 검역제도	345
제2절 막걸리의 검역제도	346
제3절 김치의 잔류 농약 규제	347
제4절 삼계탕 검역제도	348
가. 동물 검역	348
나. 수출국 검사증명서	348
다. 가금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349
라. 한국에서 수입시 검역기준	349
마. 수입 제한 해제 절차	350

Contents

바. 반송사례	350
제5절 고추장 검역제도	352
가. 식품 검역	352
나. 수입 식품 검사	352
다. 식품 위생법 관련	354
제3장 표기사항	355
제1절 김의 표기사항	355
가. 의무 표시사항	355
나. 조미김의 포장 규격	358
다. 조미김 표시사항의 위반 사례	358
제2절 막걸리의 표기사항	359
가. 의무 표시사항	359
나. 라벨 표시방법(2009년 7월 기준)	359
다. 표시사항 실제 사례	363
제3절 김치의 표기사항	364
가. 라벨 표시방법	364
나. 표시사항 실제 사례	366
제4절 삼계탕의 표기사항	367
가. 라벨 표시방법	367
나. 가공식품(삼계탕)의 표시 사항	367
다. 라벨표시 오류 사례	368
라. 표시사항 실제 사례	369
제5절 고추장의 표기사항	370
가. 라벨 표시방법	370
나. 가공식품(고추장)의 표시 사항	370

다. 고추장 매운맛 표준화	372
라. 표시사항 실제 사례	373
제6절 면류(냉동면, 건면, 파스타류) 표기사항	374
가. 라벨 표시방법	374
나. 가공식품(면류)의 표시 사항	374
다. 라벨표시 오류 사례	375
라. 표시사항 실제 사례	376
제4장 기타사항	377
제1절 김 시장의 최근 트렌드	377
제2절 막걸리 시장의 최근 트렌드	378
제3절 일본의 삼계탕 시장과 발전 방향	379
가. 삼계탕의 효능	379
나. 대일수출	379
다. 수출 애로사항	380
라. 수출확대 방향	380
제4절 일본의 고추장 시장과 발전 방향	382
가. 대일수출	382
나. 수출확대 방향	382
다. 수출확대 저해 요인	383
라. 최근 트렌드	384
제5절 면류 시장의 최근 트렌드	385
제6절 자료원 및 관련 웹사이트	386
가. 김의 자료원 및 관련 웹사이트	386
나. 막걸리의 자료원 및 관련 웹사이트	386
다. 김치의 자료원 및 관련 웹사이트	387

Contents

라. 삼계탕의 자료원 및 관련 웹사이트	387
마. 고추장의 자료원 및 관련 웹사이트	388
바. 면류의 자료원 및 관련 웹사이트	389

Ⅲ. 미국 391

제1장 통관제도	393
제1절 통관 제도 일반	393
가. 통관근대화법에 의한 혁신적인 변화	393
나. 2002년 무역법 및 2006년 항만 보호법에 의한 변화	393
다. 통관절차	395
라. 관세제도 특징	396
제2절 품목별 통관 제도	399
가. 김	399
나. 라면	399
다. 커피믹스	400
라. 인삼	401
마. 차	402
바. 요구르트	403
제3절 통관보류 및 거부사례	404
가. 조미김	404
나. 라면	404
다. 칼슘두유	404
라. 해물모듬/황태채/냉동조개/냉동어묵	404
마. 인삼드링크	405
바. 통조림류	405
사. 요구르트	406

제2장 검역제도	407
제1절 검역 제도 일반	407
가. 미국, 한국을 청정지역으로 발표 - 법령으로 제정	407
나. 소량의 육류 및 가금육성분 함유식품	407
다. USDA 수입허가 없이 한국에서 수입가능한 품목	408
라. USDA 수입허가 후 한국에서 수입가능한 품목	409
제2절 품목별 검역제도	410
가. 인삼	410
나. 식물	413
다. 요구르트	414
라. 유제품	416
마. 신선과실 및 채소류	417
제3절 검역불합격 및 폐기, 반송 사례	418
가. 어묵 (fish cake)	418
나. 한국산 버터와플	418
다. 소량의 육류 및 가금육 성분으로 함유된 식품	418
라. 한국무	419
마. 한국산 조(Millet)	419
바. 한국산 인삼	419
사. 풍란	422
아. 요구르트	422
제3장 라벨링 규정	423
제1절 라벨링 표시사항	423
가. 관련법규	423
나. 라벨링 요구조건	423
다. 포장지 앞면 라벨링 표기 발안	424

Contents

라. 라벨링 표기 일반사항	425
제2절 라벨링 관련 문제 및 해결사례	428
가. 선물세트 라벨링	428
나. 당분 사용 및 표기 불일치	428
다. 비스킷 제품 사례	429
라. 천연감미료 사례	429
제3절 자료원 및 관련 웹사이트	430

IV. 유럽 431

제1장 통관제도	433
제1절 통관 제도 일반	433
가. 통관절차	433
나. 관세 고정제도	433
다. 온라인 통관제도	434
라. 수입신고서 종류	434
마. 부가가치세	434
바. 유럽-한국간 FTA 체결과 통관제도의 변화	436
사. 통관 제도 변경사항	437
제2절 품목별 통관 제도	442
가. 수산물	442
나. 임산물	445
다. 유기농 제품	446
라. 유제품	448
제3절 통관보류 및 거부사례	453
가. 유기농 검은 콩차	453
나. 지역별 통관 거부 현황 (2007-2009)	453

다. 지역별 품목별 통관 거부 현황 (2008-2009)	454
라. 유기농 밤 제품의 통관거부	456
제4절 관련 웹사이트	457
제2장 검역제도	459
제1절 검역 제도 일반	459
가. 개요	459
나. 검역 인증서 (Certificate of Inspection)	459
다. 최근 검역 근황	460
제2절 주요 품목별 검역 제도	471
가. 수산물	471
나. 임산물	472
제3절 검역불합격 및 폐기, 반송 사례	475
가. 수산물 검역 관련 사례	475
나. 고춧가루	475
다. 젤리	475
라. 9~10월 검역 불합격 사례	475
마. 11월 검역 불합격 사례	479
제4절 국가별 검역원 현황 및 담당자 내역, 웹사이트	490
제3장 라벨링 규정	493
제1절 라벨링 표시사항	493
가. 의무 표시사항	493
나. 의무 표기 제외제품	494
다. 유효기간 표기 제외제품	494
라. 원산지 표기 의무 제품	494
마. 영국의 라벨링 표기 방법 변경 계획	495

Contents

바. 영국, 새로운 생선 라벨링 규정 도입	495
사. 유기농 제품의 라벨링	495
아. 라벨링 표시사항	496
자. 영국, 식품 라벨링 담당 기관 변경	498
제2절 라벨링 관련 문제 및 해결사례	500
가. 잘못된 알레르기 정보 표기	500
나. 제조성분 누락으로 인한 리콜조치	500
다. 유기농 밤 제품의 라벨링 문제	501
라. 인도 카레 제품 및 성분표기 누락 사례	501
마. 패키지 오류	501
바. 칠리 쌀 과자 제품 성분 표기 누락	502
사. 중국제품 억류 사례	502
아. 밀가루 함유 글루텐 프리 과일케이크	502
자. 소시지 제품 리콜 사례	503
차. 터키 무화과 제품	503
카. 식품 보조제 및 캐슈넛 쿠키 바	504
제3절 자료원 및 관련 웹사이트	505

I

중국

제1장 통관제도	3
제1절 통관제도 일반	3
제2절 품목별 통관제도	65
제3절 통관사례	81
제4절 통관부서 연락처	114
제5절 자료출처	124
제2장 검역제도	125
제1절 검역제도 일반	125
제2절 품목별 검역제도	167
제3절 검역사례	190
제4절 한·중 검역협정 추진현황	226
제5절 한국 농수산식품 수출현안과 대처방안	227
제6절 검험검역부서 연락처	231
제7절 자료출처	240
제3장 라벨링 규정	243
제1절 라벨링 규정일반	243
제2절 품목별 표기방법	271
제3절 라벨링사례	287
제4절 최근 이슈사례	300
제5절 자료출처	312



제1장 >>> 통관제도

Korea Agro-Fisheries Trade Corporation

제1절 ● 통관제도 일반

가. 관리·법률체계

1) 관리체계

- 세관총서 : 세관총서는 국무원 직속기구로서 전국 세관기구, 인원편제, 경비물자와 각종 세관업무를 관리. 현재 광주에 광둥분서, 천진과 상해에 특파원사무소를 설립
- 직속세관 : 41개(북경, 천진, 석가장, 태원, 후허호트, 만주리, 대련, 심양, 장춘, 하얼빈, 상해, 남경, 항주, 녕파, 합비, 복주, 하문, 남창, 청도, 정주, 무한, 장사, 광주, 심천, 공북, 산두, 황포, 강문, 잠강, 남녕, 해구, 중경, 성도, 귀양, 곤명, 라사, 서안, 란주, 서녕, 은천, 우루무치)로서 일정 구역의 세관업무를 관리
- 소속세관 : 580개로서 구체적 세관업무를 처리
- 세관 밀수단속 경찰기구 : 2003년 1월 1일부터 세관밀수단속국으로 명칭 변경

2) 법률체계

중국세관 법률체계는 국가최고권력기구, 국무원, 세관총서 등 3급 입법체계를 채택한다.

- 법률 : “세관법”은 세관업무의 기본법률로서 2000년 7월 8일, 제9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
- 행정법규 : 국무원에서 “헌법”과 기타 법률에 의해 제정한 규범성 문건의 총칭으로서, 관련 행정법규는 “수출입관세조례”, “세관조사조례”, “지적재산권세관보호조례”, “세관행정처벌시행조례”, “세관통계조례” 등이 있음

- 행정규정 및 기타 규범성 문건 : 세관 행정규정은 주로 세관총서에서 별도로 또는 기타 부서와 같이 제정한 규범성 문건을 가리키며, 기타 규범성 문건은 세관총서 및 직속세관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제정한 문건을 가리킴

나. 통관수속

1) 통관수속 범위

모든 출입국 운송도구, 화물, 물품은 통관수속을 밟아야 함

- 출입국 운송도구 : 사람, 화물, 물품의 출입국에 사용되는 각종 선박, 차량, 항공기와 역축(役畜) 등
- 출입국 화물 : 일반 수출입 화물, 보세화물, 임시출입국화물, 특정감면세화물, 중계화물, 환적화물 및 기타 출입국 화물 등
- 출입국 물품 : 출입국 수하물 물품, 우송물품과 기타 물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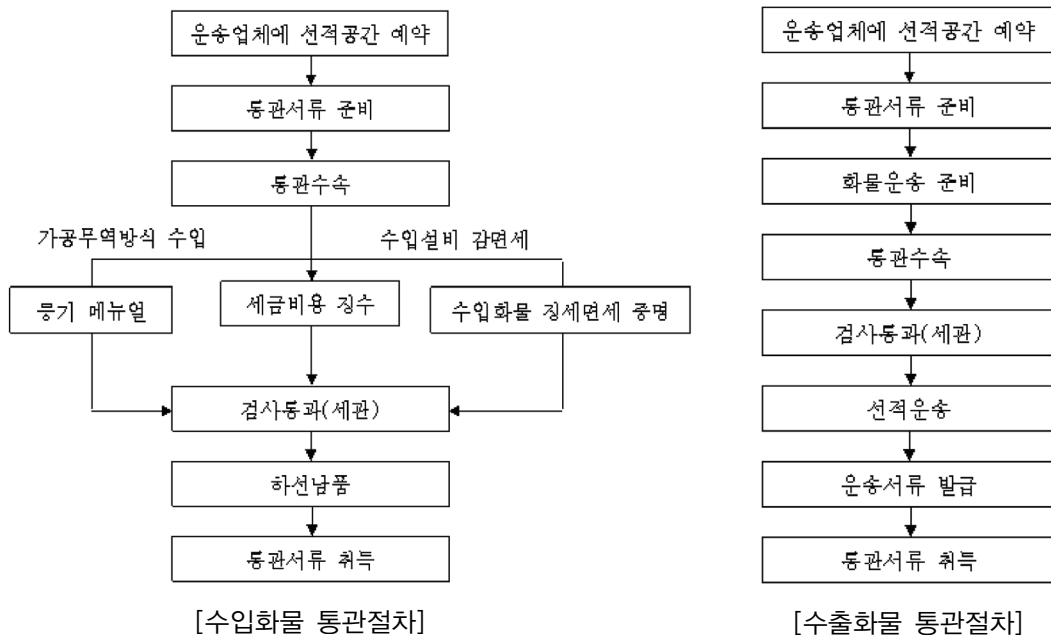
2) 통관수속 분류

- 통관수속의 대상에 따른 분류 : 운송도구, 화물, 물품 등 통관수속
- 통관수속의 목적에 따른 분류 : 입국 통관수속, 출국 통관수속
- 통관수속의 행위성격에 따른 분류 : 자체 통관수속, 대리 통관수속



다. 화물의 통관

1) 출입국 화물의 통관절차



〈분류별 출입국 화물의 통관절차〉

화물분류	초기단계	출입국단계	후속단계
일반수출입 화물	/	수출입 신고 협조 검사 세금비용 납부 화물 수령 또는 선적	/
보세수출입 화물	가공무역 등기/매뉴얼 신청		심의 삭제
특정감면세 화물	감면세증명 신청		세관 감독관리 해소
임시출입국 화물	전시품입국 등기		사건 취소

2) 일반 수출입 화물의 통관

□ 화물범위

- 일반무역 수출입 화물
- 보세가 아닌 일반무역 수입화물, 실제로 수입된 보세 수입화물
- 실제로 수입 또는 수출된 임시 출입국 화물
- 구상무역 또는 보상무역 수출입 화물
- 보세가 아닌 위탁판매 또는 수탁판매의 무역화물
- 청부공사의 실제 수출입 화물
- 중국주재 외국상업기구의 수출입 진열용 샘플
- 외국관광객의 소량 주문수출 상품
- 전시품과 동시에 입국한 소매품
- 면세 수입화물

□ 통관서류

- 수출입계약서(Contract)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선하증권(Ocean Bill of Lading)
- GSP 원산지증명서(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Certificate of Origin)
- 통관신고서(Declaration form)

□ 통관절차

일반 수출입 화물의 통관절차는 수출입 신고, 협조 검사, 세금비용 납부, 화물 수령 또는 선적 등 4개 부분으로 구성

- 수출입 신고 : 수출입 화물의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규정한 기한과 장소에 따라 세관에 수출입 화물의 상황을 보고하며 세관의 심사를 받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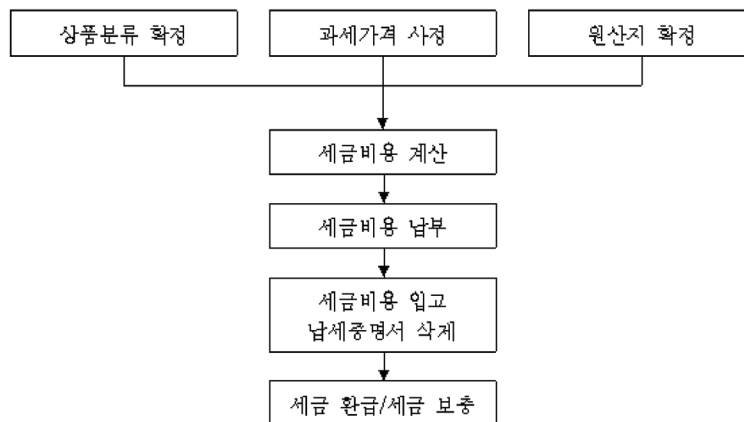


- 협조 검사 : 세관이 수출입 화물의 성격, 가격, 수량, 원산지, 화물상황 등이 통관서류의 신고내용에 부합여부를 확정하며, 화물을 실제로 검사하는 행위
- 세금비용 납부 : 수출입 화물의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세관에 관세, 소비세, 증치세, 선박톤세와 세관감독관리 수수료 등 세금비용을 납부하는 행위
- 화물 수령 또는 선적 : 세관의 화물 감독관리, 세관 통과, 화물 수령 또는 선적, 증명발급 신청 등 절차

라. 통관 관련 비용

1) 통관 세금비용

세관은 상품분류의 확정, 과세가격의 사정, 화물원산지의 확정을 통해 과세가격과 세율을 얻어 세금비용을 계산



[세관의 징세절차]

- 관세 : 수출입 화물, 출입국 물품을 과세대상으로 징수하는 일종 국가 세수
- 소비세 : 소비품 또는 소비행위의 거래액을 과세대상으로 징수하는 일종 거래세로서 “소비세임시조례”에 의해 중국은 현재 과도한 소비로 위해가 되는 특수소비품

(담배, 술, 알코올, 폭죽, 연화 등), 생활필수품이 아닌 사치품(귀중한 장신구, 보석, 옥석, 화장품 등), 에너지원 소모형 고급 소비품(소형 자동차, 오토바이, 차량 타이어 등), 불가재생 자원류 소비품(휘발유, 경유 등)에 대해서만 소비세를 징수

- 증치세 : 상품의 생산, 유통과 노무 서비스 등에서 창조한 추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일종 거래세로서, “증치세임시조례”에 의해 증치세는 세무기구에서 징수하고 수입화물 증치세는 세관에서 징수. 기본세율은 17%이며, 식량, 식용유 및 식물유 등 중요한 물자의 세율은 13%임
- 선박톤세 : 세관에서 중국 항구에 출입, 정박하는 국제항행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징수하는 일종 사용세임
- 체납금 : 세관에 세금비용을 체납할 경우, 체납금=납세액×0.05%×체납일, 세관에 통관신고를 연기할 경우, 체납금=수입화물 과세가격×0.05%×연기일

2) 과세가격에 영향을 주는 통관 부대비용

수입화물 과세가격은 그 화물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심사하여 확정하며, 운송비와 기타 관련 비용, 보험료를 포함한다. 수입화물 과세가격은 화물자체의 가격을 포함하는 외에 아래와 같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 화물 구매 커미션 외의 커미션과 중개 수수료
- 그 화물과 일체로 보는 용기비용
- 포장 재료비용과 포장 노무비용
- 수입화물 유지비용
- 납세할 특허권 사용료(즉, 경외 공급업체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료)
- 경외 공급업체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일부 수입화물이 국내에서 운반, 처분, 사용함으로써 취득하는 수익
- 수입화물로 인해 공급업체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협조와 관련된 비용
- 수입화물 중에 설치한 재료, 부속품, 부품 및 기타 유사한 항목과 관련된 비용
- 수입화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도구, 펀치다이, 금형 및 유사한 목(분담)
- 수입화물의 생산에 소모되는 재료비



- 수입화물의 생산에 필요하여 수입국가 외에서 종사하는 공정기술, 개발, 설계, 계획과 관련 비용

그러나 수입화물 과세가격은 영수증에 포함되어도 아래와 같은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 수입화물과 연관되는 할당액, 허가증 및 유사한 비용
- 수입관세와 기타 국내 세금
- 수입화물과 연관되는 이자
- 수입 후의 창고저장과 운송비용
- 경외 공급업체에게 지급하는 화물 수입 후의 설치, 시운전, 건축, 기술지원과 연관되는 비용
- 경외에서 수입화물을 복제함으로써 지급하는 비용
- 국내외 기술교육 및 경외 고찰비용

3)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 일반

□ 관세의 계산

- 종가관세는 운송료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한다.

$$\text{수입관세 세액} = \text{운송료 과세가격} \times \text{세율}$$

$$\text{운송료 과세가격} = \text{CIF가격}$$

$$= (\text{FOB가격} + \text{운송료}) / (1 - \text{보험요율} \times \text{보험가입 첨가})$$

$$= \text{CFR가격} / (1 - \text{보험요율} \times \text{보험가입 첨가})$$

- 종량관세는 수입상품의 수량, 체적, 중량 등 계량단위로 세액을 계산한다.

$$\text{수입관세 세액} = \text{운송료 수량} \times \text{단위세액}$$

- 복합관세는 어떤 수입상품에 대해 종가관세와 종량관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text{수입관세 세액} = \text{운송료 수량} \times \text{종량관세 세액} + \text{운송료 과세가격} \times \text{세율}$$

- 슬라이딩관세(Sliding Scale Duty)

증가로 징수하는 수입관세 세액 = 과세가격×잠정 세율

종량으로 징수하는 수입관세 세액 = 운송료 수량×잠정 세율

- 운송료의 거래가격은 거래조건에 따라 주로 FOB, CFR, CIF 등 3가지가 있다.
CIF 조건으로 거래하는 운송료는 만약 신고가격이 규정한 “거래가격” 조건에 부합
되면 세율을 확정하여 직접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FOB와 CFR 조건으로 거래하는
운송료는 세액을 계산할 때에 운송료의 신고가격을 CIF가격으로 환산한 후 상기
절차에 따라 세액을 계산한다.

□ 증치세(부가가치세)

- 증치세=증치세 구성 징세가격×증치세 세율

- 증치세 구성 징세가격=과세가격+관세 세액+소비세 세액

□ 소비세

- 증가징수일 경우

소비세 세액 = 소비세 구성 징세가격×소비세 세율

소비세 구성 징세가격 = (과세가격+관세 세액)/(1-소비세 세율)

- 종량징수일 경우

소비세 세액 = 납세소비품 수량×소비세

- 동시에 증가, 종량으로 징수할 경우

소비세 세액 = 증가 소비세 세액+종량 소비세 세액

□ 운송료

운송료의 운송료는 실제로 지급한 비용으로 계산한다. 만약 운송료의 운송료를 확정할
수 없으면 세관은 그 화물의 실제 운송원가 또는 그 화물 수입동기에 운송업에서 발표한
운송료 요율로 운송료를 계산한다.



□ 보험료

수입화물의 보험료는 실제로 지급한 비용으로 계산한다. 만약 수입화물의 보험료를 확정할 수 없거나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으면 세관은 보험료=(화물가격+운송료)×3%로 보험료를 계산한다.

4) 통관 부대비용의 증감발생

규정에 의해,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관련된 일방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를 제외한다.

- 특허권사용료가 그 화물과 연관이 없을 경우
- 특허권사용료의 지급이 중국 경내에서 그 화물을 판매하는 조건을 구성하지 않을 경우

〈화물과 연관되는 특허권사용료 판단기준〉

특허권	화물과 연관되는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기술 사용권	1. 수입화물에 특허/독점기술을 포함할 경우 2. 수입화물을 특허방법/독점기술로 생산한 경우 3. 수입화물을 특허/독점기술의 사용을 위해 설계 또는 생산한 경우
상표권	1. 수입화물에 상표가 부착될 경우 2. 수입화물을 수입한 후 상표를 부착하여 직접 판매할 수 있을 경우 3. 수입화물을 수입할 때 상표권이 이미 포함되어 가공한 후에 상표를 부착하면 판매할 수 있을 경우
저작권	1. 수입화물에 소프트웨어 문자, 악곡, 그림, 영상/기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할 경우 2. 수입화물에 기타 저작권 내용을 포함할 경우
판매권 또는 기타 유사한 권리	1. 수입화물을 수입한 후 직접 판매할 수 있을 경우 2. 수입화물을 가공한 후 직접 판매할 수 있을 경우

〈특허권 사용료의 납세〉

세금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특허권사용료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지 않는 특허권사용료	
		기술양도	기타
관할권한	세관/세무부서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	
관세	반드시 납부하며 관련 화물의 관세 세율과 같음	납부할 필요가 없음	
증치세	반드시 납부해야 함(17%)	납부할 필요가 없음	
영업세	화물대금에 포함할 경우 납부할 필요가 없음, 화물과 무형자산이 분리될 경우 반드시 납부해야 함	조건을 만족하면 면세가 가능	반드시 납부 (5%)
소득세		조건을 만족하면 감세가 가능	반드시 납부 (5%~20%)

비고 : “두 가지 조건”

첫째, 특허권 사용료와 그 화물이 연관

둘째, 특허권 사용료의 지급은 그 화물을 중국 경내에서 판매하는 조건을 구성

특허권 사용료는 반드시 화물을 수입할 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수입화물 또는 그 완제품의 판매실적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특허권 사용료는 월별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특허권 사용료는 화물을 수입할 때에 화물과 같이 신고하거나, 실제로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할 때에 신고하거나 일정한 주기별로 세관에 신고할 수 있다. 어떠한 신고방식도 모두 세관과 협상하여 확정해야 한다.

마. 관세 변동사항과 규정 개정사항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2010년 수출입관세세칙”은 최혜국세율, 연도임시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과 세칙세목 등 면에서 조절되어, 중국 관세 세율은 평균 9.8%, 그 중 농산물 평균 세율은 15.2%, 공업품 평균 세율은 8.9%임



1) 수입관세 조절

- 중국이 WTO에 승낙한 관세인하 의무에 따른 수입관세 조절
 - ※ “수입세칙”에서 폴리에스테르 섬유(Polyester Fabric) 등 5개 세목의 최혜국세율을 인하, 원피 소가죽(Wet-Blue Leather) 1개 세목의 최혜국세율을 6%로 확정, 기타 세목의 최혜국세율은 변동 없음
 - ※ 9개 ex 세목의 IT제품에 대해 계속 세관의 검증관리를 시행하며 세목 세율은 변동 없음
 - ※ 밀, 옥수수, 벼와 쌀, 설탕, 양모, 목화 등 8개 종류, 45개 세목의 상품에 대해 관세할당 관리를 시행하며 세목과 세율은 변동 없음. 할당 외 수입한 일정 수량의 목화에 대해 슬라이딩관세(Sliding Scale Duty)를 적용, 요소, 복합비료, 인산암모늄(제2) 등 3가지 화학비료에 대해 1% 임시할당세율을 적용
 - ※ 냉동 닭 등 55가지 상품에 대해 종량세, 복합세를 적용하고 세율은 변동없음
- 냉동 그린란드 넙치무리(Greenland Halibut) 등 일부 수입상품에 대해 임시세율을 적용
- 중국이 관련 국가 또는 지역과 체결한 무역 또는 관세우대협정에 의해, 관련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해 협정세율을 적용
 - ※ 원산지가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와 라오스인 1,767개 세목의 상품에 대해 계속 아태무역협정세율을 적용
 - ※ 원산지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인 일부 세목의 상품에 대해 계속 중국-아세안 FTA 세율을 적용
 - ※ 원산지가 칠레인 7,029개 세목의 상품에 대해 계속 중국-칠레 FTA 세율을 적용
 - ※ 원산지가 파키스탄인 6,240개 세목의 상품에 대해 계속 중국-파키스탄 FTA 세율을 적용
 - ※ 원산지가 뉴질랜드인 7,040개 세목의 상품에 대해 계속 중국-뉴질랜드 FTA 세율을 적용
 - ※ 원산지가 싱가포르인 2,753개 세목의 상품에 대해 계속 중국-싱가포르 FTA 세율을 적용
 - ※ 원산지가 중국 홍콩이며 또한 원산지 우대표준이 확정된 1,587개 세목의 상품에 대해 0% 관세를 적용
 - ※ 원산지가 중국 마카오이며 또한 원산지 우대표준이 확정된 1,209개 세목의 상품에 대해 0% 관세를 적용

- 중국이 관련 국가 또는 지역과 체결한 무역 또는 관세우대협정 및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계속 라오스 등 동남아 4개국,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31개국,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 등 41개 유엔에서 인정한 후진국의 일부 상품에 대해 특혜 세율을 적용
- 일반세율은 변동 없음

2) 수출관세 조절

- “수출세칙”의 수출세율은 변동 없음
- 뱀장어 치어 등 일부 수출상품에 대해 임시세율을 적용, 일부 화학비료 등에 대해 계속 특별수출관세를 적용 그 중에서 2010년 1월 1일 전에 수출관세를 징수한 제품은 징세가 포함하는 무역방식과 범위는 변동 없음

3) 세칙 세목의 조절

일부 세칙 세목에 대해 조절하며, 조절한 후 수출입 세칙(2010년도) 세목 총수는 7,923 개에 도달

바. 수출입 상품의 분류목록

1) 세관 수출입 세칙

중국이 현재 시행하는 “세관수출입세칙”은 20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채택하고 있는 “상품명칭과 코딩협정제도”의 목록에서 상품분류의 분류원칙, 구조와 모든 상품명칭을 채택하고 세율을 추가, 상품코드를 세칙번호로 개칭, 8위 코딩으로 증가

2) 세관 통계상 품목록

세관 분류통계의 편의를 위해 “세관수출입세칙”과 구조가 기본상 같지만, 계량단위로



세율을 대체, 상품코드로 세칙번호를 대체, 제22류 “특수 거래품 및 미분류 상품”을 추가

사. 원산지 규정

1) 비우대 원산지

비우대 원산지 확정표준은 “수출입 화물 원산지조례”와 “실질성 변경표준규정”에 따라 완전획득표준과 실질성변경표준을 적용

2) 우대 원산지

우대 원산지 확정표준은 완전획득표준, 증가백분비표준, 세칙분류변경표준, 제조가공 순서표준, 직접운송표준, 기타표준을 적용

〈일부 우대 원산지 규칙비교〉

지역무역협정과 우대원산지규칙	관련 국가/지역	원산지표준
아태무역협정 원산지규칙	한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인도	완전획득표준과 실질성가공표준(45% 증가백분비표준, 누계 60%)
중국-아세안 FTA 원산지규칙	아세안 10개국	완전획득표준과 실질성가공표준(40% 증가백분비표준, 누계 40%, 제품특정원산지규칙)
중국-홍콩 CEPA 원산지규칙	홍콩	완전획득표준과 실질성가공표준(제조 또는 가공순서표준, 4위 세칙번호변경표준, 30% 증가백분비표준, 기타표준, 혼합표준)
중국-마카오 CEPA 원산지규칙	마카오	완전획득표준과 실질성가공표준(제조 또는 가공순서표준, 4위 세칙번호변경표준, 30% 증가백분비표준, 기타표준, 혼합표준)

지역무역협정과 우대원산지규칙	관련 국가/지역	원산지표준
중국세관 특별우대관 세대우수출입 화물원산지관리방법	라오스 등 동남아 4개국,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31개국, 아프카니스탄 등 6개국	완전획득표준과 실질성가공표준(세척번호변경표준 또는 40% 증가백분비표준)
대만 과일과 농산물	대만	완전획득표준
중국-파키스탄 FTA 원산지규칙	파키스탄	완전획득표준과 실질성가공표준(40% 증가백분비표준, 누계 40%, 제품특정원산지규칙)
중국-칠레 FTA 원산지규칙	칠레	완전획득표준과 실질성가공표준(40% 증가백분비표준, 제품특정원산지규칙)

3) 원산지 규정

원산지증명서는 수혜국의 원산품이 수출할 때에 관세 우대를 받는 증빙이고, 수입화물의 반덤핑, 반보조, 보장조치 등 무역정책 적용여부를 증명한다.

〈일부 무역협정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요구〉

무역협정	발급기구	시간요구	비고
아태무역협정	협정국가 주관부서	수입 시 제출하거나 화물 통관 후 입국일로부터 90일 내 납부	중복 사용불가, 주관부서의 명칭, 도장은 등록과 일치
중국-아세안 FTA	아세안국가 주관부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	중복 사용불가, FOB가격<200달러일 경우 제출하지 않음
홍콩, 마카오 CEPA	홍콩 : 공업무역서 마카오 : 경제국	화물 통관일로부터 90일 내에 원산지증명서의 진실성을 검사	중복 사용불가,
“특별혜택 관세대우”	수혜국 주관부서	발급일로부터 180일 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	주관부서 명칭과 주소, 발급 도장 등을 등록



아. 세관의 권한

“세관법”은 세관 임무를 규정한 동시에 세관의 구체적 권한을 부여했다. 세관 권한은 “세관법”과 기타 법률법규를 통해 세관에 부여한 출입국 운송도구, 화물, 물품에 대한 감독관리의 기능을 가리키며, 세관은 아래와 같은 권한이 있다.

1) 행정허가권

- 통관신고업체 등기등록 등 법률법규에서 설정한 행정허가항목

2) 세금비용의 징수권

- 수출입화물(물품)에 대해 관세 및 기타 세금비용을 징수
- 법률법규 및 관련 규정에 의해 특정지역, 특정기업 또는 특정용도의 수출입화물에 대해 관세를 감면 징수
- 세관에서 통관을 허락한 후 관련 수출입화물(물품)에 대해 세금을 적게 징수 또는 누락 징수한 것을 발견할 경우, 법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징수 또는 추징할 권한

3) 행정검사권

- | | |
|-------|-------|
| ○ 검사권 | ○ 복제권 |
| ○ 조회권 | ○ 조사권 |

4) 행정강제권

- | | |
|------------|-------------------|
| ○ 압류권 | ○ 체납금 징수권 |
| ○ 화물 선행매각권 | ○ 강제 원천징수와 관세 공제권 |
| ○ 세수보전 | ○ 벌금권 |
| ○ 처벌담보 | ○ 세수담보 |

5) 행정처벌권

밀수죄가 아닌 경우에 행정처벌을 내리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밀수행위와 세관의 감독관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사항이 있는 통관신고업체와 통관신고인원에 대해 통관신고자격을 임시중지 또는 취소하는 처벌을 내리는 권한

6) 기타 권한

- 무기 휴태사용권
- 연속 추적권
- 행정재결권
- 행정장려권

자. 구비서류 일반

통관서류는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영수증, 문건과 증서를 가리키며, 이로써 국제화물의 교부, 운송, 보험, 검험검역, 통관신고와 외화 결제 등을 처리한다.

1) 수출입계약서(Contract)

중국 “섭외경제계약법” 제7조는 “당사자가 계약조항에 관해 서면형식으로 협의를 달성하고 서명하면 계약이 설립된다. 서신, 전보, 전송을 통해 협의를 달성하고 일방 당사자가 확인서의 체결을 요구할 경우, 확인서를 체결하면 계약이 설립된다.”라고 규정한다.

수출입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매매 쌍방의 명칭, 상품 명칭, 수량, 품질, 가격, 지급방식, 납품시간과 장소,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대한 배상 책임범위 또는 분쟁 해결방법 등을 포함한다.

통관수속은 수출입계약서를 이행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합법적 수출입계약서는 모든 통관서류의 기초이다.

2)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은 실제업무에서 영수증이라고 약칭한다. 영수증은 일반적으로 수출업체가 발급하는 발주 가격표이며 선적 화물의 전반적 설명이다. 영수증은 통관신고서를 작성하는 중요한 근거자료로서 주요내용은 발급인의 명칭과 주소, 수하인, 품명과 화물의 설명, 수량, 단가와 총가격, 상표와 번호 등을 포함한다.

COMMERCIAL INVOICE

Seller:
GohKee Co. Ltd.
Buckley No. 83
46th Road, Canton
Tel: 0086 10 2548798
Fax: 0086 10 98765432

Buyer:
United Industrial Corp. Ltd.
No. 1 Chaoyang St. Chaoyang District, Beijing, P. R. China
Tel: 0086 10 2548798
Fax: 0086 10 98765432

Invoice No.: GohKee 20081101
Invoice Date: Sept. 18, 2008

Contract No.: GCI-2008MPC047

Shipped On / About: No. 21, 2008

Shipped By: GohKee Co. Ltd.
Tianjin, Xiqiang, Port of China

Item	Description	Unit Price	P/ QTY	Qty.	Total in Euro
1	XX01	Shagun white milk + nut chocolate 100g	0.8710	1,72	2169
2	M018	Milk + Hand made chocolate 3 x 25g	0.4905	1,96	10806
3	M018	Choco White chocolate 100g	1.0599	1,72	7200
4	XP02	Glaz chocolate 400g	80200	1.66	3120
5	M442	Wash/Mint chocolate 300g	6.3611	1.56	864
Total					44.86585

Total Amount: Euro 44,865,85
 THAT IS EURO FORTY FOUR THOUSAND EIGHT HUNDRED AND SIXTY - FIVE POINT EIGHTY FIVE ONLY.

GohKee Co. Ltd.
Signed By:

[상업송장 샘플]

3) 포장명세서(Packing List)

포장명세서는 영수증의 보충서류로서 포장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며, 주요내용은 상품 화물번호, 색깔번호, 치수배합, 총중량, 순중량, 치수 등을 포함한다.

PACKING LIST

Seller: KOREA CHEMICAL CO. LTD.
130-4 SEONGJO - DON HOCHO - KU, SEOUL, KOREA

Invoice No. and Date: EX00320 15th MAR 2005

Buyer (if any than consignee): AS PER CONSIGNEE

Companys: TO THE ORDER OF SHANGHAI FAR EAST CONTAINER CO. LTD. 1728 - 1731 SANGGAO, PEDONGSHANGHAI, CHINA

Departure Date: 15th MAR 2005

Vessel: KMSK EXPRESS v. 28109

From, To: SINGAPORE SHANGHAI CHINA

Other Reference: CONTRACT NO. SFEC/KC0803 - 01

Shipping Marks	No. of Pieces of Packing	Goods Description	Quantity	N/Weight	G/Weight	Measurement M3
			LTR	KG	KG	
N/M	CRATES	PAINT	114,856	136,256	161,492	165
TOTAL: 234CRATES						

KOREA CHEMICAL CO. LTD.
Signed By:

[포장명세서 샘플]

4) 선하증권(Ocean Bill of Lading)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접수한 후 발급하는 화물 인수증이며 운송인이 서명한 운송계약의 증명이고도 하다. 선하증권의 주요내용은 B/L 번호, 선하주 정보, 수하인 정보, 수하 장소, 선적항, 도착항, 선박명칭, 출항순서, 중계 정보, 건수, 포장종류의 정보, 화물의 설명(화물 명칭, 규격, 수량 등) 등을 포함한다.

BILL OF LADING

MAERSK LINE

Shipper: PAPER LLC
100 ALBERTSON DR. WYOMING

Consignee: PAPER CO. LTD.
1331 1/2 WILMINGTON STREET
WILMINGTON, DE 19804

Port of Origin: WILMINGTON, DE

Port of Destination: SHANGHAI, CHINA

Commodity: PRODUCT PROVIDED BY SHIPPER - CARTONS NOT RECORDED

Quantity: 13 CONTAINERS (16)

Weight: 35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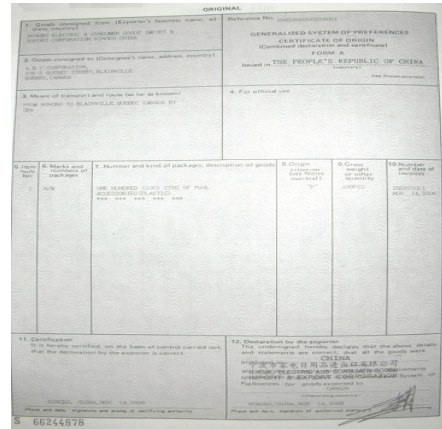
Signature: [Handwritten Signature]

[선하증권 샘플]

5) GSP 원산지증명서(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업체가 수입업체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공증기관 또는 정부 또는 수출업체가 발급하는 화물 원산지 또는 제조지를 증명하는 증명서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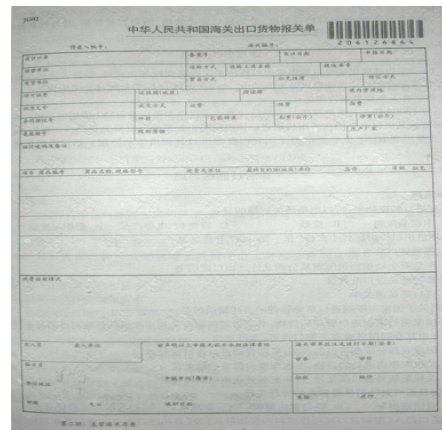
원산지증명서는 무역관계인이 화물 인수인계, 대금 결산, 배상 처리, 수입국 통관검수, 관세징수의 증빙서류이며, 수출국이 할당액 대우를 받고 수입국이 수출국별로 무역정책을 실시하는 증빙서류이다.



[원산지증명서 샘플]

6) 통관신고서(Declaration form)

통관신고서는 수출입화물의 수하인,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세관에서 규정한 격식에 따라 수출입화물의 실제상황에 대해 서면설명을 하여 세관에서 그 화물에 대해 적용하는 세관제도에 따라 통관수속을 밟도록 요구하는 법률문서이다.



[통관신고서 샘플]



차. 식품 중 잔류농약 허용기준(MRLs)

중국 잔류농약 허용기준(MRLs)의 관련 국가표준은 아래와 같다.

1) GB15193.1-2003 : “식품안전성 독리학 평가절차”

이 표준은 위생부와 중국표준화관리위원회가 1991년에 발표하고 2003년에 처음으로 수정했으며, 식품안전성 독리학 평가절차를 규정하여 식품 생산, 가공, 저장, 운송과 판매과정에서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화학, 생물, 물리적 요소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식품첨가제(영양강화제를 포함), 식품 신자원 및 그 성분, 신자원 식품, 방사선조사식품, 식품용기와 포장재료, 식품도구, 설비, 세척제, 소독제, 농약잔류, 가축 약품잔류, 식품공업용 미생물 등의 평가에 적용한다.

2) GB4285-1989 : “농약안전 사용표준”

이 표준은 농업부와 환경보호국에서 제출한 “환경보호법”을 집행하고 농업에서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농약이 농산물과 환경에 대한 오염을 예방하며 인체건강을 보호하고 농업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 표준은 농산물(식량, 목화, 채소, 과일나무, 담배, 찻잎, 목초 등을 포함)의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농약(BHC, 디프테렉스(Dipterex) 등)에 적용하며, 농작물에 사용하는 농약 종류, 조제형태, 일반 사용량 또는 희석배수, 최고사용량 또는 희석배수, 사용방법, 최고사용횟수, 안전간격기한, 실시설명 등을 규정한다.

3) GB2763-2005 : “식품 중 잔류농약허용기준(MRLs)”

이 표준은 국제식품법전위원회(CAC)의 “식품 중 잔류농약허용기준”(2001년)을 채택하여 각종 식품에서 34가지 단일 농약품목의 잔류농약허용기준을 대체하고 폐지시켰다. 이 표준에는 136가지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약을 포함하며 농약 등기, 사용을 허용하는 농약과 과일, 채소, 찻잎 등 농작물에 사용을 금지하는 독성이 강한 농약을

기본상 포함했다.

CAC표준의 부합비율을 기존의 14.6%에서 85% 이상을 높였고 136가지 농약의 총 479 가지 허용기준에서 83가지 농약의 274가지 허용기준은 CAC표준을 채택하거나 CAC표준과 일치하다. 중국에서 일부 식량, 채소 등 식품의 식용량이 비교적 높아 그 잔류농약 허용기준은 CAC표준보다 더 엄격하다.

〈GB2763-2005 : “식품 중 잔류농약허용기준(MRLs)”에서 일부 농약의 MRLs〉

농약품목	식품종류	MRLs/(mg/kg)
아닐라진(Anilazine)	토마토, 오이	10
카벤다짐(Carbendazim)	포도	3
타로닐(Chlorothalonil)	잎채소	5
크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잎채소	0.1
시안화물(Cyanide)	겉곡식	5
사이할로트린(Cyhalothrin)	과채류	0.5
디디티(DDT)	채소	0.05
디머토에이트(Dimethoate)	이과류 과일	0.1
디니코나졸(Diniconazole)	채두류	0.5
스미치온(Sumithion)	채소	0.5
펜치온(Fenthion)	과일	0.05
비에이치시(BHC)	채소	0.05
말라치온(Malathion)	잎채소	8
만코제브(Mancozeb)	과채류	1
메타미도포스(Methamidophos)	채소	0.05
메소밀(Methomyl)	양배추류	2



카. 세법 위반 시 제재조치

기업이 규정위반, 밀수행위 또는 밀수죄 등 부당행위로 아래와 같은 일정한 벌금 또는 처벌을 받게 된다.

1) 밀수죄

화물, 물품을 밀수하는 죄로서 국가 세금 환급을 사취할 경우, 대응되는 유기도형 처벌을 받는 외에 탈세액의 1배에서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2) 밀수행위

국가에서 수출입을 금지하는 화물을 밀수할 경우, 밀수화물 및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출해야 하는 허가증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탈세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국가에서 출입국을 제한하는 화물, 물품을 밀수할 경우, 밀수화물, 물품 및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밀수화물, 물품 등가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탈세했지만 허가증 관리를 도피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법에 의해 반드시 납세해야 하는 화물, 물품을 밀수할 경우, 밀수화물, 물품 및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규정위반

국가 수출입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국가에서 수출입을 금지하는 화물을 수출입할 경우, 반환하도록 명령하며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가 수출입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국가에 수출입을 제한하는 화물을 수출입하며 수출입화물의 수하인, 운송인이 세관에 신고할 때에 허가증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수출입 화물의 통관을 허용하지 않고 화물가치의 30%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수출입화물의 품명, 세척번호, 수량, 규격, 가격, 무역방식, 원산지, 출발지, 도착지, 최종목적지 또는 기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항목을 신고하지 않거나 진실하지 않을 경우, 그 영향결과에 따라 1,000위안 이상에서 신고가격의 50%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국가 세수에 영향을 줄 경우에 누락 납부한 세액의 30% 이상에서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세관 감독 관리의 규정을 위반한 기타 행위로 인해 세관에서 수출입화물에 대해 감독 관리를 할 수 없거나 중단할 경우, 화물가치의 5% 이상에서 3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에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관련 화물이 국가에서 수출입을 제한하여 허가증을 제출해야 할 경우, 또는 당사자는 규정한 기한 내에 허가증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 그 화물가치의 30% 이하 벌금을 별도로 부과한다. 세금을 누락 납부할 경우, 누락 납부한 세액의 1배 이하 벌금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중국 법률, 행정법규에서 보호하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화물을 수출입할 경우, 그 화물을 몰수하며 화물가치의 30%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타. 통관규정 변동사항

1) 세관총서 2010년 1호 공고(발표일 : 2010년 1월 4일)

“원산지가 인도네시아와 태국인 뉴클레오티드(polynucleotide)류 식품첨가제에 대해 임시 반덤핑조치를 실시할 데 관해”

중국 “반덤핑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무부는 2010년 1월 5일부터 원산지가 인도네시아와 태국인 뉴클레오티드(polynucleotide)류 식품첨가제에 대해 보증금형식을 채택하여 임시 반덤핑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며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 2010년 1월 5일부터 원산지가 인도네시아와 태국인 뉴클레오티드류 식품첨가제 (세척번호 : 29349990과 38249099이며, 뉴클레오티드류의 5'-AMP, 5'-CMP, 5'-UMP, ATP 등 핵산류 제품을 포함하지 않는다.)에 대해 현행 규정에 따라 수입



관세와 증치세를 징수하는 외에 공급업체별로 본 공고 첨부 2의 징수비율과 아래와 같은 계산식으로 반덤핑 보증금과 관련된 수입 증치세 보증금을 징수한다.

반덤핑 보증금과 수입 증치세 보증금의 합계 계산식 : 보증금 총액=(세관 과세가격 ×반덤핑 보증금 징수비율)×(1+수입 증치세 세율)

임시 반덤핑조치를 취하는 제품의 상세한 내용은 본 공고 첨부 1을 참조한다. 수입업체가 상기 제품의 수입을 신고할 경우, 상품코드는 반드시 29349990.01 또는 38249099.05로 한다.

- 수입 뉴클레오티드류 식품첨가제의 수입을 신고하는 수입업체는 반드시 세관에 원산지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원산지가 인도네시아 또는 태국일 경우, 생산업체 상업송장도 제출해야 한다.

뉴클레오티드류 식품첨가제의 수입을 신고할 때에 원산지증명을 제출할 수 없으며 검사결과 화물의 원산지가 인도네시아 또는 태국이 아니라는 것을 확정할 수도 없을 경우, 세관은 반드시 본 공고 첨부 2의 최고 반덤핑 보증금 징수비율로 보증금을 징수해야 한다.

화물의 원산지가 인도네시아 또는 태국이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지만 수입업체가 생산업체의 상업송장을 제공할 수 없으며 또한 기타 합법적이고 유효한 증빙서류로 생산업체를 확정할 수도 없을 경우, 세관은 본 공고 첨부 2의 관련된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기타 회사에 적용하는 반덤핑 보증금 징수비율로 보증금을 징수한다.

- 가공무역 보세로 수입하는 원산지가 인도네시아와 태국인 뉴클레오티드류 식품첨가제에 대해 어떻게 반덤핑 보증금을 징수할 것인가 등 문제에 관해 세관은 중국 세관총서 2001년 제9호 공고와 세관총서 제111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 징수한 반덤핑 보증금과 수입 증치세 보증금의 처리에 대해 세관총서는 최종판결 결과에 따라 별도로 공고한다.

첨부 1 : 상무부 2009년 제118호 공고

첨부 2 : 뉴클레오티드류 식품첨가제 반덤핑 보증금 징수비율표

2) 세관총서 2010년 8호 공고(발표일 : 2010년 1월 29일)

“2009년도 뉴질랜드산 수입제품 수량과 2010년도 수입물량을 발표할 데 관해”

“중국-뉴질랜드 FTA협정”과 세관총서 2008년 제91호 공고에 따라 중국은 뉴질랜드산 4개 종류 11개 세척번호의 농산물(약칭 : 관련 농산물)에 대해 특별보장조치 관리를 실시한다. 현재 2009년도 관련 농산물의 협정세율 수입수량과 2010년도 수입물량을 공고하며, 세관총서 2008년 제91호 공고는 계속 적용된다.

첨부 : 2009년도 관련 농산물 협정세율 수입수량과 2010년도 수입물량표

〈2009년도 관련 농산물 협정세율 수입수량과 2010년도 수입물량표〉

(단위 : 톤)

분류	세척번호	제품설명	2009년도 협정세율 수입수량			2010년도 협정세율 수입수량	
			수입 물량	누계 수량	In-transit 방식 수입수량	“협정”의 수입물량	실제 수입물량
1	04012000	1%<지방함량≤6% 비농축 또는 비가당의 우유, 크림	1365	1559,09	194,088	1433	1238,912
	04013000	지방함량>6% 비농축 또는 무가당의 우유, 크림					
2	04021000	지방함량≤1,5%, 고품질 우유, 크림	99750	102312	2561,837	104738	102176,163
	04022100	지방함량>1,5% 무가당의 고품질 우유, 크림					
	04022900	지방함량>1,5% 가당의 고품질 우유, 크림					
	04029100	무가당의 농축 우유, 크림(고형질 제외)					
3	04051000	버터	9870	11029,1	1159,082	10364	9204,918
	04059000	기타 우유에서 추출한 지방, 유지					
4	04061000	신선한 치즈(유장 또는 응유 포함)	3780	3737,24	0	3969	3969
	04063000	가공 치즈(파우더로 만들거나 갈지 않은 것)					
	04069000	기타 치즈					

설명 : 1. “협정”은 “중국-뉴질랜드 FTA협정”을 가리킨다.

2. 2009년도 In-transit방식 수입수량=2009년도 협정세율 누계 수입수량-2009년도 수입물량

3. 2010년도 실제 수입물량=2010년도 “협정”에서 규정한 수입물량-2009년도 In-transit방식 수입수량



3) 세관총서 2010년 12호 공고(발표일 : 2010년 2월 8일)

“원산지가 미국인 닭고기제품(Broiler Products or Chicken Products)에 대해 임시 반덤핑조치를 실시할 데 관해”

“반덤핑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무부는 2010년 2월 13일부터 원산지가 미국인 닭고기제품에 대해 임시 반덤핑조치를 실시한다고 결정하며, 현재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 2010년 2월 13일부터 원산지가 미국인 닭고기제품(세칙번호 : 02071100, 02071200, 02071311, 02071319, 02071321, 02071329, 02071411, 02071419, 02071421, 02071422, 02071429, 05040021)에 대해 세관은 현행 규정에 따라 수입 관세와 증치세를 징수하는 외에 공급업체별로 본 공고 첨부 2의 징수비율과 아래와 같은 계산식으로 반덤핑 보증금과 관련된 수입 증치세 보증금을 징수한다.

반덤핑 보증금과 수입 증치세 보증금의 합계 계산식 : 보증금 총액=(세관 과세가격× 반덤핑 보증금 징수비율)×(1+수입 증치세 세율)

임시 반덤핑조치를 취하는 제품의 상세한 내용은 본 공고 첨부 1을 참조한다.

- 닭고기제품의 수입을 신고하는 수입업체는 반드시 세관에 원산지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원산지가 미국일 경우, 생산업체 상업송장도 제출해야 한다.

닭고기제품의 수입을 신고할 때에 원산지증명을 제출할 수 없으며 검사결과 화물의 원산지가 미국이 아니라는 것을 확정할 수도 없을 경우, 세관은 반드시 본 공고 첨부 2의 최고 반덤핑 보증금 징수비율로 보증금을 징수해야 한다.

화물의 원산지가 미국이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지만 수입업체가 생산업체의 상업송장을 제공할 수 없으며 또한 기타 합법적이고 유효한 증빙서류로 생산업체를 확정할 수도 없을 경우, 세관은 본 공고 첨부 2의 기타 미국회사에 적용하는 반덤핑 보증금 징수비율로 보증금을 징수한다.

- 가공무역 보세로 수입하는 원산지가 미국인 닭고기제품에 대해 어떻게 반덤핑 보

증금을 징수할 것인가 등 문제에 관해 세관은 중국 세관총서 2001년 제9호 공고와 세관총서 제111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 징수한 반덤핑 보증금과 수입 증치세 보증금의 처리에 대해 세관총서는 최종판결 결과에 따라 별도로 공고한다.

첨부1 : 상무부 2010년 제8호 공고

첨부2 : 닭고기제품 반덤핑 보증금 징수비율표

4) 세관총서 2010년 제14호 공고(발표일 : 2010년 2월 26일)

“중국-페루 FTA협정을 발표할 데 관해”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중국-페루 FTA협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정식 실시하게 되며, 현재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 2010년 3월 1일부터 원산지가 페루인 6809개 세목의 상품에 대해 본 공고의 협정 세율(첨부 참조)을 적용한다.
- 수입업체가 원산지가 페루이며 또한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화물의 수입을 신고할 경우, 반드시 세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통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우대무역 협정코드”는 반드시 “12”로 작성해야 한다.
- 수입업체가 원산지가 페루이며 또한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화물의 수입을 신고할 경우, 반드시 “세관의 ‘중국-페루 FTA협정’ 아래의 수출입화물 원산지 관리방법”(세관총서 제186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세관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본 공고 첨부에서 간단한 상품 명칭을 사용했으며 그 정확한 명칭은 “중국수출입 세칙”에서의 화물 명칭설명을 기준으로 한다.

첨부 : 중국-페루 FTA협정 세목세율표



5) 세관총서 2010년 제17호 공고(발표일 : 2010년 3월 15일)

“수입산 포도주 관련 사항을 규범화할 데 관해”

포도주(2010년 ‘수출입세칙’ 세칙번호 22042100) 수입신고의 규범화 및 기업 통관과 세관 관리의 편리를 위해 “세관의 수출입화물 통관신고 관리규정”(세관총서 제103호 법령)과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재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 수입화물 수하인 및 그 대리인은 반드시 “세관의 수출입상품 규범화 신고목록”의 요구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실제 수입산 포도주의 라벨에 따라 “상품명칭”란에 품목, 브랜드(중문, 외국어)를 기입해야 하고, “규격모델”란에 포도주의 용기 용적, 연도와 생산지를 기입해야 한다. 만약 포도주 라벨에 등급을 표기했을 경우, 반드시 관련된 란에 기입해야 한다.
- 수입화물 수하인 및 그 대리인이 수입을 신고할 경우, 현재 세관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외에 반드시 세관에 아래와 같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 ※ 내용이 구비되고 문자가 뚜렷한 수입산 포도주 라벨(정면 라벨과 뒷면 라벨을 포함)의 컬러 사진 또는 전자 사진(300만 화소 이상)의 컬러 프린터지
 - ※ 생산업체 상업송장 : 경외 무역업체를 통해 수입하지만 생산업체의 상업송장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수입화물 수하인 및 그 대리인이 수입을 신고할 경우에 경외 무역업체의 상업송장을 제출해야 하며, 상업송장에 반드시 생산업체 명칭과 생산업체 상업송장 번호를 포함해야 한다.
-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세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통관신고서의 신고내용과 포도주 상표내용이 서로 부합되지 않을 경우, 세관은 통관신고 거짓으로 처리한다.
- 본 공고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6) 세관총서 2010년 제23호 공고(발표일 : 2010년 3월 22일)

“원산지가 뉴질랜드인 일부 미농축 우유, 크림에 대해 특별 보장조치를 실시할 데 관해”

“중국-뉴질랜드 FTA협정”(약칭 : 협정)에 따라 중국은 원산지가 뉴질랜드인 11개 세척

번호의 농산물에 대해 특별 보장조치를 실시했다. 3월 19일, 세관총서는 웹사이트(www.customs.gov.cn)에 특별 보장조치 관리를 실시하는 지방함량이 1% 이상인 미농축 우유, 크림(세척번호 : 04012000, 04013000)의 수입수량이 올해 수입물량에 접근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4월 8일까지 상기 농산물의 신고수량은 1,509.5톤에 도달하여 올해 1,433톤의 특별 보장조치 수입수량을 초과했다. 그러므로 4월 9일부터 “협정” 아래의 수입산 원산지가 뉴질랜드인 상기 농산물에 대해 최혜국 세율로 수입 관세를 징수한다. in-transit 농산물의 세율 적용과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해 세관총서 2008년 제91호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7) 세관총서 2010년 제25호 공고(발표일 : 2010년 4월 12일)

“원산지가 뉴질랜드인 고품질과 비고형질 농축 우유, 크림에 대해 특별 보장조치를 실시할 데 관해”

“중국-뉴질랜드 FTA협정”(약칭 : 협정)에 따라 중국은 원산지가 뉴질랜드인 11개 세척번호의 농산물에 대해 특별 보장조치를 실시했다. 4월 8일, 세관총서는 웹사이트(www.customs.gov.cn)에 특별 보장조치 관리를 실시하는 고품질과 비고형질 농축 우유, 크림(세척번호 : 04021000, 04022100, 04022900, 04029100)의 수입수량이 올해 수입물량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4월 16일까지 상기 농산물의 신고수량은 104,747.2톤에 도달하여 올해 104,738톤의 특별 보장조치 수입수량을 초과했다. 그러므로 4월 17일부터 “협정” 아래의 수입산 원산지가 뉴질랜드인 상기 농산물에 대해 최혜국 세율로 수입 관세를 징수한다. in-transit 농산물의 세율 적용과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해 세관총서 2008년 제91호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8) 세관총서 2010년 제33호 공고(발표일 : 2010.5.25)

수출입무역 질서를 규범화하고 수출입화물 샘플과 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 수출입화물 샘플은 수출입 주문의 참고로 하는 화물 샘플을 가리키며, 수출입 광고물은 수출입에서 관련 상품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 홍보물을 가리킨다.



- 수출입화물 샘플과 광고물은 무료로 제공하든지를 막론하고 모두 세관에 등기한 수출입 수하인과 발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세관은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비준해야 한다.
- 수출입화물 샘플과 광고물이 국가에서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수출입에 대해 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상품에 속할 경우,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상업가치가 없는 화물 샘플과 광고물을 수출입할 경우 관세와 세관에서 징수하는 수입 관련 세금을 면제하며, 기타 수출입화물 샘플과 광고물에 대해 일률적으로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
- 본 공고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관에서 수출입화물 샘플, 광고물에 대한 감독관리방법”, “세관에서 수출입화물 샘플, 광고물에 대한 감독관리방법” 제7조를 수정할 데 관한 통지”를 동시에 폐지한다.

9) 세관총서 2010년 제34호 공고(발표일 : 2010.5.31)

“중국-홍콩 CEPA”와 “중국-마카오 CEPA” 및 그 관련 보충협약에 의해 세관총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새로 추가되는 홍콩 0% 관세 화물의 원산지 표준표”와 “2010년 7월 1일부터 새로 추가되는 마카오 0% 관세 화물의 원산지 표준표”를 발표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기 표준표는 간소화한 화물 명칭을 사용했으며 그 화물 범위는 2010년 “수출입세칙”에서 대응되는 세칙번호의 화물과 일치하다.

10)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에티오피아 등 32개 최빈국(LDCs)의 일부 상품에 대해 0% 관세를 적용할 데 관한 통지”(발표일 : 2010.6.1)

중국과 수교한 최빈국(LDCs)에 대한 관세면제대우조치 1단계 실시방안은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통과하였고 국무원의 비준을 받았다. 2010년 7월 1일부터 원산지가 에티오피아 등 32개 문건 교환수속을 밟은 최빈국(LDCs)(첨부1를 참조)

의 일부 상품(첨부2를 참조)에 대해 0% 관세를 적용한다.

첨부1 : 문건 교환수속을 밟은 최빈국(LDCs) 리스트

첨부2 : 최빈국(LDCs)에 대해 0% 관세를 적용하는 상품 리스트

11) 국무원관세세척위원회 “원산지가 적도기니아인 일부 상품에 대해 0% 관세를 적용할 데 관한 통지”(발표일 : 2010.6.9)

중국과 수교한 최빈국(LDCs)에 대한 관세면제대우조치 1단계 실시방안은 국무원관세세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통과하였고 국무원의 비준을 받았다. 2010년 7월 1일부터 원산지가 적도기니아인 일부 상품에 대해 0% 관세를 적용한다. 0% 관세의 상품 리스트는 “국무원관세세척위원회에서 에티오피아 등 32개 최빈국(LDCs)의 일부 상품에 대해 0% 관세를 적용할 데 관한 통지” 첨부2를 참조한다.

첨부 : 최빈국(LDCs)에 대해 0% 관세를 적용하는 상품 리스트

12) 세관총서 2010년 제36호 공고(발표일 : 2010.6.11)

“중국-뉴질랜드 FTA”에 의해 중국은 원산지가 뉴질랜드인 11개 세척번호의 농산물에 대해 특별보장조치를 실시하였다. 세관총서는 5월 14일에 대외 홈페이지(www.customs.gov.cn)를 통해 보장조치 관리를 진행한 버터와 기타 우유에서 추출한 지방, 유지(세척번호 : 04051000, 04059000)의 수입수량이 올해 발동수준(Trigger level)의 수량에 접근한 상황을 공고했다.

올해 6월 12일까지 상기 수입 농산물의 신고수량은 10,463.9톤에 도달하여 올해 10,364톤의 특별보장조치 발동표준을 초과했다. 그러므로 6월 13일부터 “중국-뉴질랜드 FTA” 아래에서 수입하는 원산지가 뉴질랜드인 상기 농산물에 대해 최혜국 세율로 수입 관세를 징수한다. 수입 중에 있는 농산물의 세율 적용과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해 세관총서의 2008년 제91호 공고에 따라 집행한다.



13)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일부 상품의 수출관세 환급을 취소할 데 관한 통지”

(발표일 : 2010.6.22)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2010년 7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은 상품의 수출관세 환급을 취소한다.

1. 일부 강재, 2. 일부 유색금속 가공재료, 3. 은색의 금속 안료, 4. 알코올, 옥수수 전분, 5. 일부 농약, 의약, 화학공업제품, 6. 일부 플라스틱 및 그 제품, 고무 및 그 제품, 유리 및 그 제품. 수출관세 환급을 취소한 구체적 상품 명칭과 상품코드는 첨부를 참조한다.

구체적 시행시간은 세관에서 “수출화물 통관신고서(수출관세 환급전용)”에 표기한 수출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첨부 : 일부 수출관세 환급을 취소한 상품 리스트

14) 세관총서 제192호 법령(발표일 : 2010.6.28)

“중국세관 최빈국 특별우대 관세대우 수입화물 원산지 관리방법”은 2010년 6월 28일에 발표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본 방법은 중국과 수교한 최빈국(아래 약칭 : 수혜국)으로부터 수입한 특별우대 관세대우를 받는 화물의 원산지 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 : 수혜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화물이 아래와 같은 조건 중의 하나에 부합될 경우에 수혜국산 화물에 대해 “중국수출입세칙”에서 대응되는 우대세율을 적용한다.

- ① 완전히 수혜국에서 취득하거나 생산할 경우
- ② 완전히 수혜국에서 취득하거나 생산하지 않았지만 그 수혜국에서 마지막으로 실질성 변경을 진행할 경우

본 조의 제2항에서의 “실질성 변경”은 본 방법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 규정한 표준을 적용하여 확정한다.

제5조 : 수혜국 경내에서 완전히 취득하거나 생산하지 않았지만 “중국과 수교한 최빈국 제품특정원산지규칙”에 부합될 경우, 그 수혜국산 화물로 간주해야 한다. “중국과 수교한 최빈국 제품특정원산지규칙”은 본 방법의 구성부분으로서 세관총서에서 별도로 제정하여 발표한다.

제6조 : “중국과 수교한 최빈국 제품특정원산지규칙”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 수혜국 경내에서 일부 또는 완전히 비수혜국산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화물이 “세칙”에서의 4자리 세칙분류가 변경될 경우에 원산지가 수혜국인 화물로 간주해야 한다.

제7조 : “중국과 수교한 최빈국 제품특정원산지규칙”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 수혜국 경내에서 일부 또는 완전히 비수혜국산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화물의 부가가치부분이 화물 FOB가격의 40% 보다 낮지 않을 경우, 그 수혜국산 화물로 간주해야 한다.

$$\text{부가가치부분} = (\text{화물 FOB가격} - \text{비원산 재료 가격}) / \text{화물 FOB가격} \times 100\% \geq 40\%$$

제11조 : 화물과 같이 수입을 신고하며 “세칙”에서 그 화물과 같이 분류된 포장, 포장재료와 용기의 원산지 및 정상적 부품, 비품, 공구 및 설명재료의 원산지는 화물 원산지의 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14조 : 화물 수입을 신고할 때에 수입화물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반드시 세관의 신고규정에 따라 “중국세관 수입화물 통관신고서”를 작성하며 적용할 우대세율을 설명하고 동시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① 수출 수혜국 정부에서 지정한 원산지 발급기구에서 발급하며 그 수혜국 세관이 수출할 때에 날인한 유효한 원산지증서 원본과 제2 사본
유효한 원산지증서 원본과 제2 사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중국세관 수출입화물우대원산지관리규정”의 규정에 따라 그 수입화물이 원산지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 세관에 보충신고를 해야 한다.
- ② 화물의 상업송장 원본
- ③ 화물 운송증빙서류



제15조 : 수입화물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제14조 규정에 따라 그 수입화물이 수혜국 원산지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 세관에 보충신고를 제출할 경우, 세관은 수입화물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고에 의해 법에 따라 그 화물에 적용하는 최혜국 세율, 일반 세율 또는 기타 세율에 따라 등가 보증금을 받은 후 화물을 통관시킬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수입수속을 밟고 세관에서 통계한다.

제18조 : 원산지증서는 발급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유효하다.

제24조 : 본 방법을 위반하여 밀수행위, 세관 감독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기타 “세관법”을 위반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세관은 “세관법”과 “세관행정처벌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5) 세관총서 2010년 제40호 공고(발표일 : 2010.6.29)

중국과 수교한 최빈국(LDCs)에 대한 관세면제대우조치 1단계 실시방안은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2010년 7월 1일부터 원산지가 에티오피아 등 33개 문건 교환수속을 밟은 최빈국(LDCs)의 일부 상품에 대해 0% 관세를 적용한다.

○ 2010년 7월 1일부터 원산지가 에티오피아 등 33개 최빈국(LDCs)의 4,762개 세목 상품에 대해 본 공고의 특혜세율을 적용한다. 그중에서 방글라데시는 관세면제대우조치 1단계 실시방안과 “아태무역협정” 아래의 특혜조치(“우대무역협정코드”는 반드시 01로 작성)를 동시에 적용하며 네팔 등 중국의 관련 특혜조치를 받는 국가 외에 기타 31개 국가는 기존 관련 특혜조치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

원산지가 앙골라, 카보베르데, 니제르, 세네갈, 소말리아, 몰디브,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9개 국가의 관련 상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면제대우조치 1단계 실시방안을 임시 실시하지 않는다. 단, 상기 9개 국가에 대해 이미 실시한 관련 특혜조치는 계속 유효하다. 즉, 앙골라 등 5개 아프리카 국가의 관련 상품에 대해 기존 “아프리카 31개 국가” 특혜조치(그 “우대무역협정코드”는 반드시 05로 작성)를 계속 실시하고, 몰디브

의 관련 상품에 대해 기존 “예멘 6개 국가” 특혜조치(그 “우대무역협정코드”는 반드시 09로 작성)를 계속 실시하며, 캄보디아 등 3개 “중국-동남아 FTA” 아래 국가의 관련 상품에 대해 “중국-동남아 FTA” 아래의 특혜조치(그 “우대무역협정코드”는 반드시 02로 작성)를 계속 실시하고, 라오스의 관련 상품에 대해 계속 “아태무역협정” 아래의 특혜조치를 실시한다. 상기 “아프리카 31개 국가”, “예멘 6개 국가”, “중국-동남아 FTA” 및 “아태무역협정” 아래의 특혜세율 상품 리스트는 세관총서 공고 2009년 제88호를 참조한다.

- 수입 경영업체가 원산지가 첨부1의 국가이며 또한 첨부2의 특혜세율을 받는 화물의 수입을 신고할 경우, 반드시 세관 관련 규정에 따라 통관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우대무역협정코드”는 반드시 “13”으로 작성해야 한다.
- 수입 경영업체가 원산지가 첨부1의 국가이며 또한 첨부2의 특혜세율을 받는 화물의 수입을 신고할 경우, 반드시 “중국-최빈국(LDCs) 특별우대 관세대우 수입화물 원산지 관리방법”(세관총서 법령 제192호)의 규정에 따라 세관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 경영업체가 원산지가 앙골라, 카보베르데, 니제르, 세네갈, 소말리아, 몰디브 등 6개 국가이며 또한 특혜세율을 적용하는 화물의 수입을 신고할 경우, 반드시 “특별우대 관세대우 수입화물 원산지 관리방법”(세관총서 법령 제149호)의 규정에 따라 세관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 경영업체가 원산지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3개 국가이며 또한 특혜세율을 적용하는 화물의 수입을 신고할 경우, 반드시 “중국 세관이 ‘중국과 동남아 전반적 경제 합작 협의서’ 아래의 ‘중국-동남아 FTA’의 규정을 집행할 데 관한 규정”(세관총서 법령 제108호)의 규정에 따라 세관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 경영업체가 원산지가 라오스, 방글라데시 등 2개 국가이며 또한 “아태무역협정”아래에서 특혜세율을 적용하는 화물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세관이 ‘아태무역협정’ 아래에서 수출입화물 원산지 관리방법”(세관총서 법령 제177호)의 규정에 따라 세관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본 공고의 첨부에 간단한 상품 명칭을 그 정확한 명칭은 “수출입세칙”에서의 상품명 설명을 기준으로 한다.

본 공고의 내용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

16) 세관총서 2010년 제42호 공고(발표일 : 2010.6.29)

중국과 수교한 최빈국(LDCs)에 대한 관세면제대우조치 1단계 실시방안과 “특별우대 관세대우 수입화물 원산지 관리방법”(세관총서 법령 제149호)의 규정에 의해 그 방법을 계속 적용하는 수혜국 명단을 아래와 같이 조절하기로 결정한다.

앙골라, 카보베르데, 니제르, 소말리아, 세네갈, 몰디브

17) 세관총서 2010년 제43호 공고(발표일 : 2010.7.2)

출입국 개인 우송물에 대한 감독 관리를 규범화하고 수취인과 발신인의 합리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 개인이 우송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세관은 법에 따라 수입관세를 징수하지만 수입관세 세액이 50위안(50위안을 포함) 이하일 경우에 수입관세를 면제한다.
- 개인이 홍콩, 마카오, 대만에 우송하거나 홍콩, 마카오, 대만으로부터 우송받은 물품의 매번 한도액이 인민폐 800위안이며, 기타 국가와 지역에 우송하거나 기타 국가와 지역으로부터 우송받은 물품의 매번 한도액은 인민폐 1,000위안이다.
- 개인이 우송하는 수출입 물품이 규정한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반품수속을 밟거나 화물규정에 따라 통관수속을 밟아야 한다. 그러나 소포에 물품이 하나만 있고 또한 분할할 수 없을 경우에 한도액을 초과하지만 세관의 심사를 거쳐 개인 자가용이 확실할 경우에 개인물품 규정에 따라 통관수속을 밟을 수 있다.
- 수출입 상업성 우편물을 우송할 경우, 반드시 화물규정에 따라 통관수속을 밟아야 한다.

- 본 공고 내용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세관총서, 출입국 우편물에서 개인물품의 한도액과 면세액을 조절할 데 관한 통지”(1994년 774호)는 동시에 폐지된다.

18) 세관총서 2010년 제44호 공고(발표일 : 2010.7.9)

상해세계박람회사무협조국은 2010년 상해세계박람회의 문자마크인 “东方之冠(동방지관)”을 세관총서에 세관보호 등록신청을 제출하여 비준을 하며, 등록상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 권리인 : 상해세계박람회사무협조국
- 권리명칭 : 东方之冠(동방지관)

비준일로부터 상기 상해세계박람회 마크의 독점권을 침해하는 화물을 수출입할 경우, 세관은 “세계박람회마크보호조례” 및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조사처리한다.

19) 세관총서 2010년 제54호 공고 (발표일 : 2010.8.19)

입국 여객이 휴대한 수하물 물품의 검수표준과 관련된 사항

- 입국 주민 여객이 휴대한 경외에서 취득한 개인용 수입물품의 가치가 5,000위안 미만(5,000위안을 포함)일 경우, 입국 비주민 여객이 휴대한 중국 경내에 남길 개인용 수입물품의 가치가 2,000위안 미만(2,000위안을 포함)일 경우, 세관은 관세를 면제함.
- 입국 주민 여객이 휴대한 경외에서 취득한 개인용 수입물품의 가치가 5,000위안 이상이며 세관에서 개인용 수입물품임을 확인할 경우, 입국 비주민 여객이 휴대한 중국 경내에 남길 개인용 수입물품의 가치가 2,000위안 이상일 경우, 세관은 초과한 부분의 개인용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징수하며 분할이 가능하지 않은 단일 물품에 대해 전액으로 관세를 징수함.
-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왕래한 여객의 수하물 물품에 대한 면세 규정, 검수표준 등 사항은 별도로 규정함.



20) 세관총서 2010년 제56호 공고(발표일 : 2010.8.27)

분류통관 개혁을 진행할 데 관해

- 수출화물의 분류통관 개혁을 전국 세관에서 진행하고, 수입화물의 분류통관 개혁은 북경, 천진, 대련, 상해, 남경, 항주, Ningbo, 복주, 하문, 청도, 광주, 심천, 공북, 황포, 강문 세관에서 시범 진행함
- 적용범위 : 세관의 통관업무시스템(H2000)을 통해 통관을 신고한 수출입화물은 모두 분류통관을 적용함
- 허가증이 필요한 수출입화물에 대해 “사후 서류제출”의 통관방식이 적용되지 않음.
- “사후 서류제출”의 통관방식을 적용하는 업체는 반드시 화물 통관일로부터 10일 내에 세관에서 서류 확인 등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함
- 분류통관의 수출입화물 통관 신청서류와 관련 증빙서류에 대해 시범적으로 기업에서 임시 보관하며,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공고함

21) 세관총서 2010년 제58호 공고(발표일 : 2010.8.27)

원산지가 미국인 수입 닭고기제품에 대해 반보조세를 징수할 데 관해

“반보조조례”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관세세척위원회는 2010년 8월 30일부터 원산지가 미국인 닭고기제품(Broiler Products or Chicken Products)에 대해 5년간 반보조세를 징수한다고 결정한다. 상무부는 이에 따라 2010년 제52호 공고를 발표했다. 현재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 2010년 8월 30일부터 원산지가 미국인 닭고기제품(세척번호 : 02071100, 02071200, 02071311, 02071319, 02071321, 02071329, 02071411, 02071419, 02071421, 02071422, 02071429, 05040021)에 대해 현행 규정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외에 서로 다른 수입상에 따라 본 공고 첨부 2의 적용세율과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의해 반보조세 및 관련된 수입 증치세를 징수한다.

반보조세=과세가격×반보조세 세율

수입 증치세=(과세가격+관세+반보조세)×수입 증치세 세율

반보조세를 징수해야 하는 제품의 상세한 내용은 본 공고의 첨부1을 참조한다.

- 닭고기제품의 수입을 신고하는 수입업체는 반드시 세관에 원산지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원산지가 미국일 경우, 생산업체의 상업송장도 제출해야 한다. 닭고기제품의 수입을 신고할 때에 원산지 증명을 제출할 수 없으며 검사결과가 화물의 원산지가 미국이 아니라는 것을 확정할 수도 없을 경우, 세관은 반드시 본 공고 첨부2의 최고 반보조세 세율로 반보조세를 징수해야 한다. 화물의 원산지가 미국이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지만 수입업체가 생산업체의 상업송장을 제공할 수 없으며 또한 기타 합법적이고 유효한 증빙서류를 통해 생산업체를 확정할 수도 없을 경우, 세관은 본 공고 첨부 2의 관련된 국가에서의 기타 회사에 적용하는 반보조세 세율로 반보조세를 징수한다.
- 가공무역 보세로 수입하는 원산지가 미국인 닭고기제품에 대해 반보조세를 징수하는 등 문제에 관해, 세관은 세관총서 제11호 법령과 세관총서 2001년 제9호 공고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 임시로 반보조 조치를 시행한 후(상세한 내용은 세관총서 2010년 제29호 공고를 참조) 수입하는 원산지가 미국인 닭고기제품이 납부한 반보조세 보증금에 대해, 세관은 본 공고에서 규정한 반보조세를 징수하는 상품범위와 반보조세 세율에 따라 징수하며 반보조세로 전환한다. 동시에 납부한 수입 증치세 보증금은 수입 증치세로 전환한다. 상기 보증금이 본 공고에서 규정한 세율로 계산한 반보조세 및 관련된 수입 증치세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수입업체는 2010년 8월 30일부터 6개월 내에 징수지역 세관에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충징수하지 않는다.

첨부1 : 상무부 2010년 제52호 공고

첨부2 : 닭고기제품 반보조세 세율표

22) 세관총서 2010년 제59호 공고(발표일 : 2010.8.30)

통관 신청 서류의 업체 임시저장을 시범으로 진행할 데 관해

- 기업에서 임시 보관하는 통관 신청서류는 수출입화물의 발송인/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분류통관 업무모델에 따라 세관에서 현장 제출을 면제하며 기업에서 임시 보관하는 허가증 및 관세 징수, 관세 감면과 연관되지 않으며 또한 확인할 필요가 없는 통관 신청서류 및 그 첨부 증빙서류를 가리킨다.

- 기업에서 임시 보관하는 통관 신청서류는 수출입화물의 발송인/수하인이 “자체 임시 보관”하는 통관 신청서류와 통관 신고업체가 “집중 대리 보관”하는 통관 신청서류로 분류한다.
- 수출 통관 신청 서류의 기업 자체 임시 보관과 집중 대리 보관은 전국 세관에서 시범으로 진행하며, 수입 통관 신청 서류의 기업 자체 임시 보관과 집중 대리 보관은 상해, 남경, 청도, 황포 세관에서 시범으로 진행한다.

23) 국무원 제581호 법령(발표일 : 2010.9.14) 세관사무 담보조례

□ 세관사무 담보의 적용범위

- ① 사전 통관을 신고한 화물에 대한 담보
- ② 특정 세관업무의 처리에 대한 담보
- ③ 세관 행정관리과정에서의 담보

□ 당사자가 제공하는 담보금액

- ① 사전 통관을 신고한 화물의 담보금액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최고 세금을 초과하지 못함
- ② 특정 세관업무의 처리에 대한 담보금액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최고 세금 또는 세관총서에서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③ 납세화물 및 기타 재산을 이전하거나 은닉하는 기미가 있어 제공해야하는 담보금액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최고 세금을 초과하지 못함
- ④ 화물, 물품, 운송공구의 압류, 밀봉을 면제하거나 해제하기 위해 제공하는 담보금액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최고 세금을 초과하지 못함
- ⑤ 벌금, 불법소득 또는 법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화물, 물품, 밀수 운송공구의 등가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수출하기 위해 제공하는 담보금액은 벌금, 불법소득

또는 법에 따라 추정해야 하는 화물, 물품, 밀수 운송공구의 등가 대금과 같음

□ 시행일 : 2011년 1월 1일

24) 세관총서 2010년 제62호(발표일 : 2010.9.20)

2010년 버전 “세칙” 본국 자목록 주석을 발표할 데 관한 공고

수출입화물 수하인 및 그 대리인이 “수출입세칙”에 따라 정확히 신고하며 편리한 화물 통관을 위해, 세관총서는 잇따라 “세칙” 목록에 따라 본국 자목록 주석을 제정하여 발표했다.

“세칙” 전환, 관련 표준의 업데이트 및 기술발전 등 상황에 따라 세관총서는 이미 공고한 본국 자목록 주석을 2010년 버전으로 전환하며 동시에 일부 “세칙” 본국 자목록 주석을 조절했으며 현재 공고하여 시행한다. 상기 주석은 세관과 관련 정부부서 및 수출입무역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업체 또는 개인이 상품분류를 진행하는 법률적 근거 중의 하나이다.

본 공고 내용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집행한다. 세관총서 2003년 제35호, 2005년 제30호, 2006년 제51호, 2009년 제86호 공고는 동시에 폐지된다.

첨부 : 세관수출입세칙-통계목록 본국 자목록 주석

25) 세관총서 2010년 제63호(발표일 : 2010.9.21)

인도네시아산과 태국산 뉴클레오티드 식품첨가제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징수할 데 관한 공고

○ 2010년 9월 24일부터 인도네시아산과 태국산 뉴클레오티드 식품첨가제(세칙 번호 : 29349990과 38249099, 5'-AMP, 5'-CMP, 5'-UMP, ATP 등 뉴클레오티드 제품을 포함하지 않음)에 대해 현행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를 징수하는 외에 공급업체에 따라 본 공고 첨부 2의 적용세율과 아래 계산식에 따라 반덤핑관세와 관련된 수입증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 반덤핑관세=과세가격×반덤핑관세 세율
- 수입증치세=(과세가격+관세+반덤핑관세)×수입증치세 세율

반덤핑 조치를 실시하는 제품의 상세한 정보는 본 공고의 첨부 1을 참조한다. 수입업체가 상기 제품의 수입을 신고할 때에 상품코드는 반드시 29349990.01 또는 38249099.05로 신고해야 한다.

- 뉴클레오티드 식품첨가제의 수입을 신고한 수입업체는 반드시 세관에 원산지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원산지가 인도네시아 또는 태국일 경우에 생산업체 영수증도 제출해야 한다. 뉴클레오티드 식품첨가제의 수입을 신고할 때에 원산지증명을 제출할 수 없으며 검사 결과도 화물 원산지가 인도네시아 또는 태국이 아니라는 것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 세관은 본 공고 첨부 2의 최고 반덤핑 세율에 따라 반덤핑관세를 징수한다. 화물 원산지가 인도네시아 또는 태국이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지만 수입업체가 생산업체 영수증을 제출할 수 없으며 기타 합법적이고 유효한 증서를 통해서도 생산업체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 세관은 그 제품과 연관되는 반덤핑 사건에서 적용한 최고 반덤핑관세 세율에 따라 반덤핑관세를 징수한다.
- 가공무역 보세방식으로 수입하는 인도네시아산과 태국산 뉴클레오티드 식품첨가제에 대한 반덤핑관세의 징수 등 문제는 세관에서 세관총서 제11호 법령과 세관총서 2001년 제9호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 임시 반덤핑 조치(세관총서 2010년 제1호 공고를 참조)를 시행한 후에 수입한 인도네시아산과 태국산 뉴클레오티드 식품첨가제가 이미 납부한 반덤핑 보증금은 본 공고에서 규정한 반덤핑관세를 징수하는 상품범위와 반덤핑관세 세율에 따라 계산하여 반덤핑관세로 전환하며, 동시에 납부한 수입 부가세 보증금도 수입 부가세로 전환한다. 상기 보증금이 본 공고에서 규정한 세율에 따라 계산한 반덤핑관세와 수입 부가세를 초과한 부분은 수입업체가 2010년 9월 24일부터 6개월 내에 징수지역 세관에 반환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다시 보충징수하지 않는다.

첨부1 : 상무부 공고(2010년 제56호)

첨부2 : 뉴클레오티드 식품첨가제 반덤핑관세 세율

26) 세관총서 2010년 제64호(발표일 : 2010.9.26)

미국산 닭고기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징수할 데 관해 공고

“반덤핑조례”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관세세척위원회는 2010년 9월 27일부터 미국산 닭고기제품(Broiler Products or Chicken Products)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징수하며 기한은 5년으로 한다고 결정한다. 상무부는 이에 따라 2010년 제51호 공고(첨부1를 참조)를 발표했다. 현재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 2010년 9월 27일부터 미국산 닭고기제품(Broiler Products or Chicken Products) (세척번호 : 02071100, 02071200, 02071311, 02071319, 02071321, 02071329, 02071411, 02071419, 02071421, 02071422, 02071429, 05040021)에 대해 현행 규정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외에 수입업체에 따라 본 공고 첨부 2의 적용세율과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의해 반덤핑관세와 관련된 수입 부가세를 징수한다.

- 반덤핑관세=과세가격×반덤핑관세 세율
- 수입증치세=(과세가격+관세+반덤핑관세)×수입증치세 세율

반덤핑 조치를 실시하는 제품의 상세한 정보는 본 공고 첨부1을 참조한다.

○ 닭고기제품(Broiler Products or Chicken Products)의 수입을 신고하는 수입업체는 반드시 세관에 원산지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원산지가 미국일 경우에 생산업체의 영수증도 제출해야 한다. 닭고기제품(Broiler Products or Chicken Products)의 수입을 신고할 때에 원산지증명을 제출할 수 없으며 검사결과가 화물 원산지가 미국이 아니라는 것을 확정할 수도 없을 경우에 세관은 반드시 본 공고 첨부2의 최고 반덤핑관세 세율에 따라 반덤핑관세를 징수해야 한다. 화물 원산지가 미국이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지만 수입업체가 생산업체의 영수증을 제출할 수 없으며 또한 기타 합법적이고 유효한 증빙서류를 통해 생산업체를 확정할 수도 없을 경우에 세관은 본 공고 첨부2의 기타 미국회사에 적용하는 반덤핑관세 세율에 따라 반덤핑관세를 징수한다.

○ 가공무역 보세방식으로 수입하는 미국산 닭고기제품(Broiler Products or Chicken Products)에 대한 반덤핑관세의 징수 등 문제는 세관에서 세관총서 제111호 법령과



세관총서 2001년 제9호 공고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 임시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한 후(상세한 내용은 세관총서 2010년 제12호 공고를 참조) 수입하는 미국산 닭고기제품(Broiler Products or Chicken Products)이 이미 납부한 반덤핑 보증금에 대해, 본 공고에서 규정한 반덤핑관세를 징수하는 상품범위와 반덤핑관세 세율에 따라 계산하여 반보조세로 전환한다. 동시에 납부한 수입증치세 보증금은 수입증치세로 전환한다. 상기 보증금이 본 공고에서 규정한 세율에 따라 계산한 반덤핑관세와 관련된 수입증치세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수입업체는 2010년 9월 27일부터 6개월 내에 징수지역 세관에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충징수하지 않는다.

첨부1 : 상무부 2010년 제51호 공고

첨부2 : 닭고기제품(Broiler Products or Chicken Products) 반덤핑관세 세율표

27) 상무부 2010년 제64호 공고

(발표일 : 2010.9.30, 2011년 설탕 수입관세 할당 신청과 분배세칙)

“농산물 수입관세 할당관리 임시방법”(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03년 제4호 법령)에 의해 2011년도 설탕 관세 할당수량, 신청조건과 분배세칙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 2011년 설탕 수입관세 할당량은 194.5만 톤이며 그 중에서 70%는 국영무역 할당이다.
- 설탕 수입관세 할당 신청인(약칭 : 신청인)의 기본조건은 아래와 같다. 즉, 2010년 10월 1일 전에 공상관리부서에 등록하고 규정에 따라 공상관리부서의 최근 연도심사에 통과되었으며, 2008년-2010년 사이에 세관, 외환, 공상, 세무, 품질검사, 사회보험, 환경보호 등에서 위법기록이 없으며, “농산물 수입관세 할당관리 임시방법”과 “2010년 설탕 수입관세 할당신청과 분배세칙”을 위반한 행위가 없어야 한다.

상기 조건을 갖춘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조건 중의 하나도 만족해야 한다.

- ① 국영무역업체
- ② 국가비축 기능이 있는 중앙업체

- ③ 2010년 설탕관세 할당이 있으며 또한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약칭 : 실적이 있는 신청인)
 - ④ 1일 설탕 가공 량이 600톤 이상(600톤을 포함), 등록자본금이 1,000만 위안 이상(1,000만 위안을 포함), 설탕 연간 매출액이 3.5억 위안 이상(3.5억 위안을 포함)의 제당업체
 - ⑤ 설탕을 원료로 하는 가공무역업체
-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① 농산물 수입관세 할당 신청보고
 - ② 농산물 수입관세 할당 신청서
 - ③ 규정에 따라 공상부서의 최근 연도심사를 통과한 기업법인 영업집조(부분) 복사본
 - ④ 세관 배서에 서명 날인한 2010년 설탕 “농산물 수입관세 할당증”과 수입 통관신고서 복사본
 - ⑤ 2009년 “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서”와 납세증빙 복사본, 2009년 “증치세 납세 신고서”와 납세증빙 복사본
- 실적이 있는 신청인은 상기 ①~④ 서류를 제출하고, 실적이 없는 신청인은 ①, ②, ③, ⑤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실적이 없는 신청인이 2009년 이후에 건설되어 가동을 개시했을 경우에 주관부서에서 건설프로젝트의 타당성 보고서에 대한 비준 서류(또는 프로젝트건의서 복사본)와 준공검수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 설탕 수입관세 할당은 전년도 수입실적, 생산능력, 매출액과 기타 관련된 상업표준에 따라 분배한다.
- ① 만약 관세 할당량이 조건에 부합되는 신청인의 신청수량을 만족할 수 있으면 신청인의 신청수량에 따라 분배한다.
 - ② 만약 관세 할당량이 조건에 부합되는 신청인의 신청수량을 만족할 수 없으면 실적이 있는 신청인이 우선으로 전년도 수입실적을 기수로 하는 할당을 취득한다. 이렇게 분배한 후 만약 나머지가 있으면 신청인의 가공능력과 매출액을 주요 근거로 하여 실적이 있는 신청인과 실적이 없는 신청인 사이에 비례에 따라 분배하고,



신청수량이 비례에 따라 분배한 수량보다 적을 경우에 신청수량에 따라 분배한다.

- 2011년 설탕 수입관세 할당의 신청기간은 2010년 10월 15일부터 30일까지이다. 신청인은 규정한 기한 내에 공상등록 소재지 상무부 수권기구(약칭 : 수권기구)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은 “농산물 수입관세 할당 신청서”(첨부1)를 수권부서로부터 수령하거나 상무부 웹사이트 <http://www.mofcom.gov.cn>로부터 다운로드(복사)할 수 있다.
 - 수권기구는 관할지역에서 설탕 수입관세 할당 신청을 책임지고 수리하며, 2010년 11월 30일 전에 조건에 부합되는 신청을 상무부에 제출하며 동시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보고한다.
 - 상무부는 2011년 1월 1일 전에 수권기구를 통해 수입관세 할당을 취득한 신청인에게 “농산물 수입관세 할당증”을 발급한다.
 - “농산물 수입관세 할당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매매할 경우에 관련 법률에서 불법 경영죄 또는 국가기구의 공문, 증서, 인장을 위조, 변조, 매매한 죄에 대한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관세 할당 소유인이 상기 행위가 있을 경우에 상무부와 수권기구는 2년 내에 그 농산물 수입관세 할당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
- 첨부1 : 농산물 수입관세 할당 신청서
 첨부2 : 2011년 설탕 수입세목표

28) 상무부 2010년 제72호 공고 “2011년 농산물과 공업품의 수출할당 총량을 발표”

(발표일: 2010.10.28)

“화물수출입관리조례”와 “수출상품할당관리방법”에 따라 2011년 농산물과 공업품의 수출할당 총량을 발표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할당 신청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도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청, 국), 상무청(국)을 통해 신청하거나 직접 상무부에 신청할 수 있다. 상무부의 신청 접수시간은 2010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이다.

첨부 : 2011년 농산물과 공업품의 수출할당 총량

〈2011년 농산물 수출할당 총량〉

유형	상품명칭	단위	할당 총량
농산물	톱재료	만 m ³	26
	무늬고랭이 및 그 제품	만 kg	3,200
	돼지(대)	만 마리	180
	그 중: 홍콩	만 마리	165
	마카오	만 마리	15
	돼지(중)	만 마리	8.24
	그 중: 홍콩	만 마리	8.0
	마카오	만 마리	0.24
	돼지	만 마리	5.72
	그 중: 홍콩	만 마리	5
	마카오	만 마리	0.72
	닭	만 마리	1,340
	그 중: 홍콩	만 마리	1,000
	마카오	만 마리	340

29) 세관총서 제193호 법령 “세관총서에서 ‘세관의 상주기구 출입국 공용물품 감독 관리방법’을 수정할 데 관한 결정”(발표일: 2010.11.2)

상주지구의 출입국 공용물품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세관총서는 “세관에서 상주지구의 출입국 공용물품에 대한 감독관리방법”(세관총서령 제115호)에 첨부된 “세관 출입국 공용물품 신청표”(첨부2)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신청표에 신청기구의 명칭과 세관코드, 물품 비준번호, 입국/출국, 발송/도착 국가(지역), 선적항구/운송항구, 운송방식(수로, 철도, 자동차, 항공, 우송, 기타), 운송공구 명칭, 출항번호, 운송장 번호, 건수, 총중량(kg), 비고 등 12개 항목을 추가하고 국적, 주소, 등기증 번호 등 3개 항목을 삭제한다.
- “수탁자 작성 가능” 항목란을 추가하며 구체적으로 입국/출국 날짜, 포장종류, 체



적, 박스수량, 내부포장 건수, 수탁자 명칭과 세관코드(신분증 번호) 등 6개 항목을 포함한다.

- 신청표에 항목 번호, 물품세척번호, 규격/모델, 화폐, 비고 등 5개 항목을 추가하고 출입국 세관의 비고, 유효기간 등 2개 항목을 삭제한다.

본 결정은 2010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30) 세관총서 제195호 법령 “세관총서에서 ‘세관의 가공무역화물 감독관리방법’을 수정할 데 관한 결정”(발표일: 2010.11.2)

가공무역 형세의 변화에 적응하고 가공무역 관련 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해 세관총서는 “세관이 가공무역화물에 대한 감독관리방법”(세관총서령 제11호)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방법” 제7조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세관의 비준을 받지 않고 가공무역화물을 저장하지 못한다.”
- “가공무역기업은 반드시 가공무역화물과 비가공무역화물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가공무역화물은 반드시 세관에 등록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재료별로 관리해야 한다. 기업은 가공무역화물 저장장소를 변경할 경우에 반드시 세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를 추가하여 “방법” 제9조 제3항으로 한다.
- “방법” 제25조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 외주가공업무의 진행을 신청한 경영업체는 반드시 세관에 외주가공화물의 납세금액에 해당되는 보증금 또는 은행 보증서를 제공해야 한다.
 - ① 외주가공업무가 세관 관할구역을 초월할 경우
 - ② 전체 프로세스를 외주 가공할 경우
 - ③ 외주가공한 후의 화물을 다시 환송하여 직접 수출하지 않을 경우
 - ④ 외주가공을 신청한 화물이 사건에 관련되지 않지만 경영업체 또는 도급업체가 밀수, 규정위반의 혐의로 세관에서 입안 조사, 수사하지만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경우

- 외주 가공을 신청한 화물이 세관에 납세금액보다 적지 않은 보증금 또는 은행 보증서를 제출했을 경우, 경영업체는 본 조항 규정에 따라 세관에 보증금 또는 은행 보증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 경영업체 또는 도급업체의 생산경영 관리가 세관의 감독관리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및 외주를 신청한 화물이 사건에 연관되는 화물에 속하며 사건이 판결을 내리지 않았을 경우, 세관은 외주가공업무를 비준하지 않는다.
 - 동시에 “방법” 제25조를 제24조로 변경하고 “방법” 제24조를 제25조로 변경한다.
- “방법” 제27조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가공무역화물은 반드시 재료별로 사용해야 한다.
 - 가공수출제품이 급히 필요하면 세관의 비준을 받아 경영업체 보세재료 사이, 보세재료와 비보세재료 사이에 교환할 수 있지만 재료 교환은 동일한 기업에 제한하며 반드시 같은 품목, 같은 규격, 같은 수량, 이윤을 취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 위탁가공 보세수입재료는 교환하지 못한다.
 - 본 결정은 2010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31) 상무부 2010년 제76호 공고(발표일: 2010.11.12)

- 2006년 5월 12일, 상무부는 2006년 제24호 공고를 발표하여 일본산과 한국산 수입 뉴클레오티드 식품첨가제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징수한다고 결정했다. 상기 반덤핑조치 실시기간은 2006년 5월 12일부터 2011년 5월 12일까지이다.
- “반덤핑조례” 제48조에 의해 재심사를 통해 반덤핑관세의 징수를 종료할 것을 확정함으로써 덤핑과 손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반덤핑관세의 징수기간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다.
- 본 공고 발표일로부터 국내산업 또는 국내 산업을 대표하는 자연인, 법인 및 관련 조직은 상기 반덤핑조치 만기일 60일 전에 서면으로 상무부에 반덤핑조치 종료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 반드시 반덤핑조치 종료의 재심사를 요구하는 명확한 의사와 반덤핑조치를 종료함으로써 덤핑과 손해가 지속되거나 재발



할 가능성이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포함해야 한다.

- 만약 국내산업 또는 국내 산업을 대표하는 자연인, 법인 및 관련 조직이 재심사 신청을 제출하지 않고 상기 반덤핑조치 만기일 전에 상무부도 반덤핑조치 만기의 재심사 조사를 주동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상기 반덤핑조치는 2011년 5월 12일 까지 실시한다.

32) 세관총서 2010년 제197호 법령 “기업분류관리방법”

(발표일: 2010.11.15)

- 세관에 등록된 수출입화물 발송인, 수하인, 통관신고업체의 분류 관리는 본 방법을 적용하며 기타 기업의 분류 관리는 세관총세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 세관은 기업의 법률, 행정법규, 세관규정, 관련 청렴규정 준수현황과 경영관리 현황 및 세관의 감독관리, 통계기록 등에 따라 AA, A, B, C, D 등 5개 관리 분류를 설정하여 관련 기업에 대해 평가, 분류를 진행하며 기업의 관리 분류를 공개한다.
- 세관총서는 서로 다른 관리 분류의 기업에 대해 차별화 관리조치를 취한다. 그 중에서 AA급과 A급 기업에 대해 편리한 통관조치를 취하며 B급 기업에 대해 관행 관리조치를 취하며 C급과 D급 기업에 대해 엄격한 감독관리조치를 취한다. 세관은 통일된 기업 분류표준, 절차와 관리조치를 실시한다.
- 세관총서는 기업분류 관리업무를 지도, 감독하며, 직속세관은 관할구역 기업에 적용하는 관리 분류를 심사, 조절한다.
- 본 방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2008년 1월 30일 세관총서 제170호 법령으로 발표한 “기업분류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된다.

33) 세관총서 2010년 제198호 법령 “세관총서, 일부 규정을 수정할 데 관한 결정”

(발표일: 2010.11.19)

- “세관이 출입국 관광객 수하물에 대한 감독관리방법”(세관총서 제9호 법령) 제7조 1항과 2항을 수정
- “세관이 통과 관광객 수하물에 대한 관리규정”(세관총서 제25호 법령)의 첨부 1,

- 2를 삭제, 제4조, 제8조를 수정
- “세관이 출입국 관광객 통관에 관한 규정”(세관총서 제55호 법령) 제6조, 8조를 수정
- “국경지역 주민의 호혜호리 무역 관리방법”(세관총서 제56호 법령) 제5조를 수정
- “세관이 중국 관광객 수하물에 대한 관리규정”(세관총서 제58호 법령) 제7조를 수정
- “세관이 ‘빈곤퇴치, 자선기증 물품의 수입관세 면제에 관한 임시시행방법’에 관한 실시방법”(세관총서 제58호 법령) 제8조를 삭제
- “세관이 기한을 넘겨도 통관신고를 하지 않은 수입화물, 잘못 하역 또는 초과 하역한 수입화물과 포기한 수입화물에 관한 처리방법”(세관총서 제91호 법령) 제12조를 수정
- “세관이 밀수협외 화물, 물품 탈세액 계산에 관한 임시시행방법”(세관총서 제97호 법령) 제6조, 제12조를 수정
- “세관이 ‘내륙과 홍콩 CEPA’ 아래에서 ‘화물무역에 관한 원산지 규칙’을 집행할 데 관한 규정”(세관총서 제106호 법령) 제2조를 수정
- “세관이 ‘내륙과 마카오 CEPA’ 아래에서 ‘화물무역에 관한 원산지 규칙’을 집행할 데 관한 규정”(세관총서 제107호 법령) 제2조를 수정
- “세관이 ‘중국-아세안 전반적 경제합작 기본협약서’ 아래에서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원산지규칙’을 집행할 데 관한 규정”(세관총서 제108호 법령) 제2조, 제13조 제1항을 수정
- “세관이 상주기구 출입국 공용물품에 대한 감독관리방법”(세관총서 제115호 법령) 제10조를 수정
- “세관이 주민이 아닌 장기 관광객 출입국 자가용 물품에 대한 감독관리방법”(세관총서 제116호 법령) 제4조를 수정
- “세관이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임시시행규정”(세관총서 제120호 법령) 제5조를 수정
- “세관 수출입화물 징수관리방법”(세관총서 제124호 법령) 제9조를 수정
- “세관 특별우대관세대우 수입화물 원산지 관리방법”(세관총서 제149호 법령) 제2



조, 제11조 제1항을 수정

- “세관이 ‘중국-칠레 FTA 협정’ 아래에서 수출입화물 원산지 관리방법” (세관총서 제151호 법령) 제2조, 제18조 제1항을 수정
- “세관이 고급 유학인재의 귀국과 해외 전문가가 중국에서 근무함으로써 출입국하는 물품에 대한 관리방법”(세관총서 제154호 법령) 제6조를 수정
- “세관이 ‘중국-파키스탄 FTA 협정’ 아래에서 수출입화물 원산지 관리방법” (세관총서 제162호 법령) 제2조, 제13조 제1항 (3)을 수정
- “세관이 ‘중국-뉴질랜드 FTA 협정’ 아래에서 수출입화물 원산지 관리방법” (세관총서 제175호 법령) 제2조를 수정
- “세관이 ‘아태무역협정’ 아래에서 수출입화물 원산지 관리방법” (세관총서 제177호 법령) 제2조를 수정

34) 상무부 2010년 제85호 공고(발표일: 2010.11.22)

- “반덤핑조례” 제48조에 의해 반덤핑관세의 징수기간과 가격약속의 이행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단, 재심사를 통해 반덤핑관세의 징수를 종료할 것을 확정한함으로써 덤핑과 손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반덤핑관세의 징수기간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다.
- 본 공고 발표일로부터 국내산업 또는 국내 산업을 대표하는 자연인, 법인 및 관련 조직은 관련 반덤핑조치 만기일 60일 전에 서면으로 상무부에 반덤핑조치 종료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 반드시 반덤핑조치 종료의 재심사를 요구하는 명확한 의사와 반덤핑조치를 종료함으로써 덤핑과 손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포함해야 한다.
- 만약 국내산업 또는 국내 산업을 대표하는 자연인, 법인 및 관련 조직이 재심사 신청을 제출하지 않고 반덤핑조치 만기일 전에 상무부도 반덤핑조치 만기의 재심사 조사를 주동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관련 반덤핑조치는 만기일까지 실시한다.

35) 세관총서 2010년 제199호 법령 “세관의 ‘중국-아세안 전반적 경제협작 기본협 의서’ 아래에서 수출입화물 원산지 관리방법”

(발표일: 2010.11.26)

“세관의 ‘중국-아세안 전반적 경제협작 기본협 의서’ 아래에서 수출입화물 원산지 관리 방법”은 2010년 11월 15일에 세관총서의 회의 심사에 통과하여 발표하며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3년 12월 30일, 세관총서 제108호 법령으로 발표한 “세관이 ‘중국-아세안 전반적 경제협작 기본협 의서’ 아래에서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원산지규칙’을 집행할 데 관한 규정”을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 : 아세안 회원국으로부터 직접 운송하여 수입하는 화물이 아래와 같은 조건 중의 하나에 부합될 경우, 그 원산지가 아세안 회원국이면 “수출입세칙”에서의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협정세율을 적용한다.

- ① 완전히 한 개 아세안 회원국에서 취득하거나 생산할 경우
- ② 아세안 회원국에서 불 완전히 취득하거나 생산하지만 본 방법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부합될 경우

제5조 : 아세안 회원국에서 불완전 취득하거나 생산한 화물이 그 생산과정에서 사용한 원산지가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가 아닌 재료, 부품 또는 제품의 가격이 화물 FOB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으며 또한 최종 생산 프로세스가 아세안 회원국 경내에서 진행했을 경우, 반드시 원산지가 아세안 회원국 경내로 간주 해야 한다.

제6조 : 아세안 회원국에서 불완전 취득하거나 생산한 화물이 그 생산과정에서 사용한 원산지가 아세안 회원국인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성분이 화물 FOB가격 의 40% 보다 낮지 않을 경우, 반드시 원산지가 아세안 회원국 경내로 간주해야 한다.

본 조항 제1항에서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성분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야 한다.

100%-(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이외 재료의 가격+원산지가 불명확한 재



료의 가격)/화물 FOB가격×100%≥40%

그 중,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이외 재료의 가격은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이외 원산지 재료의 수입원가, 목적지 항구 또는 장소까지 운송하는 운송료와 보험료(CIF)를 가리키며, 원산지가 불명확한 재료의 가격은 화물을 생산 또는 가공하는 회원국 경내에서 가장 빠르게 확정할 수 있는 원산지가 불명확한 재료에 지급하는 가격을 가리킨다.

제7조 :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가 중국인 화물 또는 본 방법 제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아세안 회원국 원산지 화물이 기타 아세안 회원국 경내에서 기타 제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되며 최종 제품의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성분의 누계 가치가 40%보다 낮지 않을 경우, 화물 원산지는 반드시 그 최종 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아세안 회원국 경내로 간주해야 한다.

제8조 : 아세안 회원국에서 제조, 가공한 제품이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원산지규칙” 아래에서 제품 특정 원산지규칙의 규정에 부합될 경우, 원산지가 아세안 회원국인 화물로 간주해야 하며, 그 제품을 제조, 가공하는 아세안 회원국을 그 원산지로 간주해야 한다.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원산지규칙” 아래에서 제품 특정 원산지 규칙은 본 방법의 구성부분이며 세관총서에서 별도로 공고한다.

제10조 : 화물과 같이 수출입을 신고한 포장, 포장재료, 용기 및 부품, 비품, 공구, 설명서류는 “수출입세칙”에서 그 화물과 같이 분류할 경우, 그 원산지는 원산지 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13조 : 화물 수입을 신고할 경우, 수입화물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반드시 세관의 신고규정에 따라 “세관 수입화물 통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협정세율의 적용을 신청하며 동시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한다.

- ① 아세안 회원국 비자발급기구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서 원본, 유동증명 원본
- ② 화물 상업송장 원본, 포장명세서 및 관련 운송증서

제15조 : 동시에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할 경우, 수입화물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보증금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세관에 보증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수입할 때에 이미 수입화물이 아세안 회원국 원산지 자격을 갖추었다고 세관에 보충신고를 제출하고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협정세율의 적용을 신청

② 유효한 원산지 증서 원본 또는 유효한 유동증명 원본 및 세관에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화물 수입과 연관되는 기타 서류를 제출

보증금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또는 세관에서 비준하여 연장한 기한 내에 수입화물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보증금 반환신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세관은 반드시 즉시 보증금을 수입세금으로 전환하는 수속을 처리해야 하며 세관 통계 데이터를 동시에 수정해야 한다.

제29조 : 본 방법을 위반하여 밀수행위, 세관 감독관리규정 위반행위 또는 기타 “세관법” 위반행위를 구성할 경우, 세관은 “세관법”과 “세관행정처벌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32조 : 본 방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관총서에서 2003년 12월 30일에 제108호 법령으로 발표한 “세관이 ‘중국-아세안 전반적 경제협력 기본협약서’ 아래에서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 원산지규칙’을 집행할 데 관한 규정”을 동시에 폐지한다.

파. 수입화물의 과세가격

중국은 WTO에 가입한 후 2002년 1월 1일부터 “수출입화물과세가격확정방법”을 시행하여 중국 세관은 WTO 가격산정규칙에 적용했다. 그 후에 국무원은 2004년에 새로운 “수출입관세조례”를 수정했다. 가격산정규칙의 적용에서 일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잇따라 “수출입화물 특허권사용료 산정방법” 등 가격산정 관련 규정, 공고를



발표했으며 세관총서는 “수출입관세조례”에 의해 “수출입화물과세가격확정방법”을 수정하여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했다.

1) 수입화물의 과세가격과 거래가격

- 과세가격 :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세관에서 화물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심사하여 확정하며 또한 반드시 화물이 중국 경내 수입지역에 도착한 후 하역하기 전의 운송 및 그 관련된 비용, 보험료를 포함해야 한다.
- 거래가격 : 수입화물의 거래가격은 구매자가 화물을 구매하기 위해 “수출입화물과세가격확정방법”의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조절한 후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가리킨다.

2) 수입화물의 거래가격 요구조건

- 구매자가 수입화물에 대한 처리 또는 사용이 제한을 받지 않지만 중국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제한, 화물 전매지역에 대한 제한, 화물 가격에 실질적 영향이 없다는 것에 대한 제한을 제외한다.
- 화물 가격은 화물 거래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요소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 판매자는 구매자가 수입화물을 전매, 처리 또는 사용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이익을 간접 또는 직접적으로 취득해서는 안 된다. 단, “수출입화물과세가격확정방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매매 쌍방 사이에 특별관계가 없어야 한다. 특별관계가 있으면 반드시 “수출입화물과세가격확정방법” 제5조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3) 세관에서 과세가격의 확정절차

세관에서 과세가격의 확정절차는 가격 질의절차와 가격 협상절차를 포함한다.

- 세관에서 신고가격의 진실성, 정확성에 의문이 있거나 매매 쌍방 사이의 특별관

- 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할 경우, 가격 질의절차를 가동해야 한다.
-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은 반드시 세관의 “가격질의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서면형식으로 관련 서류 또는 기타 증거를 제출하여 신고가격이 진실하고 정확하거나 쌍방 사이의 특별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이유가 있어 규정한 시간 내에 상기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기한이 만기되지 전에 서면형식으로 세관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한 상황 외에 10일 이상 연장하지 못한다.
 - “가격질의통지서”를 발급한 후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세관에서 가격 협상 절차를 가동하여 납세의무자와 충분히 교류하여 상동, 유사, 계산, 합리한 가격 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세관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더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없을 경우
 -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관련 서류, 증거를 제출하고 세관에서 제공한 서류, 증거를 심사한 후, 여전히 신고가격의 진실성, 정확성을 의심할 이유가 있을 경우
 -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관련 서류, 증거를 제출하고 세관에서 제공한 서류, 증거를 심사한 후, 여전히 매매 쌍방 사이의 특별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할 이유가 있을 경우
 - 납세의무자는 반드시 세관의 “가격협상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세관과 가격 협상을 진행하며 “가격협상기록표”를 작성해야 한다. 만약 규정한 기한 내에 협상하지 않을 경우, 가격 협상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세관은 차례로 5가지 과세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 세관에서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확정된 후 납세의무자는 서면신청을 제출하여 세관에서 그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어떻게 확정하였는지를 서면형식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세관은 반드시 그 요구에 따라 “가격선정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하. 수출입 관세의 감면

중국 “세관법” 제56-57조의 규정에 의해, 수출입 관세감면을 법정 관세감면, 특정 관세감면, 임시 관세감면으로 나눌 수 있다.

1) 법정 관세감면

법정 관세감면은 “세관법”, “관세조례”와 기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화물에 대한 관세감면을 가리키며, 세관에서 법정 관세감면의 화물에 대해 일반적으로 후속관리를 하지 않는다. 법정 관세감면범위는 아래와 같다.

- 관세 세액이 인민폐 50위안 이하인 화물
- 상업가치가 없는 광고물과 화물샘플
- 외국정부, 국제조직에서 무상 증정한 물자
- 세관에서 통관을 허용하기 전에 파괴 또는 파손된 화물
- 출입국 운송도구가 적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연료, 자재와 음식물
- 중각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에서 관세감면을 규정한 화물, 물품
- 법률에서 관세감면을 규정한 기타 화물, 물품

2) 특정 관세감면

특정 관세감면은 세관에서 국가 규정에 의해 특정 지역, 특정용도, 특정 기업에 대해 관세와 세관이 수입과정에서 징수하는 세금을 감면하는 혜택을 가리키며, 정책성 관세감면이라고도 한다.

특정 관세감면을 신청하는 업체는 화물을 수입하기 전에 세관에 신청하며, 세관은 관련 규정의 절차에 따라 심사비준을 한다. 관세감면의 관련 정책에 부합될 경우, 세관은 관세감면 증명을 발급하고 업체는 관세감면 증명 및 관련 통관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관세감면 수입화물의 통관수속을 밟는다.

특정 관세감면의 화물은 지역, 업체와 용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세관은 후속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현재 특정 관세감면 정책을 시행하는 항목은 주로 아래와 같다.

- 외상투자 항목의 투자한도에서 수입하는 자가용 설비
- 외상투자기업의 투자총액 외에 수입하는 자가용 설비
- 국내투자 항목이 수입하는 자가용 설비
- 대출 항목이 수입하는 물자
- 특정지역 물자
- 과학교육용품
- 과학기술 개발용품
- 무상원조 항목이 수입하는 물자
- 장애인용품
- 원양어업 항목이 수입하는 자체 어획 수산물
- 원양선박 및 설비부품항목
- 집적회로 항목
- 해상 석유, 육상 석유 항목
- 대출 낙찰 항목이 수입하는 부품
- 구제, 기증 물자
- 자선, 기증 물자

그 외에 국가에서 단계별 수요에 따라 관련 관세 감면정책을 수립한다.

3) 임시 관세면제

임시 관세면제는 법정 관세면제와 특정 관세면제 외의 기타 관세면제를 가리키며, 국무원에서 어떤 업체, 어떤 상품, 어떤 시기 또는 화물의 특수한 상황과 수요에 의해 특별한 임시적인 관세면제 혜택을 준다.

임시 관세면제의 화물은 단위, 품목, 기한, 금액, 수량 등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있어 시효가 비교적 짧고 혜택정책이 집행되면 끝난다.



임시 관세면제의 신청업체가 소재지 세관에 신청하고 세관은 사실을 심사한 후에 세관 총서에 보고하며, 세관총서 또는 세관총서와 재정부가 공동으로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한 후에 문건을 발급하며, 세관총서는 관련 세관에 관세감면 수속을 밟도록 통보한다.

현재 임시 관세감면의 심사비준을 중지하고 국무원과 관련 부서는 수리를 하지 않으며 각급 세관도 임시 관세면제의 신청을 접수하지 않고 있다.

4) 관세감면 비준원칙과 비준관리

현재 중국 세관의 관세감면 정책에서 특정 관세감면에 관한 규정이 많고 관련된 분야가 다양하다. 관세감면의 적용대상은 주로 국가에서 배려해야 할 특정 지역, 특정 기업, 특정 용도, 특정 자금과 무역방식 등을 가리키며, 감면범위는 주로 생산물자 등에 제한된다. 현재 세관은 초심, 재심, 삼심의 “3급 비준” 원칙으로 관세감면을 비준한다.

세관의 관세감면 비준관리 시스템은 주로 관세감면 항목등록, 관세감면 증명비준, 관세감면 데이터검색, 통계분석과 관세감면 화물의 후속관리 등을 포함한다.

거. 수출입 관세의 반환, 추징, 보충징수

1) 관세 반환제도

납세인 또는 그 대리인이 관세를 납부한 후, 세관에서 전부 또는 일부 기납부 관세를 납세인에게 반환하는 제도

□ 관세 반환의 경우

- ① 수입관세를 납부한 수입화물이 품질 또는 규격 원인으로 인해 원래 상태로 반품하여 재수출한 경우
- ② 수출관세를 납부한 수출화물이 품질 또는 규격 원인으로 인해 원래 상태로 반품

되어 재수입하며 수출로 인해 반환한 관련 세금을 다시 납부한 경우

- ③ 수출관세를 납부한 수출화물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 수출하지 않아 화물 수출이 철회될 경우
- ④ 관세를 징수하여 통관된 산적 수출입화물이 부족하여 그 화물의 발송인, 운송인 또는 보험회사가 부족한 부분의 화물대금을 반환 또는 배상했을 경우, 납세인은 세관에 부족한 부분의 관련 세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음
- ⑤ 수출입화물이 파손, 품질불량, 규격 미달 원인으로 인해 그 화물의 발송인, 운송인 또는 보험회사가 관련 화물대금을 배상했을 경우, 납세인은 세관에 배상한 화물대금의 관련 세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음
- ⑥ 세관에서 잘못 징수하여 납세인이 세금을 많이 납부했을 경우

□ 관세 반환의 기한과 요구

- ① 세관은 반드시 관세 반환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조사 확인하여 납세인에게 반환수속을 밟도록 통보해야 함
- ② 납세인은 반드시 상기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관세 반환수속을 밟아야 함
- ③ 관세 반환은 반드시 관세를 징수한 세관에서 처리해야 함

2) 관세 추징과 보충 징수

납세인 또는 그 대리인이 관세를 납부한 후, 세관에서 확정하여 징수한 관세가 과세 관세보다 적은 것을 발견하면 세관은 납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부족한 관세를 보충 납부할 것을 요구함

만약 그 원인이 납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있으면 세관에서 관세를 추징하고, 만약 그 원인이 납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있지 않으면 세관에서 관세를 보충 징수함

□ 추징, 보충징수의 기한과 요구

- ① 수출입화물이 통관된 후, 세관에서 관세를 적게 징수했거나 누락 징수한 것을 받



견할 경우, 반드시 납세일 또는 통관일로부터 1년 내에 납세인으로부터 세금을 보충 징수해야 함

- ② 납세인이 규정을 위반하여 세관에서 관세를 적게 징수했거나 누락 징수했을 경우 또는 감독관리 화물이 납세인이 규정을 위반하여 관세를 적게 징수했거나 누락 징수했을 경우, 반드시 납세일 또는 통관일로부터 3년 내에 관세를 추징하며, 적게 징수했거나 누락 징수한 세금의 0.5%의 체납금을 추가 징수함(납세일 또는 통관일로부터 발견일 까지)
- ③ 상기 관세 보충징수 납세서를 발급한 후, 15일 내에 보충납부하지 않으면 계속 체납금을 징수함

너. 수입화물 신고지체금

1) 징수대상

수입화물 신고지체금은 세관에서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관에 수입화물을 신고하지 않은 수하인에 대해 징수하는 비용을 가리킴. 신고지체금은 규정한 신고기한의 다음날 부터 수하인이 세관에 신고하고 세관에서 신고를 접수한 날까지의 지체날짜에 따라 계산함

□ 수입화물의 신고기한

- ① 우송하는 수입화물은 우체국에서 수령통지서 발급일로부터 14일 내(제14일이 공휴일일 경우에 1일 순연함)
- ② 전입하는 수입화물은 운송공구의 입국 신고일로부터 14일 내에 입국 세관에 전입수속을 밟으며, 기한을 넘기면 지체금을 징수함. 수입화물이 세관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장소까지 운송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지정한 지역의 세관에 통관 신고수속을 밟으며 기한을 넘기면 지체금을 징수함
- ③ 기타 운송방식의 화물은 모두 수입화물 운송공구의 입국 신고일로부터 14일 내에

2) 징수표준

신고지체금의 1일 징수금액은 수입화물 과세가격의 0.5%이고 신고지체금은 50위안
부터 징수하며 50위안 미만일 경우에 면제할 수 있음

계산식 : 신고지체금=수입화물 과세가격×0.5%×지체날짜

제2절 ● 품목별 통관제도

가. 일반포장식품

수입업체 또는 대리업체는 직접 입국항구 검험검역기구에 신고할 수 있으며, 검사신고 자격이 없을 경우에 검사신고 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음

1) 최초로 입국검사를 신고할 경우

□ 반드시 제출할 서류

- 무역계약서
- 신용증
- 상업송장
- 포장명세서
- 결합제품 소환승낙서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발급한 “수출입식품라벨심사증서” 또는 “수입식품 화장품라벨등록증명” 또는 라벨등기 신청서류[라벨심사신청서, 중문 라벨 샘플, 기존 라벨과 중문 번역본, 원산지증명/자유판매증명 원본, 제품 특성속성의 증명서류, 제3자 검사측정기구에서 발급한 검사측정합격보고서 원본 등]

□ 필요시 제출할 서류

- “입국동식물검역허가증”(입국검역비준수속을 밟아야 함)
- 수출국가 또는 지역 정부의 검역증서(규정이 있는 동식물원성식품)
- 수출국가(지역) 정부의 위생증명서류 또는 제3자 검사측정기구에서 발급한 합격검사 측정정보고서 원본
- 검사측정보고서(라벨에 구체적 수치를 표기)
- 수출국가(지역)에서 사용하는 농약, 가축약, 첨가제, 훈증제 등 관련 자료와 검사보고서

- 수출국가 품질증서 또는 품질보증서, 제품사용설명서 및 관련 표준과 기술자료(품질증서 신청할 경우)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이 관련 국가(지역)와 협의서를 체결했을 경우, 협의서의 규정에 따라 발급한 증명
- 검험검역기구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2) 향후 입국검사를 신고할 경우

라벨등기 신청서류(라벨심사신청서, 중문 라벨 샘플, 기존 라벨과 중문 번역본, 원산지증명/자유판매증명 원본, 제품 특성속성의 증명서류, 제3자 검사측정기구에서 발급한 검사측정합격보고서 원본 등)를 제출하지 않고 나머지 제출서류는 최초 입국검사를 신고할 경우와 같은 입국검사 신고가 접수된 후 검험검역을 진행하며, 합격되면 “위생증”을 발급한다. 중문 라벨의 등록이 필요할 경우, 검험검역에 합격된 후 “수출입식품화장품라벨등록증명”을 취득한다. 중문라벨 샘플은 GB 7718-2004(포장식품라벨통칙), GB10344-2005(포장음료주라벨통칙) 등 관련 국가표준에 따라 제작한다.

나. 건강식품

건강식품은 특정 건강기능이 있거나 비타민, 광물질을 보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을 가리킨다. 건강식품은 특정인이 식용하기에 적합하고 인체기능을 조절하지만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인체에 어떠한 급성, 아급성 또는 만성 위해를 주지 않는 식품이다. 수입건강식품은 반드시 국무원 위생부서에서 발급하는 “수입건강식품비준증서”를 취득해야 수입수속을 밟을 수 있다.

화물이 입국할 때, 항구 출입국검험검역기구는 “수입건강식품비준증서”에 따라 검험검역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표준에 따라 검험에 합격되면 통관을 허용한다. 처음으로 수입하는 건강식품은 또 반드시 식품라벨의 검험에 합격되어 “수출입식품라벨등록증서”를 취득해야 통관을 허용한다.



다. 가축육제품

수입가축육제품은 가축을 도살가공한 후 식용이 가능한 어떠한 부위를 가리키며, 신선, 냉장 및 냉동한 가축 몸통, 육류, 내장, 부산물 및 상기 제품을 원료로 하는 제품(통조림을 포함하지 않음)을 포함한다. 가축은 돼지, 소, 양, 말, 당나귀, 사슴, 낙타 등을 포함한다.

수입가축육제품은 아래와 같은 특수요구가 있다.

① 수입가축육제품의 화주는 반드시 무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비준수속을 밟아 입국동식물검험검역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일반무역방식으로 가축육제품을 수입할 경우,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입국항구 검험검역기구에 신청하여 초심수속을 밟으며, 위탁가공방식으로 가축육제품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입국항구 검험검역기구에 신청하여 지정생산기업의 인가수속을 밟아야 한다.

② 가공무역방식의 가축육제품 수입업체는 입국검역 비준수속을 밟기 전에 반드시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비준하는 지정생산기업의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수입한 가축육제품은 반드시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비준한 지정생산기업에서 생산, 사용 및 저장해야 한다.

검험검역기구는 지정생산기업의 생산, 가공, 저장과정에 대해 검험검역 감독 및 전염병 발생과 확산 상황의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입국육류 지정가공업체는 요구에 따라 사실대로 감독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필요한 기록서류를 검사용으로 준비해야 한다. 또한 제품 출입국 창고수량을 심의하여 삭제하여 제한된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며, 가공 폐기물의 처리가 가축 약물 위생방역과 환경보호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한다.

③ 일반무역방식의 가축육제품 수입업체는 입국검역 비준수속을 밟기 전에 반드시 입국항구 직속 검험검역국의 등록자격을 취득한 지정저장창고와 저장협약서(또는 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수입가축육제품은 검험검역에 합격되기 전에 반드시 지정저장창고에 저장해야 한다.

검험검역기구는 지정저장창고의 저장과정에 대해 감독하고, 저장창고는 사실대로 “입국육류제품 지정저장창고 품질감독관리 매뉴얼”을 작성하며, 냉장창고는

불법 입국한 가축육제품을 저장하지 못한다.

- ④ 국가에서 발표한 동물 전염병이 유행되는 국가 또는 지역(국가품질감독검역검역총국과 농업부에서 공동 발표하는 공고를 기준)으로부터 관련된 가축육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국가품질감독검역검역총국의 경고통보에서 임시중지한 국외 생산가공업체로부터 관련된 가축육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라. 식량과 식용유 식품

식량과 식용유는 식량, 식물유 원료, 식물유의 총칭을 가리키며, 수입 식량과 식용유는 국가 관련 부서의 기준을 받아야 한다.

- ① 국가품질감독검역검역총국에서 발급하는 “수입 동식물 검역허가증”
- ② 농업부에서 발급하는 “수입 유전자변형 농산물 안전증서” 또는 “수입 유전자변형 농산물 임시증명”(유전자변형의 대두, 콩기름, 유채씨, 유채기름, 옥수수, 옥수수기름을 가리킴),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 라벨 심사인가 비준문건”(유전자변형의 대두, 콩기름, 유채씨, 유채기름, 옥수수, 옥수수기름을 가리킴)
- ③ 국가 법률법규에서 규정하는 검역과 관련되는 기타 허가입국증명

마. 가금육제품

수입 가금육제품의 화주는 무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검역 비준수속을 밟아 “수입 동식물 검역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일반무역방식으로 수입하는 가금육제품에 대해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입국항구 검험검역기구에 초심을 신청하고, 위탁가공(원료 수입가공)방식으로 수입하는 가금육제품은 반드시 입국항구 검험검역기구에 지정생산기업 인가를 신청하여 취득해야 한다.

위탁가공(원료수입가공)방식으로 가금육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입국검역 비준수속을 밟기 전에 반드시 국가품질감독검역검역총국에서 비준하는 지정생산기업의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수입 가공육제품은 반드시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비준하는 지정생산기업에서 생산, 사용, 저장해야 한다. 검험검역기구는 수입 육류제품 생산, 가공, 저장 등 과정에 대해 검험검역 감독과 전염병 검사를 진행한다. 수입 육류 지정가공업체는 요구에 따라 사실대로 감독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로 기록해야 한다. 또한 제품 출고와 입고의 수량에 대해 심사하여 제한된 용도에 따라 사용하도록 확보한다. 가공 폐기물의 처리는 수의 위생 방역과 환경보호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일반무역방식으로 가공육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입국검역 비준수속을 밟기 전에 반드시 입국항구 직속 검험검역국으로부터 등기자격을 취득한 지정저장냉장창고와 저장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수입 가공육제품은 검험검역에 합격되기 전에 반드시 지정저장냉장창고에 저장해야 한다. 검험검역기구는 모든 수입 가공육제품을 저장하는 냉장창고에 대해 등기를 하며, 등기자격을 취득한 냉장창고만 검험검역기구에서 지정한 수입 육류제품을 저장할 수 있다. 등기된 냉장창고는 일률적으로 유효한 검험검역증명에 따라 수입 육류제품을 입고시키고, 냉장창고는 반드시 전문 인원을 지정하여 입고 등록을 책임지게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검사하고 “감독관리 매뉴얼”을 작성하며 검험검역기구와 연락하게 해야 한다. 냉장창고는 제때에 검험검역기구에 이상한 상황을 통보하고 각종 불법 수입 육류제품의 행위를 고발할 의무가 있다. 등기된 냉장창고는 반드시 저장한 수입 육류제품의 출처, 행방, 수량을 상세히 기록하며 수시로 검험검역기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에서 발표한 동물 전염병 유행국가 또는 지역(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과 농업부에서 공동 발표한 명단을 기준)으로부터 관련된 가공육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경고 통보로 임시중지한 외국 생산가공업체로부터 관련된 가공육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바. 쌀

1) 수입관세

〈2010년 중국 쌀 수출입관세〉

상품 코드	추가 번호	상품명칭	수입 우대 세율	수입 일반 세율	수출 세율	부가 세율	소비 세율	계량 단위	감독 관리 조건
10062010		멥쌀	T3	T3		13		kg	
10062010	01	멥쌀 현미	T3	T3		13		kg	4xABt
10062010	90	멥쌀 현미	T3	T3		13		kg	4xABy
10062090		기타	T3	T3		13		kg	
10062090	01	기타 현미	T3	T3		13		kg	4xABt
10062090	90	기타 현미	T3	T3		13		kg	4xABy
10063010		멥쌀	T3	T3	3	13		kg	
10063010	01	멥쌀 정미	T3	T3		13		kg	4xABt
10063010	90	멥쌀 정미	T3	T3		13		kg	4xABy
10063090		기타	T3	T3	3	13		kg	
10063090	01	기타 정미	T3	T3		13		kg	4xABt
10063090	90	기타 정미	T3	T3		13		kg	4xABy
10064010		멥쌀	T3	T3	3	13		kg	
10064010	01	멥쌀 썬가리	T3	T3		13		kg	4xABt
10064010	90	멥쌀 썬가리	T3	T3		13		kg	4xABy
10064090		기타	T3	T3	3	13		kg	
10064090	01	기타 썬가리	T3	T3		13		kg	4xABt
10064090	90	기타 썬가리	T3	T3		13		kg	4xABy

출처 : 수출입데이터망(www.jkck.com)



2) 2010년 쌀 수입쿼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09년 9월 28일에 “2010년 식량 수입관세 쿼터수량, 신청조건과 분배원칙”을 발표했다.

2010년 쌀 수입관세쿼터는 532만 톤이며 그 중에서 큰 알과 작은 알의 쌀은 각각 266만 톤이며 국영무역의 비례는 50%를 차지한다.

업체는 일반무역, 가공무역, 바터무역, 변경소액무역, 원조, 기증 등 무역방식을 통해 쌀을 수입할 경우에 모두 수입관세쿼터를 신청해야 하며 수입관세쿼터증을 제출하여 통관수속을 밟아야 한다. 국외로부터 보세창고, 보세구, 수출가공구에 제공하는 제품에 대해 수입관세쿼터증의 신청을 면제한다.

쌀 수입관세쿼터 신청업체의 기본조건 : 2009년 10월 1일 전에 국가공상관리부서에 등기하고(영업집조 사본을 제출), 양호한 재무상황과 납세기록(2008년과 2009년 관련 서류를 제출)이 있어야 하며, 2007-2009년 세관, 공상, 세무, 검험검역에서 불법기록이 없어야 하고, 2008년 기업 연도검사가 합격되며, “농산물수입관세쿼터임시시행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없어야 한다.

상기 조건을 갖추는 전제에서 수입관세쿼터 신청업체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 국영무역업체
- 국가비축기능이 있는 중앙업체
- 2009년에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
- 식량 도소매가격이 있어야 하고 연간 매출액이 1억 위안 이상인 식량업체
- 연간 수출액이 2,500만 달러 이상의 무역업체
- 2009년에 수입실적이 없지만 수출입경영권이 있고 소재지 대외무역 주관부서에서 발급한 가공무역 생산능력 증명, 벼와 쌀을 원료로 하여 가공무역을 진행하는 업체

쌀 수입관세쿼터는 신청업체의 신청수량, 역사 수입실적, 생산능력과 기타 관련 상업표

준에 따라 분배한다.

- 수입관세쿼터가 조건에 부합되는 신청업체의 신청수량을 만족할 경우, 신청업체의 신청수량에 따라 관세쿼터를 분배한다.
- 수입관세쿼터가 조건에 부합되는 신청업체의 신청수량을 만족할 없을 경우, 수입실적이 있는 신청업체가 우선으로 쿼터를 받으며, 수입실적이 없는 신청업체는 그 가공능력 또는 경영수량 등을 주요 근거로 하여 비율에 따라 수입관세쿼터를 분배한다. 그중에서 신청수량이 비례에 따라 분배하는 수량보다 적을 경우, 신청수량에 따라 분배한다.

2010년 쌀 수입관세쿼터 신청시간은 2009.10.15~30이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수권기구에서 받거나 국가발전개혁위원회(www.ndrc.gov.cn)로부터 “농산물수입관세쿼터신청표”를 다운로드 하여 사실대로 작성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수권기구는 속지 범위 내의 업체신청을 접수하며 2009년 11월 30일 전에 조건에 부합되는 신청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제출하며 동시에 상무부에도 제출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0년 1월 1일 전에 수권기구를 통해 농산물 수입관세쿼터를 최종 고객에게 분배한다.

3) 수입쌀 통관절차

□ 쿼터취득

수입업체는 쌀 수입쿼터를 신청하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수권기구에서 쌀 수입관세쿼터의 신청을 접수하여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에 제출한다.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매년 1월 1일 전에 각자 수권기구를 통해 최종 고객에게 “농산물수입관세쿼터증”을 발급하며 “상무부 농산물수입관세쿼터증 전용장” 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농산물수입관세쿼터증 전용장”을 날인한다.



□ 검험검역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이 2004년 8월 30일에 발표한 2004년 제111호 공고에 의해 쌀 수입업체는 검험검역기구에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 수입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험검역을 신고한다. 검험검역기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쌀의 검험검역을 진행하며 검험검역에 합격되면 “입국화물검험검역증명”을 발급한다.

〈중국으로부터 쌀 검험검역 진출자격을 취득한 국가와 제품〉

제품명칭	HS코드	국가/지역
현미	1006201010, 1006201090, 1006209010, 1006209090	태국, 우루과이, 베트남, 파키스탄
백미	1006301010, 1006301090, 1006309010, 1006309090, 1006401010, 1006401090, 1006409010, 1006401090	태국, 우루과이, 베트남, 파키스탄
데친 쌀	1006301010, 1006301090, 1006309010, 1006309090, 1006401010, 1006401090, 1006409010, 1006401090	태국, 우루과이, 베트남, 파키스탄
기타 쌀	1006301010, 1006301090, 1006309010, 1006309090, 1006401010, 1006401090, 1006409010, 1006401090	태국, 우루과이, 베트남, 파키스탄
정미	1006301001, 1006301090, 1006309001, 1006309090	일본

출처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06년 제3호 공고, 2008년 제47호 공고

□ 통관수속

수입업체는 세관에 “수입관세쿼터증”과 “입국화물검험검역증명” 등을 제출하며 세관은 관세를 징수한 후 통관시킨다.

사. 소시지

1) 수입관세

〈2010년 중국 소시지 수출입관세〉

상품 코드	상품명칭	수입 우대 세율	수입 일반 세율	수출 세율	부가 세율	소비 세율	계량 단위	감독 관리 조건
05040011	전체 또는 조각의 절인 돼지고기 소시지	20	90		13		kg	AB
05040012	전체 또는 조각의 절인 면양고기 소시지	18	90		13		kg	AB
05040013	전체 또는 조각의 절인 산양고기 소시지	18	90		13		kg	AB
05040014	전체 또는 조각의 절인 돼지고기 큰 소시지	20	90		13		kg	AB
05040019	전체 또는 조각의 기타 동물고기 소시지	18	90		13		kg	AB

출처 : 수출입데이터망(www.jkck.com)

2) 특이사항

위탁가공 또는 원료 수입가공방식의 소시지 수입업체는 수입검역 비준수속을 밟기 전에 반드시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비준한 지정생산기업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수입 소시지는 반드시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비준한 지정생산기업 내에서 생산, 사용, 저장해야 한다.

국가에서 발표한 동물 전염병 발생국가 또는 지역(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과 농업부에서 공동 공고한 리스트를 기준)으로부터 관련된 소시지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의 조기경보 통보에서 수입을 임시 중지한다고 규정한 국가/지역 또는 공장으로부터 관련된 소시지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아. 유제품

1) 수입관세

〈2010년 중국 유제품 수출입관세〉

상품 코드	상품명칭	수입 우대 세율	수입 일반 세율	수출 세율	부가 세율	소비 세율	계량 단위	감독 관리 조건
04011000	지방분≤1%인 미농축 밀크와 크림	15	40		17		kg	AB
04012000	1%<지방분≤6%인 미농축 밀크와 크림	15	40		17		kg	AB
04013000	지방분>6%인 미농축 밀크와 크림	15	40		17		kg	AB
04021000	지방분≤1.5%인 고체상태 밀크와 크림	10	40		17		kg	AB
04022100	지방분>1.5%인 설탕 미첨가한 고체상태 밀크와 크림	10	40		17		kg	AB
04022900	지방분>1.5%인 설탕 첨가한 고체상태 밀크와 크림	10	40		17		kg	AB
04029100	농축했지만 설탕 미첨가한 비고체 밀크와 크림	10	90		17		kg	AB
04029900	농축했지만 설탕 첨가한 비고체 밀크와 크림	10	90		17		kg	AB
04031000	요구르트	10	90		17		kg	AB
04039000	버트밀크 및 기타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	20	90		17		kg	AB
04041000	유장과 변성유장	6	30		17		kg	AB
04049000	기타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 밀크의 조성을 함유하는 물품	20	90		17		kg	AB
04051000	버터	10	90		17		kg	AB
04052000	유제품 스프레드	10	90		17		kg	AB
04059000	기타 밀크에서 추출한 지와 유	10	90		17		kg	AB
04061000	신선한 치즈(미숙성 또는 미응고)	12	90		17		kg	AB
04062000	갈았거나 분상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12	90		17		kg	AB
04063000	가공치즈(갈았거나 분상의 것을 제외)	12	90		17		kg	AB
04064000	블루바인 치즈와 페니실리움 로우크포티로 생산된 바인을 함유한 기타 치즈	15	90		17		kg	AB

상품 코드	상품명칭	수입 우대 세율	수입 일반 세율	수출 세율	부가 세율	소비 세율	계량 단위	감독 관리 조건
04069000	기타 치즈	12	90		17		kg	AB
19011000	유아용의 소매포장 식품(코코아<5% 유제품)	5	40		17		kg	AB

출처 : 수출입데이터망(www.jkck.com)

2) 관련 법규

□ 상무부, 세관총서 2009년 제45호 공고(발표일 : 2007.7.10)

“신선한 밀크, 분유, 유장에 대해 자동수입허가관리를 시행할 데 관한 공고”

“화물자동수입허가관리방법”(상무부, 세관총서 2004년 제26호 법령)에 의해, 상무부, 세관총서는 2009년 8월 1일부터 신선한 밀크, 분유, 유장에 대해 자동수입허가관리(“2009년 화물자동수입허가목록”의 목록1, 구체적 목록은 첨부를 참조)를 진행한다고 결정한다.

〈신선한 밀크, 분유와 유장 목록〉

No.	상품 유형	HS 코드	화물명칭
1	신선한 밀크	0401100000	지방분≤1%인 미농축 밀크와 크림(설탕과 기타 감미료를 미첨가)
		0401200000	1%<지방분≤6%인 미농축 밀크와 크림(설탕과 기타 감미료를 미첨가)
		0401300000	지방분>6%인 미농축 밀크와 크림(설탕과 기타 감미료를 미첨가)
2	분유	0402100000	지방분≤1.5%인 고체상태 밀크와 크림(분상, 입상 또는 기타 고체 상태인 농축 및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미첨가)
		0402210000	지방분>1.5%인 설탕 미첨가한 고체상태 밀크와 크림(분상, 입상 또는 기타 고체 상태인 농축 및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미첨가)
		0402290000	지방분>1.5%인 설탕 첨가한 고체상태 밀크와 크림(분상, 입상 또는 기타 고체 상태인 농축 및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
		1901100000	유아용 소매포장 식품(코코아<40%인 분말, 전분 또는 맥아엑스 또는 코코아<5% 유제품)
3	유장	0404100000	유장과 변성유장(농축 및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 여부를 불문)

비고 : HS코드가 1901100000 아래에서 유아용 소매포장 분유만 자동수입허가관리에 포함



□ 상무부 2009년 제50호 공고(발표일 : 2009.7.10)

“수입보고 관리를 시행하는 대량 농산물 목록”을 조절할 데 관한 공고

“대량 농산물 수입보고와 정보발표 관리방법”(상무부 2008년 제10호 법령)에 의해, 상무부는 “수입보고 관리를 시행하는 대량 농산물 목록”(아래 약칭 : “목록”)을 조절한다. 현재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 ① 신선한 밀크, 분유와 유장(구체적 목록은 첨부1를 참조)을 “목록”에 포함시키며 2009년 8월 1일부터 상기 품목에 대해 수입보고 관리를 시행한다.
- ② 상무부는 중국식품특산물수출입상회에 위탁하여 신선한 밀크, 분유와 유장 수입 정보의 수집, 정리, 통합, 분석과 확인 등 일상 업무를 책임지게 한다.
- ③ 신선한 밀크, 분유와 유장의 대외무역경영업체는 반드시 중국식품특산물수출입 상회에 등록하며 등록등기표를 등록지역 성급 및 계획도시 지방 상무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북경의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서 감독 관리하는 업체는 직접 상무부(대외무역사)에 보고해야 한다. 등록등기표는 첨부2를 참조한다.
- ④ 신선한 밀크, 분유와 유장의 대외무역경영업체는 반드시 “대량 농산물 수입보고와 정보발표 관리방법”(상무부 2008년 제10호 법령)에 따라 관련 수입정보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⑤ 상무부는 반달에 한번(공휴일일 경우 순연)에 상무부 웹사이트 “대량 농산물 수입 정보 발표칼럼”에서 관련 수입정보를 발표한다.

첨부1 : 신선한 밀크, 분유와 유장 목록

첨부2 : 대량 농산물 수입보고업체 등록등기표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09년 제125호 공고(발표일 : 2009.12.25)

“수입 유제품 위생증서 관리를 규범화할 데 관한 공고”

수입 유제품의 품질안전을 보증하며 수입 유제품의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출입국동 식물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 “식품안전법” 및 그 실시조례 및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2006년 7월부터 대중국 수출 유제품의 관련 국가주관부서에서 대중국 수출 유제품의 위생증서를 발급할 것을 요구했으며 증서 내용에 대해 통일된 요구를 제출하여 제품원료 공급지역 전염병현황, 제품 가공기술 및 수출국

가 주관부서 감독관리현황 등 내용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각국 주관부서의 적극적 협조 아래에서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호주, 브라질, 폴란드, 덴마크, 그리스, 네덜란드, 미국, 일본, 스위스, 스페인, 뉴질랜드, 칠레 등 국가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대중국 수출 유제품 증서양식을 확인했으며, 증서양식은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웹사이트에서 참조할 수 있다. 증서 확인 작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2009년 9월 4일에 다시 관련 국가 주중대사관에 편지를 보내어 증서를 아직 확인하지 않은 국가에서 될수록 빨리 증서양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2010년 1월 1일부터 모든 대중국 수출 유제품이 입국할 때에 중국 요구에 부합되는 수출국가 정부증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대중국 수출 유제품 무역이 순조롭게 진행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각지 출입국검험검역부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수입 유제품에 첨부되는 위생증서를 검사확인하며 2010년 3월 1일부터 유효한 위생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수입 유제품에 대한 검험검역 신고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3) 통관규정

분유와 유제품의 수입 감독관리조건은 “A”이다. 즉 검험검역부서에서 발급한 “수입화물통관증”을 취득해야 하며 세관은 수입화물통관증에 따라 통관수속을 처리한다.

수입 유제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호주, 브라질, 폴란드, 덴마크, 그리스, 네덜란드, 미국, 일본, 스위스, 스페인, 뉴질랜드, 칠레 등 국가 관련 부서와의 협상 결과 상기 국가의 대중국 수출 유제품은 반드시 상기 정부로부터 고정된 양식의 위생증서를 취득해야 중국 세관에 통관을 신고할 수 있으며, 검험검역에 합격한 후에 수입할 수 있다.

수입 분유와 유제품은 수입지역 검험검역국에서 검험검역 신고수속을 밟아야 하며, 동시에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06년 제44호 공고(수출입 식품, 화장품 라벨



심사제도를 조절할 데 관한 공고)에 따라 수입지역 검험검역부서에서 수입 분유와 유제품의 검험검역을 진행할 때에 라벨내용이 관련 법률, 법규 요구의 부합 여부를 검사하며 품질에 관련된 내용의 진실성을 검사한다. 검험에 합격될 경우에 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검험증명서류에 “라벨은 심사에 합격”을 표기한다. 수입 분유와 유제품 라벨의 관련 사항은 “수출입 포장식품, 화장품 라벨 검험규정(시행)”을 참조한다.

유아용 분유는 특수식용식품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유아용 분유를 수입하기 전에 반드시 수입지역 검험검역국으로부터 특수식용식품의 비준증서를 취득한 후 검험검역부서에 검험검역을 신고할 수 있다.

자. 수산물

해양어업, 위탁가공(원료수입가공) 후에 재수출할 경우에 원료증명을 제출하며, 양식류 제품은 양식지역과 양식과정의 관련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생산가공하는 해수 수산물 원료는 전염병이 없는 지역 또는 오염이 없는 지역에서 공급해야 한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수입 수산물에 대해 검역 심사비준제도를 시행하며, 수입 수산물의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무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검역 심사비준수속을 밟아 “수입동식물검역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수입동식물검역허가증”이 없는 수산물을 수입하지 못한다.

검험검역부서는 수입 수산물을 저장한 모든 저장창고에 대해 심사하여 등록하며, 등록 자격을 취득한 저장창고만 수입 수산물을 저장할 수 있다. 등록 저장창고는 전문 인원을 배치하여 출입고 등기를 책임지고 관련 증빙서류를 검사하며 검험검역부서와의 연락을 책임진다. 저장창고는 제때에 검험검역부서에 이상한 상황을 통보하며 각종 수산물 불법 수입행위를 신고해야 한다.

2010년 7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은 수산물을 수입할 경우에 수입업체는 농업부로부터 “합법 어로제품 통관증명”을 신청해야 한다. 수입할 경우에 수입업체는 세관에 “합법

어로제품 통관증명”을 제출하여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합법어로증명을 시행하는 수산물〉

중문명칭	HS코드	영문명칭	라틴어명칭
냉동 눈다랑어	0303440000	Bigeye tuna	Thunnus obesus
황새치	0302670000 0303610000 0304110000 0304210000 0304910000	Sword fish	Xiphias gladius
참치	0302350000 0303450000	Bluefin tuna	Thunnus maccoyii
치어	0302680000 0303620000 0304120000 0304220000 0304920000	Toothfish	Dissostichus sp

제3절 통관사례

가. 3월 통관사례

1) 밀수분유 사례소개

A세관이 조사한 B그룹회사의 밀수 분유사건은 당사자는 세관 소재지의 분유 수입 신고 가격이 보편적으로 너무 낮으며 세관의 가격자료가 완비되지 않은 등을 이용하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밀수 수입한 것이다. B그룹회사는 홍콩회사를 통해 1,200~1,500달러/톤의 가격(실제가격은 1,875~2,410달러/톤)으로 가짜 상업송장 등 서류를 작성하여 수입 통관수속을 밟아 사건금액은 3,229만 위안이며 탈세액은 440여 만 위안에 도달했다.

※ 낮은 가격으로 통관 신고한 상품은 주로 세관 소재지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너무 낮거나 세관의 가격 DB에 관련화물 가격자료가 없는 상품이다.

2) 요구조항

- “세관법” 제55조 : “수출입 화물의 과세가격은 세관에서 그 화물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심사하여 확정한다. 거래가격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과세가격은 세관에서 법에 의해 추정한다.”
- “세관 수출입 화물 과세가격 사정방법” 제46조 : “납세의무자는 세관에 신고할 때 반드시 본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대로 세관에 상업송장, 계약서,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세관의 요구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사실대로 화물 매매와 관련된 지불증빙 및 신고가격이 진실하며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타 상업증빙, 서면서류와 전자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3) 처벌조항

- “세관법” 제86조 : “수출입 화물, 물품 또는 중계화물, 환적화물, 특송화물을 세관

에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 “세관행정처벌실시조례” 제15조 : “수출입 화물의 품목, 세척번호, 수량, 규격, 가격, 무역방식, 원산지, 출발지, 도착지, 최종목적지 또는 기타 반드시 신고해야 할 항목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각각 아래와 같은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에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 국가 세금 징수에 영향을 줄 경우, 탈세액의 30%에서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수입식품 불법업체(2009.7.17까지)〉

No.	제품	원산지	불법원인	조치
1	乾齊尾羽魚	필리핀	위생증 위조, 무기비소 함량 표준초과	수입 임시중지
2	냉동 돼지제품	미국	락토파민(ractopamine) 검출 또는 중요한 병원균 검출	수입 임시중지
3	냉동 돼지제품	캐나다	락토파민(ractopamine)과 살모넬라균(salmonella) 검출	수입 임시중지
4	냉동 닭발	미국	클로피돌(clopidol) 잔류물 표준초과 또는 중요한 병원균 검출	수입 임시중지
5	냉동 새우	베트남	클로로마이세틴(chloromycetin) 검출	수입 임시중지
6	냉동 돼지홍골, 반제품 돼지창자	미국	락토파민(ractopamine) 검출	수입 임시중지
7	냉동 오징어	미국	중금속 표준초과	정돈 개선
8	냉동 조류제품	브라질	불법 수출	수입 임시중지
9	수산물	태국	태국에 미등록	수입 임시중지
10	유장분(whey mist)	미국	과산화벤조일(benzoyl peroxide) 검출	수입 임시중지
11	치즈	네덜란드	질산염 검출	수입 임시중지



나. 4월 통관사례

1) 사례1 : 수출 통관신고서가 불합격되어 세금환급에 영향을 주는 경우

□ 사례소개

A회사는 일반무역방식으로 B세관에 수입화물의 통관신고를 제출한 후, B세관은 당일에 관세와 증치세를 징수하여 통관수속을 완료시켰지만, 나중에 잘못된 분류로 일부 관세가 누락 징수된 것을 발견하여 A회사에 대해 과세와 증치세를 추가로 징수했다.

A회사는 B세관의 상기 결정에 불복하여 관련 세금을 납부한 후, 상급 세관에 행정재심의를 신청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즉, B세관에서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심사하고 관세를 징수했으며 법에 따라 통관수속을 완료시켰기 때문에 B세관은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행위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또한 상기 수입화물을 모두 판매했고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은 원가에 포함시킬 수 없어 이윤이 손실을 받았다. 그러므로 재심의기관에서 법에 따라 B세관의 세금보충 결정을 취소하고 추가로 징수한 세금을 반환하며 경제손실을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재심의기관은 심리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했다. 즉, 본 사건에서 세금을 적게 징수한 것은 B세관의 원인(세관 분류의 잘못으로 세율 차이가 발생)으로 발생한 것이고, A회사는 규정을 위반한 상황이 없지만 누락 납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이로써 면제할 수 없다. “세관법” 제62조와 “수출입관세조례” 제51조의 관련 규정에 의해 수출입화물이 통관된 후 세관에서 세금을 적게 납부 또는 미납한 것을 발견할 경우, 세금 납부일 또는 화물(물품) 통관일로부터 1년 내에 납세의무자에 대해 세금을 추가로 징수해야 한다. 본 사건에서 B세관이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구체적 행정행위는 “세관법”과 “수출입관세조례”의 상기 규정에 부합된다. 동시에 상기 행정행위는 A회사의 재산권익에 직접적 손실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B세관은 행정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며 A회사의 배상청구를 동의하지 않는다.

재심의기관은 최종적으로 A회사의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고 B세관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구체적 행정행위를 유지한다는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 사례분석

“세관법”은 수출입화물, 출입국물품이 통관 후, 관세를 적게 징수 또는 누락 징수한 것이 발견되면, 세관은 세금 납부일 또는 화물(물품) 통관일로부터 1년 내에 납세의무자에 대해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관세를 적게 징수 또는 누락 징수하게 되었을 경우, 세관은 3년 내에 추징할 수 있다. 만약 관련된 금액이 비교적 많고 납세의무자의 행위가 밀수죄로 인정될 경우, 세관의 소급기한은 3년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잠재적으로 관세를 적게 납부 또는 미납하는 위해성은 기업이 제때에 상품의 원가에 대해 정확히 계산할 수 없어 생산과 판매에 대한 결정에 잘못된 영향을 주게 된다. 그 외에 세관 조사결과 기업이 관세를 적게 납부 또는 미납한 사실이 발견되면 관세 또는 기타 세금을 추징할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해 벌금 또는 기타 처벌을 내리게 되어 기업의 향후 재무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기업이 잠재적으로 관세를 적게 납부 또는 미납하는 경우는 주로 아래와 같다.

- 수입화물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 허위신고 방식으로 수입화물의 수량을 적게 신고 또는 적게 신고할 경우
- 납세해야 할 대외 지급금액을 적게 신고 또는 누락 신고할 경우
- 경외 관련업체 또는 기타 특별관계의 기업으로부터 수입시의 신고가격이 너무 낮을 경우
- 특허권사용료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 상품 분류시 잘못된 낮은 세율의 세칙번호에 포함시켰을 경우
- 과세품을 납세하지 않는 항목으로 수입할 경우
- 국가 면세정책으로 수입한 설비를 면세되지 않는 항목에 사용할 경우 등

2) 사례2 : 세금을 많이 납부하여 부당한 조세부담을 지는 경우

□ 사례소개

2001년에 설립한 A회사의 100% 제품은 수출하며 2002년에 상무부 등 부서에 “허용류



제품을 모두 직접 수출”의 조목으로 수입설비의 면세를 신청했다. 재정부 등 부서는 2002년 10월 1일부터 “제품을 모두 직접 수출하는 허용류 외자투자항목” 아래에서 수입설비는 일률적으로 세금을 징수한 후에 세금을 환급한다고 규정했다.

A회사는 “선 징수, 후 환급” 방식으로 설비의 관세와 증치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A회사의 모든 제품은 원료수입가공의 방식으로 수출하고 그 중에서 5% 정도의 제품은 가공 이월의 방식으로 수출했다.

“선 징수, 후 환급” 정책의 관련 검사와 세금 환급에 관한 방법이 뒤늦게 시행되어 2007년부터 검사하고 세금 환급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검사결과 5% 제품은 가공 이월의 방식으로 수출한 것이 발견되어 A회사는 세금 환급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고 납세한 세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그 원인은 “모든 제품을 직접 수출”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 사례분석

중국 법규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고 세관업무 계획과 세율적용이 적절하지 않아 일부 기업은 세금을 많이 납부하고, 많이 납부한 세금은 반환할 수 없어 불필요한 조세부담을 지게 된다.

실제로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경우는 주로 아래와 같다.

- 세관업무 계획이 적절하지 않아 관세 혜택정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
- 공급업체가 조건에 부합되는 원산지증명을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한 증빙서류가 구비되지 않거나 직접 운송의 조항을 만족시킬 수 없어 수입상품에 FTA 우대세율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
- 상품을 세율이 비교적 높은 세칙번호에 포함시킬 경우
- 신고가격에 납세하지 않을 가격을 포함시킬 경우 등

다. 5월 통관사례

1) 녕파세관 : 수입 포도주 집산지를 구축



절강대주실업유한공사는 녕파세관에 소속된 보세구세관에 2.25만 L 이탈리아산 포도주의 수입을 신고했다. 녕파세관은 “포도주 수입 전용통로”를 거쳐 빠른 속도로 통관시켰다. 최근 녕파포세구는 수입 포도주 거래센터를 건설하고 있으며 녕파세관은 포도주 수입업체의 통관

난점을 실시간으로 해결하며 포도주 전용통로를 개설하고 “포도주 통관지침”을 제공하여 통관신고를 지원하고 있다. 녕파포세구는 다음 단계로 수입 포도주 전시거래빌딩을 건설하고 포도주 온라인 거래플랫폼을 구축하여 2년 내에 연간 포도주 수입량이 250개 컨테이너 이상에 도달하는 2-3개 포도주 수입업체 2-3개와 30개 정도 회원업체(포도주 수입업체, 도매업체, 물류업체 등)를 도입하여 연간 수입액이 10억 위안 규모에 도달할 계획이다. (세관총서, 2010.1.25)

2) 하문세관 : 99% 대만 “0% 관세” 수산물이 하문세관을 통해 수입



2009년 하문세관의 감독 관리를 거쳐 수입된 “0% 관세” 대만 수산물의 화물가치는 126.8만 달러, 수입량은 3,051.2톤으로 각각 전년 대비 14%, 13% 증가했고 면세 세금은 97.95만 위안에 이르렀으며 수입량은 중국 전체 대만 수산물 수입량의 99.27%에 도달했다. 하문세관은 수산물 선박 항행일시가 긴장하고 선적과정이 길

며 적재차량이 많은 특징에 따라 “선 선적, 후 신고”, 선박 검사, 24시간 예약 등 편리한 통관모델을 실시하여 통관시간을 단축시키고 수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했다. (세관총서, 2010.2.5)



3) 심천세관 : 아세안 0% 관세 제품이 대량 수입



심천항구는 아세안 과일의 주요 수입항구이다. 올해 1-2월 심천항구를 통해 수입된 아세안 과일의 수입량과 수입액은 각각 4.37만 톤, 4,985.48만 달러로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53%, 38.96% 증가했다. 아세안 수입과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심천세관은 1회 접수보관 등 편리한 통관규정을 실시하는 동시에 세관인원은 시장조사를 진행하고 과일 수출입업체와 연락하여 화물 통관에서 부닥치는 난점을 제때에 해결했다. (세관총서, 2010.3.18)

4) 잠강세관 : 680병 밀수 양주를 압수



3월 17일, 잠강세관은 680병 HENNESSY X.O 밀수 양주(화물가치 : 약 150만 위안)를 압수하고 3대 밀수용 차량도 압수했다. 상기 밀수 양주의 탈세액은 약 52만 위안에 도달한다. 올해 잠강세관은 4,280병의 포도주, 양주 등 각종 밀수 주류제품(화물가치 : 약 168만 위안)을 압수했다.(세관총서, 2010.3.23)

5) 잠강세관 : 올해 처음으로 해상 밀수 냉동제품을 압수

최근, 잠강세관은 북부만 부근 해역에서 냉동 돼지 족발, 닭발과 닭날개 등 130톤의 밀수 냉동제품(화물가치 : 130만 위안)을 적재한 인도네시아 선박 1척을 압수하여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수입 냉동제품을 압수한 사례는 5건이며 냉동제품은 약 340톤, 화물가치는 340만 위안에 도달했다. 그 중에서 일부 사건은 공장관리부서에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이관했다. (세관총서, 2010.3.30)

6) 청도세관 : 치치하얼 수입 젓소 상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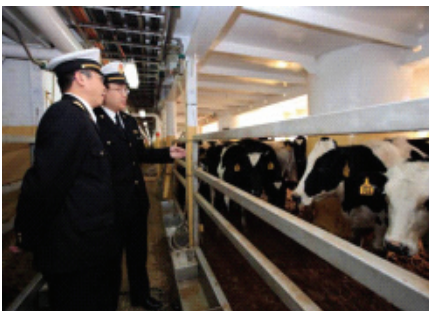
최근, 2,000마리 호주산 젓소는 황도항구에서 통관되었다. 상기 화물은 청도세관에서 치치하얼세관의 증명에 따라 구역통관의 모델방식으로 수입수속을 처리했다. 현재 청도세관은 정주, 서안, 성도, 후허호터 등 24개 세관과 구역통관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세관총서, 2010.4.13)

7) 대련세관 : 20kg 불법 수입 해삼을 조사



최근, 대련세관의 소속 공항세관은 리스크분석을 통해 CA952(동경-대련) 정기편의 여객 수하물에서 20kg 해삼을 발견하여 현재 사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세관총서, 2010.4.15)

8) 남경세관 : 수입 젓소를 빠른 속도로 통관



4월 14일, 호주 2,956마리 젓소를 실은 “OCEAN SWAGMAN”호 화물선이 강소성 연운항에 도착한 후, 남경세관은 특별통관인원을 구성하여 사전 신고, 선박 검사 등 조치를 취하여 감독 관리를 확보하는 동시에 선박 입국, 젓소 상륙의 “제로 대기시간”을 달성했다. (세관총서, 2010.4.15)



9) 하문세관 : 불법으로 수입한 제비집 등을 빈번히 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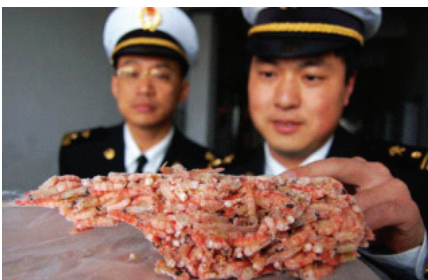
최근, 하문세관은 필리핀에서 복건성 천주시로 부치는 EMS에 허가증이 없고 신고하지 않은 12kg 제비집을 조사했다. 이는 하문세관이 올해 EMS에서 조사한 최대 미신고 제비집 수입사례이다. 올해 하문세관은 불법 우송 또는 관광객이 휴대한 동물제품 수입사례는 364건에 이르렀고 그 중에서 제비집 329.12kg, 해삼 67.01kg, 삭스핀(shark fin) 13.57kg, 전복 6.74kg, 기타 동물 제품 8.67kg에 도달했다. (세관총서, 2010.4.20)

10) 하문세관 : 4.2만 통 불법 버섯 통조림을 조사



최근 하문세관은 검사할 때에 “ISKA” 라벨을 부착한 3,507박스(4.2만 통)의 버섯 통조림(화물가치 : 1.7만 달러)은 연연홍국제식품유한공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상표권리자와 확인한 후 상기 버섯 통조림은 권리침해 제품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지적재산권 세관보호를 신청했다. 현재 상기 화물은 하문세관에 의해 검사하여 압수되었다. (세관총서, 2010.5.14)

11) 대련세관, 남극 새우의 급속 통관을 확보



최근, “안흥해호” 어선은 3개월 해상작업을 통해 남극 새우를 적재하여 대련 항구에 도착했다. 대련세관은 “녹색통로”를 개설하여 “예약 잔업, 수시로 신고, 빠른 심사, 검험, 통관” 등 감독관리 조치를 취하여 39개 컨테이너, 총 1,000여 톤 새

우가 “대기시간이 없고 장애가 없이” 순조롭게 통관되었다. (세관총서, 2010.5.26)

12) 광주세관, 밀수 수입 양주를 압수



최근, 광주세관은 150박스의 밀수 수입 고급 양주를 압수했다. 그 중에서 한 병에 1만 위안을 초과한 20박스 Richard Hennessy, 30박스 Hennessy X.O, 80박스 VSOP, 20박스 MARTELL COGNAC BLEU를 포함하며 전체 화물가치는 169만 위안에 도달한다. (세관총서, 2010.5.27)

13) 최근 이슈사례

□ 상무부 2010년 제22호(발표일 : 2010.4.19)

“감자전분 반덤핑기간 재심입안에 관한 공고”

중국 상무부는 2007년 2월 5일에 2007년 제8호 공고를 발표하여 유럽산 수입 감자전분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징수한다고 결정했다.

2010년 3월 8일, 중국전분공업협회 감자전분위원회는 상무부에 재심신청서를 제출하여 2008년 하반기부터 유럽 생산업체, 수출업체가 중국에 수출하는 감자전분의 반덤핑 정도가 최종 확정된 반덤핑 관세세율을 초과했다고 주장하면서 유럽 생산업체, 수출업체의 반덤핑 정도를 다시 계산하며 관련된 반덤핑 관세세율을 조절할 것을 청구했다.

상무부는 상기 신청을 접수한 후 3월 17일에 재심신청서의 공개문건과 기밀서류의 비기밀 개요를 유럽주중대표단에 전달했으며, 규정한 시간에 관련된 이해관계업체는 상무부에 의견을 제출했다. 상무부는 심사결과 중국전분공업협회 감자전분위원회의 신청서에서 반덤핑 정도가 이미 초과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반덤핑조례” 제49조 규정과 “덤핑 및 덤핑정도 재심점정규칙”의 요구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공고 발표일로부터 유럽산 감자전분에 적용하는 반덤핑조치에 대해 덤핑과 덤핑정도의 재심을



진행한다고 결정했다.

○ 공고 주요내용

- 조사제품

- 제품명칭 : 감자전분(Potato Starch)
- 세척번호 : 11081300(중국수출입세척)

조사제품의 물리특징과 화학특징 및 주요용도는 기존 반덤핑 조사를 진행할 때의 조사제품과 일치하다.

- 재심조사기간과 재심범위

- 조사기간 :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 재심범위 : 유럽산 수입 조사제품의 정상적 가치, 수출가격과 덤핑정도

- 재심절차 : 등기 응소와 평론, 비등기 응소, 설문지 발송, 공청회, 실사조사

□ 상무부 2010년 제26호(발표일 : 2010.4.28)

“미국산 닭고기제품에 대한 반보조 초보재결 공고”

“반보조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무부는 2009년 9월 27일에 입안공고를 발표하여 미국산 닭고기제품(Broiler Products or Chicken Products)에 대해 반보조 입안조사를 진행한다고 결정했다. 조사제품 세척번호 : 02071100, 02071200, 02071311, 02071319, 02071321, 02071329, 02071411, 02071419, 02071421, 02071422, 02071429, 05040021이다.

상무부는 조사결과와 “반보조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초보재결을 아래와 같이 공고했다.

- 초보재결 : 상무부는 조사기간에 상기 미국산 닭고기제품은 보조가 존재하며 중국 국내 닭고기산업에 실질적 손해를 주었으며 보조와 실질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재결한다.

○ 조사제품과 조사범위

- 조사범위 : 미국산 닭고기제품

- 제품명칭 : 닭고기제품(Broiler Products or Chicken Products)
- 주요용도 : 중국 국내시장에서의 주요용도는 식용이며 일반적으로 농산물시장, 슈퍼마켓 등 도소매방식과 음식점 등 채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다.
- 조사제품 세칙번호 : 02071100, 02071200, 02071311, 02071319, 02071321, 02071329, 02071411, 02071419, 02071421, 02071422, 02071429, 05040021

○ 임시 반보조 조치

“반보조 조례” 제29조,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상무부는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 상기 미국산 닭고기제품에 대해 임시 반보조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하며,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상무부의 건의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임시 상쇄관세 보증금의 형식으로 상기 미국산 닭고기제품에 대해 임시 반보조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수입업체가 상기 미국산 닭고기제품을 수입할 때에 세관에 관련된 임시 상쇄관세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임시 상쇄관세 보증금=세관 과세가격×임시 상쇄관세 보증금 비율×(1+수입 증치세 세율)

○ 시행일 : 2010년 4월 30일

라. 6월 통관사례

1) 심천세관, 관광객이 휴대한 2,146개 멩크가족의 입국을 조사

최근 심천세관은 입국 소형 버스에서 신고하지 않은 2,146개 멩크가족을 조사하여 밀수단속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다. (세관총서, 2010.6.4)



2) 대련세관, 8마리 수입 돌고래에 대해 빠른 검험을 진행

6월 4일, 대련세관은 요녕성 해양동물연구기구에서 수입한 약 300만 위안의 8마리 수입 돌고래에 대해 “특별”통관 서비스를 제공했다. 대련항구는 많은 활체 동물의 중요한 수출입 항구로서 대련세관은 컨설팅인원, 서비스하라인, 우선 심사, 24시간 예약 등 조치로 동물 통관에 양호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출입업체와 과학연구기구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세관총서, 2010.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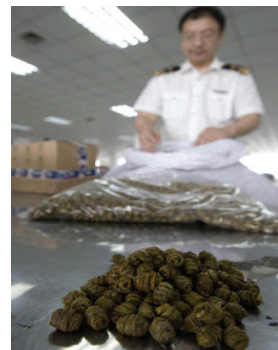
3) 하문세관, 800톤 대만 바나나 통관

최근 하문세관은 8,010박스 대만산 바나나에 대해 “대만과일 전용통로”를 개설하여 우선적으로 검험 신청 접수, 전문인원의 서류 심사, 관세계산, 통관 심사 등 통관조치를 취했다. 수입 대리업체의 소개에 의하면 올해 대만 바나나는 풍작을 거두어 가격이 이전보다 낮았으며 중국시장의 수요량이 많아 800톤 대만 바나나를 구입했다. (세관총서, 2010.6.8)



4) 항주세관, 입국 우편소포에서 말린 석곡을 조사

6월 9일, 항주세관은 입국 우편소포에서 39kg 말린 석곡을 조사했다. 수하인은 관련된 합법적 수속을 제공할 수 없어 말린 석곡에 대해 임시 압류했다. 석곡은 중국 2급 보호의 멸종위기 식물에 속하며 “멸종위기 야생식물 국제무역공약”에 포함된 진귀하고 희소한 식물로서 수출입할 경우에 국가멸종위기 사무실 또는 그 지역 사무실에서 수출입을 허용한다는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신고해야 한다. (세관총서, 2010.6.17)



5) 대련세관, 6박스 일본산 분유를 차단

대련세관에 소속된 단둥세관은 연속 2일 일본산 분유를 6박스 40여 kg 조사했다. 일본에 구제역이 폭발한 후 전염병이 중국에 전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련세관은 x레이장비, 인공검사 등 방법으로 일본산 식품을 중점 조사했다. 중국 관련 규정에 의해 2010년 4월 7일부터 일본산 동물 및 그 제품에 대해 모두 반환 또는 소각 처리를 한다. (세관총서, 2010.6.10)



6) 심천세관, 관광객의 밀수 상아제품을 조사

6월 5일, 심천세관에 소속된 라호세관은 밀수 상아제품의 입국사건을 조사했다. 관광객의 수하물에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4.1kg 상아팔찌(반제품), 4kg 상아조각을 조사했다. (세관총서, 2010.6.17)



마. 7월 통관사례

1) 최근 통관사례

□ 장춘세관, 멸종위기 야생동물 표준을 조사

최근 장춘세관의 우편국사무소는 식품으로 신고한 소포에 바다거북 표본 2개를 조사했다. 바다거북과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 국제무역공약” 첨부에 규정한 일류 야생보호동물에 속하며 이는 장춘세관에서 처음으로 우송채널에서 조사되었다. (세관총서, 2010.6.24)

□ 하문세관, 대만 황소개구리에 대해 빠른 통관수속을 처리

6월 29일, 하문동립원무역유한공사가 하문세관에 수입을 신고한 10,125kg 대만 황소



개구리는 하문부두에 “상륙”했다. 이날 하문시 최고온도는 섭씨 34도였고 세관은 빠른 채널을 개통하여 기업에 사전 세관신고, 감독관리 예약, 현장 검수통관 등 빠른 통관조치를 취하여 황소개구리의 사망률을 낮추었다. 올해 3월 이후, 하문세관은 홍보를 강화하여 대만 농수산물의 빠른 수입통관 조치를 취했다. (세관총서, 2010.7.1)

□ 광주세관, 우편물로 밀수한 136kg 천산갑 비늘조각을 조사

최근, 광주세관의 우편국사무소는 4건의 수입 우편물에서 총중량이 136kg인 천산갑 비늘조각을 조사하여 현재 광주세관 밀수단속국에서 처리하고 있다.

천산갑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 국제무역공약” 첨부 2의 물종이며 중국 2급 보호동물로서 수입물품을 엄격히 제한한다. 중국 “세관법”, “야생동물보호법”,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수출입 관리조례” 등 규정에 의해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그 제품을 불법 수출, 수입 또는 기타 방식으로 밀수할 경우, 세관은 “세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상황이 엄중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만약 수입해야 할 경우, 반드시 멸종위기 물종 수출입 관리기구에서 발급한 수출입을 허용한다는 증명서를 취득해야 하며 세관에서 검수한 후에 통관을 허용한다. (세관총서, 2010.7.14)

□ 청도세관, 북태평양 바다사자의 통관검사를 빠르게 진행

7월 14일, 청도세관은 “사전 통관신고, 현장 검수” 방식으로 청도극지해양세계유한공사가 처음으로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가치가 268만 엔인 1마리 북태평양 바다사자에 대해 빠른 통관수속을 처리했다. (세관총서, 2010.7.16)

□ 의우세관, 진열장에서 수출입을 제한하는 산호제품을 조사

7월 15일, 의우세관은 리스크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도자기 장식품 등 십여 개 상품을 실은 진열장에서 수출입을 제한하는 산호제품을 73개 조사했다.

CITES와 중국 “세관법”, “야생동식물보호법”의 규정에 의해 관련 수입증명이 없으면 무역, 휴대, 우송 등 방식으로 산호물종과 제품을 수출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세관총서, 2010.7.22)

2) 최근 이슈사례

□ 신강 카스세관의 편리한 통관 서비스를 제공

최근 신강 남강지역의 발전 속도가 빠르며 많은 무역업체가 신강 카스에 진출했다. 우루무치세관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까지 카스세관에 등기한 수출입업체는 500개에 도달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67개에 도달하여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

우루무치세관에 소속된 카스세관은 제도화, 표준화의 요구에 따라 처리절차와 수속을 간단하게 하여 기업의 통관원기를 낮추고 항구 효율을 높였다. 현재 새로운 통관모형을 연구하고 구축하여 통관효율을 높였다.

그 외에 카스세관은 남강지역의 특색 농산물의 수출에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주요 업무는 현장에서 24시간 예약통관 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될수록 “무장애 통관”을 실현한다. (세관총서, 2010.7.7)

□ 북경 천축세관이 설립

7월 9일, 천축세관은 북경천축종합보세구에 설립되었다. 천축세관은 북경세관에 소속되며 2010년 3월 1일에 국무원의 정식 비준을 받고 세관총서의 비준을 받아 설립되었다. 관할범위는 북경천축종합보세구이며 북경천축종합보세구의 화물과 업체에 대해 감독 관리, 관세와 기타 비용 징수, 기업등기를 처리, 밀수단속 등 기타 세관업무를 책임진다.

천축세관은 최대한 통관수속을 간단하게 하며 물류가 항구와 보세구 사이의 빠른 유동과 24시간 통관을 실현하며 통관효율을 높인다. (세관총서, 2010.7.7)

□ 녕파세관, “신선한 화물의 빠른 통로” 서비스를 제공

최근 녕파시는 고온날씨가 지속되어 많은 냉동 제품의 수출입업체는 어렵이 많았다. 녕파세관은 “신선한 화물의 빠른 통로”를 개설하여 냉동제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통관 서류를 접수하고 검사하는 등 편리한 통관조치를 취하여 통관시간을 줄였다. (세관총서, 2010.7.15)



□ 녁파세관, “속지 신고, 항구 검사”의 통관모델을 채택

녕파세관의 통계에 의하면 1-6월 “속지 신고, 항구 검사”의 통관모델을 채택한 수출 입화물에서 장강삼각주 기업이 신고한 화물가치는 18.2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4.15% 증가했으며 이러한 통관모델을 채택한 업체는 2,602개에 도달했다.

“속지 신고, 항구 검사”는 세관총세에서 기업의 빠른 통관을 위해 제공하는 일종 통관모델로서 기업이 소재지 세관에 신고하여 통관서류 심사, 관세 납부 등 통관수속을 밟으며, 화물이 항구에 도착한 후에 항구세관에서 화물검사를 진행함으로써 통관효율을 높이고 통관시간을 줄인다. (세관총서, 2010.7.20)

□ 복주세관, 수입화물 통관속도를 60%를 높인다.

7월 28일부터 복주세관은 소속된 마위세관에서 시범으로 수입화물의 분류통관을 진행하게 되어 복주항구 수입화물의 통관속도를 60% 높이게 된다.

분류통관은 기업유형, 상품분류, 가격, 허가증, 무역국가, 항로, 물류정보 등 요소를 종합하여 리스크에 따라 수출입화물을 분류하여 신용이 좋은 기업, 리스크가 낮은 화물은 직접 “빠른 통로”를 통해 통관할 수 있어 통관효율을 크게 높인다.

수입 분류통관도 “낮은 리스크의 빠른 통관”, “낮은 리스크의 서류심사”, “높은 리스크의 중점 심사” 등 3가지 차별화 통관모델을 채택했다. 낮은 리스크의 허가증과 세금비용과 연관이 없는 화물에 대해 컴퓨터 시스템에서 전자심사를 진행한 후 자동으로 통관시킨다. 그중에서 AA류 기업은 “담보 통관” 등 통관조치를 취한다. 수입 분류통관을 시행한 후 복주항구 수입화물의 당일 통관율을 80%로 높일 수 있으며 평균 통관속도는 60% 이상 높아진다. (세관총서, 2010.7.20)

바. 8월 통관사례

1) 광서잠강세관-밀수냉동식품 소각

□ 광서 잠강세관, 61.5톤 황금색 포도상구균이 있는 밀수 냉동제품을 소각

8월 3일, 잠강세관은 61.5톤 병균이 있는 밀수 냉동 소고기, 돼지 위장, 닭다리 등 냉동제품을 집중 소각했다. 상기 밀수 냉동제품은 잠강세관에서 3월 13일에 관할구역에서 조사했으며 화물가치는 약 250만 위안이며 탈세 세금은 68만 위안이다. 잠강출입국검험검역국 검험검역기술센터의 측정결과에 의하면 상기 냉동제품은 황금색 포도상구균이 있다. 중국 관련 규정에 의하면 밀수 냉동제품을 집중 소각, 매립한 후 다시 생석회와 물을 넣어 비등반응을 시켜 소독한다.

2009년부터 잠강세관은 37건의 외국 냉동제품 밀수사건을 조사했으며 냉동제품은 소, 돼지, 닭, 오리 등과 연관되며 중량은 1,278톤에 도달했다. 전염병지역과 원산지증명이 없는 냉동제품에 대해 모두 소각처리를 하며, 비전염병지역의 냉동제품이 검험검역에 합격한 후에 관련 정부부서에 넘겨 처리한다.(세관총서, 2010.8.10)

□ 운남 시창반나세관, 전염병지역 밀수 냉동식품을 조사

7월 7일 시창반나세관 밀수단속분국은 2대 대형 화물차로 운송하는 51,888톤 냉동 닭발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상기 냉동 닭발은 라오스로부터 밀수했으며 화물가치는 70만 위안 이상이고 탈세 세금은 11만 위안이다. 현재 사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기 냉동 닭발을 검험검역부서에 소각처리를 하도록 넘겼다.(세관총서, 2010.8.16)

□ 절강 항주세관, 밀수 상아제품을 조사

최근 항주세관은 수하물, 우편물에서 중량이 1,044g인 상아제품을 조사했다. 신고하지 않고 합법적 수속이 없는 상아제품은 상아조각의 작은 배, 상아조각의 산수 인물과 상아조각의 수성이 각각 1개이었다. 현재 항주세관은 법에 따라 압류했다.(세관총서, 2010.8.24)





□ 길림 장춘세관, 밀수 야생 호랑이 뼈를 조사

최근 장춘세관은 입국 여객통로에서 야생 호랑이 뼈를 조사했다. 총 47개이고 중량은 8.905kg이며 화물가치는 인민폐 49만 위안이다.(세관총서, 2010.8.26)



□ 운남 곤명세관, 220kg 밀수 마른 해삼을 검사

최근 곤명세관은 H986 이동식 대형 컨테이너 검사설비로 밀수로 수입한 마른 해삼 220kg를 조사했다. 상기 화물은 “생선의 배, 복어 가죽, 소금에 절여 말린 생선 가죽”으로 신고했으며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가치가 인민폐 4.5만 위안인 해삼을 4마리 발견했다.(세관총서, 2010.9.3)

2) 최근 이슈사례

□ 중국, 수입 유전자변이 농산물의 관련 규정이 엄격함

7월 30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책임자는 중국 수입 유전자변이 농산물에 대해 엄격한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몇 년 전에 중국의 옥수수 수입량은 매우 적었지만 올해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처음으로 대량 수입했다. 수입 옥수수는 농업과 검험검역부서의 엄격한 심사와 검험에 통과해야 하며 검험검역부서의 감독관리 아래에서 저장, 운송, 지정가공을 진행해야 하며 나머지 원료를 모두 소각 처리해야 한다. 현재 중국업체가 수입하는 옥수수는 사료에 사용하며 사전에 가공업체를 확정한다.

2005-2009년, 중국 대두 누계 수입량은 1.66억 톤이며 대부분은 유전자변이 대두이지만 엄격한 감독관리조치를 통해 두유, 사료의 안전에 불리한 영향이 없었다.(중국품질보, 2010.8.2)

□ 광둥 불산세관, 수입 분류통관을 시작

7월 30일, 광주세관 수입화물 분류통관 개혁은 불산시에서 시범으로 가동했다. 분류통

관은 세관에서 업체 신용수준, 화물품목 가격, 허가 등 각종 요소를 참조하여 화물을 분류함으로써 차별화 통관을 실시하는 것을 가리킨다. 광주세관은 2009년 7월부터 수출화물 분류통관 개혁을 진행했으며 점차 해상운송, 육상운송, 항공운송 등 각종 운송방식의 수출화물에 적용했다. 현재 30% 이상 수출화물의 통관신고는 분류통관 모델을 적용하며 그중에서 84%는 낮은 리스크의 빠른 통관을 실시함으로써 통관효율을 높였다. (중국품질뉴스망, 2010.8.4)



□ 세관총서와 호남성, 합작비망록을 체결

최근 “중부지역발전촉진지원계획”을 실시하고 호남성 경제구조조정과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을 추진하며 호남성 경제발전과 대외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세관총서, 호남성은 밀접한 합작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비망록에 따라 세관총서는 호남성 대외개방과 발전의 수요에 따라 호남성 항공운송업의 발전을 지원하며 항구 중점 프로젝트 건설을 지원하고 항구 효율을 높인다. 호남성 전자항구 및 세관 특별 감독관리구역의 건설과 발전을 지원하고 호남성 우위산업과 특색산업의 발전을 지원한다. (세관총서, 2010.8.6)

□ 중국-한국 FTA협정의 초점은 농산물 시장개방

한국은 중국과 FTA협정을 협상할 때에 농수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양국이 각각 민감하다고 판단하는 10% 항목을 개방대상에서 제외”를 제출했지만 중국에서 거절했다.

중국은 한국이 시행하고 있는 농수산물 조절관세의 상세한 설명을 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했다. 이는 중국이 향후 한국 농산물시장의 개방을 요구할 것이며 한국정부는 농산물 개방의 최소화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한국은 올해 9월에 사전협상을 진행하여 FTA협정 담판 준비 작업을 진행한다. 한국은 농수산물 등 민감한 항목의 보호방안을 중점으로 토론하며 중국은 “특별보장메커니즘”을 중점으로 토론한다. (환구시보, 2010.8.9)



□ 세관총서와 섬서성, 합작비망록을 체결

8월 10일, “내륙형 경제의 개발개방전략 고지를 건설”의 요구와 서부지역 대개발전략세관의 구체적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총서와 섬서성은 합작비망록을 체결했다.

합작비망록에 의해, 세관총서는 섬서성에서 내륙형 개발개방전략 고지를 건설하는 것을 지원, 섬서성 항공항천, 장비제조, 자원가공, 문화, 관광, 현대서비스업 등 6대 산업의 발전을 지원, 섬서성 종합경제실력의 새로운 초월을 지원, 섬서성 핵심구역의 건설발전을 지원, 세관 특별감독관리구역의 발전을 추진, 섬서성 보세가공과 보세물류업의 발전을 지원한다.(세관총서, 2010.8.11)

□ 멸종위기 물종이 포함된 중약을 휴대하여 출입국하는 것을 금지

국가멸종위기물종수출입관리사무실은 최근 많은 출입국 여객과 수출입회사가 중약을 휴대, 우송, 운송하여 출입국할 때에 반드시 그 성분을 검사하도록 주의를 주었다. 만약 호랑이 뼈, 표범 뼈, 무소 뿔, 웅담 가루, 바다거북 껍데기, 대모 껍데기, 상아가루가 포함되면 휴대, 우송 또는 운송하여 출입국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사향, 영양뿔, 목향, 석곡, 천마, 칩향, 육종용 또는 금빛 고비가 포함하면 국가멸종위기물종수출입관리사무실에 수입허가증명을 취득해야 한다.

많은 중국 여객과 수출입업체는 일부 종류의 중약에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 국제무역공약”에서 관리하는 물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모르며 멸종위기 물종성분이 있는 중약을 휴대, 우송 또는 운송하여 출입국할 경우에 관련 수출입증명을 취득하지 않아 그 휴대, 우송, 운송행위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 국제무역공약”과 관련 국가의 법률법규를 위반한다.(임업국 웹사이트, 2010.8.20)

□ 천진세관, 수입화물 분류통관 개혁을 가동

8월 26일, 천진세관은 수입화물 분류통관 개혁을 시범으로 가동했다. 천진세관은 AA급 통관 신고업체의 통관 신청서류를 낮은 리스크 통관서류로 분류하여 몇 분 내에 모든 통관 신고수속을 처리한다.(세관총서, 2010.8.27)

사. 9월 통관사례

1) 최근 통관사례

□ 곤명세관, X레이로 220kg 마른 해삼을 검사

최근 곤명세관은 서여항구에서 H986 이동식 대형 컨테이너 검사설비로 숨겨서 수입한 220kg 마른 해삼을 검사했다. 수입화물은 “생선 배, 복어 껍질, 생선 껍질”로 신고했지만 H986설비로 화물을 스캐닝한 결과, 신고한 화물의 이미지와 부합되지 않아 박스를 열고 검사하여 적재차량에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화물가치가 4.5만 위안인 220kg 해삼을 발견했다. (세관총서, 2010.9.3)

□ 하문세관, 초과 휴대하여 밀수한 317통 외국분유를 검사

9월 8일, 온라인상점 주인은 Meadjohnson, Abbott, Nestle 등 브랜드의 317통 외국산 분유를 휴대하여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고 하문공항에 도착했을 때 하문세관에 의해 조사되었다. 9월 1일부터 중국은 새로운 개인우송물품 수입관세를 시행하여 화물 수입 원가가 높아져 대량의 분유를 휴대하는 방식으로 수입관세를 도피하려 했다.



온라인쇼핑, 통신판매, 해외 대리구매 등 새로운 거래방식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수입화물을 분할하여 개인물품으로 허위 신고하고 세관에서 개인물품에 대한 세수우대 규정을 이용하여 우송, EMS 등 방식으로 수입함으로써 수입화물에 대한 관리를 도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세관총서는 2010년 제43호 공고를 발표하여 2010년 9월 1일부터 개인우송물품의 세금을 조절했다. 기존의 홍콩과 마카오로 우송(또는 상기 지역에서 우송)한 개인물품 가치가 400위안 이내일 경우에 면세하며 기타 지역으로 우송(또는 기타 지역에서 우송)한 개인물품 가치가 500위안 이내일 경우에 면세한다는 규정을 통일적으로 50위안으로 조절했다.

또한 세관총서 2010년 제54호 공고는 주민 관광객은 화물가치가 5,000위안 이내의



개인물품을 휴대할 수 있고 비주민 관광객은 화물가치가 2,000위안 이내의 개인물품을 휴대할 수 있으며 초과된 부분은 모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세관총서, 2010.9.12)

□ 광주세관, 불법 휴대한 하마제품을 조사

9월 14일, 광주세관은 백운공항에서 불법 휴대한 하마제품의 입국사건을 조사했다. “대리석 동물조각 장식품”으로 신고한 16kg 수입화물에 대해 X레이로 검사한 결과 하마제품을 조사했다.



하마 및 하마제품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 국제 무역공약” 첨부 II에 속하는 물종으로서 공약의 보호를 받으며 국제무역을 금지하는 멸종위기 물종제품에 속한다.(세관총서, 2010.9.13)

□ 공북세관, 관공 가이드가 “개미 이사” 방식으로 휴대한 양주를 조사

최근 공북세관은 “개미 이사” 방식으로 휴대한 13명 양주를 조사하여 압수했다. 9월 16일, 공북세관은 입국 관광객팀에 대해 감독 관리를 진행할 때에 20명 관광객에서 10여 명 관광객이 같은 규격과 포장의 Hennessy XO 양주를 1병씩 휴대한 것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관광객들은 관광 가이드의 요구에 의해 양주를 휴대했다. (세관총서, 2010.9.21)



□ 광주세관, 밀수 적포도주를 조사

최근 광주세관은 숨겨서 밀수한 10,808병의 화물가치가 약 30만 위안인 포도주를 조사했으며 탈세액은 약 15만 위안에 도달한다.

광주세관은 희석제로 신고한 화물에 대해 검사한 결과, 그 중에 숨긴 108병 이탈리아산 포도주를 발견했다. 그 수입 포도주는 수입가격이 낮지만 중국시장에서 판매가격은 약

100여 위안에 도달하며 브랜드와 품목이 시장에서 보기 힘들다. (세관총서, 2010.9.26)

□ 우루무치세관, 538장 마멋가죽을 조사

우루무치세관은 9월 22일에 국가에서 보호하는 야생 동물 제품의 밀수 수입사건을 조사하여 538장의 108kg 마멋가죽을 조사했다. 마멋가죽은 외국인 버스로 밀수 입국할 때에 발견했다. 마멋은 국가 2급 보호동물이며 마멋가죽은 국가에서 수입을 금지하는 동물가죽이다. (세관총서, 2010.9.29)



2) 최근 이슈사례

□ 세관총서, 세관 과세비용 전자지급 시스템을 가동

9월 2일, “전국 세관 과세비용 전자지급 시스템 운영가동식”을 상해에서 진행했다. 세관총서는 2007년 8월에 전국 세관 과세비용 전자지급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했으며 “세관총서와 상해시정부 합작비망록”의 중점 프로젝트로 선정되었다. 본 시스템의 구축은 세관 분류통관과 전자문서 개혁 프로젝트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세관 과세비용 지급업무 전산화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한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전자상거래로의 발전이다.

과세비용의 전자지급 시스템은 국가 세금 안전을 보호하며 납세인의 납세비용을 줄이며 은행업이 서비스분야를 확대할 수 있게 한다. 세관총서의 계획에 의하면 상기 시스템은 장강삼각주지역의 상해, 남경, 항주, Ningbo 관구에서 시범 운용한 후에 전국 범위에서 보급한다. (세관총서, 2010.9.3)

□ 항주세관, 수입 해산물에 대해 통관 “녹색통로”를 개설

항주세관은 수입 해산물에 대해 통관 “녹색통로”를 개설하여 전문 감독 관리를 실행하며 통관시간을 단축시켰다. “녹색통로”는 항주세관에서 해산물의 빠른 통관



을 위해 개설한 “신선한 화물 녹색통로”이다. 항주세관은 사전신고, 즉시검수, “선 통관, 후 징세” 등 방식으로 신선한 화물의 빠른 통관을 실시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신선한 화물 녹색통로”를 개설한 후 상반기에 88.4톤의 신선한 화물(화물가치 : 473.6만 위안)의 빠른 통관을 진행했다.(세관총서, 2010.9.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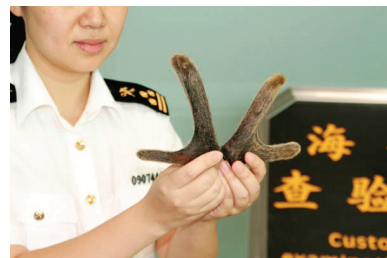
□ Ningbo Customs, 화동지역 수입 포도주 집산지를 건설

통계에 의하면 1-8월 Ningbo Customs는 누계 256.5만 리트 포도주를 수입하여 전년 동기 대비 57.4배 증가했으며 Ningbo항구 포도주 수입량의 69.9%를 차지했다.

2009년 11월, Ningbo Customs는 “포도주통관지침”을 작성했다. 2009년 11월 12일, Ningbo Customs는 중국식품박람회 전문 인원을 파견하여 현장에서 홍보 매뉴얼을 발급하고 세관정책과 통관조치를 홍보했으며 포도주 수입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다. 2010년 4월 22일, Ningbo Customs는 심천세관, 광주세관, 하문세관을 고찰하여 포도주 수입의 서류심사, 가격심사, 감독 관리와 편의조치 등을 파악했다. 8월 말까지 Ningbo Customs 수입포도주 시장에 등록된 업체는 43개이며 현재 등록을 협상 중인 업체가 10여 개가 된다. 또한 포도주 전시센터의 면적은 약 12,000평방미터이며 프랑스, 이탈리아, 칠레, 호주, 미국 등 10여 개 국가의 70여 개 포도주 브랜드가 전시되고 있다. (세관총서, 2010.9.15)

□ Daerun Customs, 불법 수출 녹용을 검사

9월 26일, Daerun Customs는 공항에서 녹용을 감추어 수입한 사건을 조사하여 3박스의 꽃사슴 녹용을 조사했다. 녹용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제품이며 중국에서 제한하는 수출제품이다. Daerun Customs는 중국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녹용을 압류하여 조사처리하고 있다.(세관총서, 2010.9.30)



아. 10월 통관사례

1) 최근 통관사례

□ 공북세관, 올해 최대 냉동제품 밀수사건을 조사

최근 공북세관은 올해 최대 냉동제품 밀수사건을 조사하여 밀수한 483톤의 냉동 닭다리, 닭신장 등 냉동제품(화물가치: 약 800만 위안)을 조사했다. 공북세관 밀수단속선박은 주해 해수면에서 1척 선박을 탈취한 후 상기 밀수 냉동제품을 수사했다. (세관총서, 2010.10.13)



□ 천진세관, 3만 병 밀수 적포도주를 조사

최근 천진세관은 허위로 품목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밀수한 적포도주를 조사했다. 이번 밀수사건에서 26개 브랜드와 연관되는 28,872병 적포도주를 발견했다. (세관총서, 2010.10.14)



□ 잠강세관, 무소 뿌리 밀수사건을 조사

최근 잠강세관은 소라 조가비에 납지로 포장한 소 뿌리와 비슷하고 냄새가 특이한 물품을 발견하여 상세하게 조사한 결과 수입화물에 13.4kg 무소 뿌리와 비슷한 물품을 발견했다. 그 후에 화남야생동물물종감정센터의 감정에 의하면 조사한 화물은 무소과 동물의 뿌리제품이고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물종 국제무역공약(CITES)” 첨부 I에서 보호하는 동물제품으로서 수출입 금지물품이다. 현재 잠강세관은 입안수사를 진행했으며 3명 당사자에 대해 형사구류를 실시했다. (세관총서, 2010.10.18)



□ 대련세관, 30kg 진귀한 고라니 녹용을 조사

최근 대련세관은 공항에서 녹용을 은닉하여 입국한 사건을 조사하여 30kg 진귀한 고라니 녹용을 탈취했다. 고라니는 국가에서 보호하는 2급 멸종위기 야생동물로서 그 제품은 국가에서 출입국을 제한하는 제품이다. 대련세관은 중국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고라니 녹용을 임시 압수하여 처리했다. (세관총서, 2010.10.18)



□ 심천라호세관, 관광객 침향 밀수사건을 조사

최근 심천라호세관은 1명의 홍콩 관광객으로부터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휴대한 7.8kg 침향을 조사했다. 침향은 국가 멸종위기 식물로서 일종 진귀한 목재 또는 중약재로 사용되며 “식물 다이아몬드”라고 부르며 희소한 고급 향료이다.

중국 관련 규정에 따라 침향과 그 제품은 국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품목에 속하며 국가 2급 멸종위기 진귀한 식물에 속하여 수출입할 경우에 국가멸종위기물종수출입관리사무실에서 발급하는 “멸종위기물종수출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불법 수출입 또는 기타 방식으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그 제품을 밀수할 경우, 세관은 “세관법”, “야생동식물보호법” 등 법률, 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엄중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 당사자에 대해 형사책임도 추궁한다. (세관총서, 2010.10.19)

□ 심천세관, 283건의 야생동물 및 그 제품 밀수사건을 조사

심천세관은 야생동물 및 그 제품의 불법 밀수범죄를 단속하여 283건 밀수사건을 조사했으며 100kg 이상의 야생동물 및 그 제품을 보호했다. 진귀한 야생동물자원을 보호하며 그 불법 밀수활동을 엄격히 단속하기 위해 심천세관은 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빠른 통보체계를 구축하여 단속효과를 높였다. 동시에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출입국현장에 멸종위기 동식물 통관과 관련된



법률을 홍보하고 홍보자료 발급, 자문 핫라인 개통 등 형식으로 출입국 관광객들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물종 국제무역공약”, “세관법” 등 관련 법률, 법규를 알게 하고 야생동물 관련 규정을 지키도록 했다. (세관총서, 2010.10.27)

□ 광주세관, 삭스핀, 전복, 제비집을 조사

10월 20일, 광주세관 산하 천하역 세관은 관광객이 신고하지 않은 고급 식품을 과량 휴대한 사건을 조사하여 1명 중국 관광객의 수하물에서 과량 휴대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3kg 삭스핀, 6kg 전복, 17.5kg 제비집(화물가치: 약 10.2만 위안)을 조사했다.

세관의 규정에 따라 입국 주민관광객이 경외에서 취득한 개인용 입국물품의 가치가 5,000위안 인민폐(5,000위안을 포함) 미만일 경우, 세관은 면세 통관을 허용한다. 그 중에서 단일 품목은 자체사용, 합리적인 수량으로 제한하지만 담배제품, 알코올제품 및 국가에서 반드시 징세한다고 규정한 20가지 상품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자체사용의 합리적인 수량범위를 초과할 경우, 세관은 반품할 수 있으며,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세관행정처벌실시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세관총서, 2010.10.27)

□ 광주세관, 20kg 적색 산호를 탈취

최근 광주세관 산하 천하역 세관은 1명 외국 관광객의 수하물에서 신고하지 않은 20kg 적색 산호를 수사했다. 당사자는 공예품 가공에 사용하며 어떠한 관련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했다.



적색 산호는 중국 1급 보호 수생야생동물로서 제한류 출입국 멸종위기 물종이다. 과학연구 등 특수상황으로 포획, 양식, 판매, 구매, 이용, 운송, 출입국할 경우, 어업 행정주관부서에 신청하여 국무원 어업 행정주관부서의 관련된 특별허가증을 취득해야 통관될 수 있다. (세관총서, 2010.11.2)



2) 최근 이슈사례

□ 장가항항구, 화물가치가 20.8만 달러의 황마를 최초로 수입

10월 13일, 장가항검험검역국 보세구사무소는 316톤 방글라데시아산 황마의 검험신청을 접수했다. 이는 장가항항구가 처음으로 황마를 수입한 것이다. 현재 프랑스, 벨기에 등 국가의 여러 회사는 장가항 보세구에 마섬유 수출입업무를 개설했다. 올해 1-9월, 장가항검험검역국 보세구사무소에서 검험신청을 접수한 마섬유는 2.4만 톤, 3,600만 달러로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0%, 17% 증가했다. 장가항보세구는 장강삼각주지역에서 영향력이 가장 높은 수입마섬유 창고저장기지로 발전하고 있다. (강소뉴스망, 2010.10.15)

□ 복건 석정항구, 대만산 자라알 대량 수입

중국-대만 경제협력기본협약서(ECFA)가 효력을 발생한 후 복건 천주 석정항구는 중국에서 대만산 자라알 최대 수입항구와 집산지로 되었다. 1-9월, 천주 석정항구에서 수입한 대만산 자라알은 1.56억 개로서 전년 동기 대비 79.8% 증가하여 수입량은 중국에서 수입한 대만산 자라알의 75%를 차지했다.



천주검험검역국은 대만산 자라알에 대해 30일 검역격리를 진행하지 않고 화물현장의 빠른 검험검역과 감독관리 창고의 집중검사 등 조치로 빠른 통관을 실행했다. 현재 대만산 자라알의 수입관세는 20%이지만 2011년 1월 1일부터 관세혜택을 받으며 3년 내에 0%로 하락된다. (중국뉴스망, 2010.10.19)

□ ECFA협약서 효력을 발생, 하문항구로부터 수입한 대만산 과일 70% 급증

중국-대만 경제협력기본협약서(ECFA)가 효력을 발생한 첫 달에 하문세관으로부터 수입한 대만산 과일이 급증했다. ECFA협약서는 9월 12일에 효력을 발생했고 10월 11일까지 하문세관으로부터 588.94톤, 43.13만 달러의 대만산 과일을 수입하여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8.58%, 36.83% 증가했으며 주로 포멜로(Pomelo), 자몽, 파이네플 등 13개 품목을 수입했다. 주요 수입품목과 비례는 지난해보다 뚜렷한 변화가 없지만 매년 평균 수입량은 15.92톤으로 23.03% 증가했다. (중국방송망, 2010.10.19)

□ 중국-코스타리카 FTA협정은 빠르면 내년 초에 실시

중국-코스타리카 FTA협정은 양국 무역에서 커피, 바나나, 화훼, 소고기 등을 포함한 90% 이상 상품에 대해 단계별로 관세를 감면하지만 설탕, 쌀 등 상대적으로 민간한 상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코스타리카는 칠레, 페루 다음으로 중국과 FTA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된다. (세관총서, 2010.10.28)

□ 160톤 배추 청도항구에서 한국으로 해운

10월 23일, 요녕심양대민둔농산물물류센터로부터 현지 채소 도매업체는 한국으로부터 160톤의 배추 주문을 받아 최근에 청도항구로부터 한국으로 운송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은 포기당 중량은 2.5kg 정도인 배추를 요구한다. 채소 도매업체가 구입한 배추를 한국에 운송된 후 가격은 배로 증가한다. (중국품질뉴스망, 2010.10.29)



□ 우루무치세관, 최초 수입 말에 대해 빠른 통관을 진행

10월 23일, 우루무치세관 산하 아룩태세관은 211마리 말에 대해 빠른 통관수속을 진행했다. 가축제품의 특별한 통관요구에 대해 아룩태세관은 신선한 제품 전용통로를 개설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빠른 통관을 진행했다. (세관총서, 2010.10.29)





자. 11월 통관사례

1) 최근 통관사례

□ 심천세관, 냉동 제품 밀수사건을 조사

11월 5일, 심천세관은 냉동 제품을 밀수하는 선박이 입국하는 단서를 받아 대붕만 해역에 세관밀수단속정을 파견한 후 밀수협이가 있는 선박을 발견했다. 선박 선창에서 약 500톤의 냉동 닭발 등 냉동 제품을 발견했다.

11월 8일, 같은 해역에서 화물선이 세관의 감독범위에 들어와 세관 밀수단속경찰은 밀수협이 화물선을 가로막고 약 370톤의 냉동 제품을 수사했다. (세관총서, 2010. 11. 11)

□ 곤명세관, 국가 일류 보호 동물인 구렁이를 수사

11월 9일, 곤명세관은 차량 출입국 통로에서 출입국 차량에 대해 검사할 때에 화물트럭 운전실에서 의심스러운 박스를 발견했고 박스에 13.3kg 구렁이 한 마리를 발견했다. 구렁이는 CITES 첨부2에 속하는 보호물종으로서 국제무역의 제한을 받는다. 현재 본 사건은 삼림공안부서에 이송하여 조사처리를 하고 있다. (세관총서, 2010. 11. 12)

□ 곤명세관 올해 270여 톤 밀수 냉동제품을 조사

최근 곤명세관 소속 시샹반나세관은 관할구역 변경지역에서 2건의 밀수 냉동제품을 조사했으며 화물가치가 31만 톤에 달하는 17톤의 냉동 닭고기제품을 조사했다.

곤명세관은 올해부터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관할구역 변경지역에 대해 밀수사건을 단속하여 27건의 냉동제품 밀수사건을 조사했고 밀수한 냉동제품은 270여 톤, 화물가치는 230여 만 위안에 도달했다. 조사한 냉동제품은 주로 닭다리, 닭날개, 소 위장, 돼지 머리 등이며 모두 동남아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이다. 현재 조사된 전염병지역 냉동제품은 관련요구에 따라 무공해 소각처리를 진행했다.

□ 심천세관, 보름동안 1,600톤 밀수 냉동제품을 조사

심천세관은 보름동안 화물가치가 3,000여 만 위안인 1,600톤 닭다리, 닭날개 등 밀수 냉동제품을 조사했다.

원단, 설날이 다가오면서 현재 중국 국내시장의 육류제품 수요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냉동 닭다리, 닭날개, 동물내장 등 냉동제품은 외국시장에서 판매가격이 비교적 낮아 국내외 시장의 가격 차이로 밀수활동이 발생하고 있다.

심천세관은 현장검사를 강화하여 전염병지역 등에서 공급하는 냉동제품 밀수사건을 단속하고 있다. 올해 11월 4일부터 20일 사이에 심천세관은 6건 냉동제품 밀수사건을 조사하여 1,600톤의 냉동 닭다리 등 제품을 압수했다.

2) 최근 이슈사례

□ 천주세관, 대만산 중화 자라알 수입량은 전체 수입량의 75%를 차지

천주세관의 최신통계에 의하면 올해 1-10월 천주세관을 통해 수입한 대만산 중화 자라알 수입량은 3.59만 박스로서 중국 전체 수입량의 75%를 차지했다. 2009년 3월부터 대만산 중화 자라알이 천주세관을 통해 수입한 후 2010년 10월 31일까지 5.65만 박스를 수입했으며 징수세금은 1,097만 위안에 도달했다. 그 중에서 올해 1-10월 감독 관리를 받으면서 수입한 자라알은 897.13톤, 화물가치는 258.37만 달러, 징수세금은 704.33만 달러로 각각 전년 대비 70%, 86%, 78% 증가했다.

중화 자라알은 운송조건에 대한 요구가 까다롭고 일반적으로 소량으로 수입하여 통관 시효, 하역작업 등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높다. 그러므로 천주세관은 통관부서에 전문 창구를 설정, 증빙서류 우선으로 심사하며 검사부서에 “24시간” 예약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자라알 생존율을 높였다. (세관총서, 2010.11.19)

□ 중국-러시아 세관 지적재산권 법률집행 합작비망록을 체결

중국 세관총서와 러시아연방 세관서는 러시아에서 “중국 세관총서와 러시아연방 세관



서 지적재산권 변경 법률집행 협력을 강화할 데 관한 비망록”을 체결하여 통관 감독관리 질서의 규범화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편리한 통관조치를 실시하며 통관작업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세관 가격평가 협력을 진행한다고 약속했다.

올해 1-19월 중국-러시아 쌍변무역은 급속 증가했다. 세관 통계에 의하면 1-10월 중국과 러시아의 쌍변무역 수출입액은 45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3.4% 증가하여 중국 전체 수출입액 성장속도보다 7.1퍼센트 높았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 변경지역에서 항구는 22개가 된다. (세관총서, 2010.11.25)

제4절 통관부서 연락처

□ 주요 세관 연락처

세관	전화	홈페이지	비고
세관총서	010-65194114	www.customs.gov.cn	
광둥세관분서	020-81108000	http://guangdong_sub.customs.gov.cn	
북경세관	010-85736114	http://beijing.customs.gov.cn	
천진세관	022-65307110	http://tianjin.customs.gov.cn	
상해세관	021-68890000	http://shanghai.customs.gov.cn	
중경세관	023-67709438	http://chongqing.customs.gov.cn	
장춘세관	0431-84601114	http://changchun.customs.gov.cn	
심양세관	024-22695555	http://shenyang.customs.gov.cn	
하얼빈세관	0451-82381888	http://harbin.customs.gov.cn	
대련세관	0411-82618114	http://dalian.customs.gov.cn	
청도세관	0532-82955112	http://qingdao.customs.gov.cn	
항주세관	0571-87630366	http://hangzhou.customs.gov.cn	
남경세관	025-84422114	http://nanjing.customs.gov.cn	
복주세관	0591-87081666	http://fuzhou.customs.gov.cn	
하문세관	0592-2355122	http://xiamen.customs.gov.cn	
성도세관	028-86401114	http://chengdu.customs.gov.cn	
심천세관	0755-84398110	http://shenzhen.customs.gov.cn	
광주세관	020-81102000	http://guangzhou.customs.gov.cn	
잠강세관	0759-3251003	http://zhanjiang.customs.gov.cn	
산두세관	0754-8198110	http://shantou.customs.gov.cn	
곤명세관	0871-3016999	http://kunming.customs.gov.cn	
서안세관	029-83196114	http://xian.customs.gov.cn	
석가장세관	0311-87869599	http://shijiazhuang.customs.gov.cn	
태원세관	0351-7110110	http://taiyuan.customs.gov.cn	
후허호트세관	0471-6527647	http://huhehaote.customs.gov.cn	
만주리세관	070-2299114	http://manzhouli.customs.gov.cn	
닝파세관	0574-89090000	http://ningbo.customs.gov.cn	



세관	전화	홈페이지	비고
합비세관	0551-5321116	http://hefei.customs.gov.cn	
남창세관	0791-6307599	http://nanchang.customs.gov.cn	
정주세관	0371-65599000	http://zhengzhou.customs.gov.cn	
무한세관	027-82768114	http://wuhan.customs.gov.cn	
장사세관	0731-4781688	http://changsha.customs.gov.cn	
공북세관	0756-8885821	http://gongbei.customs.gov.cn	
황포세관	020-82130000	http://huangpu.customs.gov.cn	
강문세관	0750-3263888	http://jiangmen.customs.gov.cn	
남녕세관	0771-5368114	http://nanning.customs.gov.cn	
해구세관	0898-68516888	http://haikou.customs.gov.cn	
귀양세관	0851-5786114	http://guiyang.customs.gov.cn	
라사세관	0891-6283026	http://lasa.customs.gov.cn	
란주세관	0931-7705000	http://lanzhou.customs.gov.cn	
은천세관	0951-5679114	http://yinchuan.customs.gov.cn	
우루무치세관	0991-3627114	http://urumqi.customs.gov.cn	
광둥 광주세관	020-81103999		업무자문
광둥 심천세관	0755-84398110		업무자문
광둥 공북세관	0756-8111411		세관관장
광둥 담강세관	0759-3251092		업무자문
광둥 강문세관	0750-3263333		업무자문
광둥 황포세관	020-82130000		업무자문
광둥 산두세관	0754-88198110		업무자문
북경 중관촌세관	010-85735015/4		徐健 과장/ 孙迪 부과장
북경 개발구세관	010-85735371		朱卫文 과장/ 汪凯峰 부과장
북경 수도공항세관	010-85736278		胡旭 과장
천진 신항세관	022-65308001		업무자문
천진 개발구세관	022-65206117		업무자문
천진 보세구세관	022-84202890		업무자문
천진 계문세관	022-29145946		업무자문
천진 무청세관	022-82121918		업무자문
천진 공항세관	022-84202163		수입과

주요 수출국의 수출현안 모니터링

세관	전화	홈페이지	비고
산서 대동세관	0352-5056502		업무자문
산서 후마세관	0357-4218865		업무자문
산서 태원공항세관	0351-8934799		업무자문
상해 포동공항세관	021-68841118		
상해 오송세관	021-56126060		
상해 포강세관	021-35308822		
상해 외고교항구세관	021-68892700		
상해 양산세관	021-68281166		
상해 외고교보세구세관	021-50480909		
상해 경제기술개발구세관	021-64302112		
상해 봉현세관	021-33655500		
상해 신장세관	021-64121418		
상해 가정세관	021-59167890		
상해 금산세관	021-68894000		
상해 청포세관	021-59711112		
상해 송강세관	021-57826888		
산동 연대세관	0535-6666200		
산동 제남세관	0531-82777666		
산동 황도세관	0532-86900333		
산동 일조세관	0633-8783008		
산동 위해세관	0631-5231947		
산동 용구세관	0535-8819666		
산동 치박세관	0533-2184821		
산동 영성세관	0631-7587600		
산동 유방세관	0536-8238921		
산동 제녕세관	0537-2026030		
산동 태안세관	0538-6993051		
산동 임이세관	0539-3097887		
산동 하택세관	0530-5969926		
산동 유정공항세관	0532-89228019		
산동 동영세관	0546-8087567		
산동 래주세관	0535-2291800		
산동 봉래세관	0535-5618100		



세관	전화	홈페이지	비고
산둥 덕주세관	0534-2568012		
산둥 대항세관	0532-82955112		
하북 진황도세관	0335-8512000		
하북 당산세관	0315-2207050		
하북 보정세관	0312-3193099		
하북 랑방세관	0316-6067114		
하북 창주세관	0317-2199000		
내몽고 이련세관	0471-4167213		
내몽고 포두세관	0472-5995114		
내몽고 동우세관	0479-3444222		
내몽고 어얼더스세관	0477-2232138		
요녕 심양개발구세관	024-25815088		
요녕 금주세관	0416-3882299		
요녕 호로도세관	0429-3116517		
요녕 심양도선공항세관	024-23695900		
흑룡강 수분하세관	0453-3933700		
흑룡강 흑하세관	0456-8221912		
흑룡강 동녕세관	0453-3679800		
흑룡강 동강세관	0454-2922908		
흑룡강 가목사세관	0454-8686950		
흑룡강 목단강세관	0453-6258371		
흑룡강 밀산세관	0467-5227745		
흑룡강 호림세관	0467-5833333		
흑룡강 가음세관	0458-2624096		
흑룡강 부금세관	0454-2330096		
흑룡강 무원세관	0454-2121633		
흑룡강 라북세관	0468-8631959		
흑룡강 대경세관	0459-6392350		
흑룡강 치치하얼세관	0452-2456060		
흑룡강 막하세관	0457-2887871		
강소 소주세관	0512-68298589		
강소 소주공업단지세관	0512-6991000		
강소 태주세관	0523-6881114		

주요 수출국의 수출현안 모니터링

세관	전화	홈페이지	비고
강소 여고세관	0513-68162009		
강소 강음세관	0510-86856001		
강소 연운항세관	0518-2368114		
강소 남통세관	0513-85055800		
강소 장가항세관	0512-58695888		
강소 장가항보세구세관	0512-58695218		
강소 진강세관	0511-5318114		
강소 상주세관	0519-5139114		
강소 무석세관	0510-68933114		
강소 서주세관	0516-83738000		
강소 연성세관	0515-8242211		
강소 회안세관	0517-3649532		
강소 양주세관	0514-7527780		
절강 온주세관	0577-88377888		
절강 주산세관	0580-2080860		
절강 대주세관	0576-88686000		
절강 소흥세관	0575-85126660		
절강 호주세관	0572-2399558		
절강 가흥세관	0573-82191616		
절강 금화세관	0579-83185264		
절강 소산공항세관	0571-86660114		
절강 구주세관	0570-3115666		
절강 여수세관	0578-2675099		
절강 의우세관	0579-85290020		
절강 항주세관 소산사무소	0571-22820114		
절강 항주세관 부양사무소	0571-63365588		
절강 항주세관 여항사무소	0571-86137066		
절강 항주세관 우체국사무소	0571-87800568		
절강 Ningbo개발구 세관사무소	0574-86228105		
절강 여요 세관사무소	0574-62762993		
절강 자계 세관사무소	0574-63013603		
절강 은주 세관사무소	0574-89095800		
절강 진해세관	0574-86270641		



세관	전화	홈페이지	비고
절강 Ningbo보세구세관	0574-86869110		
절강 복륜세관	0574-86889040		
절강 대사세관	0574-86762551		
절강 상산세관	0574-65769787		
절강 Ningbo공항세관	0574-88259151		
안휘 무호세관	0553-5840678		
안휘 안경세관	0556-5572568		
안휘 마안산세관	0555-2324700		
안휘 황산세관	0559-2346288		
안휘 방부세관	0552-4039963		
안휘 동릉세관	0562-2835295		
안휘 지주세관	0566-2087050		
복건 마미세관	0591-83980020		
복건 복청세관	0591-85365630		
복건 포천세관	0594-2688757		
복건 복주보세구세관	0591-28327818		
복건 녕덕세관	0593-2954201		
복건 삼명세관	0598-8636156		
복건 남평세관	0599-8620440		
복건 무이산세관	0599-5137999		
복건 복주세관 장락공항사무소	0591-28013940		
복건 복주세관 우체국사무소	0591-87587514		
강서 구강세관	0792-8226999		
강서 감주세관	0797-8216899		
강서 길안세관	0796-8105009		
강서 경덕진세관	0798-8518707		
강서 신여세관	0790-6468668		
강서 남창세관 남창시고신구사무소	0791-8194639		
강서 남창세관 용남사무소	0797-3555999		
강서 남창세관 남창창북국제공항사무소	0791-3960981		

주요 수출국의 수출현안 모니터링

세관	전화	홈페이지	비고
강서 남창세관 상요사무소	0793-8035721		
하남 남양세관	0377-63125503		
하남 주구세관	0394-8304808		
하남 정주공항세관	0371-68511606		
하남 정주세관 안양사무소	0372-3286012		
하남 정주세관 상구사무소	0370-3285522		
하남 정주세관 경제기술개발구사무소	0371-66866075		
하남 정주세관 철도동역사무소	0371-66368685		
호북 형주세관	0716-8258355		
호북 의창세관	0717-6330445		
호북 무한경제기술개발구세관	027-84297600		
호북 황석세관	0714-6351136		
호북 상번세관	0710-3224922		
호북 십언세관	0719-8102266		
호북 무한동호신기술개발구세관	027-87788763		
호북 무한세관 강한사무소	027-82768112		
호북 무한세관 공항사무소	027-82818052		
호북 우채국사무소	027-85818052		
호남 악양세관	0730-8841906		
호남 상덕세관	0736-7709000		
호남 주주세관	0731-27731179		
호남 소산세관	0731-52813760		
광동 화도세관	020-36882666		
광동 심천세관	0755-84398110		
광동 소관세관	0751-8884250		
광동 불산세관	0757-30375324		
광동 중화세관	020-37961673		
광동 청원세관	0763-3860663		
광동 번우세관	020-34623601		
광동 남사세관	020-34683389		



세관	전화	홈페이지	비고
광둥 백운공항세관	020-36062079		
광둥 라강사무소	020-31102908		
광둥 하원세관	0762-3361353		
광둥 대산세관	020-31103199		
광둥 조경세관	0758-2966888		
광둥 천하역세관	020-38774006		
광둥 내항사무소	020-34310517		
광둥 심천 라호세관	0755-82322409		
광둥 심천 문금도세관	0755-84396110		
광둥 심천 황강세관	0755-83391461		
광둥 심천 사두각세관	0755-25550423		
광둥 심천 사구세관	0755-84395370		
광둥 심천 대봉세관	0755-25293110		
광둥 심천 공항세관	0755-27776400		
광둥 심천 복천보세구세관	0755-84395110		
광둥 해주항세관	0752-5578110		
광둥 해동세관	0752-8878110		
광둥 심천 순강세관	0755-84397622		
광둥 심천 남두세관	0755-27848089		
광둥 심천 사만세관	0755-28948110		
광둥 심천 포길세관	0755-84397889		
광둥 심천 매림세관	0755-83152909		
광둥 심천 동락세관	0755-27660103		
광둥 해주세관	0755-84393110		
광둥 심천만세관	0755-84393110		
광서 북해세관	0779-2026398		
광서 흙주세관	0777-2362139		
광서 방성세관	0770-2823745		
광서 오주세관	0774-2026822		
광서 귀항세관	0775-4550114		
광서 류주세관	0772-2616523		
광서 계림세관	0773-2842000		
광서 동흥세관	0770-7666681		

주요 수출국의 수출현안 모니터링

세관	전화	홈페이지	비고
광서 빙상세관	0771-8520730		
광서 수구세관	0771-8822839		
광서 용방세관	0776-6215020		
해남 해구미란공항세관	0898-65721866		
해남 팔소세관	0898-25522622		
해남 삼아세관	0898-88673088		
해남 양포경제개발구세관	0898-28822100		
해남 양도보세항구세관	0898-28822100		
해남 청란세관	0898-63328701		
사천 반지화세관	18982329822		
사천 면양세관	0816-2361373		
사천 락산세관	0833-2444097		
사천 공항세관	028-61912626		
사천 남충사무소	0817-2662877		
사천 의빈사무소	0831-2221929		
사천 로주사무소	0830-3639110		
사천 자공사무소	0813-8104222		
운남 서려세관	692-4141820		
운남 맹정세관	0883-6516328		
운남 반납세관	0691-2144982		
운남 하구세관	0873-3426969		
운남 천보세관	0876-6622636		
운남 대리세관	0872-2155116		
운남 등충세관	0871-3016301		
운남 곤명공항세관	0871-3016301		
운남 원정세관	0692-5151101		
운남 망시세관	0692-2124783		
운남 사모세관	0879-2161769		
운남 타락세관	0871-3016301		
운남 맹랍세관	0691-8122828		
운남 잉강세관	0871-3016301		
운남 장봉세관	0871-3016301		
운남 금수하세관	0873-5226805		



세관	전화	홈페이지	비고
운남 남산세관	0883-6631139		
운남 맹련세관	0879-8724896		
운남 창원세관	0883-7121700		
운남 도룡세관	0876-7124506		
운남 전봉세관	0876-6123325		
운남 곤명세관 여강사무소	0888-5165222		
운남 곤명세관 샹그리라사무소	0887-8881068		

제5절 ● 자료출처

가. 웹사이트

- 중화인민공화국인민정부망(www.gov.cn)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www.aqsiq.gov.cn)
- 중국세관총서(www.customs.gov.cn)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 수출입데이터망(www.jkck.com)
- 세관종합정보자문망(www.china-customs.com)
- 중국통관망(www.e-to-china.com.cn)

나. 관련법규

- “세관법”
- “수출입관세조례”
- “세관통계조례”
- “수출입 화물원산지관리조례”
- “세관수출입세칙”
- “2010년 관세 시행방안”
- “수출입상품검험법”
- “세관조사조례”
- “세관행정처벌시행조례”
- “지적재산권세관보호조례”
- “세관통계상품목록”
- “실질성변경표준규정”

다. 관련책자

- 출입국검험검역신고실무
- 중국출입국식품검험검역실무대전
- 통관신고실무
- 출입국검험검역법률실무문답
- 식품표준법규
- 세관업무관리



제2장 >>> 검역제도

제1절 ● 검역제도 일반

가. 관리 및 법률 체계

1) 관리체제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전국의 품질, 계량, 출입국 상품 검험, 출입국 위생검역, 출입국 동식물 검역, 수출입 식품안전과 인증인가, 표준화 등 업무를 주관. 또한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와 중국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를 관리

○ 직속 출입국검험검역국

31개 성(자치구, 직할시)에 35개 직속 출입국검험검역국을 설립, 약 300개 분국과 200개 사무소를 설립하여 관할지역의 수출입상품 검험과 출입국 위생검역, 동식물 검역을 책임. 또한 31개 성(자치구, 직할시)에 성급 품질기술감독국을 설립

2) 법률체계

○ 법률

“수출입상품검험법”, “출입국동식물검역법”, “국경위생검역법”, “식품안전법” 등

○ 행정법규

“국무원에서 식품 등 제품의 안전감독 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특별규정”, “유제품품 질안전감독관리조례”, “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 “출입국동식물검역법실시

조례”, “국경위생검역법실시세칙”, “식품안전법실시조례” 등

○ 행정규정 및 기타 규범성 문건

“수출식품생산업체위생등록등기관리방법”, “출입국육류제품검험검역관리방법”, “출입국수산물검험검역관리방법”, “식품표기관리규정”, “수출음료생산업체등록 위생규법”, “식품첨가제사용위생표준”, “식품중농약최대잔류제한량”, “식품중오염물제한량표준” 등

나. 세관과의 관계

출입국검험검역기구는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에 소속되고, 세관은 세관총서에 소속된다. 세관은 모든 수출입 화물에 대해 징세와 합법성 감독을 진행하고, 출입국검험검역기구는 법정검험검역대상에 대한 신고와 검험검역만 책임진다. 법정검험검역 화물은 수출입단계에서 검험검역을 진행한 후에 통관신고를 진행

다. 법정검험검역

법정검험검역은 “수출입상품검험법”과 그 실시조례, “출입국동식품검험검역법”과 그 실시조례, “국경위생검역법”과 그 실시세칙, “식품안전법”과 그 실시조례, 기타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출입국검험검역기구에서 출입국 인원, 화물, 운송도구, 컨테이너 및 기타 법정검험검역물(통칭 : 법정검험검역대상)에 대해 검험, 검역, 감정 등 검험검역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가리킴

수출입 상품의 법정검험은 주로 “출입국검험검역기구에서 검험검역을 실시하는 출입국 상품목록”(약칭 : 법정검험검역목록)에서 나타냄



라. 검험검역 범위

- 법정으로 검험검역을 진행해야 하는 수출입 상품, 출입국 동식물 및 그 제품과 기타 검역물
- 동식물 및 그 제품과 기타 검역물을 적재하는 적재용기와 포장물
- 동식물 전염병 지역으로부터의 운송도구, 출입국 인원, 교통도구, 운송설비 및 검역전염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수하물, 화물, 우편물 등

마. 수출입 상품 검험, 출입국 동식물 검역, 국경위생검역

1) 수출입 상품 검험

- 법률근거 : “수출입상품검험법” 및 그 실시조례
- 검험내용 : 수출입 상품의 품질, 규격, 수량, 중량, 포장 및 안전, 위생, 건강, 환경보호, 사기방지 등 요구의 부합여부
- 검험방식 : 법정검험, 계약검험, 공정감정, 위탁검험

2) 출입국 동식물 검역

- 법률근거 : “출입국동식물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
- 검역내용 : 출입국 동식물과 동식물제품의 생산, 가공, 저장과정에 대한 동식물 검역
- 검역방식 : 입국검역, 출국검역, 중계검험, 출입국 휴대물과 우송물 검역, 출입국 운송도구 검역

3) 국경위생검역

- 법률근거 : “국경위생검역법” 및 그 실시세칙, “식품안전법” 및 그 실시조례
- 검역내용 : 출입국 교통도구, 화물, 운송용기 및 항구 관할구역의 공공장소, 환

- 경, 생활시설, 생산설비에 대한 위생검사, 감정, 평가와 샘플링검험
○ 검역방식 : 출입국 검역, 국경 전염병 검사, 출입국 위생감독

바. 검험검역

1) 검험검역비용

□ 계산근거

출입국검험검역비용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에서 2003년 12월 31일에 발표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한 “출입국검험검역요금방법”을 계산근거로 함

□ 비용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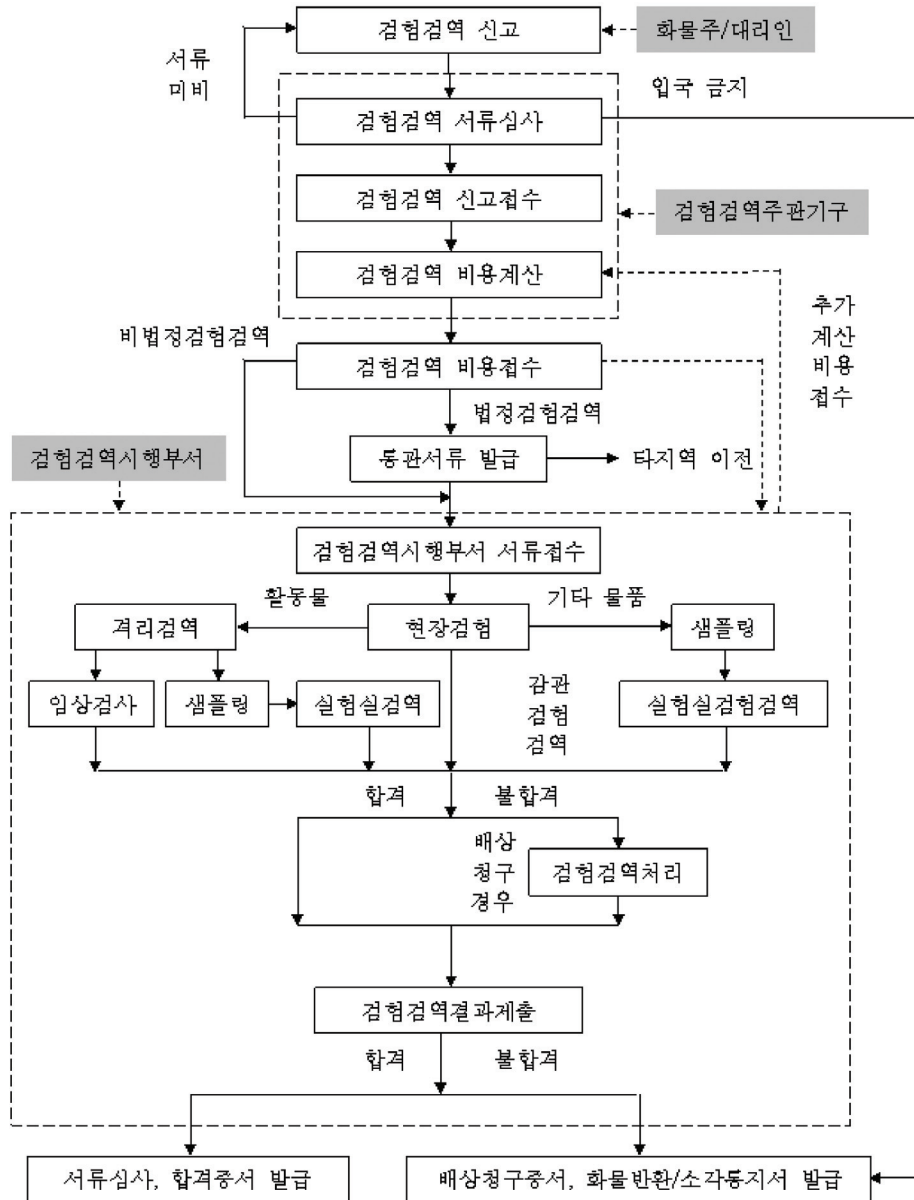
출입국검험검역비용은 출입국 화물의 검험검역비, 등기, 인증인가, 증서발급, 출입국 동식물의 실험실검역 항목비, 감정업무비, 검역처리비 등을 포함

□ 계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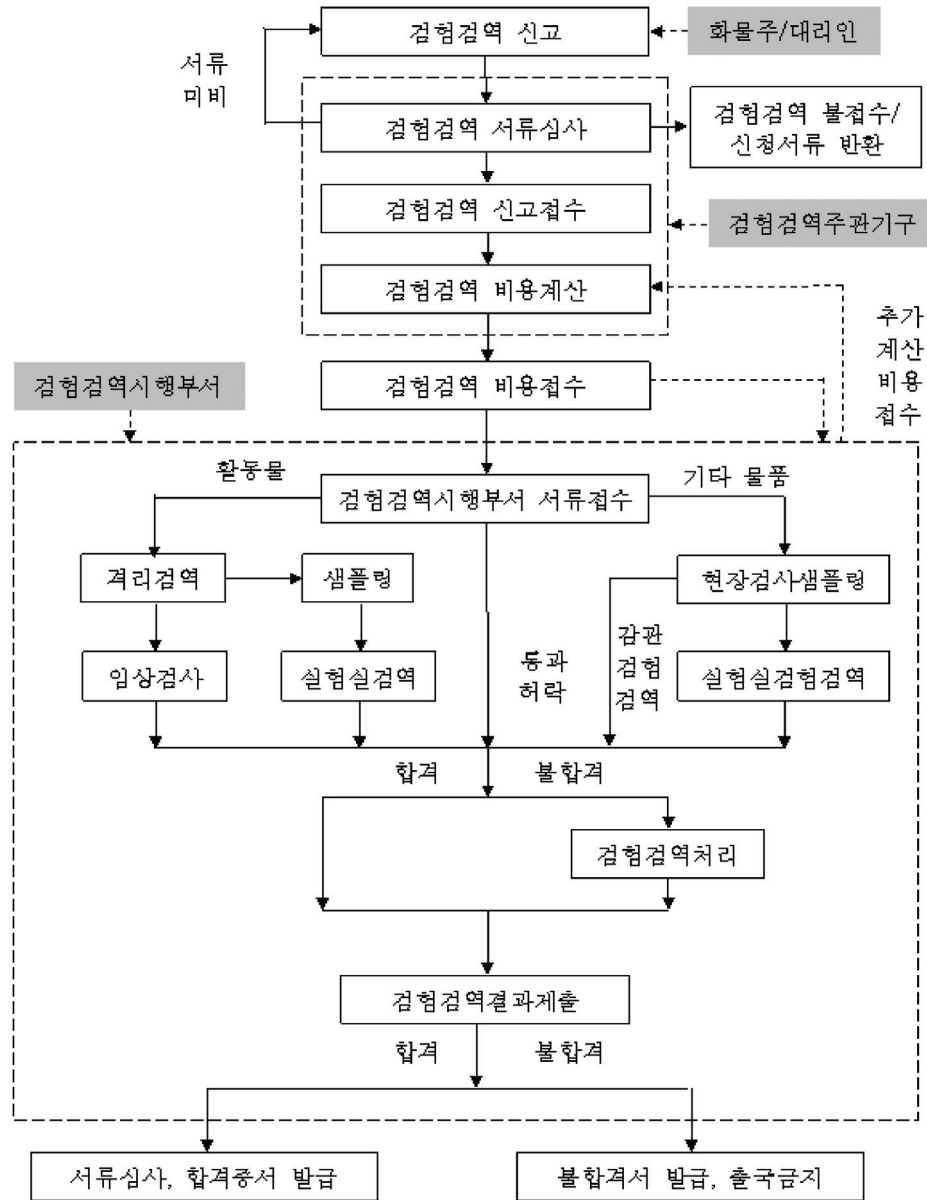
기본상 화물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요금비율 또는 중량, 수량, 검험역 또는 감정한목을 기준으로 정액 계산



2) 출입국 화물의 검험검역절차



[수입화물 검험검역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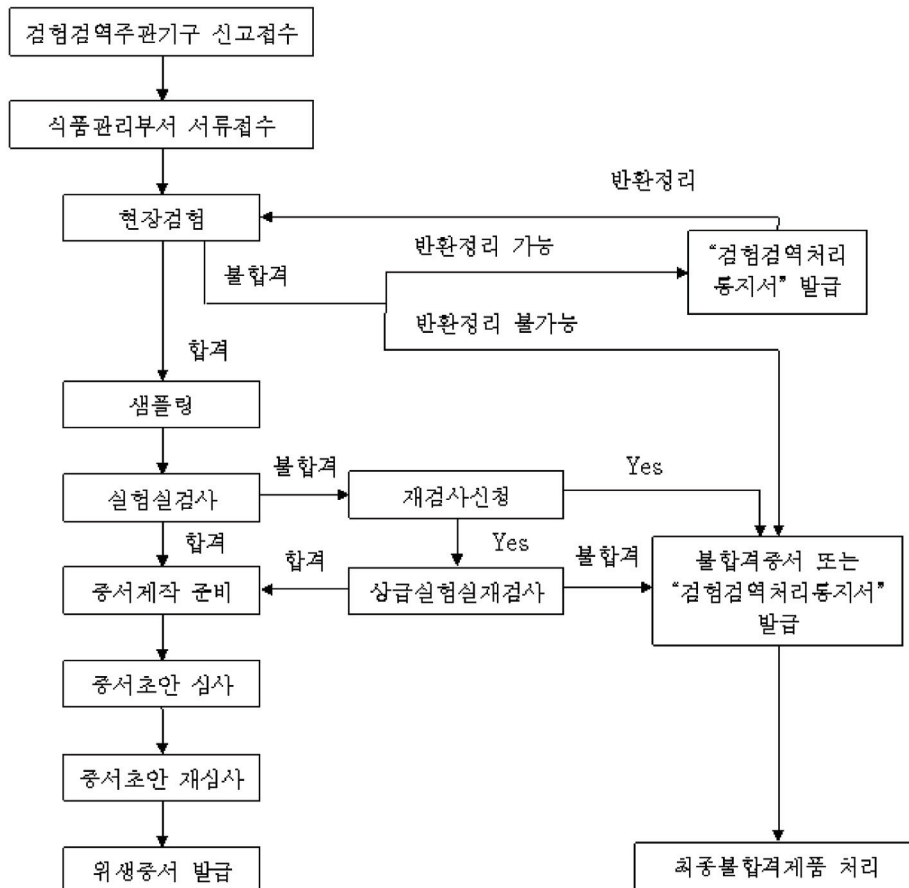


[수출화물 검험검역절차]

3) 수출입 식품의 검험검역

□ 수입 식품의 검험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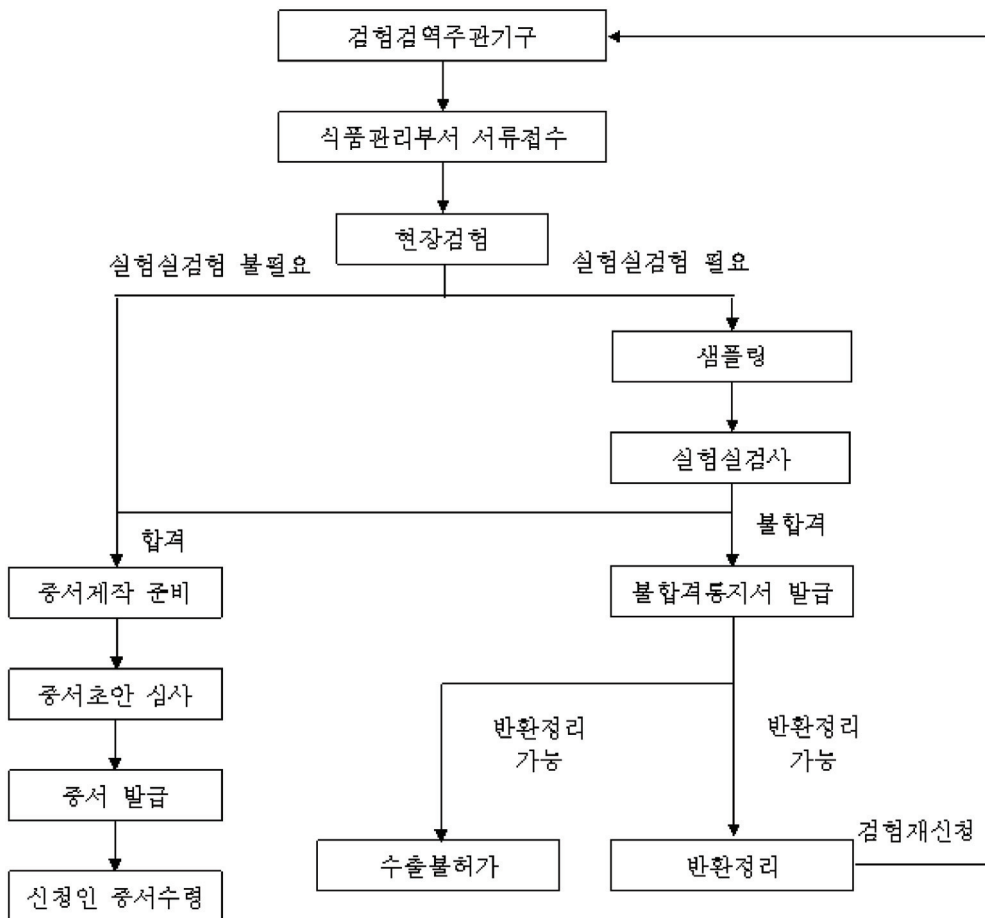
- 검험검역범위 : 수입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용기, 포장재료, 식품용도구 및 설비, 기타 식품과 관련된 물품
- 제출서류 : “입국화물검험검역신고서”, 수출입계약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수입식품 원산지증명서, 수출국가에서 사용한 농약, 화학비료, 살초제, 훈증제 및 생산식품의 원료, 첨가제, 가공방법 등 관련 서류와 표준



[수입식품 검험검역절차]

□ 수출식품의 검험검역

- 검험검역범위 : 수출식품(예를 들면 : 각종 식용, 음용의 제품과 원료, 전통적 습관에 의해 약품에 포함된 식품)과 수출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제 등
- 제출서류 : “출국화물검험검역신고서”, 수출입계약서 또는 판매확인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생산업체(가공공장, 냉장창고, 창고 등을 포함)의 위생등록 또는 등기번호



[수출식품 검험검역절차]



4) 입국의 검험검역절차

입국화물 검험검역절차는 검험검역을 신고한 후, 먼저 통관시키고 다시 검험검역을 진행한다. 법정검험검역의 운송료는 통관신고를 제출할 때에 반드시 입국지 출입국검역기구에서 발급한 “입국화물통관서”를 취득해야 하며, 세관은 입국지 검험검역기구에서 발급한 “입국화물통관서”에 따라 통관을 허용한다.

법정검험검역 화물은 입국 전 또는 입국 시에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이 먼저 하선항구 또는 도착지의 검험검역기구에 검험검역 신고를 제출한다.

검험검역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가 요구에 부합될 경우, 검험검역기구는 검험검역 신고를 접수하고 비용을 계산하여 받는다. 전염병 국가 및 지역으로부터 출발하여 도착하거나 검역 전염병, 동식물 전염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거나 위해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입국화물의 교통운송도구 또는 운송포장 등에 대해 필요한 검역, 소독, 위생 처리를 진행한 후 “입국화물통관서”를 발급하여 검험검역 신고인이 세관의 통관수속을 밟도록 한다. 화물이 통관된 후,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검험검역기구에서 규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지정한 검험검역기구와 화물의 검험검역에 관해 연락해야 한다. 검험검역에 합격될

[입국화물통관서]

[입국화물검험검역증명]

경우, “입국화물검험검역증명”을 발급하여 판매, 사용하도록 한다. 검험검역에 불합격 될 경우, “검험검역처리통지서”를 발급하며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반드시 검험검역기구의 감독을 받으면서 처리해야 하고,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한 후에도 합격되지 않을 경우, 반송 또는 소각 처리를 한다. 대외로 배상청구를 할 경우, 검험검역증을 발급한다.

5) 검험검역 신고시한

- 미생물, 인체조직, 생물제품, 혈액 및 그 제품, 종자가축과 가금 및 그 정액, 배태, 수정란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입국 30일 전에 검험검역을 신고해야 한다.
- 기타 동물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입국 15일 전에 검험검역을 신고해야 한다.
- 식물, 종자, 종묘 및 기타 번식재료를 수입할 경우, 반드시 입국 7일 전에 검험검역을 신고해야 한다.
- 입국화물이 대외로 배상청구를 하여 증명을 제출해야 할 경우, 배상청구 유효기간 전에 적어도 20일 내에 도착항구 또는 화물 도착지의 검험검역기구에 검험검역을 신고해야 한다.

6) 검험검역 신고 장소

- 비준, 허가증 등 관련 증서에 검험검역 장소를 규정한 경우, 규정한 장소에서 검험검역을 신고해야 한다.
- 대중상품, 부식변질하기 쉬운 상품, 폐기물품 및 하선할 때에 포장파손 또는 수량부족이 발견된 상품은 반드시 하선항구 검험검역기구에 검험검역을 신고해야 한다.
- 설치시운전과 연관되어 검험을 진행해야 하는 프랜트설비, 기계전기계측기제품 및 항구에서 개봉한 후 포장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품은 반드시 수하인 소재지 검험검역기구에 검험검역을 신고해야 한다.
- 기타 입국화물은 반드시 입국 전 또는 입국 시에 입국지 검험검역기구에 검험검역을 신고해야 한다.
직통식 통관조건에 부합되는 업체는 입국지의 선택에 따라 항구 검험검역기구 또는 목적지 검험검역기구에 검험검역을 신고할 수 있다.



7) 입국화물 검험검역 신고의 구비서류

- 입국화물 검험검역을 신고할 때, 반드시 “입국화물검험검역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출입계약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안전품질허가, 위생등록, 강제성제품인증, 민용상품 검사증 또는 기타 기준을 받아야 하는 화물은 반드시 관련 기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품질검험을 신고할 경우에 또한 국외 품질증서 또는 품질보증서, 제품사용설명서 및 관련표준과 기술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샘플로 거래할 경우, 반드시 샘플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등급 또는 정량으로 가격을 계산하여 결제할 경우, 반드시 동시에 중량 검정을 신청해야 한다.
- 입국폐기물의 검험검역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국가 환경보호부서에서 발급한 “수입폐기물비준증서”, 폐기물이용 리스크 보고서와 인가를 거친 검험기구에서 발급한 선적 전의 검험합격증도 제출해야 한다.
- 낡은 입국기계전기제품의 검험검역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관련된 수입허가증도 제출해야 한다.
- 파손감정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검수파손서, 철도기록, 항공운송사고 기록 또는 해운사고보고서 등 화물 파손상황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입국화물검험검역신고서]

[수입폐기물비준증서]

- 화물이 검수 또는 검사를 받을 경우, 반드시 검수보고서 또는 검사결과 및 중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 입국동식물 및 그제품은 수출입계약서, 상업송장, 원산지증명을 제출하는 동시에 반드시 수출국가 또는 지역의 검역증서도 제출해야 한다. 입국 비준수속을 밟을 경우, “입국동식물검역허가증”도 제출해야 한다.
- 중량(수량)감정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중량명세서, 검수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
- 입국 여행객, 교통인원이 동물을 휴대할 경우, 반드시 입국동식물 검역비준서 및 예방접종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 입국식품의 검험검역을 신고할 경우, 반드시 “수출입식품라벨비준증서” 또는 “라벨비준접수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 입국화장품의 검험검역을 신고할 경우, 반드시 “수출입화장품라벨비준증명” 또는 “라벨비준접수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 미국, 일본, 유럽, 한국으로부터의 입국화물 검험검역을 신고할 경우, 반드시 규정에 따라 관련 포장현황 증명서와 성명을 제출해야 한다.
- 과학연구 등 특별요구로 인해 입국 금지화물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발급 특허비준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许可证
ENTRY-EXIT INSPECTION AND QUARANTIN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许可证编号: _____

名称	品种	数/重量	产地	境外生产、加工、存放单位
输出国家或地区	进境日期	出境日期		
进境口岸	目的地	用途	出境口岸	
运输路线及方式				
进境后的生产、加工、使用、存放单位				
进境后的隔离检疫场所				

签字盖章: _____
签发日期: _____

有效期: _____

备注: _____

第一联, 申请单位存(凭此联向出入境检验检疫局报检)

[입국동식물검역허가증]

中华人民共和国出入境检验检疫
ENTRY-EXIT INSPECTION AND QUARANTIN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证书编号: _____ 页第 _____ 页 Page _____

CERTIFICATE OF QUALITY AND WEIGHT

发货人: _____
收货人: _____
品名: _____
报检数量/重量: _____
数量/重量申报: _____
包装种类及数量: _____
Number and Type of Packages: _____
运输工具: _____
Means of Conveyance: _____

标记及号码: _____

检验检疫结果: _____

印章: _____
Official stamp: _____

签证地点: _____
Place of Issue: _____

检验检疫人: _____
Authorized Officer: _____

签证日期: _____
Date of Issue: _____

签名: _____
Signature: _____

[중량/수량 증명]



- 특별물품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관련된 비준증서 또는 규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8) 입국화물 검험검역신고서 작성방법

□ 번호

검험검역기구의 검험검역 접수인원이 작성한다. 제1-6위는 검험검역기구 코드, 제7위는 검험검역 신고종류의 코드, 제8-9위는 연도 코드, 제10-15위는 일관번호

□ 신고업체(공인 날인)

신고업체의 정식 명칭을 기입하고 회사 공인 또는 검험검역기구에 이미 등록된 “검험검역신고전용도장”을 날인한다.

□ 신고업체 등기번호

총 10위이고 제1-4위는 소재지 관할구역의 검험검역기구 코드, 제5-10위는 일관번호이다.

□ 연락인

검험검역 신고인원의 성명, 전화를 표시

□ 신고날짜

검험검역기구에서 실제로 검험검역 신고를 접수한 날자

□ 수하인

수입계약서에서의 수하인을 중문, 영문으로 표시

□ 발송인

수입계약서에서의 발송인을 표시

□ 화물명칭(중문/영문)

화물의 품목과 규격은 반드시 수출입계약서, 상업송장과 일치해야 하며, 폐기화물일 경우 반드시 표시

□ HS코드

화물의 10위 상품코드로서 당해 발표한 상품세칙번호분류를 기준

□ 원산지

수입화물의 생산가공 국가 또는 지역을 표시

□ 수량/중량

계약, 상업송장 또는 검험검역신고서에서의 화물 수량/중량과 일치해야 하며, 반드시 수량/중량 단위를 표시

□ 화물의 총가치와 화폐 종류

반드시 계약서, 상업송장 또는 검험검역신고서에서의 화물 총가치와 일치

□ 포장 종류 및 수량

목재 포장일 경우, 반드시 재질과 치수를 표시

□ 운송도구 명칭번호

국제운송의 운송도구 명칭과 번호를 표시

□ 계약번호

계약서, 주문서 또는 형식 영수증의 번호를 표시

 무역방식

화물수입의 무역방식을 표시

 무역국가(지역)

수입화물의 무역국가(지역)을 표시

 선하증권 번호

해상운송, 항공운송, 철도운송 등 선하증권 번호를 표시

 화물도착날짜

수입화물이 항구에 도착한 날짜를 표시

 발송국가(지역)

화물 교통도구의 발송국가 또는 지역을 표시, 중국경내 보세구, 수출가공구로부터 입국할 경우, 보세구, 수출가공구를 표시

 허가증/비준번호

입국허가증 또는 비준을 받아야 하는 화물은 관련된 허가증번호 또는 비준번호를 표시

 하선날짜

화물이 항구에서 하선한 날짜를 표시

 발송항구

화물 교통도구의 발송항구를 표시, 중국경내 보세구, 수출가공구로부터 입국할 경우, 보세구, 수출가공구를 표시

입국항구

화물 입국항구를 표시

배상청구 유효기간 마감날짜

수출입계약서에서 약정한 배상청구 기한, 특히 마감날짜를 표시

정박항구

화물이 운송과정에서 정박한 외국 항구를 표시

목적지

화물이 예정한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경내 납품장소를 표시

컨테이너 규격, 수량과 번호

화물이 컨테이너로 운송할 경우에 컨테이너의 규격, 수량과 번호를 표시

계약서에서 체결한 특별조항과 기타요구

계약서에 체결한 관련된 품질, 위생 등 조항 또는 검험검역 신고업체가 화물 검험검역에 대한 특별한 요구를 표시

화물 저장장소

화물을 저장하는 장소를 표시

용도

화물의 실제 용도를 표시

첨부서류

실제상황에 따라 첨부서류 종류 앞의 “”에 “√”를 표시하거나 추가 표시



□ 표기 및 번호

화물의 표기번호는 계약서, 상업송장 등 관련 서류와 일치해야 하며, 표기번호가 없으면 “N/M”을 표시

□ 외자투자재산

검험검역기구의 검험검역 접수인원이 표시

□ 서명

화물 검험검역을 책임지는 검험검역 신고인원이 서명

□ 검험검역비

검험검역기구 비용계산인원이 비용을 확정 후 표시

□ 증서수령

검험검역 신고인은 검험검역기구에서 발급하는 관련 검험검역증을 수령할 때에 실제 수령날짜를 기입하고 서명

사. 위반 시 제재조치

1) 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을 수입할 경우

“식품안전법” 제85조, 제89조 제1항의 첫 번째 규정에 따라 관련 주관부서는 ① 불법소득, 불법 생산경영의 식품과 불법 생산경영에 사용되는 도구, 설비, 원료 등 물품을 몰수, ② 불법 생산 및 경영한 식품의 화물가치가 1만 위안 미만일 경우에 2,000위안 이상에서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 ③ 화물가치가 1만 위안 이상일 경우에 화물가치의 5배 이상에서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 ④ 엄중할 경우에 허가증을 취소한다.

2)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없는 식품을 수입하거나 처음으로 식품첨가제 신제품, 식품 관련제품 신제품을 수입할 때에 안전성 평가를 거치지 않을 경우

“식품안전법” 제85조, 제89조 제1항의 두 번째 규정에 따라 관련 주관부서는 ① 불법소득, 불법 생산경영의 식품과 불법 생산경영에 사용되는 도구, 설비, 원료 등 물품을 몰수, ② 불법 생산 및 경영한 식품의 화물가치가 1만 위안 미만일 경우에 2,000위안 이상에서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 ③ 화물가치가 1만 위안 이상일 경우에 화물가치의 5배 이상에서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 ④ 엄중할 경우에 허가증을 취소한다.

3) 국가에서 위생등기등록관리를 실시하지만 위생등기등록을 취득하지 못한 생산업체가 생산하는 식품을 수입할 경우

“상품검험법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입중지를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상품가치의 10%에서 5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 식품 수입업체가 식품수입과 판매기록제도를 수립하지 않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식품안전법” 제87조,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주관부서는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시정을 거절할 경우에 2,000위안 이상에서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엄중할 경우에 생산중지를 명령하며 허가증까지 취소한다.

아. 검역규정 변동사항

1) 3월 검역규정 변동사항

□ “수입 유제품 위생증서 관리를 규범화할 데 관한 공고”(시행일 : 2010.1.1)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2009년 9월 4일에 관련 국가 주중대사관에 다시 통보하여 증서를 확인하지 못한 국가에서 증서샘플을 될수록 빨리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모든 수입 유제품은 입국할 때에 중국의 요구에 부합되는 수출국



가의 증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

- 지방 출입국검험검역기구는 2010년 1월 1일부터 수입 유제품의 위생증서를 검사하며, 2010년 3월 1일부터 유효한 위생증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수입 유제품의 검험검역 신고를 다시 접수하지 않음

□ “출입국검험검역기구에서 검험검역을 실시하는 출입국 상품목록(2010)”

(시행일 : 2010.1.1)

- 식품급 빙초산(HS코드 : 2915211100)을 “법정검험검역목록”에 추가 포함시켜 출입국 검험검역 감독 관리를 실시
- 일부 폐기물 원료(총 12개 HS코드)를 “법정검험검역목록”에 추가 포함시켜 입국 검험검역 감독 관리를 실시
- “기타 전력 컨트롤 또는 분배장치”(HS코드 : 8537209000), “기타 인산, 메타인산, 피로인산”(HS코드 : 2809201900)의 세관 감독관리 조건 “A”을 취소하여 입국 검험검역 감독 관리를 실시하지 않음.
- 2010년 세관 상품번호 조절과 결합시켜,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세관총서는 “법정검험검역목록”을 조절함
- “법정검험검역목록”에 포함된 출입국 상품은 반드시 출입국검험검역기구에서 검험검역과 감독 관리를 실시하고, 수출입 경영업체는 출입국검험검역기구에서 발급한 “입국화물통관서” 또는 “수출화물통관서”를 갖고 세관에서 수출입수속을 밟음

□ “수출식품의 검험검역 마크조치 조절에 관한 공고”(시행일 : 2010.1.1)

2010년 1월 1일부터 수입국가(지역)이 요구하지 않을 경우, 출입국검험검역기구는 수출식품에 대해 검험검역 마크를 추가 실시하지 않음

□ “수출입 상품의 검험검역 업무자격을 취득한 기구리스트를 발표할 데 관한 공고”

(발표일 : 2010.1.5)

- “수출입상품검험법”, “수출입상품검험감정기구관리방법”과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의 2003년 제122호 공고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상품의 검험검감정 업무자격

을 취득한 검험감정기구를 발표

- 북경 1개, 상해 11개, 남경 1개, 복주 1개, 연운항 1개, 동관 1개, 천진 1개, 녕파 1개, 심천 1개, 사천 1개, 남통 1개, 녕파 1개, 주해 1개(23개)

□ “수입식물 종묘에 지정한 입국항구 조치를 채택할 데 관한 공고”

(시행일 : 2010.4.1)

- 식물 종묘의 수입항구는 반드시 현장검사, 제거조치, 격리검역의 시설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소재지 검험검역기구는 필요한 실험실 검사방법과 기술능력이 있어야 함
- 수입업체 또는 그 대리인이 식물 종묘를 수입할 경우, 반드시 법에 따라 입국 검역 기준을 받아야 하며, 발표된 지정한 항구로부터 입국해야 함
- 항구 조건과 무역 수요에 따라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수입 식물 종묘에 대해 지정한 입국 항구 리스트를 조절함

2) 4월 검역규정 변동사항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제128호 법령(발표일 : 2010년 3월 30일)

: “출입국검험검역대리신청관리규정”

상기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02년 11월 6일에 발표한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제34호 법령은 폐지된다. 수정후의 상기 규정은 총 6장 36조로 구성하며, 수정사항과 추가내용은 주로 관리체제, 기업조건, 허가절차, 감독검사, 법률책임 등을 포함한다.

첫째, 관리체제를 조절 : “상품검험법”과 그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거시적 관리를 책임지고, 각 직속 검험검역국은 대리신청업체의 등기 업무를 책임지며 각 검험검역 분기구는 대리신청업체의 등기신청을 접수처리, 초심, 일상 감독관리와 심사 등 업무를 책임진다.

둘째, 진출조건을 조절 : 신규 규정은 기존 대리신청업체의 조건에서 “검험검역신청인



자격증” 취득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구를 5명으로 조절하고, 기업 등록자본금을 150만 위안에서 100만 위안으로 조절했다. 이는 중국의 적극적인 현대서비스 발전추세와 현재 국제화물운송 대리업체와 물류업체의 실제상황에 부합된다.

셋째, 검험검역신고구역을 조절 : 신규 규정은 검험검역 신고구역을 직속 검험검역국 관할범위로 조절하여 대리신청업체가 직속 검험검역국 범위 내에서의 유동성을 높이고 대리신청업체의 경쟁을 활성화한다.

넷째, 허가절차를 개선 : 신규 규정은 대리신청업체의 행정허가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대리신청업체의 등기절차(신청접수, 서류심사, 현장심사, 비준기한, 허가통지 등)를 명확히 규정하여 대리 신청 등기관리를 규범화 했다.

다섯째, 법률책임을 강화 : 신규 규정은 제5장 법률책임을 추가하여 신규 “상품검험법” 과 그 실시조례 등 검험검역 법률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대리신청업체 법률책임에 관한 내용을 조절하고 추가했으며 대리신청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 처벌을 명확히 규정했다. 규정을 위반한 대리신청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대리신청업체가 법을 지키면서 경영하도록 촉진하며 대리신청업체의 행위를 규범화한다.

□ 신청과 접수

제6조 : 대리신청업체의 등기를 신청한 업체(약칭 : 신청인)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① 공상행정 관리부서에서 발급하는 “기업법인영업집조”를 취득해야 한다.
- ② “기업법인영업집조”의 등록자본금은 인민폐 1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 ③ 고정된 경영 장소와 대리신청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시설이 있어야 한다.
- ④ 완벽한 기업내부 관리제도가 있어야 한다.
- ⑤ 5명 이상이 “검험검역신청인 자격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자회사의 명의로 대리신청업체의 등기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영업집조”를

취득해야 하며, 상기 제3, 4, 5항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회사 등록자본금은 인민폐 1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 : 신청인은 반드시 공상영업집조에 표기한 소재지 검험검역기구(약칭 : 접수기구)에 신청을 제출하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① 대리신청업체 등기신청서
- ② “기업법인영업집조” 복사본, 자회사의 명의로 신청할 경우, 동시에 “영업집조” 복사본, 본사 수권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③ “조직기구코드증” 복사본
- ④ 담당할 검험검역신청인의 “검험검역신청인 자격증” 복사본
- ⑤ 대리신청업체와 담당할 검험검역신청인이 체결한 노동계약서
- ⑥ 기업정관 복사본
- ⑦ 영업장소 소유권 증명 또는 임대증명 복사본
- ⑧ 신청인의 인장, 인영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반드시 본 기업의 공인을 날인해야 하며 복사본을 제출할 경우에 반드시 동시에 정본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 : 접수기구는 등기신청을 접수한 후 아래와 같은 상황에 대해 각각 처리한다.

- ① 신청서류가 구비되지 않거나 법정형식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현장 또는 5일 내에 1회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모든 내용을 보충하고 개정하도록 한다. 기한을 넘겨 통보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접수한 것으로 한다.
- ② 신청서류에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잘못만 있을 경우, 반드시 신청인이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 ③ 신청서류가 구비되고 법정형식에 부합되거나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신청서류를 모두 보충하고 개정했을 경우,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신청을 접수할 경우, 접수기구는 반드시 신청인에게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발급하는 행정허가신청 접수결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심사와 결정

제9조 : 접수기구는 반드시 법정조건과 절차에 따라 접수한 신청에 대해 심사하며, 2명 이상 인원을 파견하여 신청서류의 실질적 내용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분기구가 신청을 접수할 경우, 반드시 초심의견과 모든 신청 서류를 직속 검험검역국에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 직속 검험검역국은 반드시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등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일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 직속 검험검역국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 10일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한의 이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 등기를 허용할 경우, 직속 검험검역국은 반드시 서면결정을 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신청인에게 “대리신청업체 등기증”을 발급해야 한다. 등기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결정서를 발급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며 신청인은 법에 따라 행정재심의 또는 행정소송을 제출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대리신청업체 등기증”의 유효기한은 4년이다.

제12조 : “대리신청업체 등기증”을 취득한 대리신청업체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완료한 후에 규정한 대리 신청 서비스구역 내에서 대리신청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 ① 담당할 검험검역신청인이 검험검역기구에서 검험검역신청인 등기를 진행
- ② 대리 신청 전용도장을 새겨서 만들고 검험검역기구에 등기

□ 변경과 취소

제13조 : 대리신청업체의 명칭, 주소, 법인대표, 비법인기업의 책임자, 경영범위 등 중대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영업집조 등 관련 증명서류를 직속 검험검역국에 제출하여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변경내용이 “대리신청업체 등기증”의 내용과 연관될 경우, 직속 검험검역국은 반드시 새로운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4조 :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직속 검험검역국은 이해관계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따라 대리신청업체의 등기를 취소할 수 있다.

- ① 검험검역인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책을 소홀히 하여 등기결정을 한 경우
- ② 법정 직권을 초과하여 등기결정을 한 경우
- ③ 법정 절차를 위반하여 등기결정을 한 경우
- ④ 신청자격이 없거나 법정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신청인의 등기를 허용한 경우
- ⑤ 법에 따라 등기를 취소할 수 있는 기타 경우

대리신청업체가 기만, 뇌물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했을 경우,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제15조 :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직속 검험검역국은 반드시 법에 따라 등기의 취소수속을 밟아야 한다.

- ① 대리신청업체가 대리신청업무를 종료할 경우
- ② 대리신청업체가 법에 따라 종료될 경우
- ③ 대리신청업체의 조직기구코드가 변경될 경우
- ④ 등기가 취소, 회수되거나 등기증서가 정지될 경우
- ⑤ 법률, 법규에서 반드시 행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경우 등기자격이 취소된 대리신청업체는 반드시 “대리신청업체 등기증”과 “검험검역신청인 자격증”을 반환해야 한다.

제26조 : 대리신청업체가 사실대로 수출입상품의 실제상황을 제출하지 않고 검험검역기구의 관련 증명을 취득하거나 법정 검험의 수출입상품에 대해 검험검역을 신청하지 않아 수출입상품의 검험을 도피할 경우, 검험검역기구에서 “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상품가치의 5% 이상에서 2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엄중할 경우에 대리신청업체 등기를 취소시킨다.



제27조 : 대리신청업체가 규정을 위반하여 검험검역 신청질서를 어지럽히며 아래와 같은 행위가 있을 경우, 검험검역기구는 “수출입상품검험법실시조례”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10만 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6개월 내에 대리신청업무를 중단시킨다. 엄중할 경우에 대리신청업체 등기를 취소시킨다.

- ① 1년 내에 검험검역신청인이 연인원 3명 이상 검험검역신청인 자격을 취소당할 경우
- ② 규정에 따라 위탁인의 검험검역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위탁인에게 검험검역비용을 알리거나 검험검역기구의 명의로 위탁인으로부터 비용을 함부로 받을 경우
- ③ 검험검역기구의 조사와 처리에 협조하지 않거나 검험검역인원에 대해 위협하거나 뇌물을 줄 경우
- ④ 그 명의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대리신청업무를 하도록 할 경우
- ⑤ 규정에 따른 심사에 합격되지 않을 경우

제28조 : 대리신청업체가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검험검역기구에서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불법소득의 3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지만 최고로 3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불법소득이 없을 경우,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① 규정에 따라 대리신청업무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구비되지 않거나 사실대로 수행한 대리신청업무를 기록하지 않을 경우
- ② 검험검역기구의 감독검사를 거절할 경우
- ③ 기한 내에 규정에 따른 심사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제29조 : 대리신청업체가 기타 출입국검험검역 법률법규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검험검역기구는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그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3) 5월 검역규정 변동사항

□ 위생부 제73호 법령(발표일 : 2010.3.30) : “식품첨가제신제품관리방법”

제6조 : 식품첨가제 신 품목의 생산, 경영, 사용 또는 수입을 신청하는 업체 또는 개인(신청인)은 반드시 식품첨가제 신 품목 허가신청을 제출하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a. 첨가제의 통용명칭, 기능분류, 사용량과 사용범위
- b. 기술적으로 확실히 필요하며 사용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문건
- c. 식품첨가제의 품질규격 요구, 생산 공정과 검험방법, 식품에서 첨가제의 검험방법 또는 관련 상황에 관한 설명
- d. 안전성 평가서류(생산원료 또는 출처, 화학구조와 물리특성, 생산 공정, 독리학 안전성 평가서류 또는 검험보고서, 품질규격 검험보고서를 포함)
- e. 라벨, 설명서와 식품첨가제 제품샘플
- f. 기타 국가(지역), 국제조직에서 생산과 사용을 허용하는 안전성평가에 유용한 서류

식품첨가제 품목의 사용범위 또는 사용량 확대를 신청할 경우, a~d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지만 기술평가에서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서류를 제외한다.

처음으로 식품첨가제 신 품목의 수입을 신청할 경우, 제6조에서 규정한 서류를 제출하는 외에 아래와 같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 a. 수출국가(지역) 관련부서 또는 기구에서 발급하는 첨가제가 본국(지역)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증명서류
- b. 생산업체 소재국가(지역) 관련기구 또는 조직에서 발급하는 생산업체에 대한 심사 또는 인증의 증명서류



□ 국가품질감독검역총국 : 동물 전염병 유행국가(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한 동물 및 그 제품(2010.4.23까지)

수입금지 화물명칭	전염병	국가 또는 지역
우제류 동물 및 그 제품	구제역	아프카니스탄, 미얀마, 파키스탄, 부탄, 라오스, 네팔, 인도, 베트남, 홍콩, 마카오, 태국, 바레인, 쿠웨이트,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키르키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요르단, 이란, 필리핀, 카자흐스탄, 터키, 몽고, 타지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키프로스, 러시아, 볼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페루, 콜롬비아, 말라위, 알제리, 이집트, 튀니스, 모로코, 기니, 잠비아, 보츠와나, 나미비아, 짐바브웨, 아르헨티나, 브라질
가금류 및 그 제품	조류독감	아프카니스탄, 미얀마, 파키스탄, 부탄, 라오스, 네팔,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인도, 베트남, 북한, 캄보디아, 쿠웨이트, 이스라엘, 요르단, 이라크, 카자흐스탄, 터키, 일본, 몽고, 아제르바이잔,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스웨덴, 체코, 러시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그리스, 수단, 토고, 네팔, 알제리, 이집트, 부르키나파소, 나이지리아, 가나, 짐바브웨, 코트디부아르, 카메론, 지부티
	뉴캐슬병	스페인, 룩셈부르크, 스웨덴, 이스라엘,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멕시코
	낮은 병원성 조류독감	영국, 프랑스, 캐나다, 미국
소 및 그 제품	광우병	오만, 일본, 이스라엘,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덴마크, 아일랜드, 스위스, 독일, 룩셈부르크, 체코, 리히텐슈타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핀란드, 캐나다, 미국
	우폐역	보츠와나
	우역	네팔, 인도, 베트남
돼지 및 그 제품	고대 돼지콜레라	한국,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독일
	돼지 수포병	이탈리아
	아프리카 돼지콜레라	몰타,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르메니아, 그루지야, 러시아, 마다가스카르, 보츠와나, 세네갈, 가나, 브라질
	Ebola병독	필리핀
	일본뇌염	말레이시아
양 및 그 제품	간지럼병	일본, 영국, 네덜란드, 이스라엘, 노르웨이, 벨기에, 키프로스, 아이슬란드, 스웨덴, 프랑스, 아일랜드, 스위스,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콜롬비아, 가나, 남아프리카, 캐나다, 미국, 브라질, 핀란드, 루마니아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농업부 제45호 연합공고(발표일 : 2010.4.30) :

“일본 구제역이 중국에 전염되는 것을 방지할 데 관한 공고”

2010년 4월 20일, 일본은 세계동물위생조직에 4월 7일에 1개 소 양식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긴급 보고했다. 구제역이 중국에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국 목축업의 안전과 인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국동식물검역법” 등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 ① 일본으로부터 우제류 동물 및 그 제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며,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우제류 동물 및 그 제품에 대한 “입국동식물검역허가증”의 발급을 중지한다.
- ② 4월 7일(포함) 이후에 발송한 일본에서 오는 우제류 동물 및 그 제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반환하거나 소각 처리를 한다. 4월 7일 전에 발송한 일본에서 오는 우제류 동물 및 그 제품에 대해 구제역 검사에 합격된 후에 통관시킬 수 있다.
- ③ 일본에서 오는 우제류 동물 및 그 제품을 우송하거나 관광객이 휴대하는 것을 금지하며, 발견되면 일률적으로 반환하거나 소각 처리를 한다.
- ④ 중국을 지나거나 중국에 정박한 국제 선박, 비행기와 기차 등 운송공구에서 일본에서 오는 우제류 동물 및 그 제품을 발견하면 일률적으로 밀봉하여 보존한다. 그 교통인원이 스스로 양식하여 스스로 사용하는 우제류 동물은 반드시 우리에게 넣고 그 폐기물, 쓰레기 등은 일률적으로 출입국검험검역기구의 감독 아래에서 무공해 처리를 진행하며 함부로 방치하지 못한다.
- ⑤ 세관, 국경 수비 등 부서에서 압수한 불법으로 입국하는 일본에서 오는 우제류 동물과 그 제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입국검험검역기구의 감독 아래에서 소각 처리를 진행한다.
- ⑥ 상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출입국검험검역기구는 “출입국동식물검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⑦ 각 출입국검험검역기구, 각급 동물 전염병 예방통제기구, 동물 위생 감독기구는 각각 “출입국동식물검역법”과 “동물방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검역, 방역과 감독을 협조한다.



4) 6월 검역규정 변동사항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농업부 제61호 연합공고(발표일 : 2010.6.12) :

“네덜란드 약 병원성 조류독감(LPAI)이 중국에 전파되는 것을 방지할 데 관한 공고”
 세계동물위생조직의 통보에 의해 네덜란드 NOORD-BRABANT의 양계장에서 H7아형 저 병원성 조류독감(LPAI)이 발생했다. 이 전염병이 중국에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국 목축업의 안전과 인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국동식물검역법” 등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 ① 네덜란드 NOORD-BRABANT로부터 가금류 및 그 제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며, 네덜란드 NOORD-BRABANT로부터 수입하는 가금류 및 그 제품에 대한 “입국동식물검역허가증”의 발급을 중지한다.
- ② 본 공고가 발표된 날로부터 발송한 네덜란드 NOORD-BRABANT에서 오는 가금류 및 그 제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반환하거나 소각 처리를 한다.
- ③ 네덜란드 NOORD-BRABANT에서 오는 가금류 및 그 제품을 우송하거나 관광객이 휴대하는 것을 금지하며, 발견되면 일률적으로 반환하거나 소각 처리를 한다.
- ④ 중국을 지나거나 중국에 정박한 국제 선박, 비행기와 기차 등 운송공구에서 네덜란드에서 오는 가금류 및 그 제품을 발견하면 일률적으로 밀봉하여 보존한다. 그 교통인원이 스스로 양식하여 스스로 사용하는 가금류는 반드시 우리에게 넣고 그 폐기물, 쓰레기 등은 일률적으로 출입국검험검역기구의 감독 아래에서 무공해 처리를 진행하며 함부로 방치하지 못한다.
- ⑤ 세관, 국경 수비 등 부서에서 압수한 불법으로 입국하는 네덜란드에서 오는 가금류 및 그 제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입국검험검역기구의 감독 아래에서 소각 처리를 진행한다.
- ⑥ 상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출입국검험검역기구는 “출입국동식물검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⑦ 각 출입국검험검역기구, 각급 동물 전염병 예방통제기구, 동물 위생 감독기구는 각각 “출입국동식물검역법”과 “동물방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검역, 방역과 감독을 협조한다.

□ 국가품질감독검역총국, 제62호 공고(발표일 : 2010.6.13) :

“카메룬 황열병이 중국에 전파되는 것을 방지할 데 관한 공고”

세계위생조직의 최근 보고에 의해 카메룬에 황열병 전염병이 발생했으며 2010년 1월 25일에 황열병 사례가 확정 진단되었다. 황열병이 중국에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국동식물검역법” 및 그 실시세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 ① 카메룬에서 오는 교통공구와 컨테이너는 반드시 유효한 모기 죽이기 처리를 해야 한다. 검험검역기구는 카메룬에서 오는 교통공구와 컨테이너에 대해 엄격히 검험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모기를 발견할 경우 즉시 모기를 죽여야 한다. 검험검역기구는 반드시 항구 위생감독을 강화하고 각종 유효한 조치로 모기를 죽이며 모기 번식장소를 없애고 항구 모기밀도를 낮추어 전염병 전파를 방지해야 한다.

본 공고는 발표일로부터 3개월 유효하다.

5) 7월 검역규정 변동사항

□ 국가품질감독검역총국, 농업부 제64호 연합공고(발표일 : 2010.7.2)

중국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과 세계동물위생조직(OIE)의 “육서동물위생법전”의 건의에 따라 월령이 30개월 이하인 캐나다 소의 뼈에서 살을 발라낸 소고기와 공업용 유지를 조건적으로 수입한다고 결정한다.

본 공고 발표일로부터 중국 검험검역의 요구에 부합되는 캐나다 30개월 이하의 전체 척추와 두개골, 뇌, 눈, 척수, 편도선, 회장 말단을 없앤 뼈에서 살을 발라낸 소고기와 공업용 유지를 수입하는 것을 허용한다.

관련 검험검역의 요구는 국가품질감독검역총국에서 발표하여 시행한다.

□ 국가품질감독검역총국,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초안)을 발표

(발표일 : 2010.7.6)

수출입식품의 안전을 보증하고 인류와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품



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초안)을 작성하여 사회에 공포하여 의견을 청구하며 의견 수집 마감날짜는 2010년 7월 16일까지이다.

제2조 : 본 방법은 수출입식품의 검험검역과 감독관리에 적용한다. 수출입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 식량, 과일, 식용 동물의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조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수입식품의 경외 생산업체에 대한 등록관리, 중국 경내 수출식품의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에 대한 등록관리, 수입식품에 대한 검험, 수출식품 생산업체에 대한 등록관리, 수출식품 원재료 재배, 양식장에 대한 등록관리, 수출식품에 대한 감독, 표본검사, 수출입식품에 대한 분류관리, 수출입식품 생산경영업체에 대한 신용관리를 진행한다.

제8조 : 수입식품은 반드시 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과 관련 검역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발표되기 전에 현행 식용 농산물 품질안전표준, 식품 위생표준, 식품 품질표준과 식품 산업표준에서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표준에 따라 검험을 실시한다.

처음으로 수입하는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없는 식품에 대해 수하인은 반드시 검험검역기구에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서 발급한 허가증명문건을 제출해야 하며, 검험검역기구는 반드시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의 요구에 따라 검험을 진행해야 한다.

제10조 : 수입식품이 입국동식물검역 비준수속을 밟아야 할 경우, 반드시 “입국동식물 검역허가증”을 취득한 후에 수입할 수 있다.

제12조 : 수입식품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검험검역기구에 검험신고를 해야 한다.

- ① 계약서, 영수증,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등 필요한 증빙서류
- ② 관련 비준문건
- ③ 법률, 법규, 쌍무협정 또는 의정서 등에서 제출할 것을 규정한 수출국가(지역)의 위생증서

- ④ 처음으로 포장식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식품 라벨샘플과 번역본을 제출해야 한다.
- ⑤ 처음으로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없는 식품을 수입할 경우, 제9조에서 규정한 허가증명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 ⑥ 수입식품은 반드시 첨부한 기타 증서 또는 증명문건을 첨부해야 한다. 검험 신고할 때에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반드시 수입하는 식품을 품명, 브랜드, 원산국가(지역), 규격, 수량/중량, 총가치, 생산날짜 및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규정한 기타 내용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제14조 : 수입식품의 포장과 운송도구는 반드시 안전위생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검험검역에 합격해야 한다.

제15조 : 수입 포장식품의 중문 라벨, 중문 설명서는 반드시 중국 법률, 법규의 규정과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7조 : 수입식품이 검험검역 합격증명을 취득하기 전에 반드시 검험검역기구에서 지정하거나 인가한 감독관리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검험검역기구의 허가가 없이 어떠한 업체와 개인이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 : 수입식품의 수하인은 반드시 식품 수입판매 기록제도를 수립하여 사실대로 수입식품의 위생증서 번호, 품명, 규격, 수량, 생산날짜, 비준번호, 품질보증기한, 수출업체와 구매업체 명칭 및 연락방식, 납품날짜 등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기록은 반드시 진실해야 하며 보존기한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검험검역기구는 반드시 관할구역 내의 수하인의 수입과 판매 기록에 대해 검사해야 한다.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농업부의 연합공고 2010년 제73호(발표일 : 2010.7.22) : “광우병 국가로부터의 소 유지 수입을 회복할 데 관한 공고”

중국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세계동물위생조직의 관련 표준을 참조하여 과학적 평가를 거쳐 본 공고 발표일로부터 중국 검험검역의 요구에 부합되는 공업용도에 사용되는



광우병 국가의 소유지(불용성 잡질의 함량이 0.15%를 초과하지 않음)와 유지제품의 수입을 허용한다.

농업부와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이 2004년 9월 28일에 발표한 제407호 공고에서 소 유지에 대한 요구를 집행하는 것을 중지한다.

6) 8월 검역규정 변동사항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10년 제81호 공고(발표일 : 2010.8.5)

“식품첨가제생산허가심사통칙을 발표할 데 관한 공고”

식품첨가제 생산의 감독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식품안전법”, “공업제품생산허가증 관리조례”와 “식품첨가제생산감독관리규정”에 따라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식품첨가제생산허가심사통칙”(2010년)을 제정하여 발표하며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식품첨가제제품생산허가증발급(교환)시행세칙”(2005년 제45호)와 “식용향료 조미료제품생산허가시행세칙”(2008년 297호)은 동시에 폐지한다.

첨부 : 식품첨가제생산허가심사통칙(2010년)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10년 제131호 법령(발표일 : 2010.8.5)

“식품검험기구자격인정관리방법”

“식품검험기구자격인정관리방법”은 2010년 7월 22일에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국장회의에서 통과되어 발표하며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10년 제85호 공고(발표일 : 2010.8.13)

“콩고 황열병이 중국으로 전파되는 것을 예방할 데 관한 공고”

① 콩고 1살 이상 인원이 입국할 때에 반드시 검험검역부서에 유효한 황열병 예방접종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효한 황열병 예방접종 증서가 없는 인원에 대해 검험검역부서는 그 인원이 감염환경에서 떠난 날로부터 6일간 체류검사 또는 거주지 격리를 실시한다.

- ② 콩고로부터 오는 인원이 만약 발열, 황달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입국할 때에 검험검역 부서에 구두로 신고해야 하며, 입국한 후에 상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 반드시 즉시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의사에게 최근 여행경과를 설명하여 제때에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검험검역부서는 반드시 전염병지역 인원에 대해 체온 검사, 의학 순찰 등을 강화하며 스스로 신고하거나 현장에서 발견한 황열병 감염인원과 감염협회가 있는 인원에 대해 검험검역부서는 반드시 격리 체류 검사 등 의학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콩고로부터 오는 교통공구와 컨테이너는 반드시 유효한 모기 박멸처리를 해야 한다. 검험검역부서는 콩고로부터 오는 교통공구와 컨테이너에 대해 엄격히 검역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모기를 발견할 경우에 즉시 모기 박멸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검험검역부서는 반드시 항구 위생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유효한 조치로 모기를 박멸하며 모기 번식장소를 청소하고 항구 모기 밀도를 낮추어 질병의 전염을 예방해야 한다.
- ④ 콩고로 가는 인원은 반드시 출입국검험검역부서와 그 국제여행위생보건센터에 관련 상황을 자문하거나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웹사이트의 위생검역과 여행건강 칼럼에 등록하여 관련 정보를 검색하며 황열병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 ⑤ 황열병은 모기 전염질병으로서 잠복기는 약 3-6일이며 증상은 돌발적 발열, 두통, 배부 아픔, 구역증, 구토이며 중증 환자는 황달, 간장 붓음, 단백뇨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새로 전염병지역에 들어간 타지역 인원의 사망률은 30%-40%에 도달할 수 있다. 황열병 유행지역에 갈 때에 반드시 10일 전에 황열병 백신을 접종해야 하며 여행할 때에 모기 예방, 모기 박멸에 주의하며 모기에 물리는 것에 주의하며 일단 상기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야 한다.

본 공고는 발표일로부터 3개월 유효하다.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10년 제86호 공고(발표일 : 2010.8.17)

“페루 흑사병 전염병이 중국으로 전파되는 것을 예방할 데 관한 공고”

- ① 페루에서 오는 인원이 만약 고열, 림프선 붓음, 가슴 아픔, 기침, 가래 뱉음, 출혈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입국할 때에 반드시 출입국검험검역부서에 신고해야 하며, 검험검역부서는 반드시 페루에서 오는 인원의 건강 신고, 체온 검사, 의학 순찰 등을 강화해야 하며 신고하거나 현장에서 발견한 흑사병 감염인원과 감염협회가 있는 인원에 대해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의학조치를 취하며 제때에 지정된 의료기구에 보내어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 ② 페루에서 오는 인원은 입국할 때에 반드시 출입국검험검역인원으로부터 “진찰편의카드”를 스스로 요구해야 한다. 입국한 후에 상기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즉시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의사에게 최근 여행경과를 설명하며 “진찰편의카드”를 제출하여 의료기구의 우선적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 ③ 페루로부터 오는 교통공구, 화물, 컨테이너, 수하물, 우편물에 대해 출입국검험검역부서는 반드시 검역 검사를 엄격히 진행해야 하며 쥐 흔적, 벼룩, 쥐 등을 발견할 경우에 즉시 쥐와 벼룩을 박멸하는 처리를 해야 한다.
- ④ 출입국검험검역부서는 반드시 항구 구역 내의 쥐와 벼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며, 만약 밀도가 표준을 초과하거나 병원체 검사결과가 양성인 것이 발견되면 반드시 각종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 항구의 쥐와 벼룩 밀도를 낮추어야 한다.
- ⑤ 페루로 가는 인원은 출입국검험검역부서와 그 국제여행위생보건센터에 관련 상황을 자문하거나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웹사이트의 위생검역과 여행건강 칼럼에 등록하여 관련 정보를 검색하며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외에서 흑사병 증상이 발견될 경우에 반드시 즉시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 제때에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본 공고는 발표일로부터 3개월 유효하다.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10년 제88호 공고(발표일 : 2010.8.23)

“식품생산허가심사통칙(2010년)을 발표할 데 관한 공고”

식품생산허가 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해, “식품안전법” 및 그 실시조례와 “식품생산허가 관리방법”(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제129호 법령)에 따라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식품생산허가심사통칙”(2010년)을 수정하여 발표하며 발표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식품품질안전시장진출심사통칙(2004년)”은 동시에 폐지한다.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10년 제90호 공고(발표일 : 2010.8.25)
“생산허가증제도관리를 시행하는 제품목록을 발표할 데 관한 공고”

행정비준 개혁요구에 따라 엄격히 심사논증을 거쳐 국무원은 2010년 7월 4월에 “국무원에서 다섯 번째로 관리등급 행정비준항목을 취소하며 하달할 데 관한 결정”(국발(2010) 21호)을 발표하여 건축 덧문, 공업용 향료 등 2가지 제품의 생산허가 기준을 취소할 것을 결정하며, 국무원 행정비준개혁영도소조 사무실은 동시에 인조 판넬 등 64가지 제품에 대해 계속 생산허가증제도관리를 시행하는 것을 확인한다. 현재 생산허가증제도관리를 시행하는 제품목록을 발표한다.

첨부 : 생산허가증제도관리를 시행하는 제품목록

7) 9월 검역규정 변동사항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농업부 2010년 제99(발표일 : 2010.9.7)
“구제역 국가로부터의 관련 제품 수입을 허용할 데 관한 공고”

구제역의 전염을 예방하고 중국 목축업의 안전과 인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과 농업부는 선후로 공고를 발표하여 구제역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관련 동물과 그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했다.

리스크 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당일부터 구제역으로 인해 유제품에 대한 수입금지를 취소하고 구제역이 발생한 국가와 지역으로부터 건강한 동물, 가공처리를 거쳐 구제역 병독을 전염할 수 없는 유제품의 수입을 허용한다. 수입 유제품은 중국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수입하지 못한다.

관광객의 휴대와 우송을 허용하는 유제품은 분유에만 제한한다.

※ 상기공고와 관련 국가별 품목별 세부적인 사항 미확정인 상황으로 중국 내부적인 입장 확정 후 관련 국가와 협의 예정



8) 10월 검역규정 변동사항

□ 국가품질감독검역총국 2010년 제107호(발표일: 2010.9.25)

“수출입상품 검험감정업무허가를 취득한 검험기구를 발표할 데 관한 공고”

“수출입상품검험법”, “수출입상품검험감정기구관리방법”과 국가품질감독검역총국 2003년 제122호 공고의 규정에 따라 국가품질감독검역총국의 비준을 받아 심천시화측검측기술주식유한회사 상해분공사 등 10개 검험기구가 본 공고일로부터 수출입상품 검험감정업무허가를 취득하는 것을 비준하며 동시에 상해사달신제품검측유한공사 등 2개 검험기구의 법인변경 신청을 비준한다. 현재 허가와 변경상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 허가를 취득한 검험기구와 허가범위

① 심천시화측검측기술주식유한공사 상해분공사

허가범위: 수출입 완구, 방직품, 자동차 및 부품, 전자전기제품의 검험, 검측

② 청도시화측검측기술유한공사

허가범위: 수출입 전자전기제품, 자동차부품, 완구, 방직품, 환경오염물의 검측

③ 상해신미상품검측유한공사 항주분공사

허가범위: 대외무역 관련된 국내외 고객의 위탁을 받아 수출입 방직품과 경공업 제품 등 소비품의 검험을 진행(실험실 검측활동을 포함하지 않음)

④ 아검제품품질정보자문(심천)유한공사 항주분공사

허가범위: 수출 방직품, 복장, 경공업제품 등 소비품의 외관검측(실험실 검측활동을 포함하지 않음)

⑤ 심천필유화법상품검정유한공사 동관분공사

허가범위: 복장, 방직품, 신발, 완구, 가구, 소형 전기, 등구, 장식품과 문구 등 소비품의 현장검험(실험실 검측활동을 포함하지 않음)

⑥ 심천필유화법상품검정유한공사 광주분공사

허가범위: 대외무역 관련된 국내외 고객의 위탁을 받아 수출입 방직품과 기타 소비품의 현장검험을 진행(실험실 검측활동을 포함하지 않음)

⑦ 심천필유화법상품검정유한공사 사구분공사

허가범위: 공업품 검험과 기타 관련 공장의 생산품질 통제, 관리 등 상황의 검사

⑧ 전흥(상해)테스트기술서비스유한공사

허가범위: 방직품, 복장, 원단, 신발, 완구, 가구의 상업성 검측

⑨ 청도고도장식유한공사

허가범위: 수출입 복장과 일용 방직품의 검험(실험실 검측활동을 포함하지 않음)

⑩ 남경고도장식정리유한공사

허가범위: 수출입 복장과 일용 방직품의 검험(실험실 검측활동을 포함하지 않음)

○ 법인변경을 비준한 검험기구

① 상해사달신제품검측유한공사(국질검검허072호)를 상해표검제품검측유한공사로 변경하는 것을 비준하고 “수출입상품검험감정자격증서”를 발급하며 증서번호와 허가범위는 변경되지 않고 동시에 기존 법인의 “수출입상품검험감정자격증서”를 말소한다.

② 상해필법극검험유한공사 및 그 천진분공사와 의오분공사(국질검검허081호)를 필유필법극검험(상해)유한공사 및 그 천진분공사와 의오분공사로 변경하는 것을 비준하고 “수출입상품검험감정자격증서”를 발급하며 증서번호와 허가범위는 변경되지 않고 동시에 기존 법인의 “수출입상품검험감정자격증서”를 말소한다.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10년 제114호(발표일: 2010.10.9)

“스코틀랜드 위스키에 대한 지리마크보호를 실시를 비준할 데 관한 공고”

2005년 9월 5일에 체결한 “중국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과 유럽위원회 무역총사가 지리마크에 관한 양해비망록”에 따라 영국 환경, 식품, 농촌사무부의 추천을 받아 “지리마크제품보호규정”을 참조하여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영구 스코틀랜드 위스키협회가 스코틀랜드 위스키가 중국에 등록한 지리마크의 보호에 관한 신청을 심사했다. 심사에 합격하여 당일로부터 스코틀랜드 위스키에 대해 지리마크 보호를 실시하는 것을 비준한다.

첨부: “스코틀랜드 위스키 품질기술요구”



9) 11월 검역규정 변동사항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10년 제115호 공고(발표일: 2010.10.9)

“양골라와 콩고 척수회백질염이 중국으로 전파하는 것을 예방할 데 관한 공고”

척수회백질염 병독이 중국으로 전파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국경위생검역법” 및 그 실시세칙의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 ① 양골라와 콩고에서 오는 인원, 특히 5세 이하 어린이가 발열, 목난지, 기침, 구토, 설사, 목 경직 및 하지 이완성마비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입국할 때에 본인 또는 어린이의 동반인원은 반드시 검험검역인원에게 주동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 ② 출입국검험검역기구는 반드시 항구 체온 검사, 의학 순찰 등 조치를 강화하고 상기 증상을 신고하거나 발견한 의심스러운 병례에 대해 반드시 제때에 일일이 검사하며 유효한 의학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양골라, 콩고로 가는 인원은 출입국검험검역기구 및 그 국제여행위생보건센터에 관련 전염병현황을 자분할 수 있다. 척수회백질염 백신의 접종 여부를 막론하고 상기 국가로의 출국 2주 전에 척수회백질염 백신을 접종할 것을 건의한다.
- ④ 상기 국가로부터 직접 오는 교통공구에 오염되었거나 오염 혐의가 있는 환경, 물품과 환자 배설물이 있을 경우, 반드시 소독해야 한다. 교통공구에서의 음용수, 식품에 대해 샘플링 검사를 진행하며 필요할 경우에 소독과 소각 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입국 교통공구에서 하역한 고체와 액체 폐기물에 대해 반드시 엄격한 소독과 무공해 처리를 실시해야 한다.
- ⑤ 척수회백질염은 척수회백질염 바이러스로 발생하는 급성 전염병이다. 병독에 감염된 후 대부분 사람은 열성 감염으로 나타나며 어떠한 증상도 없다. 소수 사람은 발열, 목난지, 기력이 없거나 구역증, 설사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불과 1%~10% 감염환자는 급성 이완성마비가 나타나 소아마비증이라고 속칭한다. 척수회백질염 바이러스는 오염된 식품과 물을 통해 전파되며 잠복기는 3일-35일이고 평균 1주-2주이며 주요 감염원은 열성 감염환자와 발병초기의 환자이다. 백신을 접종하면 척수회백질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본 공고는 발표일로부터 3개월 유효하다.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10년 제116호 공고(발표일: 2010.10.19)

“카메론, 차드, 니제르, 나이지리아 등 국가의 콜레라가 중국으로 전파하는 것을 예방할 데 관한 공고”

콜레라가 중국으로 전파하는 것을 예방하고 상기 국가로 출국하는 인원의 건강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경위생검역법” 및 그 실시세칙의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 ① 상기 국가에서 오는 인원이 구역증, 설사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입국할 때에 반드시 검험검역기구에 주동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입국한 후에 상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 반드시 즉시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며 의사에게 최근 여행현황을 설명하여 제때에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출입국검험검역기구는 반드시 상기 지역으로부터 오는 인원의 체온 검사, 의학 순찰 등 검사를 강화하고 주동적으로 신고하거나 상기 증상이 발견된 인원에게 대해 상세하게 일일이 검사하며 의심스러운 병례에 대해 “의사진찰카드”를 발급하고 “의사진찰카드”를 제출하면 우선으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 ② 출입국검험검역기구는 직접 상기 국가로부터 오는 교통공구, 화물, 컨테이너, 수하물, 우편물에 대해 엄격히 검역검사를 진행하며 콜레라에 오염된 것을 발견할 경우, “국경위생검역법실시세칙” 제75조~제83조의 관련규정에 따라 소독, 해충제거 등 위생처리를 해야 한다.
- ③ 상기 국가로 출국하는 인원은 출입국검험검역기구 및 그 국제여행위생보건센터로부터 상기 지역의 전염병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웹사이트(<http://www.aqsiq.gov.cn>)의 위생검역과 여행건강 페이지에 등록하여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 ④ 콜레라는 V.cholera로 인해 발생하는 열성 위장 전염병으로서 발병속도가 빠르고 전파속도가 빠르며 주요 증상은 격렬한 설사와 구역증이며 엄중한 탈수, 주변순환 쇠퇴와 급성 신장기능 쇠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제때에 치료하지 못하면 쉽게 사망



한다. 상기 국가로 출국하는 인원이 콜레라 유행구역에서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식품, 음료와 음용수 등을 식용 또는 음용하지 말아야 한다. 일단 설사, 구역증 등 증상이 나타나면 내복액을 복용하여 탈수를 치료하는 동시에 제때에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야 한다.

본 공고는 발표일로부터 3개월 유효하다.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10년 제118호 공고(발표일: 2010.10.28)

“길림성 시범 국내무역화물이 북한을 통과하여 중국 동남 연해지역으로 운송될 때의 검험검역 관련사항에 관한 공고”

길림성이 국내무역화물이 북한을 경과하여 중국 동남 연해지역으로 운송하는 시범업무를 지원하고 길림이 북한에 대한 지역우세를 발휘하며 국내무역 물자의 남부지역 운송통로를 개척하고 동북공업기지의 경제 진흥을 가속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길림성 시범 국내무역화물 국경경과 운송의 출입국 검험검역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 ① 본 공고에서 “길림성 국내무역화물이 국경경과 운송”은 길림성 국내무역화물이 길림 훈춘 권하항구를 통해 수출된 후 북한 원정리-라진항구에서 환적작업을 진행한 후 상해, Ningbo 항구로 직접 운송하여 다시 입국하는 운송방식을 가리킨다.
- ② 국내무역화물의 국경경과 운송업무에 종사할 업체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길림출입국검험검역국에 제출하여 등록수속을 밟은 후에 국내무역화물 국경경과 운송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 영업집조와 조직기구대마중
 - 길림성인민정부에서 발급한 비준 또는 인가문건
 - 정확히 작성한 “국내무역화물 국경경과 운송업체 등록신청표”
 - 출입국검험검역기구에서 필요하는 기타 서류
- ③ 본 공고는 석탄 국경경과 운송에만 적용한다.

본 공고는 발표일로부터 실시한다.

□ 국가품질감독검역검역총국 2010년 제124호 공고(발표일: 2010.11.4)

“아이티, 파키스탄 콜레라가 중국으로 전파하는 것을 예방할 데 관한 공고”

콜레라가 중국으로 전파하는 것을 예방하고 아이티와 파키스탄으로 출국하는 인원의 건강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경위생검역법” 및 그 실시세칙의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 ① 아이티와 파키스탄에서 오는 인원이 구역증, 설사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입국할 때에 반드시 검험검역기구에 주동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입국한 후에 상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 반드시 즉시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며 의사에게 최근 여행현황을 설명하여 제때에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출입국검험검역기구는 반드시 상기 지역으로부터 오는 인원의 체온 검사, 의학 순찰 등 검사를 강화하고 주동적으로 신고하거나 상기 증상이 발견된 인원에게 대해 상세하게 일일이 검사하며 의심스러운 병례에 대해 “의사진찰카드”를 발급하고 “의사진찰카드”를 제출하면 우선으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 ② 출입국검험검역기구는 직접 아이티, 파키스탄으로부터 오는 교통공구, 화물, 컨테이너, 수하물, 우편물에 대해 엄격히 검역검사를 진행하며 콜레라에 오염된 것을 발견할 경우, “국경위생검역법실시세칙” 제75조~제83조의 관련규정에 따라 소독, 해충제거 등 위생처리를 해야 한다.
- ③ 상기 국가로 출국하는 인원은 출입국검험검역기구 및 그 국제여행위생보건센터로부터 상기 지역의 전염병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국가품질감독검역총국 웹사이트(<http://www.aqsiq.gov.cn>)의 위생검역과 여행건강 페이지에 등록하여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 ④ 콜레라는 V.cholera로 인해 발생하는 열성 위장 전염병으로서 발병속도가 빠르고 전파속도가 빠르며 주요 증상은 격렬한 설사와 구역증이며 엄중한 탈수, 주변순환 쇠퇴와 급성 신장기능 쇠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제때에 치료하지 못하면 쉽게 사망한다. 아이티, 파키스탄으로 출국하는 인원이 콜레라 유행구역에서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식품, 음료와 음용수 등을 식용 또는 음용하지 말아야 한다. 일단 설사, 구역증 등 증상이 나타나면 내복액을 복용하여 탈수를 치료하는 동시에 제때에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야 한다.

본 공고는 발표일로부터 3개월 유효하다.

제2절 ● 품목별 검역제도

가. 육류

1) 검험검역범위

육류제품은 동물 몸통의 어떠한 식용 가능한 부분을 가리키며, 육류, 장기, 부산물 및 상기 생산품을 원료로 하는 제품을 포함(통조림을 포함하지 않음)

2) 제출서류

입국동식물검역허가증, 수출국가 또는 지역 정부부서의 검험검역증서(원본), 원산지 증서, 무역계약서, 신용증, 선하증권, 상업송장 등

3) 관련법규

- “출입국육류제품검험검역관리방법”
- “입국육류제품검험검역관리규정”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입국육류제품 검역비준 관리업무를 더 강화하고 규범화할 데 관한 통지”

4) 검험검역절차

□ 경영업체에 대한 요구

- 각 직속검험검역국은 관할구역 내의 수입 육류제품 수입업체, 지정한 등록저장냉장고와 가공사용업체에 대해 검역 감독 제도를 시행
- 수입 육류제품은 반드시 “입국동식물검역허가증”이 지정한 항구로부터 입국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검험검역을 신고한 후, 등기냉장고 또는 가공업체의 저장냉장창고에

서 검험검역을 진행하며, 합격한 후에 “입국화물검험검역증명”을 발급하여 가공, 판매, 사용하도록 함

□ 검역 기준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수출국가 또는 지역과 체결한 쌍변검역협정(검역협약서, 의정서, 비망록 등을 포함)의 규정, 국외 생산업체 등기사항, 수출국가 또는 지역의 동물 전염병상황에 따라, 리스크 분석을 거쳐 “수입 육류제품을 허용하는 국가 또는 지역 및 관련된 품목과 용도 명단”을 작성
- 각 직속검험검역국은 “입국동식물검역비준관리방법”(25호 령)과 상기 명단의 규정에 따라 초심을 진행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각 직속검험검역국의 초심의견에 따라 검역 기준의 중심업무를 책임

□ 수입항구 검사

- 검험검역기구는 수입 육류제품의 검험검역 신고를 접수할 경우,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이 제출한 서류의 유효성을 심사, 허가증의 신청업체와 수출국가 정부부서에서 발급한 검역증서에서의 수하인, 무역계약서의 체결인과의 일치여부를 심사, 화주가 제출한 “입국동식물검역허가증” 제1페이지와 검험검역기구의 보관용 제2페이지가 서로 부합되는 가를 확인
- 검험검역기구는 규정에 따라 입국 육류제품에 대해 항구검사와 전염병예방 소독처리를 진행

□ 검험검역 진행

- 항구검사에 합격될 경우, 지정한 등기저장냉장고 또는 가공업체 냉장고에 입고시켜, “출입국육류제품검험검역관리방법” 및 관련 문건의 규정에 따라 하차과정에서 밀수, 포장 교체, 은닉 보고, 누락 보고 등이 있는가를 검사하고 기록하여 보관
- 주로 포장 검험, 운송도구 검험, 감관 검험, 규격 검험을 진행하며, 실험실 검사가 필요 시 샘플링검사를 진행



□ 검역증명 발급

- 항구 검사, 감관 검험과 실험실 검사에 합격될 경우, “입국화물검험검역증명”을 발급하여 생산, 가공 또는 판매, 사용하도록 허락
- 검험검역에 불합격될 경우, “검험검역처리통지서”를 발급하여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이 반환, 소각 또는 무공해 처리를 하도록 함

나. 과일

1) 적용범위

일반무역방식의 수입과일의 검험검역

2) 관련법규

- 출입국동식물검역법 및 실시조례
- 출입국상품검험법 및 실시조례
- 식품안전법 및 실시조례
- 입국과일검험검역감독관리방법
- 지중해광대파리검역감정방법

3) 검험검역절차

□ 검험검역 신고접수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이 검험검역을 신고할 때에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입국화물검험검역신고서
- 입국동식물검역허가증
- 수출국가 또는 지역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서

- 원산지증명서
- 수출입계약서 또는 신용증 및 상업송장
- 검험검역신고대리위탁서(대리 신고할 경우에만 적용)

□ 검험검역 평가심사

- 검험검역업무규정에 따라 신청서류를 심사한다.
- 입국동식물검역허가증, 식물검역증서, 홍콩, 마카오지역 검험기구에서 발급한 확인증명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며 필요시 검증을 한다.
- 입국동식물검역허가증, 수출국가 또는 지역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서, 수출입계약서의 수하인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 식물검역증서는 반드시 내용과 격식이 국제식물검역조치표준 ISPM 제12호 “식물검역증서준칙”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고, 컨테이너로 운송하여 입국할 경우에 식물검역증서에 컨테이너 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입국과일식물 검역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 홍콩, 마카오를 통해 중국 내륙으로 입국할 경우, 홍콩, 마카오지역 검험기구에서 발급한 확인증명과 전송정보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 심사결과, 출입국검험검역 관련규정에 부합될 경우에 검험검역 신고를 접수하고, 그렇지 않으면 접수하지 않는다.

□ 현장검험검역

○ 검험검역방안을 확정

- 입국동식물검역허가증의 검역요구가 수출입계약서에 명시되었는가를 심사한다.
- 국가 식물검험검역규정 및 수출국가 또는 지역의 전염병 발생상황에 따라 검험검역방안을 작성한다.
- 현장검험검역 시간, 장소, 인원을 확정한다.

○ 화물 증빙서류를 검사

- 컨테이너를 운송할 경우, 컨테이너번호가 식물검역증서에 표시되어야 한다. 홍



콩, 마카오를 통해 수입될 경우, 컨테이너 번호가 홍콩, 마카오지역 검험기구에서 발급한 확인증명과 일치한가를 확인한다.

- 포장박스에 반드시 중문 또는 영문으로 과일 명칭, 원산지, 포장업체 명칭 또는 코드를 표시해야 하고, 특별한 요구가 있을 경우 입국과일식물 검역요구를 참조한다.
- 박스를 열어 과일의 종류와 수량(중량)을 확인한다. 홍콩, 마카오를 통해 수입될 경우, 화물이 홍콩, 마카오지역 검험기구에서 발급한 확인증명의 내용과 일치한가를 확인한다.

○ 검사확인

- 과일 운송도구인 컨테이너, 자동차 또는 선박에 토양, 유충, 번데기가 있는가를 확인한다.
- 목재 포장 또는 기타 식물성 포장재료를 사용할 경우에 관련규정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며, 포장박스 내외에 병충, 곰팡이, 잡초, 토양, 가지와 잎, 기타 오염물이 있는가를 확인한다.
- 과일 검사 : 대형 선박으로 운송할 경우, 상중하 3층을 나누어 하선하면서 검사한다. 상층 검역에서 결과가 나오면 하선할 수 있다. 컨테이너로 운송하는 과일은 반드시 하선하여 검험검역인원이 검사하고 샘플링 하도록 해야 한다. 무작위와 대표성 원칙에 따라 멀티 포인트 샘플링검사를 진행한다.

〈독립된 운송도구(컨테이너, 자동차, 선박 등)의 샘플링규정〉

과일 총수량	샘플수량(건)	샘플량(kg)
≤500	10(10건 미만일 경우 모두 검사)	0.5~5
501~1000	11~15	6~10
1001~3000	16~20	11~15
3001~5000	21~25	16~20
5001~50000	26~100	21~50
>50000	100	50

- 과일에 병해충, 가지와 잎, 토양이 있는가를 검사한다. 과일에 곰팡이 변질, 부식, 기형, 변색, 얼룩점, 파문 등 병해증상이 있는가를 검사한다.
- 현장에서 과일을 쪼개어 벌레알, 유충 및 그 병해증상, 곰팡이 변질 등이 있는가를 검사한다.

〈과일 쪼개는 수량〉

과일 크기	쪼개는 수량
비교적 작은 과일(포도, 여지, 용안, 앵두 등)	샘플별 0.5kg 이상
중간 크기 과일(망고, 감귤, 사과, 배 등)	샘플별 5개 이상
비교적 큰 과일(수박, 두리언, 바라밀 등)	독립 운송공구별 5개 이상
바나나	총수량<5000건 : 5kg 이상 총수량≥5000건 : 10kg 이상

- 유해생물 또는 수상한 전염병이 발견될 경우, 유해생물 및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과일, 포장박스 및 적재하는 운송공구를 사진을 찍거나 녹화한다.

○ 검험검역 진행

샘플제출서를 작성하고 무작위로 취한 대표성 샘플과 발견된 병해충 과일, 병해충, 잡초, 토양, 가지와 잎에 표지를 부착하여 각각 실험실에 보내어 안전위생검험과 유해생물 검역감정을 진행한다.

일상 실험실에서 안전위생항목에 대한 검험결과에 따라 동일 국가 또는 지역, 동일 가공공장의 과일에 대해 검사빈도와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안전위생항목을 적당히 조절할 수 있다.

- 검험검역을 진행하지 않은 입국과일은 반드시 검험검역기구에서 지정한 장소에 저장해야 하며, 함부로 이동, 판매, 사용하지 못한다.
- 과일이 실제로 입국한 품목과 수량(중량)에 따라 입국동식물검역허가증을 심의하여 삭제한다.



□ 실험실 검험검역

○ 검역

- 과일 표면과 쪼개어 검사 : 실험실 기술인원은 과일 표면과 내부의 유해생물과 그 위해증상을 세밀하게 검사하며, 필요시 고배율의 현미경을 사용한다.
- 사육 또는 배양 검사 : 임시 감정할 수 없는 벌레알, 유충, 번데기, 병원성 미생물 등 유해생물에 대해 그 생물학 습성에 따라 적합한 조건을 제공하여 사육 또는 배양한다. 임시로 병해충이 있는지를 확정할 수 없는 과일에 대해 남겨서 배양하여 관찰한다.

○ 검험

관련규정과 표준에 따라 유독, 유해생물(중금속, 잔류농약 등)의 검험을 진행한다.

○ 결과보고서를 제출

검험검역 감정결과에 따라 실험실은 반드시 제때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짧은 시간에 실험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경우, 반드시 제때에 검험검역 신청업체에 통보하며 일정한 시간(일반적으로 15일을 초과하지 않음)에 완료한다고 알려야 한다.

실험실에서 확정할 수 없는 유해생물은 반드시 제때에 상급 실험실 또는 상급 주관부서에서 인가한 실험실에 보내어 감정해야 한다.

□ 결과평가와 증서발급

○ 검험검역에 합격할 경우

검험검역에서 유해생물 또는 전염병을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 안전위생항목이 중국 안전위생 요구에 부합될 경우, 입국을 허용하며 “입국화물검험검역증명”을 발급한다.

○ 검험검역에 합격하지 않을 경우

- 검역성 유해생물 또는 기타 검역의미가 있는 유해생물을 발견하면, 반드시 위해제거 처리를 진행해야 하며, 위해제거 처리가 합격되면 통관을 허용한다.

- 검험검역을 거쳐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반송 또는 소각 처리를 하며 “검험검역처리통지서”를 발급한다.
- 현장 검사결과 식물검역증서에 표기하지 않은 과일이 혼적하거나 섞여 있거나 및 기타 화물증명이 부합되지 않는 상황이 발견될 경우
- 현장검사 결과 포장박스에 규정에 따라 중문 또는 영문으로 과일 명칭, 원산지, 포장공장 명칭 또는 코드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반송 또는 소각 처리를 한다.
- 토양, 가지, 잎 등 식물 잔류물(여지, 용안, 포도를 제외)을 발견했을 경우, 반송 또는 소각 처리를 한다.
- 검사된 유독, 유해물질의 수량이 중국 관련 안전위생표준의 규정을 초과할 경우
- 검역성 유해생물 또는 기타 검역의미가 있는 유해생물을 발견되어 유효한 검역처리방법이 없을 경우
- 기타 특별한 처리요구는 입국과일식물 검험요구를 참조한다.
- 대외 배상청구를 할 경우, 관련된 검험검역증서(“식물검역증서”)를 발급한다.

□ 검험검역처리 감독관리

- 유해제거, 소각, 재수출, 반송 등 검역처리과정에 대해 감독한다. 필요시에 유해제거, 소각과정에 대해 사진을 찍거나 녹화한다.
- 검험검역기구는 검험검역기간에 과일을 임시로 저장하는 장소에 대해 비준제도를 실시한다.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실제상황에 따라 관련 검험검역기구를 지정하여 비준을 받아 중계 또는 재수출의 과일에 대해 검역감독을 실시한다.
- 검험검역기구는 필요에 따라 입국과일의 하역, 저장장소에 대해 유해생물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중국이 허용하는 입국과일 종류 및 수출국가(지역)(2010년 1월 4일)〉

수출국가/지역	과일종류
태국	타마린드, 귤, 사과, 슈가애플, 오렌지, 유자, 모과, 양도, 구아바(guava), 람부탄(rambutan), 자바애플, 바라밀, 롱콩(longkong), 파인애플, 인삼과, 바나나, 시계फल, 야자, 용안, 두리언, 망고, 여지, 설대
말레이시아	용안, 설대, 여지, 야자, 수박, 모과, 람부탄(rambutan)
인도네시아	바나나, 용안, 설대, 사라카(Salacca)
베트남	망고, 용안, 바나나, 여지, 수박, 람부탄(rambutan), 바라밀, 피타야(Pitaya)
미얀마	용안, 설대, 람부탄(rambutan), 여지, 망고, 수박, 참외, 대추(jujube)
필리핀	파인애플, 바나나, 망고, 모과
일본	사과, 배
파키스탄	망고, 감귤
인도	망고, 포도
이스라엘	오렌지, 유자, 귤, 레몬, 포도유자
중국 대만	파인애플, 바나나, 야자, 슈가애플, 모과, 양도, 망고, 구아바(guava), 자바애플, 빈랑, 귤, 유자, 자두, 비파, 감, 복숭아, 대추, 매실, 레몬, 오렌지, 피타야(Pitaya), 하미과
미국	자두(캘리포니아), 앵두(워싱턴, 오리건, 캘리포니아, 아이다호), 포도(캘리포니아), 사과(Red Delicious, Golden Delicious 2개 품종, 워싱턴, 오리건, 아이다호), 귤, 오렌지, 유자, 레몬(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애리조나, 텍사스)
멕시코	아보카도(avocado), 포도
파나마	바나나
에콰도르	바나나
콜롬비아	바나나
우루과이	귤, 오렌지, 유자, 레몬
아르헨티나	오렌지, 포도유자, 귤 및 그 잡교 품종
칠레	참다래(kiwi fruit), 사과, 포도, 자두子, 앵두
프랑스	사과, 참다래(kiwi fruit)
스페인	귤, 오렌지, 유자, 레몬
남아프리카	귤, 오렌지, 유자, 레몬, 포도
이집트	오렌지, 유자, 귤, 레몬, 포도유자
호주	귤, 오렌지, 레몬, 포도유자, 망고
뉴질랜드	귤, 오렌지, 레몬, 사과, 앵두, 포도, 참다래(kiwi fruit), 자두, 배, 매실
이탈리아	참다래(kiwi fruit)

다. 동·식물원성 식품

1) 적용범위

육류 및 그 제품(내장 포함), 신선한 계란, 신선한 우유, 식용 젤라틴, 식용 뼈, 족발, 뿔 및 그 제품, 동물원성 중약재료, 특수영양식품, 동물원성 화장품 원료 등 동물원성 수입식품과 각종 잡두, 잡곡, 가지과 채소 등 식물원성 수입식품

2) 관련법규

- 행정허가법
- 출입국동식물검역법 제5조, 제10조
- 출입국동식물검역법실시조례 제9, 10, 11, 14, 15조
- 출입국동식물검역비준관리방법
- 입국육류제품검험검역관리방법

3) 접수조건

신청업체는 법인자격이 있어야 하고 직접 무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대외무역경영업체 등록표, 영업집조, 조직대마증, 출입국검험검역업체 등기증을 취득해야 하며, 온라인 비준용 전자키가 있어야 하고 각 직속국에 등기해야 한다.

□ 신청서류

- ① 검험검역기구에서 발급한 등기증
- ②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발급한 영업집조
- ③ 상무부에서 비준한 업체가 수출입권한이 있는 문건, 자격증서 또는 위탁가공 비준 문건
- ④ 냉장창고 등기자격 증명문건, 신청업체와 저장업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등기한



냉장창고와 체결한 창고저장계약서도 제출해야 한다.(수입육류)

- ⑤ 중국 내 생산, 가공, 저장업체 등기자격 증명문건, 검역 감독 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입국동식물제품에 대해 사용 장소 직속 검험검역국은 반드시 고과보고서를 제출, 신청업체와 사용업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공계약, 창고저장계약 또는 대리수입계약도 제출(입국 소시지, 식용 녹용, 사슴뿔, 양곡, 잡두 등)
- ⑥ 반품원인의 설명, 반품계약, 수출할 때의 모든 증빙서류(반품화물)

□ 허가조건

- ① 수출과 경유 국가(지역)에 관련된 동식물 전염병이 없어야 한다.
- ② 중국 동식물 검역 관련법규와 부서 규정제도에 부합해야 한다.
- ③ 중국과 수출국가(지역)이 체결한 쌍무검역협정(검역계약, 의정서, 비망록 등을 포함)에 부합해야 한다.
- ④ 장부에서 삭제할 수 있는 입국동식물제품은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번 비준한 “검역허가증”의 사용, 삭제를 심사해야 한다.
- ⑤ 입국 후에 생산, 가공과정에 대해 검역 감독을 실시해야 하는 동식물 및 그 제품에 대해 운송, 생산, 가공, 저장 및 처리 등 과정이 검역방역 및 감독관리 조건에 부합되는 가를 심사하며, 생산, 가공업체의 가공능력에 따라 그 수입량을 판정한다.

4) 처리절차

□ 신청

신청업체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속 검험검역국에 신청을 제출하며 제품별 요구에 따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 접수

직속국은 신청 접수절차에 따라 제출한 증빙서류의 진위성과 온전성을 심사하여 접수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서류가 부족하거나 합법적 형식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직속국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접수한 현장 또는 5일 내에 1회로 신청업체에 알려준다. 직속국의

초심 후에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수출입식품안전국에 신청을 제출한다.

- 식품국은 외국 동식물 전염병, 법률법규, 공고금지법령, 경고통보, 리크스평가보고서, 안전평가보고서 등에 따라 직속국에 제출한 신청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온라인에서 “검역허가증” 또는 “미통과 통지서”를 발급한다.

직속국은 “검역허가증” 또는 “미통과 통지서”를 프린트한다. 직속국은 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라. 쌀

1) 검험검역 근거

□ 검험근거

- 국가 기술규범의 강제성요구에 따라 검험을 진행(검험내용은 안전, 위생, 건강, 환경 보호와 관련되는 요구 및 대응되는 수량, 중량, 포장 등을 포함)
- 국가 기술규범의 강제성요구가 아직 확정되지 않을 경우, 관련 표준을 참조하여 검험을 진행(A. 국제표준 B. 수입국표준 C. 수출국표준 D. 관련 기술요구)
- 중국정부와 수출국(지역) 정부와 체결한 검험검역협약서, 의정서, 비망록 등

□ 검역근거

- 중국정부와 수출국(지역) 정부와 체결한 검험검역협약서, 의정서, 비망록 등에서 규정한 검역요구
- 중국 법률, 법규와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규정한 식물 검역과 위생 검역의 요구
- “수입동식물검역허가증”에 포함되는 검역요구, 무역계약서 또는 신용장에 명시한 기타 검역요구



□ 적용표준

- 수출입 식량안전위생표준
- 수출입 식량품질검험방법표준
- 외국 관련 식량 검험표준
- 수출입 식량 검역성 유해생물 검역감정방법
- 수출입 식량 농약잔류물제한량 검험방법 SN표준

□ 규범성 문건

- 수출입 식량 검험검역의 규범성 문건
- 식량 국가기술규범
- 중국정부와 관련 국가(지역) 정부와 체결한 식물검역협약서, 의정서, 비망록

2) 검험검역방식

- 검험방식 : 건별 검험, 과정 검험, 검증 표본조사 등 방식
- 검역방식 : 산지 검역, 현장 검역, 실험실 검역 등 방식

3) 검험검역절차

□ 현장 검험검역

검험검역인원은 화주 또는 운송인으로부터 쌀 생산지, 품목 또는 쌀 적재, 처리, 운송상황을 파악하고 계약 조항, 운송계획을 검사하며 필요할 경우에 항해일지를 열람하고 아래와 같은 적재방식에 따라 실험실 검험검역을 진행한다.

- 산적 화물선 쌀 : 산적 화물선 쌀은 일반적으로 정박지에서 검험검역인원이 표출된 쌀에 대해 샘플링 검험을 진행하며, 검험결과 중국 검험검역 요구에 부합될 경우, 서면으로 화주에게 하역할 것을 통지한다. 특별한 상황으로 정박한 후 검험검역을 진행할 것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항구 검험검역기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컨테이너 산적 쌀 : 항구 현장 또는 검험검역기구에서 지정한 창고에 운송하여 박스를

열고 쌀의 표기, 품목, 등급이 부합되는가, 포장이 파손, 오염, 벌미, 간격이 있는지, 포장 내외에 벌레 시체, 산 벌레, 벌레알 및 기타 유해생물이 있는가를 검사한다. 초보적으로 검험검역에 합격한 후에 모두 하역할 수 있다.

- 선박 또는 컨테이너 봉지포장 쌀 : 봉지포장 쌀의 검사는 더미별 검사를 진행한다. 500봉지 이하는 3-5봉지, 501-1,000봉지는 6-10봉지, 1,001-3,000봉지는 11-20 봉지를 표준조사를 하며, 3,000봉지 이상은 500봉지 증가할 때마다 1봉지 추가하여 표본조사를 진행한다.

□ 실험실 검험검역

샘플을 실내용 시료 분취기(sample splitter)에서 실험실 검사용 샘플로 농축한다. 감각 기관 검험, 화학 검험, 물리 검험, 계기 분석, 생물학 검험 등 방법으로 감각기관, 물리화학, 위생과 식물 검역항목을 각각 검사하여 계약서, 표준 등에서 규정하거나 약정한 조건에 부합되는가를 감정한다.

- 품질 감각기관 검험 : 쌀의 외관과 냄새는 감각기관 검험의 주요 내용이다. 외관은 주로 쌀의 빛깔과 광택, 유형, 품질 균일도와 청결도를 가리키며, 냄새는 주로 식량이 고유한 정상적 냄새가 있는지, 벌미와 악취가 있는지를 가리킨다. 식량 감각기관 검험방법은 시각 검험법, 이빨 검험법, 촉각 검험법, 후각 검험법, 미각 검험법, 청각 검험법이 있다.
- 품질 물리화학 검험 : 품질 물리화학 검험은 주로 수분, 잡질, 파쇄입자, 손상입자, 단백질 함량, 지방 함량, 회분을 검험한다.
- 안전위생 검험검역 : 수입쌀 및 그 제품의 안전위생 검험검역 항목은 유독물질(예를 들면, 농약 잔류물, 중금속 등), 검역성 유해생물(국가에서 수입금지한 식물 검역위험성 질병, 해충, 잡초), 안전위생에 해로운 물질(유전자변이제품) 등을 포함한다.

□ 결과 평가와 처리

“검험근거”와 “검역근거”의 강제성 요구에 따라 수입쌀의 검험검역결과를 평가한다. 검험검역 결과, 수입쌀의 외관과 빛깔 및 광택, 냄새가 정상적이며 안전위생 검사결과, 검역 감정결과, 품질 분석결과가 모두 강제성 요구와 계약서, 신용장의 규정에 부합되



면 합격한 것으로 평가한다. 수입쌀이 검험검역에 합격된 후에 “입국화물검험검역증명”을 발급하여 판매 및 사용하도록 허용한다.

- 품질 불합격의 평가와 처리 : 수입쌀의 빛깔과 광택이 정상적이 아니고 악취와 곰팡냄새가 있으며 곰팡이와 변질현상이 뚜렷이 있거나 품질항목 검사결과 계약서, 신용장의 규정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 발견될 경우, 품질 불합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수입쌀의 품질이 불합격일 경우, 대외 배상용에 필요한 검험검역증명서류를 발급한다.
- 검역 불합격의 평가와 처리 : 수입쌀이 검역 결과 “검역근거”의 강제성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검역 불합격으로 평가하며 전염병상황을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수입쌀이 검역에 불합격했지만 유효한 처리방법이 있을 경우, 검험검역기구의 감독관리 아래에서 유해물질 제거처리를 진행하며 유효한 처리방법이 없을 경우, 반품 또는 소각 처리를 한다.
- 위생 불합격의 평가와 처리 : 수입쌀이 “검험근거”의 강제성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위생 불합격으로 평가해야 한다. 수입쌀이 위생항목에 불합격했지만 유효한 처리방법이 있을 경우, 검험검역기구의 감독관리 아래에서 유해물질 제거처리를 진행하며 유효한 처리방법이 없을 경우, 반품 또는 소각 처리를 한다. 수입쌀의 급성 독성 실험이 양성으로 나타날 경우, 즉시 위생학 조사를 진행하여 중독원인을 조사한 후에 반품 또는 소각 처리를 한다.

4) 검험검역 기록

검험검역의 최초 기록은 반드시 통일된 양식으로 작성하며 관련 부서와 실험실의 규범 번호가 있어야 한다. 검험검역의 최초 기록은 수입쌀 샘플링과 현장 검험검역의 최초 기록, 실험실 검험검역 최초 기록 등을 포함한다.

□ 수입쌀의 샘플링과 현장 검험검역의 최초 기록

기록내용은 검험검역 신고번호, 선박번호, 품명, 검험검역 신고중량(톤), 각 선실 적하중량(톤), 정박지 날짜, 항구 도착날짜, 하선 시작날짜, 하선 완료날짜, 샘플링날짜, 샘플번호, 샘플수량, 샘플링 날씨현황, 현장 검험검역 발견현황, 샘플링방법 근거,

실험실에 제공한 샘플수량, 외국에 제공한 샘플수량, 비교, 샘플링인원의 서명, 재검사 서명 등 내용을 포함한다.

□ 실험실 검험검역의 최초 기록

기록내용은 검험검역 신고번호, 실험실 번호, 품명, 샘플번호, 검험검역 항목, 검험검역 근거, 검험검역 결과, 결과 평가, 검험검역 날짜, 비교, 검험인원의 서명, 재검사 서명 등을 포함한다.

□ 검험검역의 최초 기록은 반드시 진실하고 명확하며 연필을 사용하지 못한다. 만약 수정한 내용이 있으면 수정 날인해야 한다.

□ 검험검역의 최초 기록은 제때에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간은 3년이다.

마. 소시지

1) 적용범위

수출입 소시지(소금에 절인 돼지고기 소시지, 소금에 절인 양고기 소시지 등)

2) 검험검역 근거

TGB7740-87 “수출 소시지”

TGB7741-87 “수출 소금에 절인 소시지 검험방법”

“식품안전법”

“수출입상품검험법” 및 그 실시조례

“수출입동식물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

“국경위생검역법” 및 그 실시세칙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02년 20호 법령 “수출식품 생산업체 위생등기 관리규정”

“수출소시지 가공업체 등기위생규범”



“수출입소시지 검험검역 업무매뉴얼”

수입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 기타 관련 법률, 법규 및 규범성 문건

3) 검험검역 비준절차

□ 생산업체 등록

위탁가공(원료수입가공) 업체가 입국수속을 밟기 전에 반드시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등기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수입 소시지는 반드시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비준한 지정생산업체 내에서 생산, 사용, 저장해야 한다.

□ 검험검역 비준

소시지를 수입하기 전에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소재지 검험검역기구에 수입 수속을 밟은 후에 “수입동식물검역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국가에서 발표한 동식물 전염병이 발생한 국가/지역 또는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사전정보로 수입을 임시로 중지하는 것을 규정한 국가/지역 또는 공장으로부터 관련 소시지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 검험검역 신고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입국 전 또는 입국할 때에 출입국검험검역기구에 검험검역을 신고해야 한다. 검험검역을 신고할 때에 반드시 “수입화물검험검역신고서”를 작성하며 “수입동식물검역허가증”, 수출국가 또는 지역에서 발급한 검험검역증서 원본, 원산지 증명, 무역계약서/신용증, 영수증, 선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시에 비목제 포장 증명 또는 목제 포장의 유해물질 제거처리 증명, 포장명세서 및 기타 보충문건, 협의서, 서신 등을 제출해야 한다.

□ 현장 검험검역

외부포장은 검험검역기구에서 소독한 후에 지정한 기업에 저장할 수 있으며, 화물이 기업에 도착할 때에 반드시 컨테이너 내와 화물에 대해 소고한 후에 입고할 수 있다.

검험검역인원은 반드시 현장에서 검험검역을 진행해야 한다.

- 증빙서류 확인 : 증빙서류와 화물의 명칭, 수량, 중량, 수출국가 또는 지역, 생산가공 기업 명칭 또는 등록번호, 포장, 검험검역 마크 등이 부합되는가를 확인한다.
- 포장 검사 : 외부포장이 손실이 없으며 뚜렷한 중영문 라벨이 있어야 하며 품명, 원산지, 생산날짜, 기업 등록번호와 목적지 등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목적지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표기해야 한다. 내부포장은 반드시 무독, 무해한 신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 제품 검사 : 소시지제품의 색깔, 냄새 등 감각특성이 정상적인가? 부식 변질되지 않았는가? 오물 등 잡질이 없는가? 등을 검사한다.
- 발견한 문제를 상세히 기록하며 화주 또는 대리인이 사인하도록 한다. 필요시에 사진을 찍거나 촬영하여 보관해야 한다.
- 화물과 증빙서류가 서로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반환하거나 소각 처리를 해야 하며, 부식 변질하거나 유해물질 오염이 있을 경우에 반환하거나 소각 처리를 해야 하며 “입국화물검험검역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 “수입동식물검역허가증”의 요구에 따라 잔류물 검사항목이 있을 경우, 반드시 대표적 샘플을 추출해야 한다. 표본을 추출할 때에 샘플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표본추출 후에 샘플 명칭, 샘플 번호, 중량, 검사항목, 표본추출날짜를 표기하며 “샘플링증명”을 작성한다.
- 현장 검험검역 상황과 실험실 검사결과 보고서에 따라 초기기록을 작성한다.

□ 증서 발급

수입 소시지가 검험검역에 합격할 경우에 “입국화물검험검역증명”을 발급하며, 검험검역에 불합격할 경우에 “입국화물검험검역통지서”를 발급한다.

4) 감독관리

□ 일상 감독관리

일상 감독관리는 검험검역 감독관리인원이 기업에 대한 일상 감독 관리를 가리키며, 일상 감독관리는 현장 검험검역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주로 현장작업을 검사한다.



외국 등록기업에 대해 정상적 생산기간에 매달 적어도 1-2회 감독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 정기적 감독관리

일상 감독관리에서 발견한 문제 및 정돈한 상황에 대해 추적확인을 진행한다. 정기적 감독관리는 외국에 등록된 기업에 대한 정기적 감독검사와 재검사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감독관리의 횟수는 해마다 2회 이상이다.

바. 유제품

1) 검역규정

□ 적용범위

수입 우유와 유제품의 HS코드는 04011000-04069000이며 품목은 신선한 밀크와 크림, 살균 우유, 멸균 우유, 발효 우유, 전지 분유, 탈지 분유, 영양강화 분유, 연유, 치즈, 유장가루 및 기타 유제품 등을 포함하며 수입업체 또는 그 대리업체는 검험검역 부서에 검험검역을 신고하며 검험검역에 합격한 후에 통관할 수 있다.

□ 검험검역 내용과 방식

검험검역 내용은 수량, 중량, 포장, 규격, 라벨, 표기, 안전위생, 품질검험 등을 포함하며 검험검역 방식은 자체 검험검역, 공동 검험, 과정 검험 등을 포함한다.

□ 현장 검험검역

- ① 항구 위생감독 : 계약서,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운송장 등에 의해 수출입 우유와 유제품의 수량, 중량, 라벨과 포장을 검사하며 감각 검험을 진행하며 동시에 현장 검험검역 기록과 샘플 수집을 진행한다.
- ② 샘플링과 샘플제작 : 수입 우유와 유제품의 샘플링 공구와 용기는 반드시 청결,

건조, 별미가 없어야 하며 유해물질이 샘플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수집한 샘플은 반드시 제때에 샘플 카드 또는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그 내용은 샘플 명칭, 번호, 샘플링 시간과 장소, 생산날짜, 비준증서 번호, 담당자 성명 등을 포함한다.

□ 실험실 검험검역

- ① 우유와 유제품의 주요 성분 검험 : 우유와 유제품의 주요 성분은 수분, 단백질, 지방, 유당, 무기염류, 비타민과 효소 등이며 실험실에서 상기 주요 성분의 함량을 측정한다.
- ② 미생물 검험검역 : 수입 우유와 유제품에서 매우 중요한 미생물 검험항목은 살모넬라균, 황색 포도상구균, 아질산염, 대장균, 산도, 세균총수 등을 포함한다.
- ③ 유독유해물질 측정 : 수입 우유와 유제품에 주요 유독유해물질은 농약 잔류물, 수은, 비소, 납 등 중금속이다.

□ 검험검역결과의 판정과 처리

수입 우유와 유제품의 검험검역결과가 검험검역 근거에 부합되면 합격으로 판정하며 수입할 수 있다. 만약 수입 우유와 유제품이 중국 식품표준과 요구에 부합되지 않으면 중국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검험검역부서의 감독 아래에서 반품, 소각, 용도 변경 또는 재가공 등 방식으로 처리한다.

2) 관련규정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수입 유제품 검험검역 감독관리 업무를 강화할 데 관한 통지”(발표일 : 2007.4.30)

- ① 각지 검험검역국은 국가 관련 법률, 법규와 표준 및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의 관련 문건요구에 따라 수입 유제품에 대해 검험검역 감독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검험검역에 합격하면 위생증서를 발급한 후 판매, 사용할 있다. 위생증서는 반드시 화물 원산지, 명칭, 브랜드, 규격, 비준증서 번호, 수량/중량, 생산날짜, 품질기간과 공급업체, 수입업체 등 상세한 정보를 표기해야 하며 화물과 증서가 서로 부합되어야 한다.



- ② 각지 검험검역국은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05년 제690호 문건요구에 따라 수입 유제품에 대해 *Enterobacter sakazakii*를 검사한다. *Enterobacter sakazakii*을 검사한 제품에 대해 아래와 같은 원칙으로 처리한다.
- 포장 유제품에 대해 반품 또는 소각 처리조치를 취하며 처리결과를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수출입식품안전국에 보고한다.
 - 원료용 유제품에 대해 검험검역부서의 감독관리 아래에서 가공처리 조건이 갖춘 가공업체에서 가열 등 무해 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수입 항구에서 가공처리를 할 수 있을 경우에 반드시 수입 항구에서 가공처리를 해야 하며 항구 검험검역부서에서 감독 관리를 진행한다. 만약 수입업체가 목적지에서 무해 처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할 경우에 항구 검험검역부서는 제때에 서면형식으로 검험결과를 목적지 검험검역국에 통보해야 하며 협상하여 목적지에서 처리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목적지 검험검역부서는 화물 운송 상황을 주동적으로 파악하고 그 하차와 무해 처리과정에 대한 감독 관리를 책임지며 관련 상황을 서면으로 항구 검험검역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 무해 처리를 진행한 후 *Enterobacter sakazakii*를 제거했다고 확인되며 검험에 합격한 원료용 제품에 대해 무해 처리과정을 감독 관리를 진행한 검험검역부서에서 검험합격증명을 발급하여 판매와 사용을 허용한다.
 - 가공처리를 할 수 없거나 가공처리 후에도 불합격인 제품에 대해 반품 또는 소각 처리를 진행하며 관련 상황을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에 보고한다.

□ 국가품질감독검험총국, 2010년 제65호 문건(발표일 : 2010.2.5)

“수입 유제품과 우유식품의 검험 감독 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통지”

- ① 수입 유제품, 우유식품의 검험 감독 관리를 강화
- 수입 유제품, 우유식품의 검험검역을 강화한다. 최근 몇 년 검험검역 결과에 따라 리스크 평가를 진행하고 대응하게 검사를 강화하여 수입제품이 국가 식품안전표준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한다.
 - 수입 유제품 증서 관리를 엄격히 규범화한다. 각지 검험검역국은 “수입 유제품 위생증서 관리를 규범화할 데 관한 공고”(2009년 제125호 공고)의 요구에 따라 3월 1일 후에 합격된 위생증서를 제공할 수 없는 수입 유제품에 대해 검험검역

신고를 접수하지 않는다.

- 국외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의 등록과 수입업체의 등록 관리와 신용 기록을 개선한다. 계속 식품안전법이 수입식품 국외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에 대해 등록을 진행할 데 관한 요구를 실시하며 3월 31일 전에 수입 유제품 국외 수출업체 또는 대리업체의 정보를 보고하고, 계속 수입업체 등록 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수입업체의 신용기록을 작성하며 수입업체가 식품 수입과 판매 기록을 작성하며 개선하도록 감독하고 불량 기록이 있는 수입업체가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검험검역을 강화한다.

② 수출 유제품, 우유식품의 검험 감독 관리를 강화하며 개선한다.

- 수출 유제품, 우유식품의 검험검역을 강화한다. 수출 유제품, 우유식품에 대해 멜라민(미국 수출제품은 멜라민 측정이 필요함)을 측정할 기초에서 현지 실제상황과 수입국/지역의 표준요구에 따라 리스크 평가를 진행하고 각종 유독유해물질의 측정을 강화하여 수출 유제품, 우유식품이 수입국/국가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한다.
- 수출 유제품, 우유제품 생산업체와 수출업체의 신용기록을 개선하고 실시하며 불량 기록이 있는 수출업체와 생산업체에 대해 수출제품의 검험검역을 강화한다.
- 수출 유제품, 우유제품 생산업체가 책임제를 실시하는 것을 계속 감독한다. 발견한 문제를 제때에 지방정부에 통보하고 지방정부의 통일된 협조 아래에서 수출 유제품, 우유제품 생산업체가 책임제를 실시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입고 원재료, 생산과정과 출고 완제품에 대해 전반 과정의 측정, 감독을 진행하여 제품이 어떠한 과정에서 오염을 받지 않도록 하며 제품이 수입업체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한다.

③ 발견한 문제를 제때에 처리한다. 수입 유제품, 우유제품과 연관되는 문제에 대해 엄격히 식품안전법 관련 요구에 따라 감독처리를 진행하며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식품안전국에 보고해야 한다. 수출 유제품, 우유제품과 연관되는 문제에 대해 제때에 지방정부에 보고하고 지방정부를 협조하여 업체가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 회수, 소각하는 것을 감독하여 문제가 있는 제품이 수출되지 않도록 하며 관련 상황을 제때에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식품안전국에 보고한다.

④ 지방 식품안전 감독관리부서와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지방 위생, 농업, 기술 감독, 공상관리 등 관련 부서와 주동적으로 연락하여 될수록 빨리 현지 실제상황에



부합되는 수출입식품 안전합작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제때에 감독관리과정에서 발견한 문제를 서로 통보하며 서로 협조, 협력을 하여 수출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한다.

사. 수산물

수산물제품의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무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검역 심사비준 수속을 밟아 “수입동식물검역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수입동식물검역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수산물을 수입하지 못한다.

수산물을 수입하기 전 또는 수입할 때에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수입동식물검역허가증, 수출국 또는 지역에서 발급한 검험검역증서 원본, 원산지증서, 무역 계약, 신용장, 선하증권(B/L), 송장(invoice) 등 관련 증빙서류를 수입항구 검험검역부서에 제출하여 검험검역을 신고해야 한다.

검험검역부서는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이 제출한 관련 증빙서류에 대해 초심을 진행하며, 요구에 부합될 경우에 검험검역 신고를 정식으로 수리한다.

검험검역부서는 아래와 같은 요구에 따라 수입 수산물에 대해 현장 검험검역을 진행하며 또한 규정에 따라 샘플링을 하거나 샘플을 추출하여 실험실검사에 사용한다.

- ① 증빙서류를 심사하며 화물을 확인한다.
- ② 포장에 “수입 수산물 포장 기본요구”에 부합되는가를 확인한다.
- ③ 식물 해충이 쉽게 발생하는 절리거나 말린 수입 수산물의 식물 검역을 실행한다.

현장 검험검역에 합격된 수입 수산물은 직속 검험검역국에 등록된 수산물 저장창고에 저장하며 실험실 검사를 준비해야 한다. 허가가 없이 함부로 전출하거나 가공하지 못한다. 검험검역부서는 규정에 의하여 샘플에 대한 감각기관, 물리화학, 미생물 등 실험실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수입항구 검험검역부서는 실험실 검사결과에 따라 각각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합격될 경우에 “수입화물검험검역증명”을 발급하며, 합격되지 않을 경우에 “수입화물 검험검역처리통지서”를 발급하며 무공해 처리 또는 반환, 소각을 감독 관리한다.

제3절 ● 검역사례

가. 3월 검역사례

1) 사례소개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2009년 8-11월에 입국한 불합격 식품을 발표, weichuan 식품의 3가지 처방 분유에서 병원균 E. sakazakii이 검사했고, 이 병원균은 신생아의 뇌막염, 소장염, 결장염을 일으켜 사망률은 50% 이상임

2) 요구조항

“식품안전법” 제62조 : “수입 식품, 식품첨가제 및 식품 관련 제품은 반드시 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3) 처벌조항

“식품안전법” 제85조, 제89조 제1항 (1)에 의해, 불법소득, 불법으로 생산경영한 식품과 불법 생산경영에 사용한 도구, 설비, 원료 등 물품을 몰수, 불법 생산경영의 식품 화물가치가 1만 위안 미만일 경우에 2,000위안 이상에서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 화물가치가 1만 위안 이상일 경우에 화물가치의 5배 이상에서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 상황이 엄중할 경우에 허가증을 취소

나. 4월 검역사례

1) 무역증빙서류를 함부로 변경한 사례

□ 사례소개

2003년 A항구 검험검역국은 B회사가 검험검역을 신고한 한국에서 북한으로 반송되는



수산물을 접수했을 때에 B회사가 제공한 증빙서류의 수하인과 선하증권에서의 수하인이 다른 것을 발견하여 조사했다.

□ 사례분석

상기 수산물은 C회사가 대리하여 북한으로부터 한국으로 재수출한 것이다. 납품기간의 원인으로 한국회사로부터 반송되었다. 그 당시 한국에 수출할 때에 발송인은 C회사이었기 때문에 반송할 때의 수하인도 C회사이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회사는 운송료와 선하증권 교체비용을 줄이기 위해 선하증권의 수하인을 다른 회사로 변경하여 B회사에 대리를 위탁하여 화물을 찾도록 했다. 통관의 편리를 위해 B회사는 또한 함부로 선하증권을 고치고 상업송장, 포장명세서의 수하인을 북한회사로 변경했다.

B회사와 C회사의 행위는 “출입국동식물검역법” 제12조 및 “출입국동식물검역법실시조례” 제18조,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했다. “출입국동식물검역법실시조례”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A항구 검험검역국은 각각 B회사와 C회사에 인민폐 1,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법률교육을 시켰다.

□ 관련조항

○ 요구조항

- “출입국동식물검역법” 제12조 :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반드시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이 입국 전 또는 입국 시에 수출국가 또는 지역의 검역증서, 무역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입국항구 동식물검역기관에 검험검역을 신고해야 한다.”
- “출입국동식물검역법실시조례” 제18조 :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을 수입할 경우,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반드시 입국 전 또는 입국 시에 입국항구 동식물검역기관에 검험검역을 신고해야 한다. 세관 감독관리구역에서 전출하여 검역할 경우, 지정한 장소로 운송할 때에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반드시 관련항구 동식물검역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전입 화물에 속할 경우,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반드시 입국 시에 입국항구 동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지정한

장소에 도착할 때에 반드시 지정한 장소의 항구 동식물검역기관에 검험검역을 신고해야 한다. 종자 가축과 가금 및 그 정액, 배태를 수입할 경우, 반드시 입국 30일 전에 검험검역을 신고해야 하고, 기타 동물을 수입할 경우, 반드시 입국 15일 전에 검험검역을 신고해야 하며, 식물 종자, 종묘 및 기타 번식재료를 수입할 경우, 반드시 입국 7일 전에 검험검역을 신고해야 한다. 동식물성 포장물, 매트재료가 입국할 때에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반드시 제때에 항구 동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동식물검역기관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신고한 화물에 대해 검역을 진행할 수 있다. 상기 동식물성 포장물, 매트재료는 직접 포장물, 매트재료에 사용되는 동물제품과 식물, 식물제품을 가리킨다.”

- “출입국동식물검역법실시조례” 제19조 : “항구 동식물검역기관에 검험검역을 신고할 때에 반드시 검험검역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수출국가 또는 지역의 동식물검역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서, 원산지증명서와 무역계약, 신용장, 상업송장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에 따라 검역 비준수속을 밟아야 할 경우, 또한 반드시 검역비준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출국가 또는 지역의 동식물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유효한 검역증서가 없거나 법에 따라 검역 비준수속을 밟지 않을 경우, 항구 동식물검역기관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반송 또는 소각 처리를 할 수 있다.”

○ 처벌조항

- “출입국동식물검역법실시조례” 제59조 : “아래와 같은 행위가 있을 경우, 항구 동식물검역기관은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① 검험검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법에 따라 검역 비준수속을 밟지 않거나 검역비준의 규정에 따라 실행하지 않을 경우,
 - ② 검험검역을 신고한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이 실제와 부합되지 않을 경우.

상기 제2항의 행위로 검역증빙서류를 이미 취득했을 경우, 회수하여 취소할 수도 있다.”

2) 수입식품 검험 불합격사례

〈검험 불합격의 일본식품(2009년 12월)〉

HS코드	제품	제조업체	중량(톤)	불합격 원인	처리	항구
1704900000	과일사탕	LION주식회사	0.0036	물질을 불법첨가	소각	상해
1806320000	초코릿	MARY제과주식회사	0.096	물질을 불법첨가	반품	상해
1905900000	김	CHIEN-FA주식회사	0.060	비소함량이 표준초과	소각	심천
1905900000	김	CHIEN-FA주식회사	0.060	비소함량이 표준초과	소각	심천
1905900000	김	CHIEN-FA주식회사	0.060	비소함량이 표준초과	소각	심천
2202900099	음료샘플	Rohto제약주식회사	0.35088	라벨 불합격	반품	상해
2206009000	주류	Aoki Shuzo주식회사	0.017	군체총수가 표준초과	반품	심천
2206009000	주류	CHOYA주식회사	0.216	망간함량이 표준초과	반품	심천

다. 5월 검역사례

1) 최근 검역사례

□ 황금출입국검험검역국, 불법 수입 과일을 탈취

2010년 1월 10일, 황금출입국검험검역국은 입국차량을 검사할 때 253kg 불법 수입 망고를 검출했다. 상기 화물차량은 검험검역 인원에게 빈차라고 신고했지만 검험검역인원이 정상적 검사절차에 따라 검사할 때에 숨긴 망고를 발견했으며 포장박스에 원산지 필리핀이라고 표기되었다. 검험검역인원은 현장에서 소각 처리를 했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10.1.21)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영아와 유아 처방분유에서 병원균을 검출

최근,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2009년 8월부터 11월 사이에 수입한 852건 불합격 식품을 발표했다. 그 중에서 weichuan식품의 3가지 처방분유는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병원균을 검출했다. 2009년 10월 17일, 9.624톤 대만 처방분유가 홍콩으로부터 입국할 때에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병원균을 검출했다. 그 외에 호주산 Pauls 우유의 균락총수가 표준을 초과, Bellamy 영아쌀가루의 곰팡이 함량이 표준을 초과한 것이 검출되었다. (하문무역정보망, 2010.3.16)

□ 장가항출입국검험검역국 : 수입 특수기능식품 표준초과

장가항출입국검험검역국은 2009년 6월, 2009년 6월, 2010년 2월에 각각 수입 특수기능식품의 곰팡이 함량은 국가표준 한도의 4.5배, 2.5배, 5배를 초과한 것을 검사했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수출입식품안전국은 경고통보를 발표하여 각 검험검역부서에서 수입식품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며 특수기능식품의 샘플링비례를 20% 추가하며 관련 식품 미생물의 검사를 강화하고 관련 식품표준을 엄격히 집행하며 검험에 합격되어야 수입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품질뉴스망, 2010.4.26)



□ 연태출입국검험검역국, 수입 어란 격리검역을 진행

최근 연태출입국검험검역국은 산둥동방해양주식회사가 노르웨이로부터 수입한 400만 개 연어 수정란을 격리장에서 30일 격리검역을 진행했으며 수정란은 격리기간에 치어로 부화되었다. (품질뉴스망, 2010.5.14)



□ 복주출입국검험검역국, 대만 특색 아이스크림이 최초로 복주시에 공급

최근 5,086kg 대만 아이스크림(화물가치 : 10,045달러)은 복주출입국검험검역국의



검험검역에 합격되어 복주시 대형할인매장에 공급했다. 대만 특색의 아이스크림은 일반무역방식으로 최초로 복주시장에 공급했다. 복주출입국검험검역국은 수입업체에 대해 포장식품라벨의 자문과 라벨 합법성 사전심사를 진행했고, 병원성, 멜라민, 첨가제 등 항목의 검사를 강화했다. (복주출입국검험검역국, 2010.5.19)

□ 영성출입국검험검역국, 산둥항구는 처음으로 헝가리 거위알을 수입

최근 영성출입국검험검역국의 감독 관리를 통해 산둥성천그룹이 헝가리로부터 수입한 12,000개 거위알이 격리장소에서 부화되었다. 이는 산둥항구에서 처음으로 헝가리 거위알을 수입한 것이다. (중국검험검역망, 2010.5.26)



□ 수입식품 검험 불합격사례

〈검험 불합격의 미국식품(2009년 12월)〉

HS코드	제품	제조업체	중량(톤)	불합격 원인	처리	항구
0406300000	치즈	PACIFIC CHEESE,	0.1	효모균 초과	소각	황포
1508900000	기름	OMNI PACIFIC COMPANY, INC	0.242	과산화수치 초과	소각	북경 조양
1901200000	크림 케이크		0.91	유전자변형 성분 검사	반품	신평
1901200000	옥수수 떡가루	UNIFIED WESTERN GROCERS, INC.	0.08676	유전자변형 성분 검사, 납 초과	소각	천진
1901200000	옥수수 혼합가루	UNIFIED WESTERN GROCERS, INC.	0.0765	유전자변형 성분 검사	소각	천진
1901200000	케이크 가루	UNIFIED WESTERN GROCERS, INC.	0.09306	알루미늄 초과	소각	천진
1904100000	감자 조각	Kettle Foods, Inc.	0.024	산수치 초과	소각	북경 조양
1905900000	LADY LIBERTY	A McLane Group Company	0.015	레몬색 초과	반품	문금도
2006009090	조미료	Lyon Magnus Company	0.15113	주석 초과	소각	상해
2009110000	오렌지 에이드	FLORIDA'S NATURAL GROWERS	0.756	효모균 초과	소각	북경 조양

2) 최근 이슈사례

□ 중국은 외국업체와 외국인이 경내에서의 수입 사료 직접 판매를 금지

2010년 2월 20일, 국무원법제판공실에서 발표한 “사료와 사료첨가제 관리조례(수정 초안 의견청구안)”은 외국업체와 외국인이 중국 경내에서 직접 수입 사료, 사료 첨가제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외국업체, 외국인이 중국에서 사료, 사료첨가제를 판매할 경우, 반드시 중국 경내에 판매기구를 설치하거나 조건에 부합되는 중국 경내 대리기구에 위탁해야 한다. 중국에서 판매하는 수입 사료, 사료첨가제는 반드시 포장해야 하며 규정에 부합되는 중문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또한 중국에 사료, 사료첨가제를 처음으로 수출할 경우, 수출업체는 국무원 농업행정부관부서에 등기해야 한다. (인민망, 2010.2.20)

□ 중국은 수출 농산물의 출입국검험검역비를 감면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출입국검험검역기구에서 검험검역을 실시하는 출입국상품목록”에 포함된 수출 농산물에 대해 출입국검험검역비를 감면한다고 통보했다. 감면하는 출입국검험검역비는 ① 출입국검험검역기구에서 받는 품질 검험비, ② 동물 임상검역, 식물 현장검역과 동식물제품 검역비, ③ 식품 및 식품가공설비 위생검험비, ④ 중량감정비, ⑤ 수량감정비, ⑥ 포장사용감정비, ⑦ 기타 특별검험항목비, ⑧ 증서발급비, ⑨ 실험실 검험항목, 감정항목 요금을 포함한다. (신화사, 2010.5.4)

□ 세계박람회 기간, 입국 생식 수산물 검험검역 감독 관리를 강화

생식 수산물은 각종 병원균, 기생충, 중금속, 약물 잔류물이 있다. 현재 상해항구를 통해 수입되는 생식 수산물 품목은 호주 왕새우, 북극 새우, 연어, 참치, 돛새치, 대구, 넙치, 도미, 굴, 낙지, 오징어, 해조 등이 있다. 생식 수산물이 신선도에 대한 요구가 높은 특징에 대해, 상해 외고교출입국검험검역국은 항구 현장검사를 강화하고 입국 신선, 냉동과 절인 수산물의 감관평가를 엄격히 하며, 샘플링 검사효율을 높이고 각종 수산물의 특성에 따라 중점, 민감 품목에 대한 샘플링 검사비율을 높였다. 또한 항구 검험, 냉장운송, 냉장창고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수입식품의 수하인, 수입업체



에 대해 등기관리를 진행한다. (중국산업보협희망, 2010.5.4)

□ 중국, 미국 돼지고기의 수입을 회복

미국돼지고기생산자협회는 5월 17일에 중국은 5월 14일부터 미국 돼지고기를 다시 접수하며, 5월 1일 또는 이후의 미국산 돼지고기는 중국시장에 다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4월 하순, “H1N1” 독감이 유행된 후, 매체에서 “돼지독감”이라고 보도하여 중국을 포함한 아세아 국가는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올해 3월에 중국은 미국과 협의서를 체결하여 미국 돼지고기의 수입을 회복하기로 했다. (중국국제전자상거래망, 2010.5.20)

라. 6월 검역사례

1) 최근 검역사례

□ 귀주, 처음으로 유채씨기름을 수입

최근 33톤의 캐나다 유채씨 기름은 귀주검험검역국의 검험검역에 합격한 후 귀주시장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귀주검험검역국은 수입업체가 검험검역을 신고하기 전에 각종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관련 서류를 열람하면서 상세한 검험검역방안, 절차와 샘플링계획 등을 확정했다. 검험검역 신고를 접수하고 검험검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험검역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검험검역인원은 중국 수입식용유표준에 따라 엄격히 검험검역을 진행함으로써 수입 식용유의 안전을 보증했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10.5.26)

□ 주해검험검역국, 마카오 조개류 검사를 강화

5월 중순 이후, 광둥, 홍콩, 마카오는 연속 60명이 중독되어 주해검험검역국은 마카오 조개류에 대한 검사를 강화했다. 최근 주해검험검역국은 각 항구에서 조개류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했다. 조개류의 독소 샘플링 검사를 강화하고 동시에 위탁 샘플의 조개류 독소 검사를 진행하여 조개류 제품의 품질안전을 보장했다. 그 외에 주해검험

검역국과 주해시해양농업국은 홍콩, 마카오 관련 부서와 연락하여 독이 있는 조개류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했다. (식품비즈니스망, 2010.5.31)

□ 위해, 일본으로부터 냉동 고등어를 대폭 수입

올해부터 현재까지 위해 항구는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냉동 고등어의 중량은 1,644.9톤, 화물가치는 244.1만 달러로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53.5%, 161.97% 증가했다. 수입 냉동 고등어는 주로 원료로 사용하여 고등어 구이, 고등어 조각을 가공하여 다시 일본에 수출한다. (식품비즈니스망, 2010.6.4)

□ 남사검험검역국, 4통 일본산 분유를 압수

6월 11일, 남사검험검역국은 입국 관광객이 휴대한 소화물에서 생산날짜를 표기하지 않은 4통 일본산 분유(3.4kg)를 압수했다. 4월 초에 일본에서 구제역 전염병이 발생한 것을 감안하여 중국 목축업의 안전과 인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의해 일본산 분유를 압수하여 반품 처리를 했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10.6.14)



□ 천진공항검험검역국, 수입 씨닭에 대해 격리검역을 진행

최근 50,087마리 미국산 씨닭은 천진공항검험검역국에서 전과정 검역 감독관리 아래에 30일 격리검역을 진행했다. 천진공항검험검역국은 수입업체의 격리장 신청을 접수한 후 즉시 인원을 파견하여 수입 씨닭의 관련 기술서류와 관련 검역요구를 파악하고 수집했으며 “수입동물 지정격리장 관리방법”에 따라 격리검역을 진행했다. 격리검역 감독관리기간에 천진공항검험검역국은 씨닭에 대해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채혈하여 조류독감 및 중국과 미국이 체결한 협정서와 수입동물 검역허가증에서 규정한 관련 항목의 실험실 검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모두 합격하였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10.6.20)



□ 수입 일본산 “고추라면”에서 양귀비씨를 조사

호주로부터 수입한 11톤 우유에서 단백질과 지방이 국가표준에 부합되지 않아 반품 처리를 했다. 일본산 “고추라면”에서 양귀비씨를 조사하여 소각 처리를 했다. 국가품질 감독검험검역총국 수출입식품안전국은 올해 1월에 수입한 불합격 식품, 화장품의 “블랙리스트”를 발표하여 불합격된 제품을 모두 반품하거나 소각 처리를 했다. (식품비즈니스망, 2010.6.23)

□ 진강검험검역국, 478마리 덴마크 종돈에 대해 격리검역을 진행

최근 단양시 종돈 격리장에서 478마리 덴마크 종돈에 대해 45일 밀폐식 격리검역을 진행하고 광둥, 천진, 중경, 안휘 등에 공급했다. 수입 종돈의 안전을 위해 진강검험검역국은 격리장의 선택과 설계를 협조하고 주변 전염병에 대해 조사하여 수입 종돈이 외국 전염병과 국내 전염병을 수입 격리 종돈에 전염하는 것을 예방했다. (국가품질감독 검험검역총국, 2010.6.24)

□ 검험 불합격 한국식품

〈검험 불합격의 한국식품(2010년 2월)〉

HS코드	제품	제조업체	중량(톤)	불합격 원인	처리	항구
04031300000	우유	SAMGUN T&M CO.LTD	2.098	구제역지역	소각	황도
04031300000	우유	SAMGUN T&M CO.LTD	3.0803	구제역지역	소각	황도
04031300000	우유	SHINDONG CORPORATION	4.2782	구제역지역	소각	황도

2) 최근 이슈사례

□ 중국과 폴란드 돼지고기 수입 관련 의정서를 체결

5월 24일, 중국과 폴란드는 북경에서 중국이 폴란드로부터 수입하는 돼지고기의 검험 검역과 수의사 조건 의정서를 체결했다. (식품비즈니스망, 2010.5.25)

□ 중국은 아일랜드 돼지고기의 수입 금지를 해제

5월 20일,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아일랜드 돼지고기의 수입을 회복한다고 통보했다. 아일랜드정부는 2008년 12월에 일부 돼지고기제품이 다이옥신의 오염을 받은 것을 검사하여 2008년 9월 1일부터 생산한 모든 돼지고기 및 그 제품을 회수한다고 결정했다. 중국시장의 식품안전을 보충하기 위해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아일랜드 돼지고기의 수입을 임시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그 후에 아일랜드정부는 엄격한 조치를 취하여 돼지고기 생산을 회복시켰다. 아엘랜드 돼지고기 위생체계와 다이옥신 오염사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평가한 후 중국은 아일랜드 돼지고기 생산이 안전표준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5월 20일부터 아일랜드 돼지고기의 수입을 회복시켰다. (식품비즈니스망, 2010.5.27)

□ 일본 소고기 관련 제품의 수입을 금지

심천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최근에 일부 음식점에서 “일본 소고기”를 판매하는 문제에 대해 관련 부서와 검사를 진행하여 도매상과 음식점이 즉시 스스로 검사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북경, 광주, 심천 등 많은 도시에서 가격이 중국산 소고기보다 10배 비싼 “고베 소고기”가 나타났다. 사실상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2001년에 일본으로부터 소고기 및 관련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했다. (식품비즈니스망, 2010.6.2)

□ 왕용국장, 한국 농림수산식품부 부장 회견

6월 30일,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왕용국장은 북경에서 한국 농림수산식품부 부장을 회견하여 양국 농산물, 수산물, 동식물제품 검역, 수산물 제한량 표준과 검사방법, 한중 식물 검역 합작 메커니즘 등 문제에 대해 회담을 진행했다.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판공청, 통관사, 동식물사, 국제사, 식품안전국의 관련 인원이 회담에 참석했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10.6.30)



마. 7월 검역사례

1) 최근 검역사례

□ 문금도검험검역국, 각종 조치를 취하여 수입과일의 품질을 향상

문금도항구는 심천시 수입과일의 주요 통로이며 대량 수입과일은 문금도항구를 통해 광주시 과일도매시장에 공급되며 다시 전국 각지로 판매된다. 올해 5월 이후 문금도항구를 통해 수입한 과일이 대폭 증가하여 6.25만 톤의 각종 과일을 수입하여 전월대비 90.29% 증가했으며 8분당 1대 과일 화물차량에 대해 검험검역을 진행했다. 문금도검험검역국은 각종 조치를 취하여 감독관리의 품질과 효율을 높이고 수입과일의 품질을 높였다.

문금도검험검역국은 수입과일의 검사제도를 개선하고 시범운영하는 리스크 분류관리 시스템의 사용절차를 명확히 하며, 각종 품목의 과일에 대한 검사에서 주의사항을 세분화하여 현장검사 효율을 높이며, 증서 시효성에 대한 검사를 강화했다.

검사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검사를 피하는 행위를 방지했다. 무작위 검사를 위해 “수출 현장검사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수입과일의 표본검사에 적용했으며 운송도구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며 특히 화물차량 운전실에 대한 검사를 강화했다. 5월 4일, 태국산 두리언을 적재한 화물차량 운전실에서 신고하지 않은 12박스, 140kg의 필리핀 망고를 발견했으며 현장검사에서도 파리 유충을 발견했으며 5월 17일, 부식 변질된 960박스, 16.32톤의 태국산 두리언을 발견했다. 5월에 문금도항구는 현장에서 해충이 있는 과일을 3차례 발견하여 훈증처리를 진행한 후 통관을 허용했으며, 872차례 표본검사를 진행하여 47가지 유해물질을 발견했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10.7.1)

□ 아일합사특항구, 처음으로 식품을 수입

최근 아일합사특항구는 처음으로 만주리검험검역국의 검험을 거쳐 16톤, 14.14만 달러의 몽고산 잣 알을 수입했다. 이번은 몽고로부터 무역방식으로 처음 수입하는 식품으로서 만주리검험검역국 식품감독관리처는 이번 검험검역을 중시하여 검험검역 신고를

접수한 후 즉시 아일합사특항구에서 현장검험을 진행했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10.7.5)

□ 요녕항구, 처음으로 대규모로 조랑말을 수입

최근, 요녕검험검역국은 35마리 네덜란드로부터 수입한 조랑말에 대한 격리검역을 진행했다. 이는 요녕항구가 처음으로 대규모로 수입 조랑말의 검역을 진행했다. 요녕검험검역국은 수입 조랑말의 검역 격리장에 대한 고찰을 강화하고 기업의 관리제도 수립을 지도하여 수입동물 검역규정에 도달하도록 했다.

조랑말 입국과정에서 검험검역의 편리한 조치를 제공함으로써 동물이 순조롭게 입국하도록 했다. 격리검역의 감독 관리를 강화하며 샘플링, 실험실 검사, 방역소독 등을 잘 진행하여 동물 전염병의 전파를 엄격히 통제했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10.7.7)

□ 상해검험검역국, 대만산 과일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상해검험검역국은 대만산 농산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직통 통관, 집중 관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빠른 심사비준, 빠른 검험신고, 빠른 검사, 빠른 통관 등 편리한 조치를 취하며 24시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전문 기구를 설립하여 수출입 농산물 검험검역을 책임지며, 빠른 검역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전자방식으로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에 제출하여 비준을 받는다.

또한 대만산 과일의 검험검역 신고창구를 설치하여 예약 신고와 사전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험실 검사용으로 제출한 샘플에 대해 우선으로 샘플을 보내고 검사하며 검험검역에 합격할 경우에 “입국화물검험검역증명”을 발급하여 통관시킨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10.7.7)

□ 맥주 소비로 인해 남통항구의 보리 수입량이 급증

남통검험검역국의 통계에 의하면 올해 2분기에 수입한 보리는 9.5만 톤, 화물가치는 2,430.3만 달러에 도달하여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다. 남통항구를 통해 수입하는 보리



는 모두 강소성 맥아가공장에서 맥아 생산에 사용되는 맥주 보리이다. 여름철에 맥주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맥주 생산원료인 보리의 수입량도 급증했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10.7.7)

□ 하구검험검역국, 수입여지의 품질을 엄격히 관리

올해 5월부터 대량 베트남산 신선한 여지가 운남성 하구항구를 통해 입국하기 시작했다. 5월 하순부터 7월 초까지 하구항구를 통해 수입한 여지는 19,400톤, 화물가치 883만 달러에 도달했다. 수입 여지의 검험검역을 위해 하구검험검역국은 여러 조치를 취하여 품질을 엄격히 관리하고 검역 합격, 빠른 통관을 확보했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10.7.14)

□ 진황도검험검역국, 수입농산물의 사기사건을 처리

최근 진황도검험검역국은 카사바 가루 등 폐기 식물제품을 소각했다. 이러한 제품은 외국업체가 카사바 가루 등 폐기 식물제품을 카사바 전분으로 사칭하여 중국으로 수출한 것으로서 대표적인 수입농산물 사기사건이다. 검험검역인원은 “가공했거나 가공하지 않은 카사바 가루 등 폐기 식물제품”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경제적 가치도 없고 식용에도 적합하지 않았다. 진황도검험검역국은 검험증서를 발급하고 화물을 진황도세관에 넘겨 반품처리를 했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10.7.15)

2) 최근 이슈사례

□ 천진, 신강, 섬서, 감숙, 청해은 검험검역 직통통행 합작비망록을 체결

천진, 신강, 섬서, 감숙, 청해 검험검역 직통통행 합작비망록 체결식이 우루무치에서 진행되었다. 이로써 신강, 섬서, 감숙, 청해의 일부 수출상품은 원산지 검험을 진행한 후에 천진항구에서 증명서류를 발급하면 직접 통관할 수 있으며, 일부 수입상품에 대해 천진항구에서 목적지에 검험검역을 신고하며 검험검역을 진행할 수 있어 통관속도를 높인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10.7.21)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과 길림성정부는 “전반적 협작을 강화할 데 관한 비망록”을 체결

7월 16일 오후,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과 길림성정부는 “장길도 개발개방 선도구”의 건설을 지원하며 길림성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전반적 협작을 강화할 데 관한 비망록”을 체결했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10.7.16)

□ 중국과 아르헨티나, 품질검역 협작계약을 체결

7월 13일, 중국과 아르헨티나는 “아르헨티나로 수출하는 중국산 대나무의 식물검역 의정서”와 “중국으로 수출하는 아르헨티나산 사과와 배의 식물검역 의정서의 보충협약서”를 체결했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10.7.13)

□ 천진검험검역국, 북경, 하북, 내몽고, 길림, 산둥, 하남 등 검험검역국과 “검험검역 직통통행 협작비망록”을 체결

7월 9일, 천진검험검역국, 북경, 하북, 내몽고, 길림, 산둥, 하남 등 검험검역국과 “검험검역 직통통행 협작비망록”을 체결했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의 위전충 부국장과 천진시 임학봉 부시장이 협작 비망록 체결식에 참석했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10.7.9)

□ 중국과 캐나다 식물검역 의정서를 체결

7월 2일, 중국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과 캐나다 식품검험서는 “식품 유해생물의 전파를 예방할 데 관한 협작계약”과 “중국으로 수출하는 캐나다산 원목의 식물검역 의정서”를 체결했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10.7.2)



바. 8월 검역사례

1) 최근 검역사례

□ 길림검험검역국 장춘공항사무소, 대량 북한 고려인삼을 조사

7월 24일, 장춘공항사무소는 대만 타이베이에서 온 CZ6052 국제 전세 비행기 수하물을 검사할 때에 수입 비준수속을 밟지 않은 고려인삼을 발견했다. 화물 중량은 28kg이고 47박스로 포장했으며 원산지는 북한이고 중국 여객이 대만으로부터 탁송하여 입국했다. 중국 “동식물검역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입국 동식물제품이 동식물 검역증명이 없을 경우에 반드시 반품 또는 소각 처리를 해야 한다. 현재 상기 화물은 법에 따라 밀봉했다. (중국품질뉴스망, 2010.7.28)

□ 방성항검험검역국, 66.2톤 밀수 냉동제품을 소각

7월 27일, 방성항검험검역국은 방성세관밀수단속분국과 연합으로 방성항시 쓰레기 무해처리공장에서 66.2톤 밀수 냉동제품을 소각했다. 상기 수입 냉동제품은 닭발, 닭 신장, 닭 날개, 소 위장, 처넵, 돼지 위장을 포함하며 원산지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 호주, 우루과이 등 국가로서 7월 15일-17일에 세관밀수단속분국에서 조사했다. 상기 화물은 어떠한 유효한 검험검역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밀수 혐의가 있다. 방성항검험검역국은 “출입국동식물검역법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기 냉동제품에 대해 소각 처리의 결정을 내렸으며 세관밀수단속분국과 연합으로 상기 냉동제품에 대해 현장 감독으로 소각처리를 했으며 동시에 상기 화물의 운송차량, 소각현장에 대해 엄격한 소독처리를 했다. (중국품질뉴스망, 2010.8.2)

□ 용방검험검역국, 불법 수입 동물제품을 소각

8월 5일, 용방검험검역국은 불법으로 수입한 약 8.8톤의 냉동 돼지 귀를 소각처리했다. 상기 불법 수입 동물제품은 중국-베트남 국경에서 밀수 입국할 때에 발견되었고 어떠한 중국 검험검역부서에서 발급한 입국 검역 비준수속을 밟지 않았으며 조류독감과 구제역 전염병지역의 제품으로서 중국 “출입국동식물검역법”과 그 시행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소각처리를 진행했다.

올해 6월 30일부터 8월 5일, 용방검험검역국은 관련 부서와 연합하여 111.2톤 불법 수입 냉동제품에 대해 소각처리를 진행했다. 불법 수입의 냉동제품은 주로 닭 발, 족발, 돼지 혀, 소 위장 등을 포함하며 모두 중국-베트남 변경에서 밀수할 때에 현장에서 발견되었다.(중국품질뉴스망, 2010.8.11)

□ 남통검험검역국, 불법 수입 캡슐 식품을 조사

최근 남통검험검역국은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캡슐 식품에 대해 검험을 진행할 때에 2가지 불법 캡슐 식품을 발견했다. 한 제품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수입한 신규 품목의 식품으로서 중국 식품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신규 품목의 식품을 처음으로 수입할 경우에 위생 주관부서에서 발급하는 허가증명을 취득해야 하지만 상기 화물은 허가증명을 제출할 수 없었다. 다른 제품은 중국 위생부의 규정에 따라 수입, 판매할 경우에 사전에 위생부에 보건식품 비준증서를 신청해야 하지만 상기 화물은 그 비준증서를 제출할 수 없었다. 상기 상황을 감안하여 남통검험검역국은 법에 따라 상기 화물을 밀봉했다.(중국품질뉴스망, 2010.8.12)

□ 하택검험검역국, 수입 대두로부터 유해생물을 발견

최근 하택검험검역국은 수입 유전자변이 대두로부터 *Xanthium chinese Mill*, *Phytophthora sojae*, *Cenchrus echinatus*, *Xanthium cavanillesii Schouw* 및 *Xanthium cylindricum Millsp. & Sherff* 등 대량 검역성 유해생물을 발견했다.

최근 중국 대두 수입량은 해마다 증가하여 2009년에 4,255만 톤에 도달했다. 대두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대두 유해생물과 유해물질이 자주 검사되었다. 검역성 유해생물의 전파와 유해물질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산동검험검역국은 입국항구 현장검험검역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입 대두의 생산가공업체의 일상 감독 관리를 강화하여 유해생물에 대한 유효한 장벽을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중국국문시보, 2010.8.25)



□ 장가항검험검역국, 수입 기능성식품 라벨문제를 조사

최근, 장가항검험검역국은 수입 기능성식품을 검사할 때에 그 라벨에 “식품첨가제가 없음”으로 표기했지만 원료배합표에는 “글리세린, 향료” 등 식품첨가제가 포함한다고 표기한 것을 발견했다. 이에 대해 강소검험검역국은 강소성 범위에서 라벨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단속할 것을 요구했다. 시장에서 “식품첨가제가 없음” 등을 표기한 식품에 대해 공상관리, 품질감독 등 부서와 연합하여 샘플링 검사를 강화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발견되면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중국품질뉴스망, 2010.9.1)

□ 장가항검험검역국, 불합격 수입 특수기능식품을 검사

올해 장가항은 호주로부터 12회 썬더우고기 추출물 캡슐 등 특수기능식품을 수입했으며 장가항검험검역국의 검험검역결과 2회 불합격되었다. 불합격 원인은 중금속 납과 곰팡이 함량이 각각 국가표준 제한량의 10배, 4배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검험검역부서는 불합격 화물에 대해 소각 처리를 했으며 기타 수입 기능식품에 대한 측정을 강화했다.(중국품질뉴스망, 2010.9.1)



2) 최근 이슈사례

□ 온주검험검역국, 베트남으로부터 과즙음료를 처음으로 수입

최근 온주 업체는 베트남으로부터 17.19톤, 1.7만 달러의 망고음료, 야자즙을 처음으로 수입했으며 온주검험검역국의 검험검역에 합격되었다. 수입 과즙음료의 품질문제는 문제가 적지 않으며 미생물 함량이 표준을 초과하여 소각 처리한 사례가 있으며 중금속, 첨가제, 방부제 함량이 표준을 초과하여 경고 통보한 사례도 있다.(중국품질뉴스망, 2010.8.6)

□ 네팔검험검역국, 수입 압착 식용유는 검역증서가 필요

최근 중산 업체는 올리브기름을 수입할 때에 수출업체로부터 식물검역증서를 요구하지 않아 수입할 수 없게 되었으며 현재 검역증서를 추가로 취득하고 있다. 수입 압착 식용유는 수출국 또는 지역의 식물검역부서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서에 표기해야 한다. 수출국의 유효한 식물검역증서가 없을 경우에 반품 또는 소각 처리를 한다.

올리브기름은 중국시장에서 잠재력이 많지만 최근 수입 제품은 품질문제가 나타났다. 수입 올리브기름의 품질안전을 보증하기 위해 국가출입국검험검역부서는 수입 올리브기름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했다.(중국국문시보, 2010.8.6)

□ 복건검험검역국, 소액무역 대만 농산물에 대해 4가지 편의조치를 채택

복건검험검역국은 “복건검험검역국에서 대만지역 소액무역 검험검역 관리방법(시행)”을 발표하여 소액무역방식으로 수입하는 대만 농산물에 대해 편리한 신고, 간단한 수속, 빠른 통관, 적당한 비준 등 4가지 편의조치를 취했다.(중국품질뉴스망, 2010.8.18)

□ 창주검험검역국, 수입 젓소의 하역 감독을 진행

8월 11일, 하북검험검역국 동물검험검역처와 랑방검험검역국의 지원과 협조 아래 창주검험검역국은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한 1,487마리 젓소의 하역 감독을 진행했다. 현재 수입 젓소는 임시 격리장소에서 45일간 격리 검역을 진행하고 있다.(중국품질뉴스망, 2010.8.18)

□ 복건검험검역국, “불합격 수입식품 후속처리 업무규범”을 시행

2009년 복건검험검역국은 5,686건, 3억 달러의 수입식품에 대한 검험을 진행하여 197건의 불합격 수입을 검사했다. 불합격 수입식품의 후속처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복건검험검역국은 “식품안전법”의 기초에서 최근에 “불합격 수입식품 후속처리 업무규범”을 실시하여 불합격 수입식품에 대해 처리원칙, 과정감독, 정보제공, 증서발급과 서류보관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각종 처리방법의 비준절차와 처리과정

감독관리 요구를 규범화하여 불합격 수입식품 후속처리의 유효성을 보증했다.(중국품질뉴스망, 2010.8.19)

□ 순덕검험검역국, 수입 종묘의 검역을 강화

순덕은 중국에서 유명한 “화훼의 고향”으로서 중국 주요 종묘 수입항구이다. 최근 순덕검험검역국은 43만 개 백합 종묘에 대한 검역을 진행했으며 현재 실험실에서 바이러스, 병해 등에 대한 검역감정을 준비하고 있고 검역에 합격한 후 지정한 재배 격리 장소에서 재배한다.



수입 종묘는 유해생물이 중국으로 전파하는 주요 경로이며 벌브 줄기류(백합, 울금향)은 유해생물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리스크가 높은 품목으로서 수입할 때에 엄격한 검역을 해야 한다. 수입 종묘에 대해 순덕검험검역국은 현장 검역을 강화, 전염병 리스크 분류관리를 실시, 수입 종묘 후속 감독관리와 전염병 모니터링을 강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중국품질뉴스망, 2010.8.25)

□ 중국은 불합격 수입 유제품을 수차례 검사

프랑스 드라이 레드 와인, 독일 초콜릿, 뉴질랜드 분유 등 세계에서 유명한 식품은 검측결과에 합격되지 않아 수입하지 못했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최신 불합격 수입식품, 화장품 정보를 발표했으며 올해 4월, 5월에 약 300회 외국 식품과化妆품을 반품 또는 소각 처리를 했다. 불합격 수입식품에서 유제품, 꿀, 초콜릿, 과자 등을 포함하며 불합격 유제품이 많다. 그중에서 272.1톤 뉴질랜드 분유는 지방 함량이 국가 표준에 부합되지 않아 반품되었다. 그 외에 2톤의 미국 초유와 18.75톤의 고급 단백질 유장가루는 아질산염이 표준을 초과했다.(신문신보, 2010.8.27)

□ 동관검험검역국, 수입 열대 관상어의 검험검역을 처음으로 진행

최근 동관시 모회사에서 수입한 열대 관상어는 백운공항으로부터 입국하여 상기 회사

의 임시 격리장소에 운송되었다. 동관검험검역국 관련인원은 즉시 현장검역과 샘플링 검험을 진행했으며 포장재료와 물에 대해 소독처리를 진행했다. 상기 관상어는 태국과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했으며 화물가치는 2,900달러이며 동관검험검역국은 30일간의 격리검역을 진행한다. (중국품질뉴스망, 2010.8.30)

사. 9월 검역사례

1) 최근 검역사례

□ 황포검험검역국, 불합격 수입사료의 라벨을 검사

최근 황포검험검역국은 태국산 어분 외부포장에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수출입사료와 사료첨가제 검험검역감독관리방법”에 따라 황포검험검역국은 상기 화물의 라벨이 합격되지 않았다고 판정하고 검험검역기구에서 지정한 장소로 옮겨 규정에 부합되는 라벨을 부착하도록 했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2009년 7월 20일에 “수출입사료와 사료첨가제 검험검역감독관리방법”을 발표했다. 그 중에는 수입사료의 라벨검사에 아래와 같이 규정했다. 2009년 9월 1일부터 “수출입사료와 사료첨가제 라벨검사업무규범”(약칭 : 라벨규범)에 따라 수입사료에 대해 라벨검사와 심사비준을 진행한다.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수입사료와 관련된 수입업체, 수입제품과 외국생산업체는 기록되며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으로 “라벨규범”의 요구에 따라 시정한다고 승낙하며 2010년 2월 28일 이후의 수입사료 라벨이 요구에 부합되도록 한다고 보증해야 한다. 2010년 3월 1일부터 수입사료의 라벨이 요구에 부합되지 않으면 검험검역기구에서 지정한 장소로 옮겨 라벨을 부착하거나 시정해야 한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10.9.2)

□ 온주항구, 불합격 수입 제비집을 소각

최근 온주검험검역국은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한 2kg 제비집에 대해 샘플링검사를 진행하여 실험실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결과 곰팡이와 이산화황의 함량이 제한량

표준을 초과했으며 살모넬라균도 검출되었다.

온주검험검역국은 관련 규정에 의해 수입 제비집이 불합격 제품이라고 판정하고 리스크 경보정보를 상급 주관부서에 보고했다. 동시에 수입회사에 “검험검역처리통지서”를 발급하고 수입 제비집에 대해 소각처리를 했다. (중국품질뉴스망, 2010.9.2)

□ 순덕검험검역국, 입국 컨테이너에서 과량 메틸브로마이드를 검사

최근 순덕검험검역국은 입국 원목 유독유해기체를 검사할 때에 일부 컨테이너에서 메틸브로마이드 잔류물이 국가표준 최고 제한량을 초과한 것을 발견했다. 그 중에서 최고 검사수치는 386ppm으로서 국제안전표준의 77배를 초과했다.

중국은 수입 컨테이너의 유독유해 잔류기체 최고 제한량을 규정했으며 메틸브로마이드 잔류물 농도는 5ppm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1997년 9월, “몬트리올 의정서” 제9차 회의에서 선진국은 2005년에 메틸브로마이드의 생산을 중시하고 사용을 금지하며, 개발도상국은 2005년부터 해마다 메틸브로마이드 생산량과 소모량을 1995-1998년 사이의 평균 사용량의 80%를 초과하지 못하며 2015년에 메틸브로마이드를 도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10.9.15)

□ 라호구항구, 연속 불법 수입 소고기를 검사

9월 1일부터 16일 사이에 라호구항구는 연속 관광객이 휴대하여 입국한 851kg 미국 소고기, 소갈비를 조사하여 전년 동기 대비 87.1% 증가했다.

조사한 미국 소고기와 소갈비는 검역을 진행하지 않고 직접 큰 종이박스 또는 비닐봉지에 넣었으며

일부 고기제품의 표면에 대량 핏자국이 나타나 비린내가 났다. 포장봉지에 “USA” 글자가 인쇄되었고 생산날짜, 생산업체, 상표 등 표시가 없었다. 검험검역인원은 상기 소고기와 소갈비에 대해 반품처리를 진행했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10.9.29)



□ 심천항구, 불합격 남아프리카 오렌지에 대해 반품처리를 진행

9월 15일, 염전항구는 2010년도에 처음으로 화물 가치가 21,600달러인 23,680kg 남아프리카 오렌지를 수입했다. 염전검험검역국에서 “남아프리카 감귤 입국식품 검역요구”의 규정에 따라 검험검역을 진행한 결과, 냉각처리가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여 심천검험검역국과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의 비준을 받아 상기 화물에 대해 반품처리를 진행했다.



이는 심천항구에서 남아프리카 수입 오렌지를 수입한 후 처음으로 냉각처리가 불합격되어 반품처리를 진행한 것이다. “남아프리카 감귤 수입식품 검역요구”는 2006년 6월,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수정하여 시행했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10.9.29)

2) 최근 이슈사례

□ 중국은 수입식품 안전검사 능력의 건설을 추진

중국 전인대상무위원회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의 요구에 의해 국무원식품안전사무실은 농업부, 상무부, 위생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등 17개 부서와 공동으로 “전인대상무위원회 법률집행검사조가 ‘식품안전법’ 시행상황에 대한 검사보고”와 제11기 전인대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의 심의의견을 연구하여 개선업무 조치를 제출했다.

중국 식품안전 리스크 모니터링은 초기단계에 있어 기술수준이 비교적 낮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공신부, 재정부, 농업부, 상무부, 위생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식량국 등 부서와 정책조치를 개선하며 식품안전 모니터링능력을 강화한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10.9.6)



□ 심천검험검역국, 수입 월병의 검험감독을 엄격히 진행

최근 대량 수입 월병이 중국시장으로 공급되면서 심천검험검역국은 올해 227개 샘플링을 진행했다. 특히 새로운 품목에 대해 100% 샘플링을 진행했으며 미생물항목, 물리화학항목, 식품첨가제항목 등 검사항목이 21가지가 되었다. 샘플링 검사를 진행한 월병은 모두 합격되었다.

수입 월병의 증문 라벨에 대한 검험을 강화하여 라벨이 합격되지 않은 수입 월병이 중국시장으로 공급되지 않도록 했다. 통관속도를 빠르게 하여 대부분 수입 월병의 통관시간을 기존의 10 업무일에서 5 업무일로 단축했다. 또한 월병 포장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수입 월병의 포장이 국가표준에 부합되도록 했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10.9.8)

□ 심천 대산만항구, 냉동 고기를 처음으로 수입

8월 31일, 대산만항구는 화물가치가 47,197.84달러인 미국산 냉동 닭발을 수입하여 처음으로 냉동 고기를 수입했다. 상기 냉동 고기가 순조롭게 통관하도록 하기 위해 대산만검험검역국은 관련 업무를 숙지하고 심천검험검역국 동물검역인원을 초청하여 현장지도를 진행했으며 동시에 사구검험검역국과 연락하여 냉동 고기의 전출업무를 진행했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10.9.10)

□ 녕파항구, 60만 개 백합종구를 수입

최근 화물가치가 132,300유로인 60만 개 수입 백합종구가 북윤항에 도착했다. 이는 녕파항구가 종묘 수입항구로 지정된 후 처음으로 백합종구를 수입했으며 올해 절강성에서 수입한 최대 수량의 백합종구였다.

백합종구는 식물 번식재료로서 유해생물을 휴대할 위험성이 높아 녕파검험검역국은 백합종구의 검험검역을 중시하며 각종 조치를 취하여 화물 수입을 적극적으로 촉진했다. (녕파검험검역국, 2010.9.16)

□ 신강 중대한 동식물 전염병의 전파를 예방

신강은 8개 국가와 인접하여 전염병 예방형세가 심각하다. 감자 갑충은 1993년에 신강으로 전파되었으며 현재 유효하게 통제하였지만 예방형세가 여전히 낙관적이지 않다. 최근 아프리카 돼지콜레라 등 중대한 동식물 전염병이 가끔 발생했으며 중국에 전파되지 않았지만 중국 농업, 재산 안전에 커다란 위협을 주었다.

아프리카 돼지콜레라가 신강으로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신강검험검역국은 산하 항구에서 검역을 강화하고 입국 관광객의 휴대물, 수출입화물과 운송공구 등의 동물제품에 대해 엄격히 검사하며 동시에 수출입통로에 대해 방역소독을 진행하고 폐기물에 대해 무공해 처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등 부서는 연합감찰조를 설립하여 신강 변경, 항구 등의 전염병 예방을 감독하며 문제를 발견하여 해결한다. (중국품질뉴스망, 2010.9.21)

□ 제3회 중국-대만 농산물 검험검역 세미나 개최

제3회 중국-대만 농산물 검험검역 세미나는 9월 28-29일에 복주에서 개최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분야에서 협의를 달성했다.

- ① 대만산 농산물이 대륙으로 수출할 검험검역 리스트분석을 가속화하여 2011년 상반기에 신선한 배를 대륙으로 수출한다.
- ② 대만산 가축제품에 대해 대륙은 관련 요구에 부합되는 가공제품의 수입을 허용한다.
- ③ 대륙산 앵두의 대만 수출에 관해 대만은 리스크 분석절차를 가동했으며 기술서류가 구비된 후에 검역을 빨리 진행한다.

또한 과일에서 서로 다른 일부 농약 잔류물 표준문제에 관해, 대륙에서 관련된 농약 잔류물 제한량 표준을 이미 작성한 경우에 대륙표준을 집행하고 대륙에서 관련된 농약 잔류물 제한량 표준을 아직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륙에서 표준을 작성하기 전에 국제식품법전위원회(CAC) 또는 대만 표준을 임시 채택하여 수입 검험근거로 하기로 했다. 동시에 쌍방은 전자증서와 검역견제도에서 적극적으로 협작하는 것을 동의했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10.9.29)



아. 10월 검역사례

1) 최근 검역사례

□ 상숙항구, 수입목재 100만 입방미터 초과

상속검험검역국의 통계에 의하면 올해 1-9월 상숙항구 목재 수입량은 101만 입방미터에 도달하여 처음으로 100만 입방미터를 초과했다.

2010년 상세엑스포가 개막한 후 상해항구의 운송압력이 증가하고 상해항구가 일부 상품에 대해 관제를 실시하는 등 영향을 받아 상당히 많은 뉴질랜드 목재가 상숙항구로부터 수입되었다. 동시에 상숙지역 부두와 관련업체는 미국 목재와 캐나다 목재 등 신규 품목을 적극적으로 개발했으며 그 발전속도가 빨랐다. 현재 상숙항구 수입목재는 뉴질랜드와 미국 원목과 판매이며 품목은 뉴질랜드 소나무, 미송(Douglas fir), 홍송, 백양나무 목재, 솔송나무, 코르시카 소나무 등 20여 개가 되며 현재 장강삼각주지역 뉴질랜드 원목 집산지로 되었다.

항구의 원목 수입량이 급속 증가하여 상속검험검역국은 검험검역과 통관속도를 빠르게 하고 24시간 예약제를 실시하며 정책홍보와 기초관리를 강화했다. 동시에 검험조건인 사전평가와 현장 샘플링 재확인을 강화하고 검험통관제도를 개선하여 원목 수입에 양호한 항구 물류통관 환경을 제공했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10.10.14)

□ 태창항구, 캐나다 껍질이 있는 원목을 처음으로 수입

최근 17,335입방미터 캐나다 껍질이 있는 원목을 적재한 선박이 태창부두에 정박했다. 이는 태창항구가 처음으로 캐나다 원목을 수입하여 복건 수서항구 다음으로 두 번째로 캐나다 껍질이 있는 원목을 수입할 수 있는 항구로 되었다.

자원형 화물의 안전한 수입을 위해 태창검험검역국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진행한다.

첫째, 태창항구의 유해물질 제거구역의 기능건설을 가속화한다. 유해물질 제거능력, 퇴적능력 등은 캐나다, 미국 수입원목에 대한 처리수요를 만족시키도록 한다.

둘째, 중국-캐나다 제2회 쌍변 식물검역회담이 태창에서 진행하도록 유치한다. 항구와 수입목재 유해물질 제거구역의 기능과 기술 우위를 통해 중국-캐나다 원목협정서에 태창항구를 캐나다 원목 수입항구로 추가하도록 촉진하며 목재 수입업무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한다.

셋째, 태창항구로부터 목재 수입 의향이 있는 업체에 정책, 법규 자문과 지도를 적극 지도하여 후속업무가 순조롭게 진행하도록 한다.

넷째, 캐나다 식품검험서와 기술합작을 진행하며 경외 사전검험을 순조롭게 진행하여 수입원목의 품질을 높인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10.10.19)

□ 운남 하구검험검역국, 불합격 수입용안을 반품

최근 하구검험검역국 복산사무소는 이산화황 함량이 표준을 초과한 수입용안에 대해 반품처리를 진행했다.

10월 10일, 20,500kg 베트남 수입용안은 변경지대 무역방식으로 복산사무소에 검험을 신고했다. 검험검역인원이 샘플링 표본을 농약잔류물 쾌속검측실험실에 제공하여 이산화황 함량의 검측을 진행했다. 초보 검측 결과에 의하면 수입용안의 이산화황 함량이 표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정했다.

검측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쾌속검측실험실은 샘플을 하구검험검역국 기술센터종합실험실에 제공하여 재검사를 진행했으며 복산사무소에 수입용안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할 것을 통보했다. 기술센터종합실험실의 재검사 결과에 의하면 수입용안의 이산화황 함량은 168.54mg/kg으로서 국가표준이 허용하는 최대치보다 3배 많았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10.10.20)

□ 대주항구 수입 동물가죽 대폭 증가

올해 1-9월 대주검험검역국에서 검험검역을 진행한 수입 동물가죽의 수입량과 수입액은 각각 9,216톤, 1,732만 달러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7.69%, 79.49% 증가했다. 소가죽은 주로 호주, 독일, 영국, 미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국가로부터 수입했다.



수입 가축은 일종 동물제품으로서 동식물 전염병을 휴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제품이다. 수입 소가축의 수량이 급증하고 수입내원이 넓으며 전염병이 자주 발생하여 대주검험검역국은 주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채택했다.

첫째, 가축 수입업체에 가축 출입고, 전염병 방지소독, 무공해 처리, 오수 처리 등을 잘 진행하며 관련 기록을 규범화하도록 지도한다.

둘째, 기업 책임의식을 높이고 가축 수입업체에 대한 품질안전 홍보를 강화하여 가축 수입업체가 전염병 개념을 수립하고 품질수준을 높이도록 한다.

셋째, 가축 수출국가 또는 지역의 전염병 정보에 대한 수집과 정리를 강화하고 주요 수출국가의 가축에 대한 리스크 분석을 진행하여 검역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넷째, 현장검사를 강화하고 빠른 시간에 문제를 발견하고 검역조치를 취하며 검역처리를 진행하여 전염병의 확산을 예방한다.

올해 1-9월, 대주검험검역국은 수입가축의 검역과정에서 유해생물이 있는 화물을 19건 탈취하여 외국 동식물 전염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예방했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10.10.27)

□ 호주항구, 탈취한 유해생물은 기록을 달성

올해 1-9월, 호주검험검역국은 유해생물을 47회 탈취하여 지난해 탈취량을 초과했다. 올해부터 호주검험검역국은 전염병 탈취, 검역감정과 유해물질 제거를 강화했다.

호주검험검역국은 항구 검사와 추적 검역을 결합시키고 제품별 특징과 수입국가별로 리스크분석을 진행하고 상세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유해생물의 탈취효율을 높였다.

목재와 양모는 호주항구에서 전입 수입하는 주요 제품으로서 임목 해충과 잡초 종자를 휴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제품이다. 호주검험검역국은 임목 해충과 잡초 종자에 대한 감정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연구자금과 하드웨어 투자를 확대하여 감정기술을 높였고 유해생물 감정인력을 강화하여 기술교육과 교류학습을 통해 유해생물 탈취능

력을 높였다.

동시에 호주검험검역국은 유해생물 물종의 조사와 일상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제때에 유해생물의 번식과 확산 동향을 파악하고 후속 유해물질 제거처리에 기초를 제공했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10.10.27)

□ 잠강항구, 처음으로 수입수수의 중계기지 역할을 담당

올해 8월 광둥은 처음으로 비종자용 보리와 유채씨를 잠강항구로부터 수입한 후 최근 4만 여 톤의 호주 수수(화물가치: 약 1,000만 달러)를 잠강항구로부터 수입하여 중국 사천 등 서남지역 양주원료로 공급했다.

잠강항구는 독특한 천연적 항구로서 양호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수 수입업체는 잠강항구를 중계항구로 선택했다. 잠강검험검역국은 수입수수의 검험검역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수입수수의 품질안전을 위해 사전준비를 진행하고 검험신고를 접수한 후 구체적 검험 검역방안을 수립하고 검험검역 업무규범과 관련규정에 따라 제때에 샘플링과 검험검역을 진행하여 검험검역을 빠르게 진행하며 기업의 경영원가를 낮추었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10.10.28)

□ 25톤 수입식품이 이련호특항구로부터 입국

최근, 이련호특검험검역국의 검험에 합격한 후 25톤 수입식품은 이련호특항구로부터 입국하여 시장에 판매되었다. 이는 올해 이련호특검험검역국에서 검험을 진행한 수량이 가장 많은 수입식품이었다.

수입식품이 이련호특항구에 도착한 후, 이련호특검험검역국은 수입식품을 적재한 컨테이너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수입식품은 우유차가루, 초콜릿, 과자, 견과, 소다수 등 5가지 화물로서 중량은 약 25톤이며 우유차가루는 싱가포르에서 수입한 외에 나머지 수입식품은 러시아로부터 수입했다.

검사를 진행한 후, 검험검역인원은 수입업체가 지정한 저장창고에 운송하여 봉하여 보관하도록 감독했으며 사진을 찍고 규정에 따라 샘플을 실험실에 제공하여 검측을



진행했다. 10월 11일, 검측결과에 의하며 각종 샘플이 모두 중국 국가기술성규범의 강제성 요구를 만족시켜 입국 검험검역수속을 밟고 관련 증서를 발급했으며 “수입식품 판매 기록표”를 작성하여 수입식품 동향을 기록했다. 수입업체는 모든 수입식품의 외부포장에 중문 라벨을 부착하여 품목명, 생산지와 생산날짜 등 관련 정보를 표기한 후 이련호특검험검역국에서 시장판매를 비준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련호특검험검역국은 항구에서 조사한 관광객이 휴대한 수량이 비교적 많은 수입식품에 대해 검험신고를 할 것을 요구했다. 판매허가를 받기 전에 화물을 지정한 저장창고으로 운송하여 봉하여 보관하고 이련호특검험검역국 기술센터 실험실의 검측에 합격하여 입국 검험검역수속을 밟아야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10.10.29)

2) 최근 이슈사례

□ 내몽고와 심천, 검험검역 감독관리 협력비망록을 체결

최근 내몽고와 심천은 검험검역 감독관리 협력비망록을 체결하여 신형 업무협작을 정식으로 가동했다.

목축업은 내몽고 경제발전에서의 우위산업으로서 최근 외국시장에 가축을 대량 수출했다. 그 중에서 대량의 소를 심천항구를 통해 홍콩, 마카오로 수출했다. 내몽고 소의 수출을 확대하고 내몽고 경제발전을 가속화하며 내몽고업체에 우월한 무역환경과 빠른 검험검역 통관방식을 제공하기 위해, 내몽고와 심천의 검험검역부서는 새로운 검험검역 감독관리 모델을 연구하고 새로운 검험검역 합작체계를 구축하여 수출을 확대했다.

비망록에 의하면 쌍방은 홍콩에 공급하는 내몽고 소에 대한 검험검역 감독 관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정보교류체계를 구축하여 품질안전을 공동으로 보장한다. 쌍방은 생산지의 검험검역 감독 관리를 강화하여 내몽고 소의 수출을 확대한다고 약정했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10.10.9)

□ “수출입차있 품질감각평가방법”이 12월 1일부터 시행

최근 해창검험검역국에서 작성한 산업표준 “수출입차있 품질감각평가방법”이 발표되어 2010년 12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이 표준은 “수출입차있 품질감각평가방법”, “수출우롱차 품질감각평가평점방법”과 “수출입차있 감각평가실조건”을 통합 수정한 것이며 녹차류 황차, 흑차, 티백 등의 평가용구와 작업방법을 추가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차있 생산국과 소비국이다. 2008년 중국 차있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각각 160만 헥타르와 124만 톤에 도달했으며 차있 수출량과 수출액은 각각 29.7만 톤, 6.82억 달러에 도달하여 케냐, 스리랑카 다음으로 3위를 차지했다. 차있 품질 부합성 평가는 주로 등급표준 샘플과 무역거래 샘플을 비교하여 감각평가를 진행하는 것이다. (하문기술성무역조치정보망, 2010.10.12)

□ 다항구 감독관리: 불합격 수입대두 원유가 합격

최근 상해 포동검험검역국은 상해항구 수출입 산적 동식물유지의 주관부서로서 12,000톤 수입 대두 원유(화물가치: 약 1,030만 달러)에 대한 검사와 검측을 진행한 후 대두 원유의 용제 잔류물 지표는 1,225.6mg/kg로서 GB 1535-2003표준 “대두유”에서 규정한 100mg/kg 상한치를 훨씬 초과했다.

대두에서 원유의 제련은 현재 대부분 주로 용제방식을 채택한다. 이러한 방법은 기타 제유방법보다 생산율이 비교적 높지만 원유 중의 용제 잔류물은 인체에 유해하다. 이에 대해 중국은 용제방식으로 가공한 원유 중의 용제 함량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도 수입원유 중의 용제 함량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원유 중의 용제 잔류물 함량이 표준을 초과할 경우, 수입하지 못한다. 국가 관련표준과 국가 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의 요구에 따라 수입원유를 반품 또는 소각할 것을 명령했다.

수입업체 신청과 가공업체 보증의 기초에서 기업 손실을 줄이기 위해 포동검험검역국은 생산업체에 대한 현지조사의 기초에서 대두 원유 검험검역부서의 전반과정 감독관리를 진행한다. 상기 대두 원유는 상해와 다른 지역의 2개 업체가 수입하여 국가품질 검험검역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검험부서에서 수입업체에 대한 감독을 진행한다.

포동검험검역국은 상기 화물에 대해 각각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고 결정했다. 첫째, 상해업체의 대두 원유에 대해 포동검험검역국의 감독 아래에서 상해 생산업체가 정련 처리를 진행하여 각종 지표가 합격된 후에 판매할 수 있다. 둘째, 다티역으로 운송하는 화물에 대해 항구와 내륙의 법률 집행방식을 결정하며 관련 정보를 검험검역부서에 통보했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10.10.29)

자. 11월 검역사례

1) 최근 검역사례

□ 라호검험검역국, 관광객이 휴대한 대량 관상용 고기와 새우를 압수

10월 25일, 라호검험검역국은 관광객이 휴대한 12개 비닐봉지에 넣은 대량 관상용 고기와 새우를 압수했다. 그 중에서 Amphiprioninae 6마리, 산호어 8마리, 관상용 새우 2마리가 있다. 관광객은 휴대한 관상용 고기와 새우는 홍콩시장에서 구입하여 귀국하여 기르려 했다. 관광객이 관련 검험검역 증명을 제출할 수 없어 검험검역인원은 관광객이 휴대한 관상용 고기와 새우에 대해 반품처리를 했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10.11.2)



□ 심천검험검역국, 처음으로 수입 유채씨에 대해 파손감정을 진행

최근 심천검험검역국은 5.4만 톤의 캐나다산 유채씨에 대해 파손감정을 진행했다. 이는 심천검험검역국에서 처음으로 처리한 수입 유채씨의 파손사건이다. 현장조사를 통해 화물파손의 원인과 파손화물의 실제 손실증량을 확정했으며 파손감정증서를 발급하고 기업은 발급한 증서에 의해 외국 공급업체에 약 10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재 관련부서는 파손화물에 대해 소각처리를 진행했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10.11.3)

□ 일조항구는 중국 중요한 젓소 수입항구로 되었다.

올해부터 현재까지 일조항구를 통해 수입한 젓소는 5,811마리에 도달하여 중국 중요한 젓소 수입항구로 되었다. 일조검험검역국은 격리장의 기초시설 건설, 유지, 감독관리에서 젓소 하역, 운송, 격리검역 등까지에 대해 엄격한 감독 관리를 진행하여 수입 젓소의 검역업무가 순조롭게 진행하도록 하였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10.11.10)



□ 석사항구를 통해 수입한 소금에 절인 쇠가죽 급증

북건검험검역국 석사사무소의 소개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석사항구를 통해 소금에 절인 쇠가죽을 115회 수입했으며 화물가치는 1,805.4만 달러에 도달했다. 석사항구를 통해 수입한 모든 소금에 절인 쇠가죽은 모두 북건관홍피혁유한공사에서 검험검역을 신고하여 수입한 것이다. 소금에 절인 쇠가죽은 주로 미국, 호주 등 국가와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며 엄격한 검험검역에 합격한 후에 석사항구로부터 수입했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10.11.12)

□ 심천항구, 올해 처음으로 태국산 햅쌀을 수입

최근 2010년 새로 수확한 215톤 태국산 햅쌀은 심천항구를 통해 수입했으며 심천검험검역국은 수입쌀 검험검역 감독관리 메커니즘에서 수입쌀에 대해 농약 잔류물, 중금속, 유해생물 및 유전자변이 성분의 품질 모니터링을 진행함으로써 수입쌀의 품질안전을 보증했다.

심천항구는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수입쌀 도착항구로서 매년 수입하는 태국산 쌀은 중국 전체 수입량의 70%를 차지한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수입한 쌀은 13.26만 톤, 화물가치는 8,458.71만 달러에 도달했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10.11.15)

□ 수입화물은 훈증 약제 잔류물의 초과를 예방

최근 순덕검험검역국은 수입 가축을 적재한 컨테이너에서 훈증 약제 잔류물이 표준을 초과한 것을 발견했다. 검험검역인원이 측정한 컨테이너의 브롬화메틸(methyl bromide) 잔류



물 함량은 18-24ppm에 도달하여 국가안전표준을 초과했다. 항구 검사인원과 항구 작업인원의 생명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검험검역인원은 화주가 컨테이너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통풍을 진행하며 재검사에 합격한 후에 검험검역을 다시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 “작업장소 유해요소직업 접촉 제한량 제1부분: 화학유해요소”에서 브롬화메틸(methyl bromide)에 대한 짧은 시간에 접촉하는 허용농도(PC-STEL) 제한량은 5ppm이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10.11.24)

□ 썩쓰검험검역국, 최초로 *Erigeron bellioides* DC를 탈취

최근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발표한 “광사식물 전염병 모니터링 및 예방조치를 강화할 데 관한 경고통보”에 따라 썩쓰검험검역국은 마적산항구 퇴적장 잡초 성장현황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14개 식물표본을 수집하고 중국검험검역과학연구원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일종 *Erigeron bellioides* DC의 외국 잡초를 발견했다. 이러한 잡초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탈취했다.

Erigeron bellioides DC의 원산지는 남미이며 호주, 하와이와 푸에르토리코에서 귀산되었다. 이전에 대만에서 2006년과 2008년에 대북 남부항구구역과 기륭에서 이런 잡초를 탈취했었다.

최근에 수입광사가 외국 유해생물이 침입하는 새로운 경로로 되었다. 썩스 마적산항구는 아세아 최대 광사 중계기지로서 유해잡초가 광사를 통해 침입하는 잠재적 리스크가 비교적 크다. 썩쓰검험검역국은 외국 유해생물의 전파와 확산을 예방하고 중국 농업생산과 생태환경의 안전을 보호하며 검험검역 업무기능을 이행하기 위해 마적산항구 퇴적장과 주변환경의 잡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검험검역부서의 기술지도 아래에서 항구구역이 잡초제거를 진행하며 광사 퇴적장을 외국 유해생물 일상 모니터링 범위에 포함시켜 후속 감독관리 조치를 강화한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10.11.24)

□ 상주항구, 처음으로 올리브유를 수입

최근 중량이 화물가치가 6,400만 달러인 650kg 특급 올리브유는 상주검험검역국의

검험에 합격되어 검험검역마크를 부착하여 상주시장에 공급하게 된다. 이는 상주항구가 처음으로 식용 올리브유를 수입한 것이다.

올리브유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상주검험검역국은 관련표준과 리스크 예보자료를 열람하여 제품 검험방안을 확정하고 중점으로 올리브유 품질과 연관되는 특징지표와 안전위생지표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했으며 수입업체를 협조하여 중국표준에 따라 중문 라벨을 설계함으로써 제품품질과 라벨표기의 안전을 보증했다. (상주검험검역총국, 2010.12.1)

2) 최근 이슈사례

□ 광둥검험검역국 동물 격리장 건설을 가속화

광둥검험검역국 동물 격리장은 제16회 아세아운동회 마술경기 검역의 응급격리장소이며 중국 동물 방역체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아세아운동회 마술경기 검역요구에 따라 광둥검험검역국은 아세아운동회 말 입국 응급격리장소를 건설했다.

광둥검험검역국 기존 동물격리검역장소는 중국 4대 격리장 중의 하나이며 격리검역수입동물의 종류, 수량은 중국에서 1위를 차지한다. 광주는 화남지역 경제무역중심으로서 광둥검험검역국의 신규 격리장의 건설은 광주아세아운동회 마술경기를 계기로 검역위생안전을 보증하고 동물방역체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지역 동물방역체계의 건설을 추진하고 화남지역 심지어 중국 중대한 동물전염병 응급대응능력을 강화했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10.11.1)

□ 서장검험검역국 수입식품 검험검역을 강화

올해 7월부터 서장검험검역국은 수입화물, 특히 수입식품에 대한 검험검역을 강화했다. 중국-인도 변경주민이 휴대하여 입국한 화물에서 26가지 상품, 104개 샘플을 검사하여 2가지 불합격 식품을 조사했다.

상기 문제에 대해 서장검험검역국은 아래와 같은 감독관리 조치를 취했다.

① 변경주민에 대한 교육을 강화, ② 상기 제품을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켜 엄격한 감독관리를 진행, ③ 검험검역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수입상품의 샘플링 비례, 감독관리 빈도를



높이며 검사항목을 증가하여 품질안전을 보증(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10.11.2)

□ 해남 팔소항구, 수입과일 지정항구로 비준

최근 해남성 팔소항구는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의 비준을 받아 해남성에서 해구항구 다음으로 두 번째로 수입과일 지정항구로 되어 해남과 아세안 무역발전을 촉진한다.

중국은 수입과일에 대해 지정항구제도를 실시하여 유해생물의 침입 리스크를 통제하고 수입과일 시장질서를 규범화하며 수입과일 수입량을 통제함으로써 중국 과일산업의 발전을 보호한다. 해남검험검역국은 해남성 상무청, 동방시정부 등 관련부서와 조사팀을 설립하여 황포, 불산과 녕파 등 3개 국가 비준을 받은 수입과일 지정항구에 대해 고찰하고 7,000만 위안을 투자하여 기초시설을 개선하며 내부 평가심사를 실시했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10.11.3)

□ 대만산 우럭바리 처음으로 하문시장에 공급

11월 5일 3,000마리 대만산 우럭바리는 처음으로 하문항구에 도착했다. 하문검험검역국의 빠른 검역을 통해 즉시 대만 소액상품 거래시장의 임시 양식장에 운송되었다. 이는 중국 대륙과 대만이 ECFA를 체결한 후 하문항구가 처음으로 수입한 활어이다. 대만산 활어 검험검역을 위해 하문검험검역국은 응급 대비책을 가동하고 기술센터 검사설비는 24시간 작업을 진행하여 농약 잔류물의 빠른 검사를 진행했다. 하문검험검역국은 전문 인원을 파견하여 검험검역 신고를 접수하고 녹색통로를 개통하며 빠른 시간에 대만산 활어의 입국 검험검역수속을 진행했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10.11.9)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과 한국 의약식품청과 합작비망록을 체결

10월 28일-11월 8일,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부국장은 한국을 방문하는 기간에 한국 의약식품청 청장과 한중 수출입 화장품과 식품의 검험검역 합작문제에 관해 회담을 진행하고 한중 식품안전 제7차 회의결과에 대해 높게 평가했으며 “한중 수출입 화장품의 합작비망록”을 체결하고 “한중 식품안전 합작위원회 제7회 회의기록”을 서명했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10.11.11)

제4절 ● 한·중 검역협정 추진현황

□ “한중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계약”

2001년 4월 5일, “한중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계약”을 공동 체결하여 가공류 수산물의 수출입 검험검역을 비교적 상세하게 약정

□ “한중 활수생물동물 검험검역 계약”

2004년 12월 16일, “한중 활수생물동물 검험검역 계약”을 체결하여 양국은 상대국가에 수출하는 수생동물 양식장, 중계 포장장소에 대해 반드시 본국 검험검역기구에 등기등록을 해야 하며, 상대국가에 명단을 통보하고 매번 수출하는 활수생동물은 반드시 수출국가 검험검역기구에서 발급하는 동물위생(검역)증서를 첨부해야 함

□ “한중일, 식품안전 협력 비망록”, “제3회 한중일, 위생부장 공동성명”

2009년 11월 23일, 한중일 3국 위생부장은 일본 동경에서 “한중일, 식품안전 협력 비망록”을 체결하여,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식품안전 발생원인과 예방대책 등 정보를 공유함. 또한 “제3회 한중일, 위생부장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H1N1 독감, 약물 임상연구, 재해의학과 식품안전 등 분야에서 합의를 달성

□ 제1회 한중 식품검역 쌍변회담이 한국에서 진행

2009년 9월,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한국국립식품검역원(NPQS)과 제1회 한중 식품검역 쌍변회담을 진행하여 쌍변 식품검역 협력메커니즘, 농산물 무역에서 발생하는 검험검역문제, 양국 과일채소 등 특색 농산물 검역진입 등을 검토하여 합의를 달성

제5절

● 한국 농수산물식품 수출현안과 대처방안

가. 수출현안

1) “한국 구제역의 전파를 방지할 데 관한 공고”

2010년 1월 2일, 한국 경기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국가품질감독검역검역총국과 농업부는 “출입국동식물검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를 발표

- 한국으로부터 우제류 동물과 그 제품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입하는 것을 금지,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우제류 동물과 그 제품의 “입국동식물검역허가증”의 발급을 중지
- 2010년 1월 2일부터 한국으로부터 운송되는 우제류 동물과 그 제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반송 또는 소각 처리를 진행
- 한국으로부터의 우제류 동물과 그 제품을 우송 또는 휴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발견되면 일률적으로 반송 또는 소각 처리를 진행
- 중국을 경유하거나 중국에 머물러 국제 항해 선박, 비행기와 기차 등 운송도구에서 한국으로부터 운송되는 우제류 동물과 그 제품을 발견하면 일률적으로 밀봉하여 보존. 그 교통인원이 스스로 양식하여 스스로 사용하는 우제류 동물은 반드시 우리에게 넣고 그 폐기물, 쓰레기 등은 일률적으로 출입국검역검역기구의 감독 아래에서 무공해 처리를 진행하며 함부로 방치하지 못함
- 세관, 국경 수비 등 부서에서 붙잡은 불법 입국의 한국으로부터 운송되는 우제류 동물과 그 제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입국검역검역기구의 감독 아래에서 소각 처리를 진행
- 상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출입국검역검역기구는 “출입국동식물검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각 출입국검역검역기구, 각급 동물 전염병 예방통제기구, 동물 위생 감독기구는 각각 “출입국동식물검역법”과 “동물방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검역, 방역과 감독을 협조

2) 검험 불합격 한국식품

〈검험 불합격의 한국식품〉

HS코드	제품명칭	제조업체	중량(톤)	불합격 원인	처리	항구
1302199099	알로에 정화액	Namyang Co	0.002	라벨 불합격	소각	황도
1905310000	ACE초콜릿 과자	Golden Fuji Food Co	0.048	세균총수 표준초과	반송	남해북촌
1905310000	ACE딸기 과자	Golden Fuji Food Co	0.048	세균총수 표준초과	반송	남해북촌
1905310000	ACE초콜릿 과자	Golden Fuji Food Co	0.042	세균총수 표준초과	반송	남해북촌
2202900099	알레예즙	IL HWA CO.,LTD	0.4	라벨 불합격	반송	황포부두
2202900099	연세 오메가3 위락 유산균음료	yonseimilk	0.0072	품질기간 초과	소각	청도
2202900099	연세 유산균음료	yonseimilk	0.0072	품질기간 초과	소각	청도
2202900099	웅진 알로에음료	Woongjin Foods Co	1	세균총수 표준초과	반송	연대

나. 대처방안

“식품안전법” 제85조,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 관련 주관부서에서

- ① 불법소득, 불법 생산경영의 식품과 불법 생산경영에 사용되는 도구, 설비, 원료 등 물품을 몰수,
- ② 불법 생산경영의 식품 화물가치가 1만 위안 미만일 경우에 2,000위안 이상에서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
- ③ 화물가치가 1만 위안 이상일 경우에 화물가치의 5배 이상에서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
- ④ 엄중할 경우에 허가증을 취소



1) “식품안전법” 제85조

- 비식품 원료로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에 식품첨가제 외의 화학물질과 기타 인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물질을 첨가하거나 회수한 식품을 원료로 식품을 생산하는 경우
- 병원 미생물, 농약 잔류물, 가축 약품의 잔류물, 중금속, 오염물질과 기타 인체 건강에 해로운 물질의 함량이 식품안전표준의 제한량을 초과한 식품을 생산경영할 경우
- 영양성분이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영아와 유아, 기타 특정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주식과 보조 간식을 생산경영할 경우
- 부패 변질, 유지 산패, 곰팡이가 끼거나 해충이 발생하거나, 더럽고 청결하지 않거나, 이물질이 혼합되거나, 불순물과 가짜 물질을 끼워 넣거나, 감각형상이 이상한 식품을 경영할 경우
- 병사, 독사 또는 사인이 불명확한 조류, 가축, 짐승, 수생동물의 육류를 경영하거나, 병사, 독사 또는 사인이 불명확한 조류, 가축, 짐승, 수생동물의 육류제품을 생산경영할 경우
- 동물 위생감독기구의 검역을 받지 않거나 검역에 합격하지 못한 육류를 경영하거나, 검험을 받지 않거나 검험에 합격되지 않은 육류제품을 생산경영할 경우
- 품질 보증기간이 초과된 식품을 경영할 경우
- 국가에서 전염병 예방 등 특별한 요구로 인해 생산경영을 금지하는 식품을 생산 경영할 경우
- 새로운 식품 원료로 식품 생산을 하거나, 식품첨가제의 새로운 품목, 식품 관련 제품의 새로운 품목의 생산을 할 때에 안전성 평가를 거치지 않을 경우
- 식품경영업체가 관련 주관부서에서 회수하거나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의 경영을 중지할 것을 명령한 후에도 여전히 회수하지 않거나 경영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2) “식품안전법” 제89조

-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을 수입할 경우
- 식품안전표준이 없는 식품을 수입하거나 처음으로 식품첨가제의 새로운 품목, 식품 관련 제품의 새로운 품목을 수입할 때에 안전성 평가를 거치지 않을 경우
- 수출업체가 “식품안전법”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식품을 수출할 경우

중국이 식품안전을 강화하면서 수입식품에 대한 검험검역과 통관수속을 강화하고 있어, 한국식품 수출업체는 통관수속과 검험검역의 절차와 소요서류 등 관련 규정사항을 파악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면서 통관수속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제6절 ● 검험검역부서 연락처

□ 주요 검험검역부서 연락처

검험검역부서	전화	홈페이지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www.aqsiq.gov.cn
광둥출입국검험검역국	020-38291737	www.gdciq.gov.cn
북경출입국검험검역국	010-62386055	www.bjciq.gov.cn
천진출입국검험검역국	022-66298248	www.tjciq.gov.cn
상해출입국검험검역국	021-68549999	www.shciq.gov.cn
중경출입국검험검역국	023-67720355	www.cqciq.gov.cn
길림출입국검험검역국	0431-87607000	www.jlciq.gov.cn
요녕출입국검험검역국	0411-82583506	www.lnciq.gov.cn
흑룡강출입국검험검역국	0451-82337601	www.hljqiq.gov.cn
하북출입국검험검역국	0311-85980596	www.heciq.gov.cn
산둥출입국검험검역국	0532-80886272	www.sdciq.gov.cn
강소출입국검험검역국	025-52345103	www.jsiciq.gov.cn
복건출입국검험검역국	0591-87879003	www.fjciq.gov.cn
사천출입국검험검역국	028-82998000	www.scciq.gov.cn
운남출입국검험검역국	0875-5183888	www.ynciq.gov.cn
섬서출입국검험검역국	029-85365730	www.snciq.gov.cn
내몽고품질출입국검험검역국	0471-4340759	www.nmciq.gov.cn
닝하출입국검험검역국	0951-7884990	www.nxciq.gov.cn
청해출입국검험검역국	0971-8231567	www.qhciq.gov.cn
감숙출입국검험검역국	0931-8658286	www.gsciq.gov.cn
하남출입국검험검역국	0371-65800055	www.haciq.gov.cn
서장출입국검험검역국	0891-6824890	www.xzciq.gov.cn
호북출입국검험검역국	027-58905861	www.hbciq.gov.cn
강서출입국검험검역국	0791-8300324	www.jxciq.gov.cn
안휘출입국검험검역국	0551-2856000	www.ahciq.gov.cn

주요 수출국의 수출현안 모니터링

검험검역부서	전화	홈페이지
산서출입국검험검역국	0351-6162517	www.sxciq.gov.cn
절강출입국검험검역국	0571-89955114	www.ziq.gov.cn
해남출입국검험검역국	0898-6866227	www.hiciq.gov.cn
주해출입국검험검역국	0756-3219009	www.zhciq.gov.cn
광서출입국검험검역국	0771-5515406	www.gxciq.gov.cn
귀주출입국검험검역국	0851-6756734	www.gzciq.gov.cn
하문출입국검험검역국	0592-5675566	www.xmciq.gov.cn
닝파출입국검험검역국	0574-87022860	www.nbcic.gov.cn
흑룡강 치치하얼출입국검험검역국	0452-2457809	www.qqhrqiq.gov.cn
흑룡강 목단강출입국검험검역국	0453-6410206	www.mdjciq.gov.cn
흑룡강 가목사출입국검험검역국	0454-8606300	www.jmsciq.gov.cn
흑룡강 수분하출입국검험검역국	0453-3938300	www.sfhciq.com
흑룡강 학강출입국검험검역국	0468-6199222	www.hgciq.gov.cn
흑룡강 흑하출입국검험검역국	0456-8291008	www.hhciq.com
흑룡강 대경출입국검험검역국	0459-6360126	www.dqciq.gov.cn
흑룡강 동녕출입국검험검역국	0453-3622739	www.dnciq.gov.cn
길림 연변출입국검험검역국	0433-2246777	
길림 훈춘출입국검험검역국	0440-7513669	
길림 통화출입국검험검역국	0435-3217067	
길림 백성출입국검험검역국	0436-3224269	
길림 장백출입국검험검역국	0439-8223800	
길림 집안출입국검험검역국	0435-6265816	
요녕 심양출입국검험검역국	024-24192626	http://sy.lnciq.gov.cn
요녕 반금출입국검험검역국	0427-2820765	http://pj.lnciq.gov.cn
요녕 대련개발구출입국검험검역국	0411-87616616	www.dlciq.gov.cn
요녕 단둥출입국검험검역국	0415-2212009	http://dd.lnciq.gov.cn
요녕 안산출입국검험검역국	0412-5532036	http://as.lnciq.gov.cn
요녕 무순출입국검험검역국	0413-7711662	http://fs.lnciq.gov.cn
요녕 대련공항출입국검험검역국	0411-83885933	http://jc.lnciq.gov.cn
요녕 요량출입국검험검역국	0419-2157979	http://ly.lnciq.gov.cn



검험검역부서	전화	홈페이지
요녕 영구출입국검험검역국	0417-2827442	http://yk.lnciq.gov.cn
북경 수도공항출입국검험검역국	010-64590715	
북경 경제기술개발구출입국검험검역국	010-58648408	
북경 해정출입국검험검역국	010-82403683	
북경 풍대출입국검험검역국	010-58648203	
북경 통주출입국검험검역국	010-58648855	
북경 순의출입국검험검역국	010-58648530	
천진 공항출입국검험검역국	022-28138452	
천진 경제기술개발구출입국검험검역국	022-25324653	
천진 동항출입국검험검역국	022-25603726	
천진 동강출입국검험검역국	022-25603088	
천진 정해출입국검험검역국	022-68693641	
하북 진황도출입국검험검역국	0335-3407831	
하북 한단출입국검험검역국	0310-8018191	
하북 창주출입국검험검역국	0317-2010410	
하북 당산출입국검험검역국	0315-2237433	
하북 승덕출입국검험검역국	0314-2156612	
하북 장가구출입국검험검역국	0313-8032772	
하북 량방출입국검험검역국	0316-2041944	
하북 형대출입국검험검역국	0319-2282886	
하북 보정출입국검험검역국	0312-3113997	
하북 형수출입국검험검역국	0312-2183388	
산둥 청도출입국검험검역국	0532-80887200	
산둥 황도출입국검험검역국	0532-86999527	
산둥 위해출입국검험검역국	0631-5232258	
산둥 영성출입국검험검역국	0631-7586678	
산둥 연대출입국검험검역국	0535-6646988	
산둥 래주출입국검험검역국	0535-2263895	
산둥 영구출입국검험검역국	0535-8818668	
산둥 유방출입국검험검역국	0536-8582626	

주요 수출국의 수출현안 모니터링

검험검역부서	전화	홈페이지
산동 동영출입국검험검역국	0546-8083070	
산동 치박출입국검험검역국	0533-3181831	
산동 제남출입국검험검역국	0531-88527200	
산동 제녕출입국검험검역국	0537-2313884	
산동 룡성출입국검험검역국	0635-8421720	
산동 조장출입국검험검역국	0632-3313479	
산동 임이출입국검험검역국	0539-8097801	
강소 연운항출입국검험검역국	0518-82320008	
강소 소주출입국검험검역국	0512-65630593	
강소 무석출입국검험검역국	0510-88701058	
강소 장가항출입국검험검역국	0512-58380900	
강소 서주출입국검험검역국	0516-85609144	
강소 남통출입국검험검역국	0513-83517518	
강소 염성출입국검험검역국	0515-88334224	
강소 양주출입국검험검역국	0514-87862450	
강소 상주출입국검험검역국	0519-85151088	
강소 진강출입국검험검역국	0511-88825323	
강소 태주출입국검험검역국	0523-86335796	
강소 상숙출입국검험검역국	0512-52810501	
강소 곤산출입국검험검역국	0512-57310065	
강소 강음출입국검험검역국	0510-86855346	
강소 태창출입국검험검역국	0512-53584300	
강소 오강출입국검험검역국	0512-63482679	
강소 회안출입국검험검역국	0517-83664502	
상해 포강출입국검험검역국	021-53594570	
상해 포동출입국검험검역국	021-68549999	
상해 오송출입국검험검역국	021-56818609	
상해 국제공항출입국검험검역국	021-68341124	
상해 민항출입국검험검역국	021-64309494	
상해 외고교출입국검험검역국	021-68685079	



검험검역부서	전화	홈페이지
상해 봉헌출입국검험검역국	021-33655109	
상해 송명출입국검험검역국	021-59628223	
상해 금산출입국검험검역국	021-57972376	
상해 남회출입국검험검역국	021-58022055	
상해 양산출입국검험검역국	021-68281319	
절강 온주출입국검험검역국	0577-88373333	
절강 금화출입국검험검역국	0579-82355869	
절강 주산출입국검험검역국	0580-2820829	
절강 대주출입국검험검역국	0576-88881859	
절강 소흥출입국검험검역국	0575-8125224	
절강 가흥출입국검험검역국	0573-85589680	
절강 호주출입국검험검역국	0572-2125536	
절강 구주출입국검험검역국	0570-3081394	
절강 여수출입국검험검역국	0578-2629961	
절강 의우출입국검험검역국	0579-81579008	
절강 소산출입국검험검역국	0571-83899227	
절강 항주공항사무소	0571-89955114	
북건 천주출입국검험검역국	0595-22506195	
북건 포천출입국검험검역국	0594-2622009	www.ciqpt.gov.cn
북건 복청국검험검역국	0591-85280915	www.fqciq.gov.cn
북건 삼명출입국검험검역국	0598-8228445	
북건 녕덕출입국검험검역국	0593-2923889	
북건 남평출입국검험검역국	0599-8814146	
북건 용암출입국검험검역국	0597-2966606	
북건 동산출입국검험검역국	0596-5657853	
북건 진강출입국검험검역국	0595-85697807	
북건 복주공항사무소	0591-28013162	
광둥 광주출입국검험검역국	020-38290970	
광둥 증성출입국검험검역국	020-82769920	
광둥 번우출입국검험검역국	020-84615102	

주요 수출국의 수출현안 모니터링

검험검역부서	전화	홈페이지
광동 개평출입국검험검역국	0750-2272751	
광동 고명출입국검험검역국	0757-88886983	
광동 하원출입국검험검역국	0762-3362243	
광동 조경출입국검험검역국	0758-2715023	
광동 무명출입국검험검역국	0668-2811197	
광동 계양출입국검험검역국	0663-8211261	
광동 남해출입국검험검역국	0757-86397541	
광동 남사출입국검험검역국	020-39090301	
광동 산두출입국검험검역국	0754-88880475	
광동 화도출입국검험검역국	020-86891983	
광동 강문출입국검험검역국	0750-3488608	
광동 양강출입국검험검역국	0662-3320497	
광동 해주출입국검험검역국	0752-2779168	
광동 중산출입국검험검역국	0760-88887373	
광동 조주출입국검험검역국	0768-2266353	
광동 소관출입국검험검역국	0751-8288123	
광동 산미출입국검험검역국	0660-6685001	
광동 순덕출입국검험검역국	0757-26651751	
광동 잠강출입국검험검역국	0759-3188022	
광동 종화출입국검험검역국	020-87960385	
광동 신회출입국검험검역국	0750-6312003	
광동 불산출입국검험검역국	0757-83980105	
광동 대아만출입국검험검역국	0752-5593308	
광동 동관출입국검험검역국	0769-22802672	
광동 요평출입국검험검역국	0768-7807351	
광동 청원출입국검험검역국	0763-3856377	
광동 매주출입국검험검역국	0753-2255122	
광동 운부출입국검험검역국	0766-8820197	
광서 오주출입국검험검역국	0774-3853000	
광서 북해출입국검험검역국	0779-3206691	



검험검역부서	전화	홈페이지
광서 방성항출입국검험검역국	0770-2822966	
광서 흙주출입국검험검역국	0777-2392991	
광서 계림출입국검험검역국	0773-5801209	
광서 류주출입국검험검역국	0772-2616357	
광서 귀항출입국검험검역국	0775-4566561	
광서 빙상출입국검험검역국	0771-8521560	
광서 동흥출입국검험검역국	0770-7682811	
광서 수구출입국검험검역국	0771-8830077	
광서 옥림출입국검험검역국	0775-2695281	
광서 용방출입국검험검역국	0776-6211706	
광서 하주사무소	0774-5123710	
광서 하지사무소	0778-2309931	
하남 초작출입국검험검역국	0391-2616584	
하남 안양출입국검험검역국	0372-3937901	
하남 상구출입국검험검역국	0370-3210685	
하남 루하출입국검험검역국	0395-3135951	
하남 남양출입국검험검역국	0377-63128919	
하남 신양출입국검험검역국	0376-6351599	
하남 정주공항사무소	0371-68511596	
하남 정주경제기술개발구사무소	0371-66866099	
하남 정주도로항사무소	0371-65770507	
하남 삼문협사무소	0398-8523037	
하남 정주철도동역사무소	0371-66368697	
안휘 무호출입국검험검역국	0553-5962519	
안휘 방부출입국검험검역국	0552-4041263	
안휘 경안출입국검험검역국	0556-5530306	
안휘 마안산출입국검험검역국	0555-2362499	
안휘 동릉출입국검험검역국	0562-2815823	
안휘 황산출입국검험검역국	0559-2555008	
안휘 부양출입국검험검역국	0558-2179838	

주요 수출국의 수출현안 모니터링

검험검역부서	전화	홈페이지
안휘 지주출입국검험검역국	0566-2095607	
강서 구강출입국검험검역국	0792-8220971	
강서 경덕진출입국검험검역국	0798-8338111	
강서 감주출입국검험검역국	0797-8374526	
강서 상요출입국검험검역국	0793-8206839	
강서 길안출입국검험검역국	0796-8102688	
강서 의춘출입국검험검역국	0795-3598200	
강서 남창공항사무소	0791-3960892	
강서 용남사무소	0797-3529731	
강서 신여사무소	0790-7068681	
운남 덕굉출입국검험검역국	0692-2123721	
운남 서여출입국검험검역국	0692-4110398	
운남 등충출입국검험검역국	0875-5185664	
운남 보이출입국검험검역국	0879-2125066	
운남 씨쌍반나출입국검험검역국	0691-2124416	
운남 맹랍출입국검험검역국	0691-8122346	
운남 하구출입국검험검역국	0873-3423518	
운남 홍하출입국검험검역국	0873-2210989	
운남 문산출입국검험검역국	0876-2183457	
운남 임창출입국검험검역국	0883-6519816	
운남 대리출입국검험검역국	0872-2209801	
해남 삼아출입국검험검역국	0898-88292918	
해남 청란출입국검험검역국	0898-63328252	
해남 양포출입국검험검역국	0890-28822460	
해남 해구미란공항사무소	0898-65751990	
해남 양포보세항구사무소	0890-22824318	
해남 해구보세구사무소	0898-66818175	
사천 남충출입국검험검역국	0817-2312017	
사천 내강출입국검험검역국	0832-2029682	
사천 달주출입국검험검역국	0818-2126242	



검험검역부서	전화	홈페이지
사천 면양출입국검험검역국	0816-2222611	
사천 반지화출입국검험검역국	0812-3320445	
사천 락산출입국검험검역국	0833-2444213	
사천 로주출입국검험검역국	0830-3190852	
사천 광원출입국검험검역국	0839-3504599	
중경 구룡파향출입국검험검역국	023-68437374	
중경 만주향출입국검험검역국	023-58201333	
중경 부릉향출입국검험검역국	023-72890958	
중경 구룡파향출입국검험검역국	023-68437374	
중경 구룡파향출입국검험검역국	023-68437374	
중경 출입국검험검역국 공항사무소	023-67806605	
중경 출입국검험검역국 상교사무소	023-65207960	
중경 출입국검험검역국 우체국사무소	023-63601801	
산서 태원공항출입국검험검역국	0351-7287062	
산서 후마출입국검험검역국	0357-4280114	
산서 장치출입국검험검역국	0355-3022914	
산서 양천출입국검험검역국	0353-2136301	
산서 대동출입국검험검역국	0352-7629807	
호북 상변출입국검험검역국	0710-3221978	
호북 악주출입국검험검역국	0711-3867724	
호북 황석출입국검험검역국	0714-6240525	
호북 형주출입국검험검역국	0716-8511525	
호북 도선출입국검험검역국	0728-3321838	
호북 의창출입국검험검역국	0717-6225576	
호북 항구사무소	027-84280808	
호북 수주사무소	0722-3584146	
섬서 유림출입국검험검역국	0912-3858516	
섬서 보계출입국검험검역국	0917-3307217	
섬서 한중출입국검험검역국	0916-2113101	
섬서 함양공항출입국검험검역국	029-88797071	

제7절 ● 자료출처

가. 웹사이트

- 중화인민공화국인민정부망(www.gov.cn)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www.aqsiq.gov.cn)
- 중국세관총서(www.customs.gov.cn)
-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 수출입데이터망(www.jkck.com)
- 세관종합정보자문망(www.china-customs.com)
- 중국통관망(www.e-to-china.com.cn)
- 중국검험검역서비스망(www.ciqcid.com)

나. 관련법규

- “식품안전법” 및 그 실시조례
- “수출입상품검험법” 및 그 실시조례
- “출입국동식물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
- “국경위생검역법” 및 그 실시세칙
- “수출입 화물원산지관리조례”
- “유제품품질안전감독관리조례”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입국육류제품 검역비준 관리업무를 더 강화하고 규범화할 데 관한 통지”
- “국무원에서 식품 등 제품의 안전감독 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특별규정”
- “출입국육류제품검험검역관리방법”
- “입국육류제품검험검역관리규정”



- “입국동식물검역비준관리방법”
- “식품표기관리규정”

다. 관련책자

- 출입국검험검역신고실무
- 출입국검험검역법률실무문답
- 중국출입국식품검험검역실무대전
- 식품표준법규
- 통관신고실무
- 세관업무관리



제3장 >>> 라벨링 규정

Korea Agro-Fisheries Trade Corporation

제1절 ● 라벨링 규정일반

가. 관리 및 법률체계

1) 관리체제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직책범위 내에서 전국 식품라벨의 감독 관리를 책임
- 현급 이상 품질기술감독부서는 직책범위 내에서 본 행정구역 내의 식품라벨의 감독 관리를 책임

2) 법률체계

- “식품안전법”
- “식품안전법실시조례”
- “식품라벨관리규정”
- “수출입식품화장품라벨심사제도를 조절할 데 관한 공고”
- “수출입식품, 화장품라벨검험규정(시행)”
- “포장식품라벨통칙(GB7718-2004)”
- “포장특수식용식품라벨통칙(GB13432-2004)”
- “포장음료주라벨통칙(GB10344-2005)”
- “건강(기능)식품통용표준”(GB16740-1997)

나. 표기방법

1) 표기사항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이 식품라벨관리규정을 수정할 데 관한 결정”에 의하면, 식품 또는 그 포장에 반드시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법률, 행정법규에서 부착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한 식품을 제외), 아래와 같은 기본사항을 표기해야 함

- 식품명칭
- 식품원산지
- 생산업체의 명칭, 주소와 연락방식
- 식품의 생산날짜, 품질보증기간, 저장조건
- 순함량, 고형물 함량(정량포장 식품일 경우)
- 식품의 성분 또는 배합원료 리스트
- 생산업체가 적용하는 제품표준코드
- 식품의 품질등급, 가공기술(식품표준이 요구할 경우)
- 식품생산허가증 번호 및 QS마크(생산허가증이 필요할 경우)
- 경고마크 또는 중문 경고설명

2) 금지사항

식품라벨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표기하지 못함

- 질병 예방 또는 치료역할이 있다고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
- 건강식품이 아니지만 건강역할이 있다고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
- 기만 또는 오도하는 방식으로 식품을 설명하거나 소개하는 내용
- 첨부한 제품설명이 그 근거를 증명할 수 없는 내용
- 문자 또는 도안이 민족습관을 존중하지 않고 차별 설명하는 내용
- 국기, 국장 또는 인민폐 등으로 표기하는 내용
- 기타 법률, 법규와 표준에서 표기를 금지하는 내용



아래와 같은 식품라벨 불법행위를 금지

- 생산날짜와 품질보증기간을 위조하거나 허위 표기
- 식품 원산지를 위조하거나 기타 생산업체의 명칭과 주소를 위조하거나 사칭
- 생산허가증 마크와 번호를 위조, 사칭, 변조
- 법률, 법규에서 금지하는 기타 행위

3) 주의사항

식품라벨의 표기형식은 아래와 같음

- 식품라벨은 식품 또는 그 포장과 분리하지 못함
- 식품라벨은 반드시 최소판매단위의 식품 또는 그 포장에 직접 표기
- 1개 판매단위의 포장에 서로 다른 품목, 몇 개 독립포장 식품에 대해, 각 독립포장 식품의 라벨은 반드시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이 식품라벨관리규정을 수정할 데 관한 결정”에 따라 표기. 판매단위의 외부포장을 통해 각 독립포장 식품의 모든 또는 일부 강제성 표기내용을 명확히 식별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판매단위의 외부포장에 각각 표기해야 하지만, 외부포장이 쉽게 개봉하여 식별되는 경우를 제외. 각 독립포장 식품의 모든 또는 일부 강제성 표기내용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을 경우, 외부포장에 관련내용을 중복하여 표기하지 않을 수 있음
- 식품라벨은 반드시 뚜렷하고 명확해야 하며, 라벨 뒷면과 바탕색은 반드시 서로 비교가 되는 색깔을 채택하여 소비자가 쉽게 식별하도록 해야 함
- 식품라벨의 모든 문자는 반드시 규범화된 중문이어야 하지만 등록상표는 제외. 식품라벨은 동시에 한자 병음 또는 소수민족 문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외국어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중문과 대응관계가 있어야 하며 외국어는 대응되는 중문보다 크지 말아야 하지만, 등록상표를 제외
- 식품 또는 그 포장의 최대 표면면적은 20cm² 이상일 경우, 식품라벨에서 강제성 표기내용의 문자, 부호, 숫자의 높이는 1.8mm 이상이어야 함. 식품 또는 그 포장의 최대 표면면적은 10cm² 이하일 경우, 식품라벨은 식품명칭, 생산업체의 명칭과 주소, 순함량 및 생산날짜, 품질보증기간만 표기할 수 있음. 단, 법률, 행정법규에

서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할 경우, 그 규정을 따라야 함

다. 수입식품

1) “식품안전법” 제66조 규정

수입 포장식품은 반드시 중문 라벨, 중문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라벨, 설명서는 반드시 식품안전법과 중국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과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식품의 원산지 및 경내 대리업체의 명칭, 주소, 연락방식을 명기해야 한다. 포장식품이 중문 라벨, 중문 설명서가 업서가 라벨, 설명서가 식품안전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수입하지 못한다.

2) “수출입식품화장품라벨심사제도를 조절할 데 관한 공고”의 규정

- 수입식품 라벨은 반드시 중국 법률법규와 강제성표준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 2006년 4월 1일부터 수입식품의 라벨심사와 수입식품의 검험검역을 결합시켜 진행하고, 사전심사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 이미 취득한 “수출입식품라벨심사증서”는 계속 유효하며, 수입식품 라벨과 심사증서에서의 표기내용이 서로 부합되면 라벨검험을 면제할 수 있다.

라. 식품라벨 표준 개황

1987년 5월 국가기술감독국은 GB7718-1987 “식품라벨통용표준”을 발표하고 이 표준을 통해 식품라벨을 규범화하고 공평한 경쟁을 보증했으며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했다. 1994년, 2004년의 수정을 거쳐 GB7718-2004 “포장식품라벨통칙”을 발표하여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GB7718표준을 시행하는 기초에서 중국 현실, 식품 종류, 라벨 관리 등 문제를 고려하여

또 각각 GB10344-1989 “음료주라벨표준”과 GB13432-1992 “특수영양식품라벨” 표준을 발표했다. GB7718-2004와의 일치성을 유지하기 위해, 2002년에 GB10344-1989 표준을 수정하여 2005년 12월에 GB10344-2005 “포장음료주라벨통칙”을 발표하여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했다. 2002년에 GB13432-1992 표준을 수정하여 2004년 5월에 GB13432-2004 “포장특수식품라벨통칙”을 발표하여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했다. 상기 3개 라벨표준의 기초에서 일부 제품의 국가표준과 산업표준도 라벨에 대해 일부 규정했다.

마. 식품라벨 표준 주요내용

1) GB7718-2004 “포장식품라벨통칙”

GB7718-2004 표준은 국제식품법전위원회의 CODEX STAN 1-1985(1991년, 19999년에 수정) “포장식품라벨통용표준(General Standard for the Labeling of Prepackaged Foods)”을 참조하고 동시에 미국연방법규 제101부분 “식품라벨”을 참조했다. 표준은 포장식품라벨의 기본요구, 강제표시내용, 강제표시내용의 면제, 비강제표시내용을 규정했으며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포장식품라벨에 적용한다.

2) GB13432-2004 “포장특수식품라벨통칙”

GB13432-2004 표준은 포장특수식품라벨의 기본요구, 강제표시내용, 강제표시내용의 면제, 비강제표시내용, 허용표시내용, 추천표시내용을 규정했으며 일부 특정인의 생리요구 또는 일부 질환환자의 영양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특수 배합으로 가공한 포장식품라벨에 적용한다.

3) GB10344-2005 “포장음료주라벨통칙”

GB10344-2005 표준은 알코올(에탄올 함량) 농도가 0.5% 이상의 모든 포장음료주의 라벨에 적용하며 주로 표준의 적용범위, 기본요구, 강제표시내용, 강제표시내용의

면제, 비강제표시내용을 규정했다.

4) 관련 식품표준이 라벨에 대한 특별규정

상기 3개 라벨표준 외에 많은 제품표준도 라벨에 대해 특별표시내용을 규정했다. 일반적으로 제품의 특징성분 함량에 대한 표시를 규정했다. 예를 들면, GB2746-1999 “요구르트(yoghurt)” 표준과 GB5408.1-1999 “저온살균우유(pasteurized milk)” 표준은 제품의 종류와 단백질, 지방, 비지방 우유고체의 함량 등도 규정했다. GB8537-1995 “음용천연광천수” 표준은 제품라벨에 반드시 광천수원지의 명칭 및 일부 이온의 함량범위 등을 표시해야 한다.

〈특수표시내용을 규정한 제품표준〉

No.	표준번호	표준명칭
1	GB2746-1999	요구르트(yoghurt)
2	GB5408.1-1999	저온살균우유(pasteurized milk)
3	GB5408.2-1999	살균우유(sterilized milk)
4	GB5410-2008	분유
5	GB5415-2008	크림(cream)
6	GB5417-2008	연유
7	GB8537-1995	음용천연광천수
8	GB10765-1997	유아 처방분유 I
9	GB10755-1997	유아 처방분유 II, III
10	GB10767-1997	영아/유아 처방분 및 영아/유아 보충곡분 통용조건
11	GB10769-1997	영아/유아 이유기 보조식품
12	GB10770-1997	영아/유아 이유기 보충식품
13	GB10792-2008	탄산음료(사이다)
14	GB15266-2000	운동음료
15	GB16740-1997	건강(기능)식품통용표준
16	GB17946-2000	소흥주(소흥황주)
17	GB18186-2000	양조 간장
18	GB18187-2000	양조 식초
19	GB/T19343-2003	초콜릿 및 초콜릿제품



No.	표준번호	표준명칭
20	QB/T2300-2006	식물단백질음료 야자주스 및 복원성 야자주스
21	QB/T2301-1997	식물단백질음료 호두주스
22	QB/T2438-2006	식물단백질음료 아몬드(almond)주스
23	QB/T2439-1999	식물단백질음료 땅콩주스
24	SB/T10013-2008	아이스크림(ice cream)
25	SB/T10014-2008	아이스마이어(ice mire)
26	SB/T10015-2008	아이스케이크(ice cake)
27	SB/T10016-2008	하드아이스크림(hard ice cream)
28	SB/T10018-2008	캔디(candy) 경질캔디
29	SB/T10329-2000	케이크장식(decorating cake)
30	SB10336-2000	조제 간장
31	SB10337-2000	조제 식초
32	SB10338-2000	산분해 식물단백질 조미료(액체)

바. 라벨링규정 변동사항

1) 3월 라벨링규정 변동사항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2009년 10월 22일에 “식품안전법”과 그 실시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07년 8월 27일에 발표한 “식품라벨관리규정”을 수정

〈라벨링규정 변동사항〉

조항	수정 전	수정 후
제1조	식품라벨 감독 관리를 강화, 식품라벨 표기를 규범화, 품질사기를 방지, 기업과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품품질법”, “식품위생법”,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이 식품라벨관리규정을 수정할 데 관한 결정” 및 “공업제품생산허가증관리조례” 등 법률법규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식품라벨 감독 관리를 강화, 식품라벨 표기를 규범화, 품질사기를 방지, 기업과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안전법”, “제품품질법”,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이 식품라벨관리규정을 수정할 데 관한 결정” 등 법률법규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조항	수정 전	수정 후
제8조 제1항	식품라벨은 반드시 생산업체의 명칭과 주소를 표기해야 한다. 생산업체의 명칭과 주소는 반드시 법에 따라 등록등기하고 제품품질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생산업체의 명칭과 주소이어야 한다.	식품라벨은 반드시 생산업체의 명칭, 주소와 연락방식을 표기해야 한다. 생산업체의 명칭과 주소는 반드시 법에 따라 등록등기하고 제품품질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생산업체의 명칭과 주소이어야 한다.
제9조 제1항	식품라벨은 반드시 뚜렷하게 식품의 생산날짜와 품질보증기간을 표기해야 한다.	식품라벨은 반드시 뚜렷하게 식품의 생산날짜와 품질보증기간을 표기해야 하며, <u>관련 규정의 요구에 따라 저장조건을 표기해야 한다.</u>
제9조 제2항	<u>식품의 품질보증기간이 저장조건과 연관될 경우에 반드시 식품의 특정 저장조건을 표기해야 한다.</u> 에틸알코올의 함량이 10% 이상(10%를 포함)인 음료주, 식포, 식용소금, 고태 설탕류는 품질보증기간의 표기를 면제할 수 있다.	에틸알코올의 함량이 10% 이상(10%를 포함)인 음료주, 식포, 식용소금, 고태 설탕류는 품질보증기간의 표기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 제1항	정량포장의 식품라벨은 반드시 순함량을 표기해야 한다. 고체, 액체의 2가지 상태 물질의 식품에 대해 순함량을 표기하는 외에 고형물의 함량도 표기해야 한다.	정량포장의 식품라벨은 반드시 순함량을 표기해야 하고, <u>관련 규정의 요구에 따라 규격을 표기해야 한다.</u> 고체, 액체의 2가지 상태 물질의 식품에 대해 순함량을 표기하는 외에 고형물의 함량도 표기해야 한다.
제11조 제1항	식품라벨은 반드시 식품의 배합원료리스트를 표기해야 한다.	식품라벨은 반드시 식품의 <u>성분 또는 배합원료리스트</u> 를 표기해야 한다.
제11조 제4항	없음	영아와 유아, 기타 특정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주식과 보조 간식은 그 라벨에 주요 영양성분과 함량도 표기해야 한다.
제12조	식품라벨은 반드시 기업이 적용하는 <u>국가표준, 산업표준, 지방표준의 번호 또는 등록된 기업표준의 번호</u> 를 표기해야 한다.	식품라벨은 반드시 기업이 적용하는 <u>제품표준의 코드</u> 를 표기해야 한다.
제26조	본 규정의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식품 또는 그 포장에 라벨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에 <u>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하며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u>	본 규정을 위반하여 “식품안전법”과 그 실시조례 등 법률법규 규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경우에 <u>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u>
제28조	본 규정의 제9조, 제15조를 위반하여 생산날짜와 품질보증기간, 경고마크 또는 <u>중문 경고설명</u> 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에 “제품품질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본 규정의 제15조를 위반하여 <u>경고마크 또는 중문 경고설명</u> 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에 “제품품질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제30조	생략	삭제



2) 4월 라벨링 규정 변동사항

□ 위생부 2010년 제32호 문건(발행일 : 2010년 2월 3일) :

“위생부 감독국, 식품, 영양라벨 안전표준을 위탁수정할 데 관한 서신”

-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 : “식품안전법” 및 그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식품, 영양 라벨 표준을 될수록 빨리 개선하기 위해 귀 센터에 위탁하여 중국식품공업협회 등 기관과 공동으로 “포장식품라벨통칙”(GB 7718-2004)(시행일 : 2005년 10월 1일)를 수정할 것을 위탁하며 또한 위생부에서 발표한 “식품영양라벨관리규범”(시행일 : 2008년 5월 1일)을 수정하여 식품영양라벨안전표준으로 한다.

□ 위생부에서 “포장식품라벨표준”, “포장식품영양라벨표준”(시정안)을 공식 청구

“식품안전법” 규정에 따라 위생부는 “포장식품라벨표준”, “포장식품영양라벨표준”(시정안)을 수정한 후 위생부 웹사이트(www.moh.gov.cn)에 발표하여 2010년 6월 15일 까지 의견을 수집하고 있다.

3) 5월 라벨링규정 변동사항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제127호 법령(시행일 : 2010.6.1) :

“식품첨가제생산감독관리규정”

식품첨가제의 성분은 모두 표기해야 하며, 식품첨가제는 반드시 라벨, 설명서가 있어야 하며 라벨에 “식품첨가제”를 표기해야 한다.

식품첨가제의 라벨과 설명서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 ① 제품 명칭, 규격과 순함량
- ② 생산업체의 명칭, 주소와 연락방식
- ③ 성분 또는 배합원료표
- ④ 생산날짜, 품질보증기한 또는 안전사용기한
- ⑤ 저장조건

- ⑥ 제품표준 코드
- ⑦ 생산허가증 번호
- ⑧ 식품안전표준과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서 공고하여 비준한 사용범위, 사용량과 사용방법
- ⑨ 법률, 법규 또는 식품첨가제 안전표준에서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사항

식품첨가제의 라벨, 설명서는 진실하지 않거나 과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며, 질병 예방, 치료의 기능과 연관하지 못한다. 또한 식품첨가제의 라벨, 설명서는 반드시 명확하고 뚜렷해야 하며 쉽게 식별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금지사항과 안전사항이 있는 식품첨가제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경고마크 또는 중문 경고설명이 있어야 한다.

복합 식품첨가제는 상기 규정을 준수하는 외에 반드시 성분 또한 배합원료표에 동시에 식품첨가제 국가표준과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서 공고한 리스트와 일치한 각종 단일 품목의 명칭을 표기해야 하며 함량의 순서로 배열해야 한다.

사. 표기예시

□ 중국식품





□ 한국식품




□ 타국식품



□ 식용유

항목	내용설명	사진자료
식품명칭	로화 1급 땅콩기름	
생산기술	압착	
품질등급	1급	
원산지	원료원산지 : 중국	
순함량	5L	
제조업체	래양로화농향땅콩기름유한공사	
주소	산둥성 래양시 용문동로 39호	
생산날짜	xxxx년xx월xx일	
품질보증기간	xx월	
제품표준번호	GB1534	
식용방법	지짐, 볶음, 튀김, 무침	
저장방법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저장	
식품생산허가증번호	QS ×××× ×××× ××××	

□ 된장

항목	내용설명	사진자료
식품명칭	마른 된장	
원료배합표	물, 황두, 밀가루, 식용소금	
순합량	250g	
제조업체	북경육필거식품유한공사	
주소	북경시 서성구 선내대가 6호	
생산날짜	xxxx년xx월xx일	
품질보증기간	xx월	
제품표준번호	GB2718	
식품생산허가증번호	QS ×××× ×××× ××××	

□ 소시지


항목	내용설명	사진자료
식품명칭	쌍회 소시지	
원료배합표	돼지고기, 전분, 대두단백질, 식용소금, 백설탕, 향신료, 인산염, 에리소르빈산나트륨, 홍국, 소르빈산칼륨, 아질산나트륨	
전분함량	10% 미만	
품질등급	일반	
순합량	65g	
제조업체	쌍회그룹	
주소	하남성 루하시 인민동로 100호	
생산날짜	xxxx년xx월xx일	
품질보증기간	xx월	
식용방법	벗겨서 즉석 식용	
제품표준번호	GB/T20712	
식품생산허가증번호	QS ×××× ×××× ××××	




□ 분유

항목	내용설명	사진자료	
식품명칭	Nestle전지분유		
원료배합표	생우유, 대두 인지질, 비타민A, 비타민D3		
영양성분표	100g당 제품의 평균 함량		
	열량		2110KJ
	지방		28g
	단백질		24g
	탄수화물		39g
	유당		39g
	광물질		5.8g
	칼슘		930mg
	인		720mg
	비타민A		2100IU
	비타민D		340IU
	비타민B		1.1mg
비타민B12	1.8 μ g		
순합량	400g		
제조업체	쌍성Nestle유한공사		
주소	흑룡강성 쌍성시 우의로		
생산날짜	xxxx년xx월xx일		
품질보증기간	xx월		
제품표준번호	Q/NSL004		
식품생산허가증번호	QS ×××× ×××× ××××		

□ 오렌지에이드

항목	내용설명	사진자료
식품명칭	오렌지에이드음료	
원료배합표	물, 백설탕, 오렌지주스, 레몬산, 젖산칼슘, 향료, 비타민C, β-카로틴	
오렌지주스함량	10% 이상	
순함량	500mL	
제조업체	북경코카콜라음료유한공사	
주소	북경시 경제기술개발구 영경동가9호	
생산날짜	xxxx년xx월xx일	
품질보증기간	xx월	
제품표준번호	GB/T20712	
식품생산허가증번호	QS ×××× ×××× ××××	

□ 인스턴트 고체음료

항목	내용설명	사진자료
식품명칭	인스턴트 파인애플맛 고체음료	
원료배합표	백설탕, 식품첨가제, 비타민C, 식용소금, 카로틴, 비타민B, 엽산	
순함량	500g	
제조업체	카푸천미식품(천진)유한공사	
주소	천진시경제기술개발구 황해로167호	
생산날짜	xxxx년xx월xx일	
품질보증기간	18개월	
제품표준번호	Q/12 KF 5023	
식품생산허가증번호	QS xxxxxxxxxxxxxx	




□ 튀김라면

항목	내용설명	사진자료
식품명칭	디스니우유맛과자	
원료배합표	밀가루, 백설탕, 크림, 분유, 산화방지제, 식용우유, 에센스, 쇼트닝	
순합량	54g	
제조업체	강문시빈기식품유한공사	
주소	광둥성 강문시 해구 외해마원 평정산 1호	
생산날짜	xxxx년xx월xx일	
품질보증기간	12개월	
제품표준번호	GB/T 20980	
식품생산허가증번호	QS xxxxxxxxxxxxxx	


□ 냉동음료

항목	내용설명	사진자료
식품명칭	레몬맛 과자	
원료배합표	음용수, 백설탕, 포도당, 레몬산, 안정제, 천연향료, β-카로틴	
순합량	71g	
제조업체	Wall's(중국)유한공사	
주소	북경경제기술개발구 만원가 16호	
생산날짜	xxxx년xx월xx일	
품질보증기간	6개월	
저장조건	-18℃~-22℃	
제품표준번호	Q/WCH 103	
식품생산허가증번호	QS xxxxxxxxxxxxxx	

□ 급속 냉동 식품


항목	내용설명	사진자료
식품명칭	돼지고기 고추 만두	
원료배합표	밀가루, 고추, 돼지고기, 물, 계란, 생강, 식용소금, 양조간장	
순합량	738g	
제조업체	절강용봉식품유한공사	
주소	절강성 가선경제개발구 금가대도 51	
생산날짜	xxxx년xx월xx일	
품질보증기간	-18℃ 이하에서 xx개월	
제품표준번호	Q/ZLFS 01	
식품생산허가증번호	QS xxxxxxxxxxxxxx	

□ 고구마류 튀김식품


항목	내용설명	사진자료
식품명칭	Lay's 불고기맛 고구마튀김	
원료배합표	고구마가루, 식용식물유, 식용전분, 불고기맛 향료, 식용소금, 백설탕, 유화제, β-카로틴, 산화방지	
순합량	110g	
제조업체	PEPSICO식품(중국)유한공사	
주소	북경시 대홍구 손춘향 자위로 1호	
생산날짜	xxxx년xx월xx일	
품질보증기간	xx개월	
제품표준번호	Q/DXBSP 001	
식품생산허가증번호	QS xxxxxxxxxxxxxx	




□ 초콜릿제품

항목	내용설명	사진자료
식품명칭	Dove 초콜릿	
원료배합표	백설탕, 분유, 카카오버터>20%, 유화제, 식용향료	
순합량	80g	
제조업체	애분식품(북경)유한공사	
주소	북경시 회유안서공업개발구	
생산날짜	xxxx년 xx월 xx일	
품질보증기간	xxxx년 xx월 xx일까지	
제품표준번호	Q/HREFB004	
식품생산허가증번호	QS xxxx xxxx xxxx	

□ 껌제품

항목	내용설명	사진자료
식품명칭	레몬 맛 껌	
원료배합표	백설탕, 포도당, 향료, 산화전분, 글리세린, 이산화티타늄, 카르나우바 왁스, 향산화제	
순합량	80g	
제조업체	검패껌유한공사	
주소	광주경제기술개발구 우의로 111호	
생산날짜	xxxx년 xx월 xx일	
품질보증기간	xx월	
제품표준번호	SB 10023	
식품생산허가증번호	QS xxxx xxxx xxxx	

□ 차잎 및 관련 제품


항목	내용설명	사진자료
식품명칭	자스민 차	
원료배합표	차나무 신선한 잎, 자스민 생화	
순합량	250g	
제조업체	절강성 신안강차공장	
주소	절강성 건덕현 양계진	
생산날짜	xxxx년 xx월 xx일	
품질보증기간	xx월	
품질등급	xx	
제품표준번호	NY/T 456	
식품생산허가증번호	QS xxxx xxxx xxxx	

□ 황주


항목	내용설명	사진자료
식품명칭	가배황주	
원료배합표	물, 찹쌀, 밀	
알코올농도	18% vol	
당분농도	0.8~0.0%(포도당으로 계산)	
순합량	640mL	
제조업체	소흥시 당연공사	
주소	절강성 소흥시 상대로 17호	
생산날짜	xxxx년 xx월 xx일	
품질보증기간	xx월	
품질등급	1급	
제품표준번호	GB/T 13662	
식품생산허가증번호	QS xxxx xxxx xxxx	




□ 맥주

항목	내용설명	사진자료
식품명칭	표돌천맥주	
원료배합표	물, 맥아, 쌀, 홉	
알코올농도	3.7% vol	
맥아농도	120	
순합량	640mL	
제조업체	중국제남맥주공장	
주소	절강성 소흥시 상대로 17호	
생산날짜	xxxx년 xx월 xx일	
품질보증기간	xx월	
품질등급	우량	
제품표준번호	GB 4927	
식품생산허가증번호	QS xxxx xxxx xxxx	


□ 채소제품

항목	내용설명	사진자료
식품명칭	표고버섯	
순합량	200g	
제조업체	천진시 귀창공무유한공사	
주소	천진시 하동구 흥성로 동풍입체교차로 옆	
생산날짜	xxxx년 xx월 xx일	
품질보증기간	xx월	
제품표준번호	GB/T 1013	
식용방법	맑은 물로 깨끗이 씻고 다시 적당한 량의 온수에 약 2시간 담근 후에 직접 찌거나 삶거나 볶거나 끓인다.	
식품생산허가증번호	QS xxxx xxxx xxxx	

□ 과일제품

항목	내용설명	사진자료
식품명칭	해당포차	
원료배합표	신선한 해당, 백설탕, 솔빈산칼륨	
당분함량	8%~9%	
순함량	185g	
제조업체	북경맥극매과포식품유한공사	
주소	북경시 덕승문화대가 5호	
생산날짜	xxxx년 xx월 xx일	
품질보증기간	xx월	
제품표준번호	SB/5 10055	
식품생산허가증번호	QS xxxx xxxx xxxx	

□ 견과제품


항목	내용설명	사진자료
식품명칭	정임흑 호박씨	
원료배합표	검은 호박씨, 식용소금, 식용 식물유, 팔각, 계수, 정향, 사카린, 화학조미료, 산초, 감초	
순함량	1,500g	
제조업체	란주정임농간식품유한공사	
주소	감숙성 란주시 성관구 염장로 211호	
생산날짜	xxxx년 xx월 xx일	
품질보증기간	xx월	
제품표준번호	Q/ZL 01	
식품생산허가증번호	QS xxxx xxxx xxxx	



□ 계란제품

항목	내용설명	사진자료
식품명칭	냉장 계란	
원료배합표	신선한 계란	
순합량	1,000g	
제조업체	북경시가금류가공공장	
주소	북경시 연대구 각문 1호	
생산날짜	xxxx년 xx월 xx일	
품질보증기간	xx월	
저장지침	-15℃ 이하	
제품표준번호	GB 2749	
식품생산허가증번호	QS xxxx xxxx xxxx	

□ 코코아 및 커피제품

항목	내용설명	사진자료
식품명칭	커피 콩	
순합량	170g	
제조업체	상해말랍커피식품유한공장	
주소	상해시 보산구 금추로 2688C 동	
생산날짜	xxxx년 xx월 xx일	
품질보증기간	xx월	
제품표준번호	Q/SV 115-2006	
식품생산허가증번호	QS xxxx xxxx xxxx	

□ 설탕


항목	내용설명	사진자료
식품명칭	백설탕	
순합량	500g	
제조업체	북경시제당담배술회사	
주소	북경시승문구동타마창 100호	
생산날짜	xxxx년 xx월 xx일	
품질보증기간	xx월	
품질등급	1급	
제품표준번호	GB 317	
식품생산허가증번호	QS xxxx xxxx xxxx	

□ 전분 및 전분제품


항목	내용설명	사진자료
식품명칭	식용 옥수수 전분	
순합량	500g	
제조업체	북경시간채조미료무역센터	
주소	북경시 해정구 부성문외대가 156호	
생산날짜	xxxx년 xx월 xx일	
품질보증기간	xx월	
품질등급	2급	
제품표준번호	GB/T8885	
식품생산허가증번호	QS xxxx xxxx xxxx	




□ 케이크

항목	내용설명	사진자료
식품명칭	유럽식 우유빵	
제품기술	열가공	
원료배합표	밀가루, 백설탕, 계란, 우유가루, 연유, 쇼트닝, 효모, 식용 소금, 식용 향료, 프로피온산칼슘	
순합량	250g	
제조업체	광둥성 산두시 흥위식품유한공사	
주소	광둥성 산두시 금원공업성 603단지	
생산날짜	xxxx년 xx월 xx일	
제품표준번호	GB/T 20981	
품질보증기간	xx월	
저장방식	그늘지고 서늘하며 건조한 곳에 놓고 환경온도는 25℃ 이하, 상대온도는 60% 이하	
식품생산허가증번호	QS xxxx xxxx xxxx	

□ 콩으로 만든 식품

항목	내용설명	사진자료
식품명칭	백옥남 두부	
원료배합표	정화된 물, 대두, 석고	
순합량	450g	
제조업체	북경시두제품2공장	
주소	북경통주녹색식품공업단지	
생산날짜	xxxx년 xx월 xx일	
품질보증기간	3일(5℃~10℃)	
제품표준번호	Q/3S3DB 014	
식품생산허가증번호	QS xxxx xxxx xxxx	

□ 꿀제품

항목	내용설명	사진자료
식품명칭	관생원 벌꿀	
원료배합표	유채 벌꿀, 아카시아 벌꿀, 자운영 벌꿀	
품질등급	1급	
순함량	480g	
제조업체	상해관생원꿀제품유한공사	
주소	상해조보로220호	
생산날짜	xxxx년 xx월 xx일	
품질보증기간	xx월	
제품표준번호	Q/YQSM9	
식품생산허가증번호	QS xxxx xxxx xxxx	

□ 식량 가공품

항목	내용설명	사진자료
식품명칭	옥수수가루 국수	
배합원료	정제 밀가루, 옥수수가루, 물	
순함량	400g	
제조업체	북경향화원식품유한공사	
주소	북경시해정구서북왕정1호	
생산날짜	xxxx년 xx월 xx일	
품질보증기간	xx월	
제품표준번호	LS/T 3212	
식품생산허가증번호	QS xxxx xxxx xxxx	



□ 조미료(1)

항목	내용설명	사진자료
식품명칭	양조 간장	
배합원료	물, 탈지 대두, 대피, 밀, 소금	
순함량	640mL	
제조업체	북경왕지화식품그룹유한공사	
주소	북경시 선무구 조림전가 19호	
생산날짜	xxxx년 xx월 xx일	
품질보증기간	xx월	
품질등급	3급	
제품표준번호	Q/ENS 311	
식용범위	요리 볶음	
식품생산허가증번호	QS xxxx xxxx xxxx	

□ 조미료(2)

항목	내용설명	사진자료
식품명칭	만두 식초	
배합원료	물, 찹쌀, 마늘, 백설탕, 식용소금	
총산성	≥4.5g/100mL	
순함량	300mL	
제조업체	강소항순초업주식유한공사	
주소	강소성 진강시 중산서로 84호	
생산날짜	xxxx년 xx월 xx일	
품질보증기간	xx월	
제품표준번호	Q/321100HS017 고체 발효	
식품생산허가증번호	QS xxxx xxxx xxxx	

□ 조미료(3)

항목	내용설명	사진자료
식품명칭	화학조미료	
글루타민산 나트륨 함량	≥99%	
순합량	100g	
제조업체	심양화학조미료공장	
주소	심양시 철서구 위공북가 14호	
생산날짜	xxxx년 xx월 xx일	
품질보증기간	xx월	
제품표준번호	GB/T 8967	
식품생산허가증번호	QS xxxx xxxx xxxx	

□ 육류제품

항목	내용설명	사진자료
식품명칭	오향 탈골 치킨	
원료배합표	통닭, 식용식물유, 식용소금, 축사밀, 정향, 육두구	
순합량	750g	
제조업체	산동성 덕주동방무역회사 치킨식품공장	
주소	산동성 덕주시 신화로 21호	
생산날짜	xxxx년 xx월 xx일	
품질보증기간	xx월	
제품표준번호	Q/DMBJ01	
식품생산허가증번호	QS xxxx xxxx xxxx	



□ 마른새우

항목	내용설명
식품명칭	마른새우
순함량	70g
제조업체	천진시홍통식품공장
주소	천진시 하서구 대고남로 1392호
제품표준번호	SC/T 3302
생산날짜	xxxx년 xx월 xx일
품질보증기간	6개월
바코드번호	690xxxxxxxxxx
식품생산허가증번호	QS xxxx xxxx xxxx

□ 정제어류식품

항목	내용설명
식품명칭	정제어류식품
배합원료	신선한 물고기, 밀가루, 작은 새우, 백설탕, 식용식물유, 간장, 소금, 황주
순함량	50g
제조업체	천진홍광식품공장
주소	천진시 하서구 대고남로 1092호
생산날짜	xxxx년 xx월 xx일
품질보증기간	xx월
제품표준번호	Q/HG 001
식품생산허가증번호	QS xxxx xxxx xxxx

□ 물고기구이조각

항목	내용설명
식품명칭	물고기구이조각
배합원료	신선한 물고기, 백설탕, 소금, 조미료
순함량	70g
제조업체	상해어류제품공장
주소	상해시 군공로 486호

항목	내용설명
생산날짜	xxxx년 xx월 xx일
품질보증기간	xx월
제품표준번호	SC/T 3302
식품생산허가증번호	QS xxxx xxxx xxxx

□ 특수음식식품

항목	내용설명			
식품명칭	S-26 유아 처방분유			
배합원료	탈지우유, 유당, 식물유, 탈광물질 유장단백질, 백설탕, 레시틴, 레몬산, 뉴클레오티드, 바닐린, 광물질, 비타민			
영양성분표	매100g 분말의 평균 함량			
	열량	2018kJ	엽산	56 µg
	단백질	18g	판토텐산	2113 µg
	탄수화합물	56g	비오틴	14 µg
	지방	20g	콜린	70mg
	리놀산	3169mg	칼슘	810mg
	비타민 A	1761IU	인	493mg
	비타민 D	300IU	마그네슘	62mg
	비타민 E	7.7IU	철	7mg
	비타민 K	47 µg	아연	4.2mg
	비타민 B1	704 µg	망간	(42-127) µg
	비타민 B2	1056 µg	동	(176-423) µg
	비타민 B6	423 µg	요오드	(30-150) µg
	비타민 B12	1.9 µg	나트륨	264mg
	비타민 C	63mg	칼륨	880mg
니코틴산	2465 µg	염소	563mg	
순함량	400g			
제조업체	혜씨(상해)영양품유한공사			
주소	상해시 외고교보세구 대중남로 2호			
생산날짜	xxxx년 xx월 xx일			
품질보증기간	xx월			
적용범위	6-12개월 유아			
저장방법	제품을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놓아 분말의 신선도를 유지한다. 개봉한 후 4주 내에 식용하며, 제품을 온도가 높은 장소에 오랫동안 놓지 않도록 한다. 개봉한 후 장고에 넣어 냉장하지 않는다.			
사용량	180mL			
중요설명	6-12개월 유아가 본 제품을 사용할 때에 보조식품을 첨가해야 한다.			
식품생산허가증번호	QS xxxx xxxx xxxx			

제2절 ● 품목별 표기방법

가.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통용표준”(GB 16740-1997)에 의하면, 국산 건강식품과 수입 건강식품 판매포장 라벨은 반드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표기

1) 건강식품 명칭

- 진실한 속성을 나타내는 정확한 명칭을 사용. “혁신명칭”, “특별명칭”, “상호명칭” 또는 “상표명칭을 사용할 경우, 동시에 식품의 진실한 속성을 나타내는 정확하거나 비준 인가를 받았거나 기능역할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예를 들면, 노쇠방지 식품, 다이어트식품, 피로해소식품” 등)
- 약품명칭 또는 유사한 약품의 명칭으로 제품을 명명하지 못하며, 외국어 약자명칭, 코드명칭 또는 한자병음 명칭만 표기하지 못함

2) 배합원료표

건강식품의 배합원료를 표기, 식품첨가제와 식품 영양강화제는 구체적 명칭을 표기

3) 효능성분과 영양성분표

- 매 100g 또는 100mL의 건강식품에서 주도적 역할과 보조적 역할의 효능성분 함량(계량단위 : g, mg, ug 또는 국제단위로 표기)을 나열하여 표기
- 활성 생물체를 포함한 건강식품은 반드시 매 100g 또는 100mL에서 각종 활성 생물체의 수량을 표기
- 현대 과학기술로 효능성분을 확정하기 어려운 제품은 반드시 주도적 역할과 보조적 역할의 원료명칭과 사용량을 표기

- 영양성분(영양소)의 함량을 표기

4) 건강기능

표기하는 건강기능은 반드시 기준을 받아 확인된 기능과 일치해야 하며, 제품의 질병 치료효과를 설명하거나 소개하거나 암시하지 못함

5) 순함량과 고형물 함량

6) 제조업체의 명칭과 주소

- 건강식품 계량기 제조업체 또는 포장업체가 법에 따라 등기한 명칭과 주소를 표기
- 수입 건강식품은 상기 내용을 면제할 수 있지만, 반드시 원산지 국가 또는 지역(홍콩, 마카오, 대만을 가리킴) 명칭 및 총대리업체 또는 대리의견서가 국내에서 법에 따라 등기한 명칭과 주소를 표기

7) 생산날짜, 유지기간 또는/과 보존기간

- 년, 월, 일 순서에 따라 건강식품의 생산날짜를 표기
- 건강식품의 품질보증기간, 보존기간을 표기

8) 저장방법(조건)

건강식품의 품질보증기간 또는 보존기간이 저장방법(조건)과 관련될 경우, 반드시 저장요구를 표기

9) 식용방법

- 제품의 식용대상, 즉 적합한 특정 소비자를 표기
- 매일 또는 매번 적합한 식용량은 제품이 적합한 특정 소비자에 따라 각각 표기

10) 제품 표준번호와 비준문건번호

제품의 국가표준, 산업표준 또는 기업표준의 코드 또는 순서, 비준문건번호를 표기. 수입 건강식품은 제품 표준번호를 표기하지 않아도 됨

11) 특별 표기내용

홍분제 또는 호르몬이 있는 제품은 반드시 홍분제, 호르몬의 정확한 명칭과 함량을 표기

【표기예시】



【主要原料】维生素C、橙味天然食用色素、二氧化硅、胡萝卜素
 【规格】500mg×200粒
 【食用方法】每日1次，每次2粒
 【保质期】24个月
 【贮存方法】置阴凉干燥避光处
 【执行标准】Q/SSH021-2005
 【卫生许可证】鲁卫食证字(2007)第370783-0200011号
 【生产日期】：见瓶底



【Main raw material】Vitamin C, natural orange flavor, natural edible coloring, silicon dioxide, Carotene
 【Usage and dosage】Every day 1, each time 2 Grains
 【EXP】24 months
 【Production date】see the bottom of the bottle
 【Storage】Kept in airproof, cool and dry place
 西安恒泽堂生物科技发展有限公司监制
 欢迎登陆www.hengzetang.com网站浏览访问



山东寿光圣海保健品有限公司出品
 (工厂已通过GMP、ISO9001认证)
 地址：山东寿光羊口镇太平东路73号
 免费咨询电话：400-8289-888



【食用方法及食用量】：
 日服二次，每次2粒，
 饭后温开水送服。

【规格】：
 每粒含内容物为0.55g
 50粒/瓶

【保质期】：24个月
 【贮存方法】：
 密闭、置阴凉处保存。

【注意事项】：
 食品，不能代替药品。
 儿童服用酌情减量。
 批号：
 地址：上海浦东新区河北路185号
 电话：021-50201113 50201913
 传真：021-50201021

昵图网 nipi.com / wulibao

孢子油软胶囊

发明专利：ZL200610027609.3

【主要配料】：
 本品由灵芝孢子粉、
 红景天、黄精、刺五
 加、绞股蓝等采用
 高新技术萃取精制
 而成。

【功效成分及含量】：
 每100g含
 灵芝孢子油 ≥18.18g
 红景天苷 ≥0.36g
 粗多糖 ≥1.62g

执行标准：Q/SVX03-2005
 卫生许可证：(2003)沪食字第3号

나. 포장특수식품

1) 기본요구

포장특수식품의 라벨은 반드시 GB7718-2004 “포장식품라벨통칙” 제4장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지만 아래와 같은 내용을 표시하지 못한다.

- 어떤 질병에 대해 예방, 완화, 치료 또는 치유작용이 있다는 내용
- “노인에서 아동으로 돌아간다”, “장수한다”, “백발이 새까매진다”, “이가 떨어지고 다시 생긴다”, “암을 예방하고 치료한다” 또는 기타 유사한 용어
- 식품명칭 앞에 약물명칭 또는 약물도형, 명칭(약용과 식용의 물질을 포함하지 않음)으로 치료효과, 건강기능을 암시하는 내용

2) 강제표시내용

□ 식품명칭

GB7718-2004 “포장식품라벨통칙”에서 5.1.1의 규정에 따라 표시한다.

특수식품만 명칭에 “유아 처방분유”, “당분이 없는 인스턴트 전분가루”(당뇨병환자의 식용식품), “철고단백 인스턴트 전분가루”(빈혈환자의 식용식품) 등 특수한 뜻이 있는 수식어를 사용할 수 있다.(일반식품과의 차이점)

□ 원료배합표와 배합원료 정량표시

GB7718-2004 “포장식품라벨통칙”에서 5.1.2와 5.1.3의 규정에 따라 표시한다.

□ 에너지와 영양소(차이점)

제품에 실제로 존재하는 영양소에 따라 첨부A의 규정에 따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식품특성을 나타내는 비타민, 광물질의 함량 및 제품의 에너지수치를 표시해야 한다.

영양강화제를 첨가한 포장특수식품은 반드시 강화영양소의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 에너지와 영양소의 표시방법, 표시수치의 설명방식과 허용오차

○ A.1 에너지와 영양소의 표시방법

- A.1.1 에너지

A.1.1.1 100mg(100mL)별 또는 한 목(매 끼) 식품의 에너지 수치를 표시해야 한다.

A.1.1.2 에너지를 킬로줄(kJ) 또는 줄(J)로 표시한다.

A.1.1.3 영양소의 에너지 계수는 아래와 같은 수치로 계산한다.

탄수화물 17kJ/g, 단백질 17kJ/g, 에탄올 29kJ/g, 유기산 13kJ/g

- A.1.2 단백질, 지방, 식용섬유, 탄수화물(이용 가능한 탄수화물)

100mg(100mL)별 또는 한 목(매 끼) 식품에서 단백질, 지방, 식용섬유, 탄수화물(이용 가능한 탄수화물)의 함량(g)을 표시해야 한다.

탄수화물의 유형을 표시해야 할 경우, 반드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100g 또는 100mL별 탄수화물 $\times\times$ g를 포함하며 그 중에서 $\times\times$ 당(예를 들면, 포도당, 자당) $\times\times$ g를 포함한다.

- A.1.3 비타민

100g 또는 100mL별 또는 한 목(매 끼) 식품에서 비타민의 함량[mg, μ g 또는 국제단위(IU)]을 표시해야 한다.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C는 mg 또는 μ g로 표시하고, 비타민A, 비타민D, 비타민E는 국제단위(IU) 또는 mg, μ g로 표시한다.

- A.1.4 광물질과 미량원소

100g 또는 100mL별 또는 한 목(매 끼) 식품에서 광물질, 미량원소의 함량(mg 또는 μ g)을 표시해야 한다.

○ A.2 표시수치의 설명방식과 허용오차

A.2.1~A.2.3의 하나를 임의로 채택하거나 그 중의 2가지, 3가지 방식으로 에너지, 영양소의 수치를 표시할 수 있다. 그 중에서 A.2.1이 가장 합리하고 소비자가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식이다.

- A.2.1 범위수치를 표시한다.

예를 들면, “100mL 살균우유에서 단백질의 함량이 3.0%~3.5%”, “100g별 분유에서 철의 함량이 6mg~11mg”라고 표시할 수 있다.

이 방식으로 표시할 때에 영양소의 실제함량은 표시수치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 A.2.2 평균치를 표시한다.

예를 들면, “100mL 살균우유에서 단백질의 평균함량이 3.0g”, “100g별 분유에서 철의 평균함량이 8mg”라고 표시하거나 영양성분(표)에서의 적당한 위치에 “100g(100mL)별 평균함량”을 표시할 수 있다.

이 방식으로 표시할 때에 강화 영양소 또는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고유 영양소의 실제함량은 표시수치보다 80% 낮지 말아야 한다.

만약 저 에너지, 저 지방, 저 포화지방산, 저 콜레스테롤 또는 저 나트륨을 성명하면 이러한 물질의 실제함량은 표시수치보다 20% 초과하지 못한다.

- A.2.3 최저치 또는 최고치를 표시한다.

예를 들면, “100mL 살균우유에서 단백질의 함량이 3.0g”(또는 “단백질이 3.0g/100mL보다 낮지 말아야 한다.”), “100g별 탈지분유에서 지방 함량이 1.5g보다 높지 말아야 한다.”(또는 “지방 함량이 1.5g/100mL보다 높지 말아야 한다.”)라고 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표시할 때에 영양소의 실제함량은 대응되는 표시수치보다 높지 않거나 낮지 말아야 한다.

□ 순함량과 고형물 함량

GB7718-2004 “포장식품라벨통칙”에서 5.1.4의 규정에 따라 표시한다.

□ 제조업체, 대리업체의 명칭과 주소

GB7718-2004 “포장식품라벨통칙”에서 5.1.5의 규정에 따라 표시한다.



□ 날짜표시와 저장설명

GB7718-2004 “포장식품라벨통칙”에서 5.1.6의 규정에 생산날짜와 품질보증기간을 표시하거나 보존기간을 추가로 표시할 수도 있다.

만약 포장특수식품의 품질보증기간 또는 보존기간이 저장조건과 연관되면 반드시 특정 저장조건을 표시해야 한다.(차이점)

만약 개봉한 후의 포장특수식품을 저장하기 적합하지 않거나 기존 포장용기에 저장하기 적합하지 않으면 반드시 소비자에게 제시해야 한다.(차이점)

□ 식용방법과 적합한 소비자(차이점)

포장특수식품의 식용방법, 매일 또는 매끼 식용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필요시 반드시 배합방법 또는 회수재생방법을 표시해야 한다.

반드시 포장특수식품의 적합한 소비자를 표시해야 한다.

□ 제품표준번호

GB7718-2004 “포장식품라벨통칙”에서 5.1.7의 규정에 따라 표시한다.

□ 품질등급

GB7718-2004 “포장식품라벨통칙”에서 5.1.8의 규정에 따라 표시한다.

□ 기타 강제표시내용

GB7718-2004 “포장식품라벨통칙”에서 5.1.9의 규정에 따라 표시한다.

3) 강제 표시내용의 면제

GB7718-2004 “포장식품라벨통칙”에서 5.2의 규정에 따라 면제한다.

4) 비강제 표시내용(차이점)

필요할 경우에 제품의 비준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5) 허용 표시내용(차이점)

□ 에너지, 영양소 함량수준의 성명

아래 표의 한계에 부합되는 포장특수식품은 에너지, 영양소 함량의 수준을 “저 에너지”, “저 지방”, “저 콜레스테롤”, “당분 없음”, “저 나트륨” 등으로 성명할 수 있다.

항목	성명	한계(보다 높지 않음)	
에너지	낮음	고체식품 : 170kJ/100mL 액체식품 : 80kJ/100mL	
	없음	액체식품 : 17kJ/100mL	
지방	낮음	고체식품 : 3g/100g 액체식품 : 1.5g/100mL	
	없음	고체 또는 액체식품 : 0.5g/100g(100mL)	
포화지방	낮음	고체식품 : 1.5g/100g, 포화지방의 에너지는 식품 총에너지의 10% 이하 액체식품 : 0.75g/100mL, 포화지방 에너지는 식품 총에너지의 10% 이하	
	없음	고체 또는 액체식품 : 0.1g/100g(100mL)	
콜레스테롤	낮음	콜레스테롤	고체식품 : 20mg/100g 액체식품 : 10mg/100mL
		포화지방	고체식품 : 1.5g/100g, 포화지방의 에너지는 식품 총에너지의 10% 이하 액체식품 : 0.75g/100mL, 포화지방 에너지는 식품 총에너지의 10% 이하
	없음	콜레스테롤	고체 또는 액체식품 : 5mg/100g(100mL)
		포화지방	고체식품 : 1.5g/100g, 포화지방의 에너지는 식품 총에너지의 10% 이하 액체식품 : 0.75g/100mL, 포화지방 에너지는 식품 총에너지의 10% 이하
당분	없음	고체 또는 액체식품 : 0.5g/100g(100mL)	
나트륨	낮음	고체식품 : 120mg/100g	
	매우적음	고체식품 : 40mg/100g	
	없음	고체식품 : 5mg/100g	

비고 : 포화지방은 지방에서 지방산이 포화된 것을 가리키지만, 지방으로 계산.



□ 에너지, 영양소 함량 비교의 성명

5.4.2.1~5.4.2.3에 부합되는 포장특수식품은 에너지 또는 영양소 함량에 대해 “감소”, “증가”, “보다 적음”(보다 낮음), “보다 많음”(보다 큼, 보다 높음) 등으로 비교성명을 할 수 있다.

- 비교되는 식품을 표시할 경우, 비교되는 식품은 반드시 비교하는 식품과 같은 종류 또는 같은 분류의 식품이어야 하며, 소비자가 쉽게 이해해야 한다.
- 품질 분수 또는 절대치에 따라 비교되는 식품과 비교하는 식품의 에너지 수치 또는 영양소 함량의 차이를 표시해야 한다.
- 비교하는 식품과 비교되는 식품의 에너지 수치 또는 영양소 함량의 상대적 차이는 25%보다 적지 말아야 한다.

□ 영양소작용의 성명

5.4.3.1~5.4.3.3에 부합되는 포장특수식품은 어떤 영양소가 인체 정상적 성장, 발육에 대한 생리작용을 성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 “칼슘은 골격과 이의 주요성분을 구성하며 골격 밀도를 유지한다.”
- “단백질은 인체조직의 구성 또는 복원을 돕는다.”
- “철은 적혈구의 형성요소이다.”
- “비타민 E는 인체조직 내의 지방이 산화되는 것을 방지한다.”
- “엽산은 태아의 정상적 발육을 돕는다.”

질병을 치유, 치료 또는 예방하는 작용이 있다고 성명하거나 암시하지 못하며, 표시하는 제품 자체가 어떤 영양소의 기능이 있다고 성명하지도 못한다.

- 성명한 영양소가 표시하는 제품에서의 함량이 비교할 수 있는 일반식품과의 상대적 차이는 25%보다 적지 말아야 한다.
- 성명한 영양소가 표시하는 제품에서의 함량이 뚜렷하다.
- 성명한 영양소의 작용은 공인하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

6) 추천표시내용(차이점)

- 영양성분을 표시하는 동시에 적합한 소비자에 따라 품질 분수로 한 목 또는 100g(100mL)별 식품에서의 영양소가 “중국주민음식영양소참조섭취량”의 추천 섭취량(RNI)에서 차지하는 량을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X%
- 만약 “중국주민음식영양소참조섭취량”에 추천 섭취량(RNI)을 제출하지 않으면, 품질 분수에 따라 한 목 또는 100g(100mL)별 식품에서의 영양소가 “중국주민음식영양소참조섭취량”의 적합한 섭취량(RNI)에서 차지하는 량을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X%



[표기예시]

다. 포도주

술병에 일반적으로 2가지 라벨이 있다. 하나는 원산지 생산업체의 라벨(정면 라벨)이고 다른 하나는 수입업체 또는 원산지 생산업체가 수입업체 및 정부의 규정에 따라 부착한 중문 라벨(뒷면 라벨)이다. 포도주 라벨은 일반적으로 포도 품목, 포도주 명칭, 수확 연도, 등급, 생산지역, 포장업체, 생산업체 명칭, 생산국, 순합량, 알코올 농도 등을 포함한다.

□ 포도 품목

모든 포도주 술병에 포도 종류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호주, 미국 등 생산국은 술병에



어떤 품목의 포도가 75% 이상일 경우에 술병에 그 품목 명칭을 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전통적 유럽 포도주 생산지역은 서로 다른 규정이 있다. 예를 들면, 독일과 프랑스는 라벨에 어떤 포도 품목의 명칭이 나타날 경우에 그 포도주에 최소 85%는 그 품목의 포도로 양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포도주 명칭

포도주 명칭은 일반적으로 생산업체 명칭이며 장원 주인이 특정한 명칭, 심지어 생산지역 명칭일 수도 있다.

□ 수확 연도

술병에 표기하는 연도는 포도의 수확 연도이다. 연도를 표기하지 않을 경우에 포도주는 서로 다른 수확 연도의 포도로 혼합하여 양조한 것이며, 소수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품질이 별로 좋지 않은 포도주이다.

□ 등급

포도주 생산국은 일반적으로 엄격한 품질 관리를 하며, 라벨을 통해 제품의 등급을 알 수 있다.

□ 생산구역

전통적 포도주 생산지역에 대해 라벨에서의 생산구역 명칭은 하나 중요한 정보이다. 어떤 포도주 생산지의 명칭은 포도주의 지명도를 거의 결정한다.

□ 포장업체

포장업체는 양조업체가 아닐 수도 있다. 양조업체는 스스로 생산한 포도주는 “기존 생산업체가 생산”이라고 표기한다.

□ 생산업체 명칭

유명한 양조업체는 품질의 보증이며, 일반적으로 생산업체와 포장업체는 같은 업체이다.

□ 생산국 명칭

□ 순함량

일반적으로 용량은 모두 750mL이며 비교적 작은 375mL, 250mL, 185mL 용량의 포도주도 있으며 연회용으로 1,500mL, 3,000mL, 6,000mL 용량의 제품도 있다.

□ 알코올 농도

일반적으로 () 또는 (%)으로 알코올 농도를 표기한다. 포도주 알코올 농도는 일반적으로 8%~15% 사이이다.

라. 쌀

포장된 쌀은 검험검역인원이 “포장식품라벨통칙”(GB7718-2004)과 수입식품 라벨심사 관련규정에 따라 라벨을 심사한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발표한 신규 국가표준인 “쌀”(GB1354-2009)은 기존 “쌀”(GB1354-1986)을 대체하여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했다. 신규 국가표준은 라벨에 대한 요구를 추가했다. 쌀의 생산을 규범화하기 위해 포장과 라벨, 조장과 운송에 대한 요구를 추가했으며 포장은 “식량판매포장”(GB/5 17109)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라벨은 반드시 “포장식품라벨통칙”(GB7718-2004)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표기한 순함량은 반드시 제품이 최대 허용하는 수분에서의 품질이어야 하며, 본 표준을 적용한 쌀제품은 반드시 본 표준에서 규정한 명칭과 등급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쌀을 구매할 때 반드시 포장에 표기한 제품 명칭, 순함량, 생산업체, 판매업체의 명칭과 주소, 생산날짜와 품질보증기간, 품질등급, 제품표준번호, 특별표기내용 등에 주의해야 한다.



[쌀 포장 설계]

마. 유제품

1)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2006년 제186호 공고(발표일 : 2006.12.25)

“액체 우유의 생산날짜를 엄격히 표기할 데 관한 문제”

- 유제품 생산가공업체는 반드시 액체 우유의 포장에 뚜렷한 위치에 생산날짜와 안전사용기간 또는 실효날짜를 표기해야 한다. 생산날짜는 반드시 제품의 주입날짜를 표기해야 한다.
- 지역 품질기술감독부서는 유제품 생산가공업체에 대한 독촉검사를 강화하고 순

찰, 답방, 감독 샘플링 검사와 집행 검사 등 방식으로 생산가공업체가 생산경영 활동을 규범화하도록 독촉하며 법에 따라 생산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 지역 품질기술감독부서는 일상 감독관리와 집행 검사에서 생산가공업체가 본 규정을 위반하여 액체 우유의 포장에 규정을 위반하여 생산날짜를 표기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 반드시 “제품품질법” 등 법률, 법규에 따라 행정처벌을 주어야 하며,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 제때에 사법부서에 넘겨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 본 공고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타 규정이 본 공고의 요구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본 공고의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2)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농업부, 2007년 제520호(발표일 : 2007.11.9)
“액체 우유의 라벨 표기 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공고”**

□ 액체 우유 라벨제도를 엄격히 실시

- ① 환원우유를 원료로 액체 우유를 생산할 경우, “국무원판공청에서 액체 우유 생산 경영 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통지”의 요구에 따라 “환원우유”로 표기하며 제품 원료표에 환원우유가 원료에서의 비중을 표기한다.
- ② 신선한 우유를 원료로 저온살균 처리를 거친 우유를 “신선한 우유”로 표기한다.
- ③ 신선한 우유를 원료로 보조재료를 첨가하지 않고 순간 고온 멸균처리를 거친 초고온 멸균 우유를 “순우유”로 표기한다.
- ④ 2008년 1월 1일부터 생산업체는 반드시 저온살균 우유와 초고온 멸균 우유의 포장에서 주요 제품명칭과 가까운 위치에 제품 명칭보다 작지 않은 글자를 사용하여 “신선한 우유”와 “순우유”로 각각 표기한다.
- ⑤ 일부 생산가공업체의 기존 라벨은 재고가 있어 업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신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에 기존 라벨의 사용기간을 적당히 연장하며 기존 라벨의 사용 마감날짜는 2008년 10월 31일이다.

□ 액체 우유의 생산업체에 대한 일상 감독 관리를 강화

- ① 액체 우유의 라벨표기 관리를 강화한다. “식품라벨관리규정”(2007년 제102호 법



령)과 관련 국가표준의 요구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액체 우유 생산업체의 제품 라벨에 대해 등록 관리를 진행하며 생산업체가 액체 우유의 라벨제도를 집행하는데 대해 지도와 감독을 강화한다. 요구를 위반할 경우에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엄격히 처리한다.

- ② 액체 우유의 생산과정에서 “우유”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가짜 추가, 라벨 이용, 품질 사기 등 불법 행위를 진행하는 것을 엄격히 단속한다.
- ③ 생산허가증이 없이 저온살균 우유, 살균 우유, 요구르트 등 유제품을 생산하는 불법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한다.
- ④ 불합격 제품을 검사한 액체 우유 생산업체에 대해 엄격히 집행한 후 처리조치를 취하며 품질에서 엄중한 문제가 존재하는 업체에 대해 법에 따라 엄격히 조사 처리를 하며 불합격 제품에 대해 소환한다.

3) 중국유제품공업협회(발표일 : 2009.11.4)

“유제품공업산업정책에서 제품라벨 표기문제에 관한 답복”

“유제품공업산업정책(2009년 수정) 제51조의 규정 : “제품포장 라벨은 반드시 포장식품라벨통칙(GB7718), 포장특별식용식품라벨통칙(GB13432)의 규정에 따라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과 위생부서의 관련 식품포장 라벨의 규정에 부합되며 액체 우유 라벨 제도를 엄격히 집행한다. 영양라벨을 표기하는 제품은 반드시 식품영양관리규범에 부합되어야 한다.”

포장식품라벨통칙(GB7718), 포장특별식용식품라벨통칙(GB13432)은 강제성 국가표준에 속하기 때문에 유제품 생산업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 외에 관련 부서는 아래와 같은 일부 규정제도를 발표하여 식품라벨 표기내용에 대해 규정했다.

- 2005년 5월 30일,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제75호 법령 : “정량포장상품계량 감독관리방법”
- 2006년 12월 25일,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제186호 공고 : “액체 우유의 생산날짜를 엄격히 표기할 데 관한 문제의 공고”

- 2007년 8월 27일,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제102호 법령 : “식품라벨관리규정”
- 2007년 11월 9일,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농업부, 제520호 공고 : “액체 우유의 라벨 표기 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공고”
- 2007년 12월 28일, 위생부, 제300호 법령 : “식품영양라벨관리규범”
- 2008년 6월 30일,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제105호 문건 : “식품라벨에서 배합원료와 원산지 표기문제의 의견에 관한 서신”

상기 규정은 정부부서의 규정제도이지만 그 효력은 강제성 국가표준과 같기 때문에 생산업체는 반드시 참조하여 집행해야 하며 법률 집행부서는 이러한 규정제도에 따라 제품에 대해 감독검사를 진행한다. 그러므로 식품포장 라벨표기와 법률 집행은 “식품영양라벨관리규범”만을 기준으로 할 수 없다.

바. 수산물

수산물제품의 라벨은 제품명칭, 생산업체의 명칭과 주소, 우편번호, 연락처(위탁생산일 경우에 위탁을 받은 생산업체의 명칭과 주소도 표기), 제품표준번호, 제품위생허가비준번호, 생산날짜 또는 생산비준번호, 제품 특징에 따라 표기하는 주요 품질지표와 주요 기술 파라미터를 표기해야 한다.

수산물 포장에 표기할 내용은 품목명, 생산지, 생산업체, 생산날짜, 품질등급, 품질보증기한 등이 있으며 제품라벨에 표기할 내용은 생산업체의 명칭과 주소, 제품 종류와 규격 등이 있다.

제3절 라벨링사례

가. 3월 사례

1) 사례소개

2008년 3월, 남경시 공상관리국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일부 수입식품에 대한 품질모니터링을 진행. 7개 도매업체에 대해 39회 식품에 대해 샘플링 검사를 진행한 결과, 7회 식품의 라벨표기가 “포장식품라벨통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았음. 주요 문제는 첫째 생산날짜가 없고 품질보증기간만 표기했으며, 둘째 식품첨가제가 모두 표기되지 않았으며, 셋째, 국내 도매업체의 명칭 또는 주소를 표기하지 않았음

2) 요구조항

“포장식품라벨통칙”은 “수입식품은 제조업체의 명칭과 주소를 표기하지 않을 수 있지만, 원산지 국가 또는 지역(홍콩, 마카오, 대만) 명칭과 중국에서 법에 따라 등기한 대리업체, 수입업체 또는 도매업체의 명칭과 주소를 표기해야 한다.”라고 규정

3) 처벌조항

- “식품라벨관리규정” 제27조 : “규정에 따라 표기내용을 표기하지 않았을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하며, 기한이 넘으면 500위안 이상에서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식품안전법실시조례” 제58조 : “본 조례 제40조에서 규정한 식품첨가제를 수입할 경우, 출입국검험검역기구에서 수입한 식품첨가제를 몰수한다. 불법으로 수입한 식품첨가제의 화물가치가 1만 위안 미만일 경우, 2,000위안 이상에서 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물가치가 1만 위안 이상일 경우, 화물가치 금액의 2배에서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나. 4월 사례

1) 라벨이 “식품안전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포장식품을 경영한 사례

□ 사례소개

A는 2009년 8월에 B회사로부터 3.5위안/병의 가격으로 “XXXX회사”가 생산한 제품1을 12병(규격 : 800mL/병, 생산날짜 : 2009년 4월 18일) 구매하고 3.4위안/병의 가격으로 “XXXXX회사”가 생산한 제품2를 20병(규격 : 500mL/병, 생산허가증번호 : 0090602B1) 구매하여 판매했다.

상기 제품의 식품라벨은 “저장조건”을 표시하지 않았다. 2009년 6월 1일에 “식품안전법”이 정식 시행한 후 판매하지 못한 라벨이 “식품안전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은 시장에서 퇴출해야 하지만 A는 계속 경영했다.

□ 사례분석

A가 경영하는 포장식품 라벨은 “식품안전법” 제42조 제1항의 6 규정 : “포장식품의 포장에 반드시 라벨이 있어야 한다. 라벨은 반드시 ① 명칭, 규격, 순합량, 생산날짜, ② 성분 또는 원료배합표, ③ 생산업체의 명칭, 주소, 연락방식, ④ 품질보증기간, ⑤ 제품표준 코드, ⑥ 저장조건, ⑦ 사용하는 식품첨가제가 국가표준에서의 통용명칭, ⑧ 생산허가증 번호, ⑨ 법률, 법규 또는 식품안전표준에서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사항 등을 표시해야 한다. 영아와 유아 및 기타 특정인에게 공급하는 식품의 라벨도 반드시 주요 영양성분 및 그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여 라벨이 “식품안전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을 경영한 불법행위에 속한다.

□ 처벌결과

“식품안전법” 제86조 : “본법을 규정하고 아래와 같은 상황이 있을 경우, 주관부서는 직책에 따라 불법소득, 불법 생산 및 경영한 식품과 불법 생산경영에 사용하는 공구, 설비, 원료 등 물품을 몰수하고, 불법 생산경영한 식품의 화물가치가 1만 위안 미만일 경우, 2,000위안에서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물가치가 1만 위안 이상일



경우, 화물가치의 2배에서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엄중할 경우, 생산증지를 명령하고 생산허가증까지 몰수한다. (2) 라벨이 없는 포장식품, 식품첨가제 또는 라벨, 설명서가 본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 첨가제를 생산 및 경영할 경우.....”의 규정을 위반하여 A가 라벨이 “식품안전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중지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2,000위안 벌금을 부과했다.

2) 중문라벨이 없는 수입 포장식품을 판매한 사례

□ 사례소개

2009년 6월 1일 “식품안전법”이 시행되는 날에 B공산관리국은 A가 중문라벨, 중문설명서가 없는 Andes 초콜릿, Dream CACA056% 초콜릿 등 10개 품목의 수입 포장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여 “식품안전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중문라벨, 중문설명서가 없는 수입 포장식품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했다.

□ 관련조항

“식품안전법” 제66조 : “수입 포장식품은 반드시 중문라벨, 중문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라벨, 설명서는 반드시 본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과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식품의 원산지, 경내 대리업체의 명칭, 주소, 연락방식을 표기해야 한다. 포장식품에 중문라벨, 중문설명서가 없거나 라벨, 설명서가 본 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수입하지 못한다.”

다. 5월 사례

1) KRAFT 우유과자(순합량 : 390g)

□ 기존 영양라벨

영양성분표 Nutrition Information		
항목/Items	100g당/per 100g	영양소 참고치 %/NPV %
에너지/Energy	2110kJ	25%
단백질/Protein	6.8g	11%
지방/Fat	24.0g	40%
탄수화물/Carbohydrate	65.0g	22%
칼슘/Calcium	290mg	36%
비타민 A/Vitamin A	250 µgRE	31%
비타민 D/Vitamin D	3.2 µg	64%
비타민 B ₁ /Vitamin B ₁	0.40 µg	29%
비타민 B ₂ /Vitamin B ₂	0.40 µg	29%
비타민 B ₆ /Vitamin B ₆	0.40 µg	29%
니코틴산/Niacin	4.00mg	29%
엽산/Folic acid	99 µgDFE	25%
철/Iron	4.0mg	27%

□ KRAFT 우유과자 영양라벨에 대한 평가

- 반드시 표시해야 할 핵심 영양소로서 “나트륨/Sodium”이 없다.
- “아연/Zinc”의 함량단위는 0.01이다. 즉, “4.5mg”를 “4.50mg”으로 표기해야 한다.
- “특별히 '금십가' 영양배합원료를 추가하고 10가지 인체성장에 필요한 균일 영양을 보충하여 매일 좋은 입맛에서 인체성장의 수요를 가볍게 만족시킨다.”는 영양 성명이지만, 과대 홍보하는 경향이 있다.



□ 수정한 영양라벨

영양성분표 Nutrition Information		
항목/Items	100g당/per 100g	영양소 참고치 %/NPV %
에너지/Energy	2110kJ	25%
단백질/Protein	6.8g	11%
지방/Fat	24.0g	40%
탄수화물/Carbohydrate	65.0g	22%
나트륨/Sodium	518mg	26%
칼슘/Calcium	290mg	36%
비타민 A/Vitamin A	250 μgRE	31%
비타민 D/Vitamin D	3.2 μg	64%
비타민 B1/Vitamin B1	0.40 μg	29%
비타민 B2/Vitamin B2	0.40 μg	29%
비타민 B6/Vitamin B6	0.40 μg	29%
니코틴산/Niacin	4.00mg	29%
엽산/Folic acid	99 μgDFE	25%
철/Iron	4.0mg	27%
아연/Zinc	4.50mg	30%

2) KRAFT 옥수수맛과자(순합량 : 40g)

□ 기존 영양라벨

영양성분표 Nutrition Information		
항목/Items	100g당/per 100g	영양소 참고치 %/NRV%
에너지/Energy	2004kJ	24%
단백질/Protein	7.2g	12%
지방/Fat	19.5g	33%
탄수화물/Carbohydrate	67.5g	23%

□ KRAFT 초콜릿과자 영양라벨에 대한 평가 : 반드시 표시해야 할 핵심 영양소로서 “나트륨/Sodium”이 없다.

□ 수정한 영양라벨

영양성분표 Nutrition Information		
항목/Items	100g당/per 100g	영양소 참고치 %/NRV%
에너지/Energy	2004kJ	24%
단백질/Protein	7.2g	12%
지방/Fat	19.5g	33%
탄수화물/Carbohydrate	67.5g	23%
나트륨/Sodium	218mg	11%

3) DOVE 초콜릿(순합량 : 160g/16개)

□ 기존 영양라벨

영양성분표(100g당 평균합량) Nutrition Information(per 100g Average)		단위 Unit
에너지/Energy	2322	kJ
단백질/Protein	5.9	g
지방/Fat	34.5	g
탄수화물/Carbohydrate	56.1	g

□ 수정한 영양라벨

영양성분표 Nutrition Information		
항목/Items	100g당/per 100g	영양소 참고치 %/NRV%
에너지/Energy	2322kJ	28%
단백질/Protein	5.9g	10%
지방/Fat	34.5g	58%
탄수화물/Carbohydrate	56.1g	19%
나트륨/Sodium	0mg	0%

비고 : 영양라벨에 “나트륨” 함량이 없어 0mg로 표기한다.



4) 해태 김맛과자(순함량 : 197g)

□ 기존 영양라벨

100g당 평균함량	
에너지	2092kJ
단백질	10g
지방	22g
탄수화물	65g
나트륨	426mg

□ 수정한 영양라벨

영양성분표 Nutrition Information		
항목/Items	100g당/per 100g	영양소 참고치 %/NRV%
에너지/Energy	2092kJ	25%
단백질/Protein	10.0g	17%
지방/Fat	22.0g	37%
탄수화물/Carbohydrate	65.0g	22%
나트륨/Sodium	426mg	21%

비고 :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함량을 0.1 단위로 표기한다.

라. 6월 사례

1) Bright브랜드 호두땅콩우유(순합량 : 200mL)

□ 기존 영양라벨

영양성분표		
항목	100g당	NPV %
에너지	274kJ	3%
단백질	2.4g	4%
지방	2.8g	5%
탄수화물	7.6g	3%
나트륨	55mg	3%
칼슘	65mg	8%

무지유 고형분≥6.5%, 우유함량>80%

□ 기존 영양라벨에 대한 평가

기존 영양라벨은 요구에 부합되지만 라벨표 아래에 NRV% : 영양소 참고치 %를 표기하는 것이 좋다. 또는 많은 외국인 소비자가 구매하거나 수출하도록 하기 위해 외국어 양식을 첨부하는 것이 좋다.

□ 수정한 영양라벨

영양성분표 Nutrition Information		
항목/Items	100g당/per 100g	영양소 참고치 %/NPV %
에너지/Energy	274kJ	3%
단백질/Protein	2.4g	4%
지방/Fat	2.8g	5%
탄수화물/Carbohydrate	7.6g	3%
나트륨/Sodium	55mg	3%
칼슘/Calcium	65mg	8%



2) Bright브랜드 저지방우유(순합량 : 250mL)

□ 기존 영양라벨

영양성분표		
항목	100g당	영양소 참고치(%)
에너지	200kJ	2%
단백질	3.3g	6%
지방	1.3g	2%
탄수화물	5.6g	2%
나트륨	60mg	3%
식용섬유	0.2g	1%
칼슘	120mg	15%

무지유 고형분 \geq 8.4%, 활성 단백질 \geq 3.2%

□ 기존 영양라벨에 대한 평가

기존 영양라벨은 기본상 요구에 부합되지만 영양소 표시순서를 조절하여 식용섬유를 탄수화물 아래로 조절한다. 기존 영양라벨에서 “50% 지방을 줄인다”라는 영양성명은 “식품 영양성명과 영양성분 기능성명 준칙”의 요구에 부합되는지가 의문이다. 상기 “준칙”에서 “저지방”, “감소 또는 지방을 감소”에 관해 영양성명의 함량 요구는 각각 아래와 같다.

저지방	\leq 3g/100g 고체, \leq 1.5g/100mL 액체
감소 또는 지방을 감소	기준식품에 비하여 25% 이상 줄임

기존 영양라벨에서 지방함량은 1.3g/100mL 액체이며 기준식품에 비하여 25% 이상 줄었다. 그러므로 영양성명은 요구에 부합된다.

많은 외국인 소비자가 구매하거나 수출하도록 하기 위해 외국어 양식을 첨부하는 것이 좋다.

□ 수정한 영양라벨

영양성분표 Nutrition Information		
항목/Items	100g당/per 100g	영양소 참고치 %/NRV%
에너지/Energy	200kJ	2%
단백질/Protein	3.3g	6%
지방/Fat	1.3g	2%
탄수화물/Carbohydrate	5.6g	2%
식용섬유/Dietary fiber	0.2g	1%
나트륨/Sodium	60mg	3%
칼슘/Calcium	120mg	15%

3) Nestle브랜드 우유음료(순함량 : 250mL)

□ 기존 영양라벨

영양성분 평균함량(100mL당) Average nutrition Composition(per 100mL)	
에너지/Energy	260kJ
지방/Fat	3.4g
단백질/Protein	3.2g
탄수화물/Carbohydrate	4.7g
칼슘/Calcium	120mg
식용섬유/Dietary fiber	0.2g
비타민 D/Vitamin D	50IU
무지유 고형분/Non-fat milk solids	≥8.1%

- 제시 : 비타민 D는 칼슘, 인 대사의 중요한 조절요소로서 칼슘과 인의 정상적 수준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며 골격과 치아의 건강에 유리하다.
- 추천 : Nestle 우유는 특별히 비타민 D를 첨가하여 칼슘의 흡수에 유리하며 골격의 건강에 유리하다.

□ 기존 영양라벨에 대한 평가

-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핵심 영양소에서 “나트륨”이 없다.



- “무지유 고형분”은 “식품 영양성분 표기준칙”에서 규정한 영양성분표에 표기한 영양 성분이 아니기에 영양성분표 외에 별도로 표기할 수 있다.
- 규정한 순서에 따라 표기하지 않았다. 라벨의 정확한 순서는 반드시 에너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 칼슘, 비타민 D이다.
- 비타민 D의 함량단위는 IU 국제단위를 사용했다. “식품 영양성분 표기준칙”의 요구에 따라 통일적으로 μg 를 사용해야 한다.
- 영양성분 참고치(NRV) %가 없다.
- 영양성분 기능성명은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

제시내용과 추천내용은 영양성분 기능성명의 표준용어가 아니다. “식품 영양성명과 영양 성분 기능성명 준칙”에 따라 영양성분 기능성명은 반드시 표준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라벨의 영양성분 기능성명을 아래와 같이 수정할 수 있다.

-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촉진할 수 있다.”
- “비타민 D는 골격과 치아의 건강에 유리하다.”
- “칼슘은 골격과 치아의 주요 구성성분이며 많은 생리기능도 칼슘의 참여가 필요하다.”

□ 수정한 영양라벨

영양성분표 Nutrition Information		
항목/Items	100g당/per 100g	영양소 참고치 %/NRV%
에너지/Energy	260kJ	3%
단백질/Protein	3.2g	5%
지방/Fat	3.4g	6%
탄수화물/Carbohydrate	4.7g	2%
나트륨/Sodium	0mg	0%
칼슘/Calcium	120mg	15%
비타민 D/Vitamin D	1.3 μg	26%

- 무지유 고형분 Non-fat milk solids $\geq 8.1\%$
-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촉진할 수 있다.
- 비타민 D는 골격과 치아의 건강에 유리하다.

- 칼슘은 골격과 치아의 주요 구성성분이며 많은 생리기능도 칼슘의 참여가 필요하다.
※ 나트륨의 함량을 0mg로 표기한다.

4) Nestle브랜드 탈지우유(순합량 : 250mL)

□ 기존 영양라벨

〈적은 지방, 풍부한 단백질〉

영양성분 평균함량(100mL당) Average nutrition Composition(per 100mL)	
에너지/Energy	135kJ
탄수화물/Carbohydrate	4.6g
무지유 고형분/Non-fat milk solids	≥8.1%
단백질/Protein	3.1g
칼슘/Calcium	110mg
지방/Fat	≤0.3g

- Nestle 탈지우유의 지방함량은 일반 우유의 1/10에 불과하다. 여러 가지 영양소를 흡수하는 동시에 건강상태를 유지한다.
- 우유는 영양이 가장 다양한 식품 중의 하나이다. 풍부한 단백질이 있는 외에 중요한 광물질과 비타민이 있다. 양질 우유는 건강을 돕는다.

□ 기존 영양라벨에 대한 평가

-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핵심 영양소에서 “나트륨”이 없다.
- “무지유 고형분”은 “식품 영양성분 표기준칙”에서 규정한 영양성분표에 표기한 영양성분이 아니기에 영양성분표 외에 별도로 표기할 수 있다.
- 규정한 순서에 따라 표기하지 않았다. 라벨의 정확한 순서는 반드시 에너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 칼슘이다.
- 지방 함량은 범위수치를 사용하지 말고 구체적 수치를 사용해야 한다.
- 영양성분 참고치(NRV) %가 없다.
- 영양성명 : “적은 지방, 풍부한 단백질”은 “식품 영양성명과 영양성분 기능성명 준칙”에 부합되



지 않는다. 첫째, NRV가 없고 데이터가 부족하다. 둘째, 소위 “적은 지방”과 “풍부한 단백질”은 모두 요구한 표준의 영양성명 용어가 아니며 심지어 “풍부한 단백질”의 성명이 틀렸다.

- 영양성분 기능성명은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 “Nestle 탈지우유의 지방함량은 일반 우유의 1/10에 불과하다. 여러 가지 영양소를 흡수하는 동시에 건강상태를 유지한다.”, “우유는 영양이 가장 다양한 식품 중의 하나이다. 풍부한 단백질이 있는 외에 중요한 광물질과 비타민이 있다. 양질 우유는 건강을 돕는다.”는 영양성분 기능성명의 표준용어가 아니다.

“식품 영양성명과 영양성분 기능성명 준칙”에 따라 영양성분 기능성명은 반드시 표준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라벨의 영양성분 기능성명을 아래와 같이 수정할 수 있다.

- “단백질은 인체 생명활동에 필요한 중요한 물질로서 조직의 형성과 성장에 유리하다.”
- “매일 식사에서 지방이 제공하는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례는 3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수정한 영양라벨

〈낮은 지방, 단백질 내원〉

영양성분표 Nutrition Information		
항목/Items	100mL당/per 100mL	영양소 참고치 %/NRV%
에너지/Energy	135kJ	2%
단백질/Protein	3.1g	5%
지방/Fat	0.3g	1%
탄수화물/Carbohydrate	4.6g	2%
나트륨/Sodium	0mg	0%
칼슘/Calcium	110mg	14%

- 무지유 고형분/Non-fat milk solids $\geq 8.1\%$
- “매일 식사에서 지방이 제공하는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례는 3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단백질은 인체 생명활동에 필요한 중요한 물질로서 조직의 형성과 성장에 유리하다.”

제4절 최근 이슈사례

가. 5월 이슈사례

1) 수입식품에 중문라벨이 없을 경우, 밀수품일 가능성이 많다.

식품안전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 포장식품은 반드시 중문 라벨, 중문 설명서가 있어야 하며, 라벨, 설명서에 식품 원산지, 경내 대리업체의 명칭, 주소, 연락방식을 표기해야 한다. 만약 중문 라벨과 중문 설명서가 없거나 라벨과 설명서가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수입하지 못한다.

대형 슈퍼마켓과 소매 체인점의 음료, 과자 등 수입식품의 포장에 모두 중문 라벨이 있으며 식품 원산지 및 경내 대리업체의 명칭, 주소, 연락방식을 명확히 표기했다. 그러나 일부 대형 식품 도매시장의 상당히 많은 수입식품은 어떠한 중문 라벨이 없으며, 심지어 생산날짜와 품질보증기한 등 가장 기본적인 정보도 식별하기 어렵다.

소매점에서 한국 롯데 알로에음료의 도매가격은 69위안/30병으로서 대형 슈퍼마켓에서의 판매가격(5.5위안/병)보다 많이 사지만 라벨은 모두 한글로 되어 있다. 그러나 대형 슈퍼마켓에는 중문 라벨이 있으며 원산지, 생산날짜, 품질보증기한 등 정보를 표기하는 외에 소비자 경고표시도 있다.

식품안전법은 포장식품이 중문 라벨, 중문 설명서가 없거나 라벨, 설명서가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수입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만약 정상적 채널을 통해 검험검역을 받은 후 세관으로부터 입국할 경우, 반드시 중문 라벨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외국어로 표기된 수입식품은 밀수품일 가능성이 많고 심지어 가짜제품일 수도 있다.

2) 수입 식품 라벨의 주요 문제점

현재 시장에서의 수입식품 라벨문제는 주로 규범화한 한자로 “제품명칭”, “생산업체



또는 판매업체의 명칭과 주소”, “원산지 국가 또는 지역 명칭”을 표기하지 않거나 “날짜 표기”를 하지 않는 등 문제가 존재한다.

수입식품의 라벨을 정확히 식별해야 한다. 정확한 식품라벨은 반드시 국가 법률, 법규의 규정과 관련된 제품표준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고, 내용이 명확하고 뚜렷하여 소비자가 쉽게 식별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라벨의 모든 내용은 쉽게 이해되고 정확하며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가짜, 소비자가 오해하게 하거나 사기성 문자, 그림 등으로 식품을 소개하지 못하며, 라벨은 포장물 또는 용기와 분리하지 못한다.

수입식품 라벨의 상세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수입식품은 반드시 식품명칭, 배합원료표, 순합량, 원산지, 경내 판매업체의 명칭과 주소, 날짜표기(생산날짜, 품질보증기한 등), 기타 표기내용 등을 표기해야 한다.

나. 6월 이슈사례

1)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혈당을 낮추는 다이어트제품을 중점 조사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최근에 발표한 “건강식품 정돈업무 실시의견”에 의해 건강식품에 불법으로 약물을 첨가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하며, 소비자들이 중점으로 반영하는 다이어트, 혈당 낮추고 피로를 회복시키는 등 제품에 대해 감독검사를 진행하며 건강식품의 라벨과 설명서 내용에 대해 검사하며 과대 홍보와 허위 홍보 등 행위를 단속한다. (동방홍, 2010.5.25)

2) 식품안전 관리, 무해는 필수적이고 영양이 더 관건적이다

관련 정부부서에서 영양안전에 대해 강제성 감독 관리를 해야 하며 될수록 빨리 중국 영양라벨을 식품산업에 보급해야 한다.

현재 중국업체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식품영양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현재 중국에

서 시행되고 있는 “식품영양라벨관리규범”은 자원성격에 속한다. 모든 소비자가 식품의 영양성분에 대한 수요가 다르며 식품 포장에서의 영양라벨을 통해 식품의 영양성분을 알게 되며 소비자가 식품을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면, 고혈압 환자는 나트륨 섭취량을 제한해야 하기 때문에 식품 영양성분표에서 나트륨이 180~200mg를 초과하면 그 식품을 소비하지 말아야 한다. (MSN건강, 2010.6.3)

3) 길림성, 불합격 포도주 리스트를 발표

길림성 공상관리국의 검사결과 7개 제품의 라벨이 불합격으로서 전체 불합격 제품의 70%를 차지했다. “포장식품라벨통칙”의 규정에 의해 포장식품 라벨의 모든 내용은 허위로 소비자가 오해하게 하거나 사기성 문자, 이미지 등 방식으로 식품을 소개하지 못하며 글자 크기 또는 색깔 차이로 소비자가 오해하도록 하지 못한다. 이번 검사의 샘플에서 3개 샘플이 이러한 문제가 존재했다. 이번 검사의 포도주 샘플에서 한 포도주 샘플의 제품소개에서 제품 기능을 과장했으며 약물의 치료효과를 홍보하여 “식품안전법”을 위반했다. 그 외에 3개 포도주 샘플은 “QS” 마크를 표기하지 않았고 1개 샘플에 표기한 제품표준이 정확하지 않았으며 1개 샘플에 품질등급을 표기하지 않았다. (신문화보, 2010.6.12)

4) 라벨이 국가규정에 부합되지 않아 일부 수입식품이 소각

최근 오주검험검역국은 EMS방식으로 수입한 1.5KG 스피롤리나식품에 대해 소각처리를 했으며 소각처리의 원인은 식품라벨이 중국 GB7718-2004표준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것이다. 검험검역부서의 조사결과 화물 수하인은 온라인쇼핑방식으로 홍콩으로부터 구매하여 EMS방식으로 수입했다. 식품라벨은 반드시 중국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식품감독망, 2010.6.12)

5) 식품 소비에서의 라벨문제

○ 중량이 적고 포장물을 중량에 포함시킨다. 소비자가 자주 구매하는 쌀과 밀가루, 일



- 부 소시지, 라면, 샐러드기름 등 식량과 식용유는 모두 포장물을 중량에 포함시킨다.
- 포장을 이용하여 품질이 나쁜 상품을 품질이 좋은 상품으로 판매한다. 예를 들면 품질이 좋지 않는 쌀, 밀가루 등을 품질이 높거나 유명 브랜드 포장포대에 넣어 판매하고 있다.
 - 제품 명칭의 개념이 모호하다. 주로 유제품과 음료에서 일부 생산업체는 “모호한 라벨”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오렌지음료, 우유음료 등을 오렌지주스, 우유로 판매하고 있다.
 - 날짜를 함부로 수정한다. 일부 생산업체와 판매업체는 식품라벨의 날짜를 수정하거나 명확히 표기하지 않거나 품질보증기간을 함부로 늘리거나 생산날짜를 표기하지 않고 판매업체가 판매할 때에 생산날짜와 품질보증기간을 표기한다.
 - 2차 포장의 오염이 엄중하다. 주로 생산업체의 식품에 대해 2차 포장을 할 때에 오염이 발생하며 세균함량이 표준을 초과하여 품질이 떨어진다. (호주시식품안전위원회 판공실, 2010.6.28)

다. 7월 이슈사례

1) 등관시 30% 수입식품 라벨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음

최근 등관시 공상국의 샘플링 검사결과에 의하면 수입식품 품질이 비교적 좋지만 약 30% 수입식품의 라벨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라벨이 불합격한 경우는 중문 라벨이 없거나 간체자 중문으로 표기하지 않았으며, 식용방법을 표기하지 않았거나, 규범화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수입업체, 대리업체 또는 공급업체의 명칭과 주소를 표기하지 않았거나, 생산날짜, 품질보증기간 등을 표기하지 않는 것이다.

2) 수입올리브유 품질보증기한을 적절히 표기하지 않아, 슈퍼마켓에서 반품처리를 진행

원고 유씨가 구매한 상품이 품질보증기한을 적절히 표기하지 않아 슈퍼마켓을 법원에 고소하여 반품처리를 요구하며 10배 배상금을 청구했다. 최근 북경시 동성구법원은

1심 판결에서 유씨가 반쯤하고 슈퍼마켓에서 유씨에게 대금을 반환하도록 판결하며 유씨의 기타 소송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2010년 1월 12일에 피고 슈퍼마켓으로부터 6병의 수입올리브유를 669.8위안으로 구매했다. 제품의 뚜렷한 위치에 중문 라벨을 부착했으며 그중에서 생산날짜를 310/31-10-08로 표기했고 품질보증기한을 10-2010로 표기했다. 유씨는 수입올리브유의 품질보증기한이 국가 규정에 부합되지 않고 피고 슈퍼마켓에서 판매한 올리브유는 “식품안전법”과 “포장식품라벨통칙”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슈퍼마켓은 판매한 식품의 날짜 표기방식은 국가표준을 위반하지 않았고 제품은 품질감독검험검역부서의 검험에 합격되었으며 세관의 합법적 절차를 통해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어 “식품안전법”을 위반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아 원고의 모든 소송청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은 소비자의 합법적 권리는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소비자는 소비자가 구매하여 사용하는 상품 또는 받는 서비스의 진실한 상황을 알 권리가 있다고 했다. 중국에서 판매하는 수입제품은 반드시 중국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반드시 제품의 뚜렷한 위치에 생산날짜와 품질보증기한을 표기해야 하며, 날짜의 표기양식은 반드시 중국 관련 법률, 법규와 많은 소비자의 소비습관에 부합되어야 한다. 즉, 반드시 년, 월, 일의 순서로 날짜를 표기해야 한다. 피고 슈퍼마켓은 판매업체로서 중국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의 생산날짜와 품질보증기한을 적절히 표기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에 대해 반쯤하며 대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청구를 법원은 동의했다.

원고가 피고가 판매한 제품에 식품안전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에 대해 10배 대금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청구를 법원에서 동의하지 않았다.

3) 수입 보건식품의 표기방식

현재 수입 보건식품의 종류가 많아지고 있지만 주로 9가지 표기방식이 있다.



- Low caloric(낮은 열량형) : 단위열량이 40Kcal 이하임
- Sugar Free(무가당형) : 자당이 없지만 자일리톨이 없다는 것이 아님
- Light(담백형) : 각 성분은 같은 종류 제품보다 15% 정도 낮음
- Sodium Free(나트륨이 없는 유형) : 단위식품에서 나트륨 함량이 5mg 이상
- Natural(자연형) : 방부제와 인공첨가제가 없음
- Health(건강형) : 유기물질, 천연성분, 저열량 물질 또는 채식을 포함하지만 그 중에 인공성분이 없다는 것은 아님
- Low cholesterol(저콜레스테롤형) : 단위식품에서 콜레스테롤 함량이 5mg 이상, 지방 함량이 5mg 이상, 포화지방산 함량이 6% 이상임
- Reduced Calorie(열량 감소형) : 열량이 일반 식품보다 1/3 적음
- Organic(유기형) : 식품 생산원료가 성장과정에서 살충제 또는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음

4) 슈퍼마켓에서 식품라벨의 문제점

□ 포장날짜로 생산날짜를 대체

슈퍼마켓에서 일부 병포장 올리브유에 중문과 외국어의 상품라벨을 부착했으며 라벨에는 “중국 포장날짜”, “품질보증기한” 및 “원산국가” 등 정보가 있지만 제품의 생산날짜를 표기하지 않았다. 슈퍼마켓의 냉채, 화식, 해산물 및 각종 케이크 등 많은 산적 식품은 2차 포장을 진행한 후 비닐 봉지에 중량, 단가, 포장날짜, 품질보증날짜 등 정보를 표기했지만 생산날짜를 표기하지 않았다. 실제로 많은 수입 올리브유는 대리업체가 대량으로 산적 올리브유를 수입한 후 중국에서 2차 포장을 하며 라벨에 표기한 중국 포장날짜는 원산국가의 실제 생산날짜가 아니다.

“제품품질법”의 규정에 의하면 기한 내에 사용하는 제품은 반드시 뚜렷한 위치에 생산날짜와 안전사용기한 또는 실효날짜를 표기해야 한다.

□ QS마크가 다양함

각종 식품 포장에 표기한 QS마크는 다양하다. 어떤 식품은 외부포장에 QS마크, “품질

안전” 및 식품생산허가증번호를 표기했고 어떤 식품은 QS마크만 표기했으며, 어떤 식품은 QS마크가 담청색이고 어떤 식품은 암자색이며, 어떤 식품의 “품질안전”은 송조체이고 어떤 식품은 해서체이다.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발표한 “식품생산가공기업 품질안전 감독관리 실시세칙(시행)”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 품질안전 시장진출제도를 시행하는 식품은 출고하기 전에 반드시 그 포장 또는 라벨에 QS마크를 인쇄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QS마크가 없는 식품을 출고하여 판매하지 못한다. 그 외에 기업이 QS마크를 사용할 때에 양식비례에 따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지만 변형하거나 변색하지 못한다.

□ 생산날짜가 쉽게 지워짐

일부 식품의 생산날짜는 먹으로 표기하여 생산날짜가 쉽게 지워진다. 이러한 상품은 운송 또는 적재과정에서 마찰로 인해 글자가 모호하거나 훼손되어 완전하지 못하다. 소비자는 이러한 상품의 생산날짜를 식별할 수 없어 마음 놓고 식용하지 못한다. 튀김식품, 냉동식품 등 품목의 봉지포장 식품은 생산날짜를 대부분 먹으로 표기했으며, 일부 봉지포장 수육제품은 생산날짜를 종이라벨에 표기하고 이러한 종이라벨을 비닐포장에 부착한다.

“식용라벨통용표준”의 규정에 의하면 “표기는 반드시 뚜렷하고 견고하며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유통과정에서 모호하거나 탈락되지 말아야 하고 소비자가 구매하고 식용할 때에 쉽게 식별하도록 해야 한다.”

라. 8월 이슈사례

1) 식품첨가제 표기가 규범화하지 않은 현상이 여전히 존재

6월 1일부터 “식품첨가제생산감독관리규정”이 정식 시행했으며 6월 1일 이후에 생산한 모든 식품은 반드시 포장에 사용한 첨가제성분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6월 1일 이후에 생산한 식품첨가제 표기가 규범화하지 않은 현상이 여전히 존재했다.

AUCHAN슈퍼마켓 장강점포의 두유, 참깨죽, 두유가루 등 식품의 포장에 간단한 배합원료 표만 있고 첨가제를 표기하지 않았지만 다른 브랜드의 제품은 안정제, 유화제 등 첨가제를 표기했다. 까르푸 보리점포에서 자체로 가공한 약 100가지 빵, 케이크의 포장에는 모두 같은 라벨(식품첨가제 : 유화제, 산화방지제)을 부착했다.(무석신전매망, 2010.7.20)

2) 생산날짜 표기가 규범화하지 않아 소비자가 찾기 어려움

8월 18일, 안휘성 소호시 소비자협회에서 발표한 식품안전 기본상식 조사결과에 의하면, 소비자는 식품포장에 표기한 생산날짜와 품질보증기간을 찾기 어렵다고 반영하여 소비자협회는 관련 부서에 식품 생산날짜와 품질보증기간의 표기방법과 위치를 규범화할 것을 건의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35% 소비자는 “식품안전법”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고 약 8% 소비자는 슈퍼마켓 또는 상점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에 식품 품질보증기간을 주의하지 않으며 약 25% 소비자는 식품 구매영수증을 보존하는 습관이 없고 일부 소비자는 작은 식품잡화점 또는 가판대에서 식품을 구매한다.(중국품질뉴스망, 2010.8.25)

3) 저렴한 “대구” 표기가 규범화하지 않아 소비자를 오도

최근 석가장시장에서 “대구” 가격은 500g당 몇 위안, 십여 위안에서 70여 위안으로 같은 “대구” 가격은 10배 차이가 났다. 일반적으로 대구는 은색 대구로서 500g당 70위안 이상이며 시장에서 저렴한 “대구”는 가짜 대구이다.



식품라벨통용표준의 규정에 따라 식품명칭은 반드시 식품 진실한 속성의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국가표준 또는 산업표준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식품라벨의 모든 내용은 틀리거나 오해하도록 하거나 기만하는 방식으로 식품을 설명하거나 소개하지 못한다. 식품라벨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쉽게 이해하고 정확하며 과학적이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식품의 진실한 속성, 물리상태와 제작방법을 오해하거나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식품명칭 앞 또는 식품명칭 뒤에 관련된 용어 또는 어구를 표기할 수 있다.

은색 대구와 대구는 서로 다른 상품으로서 품질과 가격의 차이가 매우 크다. 라벨에 대분류만 표기하고 세분화된 종류를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를 오도했다.(하북뉴스망, 2010.8.25)

4) 식품영양라벨이 각양각색

최근 북경시 슈퍼마켓에서 어떤 식품포장에 “당분이 없음”으로 표기했지만 그 뒤의 영양성분표에는 100g당 당분함량을 표기한 것이 발견되었다. 많은 소비자는 식품 영양성분표에서의 수치와 전문용어를 모르며 어떤 소비자는 수치의 진실성을 의심하기도 한다. 그 외에 식품영양라벨의 표기가 각양각색이며 어떤 식품은 10여 가지 영양소를 표기했고 어떤 식품은 영양라벨이 없으며 동일한 브랜드의 같은 종류 식품도 라벨 표기에서 서로 다르다.

위생부는 2008년에 “식품영양라벨관리규범”을 발표하여 업체에서 영양라벨을 표기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강제적 요구가 아니며 현재 시장에 많은 불합격 영양라벨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100g당 고체식품의 에너지는 $\leq 170\text{KJ}$ 일 경우에 포장에 “낮은 에너지”를 표기할 수 있지만 많은 식품업체의 라벨 표기는 합격되지 않는다.(인민일보, 2010.8.26)

5) 수입식품 날짜표기는 중국 식품과 다르다

슈퍼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한국산 과일주스 병에 표기한 2010년 11월 2일은 품질보증기간이다. 수입식품 시간표기는 중국과 달라 소비자를 오도하게 한다. 베트남 식품 포장에 “EXP 07 05 11”로 표기한 것은 생산날짜가 2011년 5월 7일이라는 뜻이다. 한국산 “롯데” 과일주스는 캔 밑바닥에 “2010.12.08 22 : 09 F6”으로 표기하여 소비자가



상세한 생산날짜라고 잘못 이해하기 쉽다. 상기 제품의 중문라벨에는 “품질보증기간은 캔 밑바닥을 참조”라고 표기했다.

일부 수입식품은 생산날짜와 만기시간을 표기했고 일부 수입식품은 만기시간만 표기했



다. 수입식품의 시간 표기방식은 중국 식품과 달라 슈퍼마켓의 수입식품은 대부분 중문 라벨을 부착하여 생산날짜 등 관련 정보를 설명한다.(락청뉴스, 2010.9.3)

마. 9월 이슈사례

1) 감자류와 튀김류 식품의 라벨문제가 심함

북건성에서 1분기에 감자류와 튀김류 식품라벨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로 제품명칭, 식품첨가제의 구체적 명칭, 제품표준번호 등을 표기하지 않은 문제가 존재한다. 이는 일부 업체가 식품라벨을 중시하지 않고 관련 라벨표기의 요구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2) 러시아식품에 중문 라벨과 설명서가 없음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러시아 분유, 초콜릿, 알젯 등 제품은 밀수한 것이고 엄격한 검험검역부서의 검역을 받지 않았으며 식품에 중문 라벨과 설명서가 없다. 특히 영양성분표의 표기가 없어 식품안전에 문제가 있다. 특히 러시아 분유는 100g에 단백질이 1.8g이지만 중국산 분유의 단백질은 일반적으로 18.5g이다. 이렇게 비교하면 러시아 분유는 식품 배합원료일 뿐이다.

3) 천진공상국 일부 라벨문제가 있는 월병을 조사

최근 천진공상국은 라벨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고 제조업체 주소, 생산날짜와 품질보증

기한이 없는 월병을 조사했다.

천진공상국은 관할구역의 대형 슈퍼마켓, 식품상점, 도매시장 등을 중점으로 식품경영업체의 영업집조, 식품경영유통허가증, 위생허가증 등 관련 증서를 조사했다. 조사과정에서 제조업체가 명확하지 않고 식품라벨이 없거나 라벨이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를 발견했다. “식품안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1,568개 문제가 있는 월병을 압류했다.

4) 일부 슈퍼마켓에서의 식품라벨 문제

일부 슈퍼마켓에서 식품라벨은 아래와 같은 문제가 존재한다.

- ① 식품 생산날짜, 품질보증기한을 표기하지 않거나 영문으로 생산날짜를 표기하며, 생산날짜를 앞당겨 표기하거나 마음대로 수정한다. 어떤 경우에 포장날짜로 생산날짜를 대체한다.
- ② 라벨 표기가 규범화되지 않다. 일부 제품은 제조업체 주소만 있고 제품가격 라벨에 표기한 생산주소와 제품포장 주소가 서로 부합되지 않으며, 수입상품에는 수출국만 표기하고 제조업체와 대리업체 명칭이 없다.
- ③ 진실한 성분을 고의적으로 감춘다. 식품라벨에 “방부제가 없는 자연식품”이라고 표기했지만 검사결과는 다르다.

중국 “식품라벨통용표준”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라벨은 식품명칭, 배합원료표, 순함량과 고형물 함량,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의 명칭과 주소, 날짜 표기와 저장지침, 품질등급과 제품표준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5) 일부 슈퍼마켓에서 식품 품질보증기한을 수정하여 재판매

일부 슈퍼마켓은 자체로 생산한 식품의 품질보증기한을 수정하여 판매한다. 일부 품질보증기한이 만기되거나 이미 초과한 대포장의 식품을 산적 식품으로 바꾸고 라벨에 간단하게 생산업체와 식품허가생산번호, 배합원료 등 정보만 표기하며 생산날짜와



품질보증기한을 명확히 표기하지 않고 판매했다.

산적 식품 위생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 판매업체는 생산날짜가 다른 식품을 분리시켜 판매하며 생산날짜를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대형 상점, 슈퍼마켓, 도매시장에서 산적 식품을 생산날짜, 품질보증기한에 따라 분리하여 판매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식품 품질보증기한을 변경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은 2가지가 있다.

- ① 식품생산업체에 식품을 반품하면 식품생산업체가 품질보증기한을 변경시켜 다시 판매한다.
- ② 식품 판매업체가 직접 품질보증기한을 변경시킨다. 현재 일부 슈퍼마켓의 자체 생산 식품은 부착이 가능한 라벨로 생산날짜를 표기하고 있다.

제5절 ● 자료출처

가. 웹사이트

- 중화인민공화국인민정부망(www.gov.cn)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www.aqsiq.gov.cn)
- 수입식품망(www.importfood.net)

나. 관련법규

- “식품안전법”
- “식품안전법실시조례”
- “식품라벨관리규정”
- “수출입식품화장품라벨심사제도를 조절할 데 관한 공고”
- “수출입식품화장품라벨검험규정(시행)”
- “포장식품라벨통칙(GB7718-2004)”
- “포장특수식용식품라벨통칙(GB13432-2004)”
- “포장음료주라벨통칙(GB10344-2005)”
- “건강(기능)식품통용표준”(GB16740-1997)

다. 관련책자

- 출입국검험검역신고실무
- 중국출입국식품검험검역실무대전
- 식품표준법규
- 세관업무관리
- 출입국검험검역법률실무문답
- 강소출입국동식물검험검역중대사례
- 통관신고실무

II

일본

제1장 통관제도	315
제1절 김	315
제2절 막걸리	322
제3절 김치	326
제4절 삼계탕	333
제5절 고추장	337
제6절 면류(냉동면, 건면, 파스타류)	340
제2장 검역제도	345
제1절 김의 검역제도	345
제2절 막걸리의 검역제도	346
제3절 김치의 잔류 농약 규제	347
제4절 삼계탕 검역제도	348
제5절 고추장 검역제도	352
제3장 표기사항	355
제1절 김의 표기사항	355
제2절 막걸리의 표기사항	359
제3절 김치의 표기사항	364
제4절 삼계탕의 표기사항	367
제5절 고추장의 표기사항	370
제6절 면류(냉동면, 건면, 파스타류) 표기사항	374
제4장 기타사항	377
제1절 김 시장의 최근 트렌드	377
제2절 막걸리 시장의 최근 트렌드	378
제3절 일본의 삼계탕 시장과 발전 방향	379
제4절 일본의 고추장 시장과 발전 방향	382
제5절 면류 시장의 최근 트렌드	385
제6절 자료원 및 관련 웹사이트	386



제1장 >>> 통관제도

Korea Agro-Fisheries Trade Corporation

제1절 김

가. 수입통관

1) 수주 관계 서류 등의 수취

통관 담당자는 수주관계서류 및 서류 송부서를 받아 내용을 확인

- | | |
|-----------------|----------------------------|
| ① 인보이스 | ② 패킹리스트 |
| ③ 보험명세서 | ④ B/L |
| ⑤ A/N | ⑥ 원산지증명서 외 (김의 경우 필요하지 않음) |
| ⑦ 성분표/공정도/시험성적서 | ⑧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

2) 통관제도 변동사항

본선통관제도- 2010년 1월 1일 부터 시행

의약식품국 식품안전부 감시안전과에서는 2009년 12월 31자로 기존의 선행 샘플 통관 제도를 폐지하고 2010년 1월 1일 부터 본선 통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010년 1월 1일 부터 실시하는 본선 통관 제도는 본선 컨테이너에 적재한 화물에서만 직접 검체 채취하도록 운영 방침을 변경하여 후생성의 허가를 받은 검사 기관에서 검사를 실시 한 후 식품 위생법 위반 시 수입품 폐기 및 반송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시험성적서는 전과 동일하게 1년 간 유효하며, 본선 통관 시 시험성적서 제시 후 즉시 통관이 가능한 제도이다.

나. 김의 수입할당 제도

김의 수입은 제한적으로 수입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이 김 수입수량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써 일본의 수입상사 등에게 할당하고 있으며, 우리 김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할당받은 수입상사(단체) 등을 통해서만 수출입할 수 있다.

수입할당(Import Quota)에는 상사할당 A1(한국실적할당), 상사할당 A2(중국실적할당), 수요자할당(조합), 선착순할당으로 구분하여 할당을 하고 있다.

1) 김 형태별 수입할당 (경제산업성 수입발표 2010.2.5)

원산지	형태	할당방식	주요상품
한국	건조김 등	⇒ 건조김 상사할당A1 " 선착순할당 " 수요자할당	원초 재래김 덩어리김
	무당 조미김	⇒ 무당조미김 상사할당A1 " 선착순할당 " 수요자할당	한국풍 조미김
	가당 조미김	⇒ 김제조품 상사할당A1 " 선착순할당 " 수요자할당	구운김 가당조미김 자반

□ 참고사항

김의 형태별 이해를 돕기 위한 주요상품의 이미지는 아래와 같다.

○ 건조김



[재래김]



[덩어리김]



[돌김]



○ 무당조미김



[8절컷트 3P]

○ 가당조미김 (김조제품)



[자반김]



[구운김]

2) 신청자 자격 및 할당 형식의 개요

(2010년 기준)

신청자격(개요)		할당방법
할당을 받은 자	2007년, 2008년도 [건조김] 수입 발표의 상사할당A1 (한국) 및 A2(중국) 보유자	상사할당A1 (한국)
	2008년, 2009년도 [건조김] 수입 발표 선착순할당 보유자	
	2009년도 [건조김] 수입발표 상사 할당A1 및 A2 보유자	상사할당A1 (추가신청)
	2009년도 [건조김] 수입발표 상사 할당A1 및 A2(추가신청), 보유자	
신규자	2009년 2월 1일~2010년 1월 31일 사이의 사이에, 식료품을 10만 달러 이상[신청접수 2일째(2010년 3월 6일)이후는 10만 달러 미만이어도 가능] 수입하고 있다.	선착순 할당
* 수산청 장관으로부터 발주 한도내시서의 발급을 받은 자로부터 발주를 받고 있다. * 입찰회, 상담회를 통해 산화회원(가공업자, 화물 중개업자)에게 배분되어 있다. 또한 실제 무역은 통관 대행 상사가 행하고 있다.		수요자할당

3) 김의 수입할당 매수 및 신청 실적

〈2009년도 수입할당 내역〉

(단위 : 매수)

할당구분	건조김		무당조미김		김조제품	
	할당매수	신청수량	할당매수	신청수량	할당매수	신청수량
상사할당A1	70,000,000	86,920,749	136,000,000	136,000,000	29,000,000	2,969,066
상사할당A2	83,000,000	17,948,274	-	-	74,00,000	42,953,833
수요자할당	319,000,000	43,000,000	203,000,000	64,250,000	63,000,000	13,000,000
선착순할당	5,000,000	2,200,000	5,000,000	5,000,000	3,000,000	1,400,000
총계	477,000,000	150,069,023	344,000,000	205,250,000	169,000,000	60,322,899

□ 한국김 할당 총 매수 833,000,000매 / 신청 총 매수량 354,739,815매

주목할 만한 점은 2009년도 상사할당A1(한국실적할당) 건조김의 경우 할당수량을 신청수량이 훨씬 상회하고 있고, 무당조미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할당수량을 신청수량이 달성되고도 선착순할당까지 모두 달성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는 할당 수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반면, 수요자할당(조합원실적)의 경우 신청수량이 현저하게 적고 할당수량이 남아도는 실정에 있어, 이를 조정하고자 상사할당을 받는 자가 80%의 할당량을 소진하면 바로 선착순할당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2010년도 4월 1일 기준 수입할당 내역〉

(단위 : 매수)

할당구분	건조김		무당조미김		김조제품	
	할당매수	신청수량	할당매수	신청수량	할당매수	신청수량
상사할당A1	104,000,000	59,049,064	156,000,000	120,754,421	29,000,000	5,094,534
상사할당A2	256,000,000	10,923,600	-	-	74,000,000	41,494,667
수요자할당	279,000,000		234,000,000		63,000,000	
선착순할당	5,000,000		7,000,000		3,000,000	
총계	641,000,000	79,972,664	397,000,000	120,754,421	169,000,000	46,589,201

□ 한국김 할당 총매수 877,000,000매 / 신청 총 매수량 205,824,619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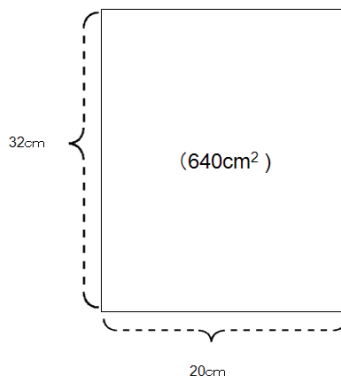
상사할당A1 무당조미김의 경우, 2010년 1분기 기준으로 벌써 신청수량이 할당매수를 도달 해가는 양상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할당매수가 턱없이 부족함을 나타냄과 동시에 일본 시장에서 한국 조미김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점차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산업성농수산실
김 매수 환산에 대하여

수입 할당 품목의 김(건조김, 무당 조미김, 김 조제품)은, 전형(면적이 430Cm²이하의 것)을 1매로 하고 있지만, 전형 이상의 크기의 것 또한 재단한 것의 전형으로의 환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또한, 덩어리 등과 같은 경우는, 해당 김 3g당을 전형 1매로 환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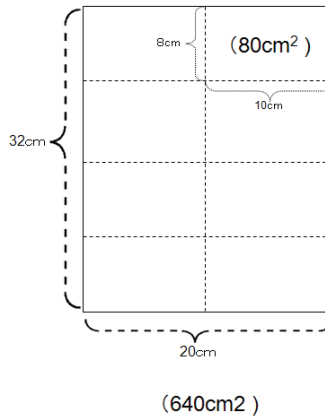
- (1) 430Cm² 을 넘는, 동시에 전형으로 수입 된 것에 대해서는, 총면적을 430Cm² 로 나누어 계산하여 환산해, 우수리가 나온 경우에는 올림한다.
- (2) 전형이 430Cm²을 넘는 김이 재단되어 수입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단된 김을 전형 430Cm²의 범위 내에 들어가는 매수(재단 된 김 1장의 면적/430Cm² (우수리는 올림) 를 환산 매수로 한다.

예 1. 전형 640Cm²을 100세트 수입하는 경우



$$\text{전장}640\text{Cm}^2 \times 100\text{매} \div 430\text{Cm}^2 = 148,837\text{매} \Rightarrow 149\text{매} \text{ (환산매수)}$$

예 2. 전형640Cm²을 8절로 하여 100세트 수입하는 경우



8절중 한 장의 면적은 $430\text{Cm}^2 \div 80\text{Cm}^2 = 5.375\text{매}$, 430Cm^2 의 범위 내에 5매가 들어감
 (※8절 5매를 430Cm^2 1매로 환산)
 따라서, $800\text{장} \div 5\text{장} = 160\text{매} \Rightarrow 160\text{매}(\text{환산매수})$

다. 김의 관세율

종류	HS CODE	관세율	비고	주요상품
건조김	1212.20-1-(1)	1.50엔/장	전장1매 면적이 430평방 센티미터 이하의 해초(홍조)	건조김
	1212.20-1-(2)	40%	1212.20-1-(1)이외의 해초(홍조)	재래김, 덩어리김
무당 조미김	2106.90-2-(2)-E-(b)	25%	무당 조미김	한국풍 조미김
김조제품	2106.90-2-(2)-E	28%	김조제품(구운김을 포함, 무당 조미김을 제외)	구운김, 가당조미김, 자반



라. 현지 통관 보류 및 억류 사례

□ 통관 시 주의 사항 및 세법 위반 시 제재조치

수입 통관 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현품의 수량과 금액이 송장의 수량과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현품의 수량·금액이 수입수량·금액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재래김의 규격 513cm² (조미김 용)을 전장김의 규격 430cm²(김밥용 김)으로 오인하여 수입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 때문에 수입인증(I/L)의 수량·금액의 잔량을 확실히 파악하고 특히 개개인의 수입의 경우에는 현품의 수량·금액이 송장수량·금액을 넘지 않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반하여 통관하는 경우 외환 및 외국무역법위반으로 벌칙(5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미 병과)을 받는 것 외, 행정제제(1년 이내의 수입금지)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으니 충분히 주의해야 한다.

문의처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무역심사과 농수산실 수산반
TEL : 03-3501-0532

제2절 ● 막걸리

가. 통관제도 일반

1) 수주 관계 서류 등의 수취

통관 담당자는 수주관계서류 및 서류 송부서를 받아 내용을 확인

- ① 인보이스 ② 패킹리스트 ③ 보험명세서
- ④ B/L ⑤ A/N
- ⑥ 원산지증명서 (원료의 원산국에 따라 다름)

- 특혜수입국으로부터의 수입은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을 경우가 있으므로 세관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 특혜관세율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현지로부터 수출시에 현지국에 대해 발급되는 「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취득할 필요하며, 총금액의 20만엔 이하의 경우는 불필요하다.

※ 대부분의 제조업체에서 국산 원료를 사용하므로 원산지 증명은 특별히 문제시 되고 있지 않다.

- ⑦ 성분표/공정도
- ⑧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상기 수주관계서류를 첨부해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에 의한 심사, 검사 및 납세 후에 수입허가서가 교부된다.

2) 본선통관제도

의약식품국 식품안전부 감시안전과에서는 2009년 12월 31자로 기존의 선행 샘플 통관 제도를 폐지하고 2010년 1월 1일 부터 본선 통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나. 막걸리 관세율

(2010년 4월 기준)

종류	품명	HS CODE	세율/리터당	
			기본	WTO협정
기타발효주	청주 및 탁주	2206.00.210	70.40엔	70.40엔
	청주를 제외한 발효주	2206.00.221	30.80엔	27엔
	맥아를 원료의 일부로 발포성 있음	2206.00.225	6.40엔	42.40엔
리큐르	-	2208.70.000	141.10엔	126엔
기타알코올음료	합성 청주 및 백주	2208.90.220	70.40엔	70.40엔

※ 같은 막걸리라도 제조 공정에 따라 품목 및 관세율이 달리 적용되고 있다.

다. 주류의 면허

주류의 경우에 있어 일본내 수입에 제한은 없으나 판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주세법에 근거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허를 받아야만 한다.

○ 관할 세무서 찾기 <http://www.nta.go.jp/soshiki/kokuzeikyoku/chizu/chizu.htm>

1) 주류 면허 종류 및 판매 범위

구분	판매형태	판매범위	제한
수입주류 도매업 면허	도매	주류판매업자, 주류제조업자	
일반주류 소매업면허	소매	모든 주류 소매업자	통신판매
통신판매주류 소매업 면허	통신판매 소매	2도도부현 이상의 광범위 소비자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카달로 그 송부 등의 방법의 의한 소매	-전 회계연도 대비 품목당 과세 이출 수량이 모두 3천 킬로리터 미만의 제조자가 제조하는 국산주 -수입주류

2) 신청자격 및 요건

- ① 주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춘 자
- ② 경영능력 및 판매 능력을 가진다고 인정된 자
- ③ 상기의 자가 주체가 되어 조직된 법인
- ④ 주세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면허요건을 갖춘 자

3) 알코올음료의 범위

알코올음료는 알코올 함유량으로 분류가 된다.

구분	알코올 함유량
관세분류	0.5% 이상
식품위생법	1%이상
주세법	1%이상

4) 주세율

주세법 제 23조에 의해 리큐르 및 기타양조주의 주세율은 아래와 같다.

(평성18년 5월 1일 ~)

구분	주류의 구분	알코올 분 (도수)등	1kl당 세율 /엔
양조주류	청주	-	120,000
	과실주	-	80,000
	기타양조주	-	140,000
합성주류	합성청주	-	100,000
	미린	-	20,000
	감미 과실주 리큐르	13도 이상	120,000엔에 12도를 1도씩 추가 시 10,000엔 가산
13도 미만		120,000	



구분	주류의 구분	알코올 분 (도수)등	1kl당 세율 /엔
----	--------	-------------	------------

※ 조세특별조치법 제87조 2항
 다음 품목 중 발포성이 없는 주류로서, 알코올성분 13도 미만의 것(리큐르의 대해서는 12도 미만의 것)에 대해서는 상기 표와 상관없이 다음 세율을 적용한다.

연속식증류 소주		9도 이상 13도 미만	80,000엔에 8도를 1도씩 추가시 10,000엔 가산
단식증류소주			
위스키	9도 미만		80,000엔
브랜디			
스피리치			
리큐르			

라. 현지 통관 보류 및 억류 사례

○ 통관 시 주의 사항

통관시 문제가 되어 억류된 사례는 현재까지 보고된 것은 없으나, 용기의 개폐구에 문제가 생겨 메이커 자체에서 수입을 중단 하거나 반품한 사례가 있다.

특히, 뚜껑 부분에서 미세하게 누수가 되어 용기 외벽에 흘러 곰팡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 문제 또한 메이커에서 발 빠르게 뚜껑부분을 개선하였다.

제3절 김치

가. 통관제도 일반

1) 수주 관계 서류 등의 수취

통관 담당자는 수주관계서류 및 서류 송부서를 받아 내용을 확인한다.

① 인보이스 : 표기 시 주의할 사항으로는 동일한 상품 즉, 배추김치, 무김치, 깍두기, 보쌈김치 등을 한국에서는 통틀어 김치라고 생각하여 김치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각 원재료가 다른 김치라면 그 상품명을 그대로 기재한다. 또한 검사 성적서도 원재료와 용기에 따라 각각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패키징리스트

③ 보험명세서

④ B/L

⑤ A/N

⑥ 원산지증명서

※ 고추가루는 일반품목과 달리 유의할 사항이 많다. 원산지증명과 관련해 순 중국산인지 순한국산인지 그 이외의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고추가루는 철로 파쇄, 분쇄하는 과정에서 그 파편이 상품에 들어가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정 중에 금속탐지기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로 하는 등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⑦ 성분표 : 고추가루의 경우 한국에는 존재하나 일본에서는 불특정 원재료에 속하므로 일본사정에 맞게 표기 한다.

⑧ 공정도 : 식품의 경우 중금속과 세균에 대한 규제가 특별히 심하므로 공정과정 중 금속탐지기와 살균온도 등을 반드시 기록하는 것이 좋다.

⑨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 상기 수주관계 서류를 첨부해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에 의한 심사·검사 및 납세 후에 수입허가서가 교부된다.



2) 본선통관제도

의약식품국 식품안전부 감시안전과에서는 2009년 12월 31자로 기존의 선행 샘플 통관 제도를 폐지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본선 통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관 시 시료를 랜덤으로 채취를 하는 등 더욱 더 까다로워졌으며, 수출입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안전성을 인정받기 위한 시험성적 비용의 증가와 업무 번잡을 초래하여 2중 3중의 부담을 안게 되었다.

나. 김치의 관세율

(2010년 4월 기준)

형태	HS CODE	세율/kg당		
		기본	WTO협정	특혜세율
밀폐용기들이 (1개의 중량이 10kg이하)	2005.99.919	12.8%	12%	9.6%
비밀폐용기	2005.99.999	9.6%	9%	.

밀폐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본 12.8%, 협정 12%, 특혜 9.6%인데 비하여 비밀폐용기를 사용할 경우 기본 9.6%, 협정 9%로 현행 김치의 관세율은 타 식품류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김치의 경우 일반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식품이기 때문에 관세율이 높음으로 인해 일반소비자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다. 수입식품 등 시험성적

일본으로 김치 수입을 희망하는 자는 수입상담시 일본 후생성에서 지정하는 검사 항목과 검사기준치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1) 시험성적 사례

□ 수입식품 등 시험성적증명서

- 의뢰자 : 의뢰하는 기업 또는 개인의 이름 기재
- 검사기관 : 재단법인 북큐슈생활과학센터

헤이세이 21년 6월 28일 당센터에 의뢰된 공시품에 대해서 시험한 결과 아래와 같음을 증명합니다.

품명 및 브랜드명	배추김치	화물의 기호 및 번호	N/M
수입수증량	2BX 26.00kg	도착년월일	헤이세이 21년 6월 24일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KOREX PUSAN"		
수입업자명 주 소 전 화 번 호	수입자의 주소 연락처를 기입	생산국 또는 제조소명	생산한 국가 또는 업체명 및 주소
견본반출허가신청번호 또는 견본반출포괄신청번호	No. 65076722160 헤이세이21년 6월 26일	통관업자명 전화번호	시모노세키해륙운송(주) 083-267-0000
검사 관련 연락담당자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됨	검체 채취자	재단법인 북큐슈생활과학센터 검체 채취자 이름

시험항목	시험결과	정량한계	시험방법	각주
소르빈산	불검출	0.005g/kg	※1	
합성착색료(타르색소)	불검출		※1	
폴리소르베이트	불검출	0.02g/kg	※1	
수단 I	불검출	0.5μg/g	※2	
수단 II	불검출	0.5μg/g	※2	
수단 III	불검출	0.5μg/g	※2	
수단 IV	불검출	0.5μg/g	※2	



2) 시험방법

- 제2판 식품중의 식품첨가물분석법2000에 의함
- 헤이세이18년 5월 1일 식품안전감시 제0501008호에 의함

3) 시험 항목은 어떤 물질인가?

□ 소르빈산(sorbic acid)은

대표적인 합성 보존료이며, 가공식품의 보존에 흔히 사용된다. 각종 미생물의 생육 억제에 효과가 있지만 살균 효과는 거의 없다. 식품에 사용할 때는 아세트산, 젖산, 알코올 등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소르빈산칼륨이나 소르빈산칼슘 등과 같은 염 형태로 사용한다

□ 합성착색료 (타르색소)

합성착색료는 석탄타르 중에 함유된 벤젠이나 나프탈렌으로부터 합성되는 것으로 원래 섬유의 염료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었다. 인공색소는 대부분 타르계 색소이며, 타르계 색소는 소화효소의 작용저지 및 간장, 신장의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일부는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분류되어 의무표기 대상이 될 만큼 사용상의 주의를 요하는 첨가물이다.

□ 폴리소르베이트(Polyoxyethylene Sorbitan Fatty Acid Ester)

폴리소르베이트 20, 60, 65, 80 등이 있다. 대부분 계면활성제 및 유화제로 사용하며 살균력이 강하다. 혼합되지 않는 액체나 고체를 균일하게 분산시키기 위한 첨가물로 유화제 및 산포제로 사용된다.

각국마다 일반적으로 사용이 허가된 첨가물이며, 식품공업협회와 보건산업진흥원도 무역장애 해소를 위해 일본 후생노동성에 '폴리솔베이트'의 첨가물 등재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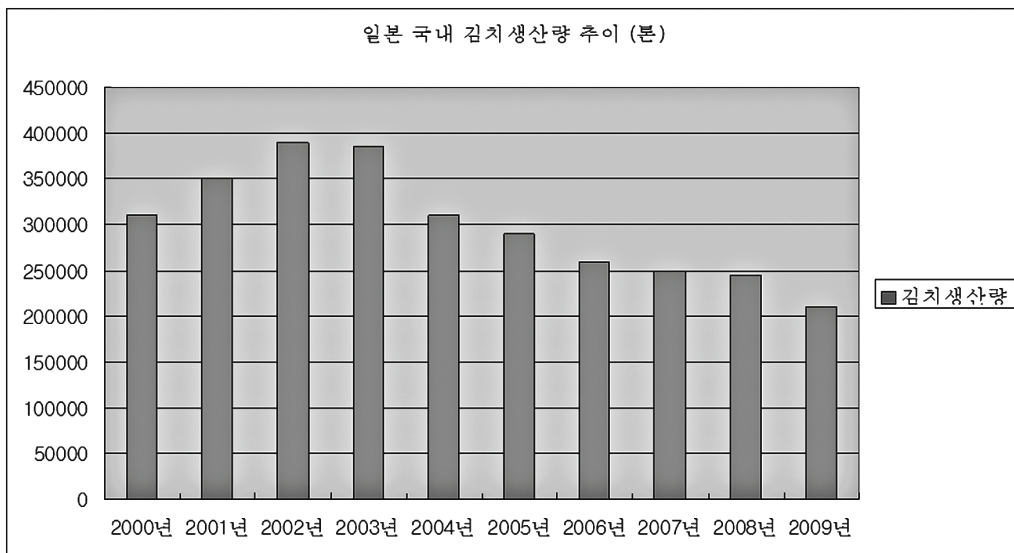
□ 수단(Sudan I, II, III, IV)

수단1호를 비롯하여 수단2호, 수단3호, 수단4호 등의 수단색소는 모두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색소 자체는 독이 없지만 분해되면서 발암물질을 발생시킨다. 이 색소가 포함된 식품을 먹으면 구토와 설사, 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심지어 불임까지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색을 더욱 선명하게 만드는 효과가 높기 때문에 많은 식품기업이 쉽게 유혹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

라. 일본의 김치 생산 및 수입 동향

1) 일본내 김치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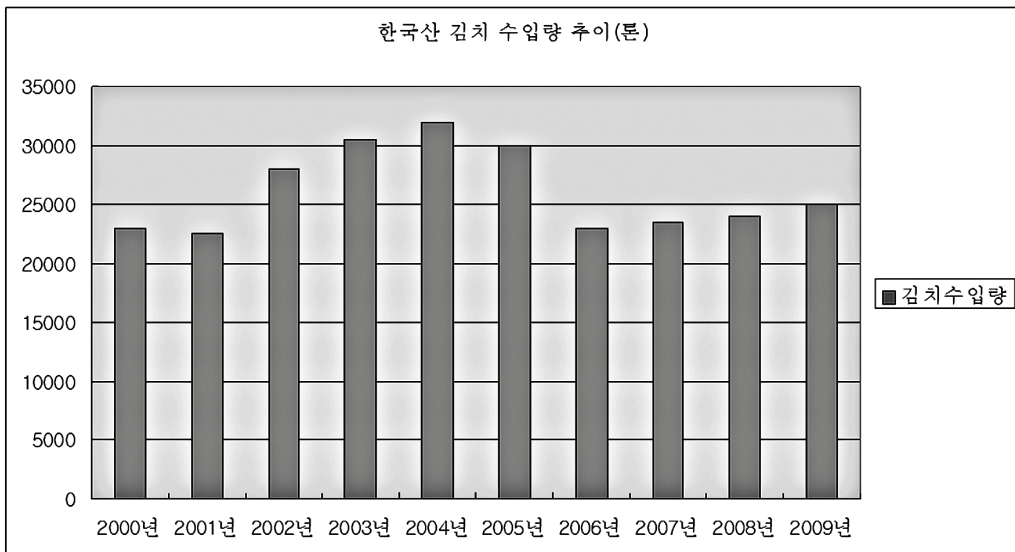
일본내 김치생산량 : ('01) 351천톤 (전년대비 9.7%증가) → ('02) 386 (동 10%증가)
→ ('03) 380 (동 1.7%감소) → ('04) 313 (동 17.4%감소)

일본내에서 김치 생산량은 (사)식품수급연구센터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일본산 김치



생산량은 과거 일본내 한국 식문화 확산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였으나 '04년도의 경우는 일본의 여름철 맹더위에 따른 절임류 소비량 감소 영향으로 일본산 김치 생산량은 '03년에 비해 17.4% 크게 감소하였다. 이후 한국드라마의 붐으로 한류 붐이 한차례 거세게 일면서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이 크게 증가하고 본고장의 맛에 익숙하게 된 일본인의 수요가 점차 늘어 한국으로부터 수입 물량이 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서히 생산량이 줄기 시작했다.

2) 한국산 김치 수입량 추이



한국산 김치의 수입량은 2002년 한일월드컵 공동 주체와 더불어 한류 붐이 일기 시작하여 2004년 절정에 달하다가 2005년 중국산 김치의 기생충알 파동으로 급감했고 이후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수요가 다시 늘기 시작한 이유로는 대중 매체의 PR 효과에 의한 수요 확대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식품인 김치는 숙성함에 따라 젖산균(유산균)이 증가하고 요구르트와 같이 장내의 산도를 낮춰 유해균의 생육을 억제시키는 정상작용을 하는 것으로 특히, 고추에 들어 있는 「캡사이신」이란 성분은 다이어트

와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TV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졌다.

여기에 가세하여 가공식품 업체에서는 김치와 관련한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내고 있다. 김치맛이 나는 김치칩과 밥위에 뿌려서 먹는 김치볶음밥 분말, 레토르트 형태의 김치찌개용스프, 돼지고기김치, 인스턴트 김치라면, 김치버거 등의 다양한 제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마. 현지 통관 보류 및 억류 사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5년 11월 3일 16개 국산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나왔다고 발표했을 때 일본 측의 김치 통관 보류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일본은 세계 각지에서 식품 위해 정보가 입수되면 곧바로 통관을 보류하고 안전 여부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어 통관 보류 조치도 그 일환이었다.

일본이 통관을 중단한 배경에는 '소비자를 안심시켜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고 한국과 중국 정부가 기생충 알이 나왔다고 발표한 김치와 고추장, 불고기 양념만을 골라 통관을 보류한 것도 같은 이유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은 자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일본이 전수조사를 벌인 16개 업체 중 일본에 수출을 하는 기업은 한 곳에 불과했고 그 회사조차도 같은 해 9월 4200kg을 마지막으로 일본 수출이 중단됐었다.

식의약청에서는 502개 국산 김치업체 중 16개 회사를 제외한 486개 사의 제품은 안전한 것으로 판명했고 따라서 일본 검역소의 검사에서도 별문제는 없었지만, 후생노동성은 이들 업체의 수출품에 대해 통관을 보류하고 전수 검사를 할 것을 각 검역소에 지시했다.

농림부와 식약청은 일본 수입업체들이 요구하는 위생증명을 신속하게 보내 안전성을 증명하였다.

제4절 ● 삼계탕

가. 통관제도 일반

1) 수주 관계 서류 등의 수취

- 인보이스 : 인보이스 내용(수량, 상품명 등)과 실제 선적한 내용이 동일하게 작성한다. 신제품 출시로 소량의 샘플을 타 상품과 혼적하고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 예 1. 본상품 500개만 기재하고 신제품 샘플 10개는 미기재
 - 2. 통상 수출품과 서비스상품의 가격 기재가 상이하여 문제발생
- 패킹리스트
- 보험명세서
- 선하증권(B/L) [船荷證券, bill of lading]
- 화물도착통지(A/N) (Arrival Notice)
- 원산지증명서 : 삼계탕의 경우 원산지증명은 세관 당국에 제출 할 의무사항은 아니며 다만, 통관 시 이상이 있을 때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 성분표
- 공정도 : 특히 레토르트의 경우 멸균을 해야 하므로 살균온도, 살균시간 등의 표시가 매우 중요하다.
-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나. 동물검역 예비신고

통관 수속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입품이 항 또는 비행장에 도착하기 하루 전 쯤 사본을 가지고 동물검역 예비신고를 하고 코드를 발급 받아 놓는다. 원본이 도착하면 본 서류를 제출한다.

동물검역 예비신고가 끝나면 예비 식품검사를 신청한다. 식품검사는 동일품에 한해 1년간 유효하며, 식품검사는 보통 15일 정도 소요된다.

예전에는 서류상으로 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실은 채 동물검역검사를 마치고 납품창고에 바로 입고를 시켰지만, 현재는 동물검역 검사강화로 인해 일단 보세구역에서 검역원 입회하에 하역 작업을 하고 직접 현물을 확인한다. 따라서 현재는 검역도 까다로워졌지만 하역비용의 추가 발생으로 2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 삼계탕 수입의 대부분을 한인기업이 점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큰 리스크가 아닐 수 없다.

※ 삼계탕 및 수산물 등 식육제품은 가축전염예방법에 근거하여 검역 대상이 되어 수입자는 반드시 한국 정부에서 발행한 이력 추적이 가능한 동물검역증을 제시하여야 수입이 가능하다.

한국의 수출업자의 경우 가공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사전에 한국정부에 허가를 받아 허가공장번호를 부여 받아 수출 통관시 제시하면 통관이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다만 통보가 늦어질 경우 통관이 지연되거나 백십하는 경우도 있어 수출자는 파트너에게 신속하게 알려 줄 필요가 있다.

다. 삼계탕의 관세율

(2010년 4월 기준)

형태	HS CODE	세율/kg당		
		기본	WTO협정	특혜세율
닭고기 조제품	1602.32 290	8%	6%	無

삼계탕은 주로 레토르트 형태로 냉장 또는 냉동으로 수입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조공정과 성분에 따라 관세율은 변동 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삼계탕에는 쌀 외에 인삼 등 한약재가 들어가므로 식품검사시 잔류농약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라. 수입 식품 시험 성적

일본으로 삼계탕을 수입하려면 수입상담시 일본 후생성에서 지정하는 검사 항목과 검사기준치를 정확히 확인하여 두어야 한다.

〈레토르트 삼계탕(가열제품) 검사 항목〉

시험항목	정량한계
클로스트리듬	불검출
대장균군	불검출
초산스토리키니-네	불검출
폴리솔리베이트	0.001g/kg
안식향산	0.005g/kg
소르빈산	0.005g/kg
TBHQ	1μg/g

※ 제품에 재료에 따라 시험항목은 바뀔 수 있음.

1) 시험 항목은 어떤 물질인가?

□ 클로스트리듬 (クロストジウム屬菌, Genus Clostridium)

클로스트리듬속균(屬菌)은 일반적으로 혐증성균으로 불리는 편성 혐증성균으로, 무산소 상태에서만 증식이 가능해 산소는 이 속균에 유해하게 작용해 균을 사멸시켜 버린다. 그러나, 클로스트리듬속균은 발육에 부적합한 환경에 있으면 아포로 불리는 두꺼운 피막에 싸인 구상체로 바뀌어, 동면과 같은 상태로 수년으로부터 10 수년에 걸쳐서 생존할 수 있다.

아포 상태에 있을 때는, 100℃ 4시간 이상의 가열에도 견딜 수 있어 121℃ 15분의 고압 멸균으로 대부분의 균을 사멸시킬 수 있다. 이 아포 상태는, 발육 조건이 되면 통상의 균체로 돌아와 증식을 시작한다.

□ 대장균군 (大腸菌群, coliform bacteria)

사람과 동식물 장내에 서식하는 대장균과 주로 물·토양 등 자연계에 분포된 앵무병감염균 및 중간형을 대장균군이라 총칭한다. 일반적으로 이 세균군을 합해 콜리형균이라

하여 검사하고, 물·식품 안전도의 지표로 삼는다.

대장균군이 검출되면 사람과 가축의 배설물에 의한 오염이 이루어졌음을 뜻하고 또한 수인성 전염병원균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 초산스토리키니-네 (硝酸ストリキニーネ)

살충제로서 사용되며 쥐, 새, 두더지 등 포유류, 조류 등의 구제에 자주 사용된다. 오용한 애완동물의 피해 사례가 많이 늘고 있다.

스트리키니-네는 인도원산 주목의 종자로부터 추출한 쓴맛이 강한 흰색 분말초산과 반응 시키면 「초산스토리키니-네」라는 무색무취의 맹독으로 변한다.

□ 폴리소르베이트 (polysorbate)

서로 잘 혼합되지 않는 액체나 고체를 액체에 균일하게 분산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첨가물이다. 소르비톨 및 무수소르비톨의 에스테르와 폴리에틸렌옥사이드와의 축합물에 대한 일반명으로 유화제, 안정제, 계면 활성제로 사용된다.

□ 안식향산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여 가공식품의 보존료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다.

□ 소르빈산 (sorbic acid)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여 가공식품의 보존료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다. 치즈, 식육가공품, 잼류 등에 사용된다.

□ 삼차 뷰틸 하이드로 퀴논 (tert-Butylhydroquinone)

삼차 뷰틸기로 치환된 하이드로퀴논의 유도체로서 페놀의 형태를 하고 있는 방향족 유기화합물이다. 식품이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화방지제로서 사용된다.

제5절 ● 고추장

가. 통관제도 일반

1) 수주 관계 서류

- | | |
|--------------------------------|------------------------------------|
| ① 인보이스 | ② 패키리스트 |
| ③ 보험명세서 | ④ 선하증권(B/L) [船荷證券, bill of lading] |
| ⑤ 화물도착통지(A/N) (Arrival Notice) | |
| ⑥ 원산지증명서 | ⑦ 성분표 |
| ⑧ 공정도 | ⑨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

2) 지역 국제식품 규격 등록

우리나라 대표 전통식품인 고추장의 정식 명칭은 그동안 “Korean Hot Pepper Paste”라고 표기하였다. 그런데 2009년 6월 29일 김치(200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나라 고유의 이름을 그대로 고추장 “Gochujang”으로 지역 국제식품규격(CODEX)에 등록되었다.

된장의 경우 주변국의 반대로 “Fermented Soybean Paste”, 인삼의 경우 “Ginseng Products”로 각각 등록이 되었다.

특히 이로 인해 고추장은 타바스코와 같은 칠리소스 및 된장과의 차별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 되었으나, 발효식품이라는 특성과 고추장이 전분을 주원료로 한다는 점으로 차별화하여 별도의 식품규격으로 등록을 한 것이다. 현재 CODEX에는 160여 개의 식품규격이 등록되어 있지만 김치나 고추장처럼 특정 국가에서 사용되는 명칭 그대로 규격 등록이 이루어진 식품은 까망베르 치즈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CODEX(아시아 지역)규격은 무역 분쟁 시에 제시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구속력을 가지며, 해당 지역 외 국가와의 교역 시에도 관세분류에 적용하는 등 신규시장 진출 시 공정한 거래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3) 문서에 의한 사전 교시 제도

□ 「문서에 의한 사전교시」란

수입을 예정하고 있는 화물의 분류(세번/HS Code), 관세율, 원산지, 과세가격의 산출 방법 등을 문서로 조회를 신청하고 그 회답을 문서로 받는 것이 가능한 제도로서 아래와 같은 메리트가 있다.

- 사전에 세번(HS Code), 세율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확실하게 할 수 있고 수입계획과 판매계획을 세우기가 쉽고 화물의 인수가 빨라진다.
- 회답 내용은 조회된 상품의 수입 통관 심사에 즈음하여 3년간 존중된다.

□ 문서에 의한 사전 교시 조회서의 양식 다운로드 방법

- 관세 홈페이지(<http://www.customs.go.jp>)에서 다운로드가 가능
- 탭페이지의 오른쪽의 [관세수속의 안내] → [관세양식 및 기재요령]
→ [관세법관계(C)] 양식 열람이 가능
 - ※ 관세분류에 대해 [사전교시에 관한 조회서 (C-1000)]
 - ※ 원산지에 대해 [사전교시에 관한 조회서 (원산지조회용)(C-1000-2)]
 - ※ 관세평가에 대해 [사전교시에 관한 조회서(관세평가조회용)(C-1000-6)]

□ 구체적 수속 등에 관한 관세기본법통달 7-17, 7-18, 7-19의 2을 참고

- ※ 탭페이지의 오른쪽 [관세정책, 관세행정] → [소관(공관)법령 등]
→ [통달] → [관세법기본통달(2장1절~2절)] 7-17, 7-18, 7-19의 2

□ 문의처 동경관세 사무부

- ※ 관세분류 : 수석관세감사관부문 03-3529-0700
- ※ 원산지 : 원산지 조사관 부문 03-3599-6527
- ※ 관세평가 : 수석관세평가관 부문 03-3599-6411



나. 고추장의 관세율

(2010년 4월 기준)

형태	HS CODE	세율/kg당		
		기본	WTO협정	특혜세율
소스·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기타의 것	2103.90.229	14%	10.5%	無

수입 희망자는 고추장의 경우 우리나라 전통 재래식품으로 세번을 쉽게 확인하기가 어려운 품목에 속한다. 제조 과정 및 원재료의 함량에 따라 품목 분류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문서를 통한 사전 교시 제도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제6절 ● 면류(냉동면, 건면, 파스타류)

가. 수주관계 서류 등의 수취

-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 : 수출국의 제조자 및 제조 장소의 명칭, 주소, 제품명칭이 표기된 서류. 인보이스 내용(수량, 상품명 등)과 실제 선적한 내용을 동일하게 작성한다. 신제품 출시로 소량의 샘플을 타 상품과 혼적하고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팽킹리스트의 경우 중량의 단위 기록에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
- 보험명세서
- 선하증권(B/L) [船荷證券, bill of lading]
- 화물도착통지(A/N) (Arrival Notice)
- 원산지증명서 (담당한테 물어보기)
- 식품성분표 [food composition table] : 제조자가 작성 발행하는 자료로 회사명을 반드시 기입하고 사용된 원료(식재)와 첨가물의 구체적인 내용을 표기한 자료
- 제조공정표 : 제조사가 작성하고 발행하는 자료로 회사명, 책임자의 사인을 필요로 한다. 원료로부터 제품이 완성되기까지의 공정도를 표로 작성한 자료
-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 기타 기본구비서류 중 영문 이외의 서류는 일본어로 번역하여 첨부한다.

나. 수입통관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의 종류 및 단가

제품의 품목 및 종류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으며, 아래 표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예로 작성한 것이며, 검사 횟수 증가 및 검사로 인한 보관기간의 연장으로 보관비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부대 비용이 증가한다.



〈부대비용〉

구분	명칭	단위	금액	비고
수수료	수입통관료	건	12,000	포워딩사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있다.
	수입취급료	건	10,000	
	THC*	20F	37,200	
	DOC*	B/L	7,000	
	BAF(유류할증료)	20F	8,086	
	D/O FEE*	B/L	4,000	
검사부분	검사를 위한 노무비(검사장 검사)	건	30,000	중국산만두파동으로 인해 2010년 전반적으로 수입식품의 검사가 엄격해 졌음.
	검사를 위한 반각료	R/T	8,900	
	시험검사를 위한 노무비(식품환경)	10TON	44,400	
	검사를 위한 반각료(샘플링)	건	8,900	
보관	CY보관료	건	30,000	기간/보관형태에 따라 차이가 큼.
배송	배송 20RF	건	44,800	거리에 따라 차이

※ THC(Terminal Handling Charge) : 컨테이너 화물조작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T.H.C.는 화물이 off dock CY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선착까지 혹은 본선선착에서 CY의 게이트를 통과할 때까지의 화물이동에 따른 모든 비용으로 선박회사가 화주에게 청구하는 요금임

※ DOC·FEE(Documentation Fee) : 선박회사가 B/L (선화증권), D/O(화물인도지시서) 등의 서류작성에 드는 비용. 선박회사에서 화주에게 청구함

※ D/O FEE(Delivery Order Fee) : 서류발급비

다. 면류의 관세율

(2010년 4월 기준)

형태	HS CODE	세율/kg당			
		기본	WTO협정	특혜세율	
면류	우동면	1902.19 099		¥34/1kg	
	건면	1902.19 099		¥34/1kg	
	파스타류	1902.30 290		21.3%	
소스류	비빔장류	2103.90 229	14%	10.5%	無稅
	냉면육수류	2104.10 020	8.4%	8.4%	無稅
	상온육수류	2104.10 020	8.4%	8.4%	無稅

라. 식품 시험 성적

일본으로 면류 수입희망자는 수입상담시 일본 후생성에서 지정하는 검사 항목과 검사 기준치를 정확히 확인하여 두어야 한다.

1) 검사 항목

〈냉동용기면〉

시험항목	정량한계
수단 I	0.5 μ g/g
수단 II	0.5 μ g/g
수단 III	0.5 μ g/g
수단 IV	0.5 μ g/g
세균수(생균수)	1g/100,000이하
대장균군	음성
E.coli	음성

※ 제품의 재료에 따라 시험항목은 바뀔 수 있음

2) 시험 항목은 어떤 물질인가?

- 수단(Sudan I, II, III, IV) : 수단1호를 비롯하여 수단2호, 수단3호, 수단4호 등의 수단색소는 모두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색소 자체는 독이 없지만 분해되면서 발암물질을 발생시킨다. 색을 더욱 선명하게 만드는 효과가 높기 때문에 많은 식품기업이 쉽게 유혹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
- 세균수(생균수) : 생균수계측은 어떤 일정 시료에 함유되어 있는 세균수를 살아 있는 상태에서 측정하는 것이다. 측정하기에 적당한 농도의 시료를 희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포수를 조사하지만, 세포계수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 대장균군(大腸菌群, coliform bacteria) : 사람과 동식물 장내에 서식하는 대장균과 주로 물·토양 등 자연계에 분포된 앵무병감염균 및 중간형을 대장균군이라 총칭한다. 일반적으로 이 세균군을 합해 콜리형 균이라 하여 검사하고, 물·식품 안전도의 지표로 삼는다. 대장균군이 검출되면 사람과 가축의 배설물에 의한 오염이 이루어졌음을 뜻하고 또한 수인성 전염병원균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 대장균(大腸菌, Escherichia coli, E. coli)는 온혈 동물의 창자(대장과 소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박테리아이다. 대부분의 대장균의 변종은 해롭지 않지만, serotype O157:H7 등은 사람의 식중독을 일으키며, 가끔 대규모의 식품 리콜의 원인이 된다. 해롭지 않은 변종은 대장의 공생동물이며 비타민 K2 등을 생산하여 이로움을 주기도 하며, 창자에서 병의 원인이 되는 박테리아의 번식을 막기도 한다.

마. 통관시 주의 사항

- 원재료의 성분에 따라 의약품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입대상 제품이 식품 또는 의약품 중 어느 쪽으로 분류가 되는지 명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또 수입 금지품목에 속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두어야 한다.
- 원재료(성분)의 상세한 기입 및 원산지에 표시를 주의한다. 예를 들면 원재료에 제품명이 들어 있을 경우 그 제품에 대한 성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입대상 제품의 관세율 등은 사전에 세관 홈페이지의 실행관세율과 사전교시제도를 이용하여 알아볼 수 있다.

바. 위반 시 제제조치 (벌금 등)

-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하고 공표한 수입금지품목(원료, 첨가물등 포함)을 수입, 보관, 판매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
- 서류 허위 작성 등의 경우 50만엔 이하의 벌금 및 수입 거부(반송)처분 등
- 원산지 및 성분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수입거부(반송) 또는 폐기처분

검역원/세관 등 관련 기관 현황 및 연락처

도쿄세관 : 도쿄항만 합동청사	TEL 03-3529-0700
도쿄항공화물출장소	TEL 047-329-0600
나리타항공화물출장소	TEL 0476-32-6114



제2장 >>> 검역제도

Korea Agro-Fisheries Trade Corporation

제1절 ● 김의 검역제도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검역소에서 검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김의 경우 특별히 까다롭게 실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 건조김의 경우 원재료로 분류되어 성분 분석표와 공정도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 별도의 검역을 실시하지 않는다.
- 무당조미김과 김조제품의 경우 구분 등급에 따라 대형 X선 검사 및 실물 검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실물검사의 경우 인보이스에 기재된 사항과 실제 상품의 내용과 수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제2절 ● 막걸리의 검역제도

알코올음료를 수입하는 경우 「식품 등 수입신고서」를 그 화물이 통관 하려고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 「수입식품 감시담당창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에 주의가 필요하다. 막걸리의 경우 단맛을 내기위해 첨가물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사용되는 첨가물이 규제 대상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검역소에서 위생 검사가 불필요하다고 여겨진 것은 「신고제」를 도입하면서 자발적인 신고를 마치면 수입신고서에 신고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스탬프와 함께 위생검사에 합격한 취지의 스탬프가 날인되어 그 사본이 반환된다.

○ 막걸리에 주로 사용되는 첨가물 ● 예) 아스파탐-L (아스파르테무-L)

※ Aspartame은 설탕 대신 가공식품 제조 시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아미노산인 L-아스파라긴산과 L-페닐알라닌의 합성으로 만들어진 아미노산계 합성 감미료

○ 잔류농약 규제 : 2006년 5월 포지티브리스트제도(식품위생법 제 11조 제3항)가 시행되었다. 원재료가 주로 쌀인 점을 감안하여 주의가 필요로 하다.

※ 임의 검사에 주의 : 후생성에서는 임의 검사를 위해 유통되고 있는 주류를 대상으로 일정한 샘플을 취하여 검사 후 신고한 수치를 넘거나 신고하지 않은 첨가물이 검출 되었을 때는 벌금을 적용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를 하여야 한다.

제3절 김치의 잔류 농약 규제

2006년 5월 포지티브리스트제도(식품위생법 제 11조 제3항)가 시행되면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

김치의 수입규제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잔류농약 규제(배추, 무, 오이, 마늘 등의 원료 야채에 대한 것)와 농산물 절임류에 보존료로서 사용되는 소르빈산의 최대사용 한도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구분	배추	무	오이	마늘	고추가루	보존료	한도기준 (절임채소)
농약 품목수	316	308	348	302	411	소르빈산	1.0g /1kg

품목별 농약에는 각각 농약의 최대잔류 한도 기준이 정해져 있다. 잔류한도에 따라 가장 까다로운 것은 「불검출」로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인체에 해로운 정도에 따라 책정된 기준치 「0.001ppm」으로 부터 「400ppm」까지 있으며,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약이 검출되었을 때는 일률기준치 「0.001ppm」을 정해 놓고 있다.

기준치가 정해져있는 경우에는 검출이 되더라도 한도기준치 이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김치 수입에 있어 수출자인 한국의 메이커가 현지공적기관으로 주원료 야채에 대한 잔류농약 시험성적서와 가공된 김치가 함유하고 있는 소르빈산의 시험성적서를 통해 품질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에 수주하는 것이 중요하고 할 수 있다.

만약, 화물이 도착하여 상기 시험성적서에 이상이 있어 수입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모두 수입자의 책임과 경비부담으로 그 화물을 반송하거나 폐기하게 된다.

제4절 ● 삼계탕 검역제도

가. 동물 검역

동물과 축산물의 수출입에 따라 전염증이 일본내에 침입 또는 외국에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일본에서는 농림수산성의 동물검역소가 관할한다. 메이지시대 이후, 일본에서는 가축과 축산물을 많이 수입해왔지만, 그에 따른 전염병의 피해가 많아 1871년(메이지 4년) 이후, 법률로 수출입 검역을 하게 되었다.

나. 수출국 검사증명서

지정검역물을 반입하려면 소량의 선물 또는 자가소비용을 막론하고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檢疫證)을 첨부하여야 한다. 검역증에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았으며 또 병원체를 전파할 우려가 없음이 증명되어야 하며, 검역물의 종류에 따라서는 각종 조건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동물검역 대상물을 「지정검역물」이라고 한다. 지정 검역물을 일본에 수입할 경우에는 수출국의 있어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시행하는 검사에 합격하고, 해당기관이 발행한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수출국에 있어 검사항목과 검사증명서의 기재사항은, 사전에 수출국과 일본과 협의된 「가축위생조건」으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수입된 지정검역물은 동물검역소에서 전염병의 전파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정된 장소(검역장소)에서만 검역받을 수 있으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지정검역물에 따라 일정기간 계류 또는 유치되어 검역물에 따른 각종 조사

- 수출국의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방역상태의 조사,
- 수송경로와 축산물의 조작과정 조사
- 임상 및 정밀·機船上 검사



이러한 조사와 검사결과에 따라 검역물의 개방, 소독, 살처분, 소각 및 반송 등이 이루어지며 합격된 검역물은 세관 당국에 넘겨져서 내국물품으로서의 구실을 하게 된다

다. 가금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가금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다양한 임상증상이 나타나는데 주로 침울, 산란 감소, 호흡기 증상 및 다양한 폐사율 등이 나타난다. 병의 경과와 감염되는 바이러스의 병원성에 따라 다양하다. 강독형 바이러스는 아주 높은 폐사율을 일으킨다. 백신이나 치료법은 아직 없다.

〈가금인플루엔자로 인한 한국으로부터 수입 정지 사례〉

발생회차	정지	해제	타입
1회차	2003年12月12日	2004年10月13日	-
2회차	2004年12月22日	2005年 3月24日	약독타입조류인플루엔자 혈청 아형H5N2
3회차	2006年11月24日	2007年 7月25日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혈청 아형H5
4회차	2007年11月26日	2009年12月2日	약독타입 조류인플루엔자 H7아형
5회차	2009年12月14日	2010年 4月 1日	약독타입 조류인플루엔자 H7N2아형
6회차	2010年 5月21日	-	약독타입 조류인플루엔자 H7N7아형

※ 현재 한국은 가금인플루엔자 발병국으로 수입정지 상태임

라. 한국에서 수입시 검역기준

1) 한국이 가금인플루엔자 발생국이 아닐 경우

사육농가 및 도축장으로부터 해당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인 닭에 있어서 반경 50km이 내에 90일간 가금인플루엔자, 가금장티푸스 등이 발병하지 않은 원료닭을 사용할 것

※ 상온품·원료육·냉동품 ⇒ 살균 과정 중 밀폐된 용기에서 65℃ 이상에서 4분 이상 살균 검역기준 충족한 제품

2) 현재와 같은 한국이 가금인플루엔자 발병국인 상태의 경우

- ① 상기 1항 조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원료육은 수입이 금지됨
- ② 상기 1항 조건을 충족하였고, 제품 살균조건이 상온품/냉동품 포함, 중심 살균 온도가 100℃이상에서 4분이상 살균 조건을 충족한 경우 수입이 가능하다.
 - ※ 현재 레토르트 삼계탕의 중심 살균온도는 121℃에서 40분 이상 멸균처리

3) 현재 한국은 가금이플루엔자 발병국으로 수입 정지 상태

현재 한국은 농림수산성 발표 2010년 5월 21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에 의해 수입 정지 중이지만, 상기 2번 항을 충족할 경우 수입을 허가하고 있다.

문의처 소비·안전국동물위생과 국제위생대책실

담당자 : 사토(伊藤) 무라이(村井) 대표 : 03-3502-8111(내선4584)

다이얼 : 03-3502-8295 FAX : 03-3502-3385

마. 수입 제한 해제 절차

- 한국내에서 가금인플루엔자가 최종 발병 후 90일 이상 재발하지 않을 경우
- 국제수역기구(OIE) 청정국가를 선언함
- 수입국가에서 해당 수출국에 대한 현지 위생실사를 통해 안전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수입제품 검역을 허가함

바. 반송사례

1) 동물검역증이 없거나 기재사항이 상이한 경우

대한민국 국립수의과학검역원(동물검역원)에서의 동물검역증이 없는 제품 및 동물검역증과 기재사항이 다른 제품의 경우 반송 처리된다. 이러한 반송품이 일본에서 컨테이



너 씌을 해제하였을 경우, 한국에 반송되더라도 한국 검역당국으로부터 반입허가가 불허 됨. 이 경우 100% 소각처리 명령이 떨어진다.

단, 한국에 재반입이 허가된 경우는 제품을 한국에서 선적시까지 가금인플루엔자 발생 정보가 없었는데 해당 수입항에 도착 후 통관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서의 가금인플루엔자가 발병한 경우와 발병 사실이 국제수역기구에 통보가 되고 회원국인 일본은 즉각 한국 가금육 (중심 살균온도 100℃에서 4분 이상 살균을 충족한 제품 제외)에 대한 수입정지조치 시행을 했을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일본에서는 반입이 불허되고, 한국으로 반송절차 진행하게 되며 한국에 반송 (역수입)이 허가된다.

※ 한국내 판매허가 절차를 밟아서 국내 판매가 가능함

원료육의 경우 동물검역검사단계에서 잔류농약, 항생물질 검출 시 해당보건소에 전량 소각 명령을 통지한다.

2) 항생물질 검출로 인한 반송사례

일본 후생성으로부터 일본식품위생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항생 물질인 Enrofloxacin 검출에 대해 일본 후생성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Back ship 또는 폐기 처분, 혹은 식용 이외에 전용 등의 명령서를 받은 사례로 폐기처분함

□ 폐기처분의 방법

- ① 수입자로부터 폐기 처분해 달라는 요청서 접수
- ② 후생노동성의 관할부서에 신고
- ③ 관할부서의 담당 입회하에 현물 확인 후 제품 봉인
- ④ 담당 공무원으로 부터의 후생노동성에 품의
- ⑤ 후생노동성으로 부터의 내용 확인 후 폐기의 지시서 내림
- ⑥ 폐기장까지 이송
- ⑦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

제5절 ● 고추장 검역제도

가. 식품 검역

고추장의 경우 식품검역에 있어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술빈산 등 화학 첨가물에 의한 규제가 심하며, 성분에 대한 치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새로이 개발된 신상품을 수출시에는 검역 등 통관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샘플통관을 추진하여 통관 과정에서 일어 날수 있는 오류 및 문제점 파악이 필요함

나. 수입 식품 검사

일본의 경우 식품첨가물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고추장 경우 일본 식품위생검사 지침 중 식품첨가물 분석법(1989)에 의하여 방부제로 사용되고 있는 술빈산 시험 항목에서 내용물 kg 당 0.005g이 검출한계로 되어 있으며, 합성착색료(산성탈색소)등에 합격하여야만 통관이 가능하므로 사전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일본에서 유달리 규제가 심한 폴리솔베이트(Polysorbate)의 경우는 미국, EU 등지에서는 식품에 따라 다르나 최저 1g/kg을 허용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검출한계가 0.02g/kg으로 타국에 비해 50배나 심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음

일본으로 고추장 수입희망자는 수입 상담시 성분표와 공정도를 가지고 일본 후생성에서 지정하는 검사 항목과 검사기준치를 정확히 확인하여 두어야 한다.

비슷한 고추장이라 하더라도 재료 및 공정도에 따라 검사 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꼼꼼히 체크하여야 한다.



1) 고추장 검사 항목

시험항목	정량한계
솔빈산	0.005g/kg
안식향산	0.010g/kg
이산화이온	0.005g/g
수단 I	0.5μg/g
수단 II	0.5μg/g
수단 III	0.5μg/g
수단 IV	0.5μg/g
폴리솔베이트	0.020g/kg

※ 제품의 재료에 따라 시험항목은 바뀔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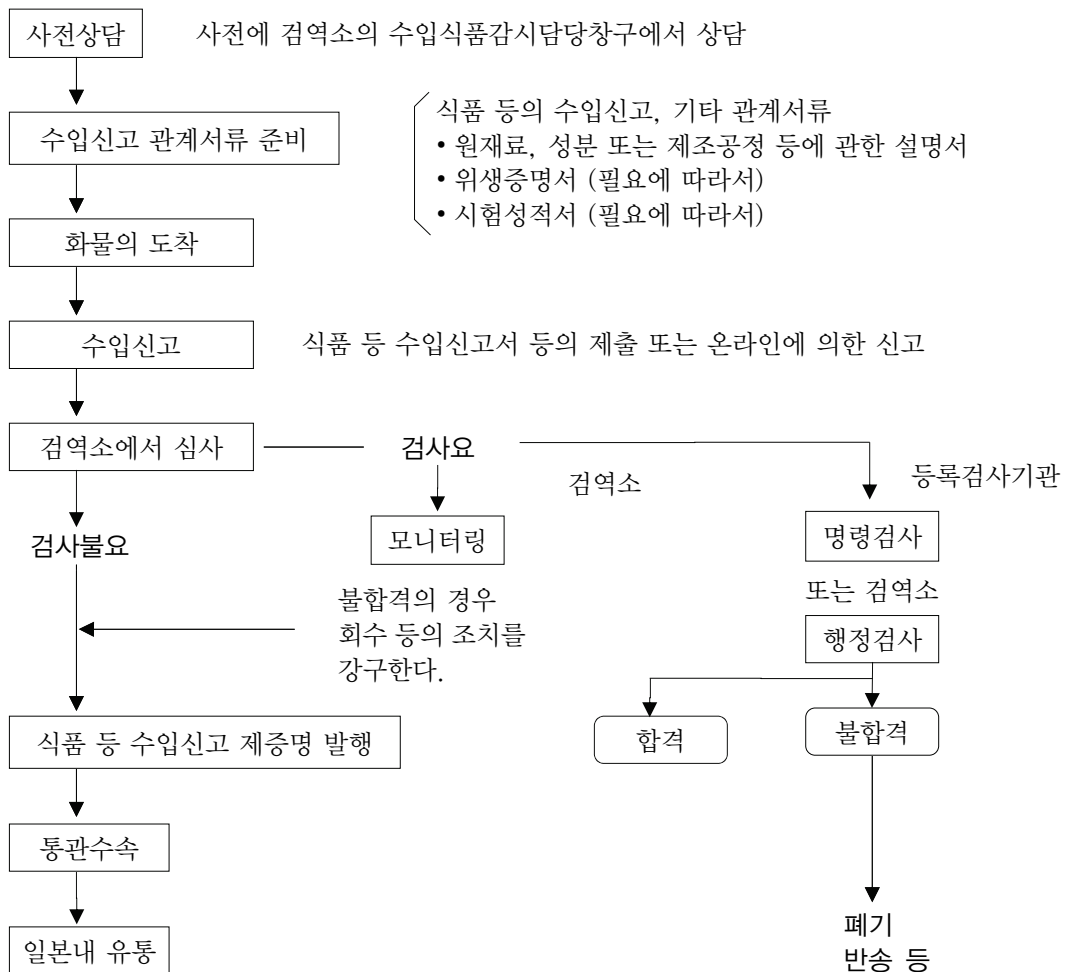
2) 시험 항목은 어떤 물질인가?

- 소르빈산(sorbic acid)은 대표적인 합성 보존료이며, 가공식품의 보존에 흔히 사용된다. 벤조산과 그 염과 함께 대표적인 합성 보존료로 꼽히고 있다. 이 물질은 각종 미생물의 생육 억제에 효과가 있지만 살균 효과는 거의 없다.
- 폴리솔베이트 (polysorbate) : 서로 잘 혼합되지 않는 액체나 고체를 액체에 균일하게 분산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첨가물이다. 소르비톨 및 무수소르비톨의 에스테르와 폴리에틸렌옥사이드와의 축합물에 대한 일반명으로 유화제, 안정제, 계면 활성제로 사용된다.
- 안식향산 :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여 가공식품의 보존료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다.
- 수단(Sudan I, II, III, IV) : 수단1호를 비롯하여 수단2호, 수단3호, 수단4호 등의 수단색소는 모두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색소 자체는 독이 없지만 분해되면서 발암물질을 발생시킨다. 색을 더욱 선명하게 만드는 효과가 높기 때문에 많은 식품기업이 쉽게 유혹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

다. 식품 위생법 관련

□ 식품 등의 수입 신고 수속 흐름

판매목적의 고추장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후생성 검역소 수입식품감시담당에 ‘식품 등 수입신고서’와 관련 서류(제조공정표, 성분분석표 등)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검역소에서 심사·검사 후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없으면 신고서에 '신고필' 인장을 찍고 식품위생법 절차를 마칩니다.





제3장 >>> 표기사항

Korea Agro-Fisheries Trade Corporation

제1절 김의 표기사항

가. 의무 표시사항

JAS법에 근거하여 가공식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개별품목별로 순차 대응을 해 왔지만, 2006년 10월에 20개 식품군에 의무적으로 대상이 확대되었고, 2009년 10월에는 녹차음료와 튀긴 땅콩이 추가되었다.

김의 경우 20개 식품군 중 14번 항목에 건조김, 구운김, 기타 건조한 해조류에 포함되어 있다. 가공식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의 확대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의 [식품 표시에 관한 공동 의회]에서, 검토가 되어 왔지만, 2009년 9월 이후부터 소비자청이 표시기준 등의 기획 입안을 진행하게 되면서,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청에서는 2010년 3월 구체적인 시책으로 가공식품에 있어 원재료의 원산지 표시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소비자기본계획' 안을 내놓고 있어 관련 식품업계에서는 관리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업소용이 아닌 용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명칭, 원재료명, 내용량, 유효기간, 보존방법, 수입품에 있어서는 원산국명, 제조자(판매업자의 경우 '판매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등을 순서대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명칭의 경우 이전에는 상품명 또는 품명으로 기재되어도 무방했으나 명칭(식품의유형)으로 기재하도록 변경되었다.

원재료와 포장재질의 경우, 실제 제품이 완성 되었을 때 함유량이 많은 순서대로 기재하

도록 하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식품위생법의 알레르기 표기법에 의해 알레르기를 일으킬 성분이 포함된 원재료(조미김의 경우, 건조김에는 새우, 게 등의 갑각류가 혼입 될 가능성이 있음)에 관해서는 반드시 혼입 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해야 하도록 의무화 되었다.

□ 조미김 수입시 표시방법 설명

표시사항		상세 설명
名称/(명칭)	味付けのり / 조미김	이전에는 상품명 또는 품명으로 기재되어도 무방했으나 J A S 법에 의거해 名称(식품의 유형)으로 기재하도록 변경되었다.
原材料名/ (원재료명)	乾のり(韓国産)、コーン油、 食塩 / 건조김(한국산), 옥수수수기름, 식염	원재료명은 실제 제품이 완성되었을 때 함유량이 많은 순서대로 기재하도록 한다. 원재료명에 원산지를 기재하였을 경우 별도로 원산지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内容量/(내용량)	板のり3.375枚分 (8切9枚3P)/ 전형김 3.375매분 (8절 9매 3P)	한국김 원초(재래김)의 경우 190mm×270mm (1장/9절)기준, 1팩당 9장이 들어간 경우 일본김 원초 190×210mm(1장/8절)과 사이즈가 같다고 계산한다. 즉, 9장/8절×3팩이 들어가서 일본김 3.375장분의 김이 들어갔다는 것을 명시한다.
賞味期限/유통기한	枠外右側及び個装袋に記載 우측 및 개포장에 기재	유통기한의 경우 기재 장소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한다.
保存方法/보존방법	直射日光・高温多湿を避け、 なるべく冷暗所に保存して下 さい。	보존 방법을 표시한다.
原産国/원산국	韓国 한국	원산지를 표시한다.
輸入者/수입자	美味しいノリ株式会社 東京都新宿区大久保1-1-1 TEL : 03-3333-5555	수입자/판매자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한다.



표시사항		상세 설명
【包材の材質】 포장재질	外袋：PP(ポリプロピレン) 内袋：PP(ポリプロピレン), PE(ポリエチレン), PET(ペット), M(アルミ箔) トレー：PET(ペット)	내포장/외포장/용기에 관한 재질을 성분함유율에 따라 반드시 순서대로 기재해야 한다. 재활용마크는 반드시 지정된 마크를 사용해야 한다.
<p>ご注意 / 주의</p> <p>※ 本製品で使用している乾のりは、甲殻類(えび・かに等)が混ざる養殖法で採取しております。</p> <p>※ 本 제품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조김은 갑각류(새우, 게 등)이 섞이는 양식법으로 채취하고 있다.</p>		알레르기표기법에 의해 2010년부터 새우, 게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원재료의 경우, 반드시 혼입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해야 한다.
※ 乾燥剤入り / 방습제 유·무		방습제가 들어간 경우 반드시 표시한다.
※ お客様サービス係		소비자 서비스를 위한 연락처 등을 표시


【ご注意】

※ 開封後はお早めにお召し上がりください。

※ 本製品で使用している乾のりは甲殻類(えび・かに等)が混ざる養殖法で採取しております。

※ 製法上、形がふぞろいだったり、穴や縮みがありますが、品質には問題ありません。

※ 本商品は、油を使用しておりますので、油滴が生じる場合がありますが、品質上問題はございません。



家族会館韓国のり3P

名 称	味付のり
原材料名	乾のり(韓国産)、コーン油、ごま油、食塩
内 容 量	板のり3.375枚分(8切9枚3P)
賞味期限	枠外右側および個装袋に記載
保存方法	直射日光・高温多湿を避け、なるべく冷暗所に保存してください。
製 造 者	株式会社シン・インターナショナル 〒340-0808 埼玉県八潮市緑町1-32-6

※本商品は、韓国産の海苔に日本で味付けをしたものです。

＜伝統のりとは＞

日本の全形海苔よりも少し大きめの、味も香りもよい海苔に、ごま油や塩で味付をする伝統的な製法で作る海苔のことです。

味付後にもう一度焼き上げたことにより、より一層の風味や香ばしさをお楽しみいただけます。

商品には万全を期しておりますが、お気付きの点がございましたらお手数ですが、下記お客様サービス係までご連絡下さい。

お客様サービス係
フリーダイヤル ☎0120-306-730

「包装の材質」

- 外袋：PP(ポリプロピレン)
- 内袋：PP(ポリプロピレン)、PE(ポリエチレン)、PET(ペット)、M(アルミ箔)
- トレー：PET(ペット)

[표시사항 실제 사례]

※ 밑줄 친 부분에 2010년부터 새우와 게에 대한 알레르기 표시사항을 표시하였다.

나. 조미김의 포장 규격

가공김의 최소규격은 조미김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 규약 실행규칙(2006년 6월 2일) 제4조에 의하면 가공김의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장김(전형)의 재단을 12절까지로 하고 1봉지의 내용량에 대해서는 다음에 정해진 대로 한다.

- 작은 봉지 포장물의 1봉지의 내용량은 5장 이상으로 한다.
- 전장김(전형)의 1봉지의 내용량은 5매 이상으로 한다.

다. 조미김 표시사항의 위반 사례

1) 고급품, 우량품의 과대 표시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하지 않고 특선, 극상, 고급, 우량 등 해당 상품의 품질이 다른 상품보다 매우 우수한 것처럼 오인 될 우려가 있는 표시(고급품, 우량품 등)

2) 돌김 표시

조미김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 규약 제7조 4항 부당표시의 금지에 의해 자주 적발되는 표시 위반 사례로는 상품명에 [돌김] 등과 같이 기재하여 마치 해당 식품의 원재료가 압초 등에 자생하는 돌김을 사용하였다고 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해당 상품의 원재료로 돌김이 사용되지 않고 양식김이 사용된 경우이다. 따라서 원재료로 양식 김을 사용할 경우 돌김이라고 표시하여서는 안된다.

제2절 ● 막걸리의 표기사항

가. 의무 표시사항

막걸리는 제조 공정에 따라 리큐르(リキュール) 또는 기타양조주료(そのたの醸造酒)의 분류가 일반적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명칭」 「알코올 분(도수)」 「수입자 이름」 「영업소의소재지」 「사용한 식품 첨가물」 등을 소비자가 보기 쉽게 표시하는 것이 수입자에게 의무화 되어 있다.

특히 「미성년자」 음주 방지를 위해 주류 용기 또는 포장에 「미성년자의 음주는 법률로 금지 되어 있습니다」 라는 표시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 라벨 표시방법(2009년 7월 기준)

표시 사항의 위치는 용기 또는 포장의 보이기 쉬운 곳에 식별이 용이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알코올음료 등의 식품 표시의 폰트 크기는 6포인트 이상이며, 면적이 아무리 협소하여도 최소 7포인트로 표시하여야 한다.

□ 씨명 또는 명칭

개인의 경우 씨명을 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본적으로 서체는 해서체 또는 고딕체 「한자」 「히라가나」 「카타카나」로 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 명칭의 경우 읽는 법을 「히라가나」 「카타카나」로 표시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명칭의 상업등기법에 의해 등기되어 있는 문자의 종별에 따를 수 있다.

□ 원재료명

원재료와 포장재질의 경우, 실제 제품이 완성 되었을 때 함유량이 많은 순서대로 기재하

도록 하고 있다.

□ 용기의 용량

「L」「mL」「L」「ml」「リットル/리터」 또는 「ミリリットル/밀리리터」라고 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 주류의 품목

폰트의 크기는 용기의 용량에 따라 명료하게 판독이 가능한 크기 및 서체로 표기한다. 색상은 용기의 전체적인 색과 비교하여 선명하게 표기한다.

〈폰트 크기〉

(P : 포인트)

문자수	2문자	3문자	4문자
3.6리터 이상	42P / 초호	26P / 1호	26P / 1호
1.8리터 이상 3.6리터 이하	26P / 1호	22P / 2호	16P / 2호
1.0리터 이상 1.8리터 이하	22P / 2호	16P / 3호	14P / 3호
360mL 이상 1.0리터 이하	16P / 3호	14P / 4호	10.5P / 4호

〈표시 장소〉

용기종류	표시위치
병	동체, 건부 또는 구두부
캔	동체 또는 두부
통(나무통 등)	동체 또는 술통의 뚜껑

○ 허용범위

① 리큐르

- 강장제, 영양제 기타 약제 또는 그 침출액을 원료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藥味酒」 또는 「藥用酒」 표시해도 무방하다.



- 쌀 또는 쌀누룩 찹주, 간장, 미린 또는 알코올을 첨가하고 여기에 물을 추가하여 으깨서 걸러낸 것의 경우 「白酒」라고 표기하여도 무방하다.

② 기타 양조주

쌀, 쌀누룩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것으로 여과하지 않은 것은 「濁酒」라고 표기하여도 무방하다.

□ 알코올 도수

세울 구분에 따라 다음의 표기 방법 중 선택하여 표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 6도 이상 8도 미만의 경우

- ① 6도 이상 8도 미만 ② 6.0도 이상 7.9도 이하 ③ 6도
- ④ 6% 이상 8% 미만 ⑤ 6.0% 이상 7.9% 이하 ⑥ 6%

기타양조주의 경우 알코올성분 ±1도의 범위 내에서 「알코올도수 ○○도」 표시하여도 무방하다.

□ 유통기한

기재 장소를 상세히 기재한다.

예 枠外上部に記載(上：製造日、下：賞味期限)
상부에 기재(상：제조일, 하：유통기한)

□ 보존방법

보존 방법을 표시한다.

예 要冷蔵の爲、冷蔵庫にて保存して下さい。
냉장보관을 요하므로 냉장고에 보관해 주십시오

□ 원산국

원산지를 표시한다.

예 韓國 / 한국

□ 수입자

수입자/판매자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한다.

예) 美味マッコリ株式会社 (수입자명)
東京都新宿區大久保1-1-1 (주소)
TEL : 03-3333-5555 (수입자의 연락처)

□ 미성년자의 음주 방지

주류의 용기 또는 포장에 「미성년자의 음주는 법률로 금지되어 있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폰트는 6포인트(360ml 이하의 용기에 있어서는 5.5포인트) 이상 크기의 일본어로 표기하여야 한다.

※ 업무용, 내용량이 50ml 이하의 조미료용 또는 약용으로 인정된 것은 생략 가능

□ 자원유효이용 촉진법 등의 표시

알코올음료 등의 주류에 관해서는 알루미늄캔, 스틸캔, 페트병은 재료 식별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음



[알루미늄]



[스틸캔]



[종이용기]



[캡 라벨]



PET

[열가소성 플라스틱 수지]

□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

과대한 경품 첨부 판매나 소비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과대 허위 표시 등이 금지되고 있다. 법적의무를 가지지는 않지만 수입위스키 및 수입맥주의 경우는 공정경쟁



규약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준수하도록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 유기식품의 검사인증제도

유기식품의 검사 인증 제도에 의해 유기 JSA 규격에 적합하지 않으면 「유기」「오가닉」 등의 표시는 금지되어 있다.

다. 표시사항 실제 사례

未成年者の飲酒は法律により禁じられております。

●軽く振ってからお飲み下さい。●要冷蔵の為、冷蔵庫にて、保存して下さい。●濁り酒ですので沈殿物がありますが、品質には問題ございません。

リキュール ●名称:二東生マッコリ (ペットボトル) ●アルコール分:8度 ●原料:米、小麦、麴、甘味料(アスパルテーム・L-フェニルアラニン化合物) ●容量:1000ml ●賞味期限:枠外上部に記載(上:製造日、下:賞味期限) ●原産国:大韓民国 ●輸入者及び引取先:東京都足立区鹿浜6-11-13 (株)二東ジャパン



8 803065 001027

(株)二東(イードン)ジャパンお客様相談室
☎ 0120-852-208
(土日・祝日を除く、平日9時~18時)
ホームページ
<http://www.e-don.co.jp>



PET



キャップ
ラベル

お酒

제3절 김치의 표기사항

가. 라벨 표시방법

일본국내에 판매할 경우 표시는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로 정해져 있는 수입가공식품의 품질 표시기준에 따라서 일괄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표시 사항의 위치는 용기 또는 포장의 보이기 쉬운 곳에 식별이 용이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가공식품(김치)의 품질표시 기준

- 명칭 : 상품명칭을 표시
- 원재료명 : 총중량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순서로 표시
- 식품첨가물명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총중량에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순서에 물질명, 또는 보존료나 감미료 등의 경우는 “보존료(소르빈산K)”, “감미료(스테비아)”와 같이 “용도명(물질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조미료〉 맛을 내기 위해 어떤 조미료가 사용이 되었는지 표시한다. 보통 김치의 경우 글루타민을 사용한다.

※ 글루타민 : 아미노산의 하나인 글루탐산의 아미드로 1883년 사탕무의 즙액에서 발견하였다. 포유류 혈액 속의 아미노산의 주성분으로, 동식물의 단백질 속에 존재한다.

- 내용량 : 계량법에 따라 용기를 제외한 나머지 김치만의 순중량을 그램단위로 표시한다.
- 유효기간 : 수입자가 국외의 제조자가 설정하는 기한 등을 기본으로 해당식품 등의 기한의 설정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 제조자 등에게 확인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미생물 시험이나 이화학시험 및 관능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를 둔 적절한 기한을 설정하여 스스로의 책임에 대해 기한을 표시한다. 제조일로부터 3개월 미만의 경우는 년 월 일로 표기하고, 3개월 이상은 년 월로



표시한다.

- 보존 방법 : 보존 온도 및 유통기한을 표기한다.

예 要冷蔵の爲、冷蔵庫にて保存して下さい。
냉장보관을 요하므로 냉장고에 보관해 주십시오.

- 원산국명

예 韓國 /한국

- 수입자

예 美味しいKIMCHI株式會社 (수입자명)
東京都新宿區大久保1-1-1 (주소)
TEL : 03-3333-7777 (수입자의 연락처)

- 알레르기 유발물질 필히 표기 : 후생성에서는 다음의 물질 계란, 우유, 메밀, 땅콩, 새우, 게 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분류하여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알레르기표기법에 의해 2010년부터 새우, 게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원재료의 경우 반드시 혼입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해야 한다.

예 ※ 本製品で使用している乾のりは甲殻類(えび・かに等)が混ざる養殖法で採取しております。
※ 본제품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조김은 갑각류(새우, 게 등)이 섞이는 양식법으로 채취하고 있습니다.

- 자원유효이용 촉진법 등의 표시 : 용기포장 리사이클법에 의해 분리 배출될 수 있는 자원에 대해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플라스틱, 음료·주류·간장 등의 PET병을 제외한 용기포장]



[음료·주류·간장 등의 PET병]

- 유기식품의 검사인증제도 : 유기식품의 검사 인증 제도에 의해 유기 JSA 규격에 적합하지 않으면 「유기」, 「오가닉」 등의 표시는 금지되어 있다.

나. 표시사항 실제 사례

□ 수입 김치

한국광장 포기김치 500g (120*80)

韓国産 はくさいキムチ 광장 포기500g	
名 称	はくさいキムチ
原材料名	はくさい、だいこん、おきあみの塩辛、ねぎ、にんにく、とうがらし、しょうが、漬け原材料(もち米粉、果糖、食塩、アミノ酸液)、調味料(アミノ酸)
内 容 量	500g
賞味期限	枠外に記載
保存方法	冷蔵(10℃以下)で保存してください。
原産国名	大韓民国
輸 入 者	株式会社韓国広場 〒160-0021 東京都新宿区歌舞伎町2-3-11 ※お客様相談係:03-3232-5400 (土曜日、日曜日、祝日を除くAM9:00~PM5:00)

韓国直輸入

熟成発酵キムチ

■ キムチは乳酸発酵食品ですので、熟成し発酵が進むと酸味が出てまいります。品質に問題はありません。

■ 開封後はなるべくお早めに召し上がりください。

대상 FNF (주) 파우치 : PE, AL, PET

제4절 ● 삼계탕의 표기사항

가. 라벨 표시방법

일본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표시는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JAS법)로 정해져 있는 수입가공식품의 품질 표시기준에 따라서 일괄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표시 사항의 위치는 용기 또는 포장의 보이기 쉬운 곳에 식별이 용이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가공식품(삼계탕)의 표시 사항

- 명칭 : 상품명칭을 표시
 - 예 홍삼삼계탕 / 紅蔘蔘鷄湯(サムゲタン)
- 원재료명 : 총중량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순서로 표시
 - 예 닭고기35%, 찹쌀4.5%, 고려인삼3%, 밤, 대추,
- 살균방법 : 레토르트 삼계탕의 경우 가압가열 살균을 해야 한다.
 - 예 살균방법 : 기밀성용기에 밀봉하고 가압가열살균
殺菌方法 : 氣密性容器に密封し、加壓加熱殺菌
- 식품첨가물명 : 조미료의 경우 “용도명(물질명)”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예 조미료(아미노산) / 調味料(アミノ酸等)
- 내용량 : 계량법에 따라 용기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물의 순중량을 그램단위로 표시한다.
 - 예 중량 800g (내용량) / 重量 : 800g (内容量)
- 유효기간 : 제조일로부터 3개월 미만의 경우는 년 월 일로 표기하고, 3개월 이상은 년 월로 표시한다.

- 보존 방법 : 보존 온도 및 유통기한을 표기한다.
 - 예 냉장보관을 요하므로 냉장고에 보관해 주십시오.
要冷蔵の爲、冷蔵庫にて保存して下さい。
- 원산국명
 - 예 한국 / 韓國
- 수입자
 - 예 美味しいサムゲタン株式會社 (수입자명)
東京都新宿區大久保1-1-1 (주소)
TEL : 03-3333-7777 (수입자의 연락처)
- 자원유효이용 촉진법 등의 표시 : 용기포장 리사이클법에 의해 분리 배출 될 수 있는 자원에 대해 표시를 한다.



[PP, PET, PA, M]

다. 라벨표시 오류 사례

- 일본에서는 유통기간 표시를 희망하나 제조일자를 표기하는 경우
- 라벨이 접착불량으로 접착본드가 밖으로 노출되거나 비틀게 부착된 경우
- 유통기간을 표시했으나 날짜가 틀린 경우
 - 예 11월은 30일까지이나 31일로 표기
- 라벨내용 현지어(가타카나) 표기 오류로 인해 소비자에 혼란을 준 경우

라. 표시사항 실제 사례

□ 수입 삼계탕 - 표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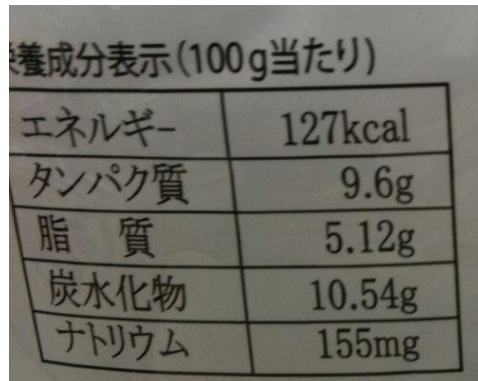
[전면]



[후면]



[표시사항]



[영양성분표시]

제5절 ● 고추장의 표기사항

가. 라벨 표시방법

일본 국내에 판매할 경우 표시는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JAS법)로 정해져 있는 수입가공식품의 품질 표시기준에 따라서 일괄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표시 사항의 위치는 용기 또는 포장의 보이기 쉬운 곳에 식별이 용이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가공식품의 경우 명칭, 원재료명, 내용량, 상미기한 또는 소비기한, 보존방법, 제조자의 씨명 및 주소 등을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다. 또 현미, 정미, 수산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품질표시기준과 개별 식품에 적용된 품질표시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더욱이 식품의 표시는 JAS법에 따라 표시하고,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기한 표시와 알레르기 표시등, 계량법에 근거하여 내용량 표시 등 여러 가지의 법률로 정해져 있다.

나. 가공식품(고추장)의 표시 사항

○ 명칭 : 상품명칭을 표시

예) コチュジャン

○ 원재료명 : 총중량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순서로 표시

예) 물엿, 쌀, 고춧가루, 보리가루, 식염, 찹쌀가루, 효소, 주청마늘, 양파, ...
水飴, 米, 唐辛子粉, 小麥粉, 食塩, もち米粉, 麴, 酒精, ニンニク, タマネギ...

○ 보존방법 : 직사광선을 피하고 냉장소에 보관해 주세요. 개봉 후에는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예) 直射光線を避け、冷暗所保存して下さい。開封後は冷蔵庫に保存し、早めにお召し上がりください。



○ 원산국명

예 대한민국 / 韓國民國

○ 내용량 : 계량법에 따라 용기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물의 순중량을 그램단위로 표시한다.

예 중량 500g (내용량) / 重量 : 500g (內容量)

○ 상미기간(賞味期限) 및 소비기한(消費期限) : 우리나라의 경우 기한의 표시는 유통기한만을 표시하는 것과 다르게 일본의 경우 아래표와 같이 2가지 기한 표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구분 방법	상미기간(賞味期限)	소비기한(消費期限)
정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한 (best-before), 이 기한을 지나더라도 바로 먹지 못하는 것은 아님.	기한이 지나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use-by date)
표시방법	3개월을 넘는 것은 「년 월」로 표시하고 3개월 이내의 것은 「년 월 일」로 표시한다.	년 월 일로 표시한다.
표시대상	소비기한 이외의 식품 예 스낵, 컵라면, 통조림 등	상미기한 이외의 식품 예 도시락, 샌드위치, 생면 등
개봉 후	개봉전의 기한을 표시하고 있어 일단 개봉 후에는 기한에 상관없이 빨리 먹어야 한다.	개봉전의 기한을 표시하고 있어 일단 개봉 후에는 기한에 상관없이 빨리 먹어야 한다.

○ 수입자

예 美味しいコチュジャン株式會社
東京都新宿區大久保1-1-1
TEL : 03-3333-7777

(수입자명)
(주소)
(수입자의 연락처)

○ 자원유효이용 촉진법 등의 표시 : 용기포장 리사이클법에 의해 분리 배출될 수 있는 자원에 대해 표시를 한다.

예



[PP,PET,PA,M]



[라벨]

다. 고추장 매운맛 표준화

농림수산물식품부와 한국식품연구원(한식연)에 따르면 정부와 식품업계는 최근 고추장의 매운맛을 5단계로 구분해 표기하는 표준 등급안(案)에 합의했다.

고추장 매운 맛의 등급화는 고추장 제조 기업들 간에 여러 번 시도가 되었지만, 각 업체의 이해관계로 인해 번번이 무산되었다가 KS 규격안으로 2010년 5월 1일 최종 고시되었다. 여기에 따르는 매운 맛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단계	한글명	영문명	GHU
1	매우 매운맛	Extremely hot	100이상
2	매운맛	Very hot	75-100
3	보통 매운맛	Medium hot	45-75
4	덜 매운맛	Slightly hot	30-45
5	순한 매운맛	Mildly hot	30미만

괄호 안의 숫자는 매운 맛을 수치화시킨 것이며, GHU(Gochijang Hot taste Unit)은 고추장의 매운 맛의 단위를 의미한다. 이것은 2011년 1월 1일부터 인증을 받은 고추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고추장의 매운맛 등급화로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다양한 소비자들에게도 매운맛에 대한 표준을 제시할 수 있어 고추장 세계화와 함께 국내외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매운맛 기호에 맞는 다양한 고추장 제품 개발이 활성화되고 고추장 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우리 전통맛의 표준화를 위해 우리나라의 대표적 매운맛 음식인 김치와 라면, 고춧가루의 매운맛 등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간장, 된장 등의 짠맛에 대한 표준화도 추진 할 계획에 있다.

문의처 농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 02-500-2099

라. 표시사항 실제 사례

□ 고추장 - 표시사항



[의무 표시 사항]



[영양성분표시]

제6절 ● 면류(냉동면, 건면, 파스타류) 표기사항

가. 라벨 표시방법

일본국내에 판매 할 경우 표시는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JAS법)로 정해져 있는 수입가공식품의 품질 표시기준에 따라서 일괄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표시 사항의 위치는 용기 또는 포장의 보이기 쉬운 곳에 식별이 용이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의무 표시사항으로 JAS법의 경우 원산지, 원재료명, 명칭, 첨가물, 상미기간, 보존방법, 제조자명, 유전자 변형 등이 있으며, 식품위생법의 경우 알레르기물질, 첨가물, 상미기간, 보존방법, 제조자명, 유전자 변형 등이다.

나. 가공식품(면류)의 표시 사항

- 명칭 : 내용을 표시한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
 - 예 냉면 / 冷麵
- 원재료명 : 식품첨가물 이외의 원재료와 식품첨가물을 분류하여 각각의 원재료에 포함되는 총중량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순서로 표시
 - 예 면 : 소맥분, 감자전분, 주청, 식염
 - 소스 : 소추가루, 정백당, 물엿, 양파, 마늘, 초, 깨, 배즙.....
- 내용량 : 계량법에 따라 용기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물의 순중량을 그램단위로 표시한다.
 - 예 중량 440g (면160gX2, 소스 60gX2)
- 유효기간 : 소비기간 또는 상미기간을 기입한다.
 - 소비기간 : 품질의 안전성 문제의 우려가 없는 기간



- 상미기간 :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간

○ 보존 방법 : 식품의 특성에 따라 보존 온도 및 유통기한을 표기한다.

- 예 1. 냉장보관을 요하므로 냉장고에 보관해 주십시오
- 예 2. 직사광선을 피함, 상온보관, 10도 이하에서 보관 등

○ 원산국명 : 가공식품을 제조 수입한 경우에 표시함.

예 한국 / 韓國

○ 수입자 : 수입자 등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를 기입

- 예 美味レイメン株式会社 (수입자명)
- 東京都新宿區大久保1-1-1 (주소)
- TEL: 03-3333-7777 (수입자의 연락처)

○ 자원유효이용 촉진법 등의 표시 : 용기포장 리사이클법에 의해 분리 배출될 수 있는 자원에 대해 표시를 한다.



[외장 : PP, 내장 : NY, LLDPE, 트레이 : PP]

다. 라벨표시 오류 사례

- ① 일본에서는 유통기간 표시를 희망하나 제조일자를 표기하는 경우
- ② 라벨이 접착불량으로 접착본드가 밖으로 노출되거나 비틀게 부착된 경우
- ③ 유통기간을 표시했으나 날짜가 틀린 경우
 - 예 11월은 30일까지이나 31일로 표기
- ④ 라벨내용 현지어(가타카나) 표기 오류로 인해 소비자에 혼란을 준 경우

라. 표시사항 실제 사례

□ 제품 표시사항



[전면]



[후면]

名 称	초콜麺 마일드	
原 材 料 名	【麵】 小麦粉, じゃが芋でん粉, 酒精, 食塩 【ビシメソウ】 唐辛子, 精白糖, 水飴, 玉ねぎ, にんにく, お酢, 胡麻, 梨エキス, 牛肉エキス, 乾燥ネギ, パプリカ, 緑茶エキス	栄養成分 表示 製品1食当たり(220g) エネルギー 539kcal たんぱく質 13g 脂質 0.3g 炭水化物 121g ナトリウム 480mg
内 容 量	440g(麵180g×2, ソース60g×2)	賞味期限 欄外に記載
保 存 方 法	直射日光及び高温多湿の場所を避けて保存してください。	
輸 入 者	(株) 超サラン 日本支社 〒048-446-6079 千葉県市川市三ツ和2丁目36-17	本品の原材料に使用されているアレルギー物質(特定原材料7品目)を○印で表しております。 小麦 そば 卵 乳 落花生 えび かに ○
製 造 者	(株) 超サラン	原 産 国 韓国

注意 ※内袋を開ける際には、飛び散りやこぼれ等に充分ご注意ください。
 ※開封時に切り口で手を切らないようご注意ください。
 ※開封後は、お早めに召し上がりください。
 ※調理の際は、熱湯をしますのでやけどには充分お気をつけてください。
 ※本品は、新鮮さを保つため酒精を使用しております。
 ゆでる時に蒸発しますので、安心して召し上がりください。
 お問い合わせ先 ☎ 048-446-6079

外袋:PP
 内袋:NY,LLDPE
 トレー:PP

8 802039 352035

※物とをときは、お住まいの自治体の区分したがつてください。

[의무 표시사항 및 영양성분 표시]



제4장 >>> 기타사항

Korea Agro-Fisheries Trade Corporation

제1절 ● 김 시장의 최근 트렌드

일본김의 총 수요량은 약 90억장이고 한국김의 총 수요량은 약 60~70억장으로 추정되고 있음

일본김은 선물 문화의 변화로 인한 소비 감소와 삼각 김밥이나 말이용 김밥 같은 획일적인 먹는 방법으로 인해 수요가 줄어 듦

한국김은 밥 반찬용만이 아닌 아이들 간식거리, 스낵, 안주 등으로 시장 규모를 넓혀가면서, 한국으로 여행 온 여행객들과 비즈니스용 선물로써의 김 선호도를 높여 가고 있음

실제 일본 시장에서의 한국김은 핸디캐리로 3억장~5억장 정도가 시장에서 수요되는 것으로 보임

현재 도시락(재래김 3P)의 시장이 활성화됨으로써, 라이센스가 상사할당A의 역할 증대로 더 많은 조미김이 들어오고 2015년까지 12억장을 소진하도록 2006년 1월 20일 국가간의 협약이 있었으므로 점점 더 시장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다

조미김과 더불어 자반 등의 상품은 기름 혹은 소금 등의 원재료를 여러가지 첨가시켜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므로 새로운 상품의 출현을 기대할 수도 있음

제2절 ● 맥걸리 시장의 최근 트렌드

일본의 주류 수입시장 규모는 연간 20억달러 이상이다. 한국 술의 일본 수입시장 점유율은 맥주와 소주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04년 6.8%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2007년 5.3%, 2008년 6.2%로 다소 주춤했다.

그러나 경기불황으로 일본의 전체 주류 수입액이 2008년 23억5000만달러에서 2009년 20억9000만달러로 급감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술 수입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이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입대상국 순위에서 10년 전 5위에서 미국, 이탈리아 등을 제치고 3위로 올라섰다.

이처럼 우리 술의 일본시장 점유율이 높아진 것은 맥걸리와 제3맥주의 힘이 컸다. 한식에 매우 잘 어울리는 맥걸리와 제3맥주를 포함한 국산 발효주는 지난해 일본 발효주 수입시장 점유율 61%를 차지하는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맥걸리는 일본에서 한류 열풍에 힘입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10년 전에 비해 수출액이 9배 이상 증가했고, 맥아 비율을 조정해 주세를 낮춘 '제3맥주'도 불황기 틈새시장을 성공적으로 공략하며 수출이 7배 이상 늘었다.

맥걸리의 유통은 대부분 인터넷을 비롯한 통신판매 및 대형 유통 업체 등에 납품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다.

맥걸리의 종류도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S사에서는 황기가 들어간 맥걸리를 일본에 시범 수출했는데, 건강을 중시하는 일본 소비자들의 기호와 맞아 떨어져 조기 품절되는 등 일본 내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인들의 맥걸리를 즐기는 방법은 한국을 앞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인들은 탁한 정도가 진할수록 좋아하는 반면 일본인들은 탁한 정도가 연하고 단백한 맛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맥걸리 전문 바가 생겨날 정도로 마시는 취향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알콜도수가 낮고, 피부 미용에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이 좋아하며, 한식문화 붐과 더불어 더욱 인기를 얻고 있으며, 최근에는 열처리를 하지 않은 생맥걸리가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제3절 ● 일본의 삼계탕 시장과 발전 방향

가. 삼계탕의 효능

- 동물성 식품(닭고기)과 식물성 식품(인삼, 대추, 마늘 등)이 결합된 음식으로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하며, 소화 흡수가 잘 된다.
- 인삼은 피로 회복을 돕고 체력을 증진시키고, 혈액순환을 좋게하며 빈혈을 예방하고, 위를 튼튼히 하고 소화가 잘 되게 도와 준다.
- 보통 삼계탕은 1인분(성인 기준)에 열량 780kcal, 단백질 80g, 지질 45g, 칼륨 8백mg이 들어 있는 고열량 보양 음식이다.
- 닭고기는 쇠고기 또는 돼지고기보다는 지방 함량이 낮다.
- 여름철에는 바깥의 상승된 기온 때문에 체온도 함께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부 근처는 다른 계절보다 20~30% 많은 혈액이 모이게 되어 체내의 위장과 근육에서의 혈액순환이 잘 안되게 되며 체온이 체외로만 몰리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체내의 온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서늘해진 체내를 덥혀 줄 수 있는 좋은 음식이 바로 따뜻한 성질을 가진 삼계탕이다.

나. 대일수출

일본의 삼계탕 시장은 1983년 (주)화인코리아가 대일 첫 수출을 시작으로 현재, 연간 300만불이상의 시장 규모이다. 주요 수출회사로는 (주)화인코리아, (주)하림, (주)마니커 등으로 대일 수출의 90%을 차지하고 있다.

□ 주요제품 : 레토르트 삼계탕 , 냉동 삼계탕, 삼계탕육(원료육)

□ 특징 : 삼계닭

- 한국토종닭과 육계닭의 잡종(학명없음) 삼계탕 전용 닭으로서 한국에만 있음

- 현재는 가공품으로서 세계각국에 수출되어 한국음식을 알리는 주된 상품이기도 하다.
- 최근, 한류영향 등으로 한국 방문시 필수코스로서 삼계탕 전문점에서 맛을 경험한 일본인이 리피터로서 많이 찾게 되어 꾸준히 성장하는 상품이기도 하다.
- 한인타운의 유통점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소매점(통신판매등) 일반식당(삼계탕전문점) 등에서도 많이 찾고 있다.

다. 수출 애로사항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발생지의 닭고기 사용이 일정기간 금지됨에 따라 삼계탕용 닭고기 확보에 어려움 발생
- 한국인 기호에 맞추어 개발된 삼계탕이어서 해외 현지 소비자의 만족도 충족 문제 발생
- 도매가에 비해 소매가격이 높아 일반소비자 구입부담 발생

□ 기타

- 규격이 단일화되어 있어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 레토르트 제품의 경우 본래 맛의 전달이 미흡하다.
- 냉동식품의 경우는 조리시간이 오래 걸린다.

라. 수출확대 방향

- 삼계탕의 건강기능성 및 안정성 부각
 - 보양음식으로서의 기능성 홍보, 레토르트제품의 경우 AI와 무관함을 강조
- 현지 소비자의 기호도 조사에 따라 삼계탕의 현지화 추진(제품개선)
 - 용량을 다양하게 한다.
 - 뼈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시킨 제품을 개발한다.



- 매체홍보 및 판촉행사를 통해 인지도 강화
 - 삼계탕에 대한 인지도가 약한 만큼 삼계탕을 현지인에게 알리는 작업이 필요
-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개선을 통해 현지화 추진
- 일본은 세계 최고의 고령화 사회인 만큼 건강,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 건강 지향성 소비는 현재 주목받고 있는 일본시장의 트렌드 임.

제4절 ● 일본의 고추장 시장과 발전 방향

가. 대일수출

한국에서 수입형태는 CJ, 대상, 샘표식품, 신송식품 등 제조업체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와 지역별 전문 업체에 의한 소량 다품목 형태로 수출되는 경우가 있다.

〈수출동향 및 현황〉

(단위 : 톤, 천불)

2006		2007		2008		2009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1,449,346	3,222,434	1,483,339	3,367,739	950,219	2,323,889	1,571,826	3,586,061

국가별로 고추장은 미국·일본·중국으로 주로 수출이 되고 있다.

〈판매동향〉

- 기존의 범용적인 고추장에서 벗어나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맛과 용도를 다양화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 예) 매운고추장, 쇠고기 볶음고추장, 찌개용 고추장, 비빔밥 고추장
- 제품의 다양성 외에 최근에 사용 편리성과 품질 보존성 증대를 위해 다양한 용기의 제품 또한 출시되고 있음
 - 예) 보존력이 뛰어난 Eval용기, 이동과 보관이 편리한 간편형 용기 등

나. 수출확대 방향

지금까지 해외 진출은 주로 해외 교포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에 주력 했으나 향후 판매확대를 위해 현지인의 기호와 취향에 맞는 장류 개발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일반인들은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심이 높아 주재공관 등과 공동으로 지역의 오피니언리더, 행정기관,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우수한국식품 전시 및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한국식품 인지도 상승과 함께 실소비와 직결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바이어들의 불만 중 계약을 하려고 해도 공급가격의 변동이 심하고 물량의 안정적인 확보가 보장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것이 수출 중단이 주요사례가 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요구 된다.

일반소비자들의 수입산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제거하고 타국산고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TV, 신문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안정성 홍보가 가장 큰 역할을 함

다. 수출확대 저해 요인

- 경기 불황 : 현재 일본의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어 일본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열게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 모조품 성행 : 모조품의 제국인 일본에서 우리 회사와 유사한 소스를 만들어 저렴하게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
- 통관 절차가 복잡하다.
- 표기법 : 2009년 CODEX에 Gochujang으로 등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Korea Hot Pepper paste, Korean Red Pepper Paste, Kochujang Sauce 등 일본내 판매되고 있는 고추장의 표기법이 일부 회사가 달라서 일본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 조리법 :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고추장을 이용한 음식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고, 맛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막상 어디에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음식점이 아닌, 가정집에서 할 수 있는 요리법은 거의 알지 못한다.
- 발효식품 : 건강에 좋다는 큰 장점을 지닌 발효식품이지만 제품 내부에서 발효되면서 가스가 차 외관상 부풀어 오르는데, 잘 모르는 일본인들의 걱정을 사기도 한

다. 이는 곧 일본 소비자들이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여기며, 맛과 품질에는 하자가 없음에도 클레임에 많이 걸리게 하는 요소이다.

라. 최근 트렌드

우리나라 전통 식품으로 타국산과의 경쟁이 없는 고추장은 미국, 일본 등의 교포 시장을 중심으로 수입유통이 되고 있지만, 비빔밥, 떡볶이 등의 전파로 일본 현지인의 수요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매운맛의 국제 표준화를 시행함으로써 매운맛에 민감한 일본인들도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서 고추장의 인기는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류 붐으로 인해 평일 낮에도 동경의 한인타운에는 한국식당 및 연애인 관련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일본인 여성들로 붐비고 있으며, 귀가 시 한국식품 슈퍼에 들러 장을 보고 가는 장면을 자주 보게 된다.



제5절 ● 면류 시장의 최근 트렌드

약 1조엔에 달하는 일본내의 냉면시장은 갈수록 성장 추세에 있으며, 야끼니꾸에서 후식의 개념으로 먹던 냉면이, 슈퍼 등을 통하여 각 가정으로 판매되며, 냉면을 부식 또는 주식으로 인식하는 일본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일본시장에서의 쫄면은 이름조차 생소한 제품이나, 한류붐에 힘입어 주부 계층의 높은 호응을 받으며, 매년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예) 관동지역 및 전국에 약 130개의 매장을 가진 KALDI란 커피 및 수입식품 전문 판매점은 2009년부터 면사랑 쫄면을 판매하기 시작하여, 첫째 약 500박스(5월~8월 4개월간 한정판매) 금년에는 약 800박스를 판매하는 높은 성장세를 보였고, 내년에는 약 1500박스를 예상하고 있다.

한국에서 수입된 냉면의 유통구조를 보면, 업무용이 약 80%, 유통용이 20%정도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냉면을 취급하는 회사들은 앞으로의 소비 성향에 따라 유통용을 늘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일본시장에서 냉면류 시장은 한국의 경우처럼 높은 폭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6절 ● 자료원 및 관련 웹사이트

가. 김의 자료원 및 관련 웹사이트

- 소비자청 <http://www.caa.go.jp/index.html>
 - 식품표시에 관한사항 JAS법,
- 농림수산성 <http://www.maff.go.jp/index.html>
 - 김 수입할당에 대하여
 - 조미김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 규약 실행규칙 2006년 6월 2일
 - 가공식품 품질표시기준(2006년도 농림수산청 공지 제513호)
- 후생노동성 <http://www.mhlw.go.jp/>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1948년도 후생성령 제23호)
- 경제산업성 <http://www.meti.go.jp/>

나. 막걸리의 자료원 및 관련 웹사이트

- 세관 : <http://www.customs.go.jp/>
 - 관세법, 관세정률법, 관세 잠정조치법
- 재무성 국세청 주세과 단체 기업계 : <http://www.nta.go.jp/>
 - 주세법, 주세의 보전 및 주류업 조합에 관한 법률
- 소비자청 : <http://www.caa.go.jp/index.html>
 - 식품표시에 관한사항 JAS법
- 경제산업성 환경기술 환경국 리사이클 추진과 : <http://www.meti.go.jp>
 - 자원 유효이용 촉진법(리사이클법)



- 용기포장 리사이클법

-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식품안전부 기획정보과 : <http://www.mhlw.go.jp/>
- 주세법 : <http://law.e-gov.go.jp/htmldata/S28/S28HO006.html>
- 주세법 시행령 : <http://law.e-gov.go.jp/htmldat/S37/S3SE097.html>
- 농수산물무역정보 : <http://www.kati.net/>

다. 김치의 자료원 및 관련 웹사이트

- 농수산물무역정보 : <http://www.kati.net/>
- 가공식품품질표시기준
(개정2008년 7월 23일 일본 농민조합숲수산성 고시 제 1167) :
http://www.maff.go.jp/j/jas/hyoji/pdf/kijun_02.pdf
- 식품위생법 (최종개정 : 2006년 6월 7일 법률 제 53호) :
<http://law.e-gov.jp.htmldata/S22,S22HO233.html>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최종개정 : 2008년 7월4일 후생노동령성 제126호) :
<http://law.e-gov.jp.htmldata/S23,S23F03601000023.html>
- 계량법 : <http://law.e-gov.jp.htmldata/H05/H05SE249.html>
- 일본수입식품안전추진협회 <http://www.asif.or.jp/>
- 소비자청 : 식품표시에 관한사항 JAS법 <http://www.caa.go.jp/index.html>
- 경제산업성 환경기술 환경국 리사이클 추진과 용기포장 리사이클법 :
<http://www.meti.go.jp>

라. 삼계탕의 자료원 및 관련 웹사이트

- 세관 실행관세율, 사전교시시행 : <http://www.customs.go.jp/>
- 농수산물무역정보 : <http://www.kati.net/>

- 가공식품품질표시기준
(개정2008년 7월 23일 일본 농민조합숲수산성 고시 제 1167) :
http://www.maff.go.jp/j/jas/hyoji/pdf/kijun_02.pdf
- 식품위생법 (최종개정 : 2006년 6월 7일 법률 제 53호) :
<http://law.e-gov.jp.htmldata/S22.S22HO233.html>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최종개정 : 2008년 7월4일 후생노동령성 제126호) :
<http://law.e-gov.jp.htmldata/S23.S23F03601000023.html>
- 관세청 사전 교시제도 관세율 관련 <http://law.e-gov.jp.htmldata/H05/H05SE249.html>
- 일본수입식품안전추진협회 <http://www.asif.or.jp/>
- 소비자청 : 식품표시에 관한사항 JAS법 <http://www.caa.go.jp/index.html>
- 경제산업성 환경기술 환경국 리사이클 추진과 용기포장 리사이클법 :
<http://www.meti.go.jp>

마. 고추장의 자료원 및 관련 웹사이트

- 세관 실행관세율, 사전교시시행 <http://www.customs.go.jp/>
- 농수산물무역정보 <http://www.kati.net/>
- 가공식품품질표시기준
(개정2008년 7월 23일 일본 농민조합숲수산성 고시 제 1167)
http://www.maff.go.jp/j/jas/hyoji/pdf/kijun_02.pdf
- 식품위생법 (최종개정 : 2006년 6월 7일 법률 제 53호)
<http://law.e-gov.jp.htmldata/S22.S22HO233.html>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최종개정 : 2008년 7월4일 후생노동령성 제126호)
<http://law.e-gov.jp.htmldata/S23.S23F03601000023.html>
- 관세청 사전 교시제도 관세율 관련 <http://law.e-gov.jp.htmldata/H05/H05SE249.html>
- 일본수입식품안전추진협회 <http://www.asif.or.jp/>
- 소비자청 : 식품표시에 관한사항 JAS법 <http://www.caa.go.jp/index.html>



- 경제산업성 환경기술 환경국 리사이클 추진과 용기포장 리사이클법
<http://www.meti.go.jp>
- 식품위생법에 기초한 수입규제 관세에 대한 확인내용(고객Q&A)
http://www.customs.go.jp/tetsuzuki/c-answer/imtsukan/1802_jr.htm
- 수입가공식품 자주관리에 관한 지침 (가이드라인)
<http://www.mhlw.go.jp/topics/yunyu/tp0130-1aj.html>

바. 면류의 자료원 및 관련 웹사이트

- 세관 실행관세율, 사전교시시행 : <http://www.customs.go.jp/>
- 농수산물무역정보 : <http://www.kati.net/>
- 가공식품품질표시기준
 (개정2008년 7월 23일 일본 농민조합숲수산성 고시 제 1167) :
http://www.maff.go.jp/j/jas/hyoji/pdf/kijun_02.pdf
- 식품위생법 (최종개정 : 2006년 6월 7일 법률 제 53호):
<http://law.e-gov.jp.htmldata/S22.S22HO233.html>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최종개정 : 2008년 7월4일 후생노동령성 제126호) :
<http://law.e-gov.jp.htmldata/S23.S23F03601000023.html>
- 일본수입식품안전추진협회 <http://www.asif.or.jp/>
- 소비자청 : 식품표시에 관한 사항 JAS법 <http://www.caa.go.jp/index.html>
- 경제산업성 환경기술 환경국 리사이클 추진과 용기포장 리사이클법 :
<http://www.meti.go.jp>

Ⅲ

미국

제1장 통관제도	393
제1절 통관 제도 일반	393
제2절 품목별 통관 제도	399
제3절 통관보류 및 거부사례	404
제2장 검역제도	407
제1절 검역 제도 일반	407
제2절 품목별 검역제도	410
제3절 검역불합격 및 폐기, 반송 사례	418
제3장 라벨링 규정	423
제1절 라벨링 표시사항	423
제2절 라벨링 관련 문제 및 해결사례	428
제3절 자료원 및 관련 웹사이트	430



제1장 >>> 통관제도

제1절 ● 통관 제도 일반

가. 통관근대화법에 의한 혁신적인 변화

세관의 예산과 인적자원은 제한되는 반면에 세관은 한편으로는 관세확보, 준법수준향상을 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통상촉진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관세제도와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변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간략함

- 통관절차의 자동화
- 자율적 법규준수 및 책임의 분담 : 관세절차의 당사자로서 세관은 관세법규를 이행, 집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수입자가 관세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확립, 실행, 홍보 및 안내를 해야 할 책임이 있는 반면 수입자는 합리주의적인 의무를 행사해 분류, 평가 및 기타통관행위를 자율적으로 행사 책임을 분담
- 서류보관 및 조사규정의 강화

나. 2002년 무역법 및 2006년 항만 보호법에 의한 변화

- 선별, 표적기능의 강화조치 : 9.11테러사건 직후에 CBP의 모든 대테러조치와 활동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하는 전국 규모의 국가표적센터(National Targeting Center)을 설립해서 정교한 표적방법을 개발하여 미국에 유입되는 모든 사람과 수입물품에 관한 사전정보를 분석하고 심사하여 테러위험

을 제기하는 사람과 수입물품을 표적하여 집중 반테러검사 등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

- 2002년 무역법의 343조항은 모든 수입화물에 관한 정보를 전자화하여 CBP의 AMS/Selectivity/ACS에 사전전송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CBP는 자동표적시스템(Automated Targeting System)과 Cargo Selectivity System을 통하여 사전 전송된 수입화물자료를 세관업무자료실이나 집행부서의 자료실에 집적된 정보 그리고 협력정보사회에서 얻는 전략적 정보등과 대조심사하여 무역거래의 위험성 평가와 보안위험성평가를 한 후 수입품을 고위험성, 중위험성, 저위험성으로 분류하여 검사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함
- 안보조치의 해외지역으로 확장 (pushing our zone of security outward) : 컨테이너 안보계획에 의하여 외국정부와 협력하여 검사 인력을 외국협력항으로 파견시켜서 컨테이너 화물을 미국행 선박에 선적되기 전에 표적시스템과 기타정보자료를 분석하여 테러위험이 있는 컨테이너 화물을 표적해서 확인하고 차단함
- 민간기업부문과 협력을 통한 안보조치(C-TPAT) : 최근 세관에서 계속적으로 미국의 거주하는 수입자에게 안보조치 참여 권유를 하고 있는 실정임. 일반적으로 이같은 안보조치는 다음과 같은 수요 고리인 수입자, 창고관리자, 운송주선업체, 통관사들로 연결되어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생산업체에게 적용되지 않아 미세관은 각국에 보안제도를 적용, 해외세관으로 하여금 보안을 취할 수 있도록 협력 및 중용하고 있음 [예 한국은 Authorized Economic Operator(C-TPAT와 같은 역할)에서 담당하고 있음. 지난해 C-TPAT와 한국 AEO가 MOU체결을 추진했으나 한국에 가입한 한국업체의 숫자가 미비해 추진 불가]

수입자의 보안자료를 제출의무(Importer Security Filing Requirement or 10+2) : 지난해 1월 26일 제정되어 1년간 유연적인 집행절차를 통해 단속하도록 되어 있으나 비공식적으로는 금년 5월까지 유예됨.



다. 통관절차

□ 반출신고(Entry)

□ **세관본드(Customs Bond)** : 세관본드는 국가의 관세 수입확보와 관세법류의 준수를 목적으로 규정된 제도로서 관세법류상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보증인과 연대하여 법적의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3자간의 연대보증계약으로 볼 수 있음. 즉, 세관을 수혜자로 하는 피보증인(Principal)과 보증인(Surety Company)간의 보증계약임. 피보증인은 선박회사, 보세창고업자, 보세운송업자, 기타 세관을 상대로 수입 관련사업을 운영하는 당사자들이고 보증인은 세관이 보증증권의 판매사업을 하도록 인가한 개인, 조합, 주식회사 형태의 보증회사가 됨. 본드의 유형은 1회의 통관본드와 지속적인 통관용 본드로 규정됨

□ 세관검사(Custom Exam)

- 보안검사 : ATU(Advanced Targeting Unit)에 의하여 NII(Non Intrusive Inspection) 검사가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집중검사도 실시
- 농무검사 : Agricultural Specialist에 의한 병해충 및 동물질병검역으로 Back-in (컨테이너 뒷문이 잠가져 있는 확인하는 검사)검사가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집중검사 실시
- 통상검사 : 집중검사를 원칙적으로 실시

□ **납세신고(Entry Summary)** : 수입품의 반출 후 10이내 관세납부와 더불어 납세신고를 제출

□ **정산절차(Liquidation)** : 수입 후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최종 정산조치를 함



※ 평균 소요기간은 하자 없을 시 총 5~7일 소요되며 평균 경비는 관세 외에 통관비, 운송비 등을 포함, 품대의 약 3~5% 수준

라. 관세제도 특징

1) 인삼

- 인삼제품은 식품으로 분류되나 인삼성분과 기타 성분을 포함하여 질병예방과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의약품으로 분류
- 인삼의약품의 기본 법률은 Federal Food Drug & Cosmetic Act이며, 식품과 의약품 분류기준은 HTSUS의 Chapter 30에 따르고 감독기관은 FDA임
- 소비자용으로 가공되는 분말캡슐이나 젤캡슐 등 가공제품은 주성분 외 과당류 등 추가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기타로 분류되어 통계집계가 어려운 상황임
- 인삼차는 기타 인삼함유식품에 속하고 있으나, 이 번호에는 별도 분류가 되어 있는 녹차와 홍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건조차류가 포함되어 한국산의 경우 현미차, 둥굴레차, 울무차 등 대부분의 전통차류가 포함되며 타국산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임
- 인삼음료의 경우 HS CODE 2206909090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이 번호에는 탄산음료, 우유 함유음료, 100% 과채류 음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한국산 소프트드링크도 포함되어 있음
- 인삼음료는 알코올 함량이 0.5%일 경우 주류로 구분되는데 21.1¢ /pf L의 관세와 연방 물품세(약\$3.3/g)가 부과되며 상당히 까다로운 수입절차를 거쳐야 함

2) 저산성 및 산성식품

□ 관세제도의 특징

- 열처리 및 진공포장된 식품으로 소매점에서 상온상태에서 판매할 수 있는 식품으로 이러한 식품은 중독성 물질과 유해 박테리아(Botulism) 발생가능성이 있는 식품임
- 저산성식품(LACF : Low-acid Canned food) : 열가공후 밀봉용기(금속, 유리, 플라스틱등)에 포장된 PH가 4.6이상, 수분활성도가 0.85이상인 식품으로 주스, 참치통조림 등이 해당됨
- 산성식품(AF : Acidified food) : 수분활성도가 0.85이상인 저산성식품에 산 등을 첨가하여 PH가 4.6이하로 조절한 식품으로 피클, 절임류 등이 해당됨



□ 유의사항

- 미국으로 통조림 제품 같은 저산성식품과 산성식품을 수출하려는 업체는 미국 FDA에 제조시설을 등록하고, 제조공정을 제출하여야 됨
 - FDA에서는 서류검사를 통해 등록업체에 FCE(Food Canning Establishment Number)를 교부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문제 발생 할 경우 추적조사가 쉽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함
 - FCE는 수입허가가 아니며, 단순한 수입자격 요건으로 수입통관시 FDA 검사에 대비해야 됨

□ 장애요인별 해소방안 및 제언

- FDA의 Center for Food Safety & Applied Nutrition (CFSAN)은 미국 내 유통되는 모든 가공식품, 건강보조식품, 수산물,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 실시하므로 대 미국 수출을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출 농수산식품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부터 미국통관까지의 매 과정에 필요한 FDA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자주 발생하는 식품에 대한 위반사항
 - FCE No. 부재
 - 저산성식품의 공정과정(SID No.) 미등록
- 저산성식품(LACF : Low Acid Canned Food - pH4.6 이상 수분활성도 0.85 이상)과 산성식품(Acidified Food - pH4.6 이하 수분활성도 0.85 이상)은 미국 선적 전에 다음과 같은 절차 필요
 - 밀봉포장식품 제조시설 등록(FCE Number : Food Canning Establishment Number) FDA Form 2541 등록을 하여 FCE Number 취득
 - 공정과정등록(SID Number : Submission Identifier Number)를 FDA Form 2541a(Aseptic packaging일 경우 FDA Form 2541c)을 통하여 Process Filing을 하면 FDA 검토후 SID Number 부여

3) 요구르트

□ 관세제도의 특징

- 최근 요구르트 드링크제품은 한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한 제품 가운데 하나로 응고유 함유량이 5%이하이므로 낮은 관세를 지불하고 있음
- 그러나, 응고유 함유량이 5%이상일 경우, 수입쿼터 물량의 제재를 받게 되며 셰이프가드 조치기간에는 추가관세를 지불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함

□ 관세조건

- 요거트와 같이 밀크가 일정기준(milk solid 5%이상) 첨가된 경우 Dairy product 로 취급되어 Tariff quota가 적용됨.
 - 쿼터 범위 내에는 17% 수준이나, 쿼터 이상으로 수입될 경우, 10배의 관세와 셰이프가드 기간 내 수입될 경우 더 지불할 수도 있음.
(9904.04.05~9904.05.01)
 - 일부 한국 업체들 가운데 유제품 쿼터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해 보세창고(bonded warehouse)에 보관하거나 아예 월말에 수출을 한 뒤 1월초에 쿼터를 신청 허가를 받아 수입을 하는 경우가 많음. 사실 쿼터는 1~3개월 안에 모두 소진되기 때문에 수출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쿼터량과 시기를 잘 결정해 수출하는 것이 안전함
 - 쿼터관련 의문사항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해서 직접 미국세관에 문의할 수 있음
http://www.cbp.gov/xp/cgov/trade/trade_programs/textiles_and_quotas/quota_restrict.xml



제2절 ● 품목별 통관 제도

가. 김

1) 관세율

품명	HS CODE	관세율
김 혹은 다른 해초	1212.20.0000	Free
양념 혹은 구운김	2008.99.9090	FOB의 6.4%

2) 수입조건

- 김에 대한 수입검역규정은 따로 없으며 일반적으로 생산업체 사전등록과 수입신고만 되어 있으면 수입이 가능함
- 한국에서 수입되는 대부분의 김은 소금과 기름으로 양념이 되거나 구운 가공 김이므로 6.4%가 적용되나 굽지 않거나 익히지 않은 상태로 수출될 경우에는 관세가 붙지 않음

나. 라면

1) 관세율

품명	HS CODE	관세율
일반국수(막국수)	1902.19.20.90	Free
익힌국수(라면)	1902.30.00.60	FOB의 6.4%

2) 수입조건

- 라면에 대한 수입검역규정은 따로 없으며 일반적으로 생산업체 사전등록과 수입 신고만 되어 있으면 수입이 가능함
- 그러나 일반국수는 익히지 않은 국수지만 라면은 스팀을 한 국수이기 때문에 익힌국수로 세관에서는 인식하고 있어 FOB가격의 6.4%를 지불해야 함

다. 커피믹스

1) 관세율

품목명	H.S.번호	관세율
설탕함유량이 10%이하	210212,58,00	30,5 ¢ /kg+8.5%
설탕함유량이 10%이상일 경우	9904,17,56,00	30,5 ¢ /kg+8.5%+세이프가드세금

2) 수입요건

- 커피믹스에 대한 수입검역규정은 따로 없으며 일반적으로 생산업체 사전등록과 수입신고만 되어 있으면 수입이 가능함
- 세이프가드가 발동시 믹스의 설탕 함유량이 10%이상일 경우, 관세 외에도 세이프가드세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므로 주의를 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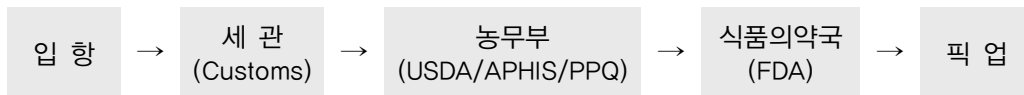
라. 인삼

1) 관세율

H.S. 번호	제품종류	관세율
1211200020	인삼뿌리(재배), 홍삼뿌리 [슬라이스/가루 등 모두 포함]	Free
1211200040	인삼뿌리(야생)	Free
1211909190	인삼잎, 줄기	Free
1302194020	인삼, 잎, 뿌리의 액즙 및 엑기스	1 %
2006009000	인삼, 홍삼절편	16%
2106909987	인삼식품(설탕, 그루코스가 섞여있는 경우)	6.4 %
2106909997	인삼식품(다른 허브류가 섞여있을 경우)	6.4%
2202909090	인삼음료	0.2 ¢ / ℓ

- 인삼 드링크의 경우, 알코올함량이 0.5%일 경우 주류(2208908000)로 구분되며 21.1 ¢ / pf L의 관세와 연방 물품세(약\$3.3/g1)가 부과

2) 통관절차



- 신선인삼(수삼)제품은 수입금지 제품(USDA Aphis의 PPQ 적용)이며, 건조 제품 등은 입항에서 픽업까지 하자가 없을시 총 5-7일 소요되며 경비는 관세 외 통관비, 픽업비 등을 포함 물품대의 3-5% 수준
- FDA에서는 서류 심사 후 Random Sampling에 의한 인삼의 농약잔류 검사를 실시하는데, 반복적으로 위반된 업체는 자동 억류대상업체(Automatic detention list)로 분류되어 면밀한 검사를 받게 됨

- 건삼은 수분이 완전히 없어야 하고, 엑기스나 뿌리인삼드링크 등 인삼제품은 알코올 함유량이 0.5% 미만이어야 함
- 알코올 함유량이 0.5% 이상인 제품은 주류로 구분되어 수입자가 ATF(Alcohol & Tobacco & Fire arms)의 수입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하며, Label & Bottle Approval을 사전에 받아야 함

마. 차

1) 허브차

H.S. 번호	제품종류	관세율
1211.90.91.80	Herbal teas and herbal infusions(single species, unmixed) 단일 허브차	Free
2106.90.99.87	Herbal teas and herbal infusions comprising mixed herbs 혼합 허브차	6.4%

2) 유자차

HS CODE	제품종류	관세율
2106.90.99.98	유자차	FOB의 6.4%

※ 일반차류는 저산성식품으로 등록할 필요는 없으나 유자차의 경우 대부분 유리병으로 되어있는 저산성식품으로 사전등록이 요구됨



바. 요구르트

H.S. 번호	제품종류	관세율
0403.10.1000	요구르트 - 건조상태로 설탕 혹은 기타감미료 혹은 과일, 견과 혹은 코코아를 첨가했는지 여부 불문	20%
0403.10.5000	그 외 - 연간 수입쿼터 물량을 넘길 경우	\$1.035/kg+17%+ 9904.04.50~9904.05.01
0403.10.9000	요구르트 - 농축하지 않은 상태로 설탕 혹은 기타감미료 혹은 향미 혹은 과일, 견과 혹은 코코아를 첨가했는지 여부 불문	17%
0403.10.9000	요구르트 - 농축상태로 설탕 혹은 기타감미료 혹은 향미료 혹은 과일, 견과 혹은 코코아를 첨가했는지 여부 불문	17%
1901.90.4200	요구르트제품으로 밀가루, 녹말, 물 등과 같은 다른 성분을 포함하고 응고유가 10%이상 함유되어있을 경우 - 설탕 혹은 기타감미료 혹은 과일, 견과 혹은 코코아를 첨가했는지 여부 불문	16%
1901.90.4300	그 외 - 연간 수입쿼터 물량을 넘길 경우	1,035/kg+13.6%+9904.04. 50~9904.05.01
2202.90.2400	요구르트 - 요구르트 드링크류로 응고유가 5%이상 함유되었을 경우 - 설탕 혹은 기타감미료 혹은 과일, 견과 혹은 코코아를 첨가했는지 여부 불문	17.5%
2202.90.2800	그 외 - 연간 수입쿼터 물량을 넘길 경우	23.5 ¢ /liter+9904.04.50~ 9904.05.01
2202.90.9090	그 외 요구르트 드링크 혹은 요구르트 드링크류로 응고유가 5% 미만 포함으로 - 설탕, 혹은 기타감미료 혹은 과일, 견과 혹은 코코아를 첨가했는지 여부 불문	0.2 ¢ /liter

제3절 ● 통관보류 및 거부사례

가. 조미김

- 얼마 전 한 업체에서 조미김(seasoned laver)을 일반김(unseasoned laver)으로 수입해오다 세관에서 문제를 제기, 수입하기 시작한 시일로부터 마지막선적까지 지불하지 않은 관세를 내게 했으며 여기에 관세의 두 배를 벌금으로 내도록 조치함

나. 라면

- 국수류 역시 관세를 지불하지 않고 수입하기 위해 라면을 일반국수처럼 표기해 문제가 됨. 라면은 튀기거나 스팀으로 익혀 수출되기 때문에 FOB의 6.4%를 지불해야 하나 일부 수입업체들이 라면을 일반국수처럼 표기해 세관에서 문제를 삼은 케이스임. 이 경우, 관세 뿐 아니라 벌금도 내야 함

다. 칼슘두유

- 두유생산업체가 FDA에서 요청하는 스케줄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저산성식품용기에 대한 사전등록을 통해 FCE번호를 교부받지 않음. 뿐만 아니라 라벨에 붙이는 영양정보내용이 부실하고 스펠링도 틀려 폐기됨

라. 해물모듬/황태채/냉동조개/냉동어묵

- 최근 가장 통관보류 사례가 늘어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살모넬라에 감염된 수산물로 알려짐. 특히, 황태채, 냉동어묵, 해물모듬 등과 같은 제품으로 냉동상태



로 수입되지만 살모넬라에 감염율이 높은 제품들로 위생처리가 되지 않거나 HACCP프로그램을 운영한 인증서 등이 없을 경우, 통관이 보류될 가능성이 높음. 과거 한국에서 수입된 쥐포의 경우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 수입하거나 한국에서 가공했다라도 리스테리아나 살모넬라에 감염된 제품이 대부분으로 통관이 거부된 경우가 많음

마. 인삼드링크

- 실온에 보관이 가능한 저산성 식품 음료류의 시설물 신고는 온라인을 통해 쉽게 할 수 있으며 품목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뒤 1개월 후에 신고번호가 부여됨. 제품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있으면 시설물신고 및 품목신고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음. 미국정부는 식중독에 상당히 민감하므로 미국업체와 수출업체 모두 같은 등록과정을 거쳐야만 함
- 인삼드링크류가 미세관에서 역류된 것은 알코올 함유량이 0.5% 이하인 경우 non-alcoholic beverage, 이상인 경우 alcoholic beverage로 분류되는데 한국 수출업체가 보낸 인삼 드링크류를 미국 FDA에서 샘플조사를 한 결과 0.8%로 나와 알코올 드링크로 분류되어 알코올 음료로 다시 등록을 해야만 함

바. 통조림류

- 기존에 수입되던 통조림류의 사이즈가 바뀌면서 신규 등록을 해야 했으나 하지 않아 통관이 지연된 사례가 있음
- 일반적으로 저산성제품은 제품의 사이즈별로 FCE와 SID번호를 발부받아야 하나 수출업체들의 경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통관이 거부됨

사. 요구르트

- 한국에서 수출되는 요구르트는 대부분 요구르트 드링크 제품으로 HS.CODE 2202. 90.9090로 분류되기 때문에 현지 통관에 큰 문제가 없었음. 특히, 유제품 함유량이 낮기 때문에 쿼터물량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관세도 낮음



제2장 >>> 검역제도

Korea Agro-Fisheries Trade Corporation

제1절 ● 검역 제도 일반

가. 미국, 한국을 청정지역으로 발표 - 법령으로 제정

미국 APHIS(동식물검역국)에서 지난 12월 이후 청정지역으로 발표했으나 다시 구제역이 발생, 미국 법률제정은 이미 마쳐진 상태였으나 발동(Activate)시기가 늦춰진 상태임. 3월 24일 한국정부에서 구제역이 종식했다고 발표해 미농무부에 이 같은 사항이 전해졌으나 4월 9일 구제역이 다시 발생해 재발동(Reactivate)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일반적으로 법령의 재발동을 위해선 약 3개월 가량이 소요됨

나. 소량의 육류 및 가금육성분 함유식품

FSIS/USDA는 VS/APHIS/USDA와 협력하여 소량의 동물성 원료를 포함한 식품일지라도 미국의 육류 및 가금육 검사기준에 합당하다고 인정된(Equivalency Assessment) 원산지 국가와 제조업체에서 만든 원료를 사용한 식품만 수입될 수 있다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

소량의 육류 및 가금육 성분으로 함유된 식품 : 비교적 소량의 닭고기류나 고기류를 재료로 사용해서 만든 식품 또는 소비자들이 전통적으로 닭고기식품이나 육류식품으로 간주하지 않은 식품으로서 미농무장관의 시행규칙에 의해 성분인 닭고기 및 육류재료가 위생적이라고 확증되며 그리고 라벨에 닭고기나 육류식품으로 표기하지 않음이 확인된 식품으로 보충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함. 즉, 기존에 수입해오던 업체들의

경우 혹은 처음으로 위와 같은 제품을 수입하려고 할 경우 수입업체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만 함

- 성분재료의 원산지 확인
 - 성분재료의 생산공장 확인
 - 합당하다고 인정된 원산지 및 생산공장 이외에서 제조한 고기류, 닭고기, 가공계란 이 최종식품의 라벨에 고기류 식품, 닭고기식품 또는 계란식품이라고 표시하지 않았음을 증명
 - 라벨에 표기된 최종식품의 공장을 확인
 - 라벨에 인조육 및 천연육 고기향 향미제가 첨가된 식품으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그 식품이 고기류, 닭고기 또는 가공계란성분이 포함되지 않음을 증명하고 더불어 모든 제출서류에는 유효한 APHIS 수입허가번호(또는 수입허가 신청번호)를 표시해야 함
- ※ 일부 업체들 가운데 재허가를 받기위해 신청 중이나 아직 허가증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적이 이미 되더라도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신청서를 통해 물품억류를 해제할 수 있음. 최근 많은 수입업체들이 이 같은 순서를 밟고 있음

다. USDA 수입허가 없이 한국에서 수입가능한 품목

Cannonball fruit, 코코아 야자열매(껍질 혹은 즙액이 없는 것), Corn smut galls(소비용의 신선한 것 또는 냉동된 것), Cyperus corm(방동 사니속), 백합구근, Maguey잎, 버섯(신선한 것), 땅콩(생것, 단 중국, 필리핀, 태국으로부터 금지된 것은 제외), St Johnsbread, 타마린드 콩 꼬투리, 송로(버섯 조미료), Water chestnut(마름), Waternut

※ 건조, 경화 및 가공 처리된 과일 및 채소류



라. USDA 수입허가 후 한국에서 수입가능한 품목

우엉뿌리, 마늘구경(건조, 상부 없는 것), 생강뿌리, 연뿌리, 호박잎, 무뿌리(상부 없는 것), Sand pear(동양배 : 현지검역 조건), 참깨잎, 시금치, 참마(MB훈증 조건), 취나물(잎, 줄기), 밤(MB훈증조건), 사과(저온+MB훈증조건), 토란뿌리(단, Guam제외), 딸기열매(단, 9.15일 이후 다음해 5.31일까지 반입되는 것에 한함), 고들빼기의 잎, 줄기, 뿌리, 더덕(뿌리), 도라지(뿌리), 쑥갓 등 국화속식물, 가지, 참다래, 상치(잎), 쑥, 양파(구근), 두릅순, 들깨잎, 냉이(잎, 줄기), 근대(잎), 양갓냉이(잎, 줄기), 감, 박과류, 파프리카

※ 냉동과일 및 냉동채소(모든 나라로부터 수입가능)

제2절 ● 품목별 검역제도

가. 인삼

1) 검역제도 (USDA APHIS)

- 수삼 : 수입불가
- 건삼류 : 수입가능하며 APHIS에 요청하는 수입허가서 불필요
- 냉동삼류 : 수입가능하나 APHIS에 수입허가서를 신청해야만 수입업체 통관가능함
- 엑기스, 차류, 음료류 : 검역이 불필요한 제품임.

2) US FISH AND WILD SERVICE (F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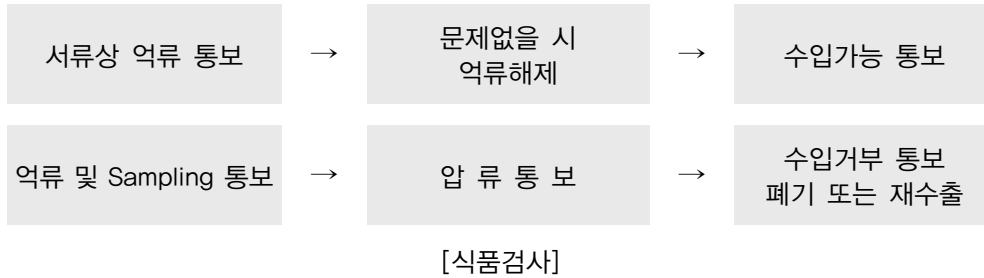
- 야생 Ginseng (*Panax Quinquefolius*) : 일반적으로 American Ginseng을 의미하며 수출시 Export Permit을 요구하며 CITES(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Appendix2에 해당하므로 CITES에서 지정한 항구로만 수입이 가능함
- 야생 Ginseng (*Panax Ginseng*) : 러시아 이외에 한국이나 중국산은 CITES의 제재를 받지 않으나 러시아산 인삼의 경우, CITES를 통해 수출국가로부터 수출허가가 필요하며 CITES가 지정한 항구로만 수입가능함
- 신선 야생삼 등 50 CFR 24 규정에 의한 식물보호대상 미국삼은 미 농무부가 지정한 항구를 통해서만 수출되며, 선적시마다 APHIS 검역관의 인삼 및 관련 서류 검사 필요
 - 지정항구 : 조지아 주의 아틀란타, 일리노이 주의 시카고, 메릴랜드 주의 볼티모어, 미주리 주의 세인트루이스, 위스콘신 주의 밀워키

3) FDA

- 일반적으로 서류 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통관이 되나 식품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지



적이 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



□ 샘플링 소요기간 및 검사방법

- 식품검사 : 짧게는 15~30일 소요
- 검사방법 : 직접 FDA에서 Sampling 검사를 함

□ 서류로만 역류한 뒤 압류 통보시

- 수입자가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므로 FDA에서 인증한 연구소에서 농약잔류량 검사결과를 통해 항변 가능함
- 소요시간 : 1~3개월 소요

□ 검사시 중점 검사내용

- 식품검사 : Physical Hazard, Biological Hazard, Chemical Hazard
- 과거 대미 인삼류 수출물량에서 잔류농약(프로시미돈, PCNB)검출로 통관보류 사례가 발생하였음

4) 인삼 농약잔류량 검사 규정

□ 법적 근거

- CFR, Title 40, Part 180 Tolerances and Exemptions from Tolerances for Pesticide Chemicals in Food.

□ 인삼 농약 잔류량 허용한도 (EPA Tolerance/FDA Enforcement Level)

농약	허용한도(ppm)	만기/해지일	관련규정
Diazinon	0.75	-	§180.153
Iprodione	2.0(신선) 4.0(건조)	-	§180.399
Metalaxyl	3.0	-	§180.408
Aluminum tris 2,4D	0.1(신선뿌리) 1.0/0.1	-	§180.415
BHC	0.05		§108.34
Boscalid	0.70		§180.589
DCPA	2.0		§180.185
Mancozeb	2.0	12/31/2010	§180.176
Chlorothalonil	4.0		§180.275
Metalaxyl	3.0		§180.408
Dimethomorph	0.90		§180.493
Fenhexamid	0.3		§180.553
Zoxamide	0.06	12/31/2010	§180.567
Fluazinam	4.5		§180.574
Carfentrazone-ethyl	0.10		
Clethodim	1.0		
Chlorothalonil	0.1		
(Zeta-)Cypermethryn	0.1		
DCPA	2.0		
Fenhexamid	0.3		
Imidacloprid	0.40		
Myclobutanil	0.03		
Lindane	0.50		§108.34
(S-)Metolachlor Acetamid	0.30		
Pyraclostrobin	0.40		
Sulfosate	0.15		
Zoximide	0.06		
Thiamrthoxam	0.02		

자료 : CFR, FDA



나. 식물

1) 관련법 체계

식물검역에 관한 기본법은 식물보호법(Plant Protection Act)이며 구체적인 수입규제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해외검역공고 등을 통하여 운영됨

2) 식물보호법(7 USC, Chapter 104)

- 묘목(Nursery stock)의 경우 농무성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수출국에서 발행한 위생증이 미 첨부된 경우에는 수입불가(제1조)
 - 묘목 : 야외에서 재배된 화훼 묘목(Florist's stock), 교목(Tree), 관목 (Shrub), 덩굴 (Vine), 삽수(Cutting), 접목(Graft), 접수(Scion), 접아(Bud), 과수 및 관상수목의 핵자 및 종자 기타 번식용 식물 및 식물성 산물(제6조)
 - 다음의 것은 묘목에서 제외됨 : 목초종자, 채소종자, 화훼종자, 화단용식 기타 초본식물, 구근(Bulb), 뿌리(제6조)
- 상기 묘목 이외의 식물류가 수입됨으로써 유해식물 병충해의 유입우려가 있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공포함(제5조)
 - 이 때는 수입을 제한하는 품목 및 해당 국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결정을 하기 전에 공고 및 입법예고(public hearing) 과정을 거쳐야 함
- 미국에 분포하지 않거나 널리 분포하고 있지 않은 나무, 식물, 과실의 병이나 또는 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묘목이나 기타 식물에 대하여 병해충 발생 국가로부터의 수입금지를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공포함(제7조)
 - 공고과정은 제5조의 내용과 동일
- 본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칙(Rule), 규정(Regulation)을 제정 공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농무성 장관에게 위임(제9조)

3) 풍란(난초)

H.S. 번호	제품종류	관세율
0602902000	Orchid Plants	Free

- USDA PPQ Clearance
 - 수입허가서 PPQ form 587 신청
 - 식물보호허가서 PPQ form 621
 - Freedom from soil & growing media (CITE Appendix3)
- Packing material : Ground moss perlite, pulp free coconut or vegetable fiber, wood cork, wood shaving, sawdust, rockwood buckwheat
 - Phytosanitary Inspection Certification
 - 여행객이 개인짐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수량 : 12개까지 가능, not subject to prohibition and/or special restriction

4) US FISH AND WILD SERVICE (FWS)

- CITE Export Permit required
- CITE Plant Inspections Station으로만 들어와야 함. 예를 들어 워싱턴DC는 불가능함
- 심비디움, 덴드로비움과 같이 양란과 접목한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됨

다. 요구르트

검역조건

함유량의 관계없이 미농무성 산하의 동물검역소의 허가를 받아야 됨

- 밀크라 함은 전유 혹은 탈지유(일부 혹은 완전탈지한 것)를 말한다. 밀크제품은 밀



크에서 얻어지는 제품으로 농축유(Evaporated milk, condensed milk, dry milk), 당분이 들어있는 밀크, 버터, 치즈, 숙성밀크 등임

□ 낙농품류

미국 수출입 종합편람 제4류(낙농품)의 소호주(additional US notes)와 밀크를 원료로 만들어진 HTS(harmonized tariff schedule) 2202.90.10~2202.90.28로 표현되는 밀크가 일부 포함된 제품을 의미함. 여기에는 밀크류 혹은 크림으로 (흰초콜릿과 비식용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제외) 유지방 중량이 제품의 5.5%이상이 되는 제품 즉, 상업용으로 생산되는 제품(제18류 소호주 2와 소호주 3에 나온 수입쿼터제외)임 ; 건조밀크, 유장, 혹은 버터밀크로 (0402.10, 0402.21, 0403.90, 0404.10) 단일재료와 혼합한 재료의 유지방중량이 5.5%이하인 제품으로 보통 다른 재료들과 혼합되는 제품이나 설탕첨가 여부를 불문; 유지방을 첨가한 제품으로 전체중량의 응고유가 16%이상 들어있어 차후 가공을 위하여나 직접소비제품이 아닐 경우임

□ 제외

식료품 가운데 밀크 혹은 밀크제품의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소량 포함(예를 들어 건조밀크-밀크지방건조 그리고 밀크비유지방 건조물이 평균 5% 미만) 혹은 지금까지 직접소비제품으로 밀크식품 산업역사에서 낙농품으로 여겨지지 않을 경우라고 할 수 있음

예) sugar confectionary, non-sugar confectionary로 빵, 비스킷, 스낵, 전병, 와플과 같은 제품으로 한국 수의과학검역원에서 Health Certificate이나 미국내 동식물검역소산하의 동물검역소(V/S)에서 수입허가(import permit)을 받을 필요는 없음

□ CBP(국토안보부) 통과요건 : 요구르트는 종류에 따라 쿼터에 따른 관세를 적용받음

□ VS/APHIS 검역요건

① 관련규정

- Animal health protection act(7USC Ch,109)
- VS/APHIS regulations (9CFR part1-94)
- Animal Product Manual

- ② IMPORT PERMIT VS 16-3 필요 : 밀크가 조금이라도 함유된 모든 제품은 즉, 낙농품 혹은 비낙농품이라고 해도 (설탕이 들어간 제과나 비캔디제과 제외) Veterinary Service(VS)의 수입허가를 받아야만 함

□ FAS 검역요건

- ① 일부 요구르트, 요구르트류, 요구르트 드링크는 수입쿼터에 제한이 있음
- ② 수입허가 불필요

□ FDA 검역요건

- ① 관련규정
 - Federal Import Milk Act (FIMA : 21 USC Ch.4, Subchapter IV)
 - FDA Regulations (21CFR Part 131 – Milk and cream and part 1210–FIMA regulations)
 - Food, Drug, and Cosmetic Act (21 USC Ch. 9)
 - Compliance Policy Guide
- ② FIMA 수입허가는 불필요

라. 유제품

- 아이스바 등 밀크가 일정기준(fat solid 5.5% 이상) 이상 첨가된 경우 Dairy product로 취급되어 Tariff quota가 적용됨
- 쿼터 범위 내에는 17% 수준이나, 쿼터 이상으로 수입될 경우, 10배의 관세가 적용됨
- 아이스크림의 경우, HS CODE는 2105.00.40으로 아이스크림 연간 수입할당량을 4,105톤임. 수입할당량을 초과하는 경우 아이스크림 관세가 50.2 ¢ /kg+17%가 되며 셰이프가드 적용을 받아 kg당 인보이스 가격이 30 ¢ 이상 50 ¢ 이하일 경우 kg당 66.7 ¢ 를 더 지불해야만 함



□ 제외

- 식료품 가운데 밀크 혹은 밀크제품의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소량포함(예를 들어 건조밀크-밀크지방건조 그리고 밀크비유지방 건조물이 평균 5% 미만) 혹은 지금까지 직접 소비제품으로 밀크식품산업역사에서 낙농품으로 여겨지지 않을 경우라고 할 수 있음
- 예) sugar confectionary, non-sugar confectionary로 빵, 비스킷, 스낵, 전병, 와플과 같은 제품으로 한국 수의과학검역원에서 Health Certificate이나 미국내 동식물검역소산하의 동물검역소(V/S)에서 수입허가(import permit)을 받을 필요는 없음

□ 참고 웹사이트

<http://www.usitc.gov/publications/docs/tata/hts/bychapter/802C22.pdf>
<http://www.usitc.gov/publications/docs/tata/hts/bychapter/0802C04.pdf>

마. 신선과실 및 채소류

□ 참고 관련법규 및 매뉴얼

- 7 CFR 319.56-3
 - 7 CFR 319.56-4
 - 7 CFR 305 - Phytosanitary Treatment(식물위생검역)
 - Fruit and Vegetables Import Manual(과채류수입매뉴얼)
 - Treatment Manual (검역매뉴얼)
 - 수입허가증을 요구하지만 일부 특정 과채류에 대해서는 요구를 안하기도 함. 미농무성에서 일반적으로 한국산 과채류 수입업체에게 요구하는 수입허가서는 일반허가(General Permit)와 품목별로 미리 수입허가를 요청하는 특정 과채류에 대한 수입허가서(fruit and vegetable import Permit)가 있음
 - 수입국가에 따라 훈증을 요구하기도 함
- http://www.aphis.usda.gov/plant_health/permits/downloads/forms/ppqform587.pdf
 ☞ 수입이 가능한 식품은 수입자가 수입허가서를 사전에 신청해야 함. 온라인이나 메일로 모두 가능함
- http://www.aphis.usda.gov/plant_health/permits/downloads/forms/ppqform621.pdf
 ☞ 난, 천마, 선인장 등과 같이 CITES Appendix 2와 3에 기재된 경우 반드시 냉동, 가공, 건조, 신선상태의 상관없이 위의 허가서를 구비해야 함

제3절 ● 검역불합격 및 폐기, 반송 사례

가. 어묵 (fish cake)

최근 FSIS(농무성산하 식품안전검사소)에서 불시에 마켓을 찾아 단속을 실시 한국산 어묵가운데 과거에 돼지고기가 섞인 어묵을 판매했던 한국 수출업체를 발견, 농무검사관(AQI)에서 수입시 인보이스 상에 있는 내용물 리스트 외에도 포장지에 있는 내용물 리스트를 요청함. 어묵생산업체는 과거에 돼지고기가 섞인 어묵을 수출한 적이 있어 FSIS의 타겟이 되어 있었던 점을 미루어 구체적인 자료제출을 요청했으나 이후에 수출하는 어묵에는 돼지고기를 섞지 않아 검역문제를 해결함

나. 한국산 버터와플

보통 전병과자로 불리는 한국산 과자와 관련해 미농무성에서 Veterinary Service(VS : 수출되는 가축 및 가공품의 위생검사 증명서 발급 등, 수입 가축 및 가공품의 검사를 통한 국내 가축의 건강보호)의 허가증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나 Non-Candy Confectionary제품 가운데 우유, 버터, 계란이 포함되더라도 구운제과류, 국수류, 마요네즈는 허가증이 필요 없다고 Animal Product Manual에 명시되어 있다고 미농무성 검역관에게 설명 수입역류를 막을 수 있었음

다. 소량의 육류 및 가금육 성분으로 함유된 식품

소량의 육류 및 가금육 성분으로 함유된 식품과 관련 한 시즈닝소스 수입업체는 소량육류 및 가금육이 포함된 제품 수입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 Veterinary Service에서 발급하는 허가증이 재발급되지 않아 기다리고 있었음. 그러나 이미 물품이 도착해 미농무성에



이미 재 신청했다는 신청서류를 제출해 검역통관이 가능했음. VS Permit이 발행되지 않더라고 기존에 거래했던 업체들이 생산 및 가공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통해 검역이 가능함

라. 한국무

한국에서 제주무가 실린 선적물에서 병충해가 발견된 경우로 현지에서 훈증소독을 실시 검역을 통과했으나 자칫 한국무 수입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었던 경우임

마. 한국산 조(Millet)

일반적으로 조의 경우, 1쿼트 당 껍질을 벗기지 않은 조가 28개 이상 발견될 경우, AQI로부터 수입거절을 당할 수 있음. 일부 농무관 직원들 가운데 조를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곡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으나 관세사를 통해 제품에 하자가 없음을 클레임해야 함

바. 한국산 인삼

- '98년 중반부터 갑자기 FDA가 수입 인삼류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시작 수입화물을 장기간 보류
 - FDA가 주시하고 있으며 또 고려인삼에서 검출되는 잔류농약은 PCNB (Quintozene) 와 Procymidone임
 - 품목별로 비교적 인삼함량이 적은 (10% 미만) 차나 음료수류는 위 검사에서 배제되고, 주로 뿌리, 가루, 엑기스 등에 검사를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미국에서 인삼의 잔류농약 함유가 문제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부터이며 미국 재배인삼(American Ginseng)에서 시작하여 수입인삼으로 파급된 것으로 사료됨

- 주요 사례는 '98년 10월 인삼분말 캡슐이 최초로 procymidone과 PCNB 함유로 수입경고된 이후 여러 제품들이 역류되거나 반송
- 현재까지 뿌리제품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문제점이 있어 여러 역류사례가 발생되고 있음
- '98년 당시 농약함유로 수입경고 리스트에 오른 국가는 한국, 캐나다, 홍콩, 중국 등 주요 인삼수출국가임

1) 문제점

- 상기 잔류농약 기준에 없는 항목은 0%의 농약 잔류량을 준용
- 인삼에 대한 해당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설정하려면 관계자(수입업자 또는 관련기관)가 탄원서(petition)를 제출하여 EPA에서 승인되어야 가능(탄원 시 반영 불투명 및 탄원 후 최소한 18-24개월 예상)

2) 2002~2004년 FDA 인삼 농약 잔류량 조사결과

□ 조사배경

- FDA는 2002년에서 2004년까지 수입산 벌크인삼과 현지생산 인삼보조식품의 농약 검출 및 샘플링조사를 따로 실시함. 생산업체를 직접 방문해 농약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은 인삼보조식품 샘플을 수집
- 수입산(캐나다, 홍콩, 중국, 한국산)과 현지산 인삼보조식품을 수집, 여기에는 건삼, 인삼분말, 엑기스, 캡슐 등이 모두 포함됨

□ 수입산 조사결과

- 총 62개의 수입산 샘플 가운데 37개(60%)가 농약이 검출되었으며 원산지는 중국(17), 캐나다(11), 홍콩(6), 한국(3)임
- 샘플 중 31개의 인삼종류는 파낙스, 아시안, 중국 혹은 한국산 인삼으로 이 가운데 20개 샘플에서 농약이 검출되었음



- 가장 많이 발견된 농약은 Pentachloroaniline, Quintozene, Pentachlorobenzene임
- 한국산은 수집한 샘플 3건에서 아래와 같이 농약이 발견되었으며 다른 수입산에서 검출되지 않은 Difenoconazole, Procymidone, Endosulfan I, Endosulfan II, Endosulfan Sulfate도 검출됨
- 한국산에서 검출빈도수가 높은 농약은 Quintozene, Pentachlorophenyl Methyl Sulfide였으며 다음으로 Pentachloroaniline, Pentachlorobenzene, Hexachlorobenzene으로 나타남

〈수입산 인삼 샘플 검출 농약 및 빈도수〉

농약	빈도수	PPM	한국산발견
Pentachloroaniline	27	0.03-5.15	2건
Quintozene	27	0.03-16.84	3건
Pentachlorobenzene	24	0.01-3.04	2건
Tecnazene	17	0.01-1.05	1건
Alpha BHC	15	0.17-1.76	1건
Delta BHC	15	0.05-5.12	1건
Hexachlorobenzene	15	0.03-1.94	2건
Pentachlorophenyl Methyl Sulfide	11	0.02-1.47	3건
DDE p,p'	8	0.02-0.67	
2,3,5,6-Tetrachloroaniline	6	0.01-0.14	
DCPA	6	0.02-0.18	
Difenoconazole	6	0.02-0.29	1건
Beta BHC	5	0.34-0.59	
DDT p,p'	5	0.03-0.09	
Lindane	4	0.70-1.27	
Procymidone	4	0.16-2.17	1건
Heptachlor Epoxide	2	0.01-0.09	
DDP o,p'	1	0.03	
Dieldrin	1	0.14	

농약	빈도수	PPM	한국산발견
Endosulfan I	1	0.16	1건
Endosulfan II	1	0.08	1건
Endosulfan Sulfate	1	0.02	1건
Pentachlorobenzonitrile	1	0.03	

사. 풍란

풍란이나 호접란의 경우 폐기나 반송사례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짐. 일부 개인적으로 소량의 풍란을 가져올 경우 뿌리에 흙이 있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음

아. 요구르트

한국에서 수입되는 요구르트는 검역문제로 폐기나 반송된 사례는 없었음. 그러나 요구르트 드링크(HS CODE 2202.90.9090)의 경우 응고유 함유량 5%이하로 유지해야 하나 지키지 않는 일부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므로 주의를 필요로 함



제3장 >>> 라벨링 규정

Korea Agro-Fisheries Trade Corporation

제1절 ● 라벨링 표시사항

가. 관련법규

- 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 of 1994(DSHEA)
- DSHEA에 근거, 건강보조식품의 라벨링 규정은 1997년 9월 23일 입안되어 1999년 3월 23일부터 효력발생
 - 현재 미국내 유통 인삼제품의 대부분이 건강보조식품의 범주

나. 라벨링 요구조건

- 성분진술 (Statement of Identity) : ● 예 “Ginseng”
- 순중량(Net Quantity) : ● 예 “60 capsules”
- 구조-기능 주장 및 진술(Structure-function claim and statement) :
“This statement has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 복용법 (Direction for use) : ● 예 “Take one capsule daily”
- Supplement Facts Panel : 일반식품의 영양분석표와 유사한 것으로 일회분용량, 활성성분 함량 등이 기재
- 기타 성분 명세 : 일반명으로 함량이 많은 것에서 작은 것 순
- 제조업체나 포장업체 또는 유통업체 이름 및 주소 : 제품에 대한 추가정보 필요시

편지를 보내기 위한 것

- 라벨에 “Dietary Supplement”라는 말을 표기

다. 포장지 앞면 라벨링 표기 발안

- 미국의 대형식품업체들이 시작한 Smart Choices Program 외에도 많은 업체들이 일반적으로 옆면이나 뒷면에 표기되는 영양분석표 내용의 일부분을 앞면에 표기하면서 일으키는 혼동사례가 발생, FDA에서 일명 Front of Package Nutrition Initiative를 발동함

※ 관련 웹사이트 <http://www.fda.gov/Food/LabelingNutrition/ucm202726.htm>

- 위와 같은 표기는 주로 앞면에 ‘low fat’(저지방), ‘high fiber’(고섬유질), ‘reduced calories’(저칼로리), ‘cholesterol free’(무콜레스테롤) 등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나 영양분석표와 일괄될 경우에는 하자가 없으며 건강과 관련된 예를 들어 “나트륨이 적은 식사생활을 할 경우 고혈압이나 다른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음”과 같은 FDA에서 허용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없음

- 이에 따라 미국 FDA는 17개의 식품제조업자들에게 제품포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지를 지난 3월 전달함. FDA는 식품제조업자들이 포장지에 표시된 영양정보를 과장하거나 불건강한 지방과 같은 성분을 감추고 있다고 밝힘. 이번 공지는 거버(Gerber)의 유아식, 네슬레의 주이시 주스(하단 라벨링에 참고), 드레이어(Dreyer)사의 아이스크림, POM석류주스, 고튼(Gorton)사의 냉동생선과 같이 다양한 제품을 포함함. 이는 FDA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제품포장에 대해 일종의 선전포고를 한 셈으로 FDA는 작년 가을 식품 제품 포장에 대한 규정 개선의지를 밝힌 바 있음

※ 관련 웹사이트 <http://www.fda.gov/Food/LabelingNutrition/ucm202784.htm>

- FDA의 이번 경고문에서는 고튼사의 생선제품, 드레이어사의 쇼트닝, 덤스 바이트 아이스크림 스낵 등의 특정 제품은 높은 수준의 포화지방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랜스 지방이 함유되지 않았다고 광고한 경우로 명시되기도 함. 또



한 거버사의 유아식과 같이 정확하지 않은 건강 효과를 과장한 경우로, 네슬레의 주이시 주스는 과일향을 첨가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과일로 만든 제품인 양 호도하고 있는 경우로 지적됨

라. 라벨링 표기 일반사항

1) 인삼 영양 보조식품 라벨링 예



Health & longevity through the healing power of nature—that's what it means to Trust the Leaf®

Korean Ginseng (Panax ginseng) is a traditional Chinese herb for vitality. And is popular among individuals leading an active lifestyle. Guaranteed to contain 2% ginsenosides.

Questions? Call 1-800-9NATURE or visit naturesway.com. Our Korean Ginseng is carefully grown, tested and produced to certified quality standards.

SATISFACTION GUARANTEED. Freshness & safety sealed with printed outer shrinkwrap and printed inner seal. Do not use if either seal is broken or missing. Keep out of reach of children.




Recommendation: Take 2 capsules daily, preferably with food.

Caution: Not recommended for pregnant or lactating women. If you have high blood pressure, consult your health care professional before taking Korean Ginseng.

Supplement Facts	
Serving Size 2 Capsules Servings Per Container 25	
Amount Per Serving	% Daily Value
Calories	5
Total Carbohydrate	1 g < 1%†
Korean ginseng extract (root) 1.12 g (1,120 mg) **	
† Percent Daily Values are based on a 2,000 calorie diet.	
** Daily Value not established.	

Other ingredients: Gelatin (capsule), Magnesium stearate.
©2007 R01 Nature's Way Products, Inc. Springville, Utah 84663 USA



Supplement Facts

Serving Size 1
Servings Per Container 100

	Amount Per Serving	% Daily Value
Korean Ginseng (Panax Ginseng)(Root)	648 Mg	N/A*

* Daily value not established

Other Ingredients:

Rice Flour, gelatin, water, magnesium stearate.



Supplement Facts

Serving Size 1
Servings Per Container 100

	Amount Per Serving	% Daily Value
American Ginseng (Panax Quinquefolius) (Root)	648 Mg	N/A*

* Daily value not established

Other Ingredients:

Rice flour, gelatin, water.



Supplement Facts		
Serving Size 1		
Servings Per Container 100		
	Amount Per Serving	% Daily Value
Red Chinese Ginseng (Panax Ginseng)(Root)	648 Mg	N/A*

* Daily value not established

Other Ingredients:

Rice flour, gelatin, water.

2) 주스 라벨링 예

네슬레사의 주이시 주스는 하단에 향미된 주스와 천연맛을 혼합했다고 하며 포장지 앞면에는 '100% Juice'로 표기해 FDA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음

내츄럴스 패스 푸드사의 유기농시리얼의 경우 오메가-3가 풍부하므로 영양소 공급에 도움 된다는 의미로 포장기 앞면에 표기했으나 FDA에서는 일반식품에 오메가-3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으며 시정을 요구함



3) 유제품 라벨링 예



○ 상기에 예시된 라벨링은 미국현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제품이 들어있는 바나나 맛 우유와 카페라떼로 포장용기가 모두 영문으로 되어 있는 좋은 예임



- PDP표기는 물론 중량표기와 영양성분표기를 옆면에 하므로 FDA에서 말하는 라벨의 요구사항을 모두 지킴

□ 표시사항

- 지난 2월 FDA가 17개의 식품제조업체들에게 제품포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지를 전달해 영양정보를 과장하거나 불건강한 지방과 같은 성분을 감추고 있다고 밝힘. FDA는 작년 가을 식품제품포장에 대한 규정의 개선의지를 밝힌 바 있어 이번에는 고튼사의 튀긴생선제품, 트레이어사의 아이스크림, 딥스바이트 스낵으로 높은 수준의 포화지방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랜스 지방이 함유되지 않았다고 포장용기에 광고를 한 이유로 명시함. 거버사 역시 정확하지 않은 건강효과를 과장, 네슬레의 주이시 주스는 과일향을 첨가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과일로 만든 제품인 듯 포장용기에 표기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됨
- 여러 개의 개별 서비스 포장제품이 들어있는 식품포장의 경우 모든 개별서비스제품은 각 포장제품마다 영양정보를 포함한 라벨이 되어 있어야만 함. 개별 서비스 포장제품 (individual single-serving container)의 기준은 아래 박스 참조

- 법령 : 21 CFR 101.9(h)(3)52

(I) For packages containing several individual single-serving containers, each of which is labeled with all required information including nutrition labeling as specified in §101.9 (that is, are labeled appropriately for individual sale as single-serving containers), the serving size shall be 1 unit.

〈성인 1인당 최저 서빙중량〉

Beverages :		
Carbonated and noncarbonated beverages, wine coolers, water	240 mL	8 fl oz (240 mL)
Coffee or tea, flavored and sweetened	240 mL prepared	8 fl oz (240 mL)

제2절 ● 라벨링 관련 문제 및 해결사례

가. 선물세트 라벨링

한국으로부터 박스 안에 12개의 개별 서비스 포장 음료가 들어있는 선물세트를 수입했으나 매장에 진열된 선물박스를 FDA에서 불시에 단속, 박스 안에 있는 개별음료수에 라벨이 없다며 판매를 중지시킴. 이에 따라 수입업체는 선물박스에 들어있는 음료수 12병에 모두 라벨을 부착시킴으로써 판매를 재개함

선물세트의 경우, 개별 서빙이 가능한 중량이 들어있는 음료수나 과자류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날개별로 라벨이 모두 되어 있어야만 함. 선물세트가 아닌 날개로도 판매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겉 포장박스 외에도 개별 음료수병에도 라벨이 붙여 있어야만 판매가 가능함

나. 당분 사용 및 표기 불일치

- 최근 미국에서 금지된 당분사용이나 실제 내용물과 표기 내용물이 다를 경우 문제가 되고 있음. 예로 당분 가운데 사카린의 경우 FDA에서 사용가능한 당분이나 Cyclamate이나 Ducin과 같은 당분은 미국에서 금지되어 있음. 생산업체와 수출업체는 가공식품을 수출할 경우 미국내에서 금지되어 있는 첨가제가 들어갔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함. 금지된 첨가제를 사용했을 경우 폐기처분 명령을 받게 됨
- 일관성 없는 내용물과 영양분석표 : 내용물에 글루코스, 스퀴로스 와 같은 당분이 들어있다고 표기한 반면 영양분석표에는 0% Sugar로 거짓표기를 할 경우에도 FDA에서 시정 및 벌금을 요구하고 있음. 미국에 수출되고 있는 많은 내수용 식품들은 스티커를 붙이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제 한글로 표기된 내용물과 스티커표기의 영양분석표를 틀리게 만들어 붙이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있음



다. 비스킷 제품 사례

- 현지에 수입된 A사의 비스킷제품의 내용물(ingredients) 표기에서 일반적인 이름(Common name)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업체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체적인 이름을 사용함. 이 회사의 비스킷 제품은 라벨을 허구로 만든 점도 문제이나 미국에서 허용하지 않는 내용물을 포함시킴으로 반송시키거나 폐기해야 함
- 한 예로 한국과 일본에서는 Stevia(스테비아)잎에서 추출한 천연감미료를 식품에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국 FDA는 천연감미료 자체로 판매만 가능하고 식품가공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부 한국 식품 생산업체들은 자체적으로 개발했다고 하는 감미료에 일반적인 이름을 표기하지 않아 현지에서 문제가 되고 있음

라. 천연감미료 사례

- 향신료(spices), 천연착향료(natural flavors), 인공착향료(artificial flavors)는 원재료명 목록에 특정한 일반적, 통상적 이름을 기재하거나 ‘향신료(spices)’ ‘천연착향료(natural flavors)’ ‘인공착향료(artificial flavors)’라고 표시할 수도 있음
- 파프리카(Paprica), 튜메린(Tumeric), 샤프론(Saffron) 등 색소로도 사용되는 향신료는 ‘파프리카’와 같이 실제 이름을 기재하거나 ‘향신료와 색소’라는 용어로 표시함
- 인공색소의 표기는 공인된 색소의 경우 약어 또는 특정 이름을 사용하고 공인되지 않은 색소의 경우 ‘인공색소(artificial color)’라고 표시하거나 일반적 통상적 이름을 사용함
 - ④ 공인된 색소(Certified colors) : ‘FD&C Red No. 40’ 또는 ‘Red 40’
 - 비공인된 색소(Non Certified colors) : ‘caramel coloring’ 또는 ‘beet juice’

제3절 ● 자료원 및 관련 웹사이트

- 선물포장, 다양한 식품이 함께 들어있는 제품,

내용물이 날개로 포장되어있는 식품의 경우 (21 CFR 101.9(h)49)

[http://www.fda.gov/Food/GuidanceComplianceRegulatoryInformation/GuidanceDocuments/
FoodLabelingNutrition/FoodLabelingGuide/ucm064894.htm](http://www.fda.gov/Food/GuidanceComplianceRegulatoryInformation/GuidanceDocuments/FoodLabelingNutrition/FoodLabelingGuide/ucm064894.htm)

- 색소사용 라벨링 관련 웹사이트

[http://www.fda.gov/Food/GuidanceComplianceRegulatoryInformation/GuidanceDocuments/FoodLa
belingNutrition/FoodLabelingGuide/ucm064880.htm](http://www.fda.gov/Food/GuidanceComplianceRegulatoryInformation/GuidanceDocuments/FoodLabelingNutrition/FoodLabelingGuide/ucm064880.htm)

- 건강보조식품 관련 라벨링 가이드

[http://www.fda.gov/Food/GuidanceComplianceRegulatoryInformation/GuidanceDocuments/Dietary
Supplements/DietarySupplementlabelingguide/default.htm](http://www.fda.gov/Food/GuidanceComplianceRegulatoryInformation/GuidanceDocuments/DietarySupplements/DietarySupplementlabelingguide/default.htm)

- 인삼농약검출 보고서 (2008년 자료)

[http://www.fda.gov/Food/FoodSafety/FoodContaminantsAdulteration/Pesticides/ResidueMonitoring
Reports/ucm116752.htm](http://www.fda.gov/Food/FoodSafety/FoodContaminantsAdulteration/Pesticides/ResidueMonitoringReports/ucm116752.htm)

IV

유럽

제1장 통관제도	433
제1절 통관 제도 일반	433
제2절 품목별 통관 제도	442
제3절 통관보류 및 거부사례	453
제4절 관련 웹사이트	457
제2장 검역제도	459
제1절 검역 제도 일반	459
제2절 주요 품목별 검역 제도	471
제3절 검역불합격 및 폐기, 반송 사례	475
제4절 국가별 검역원 현황 및 담당자 내역, 웹사이트	490
제3장 라벨링 규정	493
제1절 라벨링 표시사항	493
제2절 라벨링 관련 문제 및 해결사례	500
제3절 자료원 및 관련 웹사이트	505



제1장 >>> 통관제도

Korea Agro-Fisheries Trade Corporation

제1절 ● 통관 제도 일반

가. 통관절차

- 수입업체는 물건이 도착했다는 통보를 받고 상업용 송장, B/L, 패킹 리스트 및 기타 수입허가서(검역증명서 등) 운송회사 또는 통관을 전담하는 회사에 의뢰하여 수입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관세를 납부한 후 통관됨
- 네덜란드로 수입된 물건들은 일단 보세창고에 단기 혹은 장기 보관되며 단기 보관용 보세창고는 운송회사나 통관 전문업체들이 이용하며 해상운송 수입품의 경우 수입신고 후 45일, 육로나 항공 송 수입품은 20일간 보관할 수 있고, 장기 보관 보세창고의 경우 보관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음
- 통관에는 대체로 2~3일 소요됨

나. 관세 고정제도

- 유럽연합 회원국들에는 소위 “Binding Tariff Information”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입업자와 해당국의 관세당국이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를 6년간 고정시키는 제도가 이용되고 있음
- HS code별로 고정적으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하여 6년간 고정 관세를 고정시킴으로써 수입업자는 관세율 등락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관세당국은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통제를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6년간 고정된 관세율은 6년 후 다시 동 기간 연장 가능함

다. 온라인 통관제도

- 최근 유럽연합국가들은 정기적으로 제 3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들을 위하여 온라인 통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수입업자는 세관당국에 온라인 통관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취득한 후 세관이 제공하는 하드 및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후 직접 또는 통관업자를 통해 온라인 통관 신청 가능

라. 수입신고서 종류

- T1 :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통관하는 경우 사용
 - 예 제 3국(유럽연합 회원국 포함)에 수출하는 경우 마지막 인수자가 해당국에서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 또는 통관을 보세창고에 임시 보관한 후 제 3국에 운송하는 경우에도 T1 수입신고서 작성함
- T2 : 관세를 부담하고 통관하는 경우 모두 이 양식을 사용함

마.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는 EU에서 유통시킬 목적으로 상품이 수입되었을 때 납부하게 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수입상품일 경우 부가가치세는 수입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토록 규정
- 유럽연합 국가의 부가가치세율은 아래표와 같음



〈유럽연합 국가의 부가가치세율〉

(단위 : %)

국가명	표준부가가치세율	감면부가가치세율
벨기에	21	6 / 12
불가리아	20	7
체코	19	9
덴마크	25	-
독일	19	7
에스토니아	18	5
그리스	19	9
스페인	16	7
프랑스	19,6	5,5
아일랜드	21, 5	13,5
이태리	20	10
사이프러스	15	5 혹은 8
라트비아	21	10
리투아니아	19	5 혹은 9
룩셈부르크	15	6 혹은 12
헝가리	20	5
몰타	18	5
네덜란드	19	6
오스트리아	20	10
폴란드	22	7
포르투갈	20	5 혹은 12
루마니아	19	9
슬로베니아	20	8,5
슬로바키아	19	10
핀란드	22	8 혹은 17
스웨덴	25	6 혹은 12
영국	15 ⇒ 17,5 (변경)	5

주 : 2010년 3월 기준

바. 유럽-한국간 FTA 체결과 통관제도의 변화

- 9월 16일, 유럽 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한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을 승인하기로 결정했으며 향후 최종 사인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자유 무역 협정이 잠정 발효될 것이라는 내용을 유럽 연합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함
- 유럽 연합과 한국간 자유무역협정은 10월 6일, 브뤼셀에서 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또한 유럽 연합 이사회는 잠정 발효일자를 2011년 7월 1일로 정하는 데에 동의하였으며 이 잠정 발효일 이전에 유럽 의회가 한국 - 유럽 간 자유 무역 협정에 동의했으며 유럽-한국의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이행 규정이 실행된다는 내용이 한국으로 통보될 예정임
- 한국 - 유럽간 자유 무역 협정 내용에는 원산지와 관세를 비롯한 여러 이슈가 담겨 있음
- 유럽 연합에서 17일에 발표한 한국 - 유럽 자유 무역 협정의 10가지 주요 혜택 중 가장 큰 것은 관세 철폐로 농축수산물 및 식품 통관제도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1) 관세 철폐

- 한국 - 유럽 자유 무역 협약에 따라 5년 이내에 무역에 부과되던 관세의 98.7%가 철폐될 예정임
- 이는 제품에 따라서 관세 철폐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함
- 이와 같은 관세 철폐에 따라 한국의 대 유럽 농산물 수출업자들은 연간 상당한 금액의 관세를 절약할 수 있게 되는데 유럽 연합은 연간 무관세에 따른 절약 금액은 연간 11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또한 코펜하겐 이코노믹스(Copenhagen Economics)와 프란시스코 교수(Prof. J.F Francois)는 한국 - 유럽간의 자유 무역 협정에 따른 무관세 제도의 직접적인 관세 절약 혜택 외에도 양 지역 간에 128억 유로 규모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무역이 새로 창출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음



2) 유럽 각국 정부의 조달 참여 기회

- 한국 - 유럽간의 자유 무역 협정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유럽 각국 정부의 조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림

사. 통관 제도 변경사항

1) 관세 및 세관 규정 변경

- 영국의 관세 및 수출입 화물 담당 세관(Customs Handling of Import and Export Freight)의 규정이 변경되어 10월 7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함
- 변경사항은 제품 코드 190220 10 00 와 190220 30 00이 삭제되고 대신 아래와 같이 8자리 코드를 사용하게 됨
- 코드가 변경된 제품도 이전과 동일한 세금과 세율, 부가세가 적용됨

변경코드	제 품
190220 10	제품 중량의 20% 이상 생선,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 무척추 동물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
190220 10 10	건조된 면류
190220 10 90	기 타
190220 30	제품 중량의 20% 이상 소세지, 육류, 육류의 지방 및 내장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
190220 30 10	건조된 면류
190220 30 90	기 타

2) 유럽 연합, 내년 1월부터 전자 사전신고제 시행

- 유럽 의회 법규는 내년 1월부터 유럽 연합 영역 내로 입항하는 모든 화물에 대해 첫 입항지 세관에 사전에 전자 ENS(Entry Summary Declaration)을 하도록 개정함

- 유럽연합 국가들은 신고된 아이템에 이동 일련번호라 할 수 있는 Movement Reference Number(MRN)을 부여한 후, 위험 평가를 실시할 예정임
- 이 개정 법규에서는 ENS를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를 ‘제품을 가져오거나 제품을 유럽 연합 내로 이동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항공사 또는 선사가 사전에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됨
- 항공사 또는 선사 외에 다른 사람이 ENS 신고를 할 수도 있으나 ENS가 제출됐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는 항공사 또는 선사에게 있음
- 운송 수단의 종류 및 운송 거리 등에 따라 ENS를 제출해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에는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음

운송수단	ENS 제출 제한 시간
해상 컨테이너 화물 (Maritime containerised cargo)	최소 입항 24시간 이전
해상 산적 화물 (Maritime bulk/break bulk cargo)	최소 입항 4시간 이전
4시간 미만의 해상 운송	최소 입항 2시간 이전
4시간 미만의 단거리 비행 운송	실제 이륙 시간
장거리 비행 운송	최소 도착 4시간 이전
철도 및 내륙 운하 운송	최소 도착 2시간 이전
도로 운송	최소 도착 1시간 이전

3) 영국, 유기농 제품 수입에 대한 증명서 규정 변경

- 현재 영국에서는 유기농 제품에 대한 검역 증명서를 제품이 영국에 도착한 최초 입항지 또는 공항에서만 확인받을 수 있었으나 2010년 10월 1일 부터는 최초 입항지 또는 공항 이외에서도 검증받을 수 있게 됨
- 유럽 연합 이외의 국가에서 생산된 유기농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역 증명서를 수반해야만 함
- 이 검역 증명서의 검증을 최초 입항지 또는 공항 외에 통관 수속 전후로 내륙에서 탁송물이 free circulation으로 방출되기를 기다리는 곳에서 할 수 있음



4) 한국EU FTA에서 수입 제한 제도 도입

- 유럽 의회의 국제 무역 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 유럽연합과 한국간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FTA)에서 수입제한제도 조항을 이행한다는 법률안을 승인함
- 유럽 의회 의원들은 유럽 의회와 수입증가에 의해 영향을 받은 어떤 산업도 긴급 조치를 위한 조사에 착수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
- 이 조항에 따라 관세 감면이 한국으로부터의 과도한 수입으로 이어져 유럽연합 제조업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히거나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위협이 될 경우, 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할 수 있게 되었음. 또한 이 조치가 늦어져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긴급 임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
- 이 수입제한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유럽연합은 관세율 인하를 보류하거나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게 되었음
- 파블로 살바 비드가인 (Pablo Zalba Bidegain)에 의해서 작성되고 27개의 찬성표를 받은 국제 무역 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유럽 의회 의원들은 이와 같은 결정은 해당 산업에서의 재고, 가격, 또는 투자자본수익률과 같은 검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요소들을 살펴본 후에 내려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유럽 의회 의원들은 위원회와 회원 국가들을 제외하고 유럽 의회, 유럽-한국 각각의 국내 자문단과 산업의 최소 25%를 차지하는 협회들에게 수입제한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를 착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결정함
- 유럽 의회 의원들은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최대 조사기간을 6개월 대신 200일로 정하되 3개월까지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함
- 만일 수입증가가 심각하게 유럽 내 1개 이상 국가 산업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경우, 위원회는 예외적으로 해당 국가에만 일시적으로 제한적인 수입제한 조치를 승인하도록 함
- 무역 위원회는 유럽-한국 간 자유무역협정에 동반되는 수입제한 조항에 대해 투표표를 실시했으며 이는 의회가 국제적 협약에 대해 공동 결정 효력을 행사하게 되는 첫 번째 사례임

- 이 투표에 따라 리스본 조약의 효력이 발생됨
- 리스본 조약 이후, 수입제한 조항과 같은 공동 상업 정책 분야에서 조치를 취할 때 의회는 공동 결정권을 가지며 자유 무역 협정에서도 의회의 동의가 필요함
- 유럽-한국 간 자유무역협정은 2009년 10월 15일에 서명되었으며 의회의 동의를 마친 후에 효력이 발생됨
- 해당 협의회는 아직 자유무역협정안을 유럽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동의 절차는 올해 가을로 예정되어 있음

자료 : <http://www.europarl.europa.eu>

5) 새로운 EU 유기농 로고사용 규정 발효

- 새로운 유럽 유기농 라벨링 규정이 7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새 유럽 유기농 로고의 사용이 사전 포장된 유기농 제품과 음료제품에 의무화 됨
- 유럽 의회는 이 새로운 유기농 로고를 사용함으로써 유기농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 이 유기농 제품 품질과 규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함
- 유럽 연합 지역 내에서 출시될 모든 유기농 신제품들은 반드시 새로운 로고를 사용해야 하며 기존 제품에 대해서는 2012년 1월 1일까지는 유예기간을 두기로 함
- 유럽 연합 지역으로 수입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유럽 유기농 로고 사용을 자발적으로 운영하기로 함
- 로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산물 재료들이 어디서 재배되었으며, 유럽 연합 지역인지, 비 유럽 연합 지역인지 등에 대해서 반드시 표기를 해야 하고, 비 유럽 연합 지역일 경우에는 특정 국가명까지 기입을 해야 함
- 새로운 유럽연합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춘 제품들만 유기농 라벨을 사용할 수 있음
 - 제품 원재료 중 농산물 원재료의 최소 95%가 유기농으로 생산된 경우
 - 제품이 공식적 검사 제도의 규정을 모두 따른 경우
 - 제품이 직접 제조자로부터 판매된 경우
 - 제품이 제조자명, 벤더, 그리고 검역 기관명을 밝히고 있는 경우



- 제품이 유전자 변형 원료는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이번 유럽 연합의 새로운 유기농 규정은 생선류, 조개류, 해조류와 같은 유기농 양식을 통해 생산된 해산물에 대한 규정도 마련함
- 유기농 양식 해산물은 종의 다양성을 지켜야 하고 인공적인 호르몬제 사용이 전면 금지됨

※ 자료 : <http://www.efsa.europa.eu>

6) 유제품 통관 및 검역 증명서 관련

- 2010년 8월 1일부터 원유 및 유제품을 유럽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새로운 제3국가 리스트와 검역 증명서 리스트가 적용되기 시작함(EU No. 605/ 2010)
- 이 새로운 규정인 EU No. 605/2010은 기존 2004/438/EC를 대체하게 됨
- 그러나 원활한 무역을 위해 기존 2004/438/EC에 의해 발급된 건강 증명서는 11월 30일까지 사용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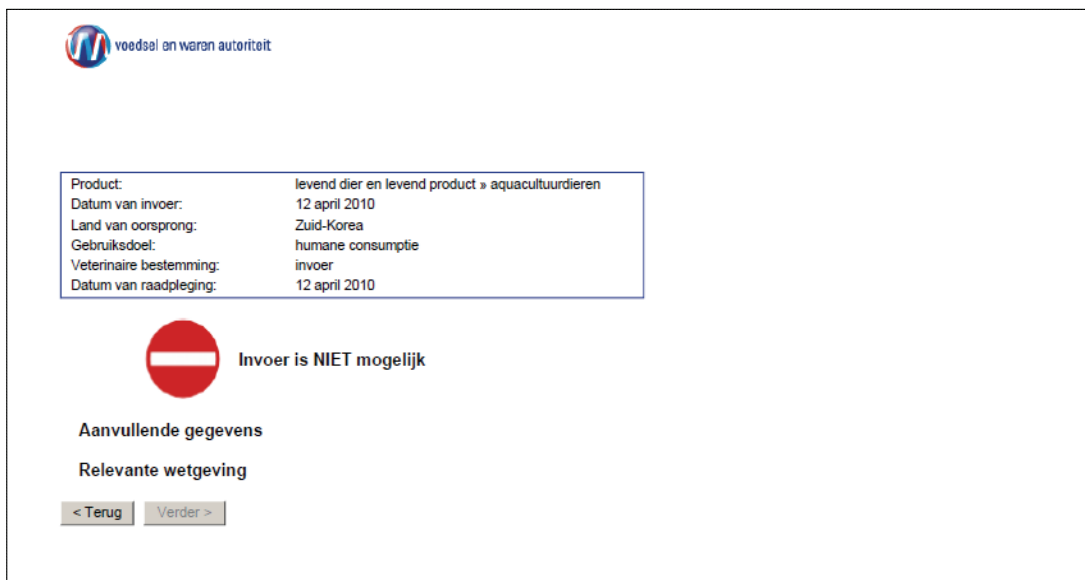
제2절 ● 품목별 통관 제도

가. 수산물

1) 한국산 활어 수출금지


- 대EU 한국산 활어 수출은 금지되어 있음
- 활어수입 관련하여 네덜란드 식약청에서 제공하는 정보 검색이 가능함
- 활어 수출금지 관련 조항
 - ※ 참고자료 참조
- EU 내 수입관련 해당품목의 가능여부 검색 방법 (활어 예시)

검색 방법	비 고
www.vwa.nl →	
onderwerpen (상단메뉴바) →	
vwa : voorschriften (좌측메뉴) →	
import (vanuit derde landen) →	
import veterinaire online →	
kijk hier om te beginnen →	
원하는 product 선택 후 selecteren 클릭 →	활어는 levend dier en levend product 선택
구체적인 항목 다시 선택 후 selecteren 클릭 →	활어는 aquacultuurdieren 선택
Bevestigen 클릭 →	
Datum van invoer (수입일자) 선택 →	
Land van oorsprong(수출국 선택) →	예) zuid korea
Gebruiksdoel(수입목적) →	Humane consumptie (식용) 선택
veterinaire bestemming은 invoer (수입) 선택 →	
verder 클릭 →	수입여부 혹은 수입관련정보 확인

참고 1 검색 결과 화면


voedsel en waren autoriteit

Product:	levend dier en levend product » aquacultuurdieren
Datum van invoer:	12 april 2010
Land van oorsprong:	Zuid-Korea
Gebruiksdoel:	humane consumptie
Veterinaire bestemming:	invoer
Datum van raadpleging:	12 april 2010

 Invoer is NIET mogelijk

Aanvullende gegevens

Relevante wetgeving

< Terug Verder >

참고 2 관련 규정

□ 일반규정 : EU legislation

- Directive 91/496/EC : veterinary checks on animals from third countries into the Community customs territory Directive 96/93/EC on the certification of animals and animal products
- Regulation (EC) No 282/2004 : document for the declaration and veterinary checks on animals coming from third countries into the Community customs territory
- Decision 2001/183/E : sampling plans and diagnostic methods for the detection and confirmation of certain fish diseases
- Decision 2002/878/EC : establishing the sampling plans and diagnostic methods for the detection and confirmation of (*Bonamia ostreae*) and marteiliosis (marteiliosis) in molluscs
- Decision 2003/466/EC : Commission on June 13, 2003 establishing the criteria for zoning and official surveillance following suspicion or confirmation of the presence of infectious salmon anemia (ISA)

- Decision 2004/453/EC : as regards measures against certain diseases in aquaculture animals
- Directive 2006/88/EC : animal health requirements for aquaculture animals and products thereof, and on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certain diseases in aquatic animals
- Decision 2007/275/EC : concerning lists of animals and products under Directives 91/496/EEC and 97/78/EC in border inspection posts must undergo
- Decision 2008/946/EC : implementing Directive 2006/88/EC as regards quarantine requirements for aquaculture animals
- 1251/2008/EG regulation : implementing Directive 2006/88/EC as regards the conditions and certification requirements for the marketing and import into the Community of aquaculture animals and products thereof and establishing a list of vector species
- 2009/177/EG decision : implementing Directive 2006/88/EC as regards surveillance and eradication programs and disease-free status of Member States, zones or compartments

□ 국가 규정 : National Legislation

- GWWD : Trading Scheme, live animals and live products
- Fishing : Aquaculture system
 - Country List : Regulation (EC) 1251/2008/EG,
- Annex III : third countries, territories, zones or compartments from which imports are permitted for aquaculture animals intended for farming, “put and take” fisheries and open ornamental, and ornamental fish are susceptible to one or more of the Part II of Annex IV Directive 2006/88/EC diseases listed and intended for closed ornamental features
- Regulation (EC) 1252/2008 : suspension of imports from Malaysia of consignments of certain aquaculture animals
- OIE country list : http://www.oie.int/eng/OIE/PM/en_PM.htm Ornamental fish species susceptible to one or more of the Part II of Annex IV to Directive 2006/88/EC diseases listed and molluscs and crustaceans for ornamental purposes intended for ornamental closed facilities may only be imported from third countries or territories that are members of the World Health Organisation (OIE). Until December 31, 2010 EUS allowed for sensitive aquatic ornamental, decorative only for closed facilities,



imported from third countries or territories that are members of the World Health Organisation (OIE).
The same aquatic animals may also be imported from the following countries, not members of the OIE
: Cook Islands, Kiribati, Marshall Islands, Nauru, Niue, French Polynesia, Papua New Guinea, Pitcairn
Islands, Palau, Solomon Islands, Tokelau, Tonga, Tuvalu, Wallis and Futuna, Samoa.

Ornamental aquatic animals susceptible to epizootic ulcerative syndrome (EUS) intended solely for
ornamental features may be closed until December 31, 2010 from third countries or territories that are
members of the OIE to be introduced.

During this transition period, the requirements for EUS of the health certificate in Part B of Annex IV,
vils012001 not apply to ornamental aquatic animals intended solely for closed ornamental features.

- Certificate Model : Regulation (EC) 1251/2008/EG

- Annex IV Part A : health certificate for animals aquaculture farming, relaying, “put and take”
ornamental fisheries and open facilities
- Annex IV Part B : aquatic animal health certificate ornamental decorative for closed facilities
- Annex IV, Part D : Addendum for transport of live animals by sea aquaculture

나. 임산물

- 단풍나무를 비롯하여 17개 품목이 알락하늘소 검출에 따라 기본적으로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됨
- EU 지역으로 수입된 식물에서 알락하늘소가 검출됨에 따라 주 수출품목인 단풍
 - 소사나무 등이 '08. 10. 31일부터 수출이 중단
 - 알락하늘소가 침투하지 않는 망실 등의 시설에서 2년 생육된 것 이외에는 2008년
10월 이후 수입 규제 강화 대상이 됨

다. 유기농 제품

1) 유기농 제품관련 법령 개정개요

-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새로운 유럽연합 유기농 관련 법규는 제품의 생산 및 관리, 그리고 라벨링까지 아우르고 있음
- 이 중 라벨링의 경우, 2010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유기농 제품 또는 제품 패키지에 유기농 로고가 있는 제품들을 유럽지역으로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새로 개정된 유기농 관련 법규에서는 유기농 제품을 최소 95%의 농산물 원료가 유기농이어야만 함
- 또한 이 법규에서도 유전자가 조작된 성분을 함유하거나 유전자 조작을 통해 생산된 제품은 엄격히 배제하고 있으나 다만 우연히 유전자 조작 성분이 첨가되었을 경우, 그 비율이 0.9% 이하여야 함

2) 유럽으로의 수입 통관

- 기존 법규에서는 유럽연합에 의해 상호인정을 받은 제 3국 (아르헨티나, 호주, 코스타리카, 인도, 이스라엘, 뉴질랜드, 스위스)의 제품 또는 유럽연합 국가에 의해 생산이 관리된 제품, 그리고 수입 허가서를 받은 제품만이 수입이 가능했음
- 이 새로운 법규에 따라 유럽연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유기농 제품 생산 규정을 적용하여 생산, 관리된 유기농 제품은 제 3국에서 유럽지역으로 수입, 유통이 가능함
- 또한 기존 유기농 제품 수입 관련 법규에서는 유럽 연합 회원국이 직접 개별 유기농 제품을 수입 통관 과정에서 확인하도록 하였으나 새 법규에서는 유럽 연합의 인증을 받은 기관이 검역과정에서 이 작업을 하도록 개정함
- 현재 수입 허가서를 위한 절차도 이 새로운 수입 제도로 대체될 예정이나 시기는 아직 미정이어서 별도 공고가 있을 때까지 기존 수입 허가 제도를 준수해야 함



3) 유기농 제품 수출과정

영국을 중심으로 유기농 제품 수출시 확인해야 할 것들과 과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수입업자가 영국 내에서 유기농 수입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가?’
 - 영국정부는 유기농 수입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에 한해 유기농 수입을 허가하고 있음
 - 따라서 유기농 수입업자가 해당 영국 정부 기관인 Defra에서 인정하고 있는 아래와 같은 유기농 관련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유기농 제품의 수입 허가를 받았는가?’
 - 영국으로 수입되는 유기농 제품은 원산지에 따라 다르게 취급됨

〈영국 Defra 인정 유기농 기관〉

기관명	웹사이트/이메일	연락처
Organic Farmers and Growers Ltd.	www.organicfarmers.org.uk info@organicfarmers.org.uk	+44 (0)1939 291800
Scottish Organic Producers Association	www.sopa.org.uk sopa@sfqc.co.uk	+44 (0)131 3330940
Organic Food Federation	www.orgfoodfed.com info@orgfoodfed.com	+44 (0)1760 720444
Soil Association Certification Ltd.	prod.cert@soilassociation.org	+44 (0)117 9142412
Bio-Dynamic Agricultural Association	www.biodynamic.org.uk demeter@biodynamic.org.uk	+44 (0)131 5526565
Irish Organic Farmers and Growers Association	iofga@eircom.net	+353 043 42495
Organic Trust Limited	www.organic-trust.org organic@iol.ie	+353 185 30271
Quality Welsh Food Certification Ltd.	mossj@wfsagri.net	+44 (0)1970 636688
Ascisco Ltd.	Dpeace@soilassociation.org	+44 (0)117 9142407

- 한국은 비-유사 제 3국에 해당하여 영국의 유기농 인증기관에 제품을 등록 또는 인증받아야 함
 - 이를 위해서는 ‘OB11’서류를 작성, Defra에 제출함 (양식 다운로드 <http://www.defra.gov.uk/corporate/docs/forms/organics/ob11.pdf>)
 - 또한 이 OB11 신청은 수출국의 유기농 검역 기관이 대행할 수 있음
 - 이 평가는 근무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완료되어 결과가 통지되며 승인이 완료되기 전까지 유럽 내로 수출은 불가능함
- 유기농 신선 채소 및 과일, 견과류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국 원예 마케팅 조사단 (the Horticultural Marketing Inspectorate)에서 영국 원예와 마케팅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자 인증서 신청 절차(Procedure for Electronic Application for Certificate, PEACH)를 걸쳐야 함
-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인보이스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제품설명 (the goods description)
 - 무게 (킬로그램으로 표시)
 - 가격
 - 원산지 (Country of origin)
 - 서명 및 날짜 (signature and date)

라. 유제품

1) 일반 유제품 통관제도

- 유제품이라 함은 우유, 버터, 치즈(채식주의자용 치즈 포함), 요거트, 크림, 분유, 유장, 락토즈, 락토 단백질(카세인 및 카세인 산염 포함), 무수 유지방 또는 케피르 (낙타젖)를 포함함
- 각 유제품의 선적품은 반드시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수의 증명서 또는 수의 건강 증명서 제출
 - 유럽연합에서 인증한 지역에서 생산
 - 수의 검사가 이루어지는 Border Inspection Post를 통해 유럽 연합 지역으로 수입
 -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승인한 국가에서 수입
- 이 외에도 각 국가별로 별도의 일반 식품 수입법이 적용될 수도 있음

2) EU No. 605/2010 개정내용

- EU No. 605/2010은 유제품을 수입하는 국가마다 다른 열처리 방법 규정을 제시하고 있음
- 예를 들어, 구제역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국가에는 더 엄격한 살균처리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
- 열처리 방법은 총 3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국가마다 다른 카테고리를 적용하고 있음
- 또한 해당 국가가 어떠한 카테고리에 속하느냐에 따라 수의 건강 증명서 모델을 별도로 지정해 놓고 있음
- 따라서 ① 열처리 방법 카테고리, ② 카테고리 및 적용 국가, ③ 카테고리별 수의 건강 증명서 모델을 정리함

① 열처리 방법 카테고리

카테고리	내 용
Column A	- 원유 및 유제품 수입 가능
Column B	- 제 3국의 소, 양, 염소 또는 버팔로의 원유에서 생산된 유제품 - 구제역의 위험이 없는 국가 중 위의 유제품을 단일 열처리를 통해 살균과정을 거친 원유로 생산된 유제품 - 열처리 과정은 최소 72℃에서 15초간 실시되어야 함 - 열처리 직후 알칼리성 포스파타아제(alikaline phosphatase) 실험을 실시하여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났는지 확인하여야 함

카테고리	내 용
Column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3국의 소, 양, 염소 또는 버팔로의 원유에서 생산된 유제품 - 구제역의 위험이 없는 국가 중 위의 유제품을 단일 열처리를 통해 살균과정을 거친 원유로 생산된 유제품 - 살균과정은 F0 또는 3보다 커야 함 - 초고온 살균(ultra high temperature)은 135°C보다 낮지 않은 온도에서 적절한 시간동안 실시되어야 함 - 고온 단시간 살균처리(high temperature short time pasteurisation treatment, HTST)는 72°C에서 15초간 두 번 실시하여 우유의 pH가 7.0과 동일하거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 또한 가능하다면 열처리 직후 알칼리성 포스파타아제(alkaline phosphatase) 실험을 실시하여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났는지 확인하여야 함 - 또는 동일한 살균 효과를 가진 처리를 실시하고 열처리 직후 알칼리성 포스파타아제(alkaline phosphatase) 실험을 실시하여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났는지 확인하여야 함 - 우유의 초고온 처리를 한 후의 pH농도는 7.0미만이거나 - 초고온 처리와 함께 부가적인 물리적인 처리를 실시하여야 함 - 부가적인 물리적인 처리방법으로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pH를 한 시간 동안 6이하로 낮추는 방법 2) 72°C와 동일 또는 이상의 열을 가하는 방법이 있음

② 카테고리 및 적용 국가

국가명	Column A	Column B	Column C
Andora	+	+	+
Albania	0	0	+
Netherlands Antilles	0	0	+
Argentina	0	0	+
Australia	+	+	+
Brazil	0	0	+
Botswana	0	0	+
Belarus	0	0	+
Belize	0	0	+
Bosnia & Herzegovina	0	0	+



국가명	Column A	Column B	Column C
Canada	+	+	+
Switzerland	+	+	+
Chile	0	+	+
China	0	0	+
Colombia	0	0	+
Costa Rica	0	0	+
Cuba	0	0	+
Algeria	0	0	+
Ethiopia	0	0	+
Greenland	0	+	+
Guatemala	0	0	+
Hong Kong	0	0	+
Honduras	0	0	+
Croatia	0	+	+
Israel	0	0	+
India	0	0	+
Iceland	+	+	+
Kenya	0	0	+
Morocco	0	0	+
Madagascar	0	0	+
Macedonia	0	+	+
Mauritania	0	0	+
Mauritius	0	0	+
Mexico	0	0	+
Namibia	0	0	+
Nicaragua	0	0	+
New Zealand	+	+	+
Panama	0	0	+
Paraguay	0	0	+

주요 수출국의 수출현안 모니터링

국가명	Column A	Column B	Column C
Serbia	0	+	+
Russia	0	0	+
Singapore	0	0	+
El Salvador	0	0	+
Swaziland	0	0	+
Thailand	0	0	+
Tunisia	0	0	+
Turkey	0	0	+
Ukraine	0	0	+
United States	+	+	+
Uruguay	0	0	+
South Africa	0	0	+
Zimbabwe	0	0	+

③ 카테고리별 수의 건강 증명서 모델

모델명	내 용
Milk-RM	- 제 3국에서 수입되는 원유를 위한 건강 증명서 - EU내에서 추가 가공을 실시할 것으로 Column A에 속해 있는 국가
Milk-RMP	- 제 3국에서 식용 원유로 만들어진 유제품을 위한 건강증명서 - Column A에 속해 있는 국가를 위한 건강증명서
Milk-HTB	- 제 3국에서 식용으로 생산된 소, 양, 염소, 버팔로 원유로 만들어진 유제품을 위한 건강 증명서 - Column B에 속해 있는 국가를 위한 건강 증명서
Milk-HTC	- 제 3국에서 식용으로 생산된 유제품을 위한 건강 증명서 - Column C에 속해 있는 국가를 위한 건강 증명서
Milk-T/S	- 식용으로 생산된 원유 또는 유제품으로 EU를 거쳐 가거나 보관만 이루어지는 제품을 위한 건강 증명서

제3절 통관보류 및 거부사례

가. 유기농 검은 콩차

2010년 A 회사에서 제조한 ‘유기농 검은 콩차’라는 제품이 유기농이라는 인증서가 없이 ‘Organic’이라고 제품에 표기가 되어 영국에서 통관 거부됨

나. 지역별 통관 거부 현황 (2007-2009)

영국에서 가장 많이 통관이 거부된 수입지역은 중국, 일본, 한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으로, 2007-2009년 5,231회에 48,219kg, 2,307ltrs가 통관하지 못하였음

이는 오세아니아 또는 기타 유럽지역에 비해 55배에서 300배 가량 많이 적발된 수치임

지 역	횟수	중량 (kg)	부피 (ltrs)
동부 유럽	1,510	7,107	4
동부 아프리카	962	6,376	0
북부 아프리카	354	2,434	2
중앙 아프리카	322	2,440	0
남부 아프리카	451	1,138	0
서부 아프리카	2,385	31,924	4,469
북 아메리카	763	7,428	5,539
캐리비안	534	23,108	3
중앙 & 남아메리카	178	1,249	3
동아시아	5,231	48,219	2,307
남아시아	3,990	32,467	846
동남아시아	177	718	0
중 동	3,578	21,677	3,231

주요 수출국의 수출현안 모니터링

지 역	횃수	중량 (kg)	부피 (ltrs)
오세아니아	94	4,689	1
유 럽	16	121	0
기 타	115	842	0
합 계	20,660	191,937	16,405

자료 : www.defra.gov.uk

다. 지역별 품목별 통관 거부 현황 (2008-2009)

지 역	횃수/중량/부피	육류	수산물	유제품	꿀	합계
동부 유럽	횃 수	1,154	45	506	178	
	중 량 (kg)	4,446	170	1,947	544	7,107
	부 피 (ltrs)			4		4
동부 아프리카	횃 수	498	98	405	225	
	중 량 (kg)	2,336	768	2,438	834	6,376
	부 피 (ltrs)			0		0
북부 아프리카	횃 수	211	71	87	63	
	중 량 (kg)	676	1,370	239	149	2,434
	부 피 (ltrs)			2		2
중앙 아프리카	횃 수	111	258	5	8	
	중 량 (kg)	420	1,985	15	20	2,440
	부 피 (ltrs)			0		0
남부 아프리카	횃 수	392	45	20	7	
	중 량 (kg)	817	207	87	27	1,138
	부 피 (ltrs)			0		0
서부 아프리카	횃 수	806	1,588	328	111	
	중 량 (kg)	9,795	18,139	3,669	321	31,924
	부 피 (ltrs)			4,469		4,469
북 아메리카	횃 수	374	53	378	4	
	중 량 (kg)	1,665	1,124	4,615	24	7,428
	부 피 (ltrs)			5,539		5,539

지 역	횃수/중량/부피	육류	수산물	유제품	꿀	합계
캐리비안	횃 수	365	147	77	29	
	중 량 (kg)	3,865	1,125	16,958	1,160	23,108
	부 피 (ltrs)			3		3
중앙 & 남아메리카	횃 수	118	16	66	15	
	중 량 (kg)	561	89	547	52	1,249
	부 피 (ltrs)			3		3
동아시아	횃 수	4,026	1,564	600	37	
	중 량 (kg)	32,355	13,173	2,441	250	48,219
	부 피 (ltrs)			2,307		2,307
남아시아	횃 수	1,434	1,354	1,698	154	
	중 량 (kg)	12,190	11,266	7,007	2,004	32,467
	부 피 (ltrs)			846		846
동남아시아	횃 수	132	38	25	2	
	중 량 (kg)	425	197	95	1	718
	부 피 (ltrs)			0		0
중 동	횃 수	1,612	351	2,044	486	
	중 량 (kg)	6,808	3,046	8,589	3,234	21,677
	부 피 (ltrs)			3,231		3,231
오세아니아	횃 수	59	11	21	12	
	중 량 (kg)	117	89	4,437	46	4,689
	부 피 (ltrs)			1		1
유 럽	횃 수	4	5	7	0	
	중 량 (kg)	22	48	51	0	121
	부 피 (ltrs)			0		0
기 타	횃 수	60	29	37	1	
	중 량 (kg)	405	195	237	5	842
	부 피 (ltrs)			0		0
합 계	횃 수	11,356	5,673	6,304	1,332	
	중 량 (kg)	76,903	52,991	53,372	8,671	191,937
	부 피 (ltrs)			16,405		16,405

자료 : www.defra.gov.uk

- 품목별로 살펴보면 육류가 11,356회로 가장 많이 통관이 거부되었으며 다음으로 유제품 6,304회, 수산물 5,673회, 꿀 1,332회로 집계됨
- 육류가 가장 많이 통관 거부됐다는 사실은 그만큼 통관절차가 까다롭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음
 - ※ 한국은 EU지역 육류 수입금지 국가로 지정되어 있음

라. 유기농 밤 제품의 통관거부

- S사의 유기농 밤 제품으로 한국에서 영국으로 수입 통관 중 제품 포장에 유기농 로고가 문제시 됨
- 포장에 유기농 로고가 있으나 유럽에서 인정하는 유기농 인증 관련 서류가 동반되지 않았고 수입자도 영국 정부에 유기농 제품 수입업자로 등록, 유기농 제품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으며 문제가 된 제품은 전량 폐기처분됨



제4절 ● 관련 웹사이트

□ 유기농 제품의 대 EU 수출 관련규정

http://ec.europa.eu/agriculture/organic/eu-policy/legislation_en
http://www.organic-europe.net/europe_eu/inspection.asp

□ 유기농 제품의 대 영국 수출 관련규정

<http://www.businesslink.gov.uk/bdotg/action/detail?type=RESOURCES &itemId=1080062741>
<http://www.sitpro.org.uk/trade/organic.html>
<http://grail.foodapps.co.uk/grail/general/home.aspx>
<http://www.food.gov.uk/foodinsutry/imports/>

□ 영국내 유기농 인증기관 및 각종 양식

<http://www.defra.gov.uk/foodfarm/growing/organic/standards/certbodies/ approved.htm>

□ 한국 - 유럽 FTA 체결 발표문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sAction.do?reference=PRES/10/242&format= HTML&aged=0&language=EN&guiLanguage=en>

□ 한국 - 유럽 FTA 10가지 혜택 전문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sAction.do?reference=MEMO/10/423&format= HTML&aged=0&language=EN&guiLanguage=en>

□ 영국 관세 정보

<http://www.hmrc.gov.uk/index.htm>

□ 유럽연합 관세정보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index_en.htm

□ 영국 무역 및 관련 정책 정보

<http://www.businesslink.gov.uk/bdotg/action/layer?topicId=1079717544>



제2장 >>> 검역제도

Korea Agro-Fisheries Trade Corporation

제1절 ● 검역 제도 일반

가. 개요

- 유럽연합에 수입되는 농수산물에는 식물의 위생상태, 식품의 위생, 동물의 수의학적 안전도, 그리고 농약 잔류량에 대한 검역이 필수적이고 이에 대한 EU의 대처가 강화됨
- 유럽연합 회원국의 검역에 관한 최고 중앙기구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Food and Veterinary Office이며, 식품위생, 동·식물 검역 및 동물의 복지 등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을 유럽연합 회원국 및 제 3국의 준수여부를 모니터링을 통해 수시 감독함
- 실제 제품에 대한 검역은 회원국 검역당국에서 담당함

나. 검역 인증서 (Certificate of Inspection)

- EU 규정 1788/2001에 따라 영국으로 유기농 제품들을 수출할 때는 원산지인 제 3국의 검역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인증서를 제출해야 함
- 이 검역인증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발행기관 및 제품검역기관
 - 생산자, 수출업자, 그리고 수입업자
 - 출항국, 수량, 제품코드 (tariff number)

- 이 검역인증서를 유럽 연합 지역의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영국의 경우 제품이 항구에 도착했을 때 Port health authority(PHA)에 제출함
- PHA는 이 검역인증서를 Defra 내의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함
- PHA의 승인 사인과 도장은 검역인증서가 정확하고 제품이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므로 유기농 제품이 통관하기 전에 필요함
- 또는 제품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업자 또는 그 대행업체가 PHA에 사전 통지할 수 있음

다. 최근 검역 근황

1) 멜라민 1일 허용가능 섭취량 변경

- 유럽 식품안전청은 매우 적은 양의 멜라민 섭취도 신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라 주로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인 멜라민에 대한 1일 허용가능 섭취량을 낮추기로 결정함
- 이 연구 결과에 따라 유럽 식품안전청은 2008년 세계 보건 기구가 정해 놓은 1일 허용 가능 섭취량인 섭취자 체중의 kg당 0.2mg를 새로운 멜라민의 1일 허용 가능 섭취량으로 정함
- 적은 양의 멜라민이 멜라민 플라스틱 재질의 컵과 접시와 같은 용기에서 음식으로 옮겨질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멜라민 용기에 담긴 음식물을 통해 섭취될 수 있는 멜라민의 양은 일반적으로 1일 허용 가능 섭취량보다 낮다고 분석되고 있음
- 유럽연합은 식품이 멜라민에 노출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고 멜라민이 음식으로 흡수, 이동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 유럽식품안전청은 2007년과 2008년에 있었던 중국의 유제품에 대한 멜라민 오염 사건에 따라 멜라민에 대한 노출과 인간에 미치는 영향과 1일 섭취 허용 가능량에 대해 연구하고 있음



2) 유럽 식품안전청, 3종 색소 사용 재평가

- 유럽연합에서 사용이 승인되었던 모든 식품 첨가물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면서 3가지 색소가 새로이 재평가됨
- 첫 번째는 밝은 검은색 BN(E151)으로, 소프트 음료수를 비롯한 베이커리, 디저트 제품 등 다양한 식품에 사용될 수 있는 색소임. 체중의 kg당 5mg까지를 허용가능한 1일 섭취량으로 설정함. 아동이 주기적으로 매우 다량의 이 색소 첨가물을 섭취하였을 때만 1일 섭취량을 초과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름
- 갈색 HT(E155) 역시, 소스, 양념 및 피클 뿐 아니라 소프트 음료수, 베이커리 및 과자류까지 널리 사용되는 색소로, 이전에는 허용가능한 1일 섭취량은 체중 kg당 1.5mg이었음. 그러나 이 색소를 장기간 섭취했을 경우에는 체중 증가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허용가능한 1일 섭취량을 낮추기로 결정함
- 갈색 FK(E154)의 경우, 이 색소의 사용에 따른 안전성에 대해 합의를 찾지 못함. 이는 이 색소의 독성에 대한 자료가 매우 제한적인 데에 기인함
- 올해 유럽 식품안전청은 니트로젠(nitrogen)을 함유하고 있는 식용색소인 azodyes를 비롯한 Amaranth(E 123)와 Litholrubine BK(E 180)를 재평가하고 섭취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예정임

3) 유럽 식품안전청, 식품 내 농약 잔류량 연간 보고서 발간

- 유럽 식품안전청(The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은 2008년 유럽 연합 지역 내에서 보고된 농약 잔류량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농약 잔류량 연간 보고서를 발간함
-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분석된 샘플 중 96.5%가 최대 농약 잔류 허용량 이내였다고 밝힘
- 즉, 분석된 샘플 전체 중 3.5%만이 법적 최대 농약 잔류 허용량을 초과한 것으로, 이는 2007년 4.2%가 허용량을 초과한 것과 비교하면 상황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음

- 1년간 총 약 200여 가지 식품의 70,000여 개 이상 제품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에 대해 분석함
 - 유럽 연합 국가들이 사용한 분석 방법은 총 862가지의 농약 잔류량을 분석할 수 있음
 - 최대 농약 잔류 허용량을 초과한 경우를 식품 원산지별로 구분해 보면, 비 유럽 연합 지역 국가에서 수입된 식품에서 발견된 경우가 7.6%로, 유럽 연합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에서 발견된 경우 2.4%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됨
 - 유럽 연합 회원국들을 위해 수집한 비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농약 잔류량이 없거나 매우 낮아 농약 잔류량이 발견되지 않은 제품의 비율이 점차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농약 잔류량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제품의 비율은 52.7%에서 58.0% 상승했으며 2008년에는 62.1%로 상승함
 - 2,062개 유아용 식품 샘플 중, 76개 제품이 농약 잔여분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그 중 4개 제품(0.2%)만 법적 허용치를 초과함
 - 유아용 식품에 대한 유럽 연합의 법규는 매우 엄격하여 어떤 농약 잔류량도 0.01 mg/kg 이상을 넘길 수 없음
 - 유기농 제품 중에서는 분석된 샘플 제품 중 0.9%가 농약 잔류 허용량을 초과함
 - 유럽 연합은 유기농 식품 제조 과정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의 종류를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유기농 제품만을 위한 별도의 농약 잔류량 허용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반적인 제품과 동일한 허용치가 적용됨
- ※ 자료 : <http://www.efsa.europa.eu>

4) 유럽 의회, 식품 안전을 위한 수입 제한 리스트 업데이트

- 인도 바스마티 쌀(basmati rice)은 강화된 정밀 조사에 따라 유럽 연합의 수입 제한 리스트에서 제외됨
- 반면 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허브와 향신료 등은 이 수입 제한 리스트에 추가될 예정임

- 유럽 연합은 올해 지역의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 동물 식품의 원산지 검역을 강화하는 새로운 수단을 도입함
- 이 수단은 (EC) No. 669/2009에 따라 생긴 것으로 식품에 대한 공통적인 법을 적용하게 됨
- 이 669/2009 규정은 유럽 연합 지역이 아닌 국가에서 수입되어 섭취될 수 있는 ‘고 위험’ 제품들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규정임
- 고 위험 제품들이란 이미 알려져 있거나 ‘aflatoxins’, ‘Sudan dyes’, ‘중금속’, 또는 ‘살충제’와 같은 성분에 감염되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제품들임
- 1/4분기 수입 제한 리스트 재검토 결과에 따라 도미니카 공화국의 바나나와 인도의 바스마티 쌀은 리스트에서 제외될 예정임
- 그러나 유럽 의회는 세밀한 분석 끝에 the Standing Committee on the Food Chain and Animal Health (SCoFCAH)의 승인을 받아 아래와 같은 제품들은 수입 제한 리스트에 올리기로 결정함
 - 태국산 허브와 향신료
 - 페루산 파프리카와 칠리
 - 인도산 커리 잎
 - 중국산 국수
 - 이집트산 일부 과일과 야채
- 새로운 규정의 부록 1에 명시된 식품들은 더욱 정밀 검사가 강화될 것이고 제품 성분과 제품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 검사와 제품 검사의 빈도를 10~50% 강화하고 있음
- 1월 25일에 발효된 이 규정은 서류검사, 제품 검사, 물리적 검사를 포함하고 있음
- 증가한 검사는 견과류에 함유된 ‘aflatoxins’과 과일과 채소에 함유될 수 있는 살충제와 같이 인간의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이 식품에 남아있는 것을 제한하기 위함

□ 시사점

- 유럽 의회가 ‘aflatoxins’ 및 살충제와 같은 특정 성분에 검사 강화와 함께 이 결과에

-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하고 있음
- 또한 해당 품목 뿐 아니라 해당 수출국의 수출 품목 전반에 걸쳐 더 강화된 검역을 실시하고 있어 한국의 대 EU 수출업체 전반적으로 품질관리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음
- ※ 자료 : <http://www.efsa.europa.eu>

5) ‘Aflatoxins’ 관련 규정

- EU No 165/2010은 기존 Aflatoxins의 최대 허용량 수준에 관한 규정인 No 1881/2006 을 개정한 것으로 2010년 2월 26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함
- 이 EU No 165/2010의 주요 제품성분에 대한 Aflatoxins 최대 허용량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번호	제품성분	최대 허용량 (µg/kg)		
		Aflatoxins B1	Aflatoxins B1, B2, G1, G2 합 계	Aflatoxins M1
1	땅콩 및 기타 기름용 씨앗 (가공되었거나 다른 식품의 성분으로 사용되는 경우)	8.0	15.0	-
2	아몬드, 피스타치오, 살구 알맹이 (가공되었거나 다른 식품의 성분으로 사용되는 경우)	12.0	15.0	-
3	헤이즐넛, 브라질넛 (가공되었거나 다른 식품의 성분으로 사용되는 경우)	8.0	15.0	-
4	2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견과류 (가공되었거나 다른 식품의 성분으로 사용되는 경우)	5.0	10.0	-
5	땅콩 및 기타 기름용 씨앗 (사람이 직접 섭취할 수 있거나 다른 식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2.0	4.0	-
6	아몬드, 피스타치오, 살구 알맹이 (사람이 직접 섭취할 수 있거나 다른 식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8.0	10.0	-
7	헤이즐넛, 브라질넛 (사람이 직접 섭취할 수 있거나 다른 식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5.0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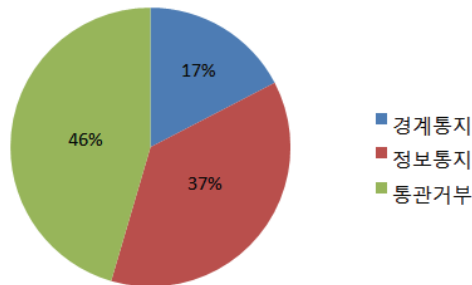
번호	제품성분	최대 허용량 (µg/kg)		
		Aflatoxins B1	Aflatoxins B1, B2, G1, G2 합 계	Aflatoxins M1
8	6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견과류 (사람이 직접 섭취할 수 있거나 다른 식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2.0	4.0	-
9	건조 과일 (가공되었거나 다른 식품의 성분으로 사용되는 경우)	5.0	10.0	-
10	건조 과일과 이를 활용한 가공품 (사람이 직접 섭취할 수 있거나 다른 식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2.0	4.0	-
11	모든 곡류 및 곡류를 활용한 모든 제품 (12, 15, 17에 해당하는 제품 제외)	2.0	4.0	-
12	옥수수 및 쌀 (가공되었거나 다른 식품의 성분으로 사용되는 경우)	5.0	10.0	-
13	원유 (raw milk), 열 가공된 우유 및 유가공 제품	-	-	0.050
14	향신료 - Capsicum spp. (고추, 고춧가루, cayenne, 파프리카의 건조 과일 또는 파우더 형태 포함) - Poper spp. (백/흑 후추) - 넛맥 - 생강 - 뉴메릭 - 위 향신료 1개 이상 혼합한 경우	5.0	10.0	-
15	곡식 가공 식품 및 유아식	0.10	-	-
16	신생아용 제품 (신생아용 우유 및 이유식)	-	-	0.025
17	신생아를 위한 의학적 특별식	0.10	-	0.025

자료 : ec.europa.eu/food/food/chemicalsafety/contaminants/aflatoxins_en.htm

- 또한 EC No 1152/2009는 비 유럽 국가 중 특정 국가에서 수입되는 식품의 성분 중 Aflatoxins 을 함유하고 있을 위험이 있는 품목을 명시하고 있음
- EC No 1152/2009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와 품목에는 중국과 중국의 견과류가 있어 중국의 견과류 또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위의 성분을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하여 유럽 지역에 수출하는 업체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6) 유럽 연합, 긴급 식품 경보 시스템 운영 결과 보고서 발표

- 유럽 연합은 위해 식품 발생 시 회원국 간에 신속하게 정보를 교류하고 통일된 식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EU 내에서 유통되거나 제 3국에서 수입되는 식품과 사료에 대해 ‘식품 및 사료 긴급 경보 시스템(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 RASFF)’을 운영하고 있음
- 식품 및 사료 긴급 경보 시스템은 경계통지(Alert Notifications), 정보통지(Information Notifications), 통관거부(Border Rejection Notifications)로 이루어져 있음
- 최근 유럽 연합은 이 식품 및 사료 긴급 경보 시스템 웹페이지(http://ec.europa.eu/food/food/rapidalert/index_en.htm)를 별도로 마련하고 2009년 1년간 운영 결과 보고서를 최근 발표함
- 지난 해 식품 및 사료 긴급 경보 시스템을 통해 공지된 건수는 총 3천 2백여 건으로, 이를 정보 종류별로 분류해 보면 경계통지 557개, 정보통지 1,191개, 통관거부 1,456개임



[2009 식품 및 사료 긴급 경보 시스템 공지 현황]

- 경계통지는 식품 또는 사료가 이미 시장에서 유통 중이어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발동되는 것으로써 2009년 557건 중에서 삼분의 2 이상이 유럽 연합 내에서 제조된 제품으로, 제품에서 병원성 미생물, 알레르기 유발 항원, 중금속, 곰팡이독소가 발견되어 조치가 내려짐
- 정보통지는 제품의 위험성이 확인되었으나 제품이 아직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있



거나 더 이상 유통되지 않는 경우, 또는 위험성이 적어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내려지는 경우로, 정보통지의 61%는 제 3국에서 수입된 제품에 내려짐

- 정보통지의 대부분은 제품에서 병원성 미생물 또는 중금속이 발견되거나 농약 잔여량이 높은 경우, 그리고 비 승인된 유전자 변형된 식품 또는 사료인 경우였음
- 통관거부는 유럽 연합 지역 내로 유입되는 것이 거절되어 반송되거나 폐기 처분된 제품에 대한 통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관거부된 제품의 38%가 곰팡이 독소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유럽 연합 지역으로 식품 또는 사료를 수출하는 업체들은 수출 이전에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확인할 것이 요구됨

- 제품에 병원성 미생물이 함유되어 있는지?
-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항원이 함유되어 있는지?
- 제품에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는지?
- 제품에 곰팡이 독소가 함유되어 있는지?
- 제품의 농약 잔여량이 허용치 이상인지?
- 제품이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식품/사료인지?

7) 영국, 수입 식품 및 사료 제품 샘플 검역 활동 보고서 발표

- 영국의 식품표준청(Food Standard Agency)은 2009-2010년 영국으로 수입되는 식품과 사료에 대한 샘플링과 검역 활동에 대한 활동 결과 보고서를 발표함
- 식품표준청은 지역 검역 당국과 포트 헬스 당국이 수입 식품에 대한 샘플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영국 지역 검역 당국은 향신료, 쌀, 육류, 음료 등 광범위한 종류의 식품들의 샘플을 조사함
- 2009~2010년간 총 5,846개의 식품 샘플을 조사한 결과 샘플의 약 4%인 261개가 미생물성 또는 화학적 오염 때문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18%인 947개가 부정확한 라벨로 부적합한 것으로 분류됨
- 검역 당국인 검역과정에서 오염물질 함유, 제품의 방사능 노출, 식품의 진품 여부

- 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짐
- 또한 동물 사료의 경우 검역 당국은 다이옥신, 중금속, 비 인증된 유전자 변형 성분 여부를 집중 단속하는 것으로 알려짐
- 영국 식품표준청은 이와 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수입제품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수입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식품표준청의 중점사항 또는 우선사항으로 두고 있음

○ 시사점

유럽 연합 지역으로 식품 또는 사료를 수출하는 업체들은 수출 이전에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확인할 것이 요구됨

- 오염물질 함유 여부
- 제품의 방사능 노출 여부
- 식품의 진품 여부

8) 영국 수의학적 물질 잔여량(veterinary residue) 분석

- 유럽 연합은 Council Directive 96/23/EC를 통해 인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식품에 남아 있는 수의학적 물질 잔여량을 감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영국은 수입 식품별 검사 물질을 정하고 샘플을 채취하여 수의학적 물질 잔여량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최근 영국 수의학적 물질 잔여량 위원회(Veterinary Residue Committee)에서는 2009년에 실시한 샘플 검사 결과를 발표함
- 양식 갑각류 : 총 256개 샘플 중 1개 제품에서 니트로푸란 항생제(Nitrofurantoin)를 발견하기 위한 AOZ(3-amino-2-oxanolidone)의 잔여량이 허용치를 넘는 6.9 μ g/kg 발견됨. 니트로푸란은 예전 양식 수산물을 치료하기 위한 수의학적 물질로 인정을 받았었으나 1995년 유럽 연합에서 금지하였고 따라서 유럽 연합 지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서도 사용이 금지됨. 허용치를 넘는 것으로 적발된 샘플은 인도에서 네덜란드로 수입된 블랙 타이거 새우(black tiger prawns)임

(2009 수입식품 수의학적 물질 잔여량 검사 결과)

제품	검사물질	샘플 개수	허용치 ($\mu\text{g}/\text{kg}$ 또는 $\mu\text{g}/\text{L}$)	허용치 초과 샘플	
				샘플개수	잔여량
양식 갑각류 (farmed warm-water Crustaceans)	Nitrofurans AOZ (3-amino-2- oxazolidone)	256	1	1	6.9
양식 어류 (farmed fish)	Chloramphenicol	300	0.3	1	0.48
붉은 살 육류 (raw red meat)	Avermectins Ivermectin	301	20, 40, 50 10	1	21
꿀	Macrolides/Lincomycin	74	0.59-14.8		
	Lincomycin		1.2	1	4.1
	Aminoglycosides Streptomycin	74	4.6-378 7.1	2	43, 49

자료 : 영국 수의학적 물질 잔여량 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vmd.gov.uk/vrc/Reports/annual.htm>

- 양식 어류 : 총 300개 샘플 중 1개 제품에서 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이 허용치를 넘은 $0.48\mu\text{g}/\text{kg}$ 이 발견됨. 클로람페니콜은 종종 사람의 안구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항생제로 유럽 연합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유럽 연합 지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서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허용치를 넘은 것으로 적발된 샘플은 베트남에서 영국으로 수입되는 golden threadfin bream으로 알려짐

○ 시사점

유럽 연합 지역으로 갑각류 또는 어류를 수출하는 업체에서는 니트로푸란 항생제 또는 클로람페니콜을 사용하지 않거나 수출하기 이전에 잔여량이 허용치 미만으로 검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니트로푸란 허용량 : $1\mu\text{g}/\text{kg}$

클로람페니콜 허용량 : $0.3\mu\text{g}/\text{kg}$

9) 유럽연합, 식음료 색소 사용 감소 또는 금지 추진

- 영국 식품기준청(Food Standards Agency)은 최근 식음료 업체들에게 식음료에 사용되는 3개 색소에 대한 사용 허용 수준을 낮추기로 하는 유럽 연합의 새로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 유럽 의회는 3개 색소, E 104 quinoline yellow, E110 sunset yellow and E124 ponceau 4R에 대한 현재 허용 수준을 수정하는 안을 제출함
- 또한 유럽 의회는 이 색소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특정 식품에는 이들 색소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임
- 이 개정안은 EC Directive 94/36 의 부록과 식품 첨가물에 관한 규정 EC Regulation 1333/2008에 반영될 예정임
- 이번에 색소 관련 개정안에서 변경될 3개 색소는 최근 사우스햄프턴 대학 (Southampton University)에서 실시한 색소의 섭취와 아동의 과잉반응행동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한 6개 색소 중 3개임
- 이 연구 결과에 따라 영국 식품기준청은 이미 이 3개 색소를 식음료에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고, 새로운 유럽 연합의 라벨링 필수사항에서는 6개 색소의 포함 여부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함

10) 새로운 식품 첨가물 사용 승인

- 새 유럽 연합 규정인 특정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식품 첨가물 승인함과 동시에 기존 식품 첨가물의 새로운 용도로의 사용 또한 허용함
- 이 유럽 연합 규정인 2010/69/EU는 색소와 감미료라기보다는 식품 첨가물에 의미가 강하며 이 규정은 11월 11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 새로운 식품 첨가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음
 - E 392 extracts of rosemary (로즈마리 추출물)
 - E 427 cassia gum (카시아 검)
 - E 961 neotame (감미료의 일종으로 향미 증진제)
 - E 1203 polyvinyl alcohol (폴리비닐 알코올)
 - E 1521 polyethylene glycol (폴리에틸렌 글리콜)

제2절 ● 주요 품목별 검역 제도

가. 수산물

1) 기존 수산물 검역제도

- 수산물의 EU 지역 내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Directorate-General for Health and Consumer Protection에서 인정하는 비(非) EU 국가의 해당 행정기관이 발급한 공식 인증서가 필요했음
- 이 공식인증서는 수출자격이 있는 국가에 사전 발급되어 EU 국가로의 수출을 승인을 받았음

2) 수산물 어획 증명서

- ‘EC IUU(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통제법령’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EU로 수출하는 모든 수산물은 합법적으로 어획이 됐다는 ‘수산물 어획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증명서는 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발급함
- 유럽 영토 내 도착 예정시간으로부터 적어도 근무일 기준 3일 전에 수입업체는 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회원국의 관할당국에 승인 받은 어획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회원국의 관할당국은 다음의 경우 추가 증명서류 또는 기국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수산제품의 EC 수입을 거부할 수 있음
 - ① 수입업체가 해당 제품에 대한 어획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입하려는 제품이 어획증명서에 언급된 것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 ③ 어획증명서가 기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④ 어획증명서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누락된 경우
 - ⑤ 수입업체가 수산제품이 제14(1) 또는 제14(2)조의 조건을 충족했는지 증명할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
 - ⑥ 어획증명서상에 어획 원산지 선박으로 등재된 어선이 EC IUU 선박 리스트 또는

제30조에서 언급된 IUU 선박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⑦ 비협력 국가로서 기국(선적국) 당국이 어획증명서를 검증한 경우

○ 수산제품의 정의로부터 제외 되는 제품 목록은 아래와 같음

민물수산제품
치어 또는 유생으로부터 얻은 양식 제품
관상용 어류
활굴
가리비 과의 조개(펙턴, 클라미스, 프라코펙텐 속의 것으로서 여왕가리비 포함)를 포함한 살아있거나 신선 또는 냉장된 가리비
냉동된 가리비(Coquilles St Jacques (Pecten maximus))
기타 신선 또는 냉장된 가리비
홍합
바다에서 어획된 것을 제외한 달팽이
처리 및 보존된 연체동물 (molluscs)

나. 임산물

- 유럽식품안전청의 식품 건강 패널(Plant Health Panel)은 최근 유럽에서 발견된 두 가지 식물 해충에 대한 과학적 조언을 발행함
- 한 가지는 곰팡이 균의 일종인 *Gibberella cirinata*에 의해 발생하는 소나무 줄기 마름병이고 다른 한 가지는 밤나무 흑벌(the oriental chestnut gall wasp, *Dryocosmus kuriphilus*)임
- 유럽위원회는 유럽 식품안전청에 두 가지 해충이 유럽지역에 야기할 수 있는 위



- 험에 대한 평가와 가능한 위협 대처 방안에 대한 효율성을 평가해 줄 것을 의뢰함
- 과학적인 문헌조사와 기후적 적합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패널은 두 해충이 서식할 여지가 있으며 포르투갈, 이탈리아, 프랑스와 같이 이 해충에 취약한 지역으로 더 확산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림
 - 다른 해충이 발생하거나 두 해충이 유럽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럽위원회에 의해 임시적인 방역체계는 이미 실행되고 있음
 - 위원회는 영구적인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유럽 식품안전청에 과학적인 조언을 요청함

1) 소나무 줄기마름병

- 소나무 줄기마름병은 미국, 일본, 한국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국가에 발생하는 것으로 *Gibberella circinata*는 소나무와 더글라스 전나무(Douglas fir trees)에 가장 치명적인 질병임
- 유럽에서 최근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이탈리아로부터 소나무 줄기마름병의 발생이 보고되고 있음
- 이 소나무 줄기마름병은 오염된 씨앗, 목재로 만든 제품,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은 장식용 식물을 통해 전염되지 않은 지역으로 퍼짐
- 이 *Gibberella circinata*에 감염된 나무는 느린 성장과 심각한 가지 손상이 특징임
- 이 해충의 영향은 소나무가 많이 자라는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의 일부 지역에 매우 심각할 수 있음
- 패널은 나무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없으면 소나무 줄기마름병은 재빨리 유럽의 다른 취약한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림
- 이 해충은 천만 헥타르가 넘는 소나무 서식지역과 숲을 황폐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충격은 막대할 수 있음
- 패널에 따르면 씨앗, 식물, 나무, 토양, 해충에 감염된 기계 등의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이 해충이 유럽연합 지역에서 확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음

2) 밤나무 흑별 (Oriental chestnut gall wasp)

- 밤나무 흑별은 아시아가 원산지이나 현재는 미국에 있는 밤나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밤나무 흑별은 가을에 나무의 싹에 알을 낳고 봄에 유충이 나뭇잎 먹으면서 성장하는데 이를 흑선충이라고 부르며 잎의 성장을 방해함
- 이 해충은 식물의 성장을 느리게 하고 밤의 생산량을 감소시킴
- 밤나무 흑별은 감염된 밤나무를 다른 지역에 식재하면서 확산됨
- 이 해충이 이탈리아 북부인 피드몬트(Piedmont) 지역에 유입되면서 현재는 거의 이탈리아 전 지역에서 밤나무 흑별이 발견되고 있으며 프랑스, 슬로베니아, 스위스, 헝가리에서도 보고되고 있음
- 패널은 포르투갈 북부, 스페인 북부, 프랑스 남서부 지역의 밤 생산 지역이 특히 위험하다고 결론을 지음
- 이 해충이 다른 지역으로 유입되는 위험을 감소,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럽 식품안전청은 밤나무를 사용한 모든 제품은 이 해충이 없다는 것을 인증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음

3) 시사점

- 유럽 식품안전청의 패널이 소나무 줄기마름병을 ‘미국, 일본, 한국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국가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음
- 또한 밤나무 흑별의 경우는 밤나무를 사용한 모든 제품은 이 해충이 없다는 것을 인증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유럽으로 소나무 및 전나무, 그리고 밤나무 관련 제품 수출시 해당 해충이 없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검역 절차가 보다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됨

제3절 ● 검역불합격 및 폐기, 반송 사례

가. 수산물 검역 관련 사례

- 수산물 검역 규정 변경과 관련하여 현재 2009년 12월 31일 조업분에 대해서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조업 또는 가공이 완료되었다는 증명을 할 경우에만 EU 영토내로 들어올 수 있음
- 이러한 예외 조항에 따라 영국에서 검역을 통과한 사례가 있음

나. 고춧가루

- 주요 수입업체를 통해 검역 불합격 및 폐기, 반송 사례를 수집한 결과, 7월 한국 A업체에서 중국산 고춧가루를 한국에서 재포장하여 유럽 지역으로 수출한 제품에서 곰팡이 균의 일종인 Aflatoxin이 발견되어 전량 폐기처분 됨

다. 젤리

- 유럽 연합 ‘식품 및 사료 긴급 경보 시스템(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 RASFF)’을 통해 검역에서 문제가 된 한국 사례를 검색한 결과 10월 1일 이탈리아에서 한국산 젤리에서 불명확한 붉은색 색소 검출되어 시장에서 제품 회수됨

라. 9~10월 검역 불합격 사례

- 9월 5째 주에서 10월 4째 주까지의 타 국가의 검역 불합격 문제 사례와 조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9월 5째주 - 10월 4째주 검역 불합격 사례〉

날짜	검역국가	원산지	적발내용	조치내용
28/09/2010	스페인	모로코	모로코산 냉동갑오징어에서 변형된 감각기 특성 발견	리콜조치
29/09/2010	그리스	파키스탄	파키스탄산 바스마티 쌀에서 aflatoxins (B1 = 6.1; Tot. = 6.6 µg/kg - ppb) 검출	폐기처분
01/10/2010	영국	가나	가나산 반쿠 믹스 (banku mix)에서 aflatoxins (B1 = 20; Tot. = 36 µg/kg - ppb) 검출	
27/09/2010	슬로바키아	터키	터키산 수박맛 풍선껌에서 고농도의 색소 검출 colour E 124 - Ponceau 4R / cochineal red A (95,4 mg/kg - ppm)	반송조치
01/10/2010	이탈리아	한국	한국산 젤리에서 불명확한 붉은색 색소 검출	제품회수
28/09/2010	독일	중국	중국에서 불법 관자 수입 시도 적발	반송조치
29/09/2010	루마니아	중국	라벨에 linoleic acid soft capsules에 대한 표기 누락	제품억류
29/09/2010	핀란드	인도	과일 및 허브 소스에 비인증된 신기 식품 성분 사용	제품억류
30/09/2010	핀란드	인도	다양한 식품 보조제에서 수은 검출 (0,47-16 mg/kg - ppm)	
28/09/2010	이탈리아	알바니아	해바라기씨 유에서 히스타민 검출	반송조치
28/09/2010	스페인	페루	참치캔 포장 손상	폐기처분
29/09/2010	루마니아	베트남	냉동 메기 필렛 컨테이너의 냉각 체인 파열로 온도 조절 불량	반송조치
29/09/2010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대구류의 일종인 헤이크 (hake)에서 Listeria monocytogenes 검출	반송조치
01/10/2010	폴란드	베트남	냉동 메기 필렛 5개 중 1개에서 Listeria monocytogenes 검출	반송조치
01/10/2010	폴란드	베트남	냉동 메기 필렛 5개 중 1개에서 Listeria monocytogenes 검출	제품회수
28/09/2010	스페인	러시아	복숭아 부패	반송조치
29/09/2010	폴란드	이란	건포도에 곰팡이 발생 (8.3%)	폐기처분
29/09/2010	영국	태국	가지에서 methomyl (0.03 mg/kg - ppm), triazophos (0.05 mg/kg - ppm), omethoate (0.03 mg/kg - ppm) 검출	반송조치
01/10/2010	폴란드	몰도바	사과 부패	폐기처분
27/09/2010	영국	도미니카	고추에서 dicofol (4.2 mg/kg - ppm) 검출	폐기처분



날짜	검역국가	원산지	적발내용	조치내용
01/10/2010	루마니아	중국	프로폴리스의 불법 수입	반송조치
01/10/2010	이탈리아	에콰도르	특정 색소의 과다 검출 colour E 124 - Ponceau 4R / cochineal red A (in product : 897; in dessert : 75; 135; 42 mg/kg - ppm)	제품회수
27/09/2010	싸이프러스	요르단	비인증된 양젖 수입	제품억류
27/09/2010	그리스	나이지리아	참깨에 곰팡이 및 약취 발생	반송조치
27/09/2010	독일	터키	구운 피스타치오에서 aflatoxins (B1 = 26.8; Tot. = 31.7 / µg/kg - ppb) 검출	반송조치 또는 폐기처분
28/09/2010	벨기에	아르헨티나	땅콩에서 aflatoxins (B1 = 11; Tot. = 11 / B1 = <0.2; Tot. = <1.0 µg/kg - ppb) 검출	반송조치
28/09/2010	폴란드	우크라이나	평지씨의 진드기 감염	제품회수
04/10/2010	덴마크	파키스탄	바스마티 쌀의 벌레와 곰팡이 감염	반송조치 또는 폐기처분
04/10/2010	영국	나이지리아	즉석 씨리얼에서 aflatoxins (B1 = 4.1; Tot. = 6.6 µg/kg - ppb) 검출	리콜조치
05/10/2010	벨기에	아랍에미레이트	냉동 바다가재 꼬리의 비위생적 상태	반송조치
08/10/2010	영국	방글라데시	냉동 새우에서 semicarbazide (SEM) 검출	제품회수
06/10/2010	스페인	베트남	냉동 메기 필렛 컨테이너의 냉각 체인 파열로 온도 조절 불량 (15도 이상)	제품회수
04/10/2010	이탈리아	일본	식칼에서 chromium 검출	제품회수
05/10/2010	이탈리아	보스니아	신선 버섯에서 높은 수준의 방사선 물질 검출 (Cesium-137 = 1105 BQ/kg)	반송조치
08/10/2010	그리스	중국	배 통조림 패키지 손상	반송조치
04/10/2010	영국	인도	붉은 고추가루에서 aflatoxins (B1 = 10; Tot. = 11 µg/kg - ppb) 검출	반송조치
05/10/2010	스페인	모로코	민트에서 endosulfan (0.294 mg/kg - ppm) 검출	반송조치
06/10/2010	독일	파키스탄	고추가루에서 비승인 색소인 Sudan 1 (483 mg/kg - ppm) 과 Sudan 4 (30 mg/kg - ppm) 검출	폐기처분
08/10/2010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카레 가루에서 Salmonella Slatograd (Serotype II 30 : g,t : - /25g) 검출	반송조치 또는 폐기처분

주요 수출국의 수출현안 모니터링

날짜	검역국가	원산지	적발내용	조치내용
08/10/2010	벨기에	인도	생강에서 aflatoxins (B1 = 10.9; Tot. = 19.7 µg/kg - ppb) 검출	제품회수
05/10/2010	벨기에	브라질	냉동 조리 소고기에서 ivermectin (2x) 20 µg/kg - ppb) 검출	폐기처분
05/10/2010	네덜란드	칠레	냉장 bovine meat 의 위생상태 불량	폐기처분
08/10/2010	스위스	브라질	냉동 조리 소고에서 기생충 감염 발견	제품억류
07/10/2010	리투아니아	러시아	탄산수에서 고농도 nitrite (1.5 mg/l) 와 fluoride (2.4 mg/l) 발견	반송조치
05/10/2010	이탈리아	인도	참깨에서 Enterobacteriaceae (70000 CFU/g) 발견	반송조치
05/10/2010	스페인	미국	아몬드에서 aflatoxins (B1 = 28.8; Tot. = 66 µg/kg - ppb) 검출	반송조치
05/10/2010	영국	중국	땅콩에서 aflatoxins (B1 = 4.2; Tot. = 6.3 / B1 < 0.2; Tot. < 0.8 µg/kg - ppb) 검출	반송조치
05/10/2010	폴란드	우크라이나	해바라기 씨에서 malathion (0.5 mg/kg - ppm), permethrin (1.0 mg/kg - ppm), deltamethrin (0.1 mg/kg - ppm), trifluralin (0.5 mg/kg - ppm) 와 금지성분인 DDT (0.1 mg/kg - ppm), HCH (0.5 mg/kg - ppm), heptachlor (0.1 mg/kg - ppm) 검출	반송조치
07/10/2010	독일	브라질	땅콩에서 aflatoxins (B1 = 5.1; Tot. = 6.3 µg/kg - ppb) 검출	폐기처분
07/10/2010	이탈리아	브라질	냉동 닭고기에서 높은 nicarbazin (10.25 µg/kg - ppb) 잔여량 검출	제품회수

자료 : 유럽 연합 식품 및 사료 긴급 경보 시스템 RASFF 웹사이트

○ 시사점

검역에서 문제가 된 사례를 분류해 보면, 곰팡이균의 일종인 aflatoxins의 검출, 비승인 색소의 사용, 제품의 부패, 포장손상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특히 aflatoxins에 대해서는 유럽 연합 지역에서 더욱 엄격하게 검사를 하고 있고 올해 한국 업체도 고춧가루에서 aflatoxins이 검출되어 전량 폐기처분 한 바가 있어 업체들의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또한 사탕 및 과자류 등을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는 업체들은 유럽에서 승인하고 있는 색소를 반드시 확인하고 색소 성분을 유럽 승인 색소로 변경하는 것이 요구됨



마. 11월 검역 불합격 사례

- 유럽 연합 ‘식품 및 사료 긴급 경보 시스템(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 RASFF)’을 통해 검역에서 문제가 된 한국 사례를 검색한 결과 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2010년 44째주에서 47째주 (11월 1~4째주)까지 유럽 내에서 검역 불합격 문제 사례와 조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11월 검역 불합격 사례〉

날짜	검역국가	원산지	불합격 사유	후속조치
05/11/2010	영국	인도네시아	냉동 새우의 부적절한 온도 조절	제품철수
04/11/2010	에스토니아	러시아	Rape 케이크에서 살모넬라균 검출	
03/11/2010	스페인	중국	냉동 틸라피아 필렛의 부적절한 온도 조절 -	반송조치 또는 폐기처분
03/11/2010	스페인	뉴질랜드	냉동 셋돔 어란의 기생충 감염	반송조치 또는 폐기처분
03/11/2010	스페인	뉴질랜드	대구류 생선인 헤이크 (hake)의 변형된 관능적 특징 (altered organoleptic characteristics of hake, Merluccius australis)	제품철수
03/11/2010	이탈리아	중국	튀김제품에서 니켈 검출 (5.3 mg/kg - ppm)	반송조치
03/11/2010	이탈리아	중국	핸드블렌더에서 니켈 검출 (0.35 mg/kg - ppm)	폐기처분
02/11/2010	스웨덴	터키	마른 무화과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26; Tot. = 29 µg/kg - ppb)	반송조치 또는 폐기처분
03/11/2010	스웨덴	터키	마른 무화과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9.5; Tot. = 26 µg/kg - ppb)	반송조치 또는 폐기처분
03/11/2010	이탈리아	터키	마른 무화과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9.1; Tot. = 9.7 µg/kg - ppb)	반송조치 또는 폐기처분

주요 수출국의 수출현안 모니터링

날짜	검역국가	원산지	불합격 사유	후속조치
03/11/2010	독일	터키	마른 무화과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3.5; Tot. = 3.9 / B1 = 0.15; Tot. = 0.15 µg/kg - ppb)	반송조치
03/11/2010	라트비아	아르헨티나	마른 자두에서 높은 수준의 E200 검출 (E 200 - sorbic acid, 2546 mg/kg - ppm)	반송조치 또는 폐기처분
03/11/2010	독일	터키	마른 무화과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0.21; Tot. = 0.44 / B1 = 3.1; Tot. = 3.5 / B1 = 0.13; Tot. = 0.13 µg/kg - ppb)	반송조치
05/11/2010	이탈리아	터키	마른 무화과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9.5; Tot. = 12.8 / B1 = 0.9; Tot. = 3.0 µg/kg - ppb)	반송조치
05/11/2010	이탈리아	터키	마른 무화과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4.9; Tot. = 5.5 µg/kg - ppb)	반송조치
02/11/2010	영국	인도	커리 잎에서 농약의 일종인 디클로르보스 검출 (dichlorvos 0.3 mg/kg - ppm)	폐기처분
03/11/2010	영국	태국	스위트 바질에서 농약 검출 carbendazim (0.33 mg/kg - ppm) & dichlorvos (0.06 mg/kg - ppm)	폐기처분
04/11/2010	스웨덴	태국	바질에서 농약 검출 (famoxadone, 0.058 mg/kg - ppm)	반송조치
04/11/2010	폴란드	인도	bad hygienic state of and suspicion of fraud (미국 code of CN code '09041100' for whole black pepper on customs' declaration) in relation to spent black pepper 인도	반송조치
04/11/2010	영국	인도	투머릭 파우더에서 (tumeric powder)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9.1; Tot. = 9.6 µg/kg - ppb) 인도	반송조치 또는 폐기처분
04/11/2010	영국	인도	고추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9.4; Tot. = 9.8 µg/kg - ppb)	반송조치
05/11/2010	독일	인도	고춧가루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47.2; Tot. = 48.7 µg/kg - ppb)	반송조치 또는 폐기처분
05/11/2010	영국	인도	고춧가루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7.3; Tot. = 7.3 µg/kg - ppb)	반송조치 또는 폐기처분



날짜	검역국가	원산지	불합격 사유	후속조치
05/11/2010	영국	인도	생강가루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7.8; Tot. = 16 $\mu\text{g}/\text{kg}$ - ppb)	폐기처분
04/11/2010	노르웨이	우루과이	냉동 뼈없는 소고기의 부적절한 온도 조절	제품철수
02/11/2010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땅콩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7.1; Tot. = 10.3 $\mu\text{g}/\text{kg}$ - ppb)	압류조치
02/11/2010	네덜란드	브라질	땅콩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0.7; Tot. = 0.7 / B1 = 17.7; Tot. = 19.1 $\mu\text{g}/\text{kg}$ - ppb)	압류조치
02/11/2010	네덜란드	브라질	땅콩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6.2; Tot. = 7 / B1 = 11.1; Tot. = 12.6 $\mu\text{g}/\text{kg}$ - ppb)	반송조치 또는 폐기처분
02/11/2010	이탈리아	미국	피스타치오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26.2; Tot. = 29 / B1 = 0.9; Tot. = 0.9 $\mu\text{g}/\text{kg}$ - ppb)	반송조치
03/11/2010	독일	이란	피스타치오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13.1; Tot. = 14.4 / B1 = 17.7; Tot. = 19.5 $\mu\text{g}/\text{kg}$ - ppb)	압류조치
04/11/2010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11.5; Tot. = 13.4 $\mu\text{g}/\text{kg}$ - ppb) in groundnuts 아르헨티나	반송조치
04/11/2010	독일	브라질	땅콩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1.86; Tot. = 6.1 $\mu\text{g}/\text{kg}$ - ppb)	반송조치 또는 폐기처분
04/11/2010	영국	터키	헤이즐넛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0.2; Tot. = <0.8 / B1 = 24; Tot. = 35 $\mu\text{g}/\text{kg}$ - ppb)	강제검역
05/11/2010	독일	브라질	땅콩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Tot. = 6.2 $\mu\text{g}/\text{kg}$ - ppb)	압류조치
05/11/2010	네덜란드	브라질	땅콩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0.9; Tot. = 5.9 $\mu\text{g}/\text{kg}$ - ppb)	압류조치
05/11/2010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땅콩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12.3; Tot. = 35.3 / B1 = 11.6; Tot. = 30.1 $\mu\text{g}/\text{kg}$ - ppb)	제품철수
05/11/2010	그리스	브라질	냉동 닭고기에서 살모넬라균 검출	리콜조치
12/11/2010	리투아니아	중국	사발면에서 알루미늄 대량 검출 (11.9 mg/kg - ppm)	폐기처분

주요 수출국의 수출현안 모니터링

날짜	검역국가	원산지	불합격 사유	후속조치
12/11/2010	아일랜드	중국	미니 젤리에서 비승인 색소 검출 (E 425 - konjac)	폐기처분
08/11/2010	스페인	모잠비크	냉동 왕 새우의 부적절한 온도 조절 -	제품철수
10/11/2010	에스토니아	러시아	Rape 케익에서 살모넬라균 검출	반송조치 또는 폐기처분
10/11/2010	에스토니아	러시아	Rape 케익에서 살모넬라균 검출	물리적 처리
10/11/2010	프랑스	페루	수산물에서 다량의 Enterobacteriaceae 검출 (3400 /g)	물리적/산 화적 처리
12/11/2010	영국	페루	수산물에서 살모넬라균 검출(group E)	폐기처분
09/11/2010	폴란드	베트남	냉동 메기에서 Listeria monocytogenes 검출 (presence in 3 out of 5 samples /25g)	반송조치
10/11/2010	이탈리아	중국	조리도구에서 니켈 검출 (0.24 mg/kg - ppm)	제품철수
10/11/2010	네덜란드	우즈베키스탄	건포도에서 ochratoxin A (30 µg/kg - ppb) 검출	압류조치
10/11/2010	네덜란드	우즈베키스탄	건포도에서 ochratoxin A (30 µg/kg - ppb) 검출	반송조치
10/11/2010	폴란드	인도	건포도의 곰팡이 감염 (5.8 - 7.5 %) 및 곤충 발견	폐기처분
10/11/2010	독일	인도	아욱 (okra)에서 monocrotophos (0.13 mg/kg - ppm) 및 acephate (0.13 mg/kg - ppm) 검출	압류조치
11/11/2010	네덜란드	터키	마른 무화과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B1 = 15; Tot. = 22 µg/kg - ppb) 및 ochratoxin A (64 µg/kg - ppb) 검출	반송조치 또는 폐기처분
11/11/2010	이탈리아	터키	마른 무화과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B1 = 9.96; Tot. = 11.8 / B1 < 0.5; Tot. < 2 µg/kg - ppb) 검출	압류조치
12/11/2010	슬로바키아	터키	마른 무화과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21.88; Tot. = 30.79 / B1 = 15.14; Tot. = 19.4 µg/kg - ppb)	압류조치
12/11/2010	슬로베니아	터키	마른 무화과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3.7; Tot. = 6.7 µg/kg - ppb)	폐기처분
08/11/2010	스페인	인도	생강의 곰팡이 감염	반송조치



날짜	검역국가	원산지	불합격 사유	후속조치
11/11/2010	독일	인도	커쿠마 파우더 (curcuma powder)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6.4 µg/kg - ppb)	폐기처분
12/11/2010	영국	태국	스위트 바질에서 carbofuran (0.25 mg/kg - ppm) 및 carbendazim (1.1 mg/kg - ppm) 검출	
08/11/2010	스페인	이집트	염장 돼지 케이싱에서 E 231 - orthophenylphenol (0.05 mg/kg - ppm) 검출	압류조치
08/11/2010	스페인	미국	아몬드의 변형된 관능학적 특징	압류조치
09/11/2010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땅콩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2.7; Tot. = 3.2 / B1 = 27.0; Tot. = 33.4 µg/kg - ppb)	압류조치
09/11/2010	네덜란드	브라질	땅콩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11.2; Tot. = 11.9 / B1 = 3.8; Tot. = 4.1 µg/kg - ppb)	반송조치 또는 폐기처분
09/11/2010	영국	중국	땅콩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71; Tot. = 78 µg/kg - ppb)	반송조치 또는 폐기처분
09/11/2010	그리스	인도	참깨에서 살모넬라균 검출	반송조치 또는 폐기처분
09/11/2010	그리스	인도	참깨에서 살모넬라균 검출	반송조치 또는 폐기처분
10/11/2010	아일랜드	나이지리아	egusi power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166; Tot. = 190 µg/kg - ppb)	압류조치
10/11/2010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땅콩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10.8; Tot. = 124.7 µg/kg - ppb)	압류조치
11/11/2010	네덜란드	남아프리카	땅콩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3.4; Tot. = 13.2 / B1 = 4.4; Tot. = 6.1 µg/kg - ppb)	압류조치
11/11/2010	네덜란드	남아프리카	땅콩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18.6; Tot. = 24.6 / B1 = 10.5; Tot. = 12.8 µg/kg - ppb)	압류조치
12/11/2010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땅콩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31.8; Tot. = 34.9 µg/kg - ppb)	압류조치
12/11/2010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땅콩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5.7; Tot. = 7.6 µg/kg - ppb)	반송조치

주요 수출국의 수출현안 모니터링

날짜	검역국가	원산지	불합격 사유	후속조치
12/11/2010	독일	미국	아몬드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ND; Tot. = ND / B1 = 61.5; Tot. = 69.2 $\mu\text{g}/\text{kg}$ - ppb)	제품철수
15/11/2010	이탈리아	터키	냉동 조개에서 Escherichia coli (13000) 검출	반송조치
17/11/2010	이탈리아	터키	냉동 조개에서 Escherichia coli (2600; 22; 11; 160; 3300 CFU/g) 검출	폐기처분
19/11/2010	그리스	터키	냉장 굴에서 높은 수준의 Escherichia coli (2400 CFU/100g) 검출	반송조치
19/11/2010	스페인	이란	냉동 오징어의 위생 불량 및 패키지 불량	경고문 광고
19/11/2010	이탈리아	중국	라면에서 다량의 알루미늄 검출 (16 mg/kg - ppm)	무역금지
16/11/2010	독일	인도	냉동 새우의 패키지 불량 및 곤충 감염	반송조치
18/11/2010	영국	인도	냉동 블랙 타이거 새우의 위생 불량	압류조치
18/11/2010	사이프러스	중국	식품 보조제에서 비승인 물질인 sibutramine (15.7 mg/item) 검출	물리적/산 화적 처리
16/11/2010	리투아니아	모리타니아	수산물에서 살모넬라균 검출 spp. (3 out of 6 samples /25g)	제품철수
15/11/2010	폴란드	베트남	냉동 메기에서 Listeria monocytogenes (in 4 out of 5 samples /25g) 검출	폐기처분
16/11/2010	스페인	모리타니아	냉장 생선의 관능적 특징 오류	반송조치
16/11/2010	스페인	미국	날개다랑어의 위생 불량	반송조치
17/11/2010	폴란드	베트남	냉동 메기에서 Listeria spp (in 4 out of 5 samples) 검출	반송조치
18/11/2010	스페인	뉴질랜드	냉동 셋돔 어란의 기생충 감염	반송조치 또는 폐기처분
19/11/2010	스페인	모리타니아	냉장 생선의 관능적 특징 오류	반송조치 또는 폐기처분
19/11/2010	스페인	중국	아구의 기생충 감염	제품철수
15/11/2010	이탈리아	중국	스테인레스 스틸 청소기에서 chromium (1.77 mg/kg - ppm) 검출	반송조치 또는 폐기처분
16/11/2010	이탈리아	중국	전기 슬라이서기에서 chromium (5.464 mg/l) 검출	압류조치



날짜	검역국가	원산지	불합격 사유	후속조치
16/11/2010	핀란드	중국	치즈 슬라이스 세트에서 chromium (5.4; 8.5; 2.8; 4.6 mg/dm ²)	무조치
15/11/2010	이탈리아	중국	arbutus에서 lead 검출	압류조치
16/11/2010	오스트리아	터키	마른 무화과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21.5; Tot. = 25.4 / B1 = 2.0; Tot. = 2.65 µg/kg - ppb)	반송조치
16/11/2010	독일	터키	마른 무화과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13.7; Tot. = 14.7 µg/kg - ppb)	반송조치
18/11/2010	몰타	터키	마른 무화과의 불충분한 라벨링	폐기처분
18/11/2010	스페인	에콰도르	다수 냉장 과일의 부패	재-라벨 조치
19/11/2010	그리스	터키	구운 페퍼에서 sulphite (20.6 mg/kg - ppm) 검출	폐기처분
19/11/2010	노르웨이	태국	에그 플란트에서 dimethoate (0.53 mg/kg - ppm) 검출	압류조치
15/11/2010	영국	인도	커리 앞에서 chlorpyriphos (0.16 mg/kg - ppm), profenofos (2.3 mg/kg - ppm), ethion (0.31 mg/kg - ppm), triazophos (1.4 mg/kg - ppm), tebuconazole (2.2 mg/kg - ppm) 및 hexaconazole (0.10 mg/kg - ppm) 검출	반송조치
17/11/2010	영국	인도	고춧가루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7; Tot. = 7.5 µg/kg - ppb)	반송조치
17/11/2010	영국	인도	마른 고추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9.2; Tot. = 9.9 µg/kg - ppb)	반송조치
19/11/2010	영국	인도	마른 고추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9.2; Tot. = 9.9 µg/kg - ppb)	반송조치
19/11/2010	이탈리아	멕시코	자연산 꿀에서 곤충 발견	반송조치
17/11/2010	독일	이집트	양 고기의 부적절한 건강 증명서	제품철수
15/11/2010	폴란드	우크라이나	rape seed의 진드기 감염	반송조치
16/11/2010	독일	터키	피스타치오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64.6; Tot. = 75.3 µg/item)	반송조치
17/11/2010	독일	터키	헤이즐넛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1.7; Tot. = 16.3 µg/kg - ppb)	반송조치
18/11/2010	폴란드	우크라이나	rape seed의 진드기 감염	반송조치 또는 폐기처분

주요 수출국의 수출현안 모니터링

날짜	검역국가	원산지	불합격 사유	후속조치
19/11/2010	그리스	터키	헤이즐넛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6.1; Tot. = 16.7 µg/kg - ppb)	반송조치
26/11/2010	불가리아	터키	냉장 조개에서 높은 수준의 Escherichia coli (7.9x10 ² CFU/100g) 검출	반송조치
26/11/2010	이탈리아	터키	냉동 조개에서 Escherichia coli O157 : H7 (between 5 and 110 MPN/g) 검출	재-라벨 조치
24/11/2010	영국	파키스탄	바스마티 쌀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6.6; Tot. = 7.3 µg/kg - ppb)	경고문 광고
22/11/2010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젤리에서 높은 수준의 카페인 검출 (685.82 mg/kg - ppm)	반송조치
24/11/2010	사이프러스	중국	식품 보조제에서 비승인 물질인 sibutramine (15.7 mg/item) 검출 (12.1 mg)	압류조치
24/11/2010	CZECH REPUBLIC	미국	식품 보조제에서 비승인 물질인 melatonine 검출	강제검역
23/11/2010	라트비아	모로코	수산물에서 다량의 Enterobacteriaceae 검출	제품철수
22/11/2010	영국	스리랑카	냉장 참치의 보존 상태 불량	반송조치
24/11/2010	스페인	케이프 베르데	폴락 캔의 위생 상태 불량	
26/11/2010	노르웨이	베트남	냉동 붉은 송어에서 금지 물질인 chloramphenicol 검출	제품철수
22/11/2010	이탈리아	중국	스테인레스 스틸 조리도구에서 lead (0.93 mg/kg - ppm) 검출	반송조치
22/11/2010	이탈리아	태국	스테인레스 스틸 조리도구에서 니켈 검출 (1 mg/kg - ppm)	반송조치 또는 폐기처분
23/11/2010	이탈리아	중국	스테인레스 스틸 칼 세트에서 chromium (1.4 mg/kg - ppm) 검출	압류조치
23/11/2010	핀란드	중국	치즈 슬라이서와 칼세트에서 chromium (2.5; 7.1; 4.1 mg/dm ²) 검출	압류조치
23/11/2010	핀란드	중국	스푼 및 포크에서 chromium (between 2.4 and 11 mg/dm ²) 검출	반송조치
24/11/2010	이탈리아	중국	스테인레스 스틸 커피머신에서 chromium (2.49 mg/kg - ppm) 검출	제품철수
22/11/2010	스웨덴	터키	마른 무화과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2.8; Tot. = 7.2 µg/kg - ppb)	반송조치
22/11/2010	독일	터키	마른 무화과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3.2; Tot. = 9.2 µg/kg - ppb)	폐기처분



날짜	검역국가	원산지	불합격 사유	후속조치
22/11/2010	노르웨이	태국	long beans에서 omethoate (0.24 mg/kg - ppm) 및 dimethoate (0.01 mg/kg - ppm) 검출	반송조치
23/11/2010	스웨덴	터키	마른 무화과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5.0; Tot. = 5.0 µg/kg - ppb)	압류조치
23/11/2010	오스트리아	터키	마른 무화과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6.07; Tot. = 11.69 / B1 = n.b.; Tot. = n.b. µg/kg - ppb)	압류조치
23/11/2010	오스트리아	터키	마른 무화과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29.9; Tot. = 40.73 µg/kg - ppb)	압류조치
23/11/2010	오스트리아	터키	마른 무화과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n.b.; Tot. = n.b. / B1 = 2.8; Tot. = 3.11 µg/kg - ppb)	압류조치
23/11/2010	오스트리아	터키	마른 무화과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4.0; Tot. = 4.0 / B1 = 5.9; Tot. = 7.97 µg/kg - ppb)	압류조치
23/11/2010	오스트리아	터키	마른 무화과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18.3; Tot. = 38.24 µg/kg - ppb)	폐기처분
23/11/2010	영국	태국	yard long beans에서 carbofuran (0.11 mg/kg - ppm), chlorpyriphos (0.22 mg/kg - ppm), carbendazim (0.22 mg/kg - ppm) 및 cypermethrin (0.75 mg/kg - ppm) 검출	반송조치
23/11/2010	불가리아	터키	마른 무화과의 부정확한 라벨링	반송조치
23/11/2010	이탈리아	터키	마른 무화과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3.7; Tot. = 5.2 µg/kg - ppb)	반송조치
23/11/2010	불가리아	터키	sivria peppers에서 methomyl (0.077 mg/kg - ppm) 검출	반송조치
23/11/2010	불가리아	터키	냉장 신선 애호박에서 oxamyl (0.059 mg/kg - ppm) 검출	반송조치 또는 폐기처분
24/11/2010	노르웨이	터키	마른 무화과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4.4 / B1 = 0.7 / B1 = 0.8 µg/kg - ppb)	반송조치 또는 폐기처분
24/11/2010	노르웨이	터키	마른 무화과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8.7 µg/kg - ppb)	압류조치
25/11/2010	폴란드	우즈베키스탄	건포도에서 ochratoxin A (30.5 µg/kg - ppb) 검출 및 곰팡이 감염	반송조치

주요 수출국의 수출현안 모니터링

날짜	검역국가	원산지	불합격 사유	후속조치
26/11/2010	슬로바키아	터키	마른 무화과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0.23; Tot. = 0.27 / B1 = 19.13; Tot. = 36.03 µg/kg - ppb)	반송조치
26/11/2010	이탈리아	마케도니아	사과에서 omethoate (0.088 mg/kg - ppm) 및 dimethoate (0.094 mg/kg - ppm) 검출	반송조치
26/11/2010	슬로바키아	터키	마른 무화과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0.02; Tot. = <0.05 / B1 = 0.37; Tot. = 0.54 / B1 = 3.52; Tot. = 5.48 µg/kg - ppb)	압류조치
26/11/2010	슬로베니아	터키	마른 무화과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55; Tot. = 113 µg/kg - ppb)	반송조치
26/11/2010	이탈리아	마케도니아	사과에서 omethoate (0.19 mg/kg - ppm) 및 dimethoate (0.20 mg/kg - ppm) 검출	폐기처분
23/11/2010	영국	인도	커리잎의 불법 수입 시도	폐기처분
24/11/2010	영국	인도	유기농 생강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15.1; Tot. = 29.7 µg/kg - ppb)	폐기처분
24/11/2010	영국	인도	마른 고추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20; Tot. = 21 µg/kg - ppb)	제품철수
23/11/2010	독일	아르헨티나	염장 소고기의 가짜 건강 증명서	반송조치 또는 폐기처분
26/11/2010	독일	브라질	냉동 조리 소고기에서 비승인 물질인 ivermectin (20.8 µg/kg - ppb) 검출	제품철수
24/11/2010	스페인	이스라엘	오렌지 주스에서 다량의 E 210 - benzoic acid (sum ba : 840 ; 920 mg/kg - ppm), of sulphite (544; 698 mg/l) 및 of E 211 - sodium benzoate 검출	제품철수
22/11/2010	네덜란드	중국	땅콩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9.7; Tot. = 11.5 µg/kg - ppb)	반송조치
22/11/2010	독일	브라질	땅콩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4.6; Tot. = 7.8 µg/kg - ppb)	반송조치
22/11/2010	네덜란드	미국	피스타치오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35; Tot. = 38 µg/kg - ppb)	압류조치
22/11/2010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땅콩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5.0; Tot. = 6.3 / B1 = 4.9; Tot. = 9.2 µg/kg - ppb)	반송조치

날짜	검역국가	원산지	불합격 사유	후속조치
23/11/2010	독일	미국	아몬드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ND; Tot. = ND / B1 = 57.3; Tot. = 62.2 $\mu\text{g}/\text{kg}$ - ppb)	반송조치 또는 폐기처분
23/11/2010	독일	터키	피스타치오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23.4; Tot. = 25.6 $\mu\text{g}/\text{kg}$ - ppb)	반송조치
24/11/2010	폴란드	우크라이나	rapeseed의 진드기 감염	반송조치
24/11/2010	폴란드	우크라이나	해바라기씨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15.9; Tot. = 23.0 $\mu\text{g}/\text{kg}$ - ppb)	반송조치
24/11/2010	폴란드	우크라이나	rapeseed의 진드기 감염	반송조치
25/11/2010	독일	브라질	땅콩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6.1 $\mu\text{g}/\text{kg}$ - ppb)	반송조치 또는 폐기처분
25/11/2010	독일	터키	피스타치오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10.1 $\mu\text{g}/\text{kg}$ - ppb)	반송조치 또는 폐기처분
25/11/2010	독일	터키	피스타치오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488; Tot. = 532 / B1 = 594; Tot. = 665 $\mu\text{g}/\text{kg}$ - ppb)	반송조치 또는 폐기처분
25/11/2010	오스트리아	터키	헤이즐넛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25.6; Tot. = 41.1 / B1 = 61.5; Tot. = 86.39 / B1 = 3.04; Tot. = 9.99 $\mu\text{g}/\text{kg}$ - ppb)	반송조치
25/11/2010	폴란드	우크라이나	linseed에서 살아있는 진드기 발견	제품압류
26/11/2010	프랑스	중국	땅콩가루에서 아플라톡신 (aflatoxins) 검출 (B1 = 2.7; Tot. = 6.7 $\mu\text{g}/\text{kg}$ - ppb)	반송조치
26/11/2010	폴란드	우크라이나	rapeseed 의 진드기 감염	반송조치

자료 : 유럽 연합 식품 및 사료 긴급 경보 시스템 RASFF 웹사이트

○ 시사점

검역에서 문제가 된 사례를 분류해 보면, 곰팡이균의 일종인 아플라톡신(aflatoxins) 검출, 농약 검출, 비승인 물질의 검출, 냉장 및 냉동 컨테이너의 부적절한 온도 조절 등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플라톡신(aflatoxins) 검출에 대해서는 유럽 연합 지역에서 더욱 엄격하게 검사를 하고 있어 아플라톡신이 주로 검출되는 마른 고추 및 고춧가루, 마른 나물 등을 수출하는 업체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또한 농산물을 수출하는 업체에서는 유럽 연합에서 승인하고 있는 농약인지, 기준치 허용 잔여량은 얼마인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수산물에서는 살모넬라 등 각종 미생물균이 검출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주의가 요구되며 냉장 및 냉동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수출시 적절한 온도 조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제4절 ● 국가별 검역원 현황 및 담당자 내역, 웹사이트

□ EC IUU 수산물 어획증명서 관련

http://ec.europa.eu/fisheries/cfp/external_relations/illegal_fishing_en.htm

http://www.nfis.go.kr/news/N_news_view.asp?id=12749&gubun=01

□ 국가별 검역원 현황 및 담당자 내역 등 웹사이트

국가명	웹사이트 & 문서	국가명	웹사이트
오스트리아	http://www.bmg.gv.at	이탈리아	http://www.salute.gov.it/ministero/sezMinistero.jsp?label=uffici
벨기에	http://ec.europa.eu/food/animal/bips/bips_contact_en.htm 문서참조 (이하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리투아니아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불가리아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룩셈부르크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사이프러스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라트비아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체코	http://www.svscr.cz	몰타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독일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네덜란드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덴마크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폴란드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에스토니아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포르투갈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그리스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루마니아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스페인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스웨덴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핀란드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슬로베니아	http://www.vurs.gov.si/en/veterinary_administration/organisation/border_inspection_posts/
프랑스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슬로바키아	http://www.svssr.sk/sk/adresy/Hranice.asp#1
헝가리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영국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아일랜드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스위스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노르웨이	http://www.mattilsynet.no/english/import_export		



□ 주요 유럽 국가별 유기농 인증기관

국 가	기관명	웹사이트/이메일	연락처
네덜란드	Stichting Skal	www.sknl.nl info@sknl.nl	+31 38 4268181
독 일	BCS Öko-Garantie GmbH	www.bcs-oeko.de info@bcs-oeko.de	+49 (0)911424390
	Lacon GmbH	www.lacon-institut.com lacon@lacon-institut.com	+49 (0)781 9193730
	IMO	www.imo.ch imod@imo.ch	+49 (0)753181301
	Abcert AG	www.abcert.de info@abcert.de	+49 (0)711351792
	Pfůverein Verarbeitung Ökologische Landbauprodukte e.V.	www.pruefverein.de kontakt@pruefverein.de	+49 (0)721626840
	LC Landwirtschafts-Consulting GmbH	www.lc-sh.de info@lc-sh.de	+49 (0)433133630
	Agreco R.F. GÖderz GmbH	www.agrecogmbh.de info@agrecogmbh.de	+49 (0)55424044
	QC&I Gesellschaft Für Kontrolle u. Zertifizierung	www.qci.de qci.koeln@qci.de	+49 (0)6551147641
	Grünstempel Ökopřufstelle e.V.	www.gruenstempel.de info@gruenstempel.de	+49 (0)3920946696
	Kontrollverein Ökologischer Landbau e.V	www.kontrollverein.de kontakt@kontrollverein.de	+49 (0)72135239
	Ecocert Deutschland GmbH	info-deauschland@ecocert.com	+49 (0)55519084310
	Certification Services	www.csicert.com info@csicert.com	+49 (0)4215977322
	Fachverein für Öko-Kontrolle e.V.	www.fachverein.de info@fachverein.de	+49 (0)3873870755
	ÖKOP Zertifizierungs GmbH	www.oekop.de biokontrollstelle@oekop.de	+49 (0)9421703075
	GtRS	www.gfrs.de postmaster@gfrs.de	+49 (0)55137075347

주요 수출국의 수출현안 모니터링

국 가	기관명	웹사이트/이메일	연락처
독 일	Agro-Öko-Consult Berlin GmbH	www.aeec.de aeec@aeec.de	+49 (0)3054792352
	Ars Probata GmbH	www.ars-probata.de ars-probata@ars-probata.de	+49 (0)3027004632
	QAL Gesellschaft für Qualitätssicherung	www.qal-gmbh.de info@ql-gmbh.de	+49 (0)81398027
	TÜV Nord Cert	www.tuev-nord.de oeko-kontrollstelle@tuev-nord.de	+49 (0)2018253411
	ABC GmbH	zwick@abcg-alsfeld.de	+49 (0)663178490
	Thüringer Verband für Leistungs-und Qualitätsprüfungen	www.tvlev.de info@tvlev.de	+49 (0)36416223
	Institut Dr. Erdmann Zertifizierungsstelle	www.erdmann-zertstelle.de kontakt@erdmann-zertstelle.de	+49 (0)403786710
	Luxcontrol GmbH	www.luxcontrol.de info@luxcontrol.de	+49 (0)403786710
	Peterson Control Union	www.pcu-deutschland.de berlin@pcu-deutschland.de	+49 (0)3054782353
영 국	Organic Farmers and Growers Ltd.	www.organicfarmers.org.uk info@organicfarmers.org.uk	+44 (0)1939 291800
	Scottish Organic Producers Association	www.sopa.org.uk sopa@sfqc.co.uk	+44 (0)131 3330940
	Organic Food Federation	www.orgfoodfed.com info@orgfoodfed.com	+44 (0)1760 720444
	Soil Association Certification Ltd.	prod.cert@soilassociation.org	+44 (0)117 9142412
	Bio-Dynamic Agricultural Association	www.biodynamic.org.uk demeter@biodynamic.org.uk	+44 (0)131 5526565
	Irish Organic Farmers and Growers Association	iofga@eircom.net	+353 043 42495
	Organic Trust Limited	www.organic-trust.org organic@iol.ie	+353 185 30271
	Quality Welsh Food Certification Ltd.	mossj@wfsagri.net	+44 (0)1970 636688
	Ascisco Ltd.	Dpeace@soilassociation.org	+44 (0)117 9142407



제3장 >>> 라벨링 규정

Korea Agro-Fisheries Trade Corporation

제1절 ● 라벨링 표시사항

가. 의무 표시사항

- 라벨링 표시사항은 모든 식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의무 표시사항과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표기하는 선택적 표시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선택적 표기사항은 품목별로 상이함
- 의무 표시사항

제품명 (the name of the food)
성분 (list of ingredients) 및 성분함량 또는 성분 카테고리 : 함량이 높은 순으로 표기, 성분 카테고리 및 특정 성분 순으로 표기
알레르기 유발 성분
유효기간
보관방법
제조회사 이름 및 주소 또는 EC내 수입/판매업자
사용방법 (사용방법 부재시 식품의 이용이 어려울 경우)
Net Quantity
영양성분
알코올 도수 (1.2% 이상의 알코올 음료에만 해당)
원산지 (원료의 일부가 제품의 원산지와 달라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을 경우)

나. 의무 표기 제외제품

- 신선 과일 및 야채
- 탄산수 (carbonated water)
- 발효식초
- 치즈, 버터, 우유 및 발효된 크림
- 단일 성분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성분과 제품명이 동일하여 소비자들이 제품명을 통하여 분명하게 성분을 알 수 있는 제품

다. 유효기간 표기 제외제품

- 알코올 도수 10% 이상인 와인 및 알코올 음료
- 탄산음료
- 5리터 이상의 케이터링용 대용량 주스 및 알코올 음료
- 식초
- 소금
- 고형 설탕
- 추잉껌
- 개별 포장의 아이스크림

라. 원산지 표기 의무 제품

- 현재 법규에서는 유럽연합 외부에서 수입되는 소고기, 생선, 송아지 고기, 조개류, 와인, 신선 농산물, 꿀, 올리브 오일, 그리고 가금류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음



마. 영국의 라벨링 표기 방법 변경 계획

- 영국 식품표준청(Food Standards Agency, GDAs)은 문자, 신호등을 본판 이미지, 그리고 1일 권장 섭취량을 포함한 융통성 있는 전면 라벨링 계획을 제시함
- 신호등 색깔과 함께 높음, 중간, 낮음이라는 문자와 1일 권장 섭취량 비율을 함께 표기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제안서가 제출됨

바. 영국, 새로운 생선 라벨링 규정 도입

- 잉글랜드를 비롯한 스코틀랜드, 웨일즈 그리고 북 아일랜드까지 전체 영 연방이 새로운 생선 라벨링 규정을 시작함
- 이 2010 생선 라벨링 규정은 기존 규정을 대체하는데, 이 신규 규정은 최근에 시장에 출시된 새로운 생선들을 추가하였음
- 이는 생선 라벨링을 올바르게 일관되게 유지,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무엇을 구매했는지, 생선이 바다에서 잡힌 것인지, 내륙에서 잡힌 것인지, 또는 양식으로 길러진 것인지, 그리고 바다에서 잡힌 것이라면 어느 바다에서 잡힌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임
- 즉, 새로운 생선 라벨링에는 생선 종의 이름과 어획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함

사. 유기농 제품의 라벨링

1) 개요

- 유럽 연합은 유럽 지역 내의 소비자들이 유기농 식품과 음료의 원산지와 품질에 대해 믿을 수 있도록 유럽 연합 유기농 로고를 제작, 사용하도록 함
- 또한 동일한 유럽 연합 유기농 로고를 사용함으로써 모든 유럽 연합 내 국가에서

- 소비자들이 제품의 원산지에 관계없이 유기농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함
- 현재는 유럽 연합 유기농 로고 사용이 선택사항이나 2010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사전 포장된 유기농 제품에는 유럽 연합 유기농 로고 사용이 의무화 되므로 유기농 제품을 유럽 연합 지역으로 수출하는 업체들은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단, 포장되지 않은 유기농 제품은 로고 사용이 선택사항임

2) 유럽 연합 유기농 로고

- 유럽 연합의 새로운 유기농 로고는 유럽 연합 로고와 나뭇잎 이미지를 결합한 형태를 띄고 있음
- 유럽 연합의 유기농 로고는 유럽 연합 포털 사이트인 <http://ec.europa.eu>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유럽 연합 유기농 로고]

아. 라벨링 표시사항

- 6월 16일, 유럽 의회는 투표를 통해 영양정보 및 1일 섭취 권장량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식품 라벨링 법안을 채택함
- 새로운 유럽 식품 라벨링 법안은 소비자들이 보다 건강하고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나 식품 업체에게는 행정적, 재정적인 측면에서 부담을 주고 있음



- 일단 법안 발효되면 식품 업체들에게는 새로운 규정에 적응 하도록 3년이 주어지고 100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연간 매출액이 5백만 유로 미만인 중소기업에게는 5년이 주어짐

1) 육류 및 가금류

- 육류 및 가금류 라벨에는 반드시 해당 가축이 어디서 태어나고, 사육되었으며, 도살되었는지를 표기해야 함
- 부가적으로 어떠한 충격 없이 도살된 육류 및 가금류는 충격 없이 도살되었음을 표기해야 함
- 또한 육류」 가금류가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도 원산지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함

2) 수산물

- 모든 수산물 및 수산물을 함유하고 있는 가공제품들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 함

3) 영양정보

- 이번 라벨링 개정안에서는 지방, 포화지방, 설탕, 소금 및 열량을 제품 앞면에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 함
- 또한 반드시 함유량과 함께 1일 권장량을 동시 표기하고 100g 또는 100mL당 얼마나 함유하고 있는지 표기하도록 함
- 이외 단백질, 섬유질, 트랜스 지방 함량 등 다양한 영양정보를 제품 패키지에 포함시키도록 함
- 이와 같은 영양정보는 읽기 쉽도록 표기할 것을 명시함
- 그러나 사전 패키지 되지 않은 제품 및 알코올 음료 제품은 영양정보 라벨링 의무에서 제외함
- 알코올 음료 제품이라 하더라도 알코올 혼합 음료 또는 맥주에 소프트 드링크를 섞은 알코팝스 (alcopops)는 판매자가 분명히 소프트 드링크와 분리할 수 있도록

더욱 엄격한 라벨링을 적용하기로 함

4) 표기방식 - '신호등' 체계 거부

- 가공제품의 소금, 설탕, 지방 함유량 수준을 빨강, 노랑, 초록색 신호등 체계로 표기하여 강조하는 방식은 거부됨

자. 영국, 식품 라벨링 담당 기관 변경

- 9월 1일부로 영국의 식품 라벨링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 변경됨
- 식품표준청이 식품 안전과 관련된 업무 중 라벨링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게 되고 다른 식품 안전 업무들은 환경, 식품 및 농촌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가 담당하게 됨
- 또한 영양정보 라벨링에 대한 업무는 향후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로 이관될 예정임
- 따라서 앞으로 식품 라벨링 정책에 관한 업무는 식품표준청을 비롯한 3개 부서가 함께 공조하게 됨
- 각 부서별 식품 라벨링 관련 업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부서명	담당 업무
식품표준청	식품표준청은 주로 유효기간 표시 등의 식품 안전에 대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조언을 담당함. 구체적인 담당업무는 아래와 같음 - 식품 성분의 평가와 라벨링 (알레르기 항원 성분, 글리콜 (glycols), 카페인, 글리시리진 (glycyrrhizinic acid)) - 유기농 식품의 안전과 구성 표준 취급과 식품 사용 환경에 관한 안전 (급속 냉동 식품, 원유와 살균처리, 식품 포장 재료 등) - 유전자 변형 식품과 신기 식품 (novel foods)
식품표준청	- 잘못된 라벨링으로 인한 사고, 식품 안전에 대한 함의로 인한 식품 사기를 포함한 식품 안전 사고 - 식품 및 사료의 추적성을 포함한 유럽 연합의 일반 식품법 및 규정 - 식품 위생, 분석방법 및 샘플링, 식품 첨가제, 식품오염에 관한 규격 위원회



부서명	담당 업무
환경, 식품 및 농촌부	<p>환경, 식품 및 농촌부는 복지, 마케팅 표준, 에코 라벨링과 같은 현재 라벨링 업무를 계속 담당함. 또한 식품 안전 또는 영양성분과 관련이 없는 라벨링 업무를 담당함. 환경, 식품 및 농촌부의 자세한 라벨링 업무는 아래와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 식품 라벨링 법률 제정과 유럽 연합과의 관련 사항 협상 - 원산지 라벨링 - 과일 주스 및 넥타, 잼, 생수와 같은 제품의 식품 구성 표준 및 라벨링 - 소프트 드링크 및 시리얼 제품과 같이 특별한 법 규정이 없는 식품을 위한 구성 표준에 대한 기술적 조언 - 어류 라벨링 - ‘자연적’, ‘신선한’, ‘맑은’과 같은 마케팅적 언어 사용 - 베간(vegan)과 채식주의자 라벨링 - 식품 라벨링, 가공 과일과 채소, 신선 과일과 채소, 지방과 기름, 생선과 어류 제품에 관한 규격 위원회
보건부	<p>보건부는 영양성분 라벨링 정책과 이와 관련된 유럽 연합과의 협상을 담당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연합 식품 정보 규정과 관련된 영양성분 - 제품 전면 라벨링 - 특정 영양적 사용을 위한 식품 - 신생아를 위한 제품 제조법 - 건강 및 영양에 대한 주장 - 식품보조제 - 칼로리 정보 - 영양성분 및 특정 식이 요법을 위한 식품에 관한 규격 위원회

제2절 ● 라벨링 관련 문제 및 해결사례

가. 잘못된 알레르기 정보 표기

- 레피콜 프로바이오틱(Lepicol probiotic 180g)이라는 제품은 지금까지 유제품 프리, 그러나 소량의 우유 단백질 포함이라고 표기하고 있었으나, 이 라벨링이 우유 알레르기가 있거나 불내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 밝혀짐
- 따라서 유럽 식품안전청은 알레르기 경고 안내물을 발행하여 우유 알레르기 또는 불내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제품을 먹지 말 것으로 홍보함
- 이 변경된 제도에 적용을 받는 제품은 레피콜로, psyllium husks, fructooligosaccharides, probiotic을 함유하고 있음
- 따라서 해당제품 제조사가 현재까지 제조된 제품에 알레르기 정보를 스티커로 부착하여 문구를 수정하도록 조치함
- 이와 같이 알레르기 유발경고 문구가 잘못 되거나 없을 경우에는 해당제품에 대한 리콜 또는 판매중지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나. 제조성분 누락으로 인한 리콜조치

- 영국의 대형 유통업체인 테스코는 푸딩 라이스 제품을 최근 리콜하였는데, 이는 제품성분 중 하나였던 밀이 표기되지 않았기 때문임
- 밀이 표기되지 않음으로써 밀 또는 글루텐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리콜 조치가 단행됨



다. 유기농 밤 제품의 라벨링 문제

- S사의 유기농 밤 제품으로 한국에서 영국으로 수입 통관 중 제품 포장에 유기농 로고가 문제시 됨
- 포장에 유기농 로고가 있으나 관련 서류가 미비하여 통관되지 못하였고 문제가 된 제품은 전량 폐기처분됨

라. 인도 카레 제품 및 성분표기 누락 사례

- 미국 Wal-Mart계열의 영국 대형유통업체인 아스다(Asda)는 인도 카레 제품인 'Indian Tikka Masala'와 'Jalfrezi', 'Chicken Korma' 를 잘못된 라벨을 이유로 매장에서 회수함. 해당제품들이 매장에서 회수된 이유는 캐슈넛(cashew nuts) 또는 머스타드(mustard)를 함유하고 있음에도 라벨에 표기하지 않았으므로써 잘못된 라벨이 너트류와 머스타드에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임
- 샌드위치 팩토리(The Sandwich Factory)사(社)는 'Good to Go' 브랜드의 'All Day Breakfast Sandwich' 제품을 성분누락 표기를 이유로 리콜을 실시함. 해당 샌드위치는 쉐러리와 머스타드를 함유하고 있으나 라벨에 표기되지 않아 이 성분에 알레르기 또는 과민증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어 리콜조치를 함

마. 패키지 오류

- Walker의 감자칩 과자 시리즈인 'Walkers Ready Salted Crisps'와 'Walkers Salt & Vinegar Crisps' 멀티팩 제품이 패키지 실수로 인하여 이들 제품이 아닌 다른 맛과 함께 패키지 되어 락토즈, 우유, 콩에 부적합한 사람들에게 건강적으로 위협할 수 있음. 따라서 제조 회사는 제품을 리콜조치함

바. 칠리 쌀 과자 제품 성분 표기 누락

- 영국 대형 유통업체인 모리슨 (Morrisons)은 자사 제품인 칠리 쌀 과자(Chilli Rice Crackers)를 리콜조치 함. 이는 제품에 땅콩과 참깨가 함유되어 있었으나 제품 알레르기 경고 문구로 ‘이 제품은 너트, 땅콩과 참깨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it may contain traces of nut, peanuts and seame)라고만 명시했을 뿐 제품 성분으로 명시하지 않아 땅콩과 참깨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소비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제기됨. 이에 따라 모리슨은 매장에 리콜조치를 하는 이유와 이미 구입했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게시하는 한편 전국 일간지에 이에 대한 사실을 광고 게재함

○ 시사점

- 제품의 영문 라벨링 표기시 제품 성분과 알레르기 항원 성분 및 경고 내용을 분리하여 정확히 표기할 필요가 있음

사. 중국제품 억류 사례

- 9월 29일 루마니아로 수입되던 중국 제품이 라벨링에 리놀레산 소프트 캡슐(linoleic acid soft capsules)에 대한 표기를 누락하여 제품이 억류된 사례가 발견됨

아. 밀가루 함유 글루텐 프리 과일케이크

□ 맥스 앤 스펜서, 글루텐 프리 과일 케이크 철수

- 맥스 앤 스펜서는 자사 제품인 글루텐 프리 과일 케익에 밀가루가 포함되어 있어 제품을 매장에서 철수함
- 이 제품의 라벨은 제품이 밀가루 없이 만들어 진 것인지, 글루텐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제품인지 부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음



- 따라서 이 제품은 글루텐 또는 밀가루에 민감하거나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건강상 위험할 수 있음

○ 시사점

- 특정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을 라벨에 표기할 때는 다양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에게 분명하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자. 소시지 제품 리콜 사례

□ 소코로우(Sokolow)사의 일부 소시지 제품 리콜조치

- 폴란드에서 수입된 소코로우 사의 블랙 푸딩 소시지가 리스테리아증의 원인균으로 단핵구(monocyte) 증가증을 일으키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니스(*Listeria monocytogenes*)에 감염되어 있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리콜조치를 실시함
- 이 제품을 수입한 M&K Polish Goods Ltd, Donney European Ltd 그리고 Expo Foods를 통해 리콜이 가능함

차. 터키 무화과 제품

- 11월 18일과 23일, 터키에서 몰타와 불가리아로 수입되던 터키 마른 무화과 제품이 불충분 하거나 부정확한 라벨링을 이유로 폐기처분 또는 반송조치가 됨
- 이는 개별 제품에 로트 넘버가 없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짐

날짜	검역국가	원산지	불합격 사유	후속조치
18/11/2010	몰타	터키	마른 무화과의 불충분한 라벨링	폐기처분
23/11/2010	불가리아	터키	마른 무화과의 부정확한 라벨링	반송조치

자료 : 사료 긴급 경보 시스템 RASFF 웹사이트

카. 식품 보조제 및 캐슈넛 쿠키 바

- 바이타바이오틱스(Vitabiotics)사는 6개 식품 보조제를 매장에서 철수했는데, 이는 제품 라벨에 명시된 엽산 함량보다 실제 더 많은 엽산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임
- 내추럴 밸런스 푸드사는 캐슈넛 쿠키 바를 매장에서 철수 조치했는데, 이러한 조치는 라벨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실제 제품에는 땅콩이 함유되어 땅콩 알레르기를 가진 소비자가 섭취했을 때 건강에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데에 따름

○ 시사점

- 실제 성분 함량과 라벨에 표기된 성분 함량이 일치하도록 함
 - 알레르기 유발 인자로 알려진 성분은 반드시 라벨에 표기를 해서 매장에서 철수되는 일을 방지해야 함
-



제3절 ● 자료원 및 관련 웹사이트

□ EU 라벨링 규정

http://ec.europa.eu/food/food/labellingnutrition/foodlabelling/comm_legisl_en.htm

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consumers/product_labelling_and_packaging/l12090_en.htm

□ European Commission 식품 라벨링 보고서

http://ec.europa.eu/food/food/labellingnutrition/betterregulation/competitiveness_consumer_info.pdf

□ 영국 식품안전청

www.food.gov.uk/foodlabelling/

□ 라벨링 오류 관련 사이트

<http://www.food.gov.uk/foodlabelling/ull/claims/>

<http://www.food.gov.uk/news/newsarchive/2010/apr/fishlabelling>

http://ec.europa.eu/food/food/labellingnutrition/nutritionlabel/index_en.htm

□ 유기농 라벨링 자료

http://ec.europa.eu/agriculture/organic/eu-policy/logo_en

□ EU 및 영국 라벨링 세부규정

<http://www.food.gov.uk/foodlabelling/ull/claims/>

<http://www.food.gov.uk/news/>

http://ec.europa.eu/food/food/labellingnutrition/nutritionlabel/index_en.htm

http://www.europarl.europa.eu/news/public/focus_page/008-75601-158-06-24-901-20100607FCS75591-07-06-2010-2010/default_p001c016_en.htm

주요 수출국의 수출현안 모니터링

Korea Agro-Fisheries Trade Corporation

발행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발행일 | 2010년 12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 aT센터

조사참여 | [중국] 베이징 aT센터(서현동 지사장)

[미국] 뉴욕 aT센터(이유성 지사장)

[일본] 도쿄 aT센터(이종건 지사장)

[유럽] 로테르담 aT센터(변동헌 지사장)

[총괄] 식품수출정보팀(오세원 차장)

문의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수출정보팀

전화 : (02) 6300-1393

본 자료는 KATI(www.kati.net) > 무역정보 > 발간책자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우리 공사는 임직원에 대한 부정비리 신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수신자부담 「24시간 부정비리 신고 모바일 핫라인(080-112-2580)」을 개설 하였습니다. 신고내용은 비밀이 절대 보장되오니 안심하시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